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1993. 10

| | |
|-------|----------------|
| 金 瑩 允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 諸 成 鎬 |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 朴 德 圭 | (韓國教育開發院 企劃處長) |
| 朴 秀 赫 | (서울市立大 教授) |
| 李 基 秀 | (高麗大 教授) |

民族統一研究院

序 文

東西獨은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실체를 인정하고, 關係를 개선하는 기초위에서 지속적인 交流·協力을 실시함으로써 兩獨의 통합여건을 마련,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實現하였습니다. 특히 1989년 가을 이후 동독에서 일어난 市民革命, 베를린 장벽의 崩壞, 東獨지역의 자유총선거 실시, 「貨弊·經濟·社會 統合에 관한 條約」 및 「統一條約」 체결 등 일련의 독일통합 과정은 아직도 分斷 狀況을 克服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敎訓과 示唆點을 주고 있습니다.

南北韓의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2개의 法秩序를 하나의 법질서로 統合·再編하는 課業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통일 조약과 부속의정서 및 관련 法令 등에 의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법제 통합과정에 관한 研究는 우리의 통일대비 研究에 꼭 필요한 資料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當 研究院은 民族共同體 형성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開發을 위하여 앞으로 독일통일 조약 및 법령번역시리즈를 出刊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일환으로 독일통일조약 비준 법령을 翻譯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 번역서가 남북한 통일문제를 研究하시는 사계의 전문가들과 통일정책 입안자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도움말

1. 우리의 법률 체계상 이해하기 어려우나 독일어 Kapitel은 장, Abschnitt은 절로 표시하고 장은 라틴어 숫자 대문자로, 절은 소문자로 원문과 같이 표시하였다.
2. 모든 법조문의 기호는 원문과 동일하게 하였다.
3. 우리의 법률체계상 조,항,호와 독일의 조,항,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번역하였다.
 - 가. 독일어 Artikel, §는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모두 “조”로 번역했다.
 - 나. §앞에 Artikel이 사용되었을 경우 Artikel을 “관”으로 번역하였다.
예 : Artikel 1 § 1 Absatz 1은 제1관 제1조 제1항
 - 다. Satz는 문장이란 뜻으로 “문”으로 번역하였다.
예 : Abstz 1 Satz 1은 제1항 제1문.
 - 라. Satz를 구분하는 경우 앞절·후절로 하였다.
예 : Satz 1 erster Halbsatz는 제1문 앞절
 - 마. 항(Absatz) 다음에 독립적으로 번호가 Nr.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호로 하였다. 그러나 §(조), Absatz(항), 다음에 번호가 연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번”으로 하였다.
예 : §1 Absatz 1 Nr.1 1,2,3,은 제1조 제1항 제1호 제1번, 제2번
 - 바. 절 아래 Nr. 도 번으로 하였다.
예 : Abschnitt iii 1, 2, 3,은 제iii절 제1번 제2번…….
4. 법률용어상 우리의 사용언어와 일치되지 않거나 우리의 법률용어상 생소한 개념은 ()속에 원어를 표기하였으며, 이해가 쉽도록 법률 전문 용어를 풀어서 기술하였다.

5. 이 도움말 외에도 필요한 곳에 역자주로 ()속에 *표시를 하고 주석을 달았다.
6. 법률 해석상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려되어 정확한 문법상의 원칙을 지켰다.
7. Gesetz, Recht는 법 또는 법률로, Recht는 사안의 특성과 문장의 흐름에 따라 권리로, Ordnung은 규정으로, Rechtsordnung은 법규정으로, Verordnung은 령으로, Rechtsverordnung은 법령으로, Regel은 규칙으로, Massgabe는 기준으로, Massnahme는 조치로 번역하였다. 독일어 문장상 geltend machen은 시행하다로, in Kraft setzen은 효력을 발생하다로, gelten은 적용하다 또는 유효하다로 하였다.
8. 우리의 경우 법률 조항 신설 시에는 제1조와 제2조 사이에 관련조항을 삽입할 때에는 “제1조의 1”형태이나 독일법에서는 a, b, c를 추가하여 제 1a조, 제1b조등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 표기를 “제1조의 a”로 하면 제1조의 a항과 혼동될 수 있어 원문 대로 “제1a조”로 하였다.
9. 법원 명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1. Kreisgericht - 구역법원(가장 작은 관할 영역을 관장하는 제1심법원임)
Bezirksgericht - 지역법원(제1심 법원 이기는 하나 구역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심도 재판)
 - Landgericht - 주법원
 - Oberlandesgericht - 고등법원
 - Bundesgerichtshof - 연방대법원

서독과의 통합과정에서 동독에서는 지방법원(Amtsgerichte) 대신에 매 구역에 하나씩 구역 법원이, 주 법원 및 고등법원 대신 14개 지역(Bezirk)에 하나씩 지역법원을 설립했다(부록Ⅱ 제Ⅲ장 업무영역 A 제Ⅲ절 제1번 b)참조).
10. 독일의 심급제도
 - 가. 민사재판 : 제1심 - 1명의 직업판사가 단독심리 ; 제2심(제1심포함) 1명의 직업판사와 2명의 참심판사(참심판사는 보

통 직업판사이나 상업분야소송에는 상사참심판사)

제2심-주법원(Zivilsenat)으로서 1명의 주심-직업판사와 2명의 참심판사-직업판사)

제3심-연방대법원

나. 형사재판 : 제1심(지방법원, Amtsgericht)-1명의 직업판사에 의한 단독심리, 주요재판은 두가지 유형으로 1명의 직업판사(주심)와 2명의 참심판사 또는 1명의 직업판사(주심)와 1명의 직업판사로서의 참심판사, 2명의 참심판사로 구성

제2심(주법원, Landgericht)-두가지 유형으로 소법정-1명의 주심(직업)과 2명의 참심판사, 대법정-1명의 직업판사(주심), 2명의 참심판사(직업)와 2명의 참심판사.

제3심(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 : 1명의 주심(직업판사), 2명의 참심판사(직업)로 구성하는 상고심, 1명의 주심(직업)판사와 4명의 참심판사(직업)로 구성하는 주이익에 위반되는 주요사안을 심판하는 재판부.

제4심(연방대법원, Bundesgerichtshof)-국가이익을 침해한 사건을 다루는 상고심으로서 1명의 주심판사(직업)와 4명의 참심판사(직업판사)로 구성

다. 법원의 유형

가. 민사 및 형사 보통재판은 노동재판과 함께 3심급으로서 1심의 지방법원(Amtsgericht)→1,2심의 주법원(Landgericht)→2심의 주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주상급법원)→3심의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에서 이루어지며 지방법원은 물론 주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사안에 따라 1심재판도 관할한다.

나. 노동법원은 노사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원으로서 3심제도이며, 이는

노동법원(Arbeitsgericht)→주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으로 되어있다.

다. 행정법원은 모든 행정법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법원으로서 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주고등행정법원(Oberlandesgericht)→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등의 3심제도이다.

라. 사회법원(Sozialgericht)은 사회보장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며 사회법원(Sozialgericht)→주사회법원(Landessozialgericht)→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로 되어있다.

마. 재정법원(Finanzgericht)는 조세 및 공과금에 대한 사안을 다루며 2심제도로서 재정법원(Finanzgericht)→연방재정법원(Bundesgerichtshof)으로 되어있다.

(단, 구동독에는 헌법재판소, 행정, 사회 및 재정법원은 없었다.)

11. 연방헌법 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 위 5개 재판소외에 최고 재판소로서 뿐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연방 및 주간의 문제와 연방 국가 기관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 재판소만이 각정당의 헌법 위배 여부를 재판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 이 정당을 해산시킬수 있다. 연방 및 주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며,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연방 및 주 정부, 의회, 하급 법원의 청구가 있을때에 소집되기도 한다. 연방의회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법관 선거위원회에서 8명의 판사를 선출하고, 상원에서 8명을 선출하며 이 두개의 집단에서 각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두개의 심판부(Senat)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12년이고 재선은 없다.

목 차

序 文 도움말

(아래의 목차는 1990. 9. 28. 본에서 발행한 독일연방국 법률 관보(이하 연방관보) (Bundesgesetzblatt) 제35호 제Ⅱ부 885쪽-1248쪽의 내용임)

1. 1990. 8. 31.에 체결하고 1990. 9.18.에 합의한 독일통일회복을 위한 양독조약에 관한 비준 법률 1
2.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독일통일 회복(Herstellung)에 관한 조약 9
3. 의 정 서 41
4. 조약 제8조와 제11조에 따른 연방법 특별경과규정
부록 I : 독일연방 공화국(서독) 45
부록 II : 독일민주 공화국(동독) 483
5. 부록 III : 공공자산 규칙을 위한 양독 정부간의 공동성명서 625
6. 양독일이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1990. 8. 31. 베를린에서 서명한 통일 조약의 실행과 해석에 관한 합의서 629
7. 베를린 주둔 프랑스, 소련,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미국군대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독일 통일후 한시적 체류에 관한 합의(내용) 효력 발생에 관한 법 645

1990. 8. 31.에 체결하고 1990. 9. 18.에 합의한 독일 통일회복을 위한 양독 조약에 관한 비준 법률 *¹⁾

— 통일 조약 비준 법률 —

1990. 9. 23.

서독 연방의회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법률을 의결한다. 기본법(이하 헌법) 제79조 제2항은 보존된다.(einhalten)(* 헌법 제79조 제2항은 헌법 개정 법률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의회 및 상원의원 총회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함을 정하는 조항)

제 1 조

조약 비준

서독과 동독이 1990. 8. 31에 베를린에서 서명한 독일 통일 회복을 위한 양독간의 조약과 의정서 그리고 부록 I, II, III, 그리고 1990. 9. 18에 베를린과 본 에서 서명한 합의서에 대하여 비준한다. 조약과 그 문서 및 조약과 그 문서에 구속되는 합의는 다음에 공포된다.

제 2 조

규정위임(사회보장²⁾에 관한 서독의 조약)

(1) 서독 정부는 법률에 의하여 통일조약 제11조에 규정된 조약과 사회보

1) 이 표는 역자가 보충설명이 있을때에 ()속에 설명한다는 표시임. 위 법률은 양독간에 체결된 통일 조약에 대한 서독연방의회 비준법률임.

2) soziale Sicherheit는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의미이나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회보장으로 번역함.

장(법적 의료보험, 사고 보험, 연금보험, 가족부양과 근로촉진 등)분야에 있어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의 약정에 필요한 조정을 행하고 시행규정을 제정할것을 수입받는다. 여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포함한다 :

1. 보험회사와 지사의 관할권
 2. 행정절차
 3. 독자적 부담에 관한 요구 급부가 있을때에 의료보험 수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조약 당사국의 법률에 따른 보험기간의 상대적인 계산에 관한사항
 5. 법적 의료보험회사의 특별 재정부담의 보전에 관하여 하부보험 회사간의 합의 실천 사항
 6. 의료 및 사고 보험회사에 대한 법적 의료 및 사고 보험회사의 지출 할당액의 급부에 관한 사항(* 법적의료및 사고 보험 회사는 국가기관이고 의료및 사고 보험회사 즉, 비법적 회사는 사단법인체로서의 보험회사임)
- (2) 법규정은 법률이 동의 요구의 필요성이 생길때 그 규정에 대하여 연방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서독의 상원(Bundesrat)은 각 주정부가 주지사를 포함한 주대표를 통일 조약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정한 의원으로 구성됨)

제3조

규정위임(사회 보장에 관한 동독의 조약)

- (1) 통일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유효한 사회 보장[법적 의료 및 사고 보험(* 산재보험 포함, 이하 같음), 연금보험, 가족 부양 및 근로 촉진]사항에 관하여 통일 조약 제12조에 명시된 동독국민의 법적 계약의 경과 조치로서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동독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는 동독정부에게 위임한다. 이 이행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1. 보험회사와 지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3. 법적의료보험 회사의 특별재정 부담의 보전에 관하여 보험 회사간의 합의 실천사항
 4. 의료 및 사고보험 회사에 관한 법정의료 및 사고보험 회사의 지출 할 당액의 급부에 관한 사항
 5. 독자적 부담에 관한 요구급부가 있을때의 의료보험수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조약당사국의 보험회사 또는 지사의 계약을 바탕으로 증명되어진 급부의 계산
- (2) 법규정은 법률이 동의 요구의 필요성이 생길때 그 규정에 대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4 조

규정위임(유럽 공동체 법과 유럽 공동체를 위한 약정 법률)

- (1) 연방정부는 유럽 공동체 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유럽 공동체의 이에 상응하는 법률 문서의 사항에 있어서 유럽 공동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라 공표된 법률의 실행과 적용이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때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 이를 가능케하는 해당 법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을 위임받는다. 이는 특히 유럽 공동체에 의하여 제정된 환경법, 교통법, 농업법, 근로보호법의 규정과 유럽 내의 시행을 위하여 유럽 공동체가 제정한 법률 문서들이 상품유통, 직무수행의 자유와 영역의 자유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다른 규정에서 정한 규정위임은 침해하지 않는다.
- (2) 위 제1항 제1문에 반하여 행하거나 거부하거나 이 벌금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한다.
- (3) 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만 독일 마르크를 부과시킨다.

제 5 조 규정위임(재산권 청구)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1990년 7월 11일에 제정된 재산권 청구 신고에 관한 법률(동독 관보 제 I 부, 제44호, 718쪽)을 1990년 8월 21일 제정된 재산권 청구 신고에 관한 두번째 법률의 취지에 의거 개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계산되지 않은 재산 가치의 신고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고를 간소화 하거나 신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 통일된 규정 순위의 회복, 행정규칙의 폐지와 개정

- (1) 조약 제8조의 부록 I의 개정된 조항은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한다. 조약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은 부록 II의 범위에서 법규정의 순위와 비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폐기 된다.
- (2) 동독의 행정규칙에 대하여 조약 제9조 제2항에 관련된 부록 II가 계속 유효하는 한 행정규칙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제 7 조

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의 새로운 해당 관할 연방 장관은 조약에 의하여 개념이 변경된 법률을 연방 법률관보에 공고한다.

제 8 조 동독과의 상품유통 통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78년 6월 16일 발표된 동독과의 상품 유통 통계에 관한 법률은 1990년 6월 25일 통화, 경제 및 사회 통합 창출을 위한 조약 관계 비준법 제

30조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며, 이는 다시 “통일 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을 포함한 상품 유통 통계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과 연방의 다른 지역간의 상품 가치에 관해서는 연방 통계에 수록한다.
2.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통계에는 통합 이전에 이미 연방법이 적용되어 오던 지역과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 및 그 이외의 지역에서 소비된 모든 상품을 기재한다.”
3. 제2a조의 문장 “동독과 동베를린”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으로 문구 수정한다.
4. 제2c조 다음에 제2d조를 신설한다.

제 2d 조

“재무관청은 상품을 통일조약 제 3조에 언급된 지역에 출고하거나 이 지역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연방 통계청에 통보한다.”

5. 제3조의 문장 “동독과 동베를린”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으로 문구 수정한다.
6.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이 법은 1995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9 조

베를린 - 클라우젤 (에 적용)

이 법률은 베를린주가 이법률의 적용을 받아들이는 한 베를린주에도 유효하다. 이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정은 제3차 확대적용법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에도 유효하다.

제 10 조

발 호

- (1) 이 법률은 공포되는 날부터 유효하다.
- (2) 서독과 동독간에 체결된 통일독일의 회복 조약 제45조에 따라 제1조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및 조약은 발효하는날 연방 법률관보에 공고한다.

상기 법률은 여기에 작성하며 연방 법률 관보에 공고 한다.

본 1990년 9월 23일

연방 대통령
 바이젱커
 연방 수상
 닥터 헬름 콜
 연방 내무장관
 쇼이블레

연방외무장관

한스 - 디트리히 겐셔

연방 재무장관

테오 바이겔

연방 식량·농업·산림장관

이그나크 케이홀레

연방 노동 및 사회보장 장관

노오베아트 블룸

연방 청소년·가정·여성 및 보건 장관

우글라 레이

연방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 장관

클라우스 뉘퍼

연방 도시계획·건축 및 도시건설 장관

게르다 하셀펠트

연방 교육 및 과학장관

유겐 뮐레만

연방 법무장관

엔겔하아드

연방 경제장관

하우쓰만

연방 내독장관

빌름스

연방 교통·체신장관

슈바르츠 - 쉘링

연방 국방 장관

스톨텐베아크

연방 연구 및 기술장관

하인츠 리젠후버

연방 경제 협력장관

봐른케

빈 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독일통일의 회복(Herstellung)
에 관한 조약

— 통일조약 —
(Einigungsvertrag)

서독과 동독은 —

평화와 자유속에서 통일독일이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완성할 것을 결의하며,

법치국가적, 민주적 및 사회적 연방국가에서 함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하는 양독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에의 돌파구를 마련해준 이들과 통일독일 회복을
사명으로 고수하여 이제 이를 완성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독일 역사의 지속성을 인식하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며 독일의 민주발전
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거에서 비롯된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독일통일을 통해 유럽의 통합과 국경선 구분없이 모든 유럽민족들이 서
로 신뢰하며 공존할 수 있는 유럽 평화질서의 구축에 일조를 하겠다는 의
지에서,

유럽 모든 국가들의 기존 국경과 영토상의 통합 및 그 주권을 침해하지
않음이 평화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면서,

독일의 통일회복에 관한 조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장
편입의 효력

제 1 조 주 (Laender)

- (1)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겐 주들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동독의 독일 연방공화국 편입발효와 동시에 1990년 10월 3일부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주들이 된다. 이들 각 주의 형성과 상호경계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22일에 제정된 동독내 주형성에 관한 헌법규정-주편성법-의 부록 II에 따라 그 기준이 된다.
- (2) 베를린의 23개 구역들이 베를린주를 형성한다.

제 2 조 수도, 독일통일의 날

- (1)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소재지 문제는 독일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된다.
- (2) 10월3일은 독일통일의 날로서 법정 공휴일이다.

제 II 장 기 본 법

제 3 조 기본법의 발효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100-1로 공포하고 1983년 12월 21일 최종 개정된 서독 기본법은 제4조에 명시된 개정조항들을 포함하여, 본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편입발효와 동시에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베를린의 일부 주에서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기본법의 편입 전제 개정

서독의 기본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1. 전문은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다.

신과 인류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면서, 통합유럽의 정당한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하겠다는 의지하에 독일국민은 헌법제정권에 의거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부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맥클렌부르크-포오폼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츠, 자아르란드, 작센-안할트, 쉘레스비히-홀스타인 주와 튜링겐주의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로서 이 기본법은 모든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2. 제23조는 폐지된다.

3. 기본법 제51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명문화된다.

“(2) 각 주는 최소한 3개의 투표권을, 2백만 이상의 인구를 소유하는 주들은 4개, 6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주들은 5개, 그리고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주들은 6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4. 제135a조는 자구변경 없이 제1항이 된다. 제1항 다음 제2항이 신설된다 :

“(2) 제1항은 동독과 산하법인의 그리고 서독과 산하단체 및 공법기관의 채무에 적용되며 이 채무는 연방, 주 그리고 시·지역으로 양도되는 동독재산 가치와 관련되며 동독과 산하법인의 채무에 기인된 조처에도 적용된다.

5. 기본법에는 제143조가 신설된다 :

제143조

- (1)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법률은 다양한 관계에 따라 1992.

12. 31.까지 이 기본법의 규정에 완전히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예외적일 수 있다. 기본법 규정과 다른 사항은 제19조 제2항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제79조 제3항에 명시된 기본원칙들과 일치되어야 한다.

- (2) 기본법 제ii절, 제viii절, 제viiiia절, 제ix절 및 제x절, 제xi절의 규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상관없이 동 조약의 제41조와 그 실행규정들은, 동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재산권 침해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6. 제146조는 아래와 같이 명문화된다 :

제 146 조

“독일의 자유와 통합이 이루어진 후 전독일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결된 새 헌법이 효력을 발생 하는 날로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5 조

장래의 헌법개정

조약 체결 당사자는 기본법의 개정이나 보완과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입법기관이 2년내에 독일통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충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 1990년 7월 5일자 양독 총리발표 공동 결의안에 의거한 행정부와 각 주들간의 관계
- 관련주들의 합의에 의하여 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새로운 편성 가능성
- 새로운 국가목표를 기본법에 추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기본법 제146조의 적용과 이에 따른 국민투표의 문제

제 6 조 예외 규정

기본법 제131조는 조약 제3조에 명기된 지역에는 당분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재정 헌법 (*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

- (1) 독일 연방 정부의 재정헌법은 본 조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 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 (2)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징수한 재정수입을 연방행정부와 주 및 지역 자치단체에 할당하는데에는 기본법 제106조가 다음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1.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3항 제4문 및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주 소득세 수입의 지방자치단체의 할당액은 이 지역에 속해있는 주들의 기본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소득세 지불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정해진다.
 3. 1994년 12월 31일까지 기본법 제106조 제7항 적용과는 달리 공동세(Gemeinschaftssteuer) 총수입의 각 주들의 몫과 주세금의 총수입중 최소한 20%, 그리고 제5항 제1호에 따라 “독일통일”기금에서 배당되어진 주들 몫에서 최소한 40%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 (3) 기본법 제107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서독의 현재까지의 모든 주들과 제3조에 언급된 주들사이에 제1항 제4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 독일주들에 대한 재정조정과 결산(기본법 제107조 제2항)은 행해지지 아니한다. 매상세(Umsatzsteuer)에 대한 독일 전체에 걸친 배당액은

동독의 주와 서독의 주에 할당되는데 브란덴 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겐 주들의 인구당 평균 매상세 액은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레멘, 헛센, 함부르크,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츠, 자아르란드 및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들의 인구당 평균적 매상세 액의 1991년도 55%, 1992년도 60%, 1993년도 65%, 1994년도 70% 액수에 해당한다. 베를린주의 몫은 주민수에 따라 미리 계산된다. 이항의 규정은 1993년 당면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4)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들은 동 조약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기본법의 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3항과 제4항 및 금번 발표된 시행규칙의 적용하에 놓인다.
- (5) 통독 성취이후 연간 통독기금의 연간 배당은 다음과 같다 :
1.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작센, 작센 안할트 및 튀링겐 주와 베를린 주 일반재정 소요액에 따라 특별 원조금 85%가 지원되고 주민수를 고려하여 각주에 배당하며(서베를린은 주민수에 관계없이)
 2. 15%는 상기주들의 전체적인 공공임무 수행에 사용된다.
- (6) 근본적인 여건변화시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들에 대한 추가재정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들이 공동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Ⅲ장 법의 동화

제 7 조 연방법의 과도기적 적용

양독 통합과 동시에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는, 특정 주지역에 관한 적용범위 제한이 없거나 동조약상 별도 제한이 없는 한, 특히 부록 I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방 법이 적용된다.

제 9 조 계속 적용 되는 동독법

- (1) 기본법상 권한 배분규정에 따라 주법에 해당하고, 동 조약이 조인시 적용된 동독법령은, 제143조를 제외한 기본법과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발효되는 연방법 및 해당 EC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약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기본법상 권한 배분 규정상 연방법에는 해당되나, 연방 전체에 걸쳐 단일하게 규정된 대상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동독법은 연방 입법부에 의한 입법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 1문의 조건 내에서 주법으로 계속 유효하다.
- (2) 부록 II 에 수록된 동독법령은 동 조약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법과 즉각 적용 가능한 EC법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 (3) 동 조약 조인후 공포된 동독법령은, 양 조약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속 효력을 발한다. 제2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4)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계속 유효한 법률은 그 대상이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을 규정하는 방법들로서 유효하다. 상기 법령이 경합적 입법사항이나 개괄적 입법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상기 법령이 기본법의 여타 적용지역에서 연방법이 정하는 분야에 관한 것일 경우 그 한도내에서 연방법으로 계속 적용된다.

제 10 조 유럽공동체법 (EC법)

- (1) EC에 관한 제조약과 변경사항, 보충사항, 국제합의사항, 국제조약 및 결의사항 들은 동독의 편입과 함께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적용된다.
- (2) EC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은 EC의 해당기구에서 예외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독의 편입과 함께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적용된다. 동 예외규정들은 행정적 요청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한다.
- (3) 각주의 소관으로 집행 또는 시행되는 EC 법령은 주법규정에 따라 집행 또는 시행한다.

제 IV 장 국제 조약 및 협정

제 11 조 서독의 조약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 회원가입을 규정한 조약을 포함한 서독의 국제 조약 및 협정 사항들은 계속 유효하며, 부록 I 에 언급된 예외조약을 제외하고는 그 권리와 의무사항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개별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일 독일정부가 해당 조약 상대자와 협의를 한다.

제 12 조 동독의 조약

- (1) 통독과정이 진행중인 현재 동독의 구 제 조약들은 조약체결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계속 유효, 조정 또는 효력상실여부 등을 결정 또는 확인하기로 한다. 이 작업은 다만 신뢰보호, 관련국들의 이익, 서독측의 조약상 의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자유, 민주, 법치국가적 기본 원칙에 따라, 또한 EC의 권한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2) 통일 독일은 동독측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에 대한 입장을 조약당사자들 및 EC측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 (3)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에 통일 독일이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 독일은 모든 당사국과, EC의 권한이 관련되는 경우 EC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 V 장 공공행정과 사법(司法)

제 13 조 시설의 이양

- (1)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행정기구와 공공행정 및 사법 시설은 그것이 위치해 있는 주정부의 관할이 된다. 일개주를 넘어서 업무활동을 하는 시설은 관련주의 공동관리로 이양된다. 고유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부분시설로 구성되어있는 경우 부분시설은 그 위치한 주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주정부가 각 시설의 업무 폐지 또는 업무 양도를 규정한다. 1990년 7월 22일에 결정된 주시행법(Laendereinführungsgesetz) 제22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2) 가입의 발효시까지 제1항 제1문에 규정한 시설 또는 부분 시설이 기본법상 권한 배분 규정에 따라 연방이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 시설은 최고연방 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이 연방 정부기관이 각 시설의 업무양도 또는 업무 폐지를 규정한다.
- (3) 공공행정이 법적주체가 되는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시설에는 다음 시설을 포함한다.
 1. 문화, 교육, 학술 및 체육기관
 2.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

제 14 조 주의 공동기관

- (1) 기본법상 명시된 개별 관할권에 의거 주정부에서 담당하는 자체 고유업무를 동등 편입효력의 발생시까지 수행했던 시설과 그 산하기관은 규정 확정시까지의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을 통해서 그 주들의 공동시

설로 계속 수행한다. 이는 과도기적인 수행이 주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 (2) 주의 공동시설은 주지사 선출시까지 주정부 전권수임자의 관할이 되며, 주지사 취임 후에는 주지사 산하에 속한다. 이 기관들은 주정부 해당장 관에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주행정을 위한 경과 규정

- (1) 이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각 주들의 주 의회의장과 그 주에 속해 있는 각지역 행정 전권수임자는 지금까지의 담당업무를 편입효력 발생 시로부터 주지사들의 선거시까지 연방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동안 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주의회의장은 주의 전권수임자로서 주행정을 관리하고 주의 각지방 행정 당국과 아울러 위탁된 업무의 경우에는시와 각 구역 그리고 주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도 명령권을 가진다.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에서 주정부 전권 수권자가 임명되면 그들은 편입효력 발생시까지 제1문과 제2문에 언급된 임무와 주의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 (2) 서독의 주정부들과 연방정부는 동독 주행정부 구성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3) 이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정부 지사들의 요청에 따라 서독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최대한 1996년 6월 30일까지 특정자문업무의 수행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다른 주정부 및 연방정부 소속 관리들이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협조를 하면 주지사는 동 전문업무 분야에 대해 자신의 명령권을 부여한다.
- (4) 연방정부측에서 주정부에 대해 전문적 업무수행 지원시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정 수단을 제공하며, 여기 사용된 재정비용에 대해서는 독일 통일기금이나 수입 판매세(Einfuhr-Umsatzsteuer)에 대한 각 주들이 분담해야할 몫으로부터 정산처리한다.

제 16 조

베를린 통합 주정부 구성시까지의 경과 규정

베를린시 통합주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서베를린의 내각(Senat)과 동베를린의 행정위원회(Magistrat)가 통합 베를린 주정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복 권

쌍방은 모든 정치범과 반법치국가적, 위헌적 불법재판의 희생자들이 된 사람들이 복권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동독의 (* SED로 약칭)불법 정부치하에 시달린 이 희생자들은 복권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제 18 조

법원 판결의 효력 지속

- (1) 편입효력 발생 이전에 발표된 동독 재판 결정사항은 제8조에 의거하여 발표된 법률이나 제9조에 의거하여 계속 유효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며 집행될 수 있다. 동 법률에 따른 법원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이 일치하는가를 법치국가적인 원칙에 의거 검토한다. 제17조는 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2) 동독 형사재판소에서 판결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 조약 부록 I 에 따라 법률상 유효한 판결의 파기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권리가 허용된다.

제 19 조

공공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효력 지속

편입효력 발생 이전에 발표된 동독 행정 공문서는 계속 유효하며 그것이 법치국가적 원칙이나 이 조약의 규정들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폐기될 수 있

다. 그밖에 행정행위의 효력존속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 20 조 공무원의 법적 지위

- (1) 동독 편입시 공무원의 법적 관계는 부록 I에 합의된 과도적 규정이 적용된다.
- (2) 기본법 제33조 제4항의 통치권적 권능에 의해 주어진 공공업무는 즉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법은 부록I에 합의된 규정에 준하여 시행된다. 기본법 제92조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3) 군입법은 부록 I에 합의된 규정에 준하여 시행된다.

제 VI 장 공공재산과 채무

제 21 조 행정재산

- (1)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독의 재산 중에서 1989.10.1 현재 기본법에 명시된 행정목적상 주로 각 주·시구역 및 기타 공공 행정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목적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서만, 연방정부 재산이 된다. 전 동독 국가 공안부(Stasi) 업무수행에 사용된 행정 재산은 그것이 위에 언급된 시점('89.10.1)에서 이미 사회적·공공적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탁청에 귀속된다.
- (2) 행정재산이 제1항의 규정상 연방재산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이 행정재산은 동독의 서독 편입과 동시에 기본법에 따라 해당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속한다.
- (3) 공법상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및 각 시구역에 무상으

로 사용토록 맡겨진 재산은 해당 법인이나 그의 권리계승자에게 되돌려진다. 이전 제국재산은 연방재산이 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혹은 연방법에 따라 행정재산이 연방재산이 될 경우 이 재산은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이 원칙은 재산 매각으로 생긴 수익금의 사용에도 적용된다.

제 22 조 재정재산

- (1) 특정 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치 않아 토지 및 임야재산,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속한 법인들의 공공재산은 사회보험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신탁청에 양도되지 않거나 혹은 신탁법 제1조 제1항 제2절 및 제3절에 의거 법률로서 위임되지 않는 한 동시에 연방정부의 신탁관리하에 둔다. 재정재산이 전 국가보안부(Stasi) 임무수행에 주로 사용된 경우, 그것은 신탁청에 귀속된다. 재정재산이 1989년 10월1일 이후 사회복지적·공공적 목적에 사용된 경우는 신탁청에 귀속치 아니한다. 연방법에 의하여 재정 재산이 연방정부와 이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들이 각각 총재산의 1/2을 보유한다. 각 시구역은 각 주에게 분배된 몫의 적절한 몫을 배분받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배당받는 재산은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들에서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전체주들에 배당된 재산의 각 주로의 분배는 편입발효와 동시에 서 베를린을 제외하고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실시된다. 이 조약 제21조 제3항은 준용된다.
- (2) 연방 재무장관이 연방 재산관리청을 통해 관리의 인수를 규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기존 관리청이 재정재산을 관리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지역법인체들은 각 지역의 법인 상호간의 재산의 법적·실질적 관계가 해명되지 않거나 분쟁중인 재산평가에 관한 기록을 담고있는 토지등기부, 토지 대장 및 기타 진행과정의 기록에 관한 열람과 이에 대한 정보입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23 조

채무규정

- (1) 편입 발효시까지 누적된 동독 재정의 총부채는 권리능력 없는 연방의특별재산 가치로 인수된다. 그 특별재산은 부채상환 의무를 수행한다. 이 특별재산은 다음의 경우에 신용대부권을 부여받는다 :
1. 특별재산의 채무상환
 2.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및 차입비용의 변제
 3. 시장육성을 위한 특별재산의 채무명의 구입
- (2) 본 특별재산은 연방재무장관이 관할한다. 특별재산은 문제발생시 재무 장관 명의로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특별재산의 보통재판 적은 연방정부 소재지에 위치한다. 연방은 특별재산의 부채에 책임을 진다.
- (3) 편입 발효시로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재산에 의해 지출된 이 자는 연방정부와 신탁청이 각각 그 액수의 절반을 담당한다. 상기 특별 재산 지출 이자금은 그 지불이행 월말까지 연방과 신탁청에 의해 상환 된다.
- (4) 서독과 동독간의 화폐·경제·사회 통합실시에 관한 1990.5.18자 조약 제27조 제3항에 의거, 연방과 이 조약 제1조에 명기된 주들 및 신탁청 이 1993.12.31까지 누적된 특별재산 관련(또는 지출) 총 부채를 1994. 1.1부로 공식 인수한다. 부채의 개별 할당액은 1990.5.18자 체결조약에 의한 1990.7.25.자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 조약 제1조에 명기된 주들의 개별 부담액은 편입 발효시까지 각 주 인구수 에 따라 계산되며, 서베를린의 인구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5) 특별재산은 1993년 말로 소멸된다.
- (6) 편입시까지 동독 국가재정 형태로 부담한 제반 상환의무와 보증 및 채 무담보는 편입 발효와 동시에 독일 연방공화국에 의해 인수된다. 이 조 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들과 베를린주 중 지금까지 기본법의 적용 을 받지 아니하였던 일부(과거의 동베를린 지역)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인수한 이 제반 상환액과 채무담보 절반을 재인수한다. 결손액은 편입 발효시까지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각 주에도 할당되며, 서베를린의 인구 수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 (7) 베를린 국립은행에 대한 동독의 참여지분은 이 조약 제1조에 명기된 주에 양도 될 수 있다. 베를린 국립은행에 대한 동독의 지분권은 위제1 문과 제3문에 따른 양도시까지 연방에 귀속된다. 조약 당사자들은, 독점법 심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베를린 국립은행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독일 연방공화국내 공법 신용기관으로나 또는 여타 법인체로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한다. 채권과 채무들이 전부 파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베를린 국립은행의 이 잔류부분은 청산 될 수 있다. 베를린 국립은행에 대한 동독의 보증에 따른 책임은 연방이 인수한다. 이는 제1문 내지 제3문에 따른 지분 양도후에 발생하는 재무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문은 베를린 국립은행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에도 적용된다. 연방이 보증의무에 따라 책임을 질 경우, 이 부담은 연방정부 재정의 총부채로 통합하며, 편입 발효시부터는 제1항에 명시된 권리능력 없는 특별재산에 인수된다.

제 24 조

독일 연방공화국과 타국에 대한 채무 및 채권의 청산

- (1) 대외무역 및 외환 독점 분야에서 발생했거나 1990년 7월 1일까지 서독과 타국에 대한 동독의 여타 국가업무 수행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편입 발효시 까지 유효할 경우 연방 재무장관의 지시와 감독하에 청산된다. 편입 발효후 독일 연방공화국 채무상환 협정에는 제1문에 명기한 채권도 포함된다. 해당 채권은 그 가치가 평가 되어지는 한 연방 재무장관에 의해 신탁 관리되거나 연방으로 양도된다.
- (2)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자산은 필수 관리비용과 수지차이로 야기된 이자비용 및 청산시 자체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담, 기타 손실내 용 일체를 1993.11.30 까지 청산위탁 기관으로 부터 인수한다. 상기지출,

비용 및 손실은 1993년 11월 30일 이후 연방과 신탁청이 절반씩 분담한다. 세부사항은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 (3) 동독 또는 그 국가 기관의 상호 경제원조 이사회(RGW)회원 자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독일 연방공화국이 가하는 별도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1990년 7월 30일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제 25 조

신탁재산

1990.6.17. 제정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에 관한(관보 I 33번, 300면)법률-신탁법-은 편입 발효와 동시에 다음 기준에 따라 계속 효력을 발한다 :

- (1) 신탁청(Treuhandanstalt)은 신탁법 규정에 따라 경쟁력을 갖도록 과거 국가소유 기업을 재조직하고 사유화 할 임무를 부여 받는다. 신탁청은 연방 직속공법기관이 된다. 이의 실무 및 법적 감독은 연방 재무장관에게 귀속된다. 재무장관은 실무감독시 연방 경제장관 및 관련부처장관들과 협의를 한다. 신탁청의 자본출자에 연방은 간접적으로 참가한다. 정관개정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2) 신탁청 이사회 임원은 16명에서 20명으로, 제1회 이사회 발족시에는 23명으로 증원된다. 동독 인민 의회에서 선발되는 2인의 대표자 대신 이 조약 제1조에 명기된 주들이 신탁청 이사회 의석을 각기 1석씩 할당 받는다. 신탁법 제4조 제2항과는 달리, 신탁청 이사회장과 이사들은 연방정부로 부터 임명된다.
- (3) 조약 당사자는 국유재산을 예산담당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조약 제3조에 명기된 지역내 조치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합의한다. 이는 1990년 5월18일자 조약의 제26조제4항,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탁청의 수익금에도 공히 적용된다. 농업 구조적응(Strukturanpassung)을 위해서 신탁청 수익금은 특수한 경우 농산업체의 부채상환 조치로 사용

될 수도 있다. 사전에 이들 업체 소유재산은 채무변제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동업체로부터 독립된 사업부분의 부채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청산을 위한 지원은 또한, 해당업체가 차후 경제력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부분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행해질 수 있다.

- (4) 1990년 5월 18일자 조약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청에 부여된 신용 대부 창설 한도액은 170억 마르크에서 250억 마르크로 인상된다. 상기 채무는 원칙적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연방재무 장관은 상환기간 연장과 기본조건 변동시 부채 상한선 초과를 허가할 수 있다.
- (5) 신탁청은 연방 재무장관과의 합의하에 상환의무 대부와 지불보증 및 기타 담보 설정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 (6) 1990년 5월 18일자 조약 제10조 제6항의 지침에 따라, 2:1화폐교환 시 한도규정으로 인해 교환되지 못한 저축금에 대하여 차후 재산에 대한 지분증권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 (7) 1990년 6월 30일 이전에 설정된 부채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지불은 서독 마르크화의 개시대차대조표가 제출될 때까지 중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신탁청이 독일 신용은행과 여타 은행들에 지불할 수 있다.

제 26 조

특별재산 독일 제국철도

- (1) 1990.5.18. 조약 제26조 제2항의 규정상 특별재산 독일제국 철도에 속하는 제반동독소유 재산 및 서베를린내 동독 재산들은 발효와 동시에 특별재산 독일제국철도로서 서독 재산이 된다. 이에 1945년 5월8일 이후 특별재산 독일제국철도 자본으로 획득되었거나 혹은 국영철도의 영업에서 사용되거나 그 전임기관의 영업에 사용되었던 재산권도 이에 속한다. 이때 이 재산권이 차후 독일제국철도의 동의하에 다른 목적에 쓰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권이 어떤 법인을 위해 취득되었던 것

인가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1991.1.31.까지 독일제국철도로 부터 1990년 7월 11일(관보 I, 제44호, 718면)재산권 청구신청 규정 제1조 제4항에 상응하여 명시된 재산권은 동독 국영철도의 동의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졌던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 상기 재산권 외에도 이와 관련된 제반 채무 및 채권 역시 특별재산으로 독일제국철도로 이양된다.
- (3) 서독 연방 철도청 이사장과 독일제국철도청 이사장이 두 특별자산의 통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이들의 임무는 쌍방 철도의 기술적·조직적 결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7 조

특별재산 동독 체신

- (1) 특별재산 동독 체신에 속하는 소유권과 기타 모든 재산권은 서독의 재산이 된다. 이는 연방 체신청의 특별재산과 통합된다. 상기 재산권 외에도 이와 관련되는 채무와 채권은 특별재산 “연방 체신청”으로 이양된다. 통치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재산은, 이와 관련된 채무와 채권과 더불어 특별재산 연방 체신청의 일부분이 되지 아니한다. 1945년 5월 8일 독일제국 체신에 속했거나 혹은 1945년 5월 8일 이후 이전의 독일제국 체신의 자본에 의해 획득되어진 것이거나 또는 동독체신의 영업에 사용되어진 재산권은 전부, 차후 동독체신의 동의하에 다른 목적에 쓰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법인을 위해 취득되었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특별재산 동독 체신에 귀속된다. 1990년 1월 31일까지 동독 체신에 의해 1990년 7월 11일의 재산권 청구신청규정 제1조 제4항에 상응하는 적용에 따라 언급되는 재산권은 동독 체신의 동의하에 다른 목적에 사용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서독 체신부장관은 연방 체신청 기업들의 의견을 청문회를 통해 청취하여 그 3개 기업의 분할 특별재산으로서 특별재산 동독 체신 분배를 규정한다. 서독 체신부장관은 연방 체신청 3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3년내의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어떤 재산이 통치권적,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확정짓는다. 장관은 이를 자산가치 평가액의 조정없이 인수한다.

제 28 조

경제 촉진

- (1) 편입 효력발생과 더불어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은 유럽공동체(EC)의 관할사항을 고려하여 서독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촉진 조치를 위한 연방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관련기간내에 특별히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중산층에 대한 각별한 고려하에 균형있는 경제구조로의 가능한 한 조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해당 관할 부처(Zuständiges Ressort)는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성장과 구조변경의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 바, 그 프로그램은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주에 유리하도록 특별 계획을 수반한 지역적 경제 발전조치로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 우대의 보장
 - 경제성이 높은 사회 간접자본시설(Wirtschaftnahe Infrastruktur)에 최대한의 역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전제조건 개선에 위한 조치
 - 중산층의 조속 발전을 위한 조치
 - 산업의 자기 책임하에 형성된 재구조 조정개념(예를 들어 기업건설화 프로그램, Comecon 국가를 위한 수출생산)에 입각한 경제의 현대화와 새로운 구조창출을 위한 조치들
 - 개별적인 검토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

제 29 조

대외경제관계

- (1) 동독의 기존 대외 경제관계중 특히 상호 경제원조 이사회 국가에 대한 기존 조약상의 의무는 신뢰보호를 받는다. 이 대외경제 관계는 모든 참가국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리고 시장경제적 원칙 및 EC의 관할권을 존중하여 계속 발전, 형성되어갈 것이다. 통일독일정부는 전문적 관할권의 범위내에서 이 대외 경제관계가 조직적으로 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 서독 연방정부 및 통독정부는 유럽공동체의 해당기구들과 제1항에 준하여 과도기간내 대외무역에 있어 어떠한 예외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합의한다.

제 VII 장

노동, 사회보장, 가족, 여성, 보건, 환경보호

제 30 조

노동과 사회보장

- (1) 통독후 입법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1. 노동 계약법, 일요일·공휴일의 노동허가를 포함한 공법상의 근로시간법 및 여성근로자 보호 특별법 등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통일화시켜 새로 편찬하는 작업
 2. 공법상의 근로보호를 위해 유럽공동체법과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동독 근로보호법을 일치시켜 현시점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
- (2)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근로자들은 만57세가 되면 첫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3년간의 노령경과연금 (Altersuebergangsgeld)을 법적 연금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경과연금액은은 최종 실수령 평균 월급의 65% 금액이다. 연금 신청기간이 단지 1991. 4. 1일 까지만 유효한 노동자들의 노령경과연금액은 처음 312일 동안에 한하여 5% 인상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연방노동청은 실업수당규정 및 고용촉진법 제105C조에 의거하여 노령경과연금을 지불한다. 연

방노동청은 노령경과연금 신청자가 지금까지 일한곳에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연금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노령경과연금 규정에 따라 신규 신청의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여성 근로자들은 만 55세 이후부터 최대한 5년 동안 노령경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3) 이 조약 제3조에 명기된 지역에서 1990년 5월 18일 체결한 조약과 관련하여 연금·사고·실업 보험금 지급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 지원금은 신규가입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다. 동 지원금은 최대한 1995년 6월 30일까지 지급된다.
- (4) 사회보험 임무를 각 보험단체에 분담하면 각 단체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동 임무를 개별적으로 수행한다. 각 사회보험단체에 대한 재산분배(차변 및 대변)는 법률로 최종 확정한다.
- (5) 사회법전 제6권(연금보험)과 제국보험 규정집 제3권(사고보험)의 적용 세부내용은 연방법규 내에서 규정된다. 연금보험법상 1992년 1월1일부터 1995년 6월 30일 사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
 1. 원칙적으로 최소한 1990년 6월 30일 현재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주들에 유효했던 연금법에 따라 추가금제도나 특별 부양제도에 상관없이 지급됐던 액수만큼 연금이 지급되며,
 2. 1990년 6월 30일 현재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들에 적용됐던 연금법에 따라 연금 신청자격이 있으면 동 연금은 지급이 허가된다.
 기타 이러한 경과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제3조에 언급된 주들의 임금, 봉급, 연금등이 독일내 다른 주들과 균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 (6) 직업병에 관한 법령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현재까지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적용되었던 규칙들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 31 조

가족과 여성

- (1) 통일독일 입법기관은 남녀권리 평등화를 위한 입법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는 임무를 지닌다.
- (2) 법적·제도적으로 부모의 취업활동상 출발조건이 서로 상이한 상황에서 가정과 직업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적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통일독일 입법기관의 임무이다.
- (3)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들이 탁아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1991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기간에 시설의 운영비를 분담한다.
- (4) 통일독일입법기관은 늦어도 1992.12.31까지 기존의 양독지역의 경우보다는 타인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보장하고 임신부가 직면하는 양독의 헌법상의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입법의 의무를 진다. 특히 우선적으로 상담하고 사회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에 연방재정원조를 받아 다양한 기관이 운영되고 광범한 범위를 상담할 수 있는 시설망을 지체 없이 설치한다. 이 상담소는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출산 후에도 임신부에게 상담과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케 한다. 상기 제1문의 기간내에 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기존 실정법을 계속 적용한다.

제 32 조

자율사회 단체

자율 후생사업 단체들과 자율 청소년 후원기구들은 시설과 봉사활동을 통해 기본법상의 사회 복지국가주의 정신구현에 필수적 기여를 한다.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들에서의 자율 후생 사업단체들과 자율 청소년 후원기구들의 설립과 확대는 기본법상 권한의 범위내에서 장려·지원된다.

제 33 조

보 건

- (1)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들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제반 의료 수준이 신속하고 꾸준히 개선되도록 하며, 서독 기타 주들의 상황과 비슷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임무이다.
- (2) 편입되는 동독주들에서의 의료보험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보험수가 지불시 발생하는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독후 입법기관은 한시적인규정을 제정하여, 편입되는 동독지역과 현재의 서독지역에서의 의료보험가입 의무자간의 수입 차액과 상승하는 제조자 공급가격 부분은의약품가격규정에 의거 인하시킨다.

제 34 조

환경보호

- (1) 1990년 5월 18일 조약과 1990년 6월 29일 제정된 동독 환경관계법(동독관보 제42호 649면)에 의거 달성된 독일 환경통합에 입각하여 예방의 원칙, 원인야기 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인간의 자연적 삶의 원칙을 보호하고 생태학적 생활여건을 최소한 서독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입법기관의 임무이다.
- (2)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내에서 제1항의 목표들을 신속히 달성시키기 위해 환경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이 기본법의 권한 규정 범위내에서 수립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험방지 대책이 최우선적으로세워져야 한다.
- (3) 문화적 임무수행과 자금조달문제는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법상의 권한 배분에 따라 새로운 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의 보호와 진흥의 의무가 부여된다.
- (4) 지금까지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던 문화시설과 기관은 그것이 위치한 주나 지방자치단체(Kommunen)의 담당기관에 이양된다. 연방정부를

통한 부분적 재정조달은 예외적인 경우, 특히 베를린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 (5) 전후 사건들로 인하여 분산소장된 프로이센 정부의 소장품들(현재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기밀 국가문서고, Ibero-Amerika 연구소, 국립음악연구소 등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은 베를린으로 다시 집중 소장된다. 프로이센 문화재단이 과도기 담당기관이 된다. 장래 국립 프로이센 소장품 관리규정 제정을 위해서 총체적인 담당기관이 베를린에 설치된다.
- (6) 문화기금은 문화, 예술 그리고 예술인 장려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계속 적용된다. 연방정부를 통한 부분적 자금조달은 기본법에 의한 권한배분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후속 기관에 대해서는 이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의 편입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들의 문화재단과 별도 협의를 한다.
- (7) 분단의 결과로 발생한 동서독간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하여 연방은 과도적으로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내에서의 문화적 사회시설 진흥을 위한 개별적 문화조치와 기관들의 재정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36 조

방 송

- (1) 동독의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은 이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과 아직 기본법 적용을 받지않았던 동베를린주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공공법인체가 되며, 주관할 업무로 규정된 임무를 최대한 1991년 12월 31일까지 계속수행한다. 동 기관은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기본원칙에 준하여 라디오와 TV 방송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동독 체신청에 속해있던 방송기술, 라디오·TV 방송제작과 관리를 위한 시설은 동 기관에 속하게 된다. 제21조는 이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2) 동 시설의 조직들은 다음과 같다 :

1. 방송 수입자
2. 방송 자문위원회

- (3) 방송 수입자는 동독 총리의 추천에 의해 동독 인민 의회에서 선출되지 못할경우 이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의 주의회 의장과 베를린 시장의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방송 수입자는 기관을 지휘하며 동 기관을 대표한다. 그는 동 기관을 업무 수행의 위해 법률적, 비법률적인 책임을 지며 즉시 1991년도 가용 한도내에서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 (4) 방송 자문위원회는 사회 주요 단체의 대표자들 가운데 18명의 사회저명 인사들로 구성된다. 그 중 3명의 위원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의 주의회와 베를린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방송자문위원회는 모든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자문권을 가지며 주요 인사, 경영 그리고 재정 문제에 대한 결정에 참여권을 갖는다. 방송 자문위원회는 동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새로운 방송위임자를 면직시킬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동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해 새로운 방송수입자를 선출할 수 있다.
- (5) 동 기관의 재정은 우선적으로 이 조약 제3조에 언급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로부터 수납된 시청료 수입으로 충당된다. 동 기관은 시청료의 수납기관이 된다. 그외에는 광고 수입이나 기타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한다.
- (6) 제1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동 기관은 방송의 연방국가적 성격에 따라 이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들의 공동국가조약에 의해 해체되거나 개별 또는 다수의 주들로 구성된 공공기관에 이양된다. 1991년 12월 31일까지 위에서 언급된 공동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동 기관은 이 기관의 종료와 함께 해체된다. 해체시 현존하는 차변자산과 대변자산은 이 조약 제1조 및 제3조에 언급된 지역내에서 1991년 6월 30일 현재 징수되어지는 시청료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내의 방송 존속을 위한 주들의 의무는 변함없이 유효하다.

- (7) 국가조약 효력발생과 함께 제6항에 의거하여 늦어도 199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37 조

교 육

- (1) 동독내에서 취득 하거나 또는 국가가 공인한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대학졸업 자격 또는 자격증은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내에서 계속 유효하다. 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또는 서베를린을 포함한 서독의 다른 주들내에서 시행된 시험이나 자격증들은 동등하게 취급되며, 가치가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동등가치 인정은 신청에 의해 해당 관청의 확인으로 결정된다. 시험 또는 자격증 동등인정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률적인 규정 및 조약내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가로부터 취득하였거나 국가가 공인하는 또는 수여받은 대학 직업 명칭과 등급 및 학위의 사용권리는 유효하다.
- (2) 교사자격시험에는 문교장관 회의(kMK)에서 인정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문교장관 회의는 이에 상응하는 과도규정을 제정한다.
- (3)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조직, 전문근로자직업조직,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직업으로 인정된 직업자격증 시험과 장인자격 시험의 시험성적 증명서는 동등한것으로 본다.
- (4)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학제 변경에 요청되는 규정들은 이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들에 의해 결정된다. 학위 인정을 위한 필요규정들은 문교장관 회의에서 합의한다. 상기 두 경우는 함부르그 협정과 문교장관 회의에서 추가 합의사항을 그 기초로 한다.
- (5) 졸업 이전에 정확하는 학생들은 졸업시험 규정에 관한 일반규정 (ABD) 제7조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고시 허가적용 규정에 의해 그때까지의 학점 및 평가 기록을 인정받는다.
- (6) 동독의 기술 및 전문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자격은 1990년 5월 10일 문교장관회의 결정과 그 부록 B에 의해 인정된다. 학교 및 대학졸업후

의 상급직업 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졸업, 대학졸업의 인정과 관계된 기타 원칙과 절차는 문교장관 회의에 의해 마련된다.

제 38 조 학술 및 연구

- (1) 통일 독일에서 학문과 연구는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능력있는 기관을 보존한다는 방침하에 학문과 연구의 필수적 개혁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학술심의회에 의한 전문보고서가 중요하다. 이 작업은 1991.12.31까지 종결될 것이며, 종결 이전에 단계적으로 시행된 개별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다. 후속규정은 이 보고서의 준비를 가능케 하며,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학문과 연구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공동연구 체제로 전환됨을 보장한다.
- (2) 편입 발효와 동시에 동독의 고학아카데미는 학회로서 연구단체나 기타 기관으로 부터 구분된다.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학회가 어떤 형식으로 존속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주법으로 결정한다. 연구단체와 기타 기관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들의 기관으로서 폐지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1991년도에 연방정부와 이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들로부터 마련된다.
- (3) 연구협회와 기타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기관 고용원들의 노사관계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각 기관을 이양받는 주정부와 시한부 고용관계로서 지속된다. 본 조약 부록 I 에 기록된 법률요건에 의해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노사관계를 해약시킬 수 있는 권리는 불변한다.
- (4) 동독의 건축아카데미와 동독 농업아카데미 및 식량·토지·삼림부 소속 기관은 제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이 적용된다.
- (5)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교섭을 할 때, 기본법 제91조에 의거하여 교육계획 및 기관의 장려조치, 학문연구 추진이 지역성을 탈피하여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까지 확대되도록 연방과 주정부간의 협상을 조정

하고 체결한다.

- (6) 연방정부는 서독 연구기관에 의해 확정된 연구방법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신속히 전 연방에 적용되도록, 그리고 제3조에 명시된 지역내 학자들과 학문기관이 현행 연구장려 조치를 받도록 노력한다. 연구와 개발장려 조치는 서독내에서 그 시행기간이 종료되었을 지라도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을 위하여 재개되어야 한다. 과세조치는 여기서 제외된다.
- (7) 편입 발효와 동시에 동독의 연구심의회는 해체된다.

제 39 조

체 육

- (1)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내에서의 제반 체육기구는 자치체제(Selbstverwaltung)로 개편된다. 공공기관들은 기본법에 의한 배분에 따라 체육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육성한다.
- (2) 이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내에서의 우수경기 종목은 장래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육성된다. 이를 위한 제3조에 언급된 지역내 공공기관의 재정대책은 기존 연방 독일의 법령과 기본원칙들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라이프치히 소재 신체단련 및 체육 연구기관(FKS), 크라이슈(드레스덴시 근교)소재 국제 올림픽위원회 인정 약물 복용 감독기관과 동베를린 소재 체육용구연구및 개발부서는 -각기 적정 법률형식을 갖추어- 필요 규모내에서 동독 단일기구로 지속 운영되거나 기존 기구들과 통합된다.
- (3)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장애인 체육은 연방의 지원을 받는다.

제 IX 장

제 40 조

조약과 협정

- (1)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간의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이 담고 있는 의무조항들은, 이들이 본조약과 상이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이점에 관한 협정사항들이 통독 과정중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경우 계속 유효하다.
- (2) 독일 연방공화국 혹은 연방주들과 독일 민주공화국간에 체결된 기타제반 조약과 협정이 명시하는 권리와 의무사항은 통독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양국 통합 법률기관에 의해 인수되거나, 적응대책이 마련되거나 직접 해결된다.

제 41 조

재산문제에 대한 규정

- (1) 1990년 6월 15일 양독정부 공동성명서 내용이 재산문제 공개규정(부록 Ⅲ)에 대한 본 조약의 토대가 된다.
- (2) 특정토지나 건물에 긴급한 구체적인 목적이 존재하고, 특히 기업체의 설정에 기여한 이러한 투자결정의 시행이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특히 노동력을 확보하고 창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별법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내역 요지를 명시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의 실제 이행은 반드시 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 과거 소유자의 보상 문제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3) 독일 연방공화국은 제1항에 제기한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여타 법규를 제정할 수 없다.

제 42 조

의원 파견

- (1) 동독의 편입전까지 동독인민의회는 제11대 독일 연방의회로 보낼 144

인의 의원과 충분한 후보의원을 선출한다. 관련 제안은 동독의회 소속 정당과 단체들에 의해 행해진다.

- (2) 선출된 의원은 동독인민의회 의장에게 수락선서를 하여 제11대 연방의회의 의원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편입의 발효와 더불어 비로소 유효하다. 동독의회 의장은 선출결과를 수락선언문을 동봉하여 즉각 연방의회 의장에게 전달한다.
- (3) 제11대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과 이의 상실은 1975년 9월 1일 공포되고, 1990년 8월 29일에 최종 개정된 연방 선거법(연방관보제 II 부 1990 813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한 의원이 탈락될 경우, 이 의석은 최우선 후보의원에 의해 채워진다. 이 후보는 탈락된 자가 파견의원으로 선출될 때 정당 출신이어야 한다. 편입 완료 전까지의 보충후보자 선정은 동독인민의회 의장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된 다음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제 43 조

주정부 구성시까지의 연방상원위원회 관련 임시규정

본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들의 구성에서 주 수상(Ministerpraesident)선출시까지의 주 전권대표가 연방상원위원회에 참석한다.

제 44 조

법률보전 (Rechtswahrung)

독일 민주공화국 혹은 제1조에 언급된 주들을 위하여 본 조약이 명시하는 법률은 편입 완료후 이들 각주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

제 45 조

조약발효

- (1) 본 조약은 첨부 의정서(Protokoll)와 3개의 부록을 포함하여, 발효에 따른 양국간 필수 전제 사항들이 성취되었다고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가 상호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
- (2) 본 조약은 편입 완료후 연방법규에 해당되는 법률로(als Bundesrecht geltendes Recht) 존속한다.

1990년 8월 31일 베를린에서 2부의 독일어 원문으로 체결됨.

독일연방공화국을 대리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을 대리하여
Dr. Wolfgang Schaeuble Dr. Guenther Krause

빈 면

의 정 서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간의 통일 독일에 대한 조약 서명시 본 조약과 관련되어 다음의 사항들이 확정되었다 :

I. 조약의 각 조항(Artikel)과 부록(Anlage)에 대하여

1. 제1조에 대해 :

(1) 베를린 주의 경계는 1920년 4월 17일(기본법 1290조, 123면) 제정된 법에 다음 기준으로 결정된다 :

— “서베를린 정부와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는 영토교환에 의한 위요지(Enklaven) 문제해결에 관한 1971년 12월 20일자 협정속에 여타 위요지와 다른 소지역들을 포함시키기로 협정”하였는 바, 이 협정의 제1조에 대한 의정서 비고사항(Protokollvermerk)은 전 지역에 확대 적용되며, 베를린과 브란덴 브르크 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효력을 발한다.

— 1949년 10월 7일 이후 베를린 시의회(Abgeordnetenhaus)또는 시민의원 총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선거가 실시되었던 구역은 모두 베를린에 포함된다.

(2)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계문제를 1년내로 확인하여 모두 베를린에 포함된다.

2.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연방 입법기관의 제2문에 따른 결정들을 제1대 통독 연방의회 선거와 더불어 언급된 주들이 완전한 참여권(volle Mitwirkungsrechte)을 취득한 후로 유보키로 합의한다.

3.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1990년 10월 3일을 법정 휴일로 정함에 있어 조

약의 발효전에 취소될 수 없도록 확정된 업무활동들도 이에 모두 포함하기로 합의한다.

4. 제4조 제5항에 대하여 :

제143조 제1항과 제2항은 시간적 의미만을 갖는다. 따라서 이는 장래의 입법과정시 참작되지 않는다.

5. 제9조 제5항에 대하여 :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서베를린에 적용되고 있는 종교세법(Kirchensteuerrecht)이 1991년 1월 1일부로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지역에도 확대 적용된다는 베를린 주의 성명을 확인한다.

6. 제13조에 대하여 :

편입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더 이상 공공 행정기관에 의해 업무할당을 받지 못하는 기구나 부속기구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공공업무와 실무관계(Sachzusammenhang)를 맺고 있는 기구와 부속기구는 그 공공업무 담당 행정기관(연방, 주, 주연합체)에 의해 정리된다.

(2)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구와 부속기구는 연방에 의해 정리된다. 불확실한 사례에 대해서 해당주나 연방은 정리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 :

기구의 전체 또는 부분이 연방으로 흡수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이전된 업무의 질과 양을 참작하여 적절한 인원이 인수된다.

8. 제15조에 대하여 :

주 행정기관의 구성과 특수 전문업무의 수행시 소요되는 연방 및 주의 행정정보조비는, 이들이 구성하는 회계부서(Clearingsstelle)에 의해 책정된다.

9. 제16조에 대하여 :

조약 당사자들은 1990년 10월 3일 부로 베를린 시장을 연방상원 의원으로 임명되며, 동베를린 행정위원회(Magistrat)의원과 기타 베를린 주

정부의 임원들은 연방상원 대표부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베를린 주의 통보를 확인한다.

10. 제17조에 대하여 :

이 규정은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수용된, 제17조의 의미에 따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된다.

11.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

부록 I 에서의 협정 방침에 따른 공무원법 도입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공무원 채용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하여 필수 고정직책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12. 제21조 제1항 제1문에 대하여 :

군사용 토지에 대한 그 밖의 다른 권리 주장들은 해당 주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연방재산이 되는 종전의 군사용 토지가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사전에 해당 주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13. 제22조 제4항에 대하여 :

주택조합(Wohnungsgenossenschaft)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국유 토지 역시 제4항에 귀속되며, 이 토지는 목적변경 없이 차후 주택조합의 소유로 이전되어야 한다.

14. 제35조에 대하여 :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은 본 조약의 제35조와 관련하여 다음이 사항들을 공포한다.

- ① 서 슬라브 민족과 문화에 대한 소속의지 표명은 자유이다.
- ② 서 슬라브 문화와 전통의 보존 및 발전은 보장된다.
- ③ 서 슬라브 민족의 일원과 조직들은 공공 생활에서 서 슬라브어를 배양하고 보존 할 권리를 누린다.
- ④ 기본법에 따른 연방과 주 간의 관할권분할(Zuständigkeitserteilung)은 변경되지 않는다.

15. 제38조에 대하여 :

독일 민주공화국의 일반학술 아카데미, 건축 아카데미, 농업 아카데미가 다른 국가들의 기관이나 국제부서와 맺은 협정들은 본 조약 제12

조에 수록된 원칙에 의해 검토된다.

16. 제40조에 대하여 :

제3조에 언급된 주의 독일인의 의료비용 인수는 연방정부의 승인하에 연방정부에 의해 해결된다.

17. 부록 II 제II장 업무영역 A 제III절에 대하여 :

제 정당은 선거준비 및 선거 기간동안 기회균등의 권리를 누린다. 회비, 기부금 또는 국가로부터의 선거비용 배상외에 다른 방법으로 입수된 금전 또는 금전가치가 있는 재산, 특히 예전의 제휴정당(Blockpartei) 소지재산 및 동독 PDS의 재산은 선거준비와 선거전에 사용될 수 없다. 정당들의 재정책임자(Schatzmeister)는 이 사항의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금사용의 포기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12월 1일까지 확인토록 한다. 선거실시 전 예전의 동독 제휴정당과 연합하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당들은 연합일에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해 보고를 해야 하는바, 이는 1990년 11월 1일 까지 정당법 제24조 제4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각 결산 및 개시 대차 대조표 형식으로 제출된다.

18. 부록 III에 대하여 :

조약 체결당사자들은 위 제6번 제2문 및 제3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들이 공동성명 제7번(*부록 III의)에 따른 전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다.

II. 조약을 위한 의정서 성명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위 조약의 체결·확정으로 조약 체결이 존속하는 베를린과 전독일에 관한 4대 강국의 권리와 책임 및 독일통일 달성의 외국 측면에 관한 협상의 미결 사항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조약 제8조와 제11조에 따른 연방법 적용에 관한 특별 경과 규정
부 록 I

목 차

A. 서 문

B. 내 용

| | |
|-------------------------------------|-----|
| 제 I 장 연방외무장관 업무영역..... | 47 |
| 제 II 장 연방내무장관 업무영역..... | 49 |
| 제 III 장 연방법무장관 업무영역..... | 68 |
| 제 IV 장 연방재무장관 업무영역..... | 152 |
| 제 V 장 연방경제장관 업무영역..... | 216 |
| 제 VI 장 연방식량 농업 임림장관 업무영역..... | 242 |
| 제 VII 장 연방내독장관 업무영역..... | 259 |
| 제 VIII 장 연방노동 사회보장장관 업무영역 | 260 |
| 제 IX 장 연방국방장관 업무영역..... | 355 |
| 제 X 장 연방청소년 가정 여성 및 보건장관 업무영역..... | 355 |
| 제 XI 장 연방교통장관 업무영역..... | 400 |
| 제 XII 장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정장관 업무영역..... | 428 |
| 제 XIII 장 연방체신장관 업무영역..... | 438 |
| 제 XIV 장 연방공간질서 건축 시가조성장관 업무영역..... | 441 |
| 제 XV 장 연방과학 기술장관 업무영역 | 453 |
| 제 XVI 장 연방교육 학술장관 업무영역 | 454 |
| 제 XVII 장 연방경제협력 장관 업무영역 | 466 |

C. 특별부문

| | |
|------------------------------|-----|
| 제 XVIII 장 통 계 | 466 |
| 제 XIX 장 공무원관계 인사법과 군인법 | 468 |

빈 면

조약 제 8조와 제11조에 따른 연방법적용에 관한 특별 경과 규정

서 문

통일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이 효력을 발생하면 각 장 제1절에 명시된 법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1장 제 1절에 표기된 국제법조약에 대해서는 통일 조약 제11조가 적용된다.

각 장 제iii절에 제시된 법규정은 폐지, 개정 또는 보충된다.

각 장 제iii절에 법규정은 거기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조약(*이하 모두 통일조약임)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과도기 연방법 내에서 독일연방의 다른 법규들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규들은 효력을 갖는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 법규 대신에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법규가 대치되는 경우 이는 명문화해야 한다.

제 I 장 연방 외무 장관 업무영역

제 i 절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조약 11조에 의거하여 다음 내용은 제외된다 :

1. 1954년 10.23.에 개정된 점령 정부의 종식에 대한 의정서(BUBI, 1955. II. P.305) 목록 I에 의하여 1952. 5.26에 체결된 서독과 세강대국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약.
2. 1954.10.23.에 개정된 점령정부의 종식에 대한 의정서(GBBI, 1955. II. P. 405)목록 IV에 의하여 1952. 5.26에 제정된 전쟁과 점령으로 인한 문제의 규정을 위한 조약.
3. 1954.10.23에 제정된 서독주둔 외국군대에 대한 조약을 포함하여 이에 따른 1955. 3.24.에 제정된 조약법(BGBl, 1955. II. P.253)

4. 독일-프랑스간의 정부협정-독일에서 프랑스군대의 주둔권과 지위의 문제-1966.12.21.의 문서교환의 본문(1966.12.23. 판보 제161호, 1304쪽).
5. 1951. 6.19.에 제정된 NATO 군의 지위 및 1961. 8.11.에 제정된 이에 따른 조약법(BGBI. 1961. II. P.1183, 1190)
6. NATO군의 지위에 대한 추가협정
 - 1959. 8. 3.에 제정된 서독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관련하여 그 군대의 법적지위에 관한 북대서양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의 추가협정 및 (BUBI, 1961. II. O.1183, 1218) 1961. 8. 18에 제정된 조약법의 1971. 10. 21.에 개정된 내용.
 - 1959.8.3에 제정된 추가협정에 대한 조인의정서 및 1981.5.18에 제정된 법에 있는 1961.8.18.에 제정된 부속 조약법.
(BGBI,1961.II.P.1183,1313)
 - 1959.8.3에 제정된 서독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관련하여, 그 군대의 법적지위에 관한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들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대한 추가협정의 제45조 제5항에 대한 협정 및 1961. 8.18에 제정된 부속 조약법(BGBI,1961.II.P.1983,1355).
 - 1959.8.3에 서독, 캐나다와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이루어진 솔타우드뤼네베르그 지역에서의 기동연습의 시행과 기타 훈련에 대한 협정 및 1970.5.12에 개정된 협약에 들어있는(BGBI,1971. II.P. 1078)1961.8.18에 제정된 부속 조약법(BGBI,1971.11.S.1183, 1362).
 - 1959.8.3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벨기에 왕국간에 체결된 분쟁조정예 관한 직접 해결에 관한 조약 및 1961.8.18의 부속조약법(BGBI, 1961.11.S.1183,1368).
 - 독일연방공화국과 프랑스공화국 사이에 맺어진 분쟁조정예의 직접 해결에 관한 조약 (BGBI,1961.11.S.1183,1371).
 - 독일연방공화국과 대영제국(영국-북아일랜드)사이에 맺어진 분쟁 조정예의 직접해결예 관한 조약(BGBI,1961.11.S.1183,1374)

- 독일연방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맺어진 분쟁 조정의 직접해결에 관한 조약(BGBI,1961.11.S.1183,1382)-1959.8.3. 에 체결된 독일 연방 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휴가병(Ulauber)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협정 및 1961.8.18의 부속 조약법(BGBI,1961.11.S.1183, 1385).
7. 1952.8.28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설립한 북대서양 조약군본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koll) 및 1969.10.17.에 체결된 부속 조약법(BGBI,1961.11.S.1997).
 8. 1967.3.13에 독일연방공화국과 유럽의 점령군 최고 사령부 사이에 체결된 독일연방공화국에 있어서의 국제 군사령부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조건에 관한 조약-추가조약- 및 1969.10.17에 체결된 부속 조약법(BGBI,1969.11.S.1997,2009).
 9. 1987.12.11에 체결된 미국,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와 영국 사이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중·단거리 미사일 제거에 관한 조약-주둔군 국가들 협정- 및 1988.4.20에 체결된 부속조약법(BGBI,1988.11.S.429)감독에 관한 협정.
 10. 미합중국과 소련사회주의공화국 사이에 1987.12.8에 체결된 중·단거리 미사일 철수에 관한 조약과 관련한 1988.5.30에 체결된 소련과 서독간의 사찰에 관한 각서 교환.

제 II 장

연방 내무 장관 업무영역

(통계는 X V III 장 참조)

(공무원관계인사법과 군인법에 대해서는 X I X 장을 참조)

업무 영역 A : 국가법과 헌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되거나 개정한다.

1. 1975.9.1.에 공고되고 (BGBl 1,S,2235), 1990.8.29 최종 개정된 연방선거법 제55조는 폐지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1132-1에 공고되고 1986. 4.24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최종 개정된 명예훈장, 칭호, 수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제16조

독일민주공화국(DDR)의 국가표식은 통합이 작용하는 시점부터 소멸된다. 이러한 칭호 사용의 이의 제기는 통합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1136-1에 의하여 공고된 독일통일일에 대한 법률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법률은 폐지한다.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음 조치들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9.3.3에 공시된 정당법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따른다 :
 - a) 제2조 제2항의 기간은 1990.2.21.에 공고되고, 1990.7.22.에 최종 개정된 정당 및 다른 정치적 단체에 관한 법률-정당법-의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국민의회 의장에게 통독과 동시에 신고된 정당에게 적용된다.
 - b) DDR의 정당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국민의회의장의 근거서류는 2개월내에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c)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결성되는 정당의 정관은 통독후 1년내에 이 법률의 규정과 일치되어야 한다.

- d) 위 c)에 명시된 기한은 DDR의 정당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민 의회의장에게 1990.5.1에 선거에 참여할 정당으로 등록된 다른 정치단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무 영역 B : 행 정

제 i 절

조약 제8조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 연방법에서 폐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1965.10.13에 공고되고 1989.6.8 제4조 4항의 최종개정과 이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따라 헌법 제131조에 의하여 파산한 인사의 법률관계 규정.
2. 연방관보 제Ⅱ부 목록 2036-2로 공고된 헌법제131조에 의거 파산된 인사에 관한 개정법률의 첫번째 법률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036-3에 공고된 헌법 제131조에 의거 파산된 인사에 관한 개정법률의 두번째 법률
4. 기본법 제131조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의 법률관계의 규율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036-4에 수정되어 공포된 세번째 법률, 1965.9.9.에 법률 제2항목 제5조를 통해 (BGBl, 1S,1203) 1965.12.20에 법률 제12조 제2호 B)와 D)와 관련하여 개정되고 발표된 규정의 시행을 위해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036-4-1과 2036-4-2로 수정되어 공포된 법률.
5. 1965.9.9에 제정된 기본법 제131조에 해당되는 인사의 법률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의 수정을 위한 네번째 법안(BGBl,1S,1203), 1967.7.6법률 제5조 제2항을 통해 최종 개정된 (BGBl,1S,629) 법률.
6. 1965.12.15에 공포된 국가사회주의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법률 규정, 1989.6.8에 법률 제4조 제5항에 의해 최종 개정되었고, 실행을 위해 공포된 규정과 법령(연방관보 제Ⅲ부 목

- 록 2037-1-1 B.S 2037-1-3과 2037-1-5로 수정 공포됨)
7. 국가사회주의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법률 제 31d조의 실행을 위하여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037-1-4로 수정 공포되고, 1974.8.5. 최종 개정한 법률.
 8. 국가사회주의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법률을 위하여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037-2로 공포된 두번째 법률.
 9. 국가사회주의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법률 규정을 위하여 관보 제Ⅲ부, 목록 2037-3에서 수정되어 공포된 세번째 법률.
 10. 국가사회주의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법률 규정을 위하여 관보 제Ⅲ부 목록 2037-4로 수정되어 공포된 여섯째 법률 1996.12.20.에 법률 제14조 제1항을 통해 최종개정된 법률.
 11. 외국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국가사회주의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규정을 위하여 1965.12.15.에 공포된 법률(BGBl, 1S.2091).
 12. 국가사회주의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법률 규정을 위한 1965.12.20.에 법률 제14조 제3호를 통해 수정된 (BGBl, 1S.2065) 일곱번째 법률.
 13. 1965.4.28.에 제정되고(BGBl, 1S.353) 1990.6.26.에 법률 제89조 제5항을 통해 수정된 외국인에 대한 법률.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1982.7.16.에 제정되고(BGBl, 1S.946), 1988.12.20. 법률 제1조를 최종개정한 망명절차 법률
 - a)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보충한다 :
 - (3)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통일이 될때까지 수용소에 보호 되고 있던 외국인들은 이 법률에 의해 망명자로 간주한다.
 - b) 제2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2) 각주들은 행정합의를 통해 망명신청자들을 분배하기 위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91.12.31까지 행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법규정을 통해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1문 또는 제2문에 따라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

1. 망명희망자의 20%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에 분배된다 ;

주별 분배는 해당주의 인구수에 비례한다.

2. 망명희망자 80%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 | |
|--------------|-------|
| 바덴 - 뷔르템베르크 | 15.2% |
| 바이에른 | 17.4% |
| 베를린 | 2.7% |
| 브레멘 | 1.3% |
| 함부르크 | 3.3% |
| 헤센 | 9.3% |
| 니더작센 | 11.6% |
| 노드라인 - 베스트팔렌 | 28.0% |
| 라일란드 - 팔츠 | 5.9% |
| 자알란드 | 1.8% |
| 슐레스비히 - 홀스타인 | 3.5% |

만약 행정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3문이 유효하다.

2. 1988.1.6.에 제정된 연방기록법 (BGBl, 1S.62)의

a) 제2조 제8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8) 이 법이 의미하는 기초자료는 서류물, 인쇄물, 카드, 기획물과 통계, 영상, 사진, 음반 및 기타 표식으로 제1항에 명시된 연방지역, 동독 지역, 점령지구, 독일영토나 독일연방내에서 축적되었거나 혹은 그 소유가 이양되었거나 또는 사용을 위해 남겨둔 것 모두가 해당된다.

b) 전동독 국가 안전부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위반자로 판명된 인사정보

는 독일 전체 시민 다수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 자료의 보안, 사용, 보존에는 이 정보와 관련되어 중요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기본권 입장에서 연방의회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그때까지 이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통일효력에 의하여 연방기록법은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에 의하여 적용된다 :

제 1 조

- (1) DDR의 국가보안을 위한 과거의 국가안전부의 인사관련정보 기록들과 문서들은 최종 법률규정이 마련될때까지 연방정부의 특별위탁에 의거 위법적 소멸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특별위탁자는 국민회의의 동의를 받은 DDR의 행정관이 늦어도 1990.10.2까지 연방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그 특별위탁자는 연방기록문서 위원장이 된다.
- (2) 특별위탁자는 직권행사에 있어 자율성을 지니며, 연방정부의 법률적 감독하에 있다. 그는 연방 정보 보호법의 관리자 지위에 있다.
- (3) 특별위탁자는 연방정부에 의해 추천된 자문위원의 조언을 받는다. 자문위원은 5인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중 3인은 통독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주거지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있어야 한다.
- (4) 특별위탁자는 자신의 임무의 인지에 있어서 연방기록법 정보 보호를 위한 위탁자로서 보호된다.

제 2 조

- (1) 제1조에 명시된 정보들과 문서들은 통제된다. 이의 해제는 허락되지 않는다. 보관소는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중심이어야 한다. 인사관련 정보는 단 이것들이 면제될 수 없고 법적효력이 끝날때까지 연기될 수 없는한 단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양도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
 1. 관련된 사람의 개선과 명예회복의 목적으로
 2. DDR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국가안전부의 공식적 또는 비공

식적인 행위의 확인을 위해, 예컨대

- a) 관계인사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원들과 의원후보들에 대한 심사를 위해
 - b) 공무원의 인력 재활용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부록 I 제 IX 장 업무영역 A, 제 iii 절)
 - c) 공무원의 고용을 위해 그리고 관계인의 동의에 따라 신원보증을 위하여.
3. DDR의 국가 안전부내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벌의 추적을 위해
4. 수사기관과 그밖의 관청이 법률에 의해 편지, 우편, 전화의 비밀에 대한 제한을 위한 법률 제3편 제2조 제1항(헌법 제10조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범죄를 수사, 수색하기 위해
- (2) 특별위탁자는 이 목적을 위해서만 관할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근거서류의 출판과 열람은 단지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때에만 허용된다. 인수자는 그 기록들을 단지 주어진 그 목적을 위하여 작업을 해야하고 이용 해야한다. 필요한 인사관련 정보가 관련자의 다른 정보 혹은 제3의 인물의 기록과 연관이 되어 분리될 수 없거나 대체할 수 없다면, 근거서류의 출판이나 이 기록들에 관해 열람허가가 허용된다. 단지 관련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비밀유지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이 기록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제2조 제1항 제1문에 명시된 목적 및 인권에 대한 현존적 혹은 위협적 손실의 방지를 위해 관련자 자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의 권리의 소추가 허용되지 않으며 유예되지 않을때에만 가능하다. 정보의 제공은 제3자에게 중대한 이익이 되지않도록 행해져야 한다.

제 4 조

보관된 기록들과 기초서류를 다루는데 있어서 특히 허가받지 않은자의 침입으로부터 안전, 그 이용과 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정보보호를 위한 연방위탁자의 통제아래 둔다.

제 5 조

기타 사항은 연방기록보호법의 규칙이 적용된다.

3. 1969.3.31에 제정된 독일도서관에 관한 법(BGBl 1S.265)의
a)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조

중앙의 보존도서관과 독일의 국가도서관의 센터는 공법상의 법인체로서 프랑크푸르트(Deutsche Bibliothek)와 라이프찌히(Deutsche Buecherei)에 둔다. 관할연방장관은 공법상의 기관명을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 b) 제2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의 “1945.5.8 이후에”를 “1913년 부터”로 문구 수정한다.
- c)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2) 제1항에 의한 임무가 악보와 악기와 관련된다면 그것은 독일도서관의 독일음악기록부원과 독일도서관의 음악관련자료 수집의 소관이다.”
- d) 제11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2) 프랑크푸르트와 라이프찌히에 있는 도서관장과 부관장은 독일대통령의 행정비서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관할연방장관은 관장의 취임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 e) 제18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에 의한 모든 출판사는 이법의 효력안에서 발행하고 녹음

할때에는 1부씩(의무적으로) 독일도서관과 독일서적관에 기증하여야 한다.”

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24-2에 수정되어 공포되고 마지막으로 1974.3.2.에 법 86조를 통해 수정된(BGBl 1S.469) 독일문화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22조에 다음과 같이 제5항이 추가된다 :
“(5)1980.7.3.DDR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GBl, 1 Nr. 23 S.191)의 반출은 이 법에 따라”국보나 국가중요 문서“로 결정되어 표시될때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음의 효력을 발생한다.

1. 1976.5.25.제정되고(BGBl 1S.1253), 1976.7.2. 법 제7조 제4문을 개정한 행정소송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들에 주법의 실행을 위해 해당 관청의 공법적인 행정활동이 행정소송법을 통해 규정되지 않는 한 이법은 1992.12.31.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 b) 제96조는 준용된다.
 - c) 이 법은 토지등기법이나 다른 토지등기 관련 규정에 의한 토지등기 공무원들의 소송에는 유효하지 않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1-1로 수정 공포 되었고, 1990.6.26 법 제9조 제6항을 최종 개정한 호적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호적관리공무원의 임명
1981.12.4.(GBl 1Nr. 36 S.421)제정된 DDR의 호적제도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호적서기직과 호적발행청의 관장과 부관장은 이 법에 따라 호적관리공무원이 된다. 제53조에 따른 새로운 임명은 필요하지 않다.
 - b) 호적발행청의 임무의 인지

제51조와는 달리 DDR의 호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Kreis)³⁾ 호적 발행청은 다른 법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그들에게 제출된 호적들을 처리하는 임무가 계속 부과된다. 지역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51조가 적용된다. 제1조에 따라 호적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는 호적발행청에서 관장과 부관장이 이를 수행한다.

호적부의 운영이나 이용, 원본대조 및 발행문서의 공증에 관한 법률은 호적발행청에도 적용된다.

c) 통독시까지 비치된 호적증명서류의 열람 및 비치

aa) 통독시까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호적공무원 호적 발행청의 공무원에 의한 호적 관리는 이 법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쓰여진 주석은 뒷면에 메모한다. 기입에 대한 참고사항은 등기의 앞쪽 밑부분에 기입한다.

bb) 호적기록이 제11조, 제21조, 제37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수정이나 보충은 불가능하다. 호적부에서 호적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1977.2.25. 공포되고, 1990.6.28. 최종 개정된 (BGBl 1S.1388) 호적법 시행 규정 제62조(BGBl 1S.377)와 E, E1, E2, F와 G(호적법 시행 규정 항목 23에서 27까지)에 표시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적등본에는 호적기록에 나타난 내용만을 기술한다. 특히 제61a조의 제1항에 상응하는 호적발급에 있어서는 앞면기록과 뒷면기록의 인증등본을 마쳐야 한다. 이는 “호적 사무소 원본과 동일함”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서식 Ax, Bx와 Cx(호적법 시행을 위해 정한 규정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에 나타난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c) 이 호적부들의 부분은 (제44조) 비치되지 않는다.

d) 베를린에 있는 호적사무소 I

aa) “서베를린 호적사무소 I의 호적공무원”은 “베를린 호적사무소 I의 호적공무원”으로 대치한다.

bb) 베를린 호적사무소 I의 호적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크라이스는 작은 마을을 묶는 행정단위 지역

- aaa) 동독호적법 제19조에 따라 배치된 호적서류의 사용과 보관업무
- bbb) DDR내의 외국대표들의 활동에 관해 1979.12.21에 제정된 영사법 (GBI 1, Nr. 45 S.464) 제22조에 따라 배치된 외국영사들에 대한 인적서류의 보존과 이용업무
- ccc) DDR의 수도였던 Berlin 제1호적사무소에 있는 호적부의 신분기록과 독일관리들이 주관하지 않았던 영역의 호적기록들의 수행과 이용(호적법의 수행을 위한 규정 제27조에 따라서)
- ddd) DDR의 수도였던 Berlin 제1호적사무소의 사망 원인 기록과 사망시기, 판결에 대해서는 초본과 인증등본이 발급될 수 있다.

신분에 관한 등기부의 소장과 이용은 c)항이 준용된다.

- cc) 서독관리가 동독 호적사무소의 신분법 제19조에 따라 동독 호적사무소에서 제41조에 따른 신분확인을 요청할 경우 처음부터 기록을맡았던 공무원의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 및 보충 기입이 가능하다. 제1호적사무소의 호적관리에 의한 기입은 이에 대한 비고 사항 기입이 수반되어야 한다.
 - dd) 남편의 거주지가 동독이기 때문에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독관리의 의해 관리되어온 가족 기록부(Familienbuecher)는 제13조에 따라 관할권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관할청에 이관해야 한다.
 - e) 신청에 의한 가족기록부의 비치 가족기록부는 제15a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전제조건에 따라 1957. 12. 31 이후에 동독의 호적관리관앞에서 혼인서약을 했을때 비치될 수 있다.
3. 1990.7.9. 외국인 권리의 새규칙을 위한 법률(BGBl, 1S.1354)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제1항목 제94조에 의하지 않은 체계권은 제1항목 제5조에 의거 거주허가가 심사된다.
4. 1976.6.20. 공포되고 (BGBl 1S,1717) 1989.5.3. 최종 개정된(BGBl. 1S,881) 외국인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1979.6.28(BGBI. 1Nr. 17 S 149) 외국인을 위한 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받은 체류허가는 이 규정의 체류허가이다.
- b) 제5조 제5항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 5. 1977. 12. 20. 외국인법을 위한 수수료규정(BGBI.S. 2840)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제1조와 제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b) 제2조 제2항은 1990. 12.31까지 1979.6.28. 외국인을 위한 규정 제2조에 따라 (GBI.1 Nr. 17 S. 154)수여된 체류허가, 체류권리에 적용된다.
- 6. 1982.7.16.에 제정되었고(BGBI. 1S.946) 1988.12.20.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망명청구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DDR에 속하는 관청과 상고기관에 제출된 망명청구소송에 있어서 망명 신청자는 외국인 망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방망명국에 접수하며 절차는 이법령에 의해 종료된다.
- 7. 여권법과 1986.4.19. 공시된 형사재판법의 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DDR의 신분증명서는 1995.12.31.까지 유효하다.”
- 8. 1986.4.21.공포된 (BGBI. 1S. 548) 주민등록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DDR의 신분증명서는 1995.12.31 까지 유효하다.”
- 9.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251-1에 공포되었고 1990.4.30.최종 개정된 연방법에 의한 방송국 시설에 관한 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BGB 1, 1. S.823)
라디오 베를린 국제방송은 폐쇄하며 이 방송에서 사용되던 주파수는 연방방송국에 흡수된다.

업무 영역 C : 공공의 안녕

제 ii 절

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976.3.8. 공포되었고(BGBl. 1S.432), 1986.2.18. 제4조를 최종 개정
한 무기에 관한 법률(BGBl. 1. 1S.265)의
 - a) 제5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번호 6의 “또는”을 “ , ”로 대치
 - bb) 번호 7의 점(·)을 “또는”으로 대치하고
번호 8을 첨가시킴. “8. 제59b조의 제5항 제1호에 반하여 신고
기간후에 신고하지 않는 총기나 화약품의 사용
 - b) 제59a조의 뒤에 제59b조를 신설한다 :

제 59b 조

독일통일에 따른 경과규정

- (1) 통일이전에 동독관할청에 의하여 받은 무기, 탄약, 발사장치 및 화약등의 (제조, 수리, 가공, 판매, 운송, 보관, 보존, 전시, 영업, 소유, 투자, 반출, 반입, 수송 등)허가는 그 허가 범위내에서 통일후 6개월까지 유효하다. 위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무기법에 따른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할 것이며, 관할관청이 결정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은 이 신청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연장된다.
- (2) 누구든 독일이 통합되는 날 통일조약의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무기와 탄약품에 대한 허가없이 실제로 이를 사용한다면, 이 무기와 탄약품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관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인적사항, 무기의 수와 종류, 그리고 무기와 탄약의 규격과 생산자의 표시 및 생산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제1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1문의 기한전에 무기나 탄약에 대한 허가증을 소유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에 대한 근거로 관청은 신고자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기소지증을 발행한다. 그외의 경우 해당관청은 이 무기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가받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하며 해당관청에 이를 증명하게 해야한다. 제37조 제 5항을 이에 준용한다.

- (3) 제2항 제3문의 무기소지증은 탄약품 획득의 권리가 없다. 신고자가 소유중에 발견되는 탄약은 권리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신고한 경우 무허가 획득, 실제 무력사용 혹은 수입과 그로인한 임무태만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무허가 무기나 탄약품으로 인해 감소한 수입세는 후에 부과하지 않는다.
- (5) 신고기간 뒤에는 신고되지 않는 무기나 탄약을 사용하는 무력행사는 허가되지 않는다. 제37조 제5항은 여기에 준용된다.
- (6) 독일이 통합되는날 제37조 제1항 제1문 또는 무기법 첫째 규정의 제8조에 의해 금지된 대상에 대해 실제적인 무력을 행사한 자는, 통독 후 6개월 이내에 이 대상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허가 받은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인 허가서를 연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한다. 제37조 제5항이 여기에 준용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1. 1986.4.17. 공포되고(BGBl. 1S.577), 1990.6.28 법률 제7조를 개정한 폭약물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폭약물 허가에 관한 경과 규정

(*독일) 통합이전에 동독관청에 의해 발행된 폭약물에 대한 거래(생산, 가공, 판매, 취득, 소유, 보관, 운송과 사용)는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금까지 허가된 범위안에서 통용된다. 만약 제1문에 명시된 기한전에 폭약에 관한 법에 따라 승낙을 얻기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해당관청에 의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이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될 때까지 연장한다.
 - b) 동독의 최고관청에 의해 허가된 폭발물에 관한 경과규정 동독의 최고관청에 의해 발행된 폭약과 화학류에 대한 허가서는 통일후 6개월까지는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 제1문에 명시된 기한전에 폭약물

에 관한 법에 따라 승낙을 얻기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해당관청에 의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기한은 이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될 때까지 연장한다.

- c) 화공생산물에 관한 경과규정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화공품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었고 폭약물에 관한 제 5조에 따라 허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통합후 6개월까지는 소멸시키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회수되어야 한다.
2. 1973.6.29. 공포(BGB. 1S.704)되고, 1974.12.9.의 법 제8조 제3항을 최종 개정한 연방범죄수사국 설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독의 중앙범죄수사국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지역에서 제 3조 제2항에 따라 또 이 주들에 연방 범죄수사관이 없는 한 공동 주(州)범죄 수사국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1977.1.27. 제정되고 (BGBl 1S.201), 1989.12.18. 제47조를 최종 개정(BGBl 1S. 2261)한 정보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정보보호통제가 잘 이루어질 때까지 늦어도 1991.12.31까지 조약 제 3 조에 명시된 지역에는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부터 제 21조까지 적용된다. 정보통제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금까지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협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들과 베를린을 통제한다.
 - b) 조약의 효력에 따라 이미 제12조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의 공포는 통합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c) 제14조 제3항 제1문과 제2문 후절의 예외의 경우로 연방법에 따라 관할청에 주어진 임무중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연방법에 따라 입력이 허용되지 않는 인사관련 정보는 관계인의 이해에 저촉되지 않는한 즉시 소멸되어야 한다.
4. 1980.8.16. 제정되고 (BGBl 1S 1429), 제출기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출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제출원칙에 따라 통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 b) 지금까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제출기본법에 의해 제외되는 정보, 특히 기록번호 등의 계속적인 작업이 요구되면 계속 정리되어야 한다. 새롭게 수집되는 정보는 정리가 허용된다. 정보의 이용은 즉시 정보응용이 불가능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정지되어야 한다. 이 정지 후 늦어도 1992.12.31.까지 위 제1, 제2문의 관련정보는 소멸된다.
- c) 동독의 중앙 주민등록청은 제출법을 인지하는대로 지역 주민등록관할청이 중앙 주민등록청의 도움이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독 즉시 조약 제1조 제1항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통독의 중앙 주민등록청은 늦어도 1992.12.31. 해체되어야 한다.
- bb) 중앙의 주민등록청에 입력된 다른 종류의 정보는 다른 행정사무를 위해 요구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한다. 이 다른 기록들은 등록자료(등기부)에서 분리하여 늦어도 1992.12.31까지는 관할 행정부로 이관하고 그 즉시 중앙 주민등록청에서는 말소되어야 한다. 행정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보로 입력된 것의 이용과 정보의 제공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전문 행정에만 허용된다.
- d) 지역주민등록소는 중앙 주민등록청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변경되어야 한다.
5. 1984.6.26 제정되고(BGBI 1S.810) 1985.12.20. 1차 개정(BGBI. 1S. 2510)에 의한 2차 제출정보 이전규정은 다음의 조치에 따른다 :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이전과정과는 별도로 1992.12.31까지 모든 송수신자는 다른 방법을 합의해야 한다.

업무 영역 D : 전후처리법

제 i 절

통일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 효력 발생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1971.5.15. 공포되고 (BGBl. 1S.681) 1990.6.26. 법 제2조를 최종개정하였고 동시에 제23조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한 망명자 지원 법률
2. 1969.10.1. 공포되고 (BGBl. 1S.629) 1985.4.17. 법 제3조를 최종개정하였으며, 동시에 제15조 제6항 제28조 제1항과 제46조 제2항을 근거로하여 공포된 보증보호법과 확정법령
3. 1965.12.1. 공포 (BGBl. 1S. 2069)되고, 1975.3.18. 법 제16조를 통해 최종 개정 (BGBl. 1S.705)하였으며 동시에 제1a조의 제2항, 제3조 제3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11조 제4항과 제14a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정과 통화 규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폐지한다.

1. 1971.9.3. 공포되고(BGBl. 1S.1807) 1990.6.28. 법 제1조를 최종 개정(BGBl. 1S. 1247)한 연방난민법의
 - a) 제90b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a) 제1항 제1문에 있는 번호 1과 2는 다음과 같이 문구수정한다
: “제1조의 난민이라는 의미는 제1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지역”
 - bb) 제7a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40-3으로 공포된, 이주자들을 위한 분배규칙 제2조에 따라 수용주로 확정하거나 확정되어지는 주에 효력이 있는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 cc) 제8항에 있는 단어 “제1항에서 7항 까지”는 제1항에서 제7a항 까지”로 대체한다.
 - b) 제90c조는 삭제한다.
2. 1987. 2. 4. 공포되고(BGBl. 1S.512), 1990. 6. 26에 법 제8조를 최종개정 (BGBl. 1S.1211)한 구속자 지원법의

- a) 제9a조의 제2항 제2문에 있는 “그리고”는 “ , ”로 대치하고 “상속자에 유효하다”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연결한다. :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청구권과 상고에 의한 청구권이 동시에 제기될 때에는 편입지원금은 최고 금액으로 한정한다.”
 - b) 제17조 제2문에 있는 “장려”뒤에 “제18조에 따라”를 첨가시킨다.
 - c)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에 있는 항표시 “(1)”은 삭제한다.
 - bb) 제2항은 폐지한다.
 - d) 제25a조에는 다음과 같이 제3항을 보충한다.

“(3)연방추방법의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보호는, 만약 제21조 제1항과 제9a조의 제1항 제1문과는 관계없이 출감후 일반적인 체제로 유지되거나 이를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의 보호에 대한 제9a조에서 제9c조까지에 따른 결과는 1992.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보장한다.
 - e) 제22조 제1항의 “제18조 제1항”은 “제18조”로 대치된다.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42-1-1에 수정되어 공포된 연방구속자 지원법제3조에 의한 인사의 동일지위에 관한 규정은
- a) 제1조 제1항에서 “도주했다” 다음에 “혹은 이를 시도했다”를 추가하고 “획득했다 혹은 획득하다”를 “가지다”로 대치한다.
 - b) 제1조 제2항에서 “획득했다 혹은 획득하다”를 “가지다”로 대치한다.
4. 1969.10.1.에 공포되고 (BGBl. 1S.1909), 1990.12.22.에 법 제5조를 최종 개정 (BGBl. 1S 2398)한 가중처벌 면제법 제234조 제4항과 제334a조는 삭제한다.
5. 1987.2.4.(BGBl. 1S.506), 공포되고 1989.12.22. 법 제5조를 최종 개정한 전쟁포로 배상법 제3조 제1항 제3문에서 점(·)을 (;)로 대치되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한다. “이는 또한 제5조에 의한 항고와자신의 항고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71.9.3.에 공포되고(BGBI. 1S.1565.1807), 1990.6.28.에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난민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이 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 및 제1조 제2항 제3호 제3문에 따른 인사에 적용되며, 이 적용은 통일 후 그리고 1992.1.1.전에 그 지역에서 상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 b) 통일전에 이미 연방난민법이 유효한 지역에서는 제1조 제2항과 제3조 제3항에 의한 거주자로도 인정한다.
 - c) 제96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호와 학문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a)항 이하에 표시된 기일은 고려되지 않는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40-3으로 공포된 배분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연방상원에 의하여 새로운 배분기준이 정해질때까지 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들에서는 공동으로 주민수에 따라 분배되어진 할당량의 20%을 우선 이주시킨다. 여기에는 통합되어지는 주의 생활능력과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3. 1987.2.4. 제정되고 (BGBI. 1S. 512), 1990.6.26. 법 제8조를 최종 개정(BGBI. 1S.1211)한 구속자 지원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연방난민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난민보호에 대해 이 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통합이 효력을 발생한 후와 1992.1.1.이전에 그곳에서 상주했던 인물들에 적용된다.
 - b)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의 보호에 대해, 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지역에서 제9a조부터 제9c조까지의 성과의 허가를 위해 그리고 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에서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위해서는 제15조에 따라 과거의 정치범들을 위해 세

워진 자선단체에 결정권이 있다.

- c) 연방부양법과 그 실행을 위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따라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부록I 제 VIII 장 제III 절에 명시된 조치가 발효된다.
 - d) 구속자 지원법에 의하여 이미 통합전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지역에서 서혜택을 받았던 자에게는 그 혜택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4. 1969.10.1.에 공포되고 (BGBl. 1S. 1990), 1990.6.28. 법 제2조를 최종 개정 (BGBl. 1S. 1247)한 가중처벌 면제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제230조 제2항 제1호는 단지 조약이 발효한 후부터 1992. 1. 1전에 이 지역에서 상주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 b) 제6조 제4항, 제305조, 제306조 제308조 부터 311조 그리고 제313조 제1항 제3문, 제313조 제1항 제2문과 제316조 제1항 제1문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 c) 연방조정청장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상주하는 신청자를 위해 관할조정청을 결정한다.
5. 1987. 2. 4. 제정되어 공포되고(BGBl. 1S.506), 1989.12.22. 법 제5조를 최종 개정(BGBl. 1S.2398)한 전쟁포로 손해배상법은 다음 조치에 의한다 :
-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제1조 제1항 제2호와 제5조 제2항은 단지 통합 효력이 발생한 후와 1992. 1. 1전에 이 지역에 상주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 이 사람들에게는 단지 법률 제1절의 급부가 보증된다.

제 Ⅲ 장 연방법무장관 업무영역⁴⁾

업무영역 A : 사법

4) 이 장은 법무부 법무자료 제165집 독일 법률·사법 통합 개관 642~727면을 보완하여 게재함.

제 i 절

조약 제8조에 의한 연방법의 적용에 있어 제Ⅳ절에 있는 베를린 주를 위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다음의 내용은 삭제한다 :

1. 화의법(연방법률관보 I 2355면)
2. 파산법시행법(연방법률관보 I 671면)
3. 파산법개정법률시행법(연방법률관보 Ⅲ, 분류번호 311-3), 다만 제Ⅳ장은 제외
4. 파산법(연방법률관보 I 1130면 및 2083면)
5. 파산 및 화의절차에서의 사회계획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I 2405면)
6. 석탄과 철강의 생산할당액을 위한 우선권산출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 I 326면)
7. 연방변호사법(연방법률관보 I 1349면)
8. 연방공증인법(연방법률관보 I 803면)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보충된다 :

1. 민사소송법 제744조(연방법률관보 I 926면) 다음에 제744a조를 신설한다 :

“제744a조

부부가 민법시행법 제234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을 공유하여 생활할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740조내지 제744조, 제860조를 적용한다.

2. 변호사의 지위와 권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 또는 연방변호사법 적용지역에서 허가 받은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서 허가된 변호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 Ⅲ 절

연방법은, 추가되는 규준에 의하여 다른 적용지역이 생기지 않는한(제iv 절에서의 베를린주(州)에 대한 특별규정 제외),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규준하에 시행된다 :

1. 법원조직법(연방법률관보 701면)은 다음과 같은 규준하에 시행된다 :

총 칙

a) 재판권제도의 구조

- (1) 각 주의 통상재판권은 통일조약 제1조 제1항 소정의 주에서는 군 법원 및 지역법원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법원은 동 법원에 위임된 비공사건에 대하여도 관할이 있다.
- (2) 각 주는 사법수요의 고려하에 인적·물적 조건이 갖추어지는대로 법에 의하여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과 검찰청을 설치한다. 각 주는 계류중인 절차의 이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3) 독립적인 재판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군법원 및 지구법원은 t)내지 x)의 규준에 따라 행정, 재정, 노동, 사회재판도 관장한다.

b) 동등조항

- (1) 법원조직법 또는 다른 법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관할이 정하여지고 법원에 임무가 지정되거나 담당 법원이 정하여지는 곳에서는 다른 규정이 없는한 군법원(Kreisgericht)⁵⁾ 이 구법원(Amtsgericht)⁶⁾ 의 권한을, 지구법원(Bezirksgericht)⁷⁾ 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5) 구역법원

6) 지방법원

7) 지역법원

- (2) 제1항은 법원장에 대한 임무부여에 있어서도 준용된다. 20명 이상의 판사정원을 가진 군법원의 장은 구법원장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3) 지구법원이 지방법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 지구법원의 부(Senat)는 법원의 부(Kammer)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c) 의장단과 업무분장
- (1) 군법원 및 지구법원은 1992.1.1. 업무개시 연도를 기하여 처음으로 제3항과 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제Ⅱ장(제21a조 내지 제21i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시점까지는 법원장과 부법원장 그리고 재판장이 지구 법원의 모든 피선거권이 있는 판사들로 구성되지 않은 군법원에서는 이 시점까지 의장단은 법원장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판사직에 있던 두사람의 판사, 가장 짧은 기간동안 판사직에 있던 두사람의 판사로 두성된다.
- (2) 군법원의 장은 감독권을 행사하는 판사의 직을 수행한다. 제22a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판사장인 판사로 구성된 의장단의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규정(제21a조 제2항, 제21b조 제2항, 제21c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제21b조 제1항에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판사는 의장단에 선출될 수 있다.
- (5) 여러명의 직업재판관으로 구성된 판사부에서는 제21f조 제1항에 불구하고 의장단이 재판장을 정한다. 이때에는 제21e조 제2항, 제3항 제3문이 준용된다.
- d) 견습판사, 한시판사 또는 위임판사의 활용
- 견습, 한시, 위임 판사의 활동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또는 종신판사에게 일정한 임무를 유보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관할과 구성

e)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 있어서 구법원의 관할

- (1) 군법원은 결혼과 가사사건을 포함한 민사소송 및 비송사건에서 구법원이나 지방법원의 관할이 1심인 경우에 관할이 있다.
- (2) 군법원은 그 관할구역안에 지구법원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사사건을 위한 부(Kammer)를 구성한다. 이 부는 제95조(제4호 c,f 제외)의 상사사건에 관하여 지구법원의 관할 구역안에서 관할이 있다. 상사부의 관할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케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f) 형사사건에 있어서 군법원의 관할

- (1) 군법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지구법원의 관할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1심 관할권이 있다. 군법원은 3년이상 자유형과, 단독형 또는 부가형을 불문하고 정신병원에의 수용 또는 보안구금을 선고할 수 없다.
- (2) 군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8a조에 의한 형집행부의 임무와 제161a조 제3항 제2문에 의한 지방법원의 임무도 수행한다.

g) 군법원의 구성

- (1) 군법원은 법원조직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판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판한다 :
 1. 상사사건에서는 상사사건부로서 1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 등기사건에서는 1명의 판사
 2. 특허소송사건, 실용신안의장소송사건, 디자인소송사건, 상표소송사건에서의 1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
 3. 농업사건(농업사건 재판절차에 관한 법 제1조)에서의 1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
 4. 참심⁸⁾ 법원의 형사사건 공판에서 1명의 판사와 2명의 참심판사(1년이상 자유형선고가 예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5. 중신자유형의 잔여형의 집행정지 또는 강제수용의 집행정지에 있

8) 원어 Schoffen은 배석판사, 시보판사 또는 배심원의 의미이나 법무부에서는 參審判事로 하였음. 따라서 배심심판부 대신 참심법원이 되었음.

어서 3명의 판사

(2)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 군법원은 1명의 법관으로 재판한다.

h) 민사소송,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에서의 지구법원의 관할

(1) 지구법원의 민사부는, 기준 1)에 따라 특별부의 관할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혼인과 가사사건을 포함한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에 있어서 군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에 관하여 재판한다. 관할구역안에 주정부가 소재하는 지구법원의 상사부는 기준 e) 제2항 소정의 절차에 대하여 민사부의 권한을 행사한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다른 지구법원에 토지관할을 부여할 수 있다.

(2) 민사부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1심으로서의 구법원과 2심으로서의 지방법원(Landgericht)의 관할이 있는 한 그에 따른 항소와 항고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재판한다. 기준 1) 제 3항의 적용은 제외되지 아니한다.

i)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지구법원의 관할

(1) 지구법원의 형사부는 1심의 재판법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관할이 있다.

1. 제74조 제2항, 제74a조 소정의 범행
2. 구법원의 형벌권이 충분하지 않을때
3. 사건의 특별한 범주, 특별한 어려움 또는 특별한 의미때문에 형사부에서의 심리가 적정한 경우
4. 소년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부가 1심으로서 관할이 있는 경우(우1)의 기준에 의한 특별부의 관할은 제외되지 아니한다.

(2) 지구법원의 형사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관할이 있다.

1. 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심리와 판결
2. 구법원의 판사의 명령과 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한 재판
3. 형사사건에 있어 파기에 관한 재판

j) 지구법원의 구성

(1) 지구법원의 각호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의 공판에서 재판한다.

1. 2명의 판사와 2명의 참심판사를 통하여
 - a) 1심 재판법원으로서
 - b) 참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2. 1명의 판사와 2명의 삼심판사에 의한 구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공판외에서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 기준 i)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지구법원의 판사 3명이 재판한다.
 - (2) 지구법원은 상사사건과 농업사건에서의 항소와 항고에 대하여 1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예판사는 법원조직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의 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이 1심 관할이 있는한 상사부는 3명의 판사로 재판한다.
 - (3)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1명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지 아니하는 한 지구법원은 혼인과 가사사건을 포함한 민사소송, 비송사건의 항소와 항고에 관하여 3명의 판사로 재판한다.
- k) 지구법원의 관할
- (1) 지구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주정부가 소재할 때에는 특별부를 구성한다. 이 특별부는 그 관할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권한을 행사한다.
 - (2) 특별부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사항이 아닌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재판한다.
- l) 특별부의 관할
- (1) 특별부는 제120조에 규정된 사건에 대하여 1심 형사부로서의 관할이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베를린소재 고등법원에 그 관할이 있다. 통일조약 제1조 제1항 소정의 주(州)들중 한 주(州)가 주법(州法)으로써 제1문에 따른 관할을 보유하게 되면 동주에 대한 베를린 고등법원의 관할은 상실된다. 이미 계류중인 절차는 제3문에 의한 관할변경으로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특별부는 다음 각호의 1에 관하여 형사부로서 관할도 있다 :

1.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준에 의한 상고에 관한 심리와 재판
2. 제121조 제1항 제3호의 규준에 의한 형사행부의 재판에 대한 항고의 심리와 재판
3. 형사사법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신청시, 법원조직법 시행법 제25조 제1항, 제35조 제2문, 제37조 제1항에 의한 재판
4. 국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하여야 할 재판
5.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21조, 제17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재판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의한 구속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관한 재판
6. 형사소송법 제138a조 내지 제138c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하여야 할 재판
7. 지구법원 형사부의 송판개시 및 선고재판에 대한 항소에 관한 재판
8. 제140a조와 형사소송법상 파기절차의 각 경우에 있어서 관할 법원의 결정

(3) 특별부는 다음 각호에 따른 재판에 있어서 민사부로서 관할이 있다 :

1. 법원조직법 시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판, 다만 형사부의 관할로(제2항 제3호)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7조, 제28조, 제143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등기법 제78조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다만, 고등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1990.4.5. 부양권협정 시행법(연방법률판보 I 701면) 제8조 제2항 제1문에 의한 즉시항고
4. 1980.6.5. 최종 개정된, 1967.12.21. 입차권조항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 제Ⅲ장 제1항 제1문에 의한 제출 결정

5.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6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관할법원의 결정, 다만 고등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1976.6.14. 최종 개정된, 1961.8.11. 가족법개정법률 제Ⅶ장 제1조에 의한 주 법무행정기관의 결정
7. 부정경쟁방지법 제62조 이하에 의한 카르텔관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
8. 기타의 항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 제89조 제1항 제3문, 제135조, 제141조 제3항, 제372a조, 제380조, 제387조, 제390조, 제406조, 제409조, 제411조 제2항(민사소송법 기준 d)-제5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9. 제21b조 제6항에 의한 의장단 선거의 취소

m) 벌금사건

기준 f),g),i),j),k)와 l)은 질서위반법 제46조 제7항의 기준에 따른 벌금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질서위반법 제79조와 제80조에 의한 벌금사건의 항고 및 항고의 허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 제82조, 제84조 제85조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구법원의 특별부가 관할을 가진다.

기타 조정규정

n) 관할의 집중

- (1) 주정부는 사건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합목적적일 때에는 법규 명령에 의하여 여러 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개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을 지정하거나 법원의 지부를 설치할 권한을 가진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이 권한을 주법무 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 (2) 각 주는 합의에 의하여 어떤 주의 법원에 속한 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주의 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 (3) 종전의 법에 따라 행하여진 관할의 집중은 각주가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사물관할이 변경되어지면 관할의 집중도 그에 따라 사물관할 해당법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문은 저작권소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검찰청

- (1) 지구법원에 대치하여 검찰청을 조직하며 군법원에 독자적인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군검찰청의 직무도 수행한다. 고등검찰청에 상응하는 검찰청은 특별부가 구성되어 있는 지구법원에만 설치된다. 제144조, 제147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은 주전역을 포괄한다.
- (2) 검찰청의 보조공무원으로 제152조 제2항 소정의 인적집단과 비견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다.

p) 명예판사

- (1) 1990.7.5. 동독(DDR)의 법관법 제37조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되었거나 곧 선출 또는 임명될 명예판사는 법원조직법과 그밖의 절차법의 규준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 기간동안 그직을 수행한다.
-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참심판사에게 최초로 적용된다. 그 시점까지는 종래의 동독규정이 적용된다.

q) 사무국의 사무장과 집달관

- (1) 사무국의 사무장의 임무는 제153조에 직원된 규정들의 다른 직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계약직공무원도 집달관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다.

r) 소르브인⁹⁾의 권리

소르부주민이 고향지역에서의 재판때 소르브어로 말할 권리는 제184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9) 원문의 Sorben은 서슬라브족을 뜻함. 통일조약 제35조와 의정서 제4번과 관련.

s) 법원의 휴가

법원의 휴가에 관한 법원 기본법 제17주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재정·노동·사회재판권에 대한 특별규정

t) 원칙

- (1) 군법원과 지구법원은 주의 법원으로서 독자적인 행정·재산·노동 및 사회법원의 설립때까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한다. 법원의 설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행정법원법, 재정법원법, 노동법원법, 사회법원법의 규정은 군법원 및 지구법원의 관할이 계속되는 동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통상의 재판권 또는 비송사건 또는 행정재판권, 재정재판권, 노동재판권, 사회재판권을 행사하는 군법원과 지구법원의 재판부와 관련하여, 소송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과 다른 절차로의 이송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 (3) 군법원 및 지구법원의 관할이 있는 기간동안은 규준 n), p)와 r)이 준용된다.
- (4) 각 주는 사법의 필요를 고려하여 그때그때 인적 물적조건들이 충족 될 수 있는 한 제1항에 규정된 특별재판영역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로써 법원을 설치한다. 각 주는 계류중인 절차의 이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u) 행정재판권

- (1) 서독법에 의하여 행정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사건을 위하여 그 지역내에 지구법원이 소재하는 군법원에 행정부를 설치한다. 이 부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판사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한명의 판사만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경우 외에는 2명의 판사와 3명의 명예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한다. 1978.3.31.의 행정재판과 재정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법 제Ⅱ장 제1조 제1

항 제2문과 행정법원법 제5조 제3항 제2문의 경우에는 재판부는 재판장을 통하여 재판한다. 보고자가 임명되면 이보고자가 이를 행한다.

- (2) 서독법에 따라 고등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주정부가 소재하는 지구법원에 행정부를 설치한다. 행정부는 3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한다. 제1항 제2문은 준용된다.
- (3)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다른 군법원 또는 지구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 때에는 그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다른 군법원 또는 지구법원의 토지관할을 창설할 수 있다.
- (4) 각 주는 망명신청자가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안에 주거를 가지는 경우 망명절차법 및 망명을 불허한 외국인 담당관청의 행정결정으로 인한 소송에 관하여 행정법원법이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이미 적용되었던 지역에 있는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

v) 재정재판권

서독법에 따라 재정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주정부가 소재하는 지구법원에 재정부를 설치한다. 이부는 3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한다. 기준 u) 제1항 제2문은 준용된다. 가입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주의 다른 지구법원에 관할이 있으면 그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주의 다른 지구법원의 관할을 창설 할 수 있다.

w) 노동재판권

- (1) 서독법에 따라 노동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군법원에 노동부를 설치한다.
- (2) 서독법에 따라 지방노동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구법원에 노동부를 설치한다.
- (3) 노동부는 1979.7.2. 공포되고 1990.6.26. 법 제1조에 의하여 개정된 노동법원법에 확정되어 있는 판사 구성으로 재판한다.

x) 사회재판권

- (1) 서독법에 따라 사회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구법원이 소재하는 군법원에 사회부를 설치한다. 이 부는 소송법에 의하여 명예판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한, 1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가 재판한다.
- (2) 서독법에 따라 지방사회법원에 관할이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주정부가 소재하는 지구법원에 사회부를 설치한다. 이 부는 3명의 판사와 2명의 명예판사가 심리하고 재판한다. 기준 u) 제1항 2문은 준용한다.
- (3) 사회부의 모든 소송사건에는 1990.7.5. 동독법관법 제3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연합의 추천에 기하여 임명된 2명의 명예판사가 관여한다.
- (4) 기준 (u) 제3항은 준용된다.

계류중인 절차에 대한 경과규정

y) 최고법원¹⁰⁾

- (1) 동독 최고법원에 1심으로 계류중인 형사소송절차는 그 상태로 기준 1) 제1항에 의한 관할법원으로 이관된다. 관할 법원은 지구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속력을 가지고 지구법원 또는 군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2) 최고법원에 계류중인 상고절차, 상고절차로 이행될 항소 절차 및 동독 특청의 무효결정에 대한 항소절차는 그 상태대로 연방의 각 관할 최고법원으로 이관된다. 상고의 허용여부가 신법에 의할 경우에는 연방의 최고법원이 그 허용여부에 관하여도 재판한다.
- (3) 최고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항소·이의·항고·파기 절차와 신법에 의하여 지구법원에 관할이 있는 다른 절차는 그 상태대로 지구법원

10) Oberstes Gericht는 동독의 대법원임.

으로 이관된다. 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이를 판결하였던 재판부 이외의 다른 재판부가 재판한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준 h) 제3문-제14호-은 그 적용이 제외되지 아니한다. 불복이 제기된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 또는 명예판사는 제척된다.

z) 동독의 검찰총장

동독의 검찰총장에게 계류중인 관련 절차는 새로 발효된 규정들에 의하여 관할이 있는 검찰청으로 이관된다.

2. 법원 의장단 선거법(1972.9.19. 제정, 연방법률관보 I 1821면)

a) 의장단의 판사 및 재판장 판사 동수구성을 전제로한 선거법 규정(제2조 제1항 제2문, 제3항 제2문,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제15조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판사”는 “관리자”로 대체한다.

3. 사법보조관법 (1969.11.5. 제정, 90.6.26. 법률 제9조 제2항의 개정, 연방법률관보I1163면)

a) 제2조의 요청에 상응한 교육을 받은 사법보조관이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보조관에게 위임된 사법의 임무는 판사 및 국가공증사무소에서 활동했던 공증인들에게 맡겨지고 검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사법 보조관법에 의하여 사법보조관에게 위임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검사에게 맡겨진다.

법원서기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종래의 법에 의하여 법원서기에게 그 처리임무가 부여되었거나 부여될 수 있는 전문분야에 관한 사법 보조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원서기는 보수교육 조치에 기하여 이 임무처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상세한 주법규에 의하여 그 이외의 사법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b) 주 법무행정당국은 제2조에 의한 교육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수준과 업무능력 수준을 해당전문 분야에서 나타내는 자에게 사법보조관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c) 판사가 사법보조관을 대신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제1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11조 제5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4. 법원조직의 일원적 규율에 관한 규정(연방법률관보Ⅲ 300-5)군법원의 장은 구법원의 감독판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민사소송법(1990.5.17. 개정)

- a) 군법원의 판사에 대한 기피중청에 대하여 군법원 판사가 이를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법원에서 재판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45조, 제46조)
- b)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지구법원에서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사무소를 가진 변호사에 의한 대리가 필수적이다. 그 외에 특정한 법원에 의한 변호사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제78조, 제78c조, 제91조, 제121조, 제157조, 제215조, 제271조, 제520조, 제573조). 제6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c) 군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하여는 구법원에서의 절차에 관한 제495조 이하를 적용한다.
- d) 지구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71조, 제89조 제1항 제3문, 제135조, 제141조 제3항, 제372a조, 제387조, 제390조, 제406조, 제409조 그리고 제411조 제2항에 의한 최초의 결정과 제341조 제2항, 제568 a조, 제621e조 제2항 및 제519b조, 제542조 제3항에 의한 항고는 제외된다.
- e) 제641조 이하에 따른 부양명명의 변경을 위한 간이절차와 제642조 이하에 따른 결혼외의 자녀에 대한 통상의 부양에 관한 절차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민법 제1612a조, 제1615f조에 기한 법규명령이 발효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개시된다.
- f) 1990.7.1. 이전에 발하여 송달되고, 가입의 효력발생일까지 집행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상 지불청구는 독촉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701조에 규정된 기간은 가입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된다.
- g) 가입의 효력발생일에 상소가 제기된 경우, 효력발생전의 상소심법원

이 가입의 효력발생전 이미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여부의 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h)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이미 계류중 혼인에 관한 소송(제606조 내지 제639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

- aa) 이혼 또는 혼인무효확인 절차에서 종결된 구두변론은 재개할 수 있다.
 - bb) 통일조약에 따라 확장적용된 법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중요하게 된 사실관계는 상고심에도 제출할 수 있다. 상고심 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증거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건을 항소심법원으로 환송한다.
 - cc) 상소심에서 이혼 또는 혼인무효확인 소송이 계류중 혼인이 해소되면, 가입의 발효이후 행하여지는 최초의 재판에서 제93a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전체절차의 비용에 관하여 재판한다.
 - dd) 이혼사건이 상소심에 계류중 가입의 발효이후 1개월 이내에 규정된 종류의 추가사건들이 계류되면 추가사건들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있기전에는 이혼판결은 효력이 없다. 가정법원은 제628조 제1항 제1문의 요건이 충족되면 미리 이혼판결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선고할 수 있다.
 - ee) 종전의 규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통일조약에 따라 확장적용된 법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중요하게 된 사실관계를 기초로하여 제기한 항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 i)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제323조, 제324조, 제579조, 제767조)이 적용된다. 기간을 포함한 각종 요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 j) 사회적 법원의 판결은 집행가능한 것으로 선고될 수 없다.
- k) 가입의 발효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개시된 강제집행 처분은 종래의 법에 따라 처리된다. 가입의 효력 발생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의 속행을 위한 독립적 처분이 실시되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압류된 품목의

매각은 독립적 처분으로 간주한다.

- 1)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개시된 후 가입의 효력 발생일까지 종결되지 아니한 중재절차에 대하여는 1975.12.18. 자 동독의 중재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내지 제23조를 적용하되 위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의 합의 대신에 제1044a조에 따른 중재재판상 화해가 적용된다.
6. 행정법원규정(연방법률관보I 2191면, 1986.12.8. 개정)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판사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를 대신하여 재판할 수 있다.
7. 재정법원 규정(연방법률 관보I 2496면, 1986.12.18. 개정)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판사가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를 대신하여 구두 변론없이 중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8. 독일법관법(연방법률관보I1206면, 1990.6.26. 개정)
 - a) 동독법에 의하여 직업판사 자격을 획득한 자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에서도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 b) 동독법에 의하여 직업판사자격을 획득하여 가입의 효력발생후 적어도 3년동안 판사직에 종사하였던 자는 종신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 c) 제10조 제2항은 가입의 발효전 통일조약 제1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활용하지 아니한다.
 - d) 1990.7.5.자 동독 법관법 및 1990.7.22.자 동독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시 또는 견습판사¹¹⁾로 임명되었던 판사는 종신판사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e)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견습판사로 임명되었던 판사는 임명후 늦어도 5년안에 종신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2문을 적용한다.
 - f) 동독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

11) 수습 또는 시보판사

하여 견습판사로 임명되는 판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오직 한 법원 또는 법원 행정부서에 근무시킬 수 있다.

- g)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한시판사의 지위는 3년의 시한부로 유효하다.
- h)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견습판사 또는 한시판사의 임명에 관하여 사후에 정당화 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i)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한시판사들의 직명은 군법원판사, 지구법원판사, 군법원장(Direktor), 지구법원의 부법원장(Vizepraesident) 또는 법원장(Praesident)이다.
- j) 일반적인 복무연한 대신에 판사로서의 이전 활동기간이 대체된다.
- k)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한시판사는 제21조에 규정된 사유이외에도 판사직에 적합치 아니할 때에는 해임될 수 있다. 해임은 6개월차, 12개월차, 18개월차 또는 2년차나 3년차의 기한으로만 행할 수 있다. 직무부 적합으로 인한 해임에 대하여는 제22조 제4항과 제5항이 준용되고 제21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임처분에 대하여는 복무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 l)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견습판사에 대하여는 제27조, 제31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문을 준용한다.
- m)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서는 한 법원에 한시판사와 견습판사만으로 - 또는 종신판사와 더불어-복무시킬 수 있다. 견습판사와 한시판사는 여러명의 직업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의 재판장도 될 수 있다.
- n)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견습판사에 대하여는 제37조 제3항을 적용하되 최장

6개월에 한하여 파견할 수 있다.

- o)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재직중인 판사의 복무관계 존속에 대하여는 동독 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기하여 구성된 판사선출위원회는 주의 설치 이후에도 존속한다. 이 규정에 따른 동독인민의회 또는 그 기관에 속하는 권한은 주의회로 이관된다. 주법은 동독 법관법 제12조 제3항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판사선출위원회 위원인 인민회의의원들을 주의회의원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판사선출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인민회의 의원들이 주의회 의원으로 대치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직을 행한다.

판사선출위원회는 동독법관법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사의 복무관계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늦어도 1991.4.15. 까지 결정해야 한다. 판사선출위원회에 의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현직에 있는 판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정부의 구성에 따라 법무장관의 권한은 관할 주장관에게 이관된다.

- p) 각 주는 규정 h)에 따라 임명의 취소에 관한 관할과 절차를 규정한다. 각주가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는 동안의 취소의 관할과 절차는 동독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q) 동독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3년 이상의 판사경력을 가진 판사는 직무감독권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할과 절차는 동독법관법 및 판사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입의 효력발생이전에도 적용되는 상응하는 임무가 부여된 판사직 임명에 관한법에 따른다. 다만 각주에 다른 규정에 없는 때에 한한다.
- r) 동독 법관법의 규정은 각주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판사협의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하여 적용된다.
- s) 각 주는 늦어도 1992.12.31. 까지 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 t) 정년에 관하여는 각 주가 규정을 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동독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늦어도 1991.12.31. 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 u) 판사복무법원의 임무는 각 주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 관할 구역안에 주정부가 소재하는 지구법원의 부가 이를 담당한다. 부는 3명의 판사를 구성되어 재판한다. 부의 부원은 적어도 3년의 판사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원들은 판사복무법원이 설치된 법원의 의장단에 의하여 임명된다.
- v) 법관법 시행령 - 징계규정 - (1990.8.1. 법률관보1 52호, 1061면)은 주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 w) 봉급, 연금, 산모보호, 휴가, 여행과 이사비용, 별거수당은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일반적 경제 및 재정적 관계의 발전에 관한 규정을 조정한다. 제2문에 의한 법규명령을 제정함에는 당해 주정부의 의견을 청취한다.
- x) 규준 p) 내지 w)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 소정의 각주는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1992.12.31. 까지 판사의 복무관계를 규정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에 적용될 주 판사에 대한 연방법관 및 공무원법과 관련된 경과 규정을 법규명령에 의하여 제정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직접 또는 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 판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그밖의 연방법이 언제부터 또한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주 지역에서 특별한 사실들에 의하여 필요한 수정조항으로 시행되는가를 법규명령으로 규율한다. 제2문에 의한 법규명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해당 주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규명령이 연방상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y) 다음 각호의 경과규정은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적

용한다 :

- aa) 가입의 효력발생 당시에 직업판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바로 취득하는자는 이 자격을 보유한다. 조약재판권으로 부터 통상재판권으로 옮겨진 판사와 국가공증인 직에서 통상 재판권으로 옮겨진 공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bb) 가입의 발효이후 기준 b)에 의하여 종신판사에 임명된 자는 독일 법관법이 가입의 발효전에 적용되었던 지역에서 판사임명에 필요한 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cc) 독일법관법이 가입의 효력 발생전 이미 적용되었던 지역 출신의 판사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서 배속에 의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속된 판사는 의장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dd) 대학기본법 제44조에 의하여 교수채용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의 효력발생이후 임명되었던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 소재 대학법학부 또는 법학관련 학과의 교수는 판사자격이 있다.
- ee) 1991.12.31. 현재 판사보, 검사보, 변호사보, 공증인보 이거나 예정된 자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한 교육의 종료 및 졸업과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다. 이는 포츠담-아이헤 법과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ff) 포츠담-아이헤 법과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적어도 3년간의 직업경력에 있는 법학석사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서 1년간 법원수습 후 직업판사의 자격을 취득한다.
- gg)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함은 - 포츠담-아이헤 법과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는 제외- 제5조 내지 제6조 소정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
- hh)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서 1990.9.1. 이전에 법률

학을 공부한 자는 -포츠담-아이헤 법과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은 제외- 계속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학업을 끝마칠 수 있다. 졸업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의한 제1차 국가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ii)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서 1993년까지 학업을 끝마칠 학생은, 이론적인 교육부분과 실습적인 교육부분으로 이루어진 2년반 기간의 특별수습근무를 할 수 있다. 수습근무는 4개월간의 법률, 경제, 민법의 기본 과정과 각 절차법을 포함한다. 실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의무과정으로 구성된다.

- 6개월동안 통상의 민사법원
- 3개월동안 형사법원 또는 검찰청
- 4개월동안 행정관청
- 4개월동안 변호사

수습생은 위 의무과정을 거친 직후 그 선택에 따라 제5b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과정중 하나 또는 두 과정에서 6개월간 교육받는다. 개론교과 과정은 시험 기간인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서독법에 대한 교육 정도를 참작하여 수습기간동안 단축될 수 있다. 의무과정의 기간은 해당 개론교과 과정이 줄어든 기간만큼 연장된다. 2차 시험은 각 주법의 규준에 따라 수습생이 주로 수습근무를 하였던 주에 의하여 실시된다. 수습생에 대한 과제 부여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특이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수습생에 대한 법률관계는 그 출생주의 법에 따른다.

jj) 포츠담-아이헤 법과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졸업에 의하여는 법률상의 사법직에 채용될 자격이 없다.

z) 다음 각 호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aa) 1990.7.5. 개정된 1977.4.7. 자 동독의 검찰청법 제38a조 제1항은 규준 o)에 따라 계속적용된다.

bb) 동독 법무장관이 검찰청법 제38a조 제2항에 의하여 제38a조 제3항의 법률상의 효과를 가진 감사를 새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대

로 유효하다.

cc) 그밖에 기준 a), b), c), e), h), p), q), v), w), y) aa), y) bb), y) ee), y) ff) 및 y) jj)를 준용한다.

8. 1989.12.31. 개정된 법률상담법(Rechtsberatungsgesetz)중 다음 각 호의 기준

- a)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법률상담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가입의 효력발생후 2주내에 상응하는 허가를 출원한 때에 한하여 이미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6개월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새로운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 b) 지방법원 또는 구법원장의 관할에 관하여 법률상담법의 시행을 위한 법규명령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지구법원의 소재지에 있는 군법원장의 장이 이 임무를 관장한다. 그 장소가 구법원장과 동급인 장이 관장하는 군법원의 관할지역에 속할 때에는 군법원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

9. 1990.3.14. 개정된 1990.8.16.(연방법률관보I1453면) 변호사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의 경감을 위한 1977.3.22. 유럽 공동체의 이사회 준칙 시행법중 다음의 기준 : 위법이 연방변호사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대신 동독변호사법의 상응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10. 1980.6.18. 상담원조법(Beratungshifegesetz)(연방법률관보I 689면) 중 다음 기준 : 상담원조는 근로 및 사회사건에도 행하여진다.

11. 1990.7.6. 개정된 1966.9.7.(연방법률관보I557면) 변호사법중 다음 각 호의 기준

- a) 변호사와 변리사보로서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동독 특허청에서 작성한 변리사 또는 변리사보 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자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시험에 의하여 변리사직 활동을 위한 재요건을 취득한 자와 같은 자격을 가진다. 동독 특허청에서 작성한 명부에 등록된 변리사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변리사회에의 가입이 허용된다.
- b) 변리사명부에의 등록신청 후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잠정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변리사회 가입허가 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변리사보 명부에의 등록신청후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잠정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변리사보 인정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특허청장은 변리사법 규정에 따라 변리사회 회장단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결정한다. 신청인이 교육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1990.3.21. 특허청에서의 대리에 관한 동독법규(법률관보 21호 208면)에 의하여 결정한다.

12. 1990.7.1. 개정된 자유박탈에 있어 재판절차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I 1354면) 중 다음 각호의 기준

- a) 자유박탈과 결부되고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이미 행하여진 수용시설에의 수용은 그 절차가 변칙적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1조의 자유박탈로 간주한다.
- b) 관할 행정관청은 피수용자가 석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자유박탈명령 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수용자는 법원이 자유박탈을 사전에 명령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 발효 후 늦어도 6월 이내에 석방된다. 제13조 제1항 제2문은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이 기간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1990.6.26. 개정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I 1163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

- a) 보호법(Betreuungsgesetz)의 수용사건에 관한 규정은 수용 조치에 관한 재판절차에 적용한다.
- b)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제125조 내지 제148조 제1항에 의한 절차는 결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이관한다.
- c) 주가 관할등기법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업등기부와 협동조합등기부에 관한 업무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서 그 관할 구역내에 지구법원의 소재지를 가진 군법원이 이를 관장한다.
- d)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군의회에 계류중인 상업등기부와 협동조합등기부에 관한 사건은 기준 c)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이관된

다.

e) 다음 각호는 제148조 제2항 내지 제158조의 절차에 적용한다 :

aa) 1976.5.27.(법률관보I 21호 298면) 동독의 해손절차(Dispach-
everfahren)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아직 인정되지
아니한 해손은 상법 제728조 또는 내수항행법(Binnenschif-
ffahrtsgesetz)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해손으로 간주한다.

bb) 해손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확인
의 소는 제150조 제1문에 의한 신청으로 간주한다.

cc) 해손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분쟁에 있어서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쳤거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종래의 절차규정에 따
라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외에는 제153조 내지 제156
조에 의하여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f) 제158조 제2항과 제3항은 해손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해
손에 적용한다.

14. 1990.7.9. 개정된 형사소송법(연방법률관보I 1354면) 중 다음 각호의
규준

a)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사회적 법원에 넘겨져 계류중인 절차는 검
찰청으로 이송한다. 검찰청은 형사소송법의 규준에 따라 수사절차개
시 또는 속행 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절차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일 때에는 이를 법원에 송부한다.

b) 경범죄로 인한 절차의 중재소로의 이송을 허용한 규정은 피의자가
이에 동의하고 소추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이 관련되지 아니할 때에
는 - 제153조, 제153a조와는 관계없이 - 적용배제 되지 아니한다.

c)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검찰청의 사법보조관(법원조직법 제152조)에
게 권한을 부여한 한, 법원조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때까지는 늦어도 1991.6.30. 까지이지만 내무부의 조직기관에도
위 권한이 부여된다.

d) 동독 형사법원의 판결에 기한 법적 결과의 집행은 허용된다.

다만 유죄판결이 법치국가적인 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법적결

과의 유형과 상한이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적합치 않거나 연방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보다 가벼운 방법으로 집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집행방법에 대한 확인신청은 유죄판결을 받은자 또는 검찰이 제기할 수 있다. 파기절차가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수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청에 대하여는 기준 h)에 의하여 파기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이 결정한다. 제458조 제3항 제1문, 제462조 제1항 제1문과 제2항은 준용된다.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청은 집행의 연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e) 내독간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도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 f) 동독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벌금형의 집행과 벌금형 환형 유치형의 확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종래의 동독법이 적용된다.
 - aa) 벌금형 환형유치형의 확정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 또는 청년(Heranzwachsenden)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bb)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절차법(1975.3.20. 동독형사소송법에 대한 제1차 시행규정 제23조 제3항 제1문, 법률관보I 15호 285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법징수규정정(Justizbeitrübungsordnung)을 적용한다.
 - cc) 3월 이내의 벌금형 환형유치형도 선고될 수 있다.
- g)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검찰청에 제기한 재심청구는 재심절차에서의 재판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 법원이 가입의 효력발생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재심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은 공판이 종결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재심신청을 허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h) 검찰과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991.12.31. 까지 동독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파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하여는 지구법원이 재판

한다. 지구법원이 그 사건을 이미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지구법원이 재판한다. 지구법원의 특별부는 업무년도 시작전에 각 지구법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한다. 1990.6.29. 공고된(법률관보I 39호 526면) 파기절차에 관한 동독 형사소송법의 규정 - 제311조내지 제327조 - 은 제313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규준하에 적용된다 :

- aa) 제361조는 준용한다.
 - bb) 유죄판결을 받은자와 제361조에 규정된 자의 파기신청은 의견개진을 구하기 위하여 송부한다.
 - cc) 파기법원은 검찰청의 동의 없이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dd) 파기법원은 신청에 관한 제349조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다.
 - ee) 제23조 제2항은 준용한다.
 - gg) 절차의 비용에 관한 재판에는 제7권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ff) 파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i) 사면권은 동독법원이 연방의 재판권에 속한 사건을 판결하였을 때에는 연방에도 귀속한다.
- j) 규준 d)에 의한 법원의 중국판결은 연방 검찰청장 - 연방중앙 등록청 - 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적 결과의 집행을 원재판 그대로 또는 좀더 가벼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연방검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죄판결이 아직 연방중앙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의한 등록은 중국판결의 확인에 따라 행하여 진다. 법적 결과에 관한 이제까지의 동독 형벌등록부에서의 등록은 법적 결과의 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선고되었을 때에는 연방중앙등록부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미 연방중앙등록부에 등록된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등록에 관하여는 연방중앙등록법의 적용에 따라 독일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의 등록과 마찬가지로 연방중앙등록법을 적용한다.

k) 이유를 명시한 파기신청(규준 h)에 있어서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제기되어 판결에 의하여 취소, 변경되거나 사건이 환송된 경우에는 이를 연방검찰총장 - 연방중앙등록청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파기재판에서 무죄선고로 인하여 취소된 판결에 근거한 이제까지의 동독 형벌등록부에의 등록은 연방중앙등록부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등록되었을 때에는 연방중앙등록부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환송된 파기판결에 근거한 결정은 연방중앙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이 제기된 판결에서 선고된 법적결과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불복이 제기된 판결이 이미 동독형벌등록부로부터 연방중앙등록부로 이관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등록에는 재심절차의 등록법상의 처리에 관한 연방중앙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1986.2.20. 개정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 I 301면) 중 다음 각호의 기준
 - a) 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제95조 내지 제104조)항고는 제10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b) 가입의 발효전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계류된 토지에 대한 집행은 1990.6.6. 동독토지집행규정(법률관보 I 32호 288면)에 의하여 처리된다.
16. 1986.7.7. 개정된 사법징수법(연방법률관보 I 977면) 중 다음 기준 가입의 발효전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개시된 몰수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7. 파산법의 개정에 관한 법 시행법 제4조중 다음 각 호의 기준
 - a) 이 규정의 파기절차는 공동집행규정(Gesamtvollstreckungsordnung) (부록 II 제 III 장 업무영역 A 제 ii 절 제 1 호)에 의한 절차일 수도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법이 공동집행 규정에 의한 절차의 제한이나 배제를 규정할 경우에는 파산 절차의 허용에도 적용된다.
 - b)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법이 파산절차의 제한이나 배제를 규

정할 경우에는 공동집행규정에 의한 절차의 허용에도 적용된다.

18. 1985.3.8. 독일 - 오스트리아 파산조약시행법(연방법률관보 I 780면, 연방법률관보 I 535면) 중 다음 기준

이 법의 규정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절 제1호)은 공동집행규정의 적용영역내에서는 공동집행절차에도 적용된다.

19. 1989.6.15. 개정된 법원비용법(연방법률관보 I 1082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

a) 비용부담자가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내에 통상재판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규정의 효력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20/100으로 할인된다.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후순위자로 청구받은 다른 비용부담자에 대하여도 할인에 관한 규정이 확장 적용된다. 제11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b) 액수산정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규정에 의하여 최저액 또는 의제가액이 결정되면 법원은 개별적인 경우 특히 사건의 의미와 범위, 당사자들의 재산과 수입관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3까지 하향조정할 가액을 확정할 수 있다.

c) 파기절차에서는 형사 상고심절차에 관한 비용목록 규정(재판 비용법에 대한 부록 I)이 준용된다.

d) 제73조 제1항과 제3항은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이법의 시행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질서위반법과 행정법에 의한 형사사건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비용에 관하여 그 절차가 이 법시행 이전에 계류중인 때에는 종전의 법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이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된 상소에 관한 절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1990.6.25. 개정된(연방법률관보 I 1163면) 비용법 중 다음 기준

a)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거주지 또는 본사 소재지, 상사회사에 있어서는 회사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비용부담자를 위하여 20/100으로 할인된다. 제33조

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144조 제3항은 준용된다.

- b) 지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 c) 연방법으로서 계속 적용되는 동독 규정이, 비용법이 가입전에 이미 적용되었던 지역에서 연방법규정으로서 수수료와 비용의 면제를 예상하고 있는 한 동독법의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d) 제19조 제4항에 의한 농업 및 임업재산의 사정에 관하여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재산사정을 위한 조정법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 및 대지는 농업 및 임업재산에 속한다. 사정법 제126조 제2항은 이를 준용한다.
 - e) 제161조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이 법의 시행에도 적용된다.
21. 1980.8.18. 개정된 비용법규정의 개정과 보충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 I 1503면)중 다음 규준지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22. 1986.12.9. 개정된 사법행정 분야에서의 비용에 관한 규정(연방법률관보 I 1503면)중 다음 규준
- a) 사법행정 비용에 관하여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각주의 사법행정사건에 있어서 주법규정을 시행할 때까지는 연방사법기관에 적용되는 사법행정비용규정을 준용한다.
 - b) 제16조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이법의 시행에도 적용된다.
23. 1990.6.26. 개정된 집달관비용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 1163면)중 다음 규준
- a)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20/100으로 할인된다.
 - b) 가입의 효력발생 이전에 만기가 된 수수료와 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이 적용된다.
24. 1986.12.9. 개정된 명예판사의 보상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 I 2326면) 중 다음 규준
- a)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보상과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확

정된 최고액은 20/100으로 할인된다. 제1문에 의한 보상이 적당치 않을 때 보상은 개별적인 경우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법의 최고율까지 확정될 수 있다.

- b)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보상요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은 종전의 법에 따른다.

25. 1989.6.8. 개정된 증인과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법(연방법률 판보 I 1026면)중 다음 기준

- a) 제2조 제3항 제2문, 제3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문, 제17조, 제17a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상과 제2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 제2문에서 확정된 최고액은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주거 또는 소재지를 가진 당사자에게는 20/100으로 할인된다. 보상은 제1문에 의한 보상이 적당치 않을 때에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이법의 최고율까지 확정될 수 있다.
- b) 제18조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이법의 시행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26. 1990.8.20. 개정된 연방변호사 수수료법(연방법률판보 I 1765면)중 다음 기준

- a)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그의 사무소를 설치한 변호사의 활동에 관하여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20/100으로 할인된다. 변호사가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거주지나 소재지를 가진 당사자의 위탁으로 인하여 활동할 경우에 그 수수료는 같은 방식으로 할인된다. 제11조 제2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 b) 지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
- c) 제83조, 제85조, 제86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절차와 동일하다.
 - aa) 지구법원의 제1심 절차는 제8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상응하는 절차, 구법원에서의 절차는 제83조 제1항 제3호의 절차
 - bb) 지구법원의 항소심절차는 제85조 제1항에 상응하는 절차
 - cc) 지구법원의 상고심절차는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상응하는 절차

- d) 파기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사건 상고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e) 제134조는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이법의 시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27. 그 밖에 다음의 일반적인 기준이 비용법에 적용된다.

연방법무장관은 법규명령에 의하여 재판비용법, 비용법, 집달관비용에 관한 법, 명예판사의 보상에 관한 법, 증인과 감정인 보상에 관한 법, 연방변호사 수수료법에 대한 기준 a)에 정한 할인율을 경제사정에 따라 새로 확정하거나 폐기할 권한이 있다. 법규명령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과 관계될 때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8. 그 외에 제1번 내지 제27번(* 제Ⅲ절의 1번부터 27번까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a) 통일조약 규정된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1990.5.18. 국각조약에 근거하여 시행된 규정에 의하여 이지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서독법을 참조하도록 되어있는 때에는 동독의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 그 의미가 상호모순될 때에는 참조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준용된다.
- b) 계속 적용되는 동독법 규정에 의하여 더이상 준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참조하도록 되어있을 때에는 서독법의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 c) 다른법 규정에 의하여 통일조약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참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원규정 대신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d) 기준 a) 내지 c)는 규정이 특정 절차와 관련될 때에도 적용된다.
- e)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시행되는 규정에 의한 관직명 또는 절차명이 이지역 현행법에 의한 것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된 규정에 표기된 관직명 또는 절차명 대신 이지역 현행법에 표기된 관직명과 절차명을 사용한다.
내용상 서로 비교될 수 있는 표기에 있어서 서로가 상위할 때에도 동일하다.
- f)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서식은 조정된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 g)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계류중인 절차는 그 상태대로 시행된 규정에 의하여 계속 진행된다.
- h)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기산된 절차법상 기한은 동독의 현행법 규정에 따른다.
- i)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상소 또는 법률상의 구제수단을 이미 제기하였거나 제기하지 아니하여도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 또는 법률상 구제수단의 허용과 이에 대한 그후의 절차는 시행된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상소 또는 법률상의 구제를 이미 동독법 형식규정에 따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상위한 형식규정을 무효화 할 수 없다. 시행된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상소제기와 상소이유서 제출은 가입의 발효후 한달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시행된 규정에 의한 상소의 허가가 원심법원에 의한 결정에 따르게 할 경우에는 상소심법원은 상소허가의 당부에 관하여도 재판한다.
- j) 가입의 효력발생전에 동독법에 따라 허가에 의한 상소 또는 법률상 구제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규정에 의하여는 더이상 허가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각될 수 있을 경우, 상소 또는 법률상 구제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과 필수적인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소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k)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연방법의 시행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이제까지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관청은 이사건에 관한 현상태의 서류와 기록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 l)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계류중인 파기절차는 동독 절차법에 의하여 종결한다.

제 iv 절

서독기본법이 적용되는 검찰청, 행정재판권, 재정재판권, 노동재판권, 사회재판권을 포함한 통상재판권의 법원구조에 관하여는 제i절과 제iii절의 규

정과는 달리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1. 다음 법규정은 제i절과 달리 가입된 베를린주에도 적용한다 :

a) 1990.7.6. 개정된 연방변호사법중 다음 각 호의 기준

aa)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서 가입의 효력 발생일 현재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연방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동 변호사는 베를린 변호사회에 속한다. 동 변호사는 베를린주의 통상재판권을 가진 법원에 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의 효력발생이후 3개월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변호사 활동에 대한 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bb)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직 활동에 대한 자격이 있을 때에는 연방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

cc) 1990.2.22. 개인사무실을 가진 변호사의 활동과 허가에 관한 규정의 소멸시효(법률관보 1 17호 147면)는 가입의 효력발생 이전에 행하여진 직무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b) 1981.8.7. 개정된 연방공증인법중 다음의 기준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의 변호사는 법원에 의하여 허가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증인으로도 임명된다. 베를린주에서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개인사무실을 가진 변호사공증인으로 임명된 변호사는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연방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 공증인으로 임명된다. 동 공증인은 베를린공증인회에 속한다.

2. 다음의 법규령은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 대하여도 제iii절 소정의 기준없이 적용한다 :

a) 1972.9.19. 법원장 선출규정(연방법률관보 I 1821면)

b) 법원조직의 일원적 규율을 위한 규정

- c) 행정법원법(연방법률관보 I 2191면)
 - d) 재정법원법(연방법률관보 I 2496면)
 - e) 법률상담법(연방법률관보 I 2135면)
 - f) 변호사의 자유로운 실제적 직무수행의 경감을 위한 1977.3.22. 자 유
업공동체 이사회 준칙 시행법(연방법률관보 I 1479면)
 - g) 1980.6.18. 자 상담원조법(연방법률관보 I 1503면)
 - h) 비용법 규정의 개정과 보충을 위한 법(연방법률관보 I 1503면)
3. 제3절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법규령은 베를린주에서 다음과 같이 특
별규정이 적용된다 :
- a) 법원조직법(연방법률관보 I 1077면)중 이법과 관련하여 제 절 소정
의 기준 대신에 아래의 기준
 - aa)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의 판사는 가입의
발효전 최소한 3년이상 판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제23b조 제3항
제2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사판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bb) 제21f조 제1항은 독일법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12.31.까지 베를린 지방법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cc) 명예판사
 -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베를린에서 임명된 참심판사와 보조참심은
임명된 기간동안 명예판사직을 수행한다.
이들외의 새로운 참심판사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후보명
단(법원조직법 제52조 제6항)은 현행 참심판사 선출기간말까지
유효하다.
 - 제108조는 다음 기준으로 시행한다 :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베를린시 중부 지구법원 상사부에서 명
예판사로 활동했던자는 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1991.12.31.까지
베를린 지방법원 상사부의 명예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 사회법원법 제13조 제1항과 노동법원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
기준하에 적용된다 :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기본 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

서 노동 참심판사이었던 자는 관련협회나 직장의 추천으로 1991.12.31.까지 베를린 사회법원이나 노동법원의 명예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 행정법원법 제25조는 다음 규준하에 적용된다 :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베를린시 중부 지구법원의 행정부에 소속된 참심판사는 가입의 효력발생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현행 선출기간동안 베를린 행정법원의 명예판사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dd) 제III절 제1번의 법원조직법에 대한 규준 q)는 이를 준용한다.

ee) 제III절 제1번의 법원조직법에 대한 규준 y)와 z)는 아래의 규준하에 적용된다. 특별법원에 관할권이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 베를린 지방법원이 지구법원을 대신한다.

b) 독일법관법중 이 법과 관련하여 제III절에 규정된 규준을 대신 한 다음 각 호의 규준

aa) 베를린시 지구법원 또는 베를린시 법원에서 판사로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중인자는 베를린주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에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배석판사 다만 상급지방법원은 제외
- 베를린 노동법원의 판사
- 구법원의 판사, 다만 법원의 재판장은 제외

동판사는 견습판사의 지위를 보유한다. 견습판사로서 임명에 대한 요건은 1990.7.5.(법률관보 42호 637면) 동독법관법 제9조의 직업판사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다.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서 동독 법관법 제45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현직 판사만이 재판권행사의 권한을 보유하는 때에는 법무장관(Senator für Justiz)이 판사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견습판사직에의 임명을 결정한다.

bb) 베를린지방법원에는 1993.12.31.까지 2명의 견습판사 또는 위탁, 과견에 의한 배석판사로써 민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배석판사중

1명은 12개월 이상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독일법관법 제5조 이하에 의하여 판사직 자격을 가져야 한다.

- cc) 베를린 대검찰청 또는 베를린시 지구검찰청의 검사로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베를린주내에서는 지방법원 견습판사지위에 상응하는 복무관계를 가지고 검찰청 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자격요건은 1990.7.5. 개정된 1977.4.7. 동독 검찰청법(법률관보 I 10호 93면) 제35조 제1항에 의한 검사직에 대한 자격소지이다. 동독에서 해당위원회를 통한 검사들의 재심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판사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그 임명에 관하여 결정한다.
- dd) 기준 aa)에 의하여 견습판사로서 임명된 판사는 동독법관법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년전 퇴직을 시킬수 있다. 정년전 퇴직관계에 대하여는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의 판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 ee) 제iii절 동독법관법에 대한 기준 a), b), c), e), f), h), j), w), y)는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주에도 적용된다. 기준 a), b), c), e), h), w), y)aa), y)ee), y)ff), y)ii), z)aa)는 검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 베를린주는 훔볼트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시험절차를 현행 주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c) 1990.5.17. 개정된 민사소송법(연방법률관보 I 926면)중 다음 각 호의 기준
- aa) 제iii절 동독법관보에 대한 기준 a) 내지 기준 d)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bb)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의 법원으로부터 이송된 절차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달리된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심급이 끝날때까지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통한 당사자의 대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이송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었

을 때에는 심급종결 때까지 소송대리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 특정법원에 대하여만 변호사의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d) 1990.6.26. 개정된 비송사건에 관한 법(연방법률관보11163면)중 다음 각 호의 기준
- aa) 제iii절 제13호의 이 법에 대한 기준 a)와 c)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bb) 제iii절 제13호의 이 법에 대한 기준 d)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군의회에 계류중인 상업 등기 및 협동조합등기에 관한 사건은 서독기본법의 효력 범위내에서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관할을 가진 법원으로 이송한다.
 - cc) 제148조 제2항 내지 제158조에 의하여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 지역에 계류중이거나 앞으로 처리될 절차는 서독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었던 효력범위내에서 적용되는 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관할이 있다.
- e) 1990.7.9. 개정된 형사소송법(연방법률관보11354면)중 다음 기준 제iii절 제14호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준 h)에 의한 파기절차에 대하여 베를린주에서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지구법원을 대신한다.
- f) 1989.6.15. 개정된 연방비용법원중 다음 기준 제iii절제19번의 재판비용법에 대한 기준 b)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g) 1990.6.26. 개정된 비용법중 다음 기준제iii절 제20번의 비용법에 대한 기준 a)는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공증인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 h) 1990.6.26. 개정된 집달관의 비용에 관한 법중 다음 기준비용부담자가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에 그의 통상재판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20/100으로 할인된다. 강제집행에 필수적인 비용이 제1문에 규정된 할인으로 말미암아 집행 채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할인은 위탁자에게도 확장된다.

- i) 1990.8.20. 개정된 연방변호사 수수료법중 다음 규준제iii절 제26번의 연방변호사 수수료법에 대한 규준 b)와 c)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j) 제iii절 제28번에 언급된 일반적 규준은 베를린법원에 대한 다음의 경과규정으로 이를 보충한다.

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지역의 법원에 계류중인 절차는 가입의 효력발생일 현재 그 절차의 현상태 그대로 서독기본법이 이제까지 적용된 지역에 통용된 법에 의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상소와 법률상의 구제에 대한 관할은 신법에 따른다.

계류중인 파기절차의 처리에 관하여는 상소심 법원의 관할이 특별법원에 부여되지 아니한 한, 베를린지방법원이 지구법원을 대신한다.

- 4. 그밖의 제iii절의 제규준은 베를린주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 규준이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서 특별한 법원구조의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영역 B : 민 법

제 i 절

다음 각 호는 통일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의 시행으로부터 제외된다 :

- 1. 법원의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Ⅲ, 목록 402-4)
- 2. 1988.7.21. 최종 개정된 1970.6.27. 자 통상의 부양에 관한 규정(연방법률관보 1082면)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보충된다 :

- 1. 민법시행법(연방법률관보 1205면)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제 V 부 다음에 제 IV 부를 추가한다.

제 IV 부

통일조약 제3조 소정 지역에서의 민법과 민법시행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시행 및 경과규정

제 230 관

적용범위 : 시행

- (1)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는 민법 제616조 제2항, 제3항, 제622조 및 제1706조 내지 제17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그외에 민법 및 민법시행법률은 위 지역에 가입의 발효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의 규준에 따라 시행된다.

제 231 관

제 1 권 민법전 총칙

제 1 조

행위무능력등의 선고

확정된 행위무능력등의 선고는 계속 효력이 있다.

정신활동의 병적장애를 이유로 한 행위무능력 선고는 민법상의 정신미약을 이유로 한 행위무능력 선고로, 알콜남용으로 인한 행위무능력 선고는 민법상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행위무능력 선고로, 다른 환각물질 또는 약 물로 인한 행위무능력 선고는 민법상의 마약중독으로 인한 행위무능력 선고로 간주한다.

제 2 조

사 단(社團)

- (1) 가입발효이전에 사단에 관한 법률(법률관보 10호 75면)에 의하여 설립된 권리 능력있는 사단들은 계속하여 존속한다.
- (2) 위와 같은 사단들에 대하여 가입발효일로부터 민법 제21조내지 제79조가 적용된다.
- (3) 제1항에서 말하는 사단들은 가입발효시부터 “등록사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4) 1990.2.21.자 사단에 관한 법률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가입발효일로부터 민법 제54조가 적용된다.

제 3 조

재 단

- (1)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 설립된 권리능력 있는 재단들은 계속하여 존속한다.
- (2) 사법상 재단에 대하여는 가입발효일로부터 민법 제80조 내지 제88조가 적용된다.

제 4 조

법인의 동 기관에 대한 책임

민법 제31조 및 제89조는 가입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 5 조

물 건

- (1) 가입발효일 이전에 적용되던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산인 건물, 건조물, 부속건물, 임목, 시설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같은 대상물이 가입발효일 또는 그후에 설치 또는 장치 되었다 하더라도 가입발효일 이전에 성립된 토지사용수익권 또는 동독민법 제 312조 내지 제315조에 의한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허용된 것인 한 제1문이 적용된다.

- (2) 토지사용수익권 및 제1항 소정의 부속건물, 입목 또는 시설물은 건물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소멸시효

- (1)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은 가입발효일 현재 존속하고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소멸시효의 개시, 정지 및 중단은 가입의 발효이전 기간동안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 (2)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 적용되던 법규정에 의한 것보다 짧다면 가입발효일부터는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 적용되던 법규에 규정된 장기의 시효기간이 민법상 규정된 단기의 시효기간 이전에 만료된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장기의 시효기간의 만료로 완성된 것이다.
- (3) 제1항과 제2항은 권리의 주장, 취득 또는 상실의 기준이 되는 기간에 적용된다.

제 232 관 제2권 임무관계법

제 1 조 임무관계에 대한 일반규정

가입발효전에 성립된 임무관계에 대하여는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적용되어 오던 법이 기준이 된다.

제 2 조 임대차

- (1) 가입발효전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임대차관계는 다음 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입발효일부터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2) 임대인은 민법 제564b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 (3) 임대인은 민법 제564b조 제2항 제2호 제1문 소정의 정당한 이익(자기 수요)을 1992.12.31.이후부터 비로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해지권을 금지하는 것이 임대인의 주거수요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익들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도 정상화될 수 없는 가혹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1993.1.1.이전에는 임대인의 주거수요, 수리의 필요 또는 기타 이익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에만 임대인은 민법 제564b조 제4항 제1문에 따라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 (5) 임대인은 1992.12.31.까지 통고된 사무실 또는 영업적으로 이용된 나대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지가 임대인의 경제적 생활기초를 현저히 위협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대인이 해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때
 2.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지금까지의 차임보다 많은 차임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적정한 차임인상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3. 임대인이 관리비용의 할당에 동의하지 않을 때
4. 임대인에게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 요구된 차임이 동일한 종류 및 위치의 사무실공간 또는 지구에 대하여 시가를 고려하지 않고 형성된 당해지역에 통상적인 임차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임차인상은 제2문 제2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것이다. 임차인이 적정한 차임인상에 동의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을 때 당해지역에 통상적인 차임보다 더 많은 차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6) 제5항에 따른 해지의 고지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른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지통고서에 쓰여진 이유문이 고려된다.
그밖의 민법 제556a조 제2, 제3, 제5내지 제7항, 제564a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3b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08a조 제1항 제1문, 제708조 제7호 및 법원비용법 제16조 제3항, 제4항이 준용된다.
- (7) 민법 제5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지기간은 1994.1.1.이전에 고지된 해지에 대하여는 3개월 연장된다.

제 3 조

용익임대차

- (1) 가입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기한 용익임대차관계는 가입발효일 부터 민법 제581조 내지 제597조에 따른다.
- (2) 1990.6.29. 자 농업조정법(법률관보 42호 642면) 제51조, 제52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회복을 위한 경작지의 사용수익

- (1) 동독민법 제312조 내지 제315조에 따라 가입발효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한 사용수익관계는 동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이와 상이한 규정들은 특별법에 유보된다.

- (2)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받은 법규령령으로써 적정한 사용수익 대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
경작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당해지역에 통상적인 용익차임 수준까지의 대가는 적정하다. 법규령령에서 당해지역의 통상적인 용익차임의 조사, 대가 인상의 절차 및 인상시 해지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 (3) 소정원부속지내의 사용수익관계에 대하여 1983.2.28. 자 연방소정원법(연방법률관보 210면) 및 통일조약 부록 I 제 XIV 장 제ii절 제4번의 보유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 5 조

고용관계

가입발효일 당시 존재하는 고용관계에 대하여는 제230관과 상관없이 이 시점부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6 조

역급부에 관한 계약

민법전의 규정은 가입발효일로부터 발효당시 존재하는 부양 및 정비계약과 계속적 인적 용역급부에 관한 계약에 적용된다.

제 7 조

당좌계약과 저축계약

금융기관은 구좌보유자들에 대한 의사표시으로써 가입발효일 당시 존재하는 당좌계약과 저축계약에, 종전의 민법적용범위내에서 그와같은 계약에 적용되어왔던 보다 구체적인 일반거래 조건을 포함한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구좌보유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소비대차계약

1990.6.30. 이후에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는 민법 제609a조가 적용된다.

제 9 조
지분공동체

가입발효일 당시 존재하는 지분공동체에는 발효일부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0 조
불법행위

제823조 내지 제853조의 규정들은 가입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범한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 233 관
제3권 물권법

제 1 조
점 유

가입발효일에 존속중인 점유관계는 발효일부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 조
소유권의 내용

- (1) 가입발효일에 존속중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아래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발효일부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2) 종전의 인민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누가 인민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취득할 것인가는 인민재산의 청산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제한물권의 내용 및 순위

- (1) 가입발효전일 물건 또는 권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던 권리들은 아래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종전의 법에 따른 내용과 순위로 존속한다.
- (2) 그러한 법적관계에 대한 사후의 청산, 민법 및 부수법률에의 조정, 변경된 관계로의 조정은 유보되어있다.
- (3)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의 소멸은 그 권리가 토지등 기부에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래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용익물권 및 건물소유권에 대한 특별규정

- (1) 동독민법 제288조 제4항 또는 제292조 제3항에 따른 건물 소유권에 대하여는 가입발효시부터 민법 제927조, 제928조를 제외하고 토지관계 규정들이 준용된다.
- (2) 동독민법 제287조 내지 제294조에 의거한,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사용수익권은,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허용된 자택 또는 기타 건물이 공신력을 위한 기준시점에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별도의 입법 조치시까지 토지등기부의 공신력에 관한 민법규정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한이 부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취득자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수익권을 소멸, 변경하였을 때 이용권리자에게 발생하

는 손실보다 그 존속으로 인한 손해가 현저하게 큰 때에는 정당한 사용 수익권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의 보상을 대가로 사용 수익권의 소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소유권 기타 권리의 취득시 토지등기부의 공신력을 위한 기준시점 당시에 사용수익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른 법규명령에 기하여 건물등기부용지가 부여 되는 건물소유권이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과 공존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제 5 조 공동사용수익권

- (1) 동독민법 제321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제322조의 공동사용수익권은 그 성립에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한이 부가된 토지에 대한 권리와 같다.
- (2) 가입발효일 이전에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제한이 부가된 토지 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들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권리들은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하여도 별도의 입법 조치시까지 토지등기부의 공신력에 관한 민법규정에 불구하고 존속한다. 제한이 부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다른 권리의 취득자는 이러한 경우에 공동사용수익권이 소멸, 변경되었을 때 권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보다 공동이용권의 존속으로 인한 손해가 현저하게 큰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의 보상을 대가로 공동사용수익권의 소멸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동사용수익권의 소멸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자가 제한이 부가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등기부의 공신력을 위한 기준시점 당시에 공동사용수익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로 간주되는 공동사용수익권은 가입

발효전일에 적용되는 규정상으로는 등기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다.

제 6 조 저당권

- (1) 가입발효일 당시 존속중인 동독민법에 따른 저당설정 요구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민법의 보전저당의 양도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된다. 이러한 저당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민법 제1183조 및 토지등기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준외에는 위와같다. 저당권의 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은 이러한 저당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동독민법 시행 이전의 저당권, 토지채무, 정기토지채무의 양도 기타 그러한 권리들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법의 상응하는 규정들이 적용된다.

제 7 조 가입발효일에 미확정인 권리변동

- (1) 토지소유권의 양도는 가입발효일이전 등기신청되었을 때에는 민법이 아니라 가입발효 이전에 시행되던 법규정들이 적용된다.
건물소유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2) 가입발효일 이전에 시행되던 규정에 따른 권리는 그에 따른 등기부예의 등기가 필수적이고 가입발효 이전에 등기소에 신청이 된 때에는 가입발효일 이후에도 그 규정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그러한 권리에는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문에서 표시된 종류의 권리에 관한 처분행위의 등기신청이 가입발효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가입발효 이전에 시행되던 규정들이 적용된다.

제 8 조

동독민법제459조에 기한 권리관계들

구동독민법 제459조 및 그 시행을 위한 규정들에 기한 권리관계와 청구권이 가입발효전일 존재하는 한 동 권리관계와 청구권들은 제2조 및 그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또는 청산에 관한 장래의 규정을 유보하고서는 그대로 존속한다.

제 234 관

제4권 가족법

제 1 조

기본원칙

민법전 제4권의 규정은 이하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가입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가족법 관계에 적용된다.

제 2 조

약 혼

약혼에 관한 규정들은 가입발효전에 체결된 약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일반적인 혼인의 효력

- (1) 가입발효 이전에 혼인계약서에 서명하고 혼인체결 당시의 유효한 법률에 따라 민법 제1355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 상응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부부는 가입발효 이후 1년내에 남편의 성 또는 부인의 성을 따를 것인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무효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편이 가입발효 이전 혼인체결당시의 성을 혼인 후의 성에 추가한 경우에는

1. 부부가 제1문에 따라 남편의 출생성을 혼인 후의 성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추가된 성은 삭제되고,
 2. 남편은 가입발효후 2년경과시까지 추가된 성 대신에 그의 출생성을 전치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355조 제3항은 혼인체결 당시의 자신의 성이 혼인 후의 성으로 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제1항 제1문에 의한 성의 변경은 자신의 부모의 성변경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 14세 이상의 자녀의 출생성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녀는 자신에 의하여서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사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전의 출생성이 자녀의 혼인후 성으로 된 경우 제1항 제1문에 따른 성의 변경은 부부가 제2항 제1문에 따라 공동으로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혼인후의 성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항 제1문, 제3문에 따른 의사표시는 1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집행한다.
- (3)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사표시에는 공증이 필요하다.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호적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한다. 그 의사표시는 호적담당공무원에 의하여도 인증되거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 (4) 혼인후의 성을 변경하는 의사표시의 수령은 부부의 가족등록부를 취급하는 호적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가족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등록부를 취급하는 호적 공무원이 권한이 있다. 호적공무원은 의사표시를 근거로 자신이 취급하는 호적부에 등록한다.
- (5) 출생시 성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권은 출생등록부를 취급하는 호적공무원에게 있다. 그의 의사표시를 근거로 출생등록부에 등록한다.
- (6) 부부가 이법의 적용범위밖에서 혼인을 체결하였고, 가족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베를린의 호적관청의 호적공무원이 이를 관장한다. 호적공무

원은 의사표시를 기초로 등록이 행해지는 호적부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 의사표시를 한 자 및 기타 그 의사 표시의 이해관계인에게 의사표시의 수령 및 효력에 관한 증서를 교부한다. 자녀의 출생이 이법의 적용 범위밖에서 문서화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7) 연방내무장관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연방법무장관과 협의하고 연방 상원의 동의를 받아 이 의사표시의 세부적 처리와 호적공무원의 통지의무에 관한 행정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제 4 조 부부재산권

- (1) 부부가 가입발효일에 동등 가족법의 소유 및 재산공동체라는 법정재산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부부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한 이 시점부터 잉여공동체라는 법정재산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2) 이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혼하지 아니한 이상 가입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군법원에 종전의 법정부부재산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411조는 준용한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확장적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부부는, 상호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부상호간 또는 그 일방과 제3자간의 확장적용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원래의 부부재산제의 원상회복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다.
- (3) 모든 군법원은 제2항에 의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의사표시는 문서로 작성되어 공증을 받아야 한다. 부부가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군법원은 직권송달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른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 송달에 대하여 비용법 제137조 2호에 의한 비용은 징수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와 함께 부부재산제 등기부예의 등기신청이 결합되어진 경우, 군법원은 그 신청을 의사표시와 함께 등기법원에 넘겨야 한다. 의사표시에 기하여 계속 적용되는 법정부부재산제는, 배우자의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부부재산

제등기부에 등기될 수 있다. 단지 배우자의 일방에 의해서 신청된 경우에는 등기법원은 등기를 하기 전에 타방배우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의 절차에는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 (4) 제1항의 경우들에 있어 가입발효일까지 취득되어 공유하는 소유권과 재산의 분할에는 동독가족법 제39조가 준용된다.
- (5) 가입발효일 전에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공유하는 소유권과 재산의 분할, 그리고 이혼후 혼인상의 주거의 결정에 관하여 종전의 법에 계속 적용된다.
- (6) 제2항에 따른 의사표시와 부부재산등기부예의 신청의 공증 및 부부재산제등기부예의 등기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5,000DM이다.

제 5 조

이혼한 배우자의 부양

가입발효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일방의 부양청구권은 종전의 법이 계속 적용된다. 부양에 관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

제 6 조

연금등의 지급

사회법전 제6권의 보험 및 연금규정 -법정연금보험- 의 원칙적인 발효 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이혼하였거나 이혼하는 부부에 대하여는 연금등의 지급에 관한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시점 이후에 이혼된 경우라도, 분배요구가 가입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산분배에 관한 유효한 합의나 재판의 대상 또는 기초였을 때에는 연금등의 지급은 행해지지 않는다.

제 7 조

혈 통

- (1) 가입발효일전에 내려진 확정된, 모의 배우자가 자의 부가 아니거나, 누구가 그 자의 부 또는 부자관계의 인지가 무효라는 등의 재판은 계속 유효하다. 1966.3.31. 이후 가입발효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부자관계의 인지도 동일하다.
- (2) 자의 친생 또는 부자관계의 인지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 다를 권리가 있는 자가 종전의 법에 의하면 소권이 없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가입의 발효이전에는 개시되지 않는다.
- (3) 가입발효전에 친생관계가 다투어지거나, 부자관계 인지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후 가입발효전에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소송이 더이상 원고에 의하여 제기될 수 없거나, 피고를 상대로 할 수 없다면, 소재기시부터 가입의 발효시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서 언급 한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4) 제1항 소정의 재판 또는 의사표시 이외의 것으로서 종전의 법에 따르면 부자관계 확인의 효력을 가지는것은 제1항 제2문의 부자관계 인지와 동등하다.

제 8 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연금의 조정

- (1) 민법 제1621a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백분율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는 주정부의 법규명령(조정규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기전에 제1문에서 언급한 지역의 나머지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주정부는 위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 (3) 연방정부가 이 지역에 민법 제1621a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백분율을 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4) 조정규정 시행후 두번째되는 달의 시작 이전의 시점을 위해 민법 제1621a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조정이 요구될 수 있다.

제 9 조

혼인외의 자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

- (1)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는 민법 제1615f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통상의 필요비는 각 주정부의 법규명령으로 규정될 수 있다. 주정부는 위 사항을 규정하기전에 제1문에서 언급한 지역의 나머지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상의 필요비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통상의 필요비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지역적인 상이에 따른 생계 유지비의 차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2) 주정부는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3) 연방정부가 이 지역에 민법 제1615f조 제2항에 따른 통상의 필요비를 규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부모와 자 사이의 일반적인 법률관계

가입의 발효전에 태어난 자녀의 가족명은 가입발효시까지 나타난 성명권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종전의 법에 따라 정한다.

제 11 조

부모의 보호임무

- (1) 부모의 보호임무는 가입의 발효일 현재 종전의 법에 의하여 교육권을 가지는 자에게 속한다.

가입발효이전의 날에 혼인외의 자의 부 또는 모 이외의 자에게 교육권이 있었던 경우에는, 동인은 단지 후견인으로서의 법적지위만을 가진다.

- (2) 법원 또는 행정관청이 부모의 보호임무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내린

재판, 확인 또는 조치들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1674조 제2항과 제1696조는 그러한 재판, 확인 또는 조치 변경에 준용한다.

- (3) 법원이 가입발효전에 내린 이혼판결에서 부모의 교육권에 관하여 부부가 1년이 경과할때까지 교육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정이나 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671조가 준용된다.
- (4) 자가 부모에 의하여 또는 부모의 양해하에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수용된 경우에는, 가입발효시부터 민법의 규정이 그 수용에 적용된다. 부모는 가입발효후 즉시 수용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수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늦어도 가입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용이 종료 된다.

제 12 조

혼인외의 자의 적격취득

- (1) 민법 제1740e조 제1항 제1문의 기간은 가입발효이전에는 개시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입 양

- (1) 가입발효전에 성립된 양친자관계에는 민법 제1755조 제1항 제2문, 제1756조, 제1760조 제2e항과 제1767조 내지 제177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입발효일 이전에 혼인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176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가입발효 이전에 내려진 양친자관계를 취소하는 재판은 그대로 유효하다. 가입발효전에 내려진 같은 내용의 국가기관의 결정도 동일하다.
- (3) 가입발효전에 자나 부모중 일방의 동의가 없이 성립된 양친자관계는 동의를 종전의 법에 의하여 필수적인 경우 그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 (4) 양친자관계가 가입발효전에 성립되고, 아래의 이유에서 종전의 법에 의

하여 부모중 일방의 동의가 요구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1. 부모중 일방이 상당기간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거나
2. 부모중 일방의 소재가 파악될 수 없었을 때 양친자관계는 그 부모중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민법 제1761조는 준용된다. 입양시로부터 아직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지 1년내에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문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모중 일방이 다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그 기간이 개시된다. 제1문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부모중 일방이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입양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된 때로부터 기간이 개시된다.

- (5) 가입발효일 이전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고, 부모중 일방의 교육권이 박탈되어 종전의 법에 의하여 그의 사전동의를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양친관계는 그 부모중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민법 제1761조의 규정은 준용된다.

위 신청은 가입발효일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하다.

- (6) 가입발효일전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되고, 동의 거부가 자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모중 일방의 동의가 대리행사된 경우, 제5항이 준용된다.
- (7) 친부모중 일방의 양친자관계 취소소송에 있어서 가입발효일 현재 확정판결이 항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은 양친자관계의 취소신청으로 간주된다.

민법 제1762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4 조

후 견

- (1) 가입발효일부터 기존의 후견과 잠정적인 후견에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2) 종전의 후견인 선임은 유효하다. 부부가 동독 가족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으로 후견인에 임명되었다면 공동후견의 장에서 민법 제

1678조 제1항 제1문이 준용된다.

- (3) 소년보호소나 가족공증인 자신이 후견을 할 경우에 이들은 관청에 의한 후견으로 계속 시행된다.
- (4) 피후견인의 금전의 투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1992.1.1. 부터 적용된다.
- (5) 가입발효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및 이시기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에 관한 후견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이 적용된다.
- (6) 제11조 제4항은 준용된다.

제 15 조 보호제도

- (1) 기존의 보호제도는 가입발효일에 민법에 따른 상응하는 보호제도로 된다.
- (2) 제14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준용된다.

제 235 관 제5권 상속법

제 14 조 상속관계

- (1) 피상속인이 가입발효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의 법이 상속관계의 기준이 된다.
- (2) 혼인외의 자가 가입발효일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중의 자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1934a조 내지 제1934e조, 제2338a조에 갈음하여 적용된다.

제 24 조

사인처분

피상속인이 가입발효후에 사망한 경우라도 가입발효전 사인처분의 작성 또는 취소는 종전의 법에 따라 판단된다. 유언이 가입발효전에 한 것인 이상 공동유언의 피상속인의 의무에도 위와 같다.

제 236 관

시행법 : 국제사법

제 1 조

완결된 사건

가입발효전에 완결된 사건에는 종전의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제 2 조

가족법관계의 효력

가족법관계의 효력은 가입발효일로부터는 제I부 제II장의 규정이 기초가 된다.

제 3 조

부부재산제

1. 가입발효전에 체결된 혼인의 부부재산법적인 효력은 이날부터 제15조를 기초로 한다. 그 경우 가입발효일이 혼인체결시점을 대신한다. 다만 제1문에 따른 적용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의 부부재산제의 종료를 이유로 한 청구권들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들은 가입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예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통일조약 제3조 소정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상의 연금보험이나 비견가능한 보험제도의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취득된 청구권과 관련한 연금등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의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제 1 조

- (1) 배우자의 일방이 통일조약 제3조 소정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상의 연금보험이나 비견가능한 보험제도의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민법 제1587조 제1항의 청구권을 취득하고, 동 청구권에 외국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연금등의 지급은 정지된다. 민사소송법 제628조 제1항이 준용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고려하지 않고는 분할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
 2. 제2항 제1문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
이때에는 제2항 제2문의 잠정적인 연금등의 지급이 시행된다.
- (2) 민법 제1587g조 제1항 제2문 또는 연금등이 지급조정에 관한 법률 제3a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정지된 연금등의 지급이 신청에 의하여 다시 계속된다.

이 경우 잠정적인 연금등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과 함께 적용되는 재무법상 연금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들에 따른다.

1. 제1항 소정의 청구권은 민법 제1587a조의 원칙들을 고려하여 조정되고, 적정하게 조정된다.
2. 민법 제1587g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연금등의 지급조정에 관한 법률 제3a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유족부조는 연금등의 지급조정에 관한 법률 제3a조 제1항에 따른 조정연금에 산입한다.
해당 권리자에게 민법 제1587g조에 의한 조정연금외에 부양금도 지급되는 한, 조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 (3)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제53b조 제2항은 잠정적인 연금등의 지급에 준용된다.
- (4) 연금등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잠정적인 연금등의 지급이 행하여진 경우, 사회법전 제6권의 보험-연금법 규정이 통일조약 제3조 소정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시행되면 연금등의 지급은 다시 재개한다.

제 2 조

제1조에 의한 연금등의 지급정지 또는 잠정적인 연금등의 지급의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보험에 대하여, 통일조약 제3조 소정 지역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법률상 연금보험담당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권리자는 연금등의 지급시 년금보험담당기관이 종전의 기본법 적용지역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혜자로 간주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피용자보험청에 보험가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리자가 보험가입된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보험기관은 보험을 종래 기본법의 적용지역에서 적용되어온 법률상 년금 보험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며, 광산근로자 보험금고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 Ⅲ 절

연방법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시행된다.

1. 토지등기법(연방법률관보 1142면)

- a) 토지등기부는 차후 연방에 의한 입법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가입발효 이전의 관할기관 또는 주법상 인정된 관할청(토지 등기소)에서 관장한다. 토지등기소 공무원의 관할은 가입직전의 관계규정 또는 주에 따라서는 그 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들은 필요한 서명의 수 및 토지구성부분에 어느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된다.

- b) 제2조 소정의 토지에 대한 공무소의 색인은 가입직전의 토지를 특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색인이거나 그를 대신하는 색인이다.
 - c) 가입당시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는 토지등기부는 토지등기법상의 토지등기부로 간주한다.
 - d) 가입직전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건물등기부용지가 작성되는 한, 이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토지등기부상에 건물등기부 용지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같다.
 - e) 토지등기법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토지등기부를 법원에서 관할하지 않는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34조가 보충적으로 준용된다.
 - f) 가입전 토지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당시의 절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g) 그 외에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28번 이하에서 언급된 일반적 규준이 준용된다.
가입일 현재 계류중인 이의절차는 향후 이의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한다.
2. 토지등기법시행규정(연방법률관보 1310면) : 제7조 내지 제17조의 규정만이 적용된다.
 3. 토지등기제도 영역에서의 처분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986면) : 제26조 제28조만이 적용된다.
 4. 토지등기부의 설치 및 작성에 관한 일반예규(연방법률관보 1025면)
 - a) 제43조 내지 제53조는 계속 적용된다.
 - b) 토지등기부의 설치는 당분간 가입직전의 관계규정 또는 주에 따라서는 그 후에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그 외에는 토지등기부의 작성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토지등기예규가 준용된다. 법률관계가 충분히 명확하게 되지 아니하거나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토지등기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 c) b)에 따라 토지등기예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대신 가입직전의 관계규정 또는 주에 따라서는 그 후에 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중인 연방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기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이러한 규정 또한 이와 같다. 가입발효일 전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권리나 각서는 토지등기예규를 준용하여 등기할 수 있다.

- d) c)에 있어서 토지권 등기부의 설치 및 작성, 지상권에 저당증권, 토지채무증권, 정기토지채무증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토지등기예규 제 56조, 제57조 및 제59조를 다음과 같은 표준하에 준용한다. 즉 제 56조에 규정된 신청자료는 표제의 앞 뒷면에 등기한다. 용지번호가 부여된 표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토지등기예규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된 표현인 “지상권등기부”를 토지등기부 용지의 1면 머리부분의 상응한 장소에 기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서 토지등기예규의 다른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는 한, 예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등기예규 규정대신 토지등기부의 설치 및 작성에 관한 상응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주거소유권의 등기조치에 관한 예규(연방법률관보 1025면)

- a) 토지등기예규의 규정이 참고로 되지만 토지등기예규의 확장 적용에 관한 표준에 따라 예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토지등기예규규정대신 토지등기부의 설치 및 작성에 관한 상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에서 규정된 신청서류는 이 경우 표제의 앞 뒷면에 등기한다.
- b) 용지번호가 부가된 표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제2조에서 언급한 표현을 토지등기부용지의 1면 머리부분의 상응한 장소에 기재한다.

6. 선박등기법(연방법률관보 1221 면)

- a) 각 주에서 관할등기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는 해상선박등기는 로스톡 군법원에서, 내수항행선박등기는 막데부르크 군법원에서 영업한다. 종전의 등기관청에 의한 선박건조등기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주정부는 선박등기법 제1조의 기본원칙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법규명령으로 제1문에서 말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주법무행정당국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b) 가입직전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선박등기부용지, 선박건조 등기부용지는 선박등기법상의 등기로서 유효하다.
- c) 가입일 현재 등기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선박서류를 제출한다. 선박등기법 제63조는 여전히 적용된다. 새로운 서류를 처음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면제 된다. 선박서류에 명시된 자료가 b)에 따른 I 장의 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선박서류에서 제거하거나 등기상 상응한 자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 d) 가입전 규정에 따라 등기를 종료한 선박기구, 기계 및 건조 중의 선박은, 선박등기법 제3조 제2항 제1문 소정의 해상선박 또는 선박등기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등기가능한 내수항행 선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조중인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66조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등기된 상태로 둘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된 선박 또는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e) 그외에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28번이하의 일반적인 규준이 준용된다.
가입일 현재 계류중인 이의절차는 향후 이의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한다.

7. 선박등기법 시행규정(연방법률관보 934면)

- a) 선박등기, 건조중의 선박등기 및 등기서류는 선박등기법에 대한 규준에 따른 관할 로스톡 군법원 또는 막대부르크 군법원에 원본 그대로 송부된다. 선박등기법 시행규정 제12조 제1항 내지 제5항은 이와 같은 관할변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가입전 제출된 등기용지에 대하여 이로써 법적관계가 회복 되고, 혼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의 발효후 새로운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선박등기법 시행규정 제13조의 규준에 따라 새로운 등기를 할 때는 등기용지를 대체할 수 있다.
등기용지를 새로 제출할 경우에 제1문의 요건하에 1991. 12. 31.까지는 기존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기관청에 관한 표시 또는 기타 기존표시는 정정할 수 있다.

- c) 가입일 현재 선박등기부에 등기된 선박에 대한 새로운 선박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입이전에 작성된 등기용지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선박등기법 시행규정 부속문서상의 기존양식과 달리 할 수 있다.
8. 제조물책임법(연방법률관보 198면) 가입일 또는 그 이후 거래된 제조물에 한하여서만 적용된다.
9. 실종법(연방법률관보 1142면) 및 실종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a) 이 법률들의 규정은 가입의 발효전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이미 개시된 절차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절차는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적용되어 왔던 법률에 기하여 종료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 b) 가입전 행하여진 사망선고의 효력은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적용되어 오던 법에 따른다.
10. 등기 선박 및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1513면)
- a) 민법시행법률 제233관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2항은 준용된다.
 - b) 가입당시 존재한 저당권의 양도 및 말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준하에 선박 및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말소를 위하여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저당권 포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그러한 저당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혼인법(연방법률관보 1142면)
- a) 혼인법 제1조 내지 제21조, 제28조 내지 제37조는 가입 이전에 이루어진 혼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혼인의 효력은 종전의 법에 따른다.
 - b)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무효의 효과는 혼인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다.
가입의 발효전 혼인이 이미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c) 혼인이 가입전에 이미 무효로 선고된 경우에는 무효의 효과는 종전

의 법에 따른다.

부양청구권에 대하여는 가입전 이혼한 배우자의 부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가 혼인시 혼인의 무효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부양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d) 배우자중 일방이 가입의 발효전 사망선고된 경우, 혼인의 종료는 종전의 법에 따른다. 다른 배우자가 새로운 혼인을 개시한 후 사망선고된 배우자의 생존으로 말미암아 가입의 발효전 후의 혼인관계도 해소된 경우 사망선고로 종료된 혼인의 복구는 종전의 법에 따른다.

12. 현금가치규정(연방법률관보 2261면)

민법시행법률 제234관 제6조가 준용된다.

13. 연금등의 지급조정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261면) 민법시행법률 제234관 제6조가 준용된다.

14. 책임법(연방법률관보 145면) 가입일 또는 그 이후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업무영역 C : 형법과 질서위반법

제 i 절

다음 각호는 통일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의 시행으로부터 제외된다 :

1. 제5차 형법개정법률(연방법률관보 1213면)
2. 1953.12.23. 자 내독간 형사사법공조법 시행규정(연방법률관보, 목록 312-3-1)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 개정 또는 보충된다 :

1. 형법전 시행법률(연방법률관보 393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제1관 다음에 제1a관과 제1b관을 추가한다.

제 1a 관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

형법상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

1. 범죄자가 가입의 발효전에 이미 형법이 적용되었던 지역에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위를 한 때
2. 범죄자가 전호의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가진때

제 1b 관 국제형법규정의 적용

외국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독일형법이 적용되고 동시에 이 법의 적용 영역에서 상이한 형법이 적용될 때에는 범죄자가 그의 생활근거를 가진 곳에서 시행되는 법규정이 적용된다.

b) 형법전 시행법률 제315관은 다음과 같다 :

제 315 관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

- (1) 가입발효전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형법 제2조가 적용된다. 즉 범행시 유효한 동독의 법에 따라 자유형, 보호관찰의 선고나 벌금형에도 처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면제한다.

자유형에 부가하여 보안감호수용이나 형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행장감시는 명하여지지 않는다 가입발효전에 행하여진 행위를 이유로 형법 제68f조에 따른 행정감시는 행하여지지 않는다.

- (2) 형법의 벌금형(제40조 내지 제43조)에 관한 규정은 이하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가입발효전 동독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벌금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되 전체적으로 종전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고한도를 초과

- 할 수 없다. 최대한 360일수까지 처해질 수 있다.
- (3) 잔형의 집행정지 및 정지된 형의 취소에 관한 형법의 규정은 형법 제2조 제3항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한 가입의 발효전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하여 선고된 보호 관찰(동독형법 제33조) 및 자유형에 적용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은 당해 범죄에 대하여 서독형법이 가입의 발효전에도 이미 적용되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c) 제315관 다음에 제315a관 내지 제315c관을 추가한다.

제 315a 관

동독에서 소추되고 형확정된 행위에 대한 공소 및 집행시효

동독법에 따른 공소 및 집행시효가 가입의 발효시까지 개시되지 않았으면 이는 그대로 유지 된다.

공소시효는 가입의 발효일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형법 제78c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 315b 관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고소

형법상 고소에 관한 규정은 가입의 발효전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동독법에 따라 소추에 고소가 필수적이었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 된다.

가입의 발효전 제기된 고소는 그대로 유효하다.

가입의 발효일 현재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동독의 기존법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독의 규정에 의하여 고소에 의하여서만 소추 가능한 경우 고소기간은 빨라도 1990. 12. 31. 종료된다.

제 315c 관 형벌의 조정

동독의 범죄구성요건이 계속 유효한 한도내에서 종전의 형벌 대신에 형법전에 규정된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벌이 적용되고 나머지 형벌은 삭제된다.

그러나 동독의 제6차 형법개정법률 제10조 제2문은 그대로 유효하다. 벌금형은 일수에 따라 산정하되 전체적으로 종전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최대한 360일수까지 처해질 수 있다.

2. 연방중앙등록법(연방법률관보 1229면)은 다음과 같이 개정 된다 :

a) 제Ⅲ부 다음에 제Ⅳ부를 추가한다 :

제Ⅳ부 동독검찰총장이 관장하고 있던 형벌등록부의 인수

제 64a 조 동독의 형벌등록부

- (1) 연방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동독 검찰총장이 관장한 형벌등록부의 등록사항의 등재, 수정, 송부, 차단 및 삭제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관장한다; 연방검찰총장은 등재 관청으로서 비밀보호법상의 책임을 진다.
- (2) 지금까지 동독 검찰총장이 관장한 형벌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연방중앙등록부에 인수된다. 연방중앙등록부에의 등록사항 인수는 늦어도 제3항을 고려하여 등록관청을 통한 심사후 이행된다. 모든 등록사항의 인수에 관한 결정은 3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3) 이하의 등록사항은 인수되지 아니한다.
 1. 이 법의 인수시기에 그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더이상 형벌 또는 질서벌의 규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유죄판결 또는 기타 판결

2. 법치국가적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유죄판결 또는 기타 판결
3. 동독의 형벌등록법상 수사기관 및 검찰청에 의한 등록사항
- (4) 인수의 결정시까지의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연방중앙등록부 외에 저장되고, 이 법에 따른 정보로서는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인수가 거부된 등록사항에 대하여도 같다. 연방중앙 등록부에 인수될 등록사항은 인수결정시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5) 삭제기간은 종전의 규정(동독의 형벌등록법 제26조 내지 제34보)에 따라 산정된다. 연방중앙등록법의 확장적용후 새로운 등록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삭제기간의 산정에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64b 조

등록 및 등록서류

제64조 제1항에 따라 동독 구형벌등록부로부터 연방중앙등록부에 등재된 등록 및 등록서류는 3년 경과후 폐기 한다.

이 등록서류등은 위 기간까지 등록수행외에는 특히 인수 및 종결 심사를 위하여는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보는 그 외에 복권의 목적을 위하여 복권관할 관청에 송부 될 수 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은 관계자의 동의하에서만 허용된다.

b) 지금까지의 “제 IV 장” 은 “제 V 장”이 된다.

3. 행정법(연방법률관보 2261면)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제199조 제2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제50조 - 구금비용분담금 - 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1) 이 법률에 따라 급여를 받은 재소자로부터 구금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2) 자유로운 노역관계에 있는(제39조 제1항)재소자로부터는 사회법 전 제4권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물급여의 평가에 관하여 평균적으로 확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구금비용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연방법무장관은 매년 지난해 10.1.에 유효한 현물급여의 평가에 따라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과 행형법이 가입의 발효 전 이미 적용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따로이 평균금액을 확정하여 연방 관보에 공고한다. 구금비용분담금은 급여의 압류불가분이나 집세 또는 생활비에 부담이 되도록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3) 자영업(제39조 제2항)은 재소자가 제2항에 언급한 액수까지 구금비용분담금을 매달 미리 납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4) 베를린 주에서는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 유효한 평균금액이 일괄 적용된다.
- b) 제201조 다음에 제202조를 신설한다 :

제 202 조

동독의 소년구금 (Jugendhaft) 및 자유형

- (1) 동독의 형법에 따라 소년과 청년에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에 대하여는 소년형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소년구금의 집행에 대하여는 소년구금(Jugendarrest)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2) 그 외에 동독의 형법에 따라 선고, 확정된 자유형 및 구금형(Haftstrafe)의 집행을 위하여는 행형법상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형사소추처분의 보상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638면)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6조 다음에 제16a조를 신설한다 :

제 16a 조

동독에서의 자유박탈적 또는 그의 일시적인 형사소추 처분의 확정판결 결과에 대한 보상

제1조 및 제2조는 가입발효전에 동독에서 행하여진 형사상 유죄 판결

보안처분 및 부수처분 또는 자유박탈적이거나 그의 일시적인 형사소추처분의 결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보상의 요건, 종류 및 정도는 위시점까지 동독에서 적용되던 구금 및 자유박탈형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른다(동독 형사소송법 제369조 이하). 판결과기시 급부는 형사상 복권의 경우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5. 1953. 5. 2.자 내독간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1503면)은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폐지한다 :

- a) 이 법 제10조 제1항은 가입발효전에 행하여진 형벌에 여전히 적용된다.
- b) 가입발효일 현재 이 법 제15조에 따라 계류중인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종결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시행된다 :

- 1. 형법(연방법률관보 945,1160면)
 - 제175조가 인용된 범위 내에서의 제5조 제8호, 제9호, 보안감호에 관한 규정 제144조, 제175조, 제182조, 제218조 내지 제219d조 및 제23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형법전 시행법률(연방법률관보 393면)
 - 제14조 내지 제292조, 제298조 내지 제306조, 제312조 내지 제314조, 제317조 내지 제319조 및 제322조 내지 제32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소년법원법(연방법률관보 3427면)
 - a) 제116조 내지 제12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b) 제3조 이전의 표제와 제1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67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104조제1항, 제1호, 제105조 제1항 및 제108조의 “비행” 또는

“비행등”이라는 용어는 각각 “위법행위” 또는 “위법행위등”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

- c) 제13조 이전의 표제와 제5조 제2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2항, 제31조, 제3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및 제76조의 “징벌수단” 또는 “징벌수단등”이라는 용어는 “경고, 의무부과 및 소년구금”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 d) 제1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 제34조 제3항은 이하와 같은 형태로 적용된다 : 후견법원의 교육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적절한 조치를 통한 부모, 후견인, 보호인의 지원,
 - 2. 소년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f) 소년법원법의 시행을 위하여 추가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제 1 조

시간적 적용범위

- (1) 소년법원법은 가입발효전에 행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2) 범죄행위가 가입발효전에 행하여졌고 일반형법에 따라 3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여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년이나 청년(der Heranwachsende)에 대하여 소년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

제 2 조

자유형과 소년구금

- (1) 소년이나 청년에 대하여 선고된 자유형은 소년법원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년형벌로 본다. 보호관제선고는 소년법원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년형벌의 선고 연기로 본다.
- (2) 소년에 대하여 선고된 소년구금(Jugendhaft)은 소년법원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년구금(Jugendarrest)으로 본다.

제 3 조 단일형의 부분 집행

소년법원법 제56조는 소년법원법의 근거하에 선고된 판결에만 적용된다.

제 4 조 사 면

가입발효전에 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선고된후, 사면된 자유형에 대하여는 소년법원법 제22조 내지 제26a조가 준용된다.

제 5 조 지 시

소년법원법에서 통일조약으로 인하여 개정된 규정을 원용하도록 할 때에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

4. 질서위반법(연방법률관보 602면)

- a) 질서위반법 제1부의 규정은 가입발효전에 행하여지고 질서벌에 처하여질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b) 동독의 법규에 “질서벌(Ordnungsstrafe)”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과료(Geldbuße, Bußgeld)”로 대체되고, “질서벌 처분(Ordnungsstrafverfügung)” 및 “질서법 규정(Ordnungsstrafbestimmung)”이라는 표현은 “과료통지(Bußgeldbescheid)” 및 “과료규정(Bußgeldvorschrift)”로 대체된다. 동독의 법규에 질서벌의 최저한을 5마르크로 정한 규정은 더이상 통용되지 아니한다.
- c) 질서벌처분의 관할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 된다.

- d) 질서위반의 소추, 소송절차를 포함한 처벌 및 그 집행은 가입발효시부터는 이하의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타적으로 질서위반법이 적용된다.
 - e) 질서위반범법처벌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1990. 7. 1.전에 확정된 질서벌처분은 더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이는 질서위반범법처벌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확정된 질서벌에도 적용된다.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f) 가입발효전에 질서벌처분이 발하여지고, 질서위반범법처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이의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법 제6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질서위반범법처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제기된 이의(Beschwerde)는 가입발효전일 이후에 제기된 경우에도 이의(Einspruch)로 간주한다.
1990. 6. 29.자 행정결정의 재심에 관한 법원의 관할 및 절차에 관한 법률(법률관보 I, 41호 595면) 제6조에 따라 제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소는 원 행정청에 제기한다. 그 외에 재판절차는 질서위반법의 규정에 따른다.
 - g) 질서벌처분에 대하여 전 f)항의 기준에 따라 다투어지면 질서위반범법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 2, 4, 5, 6호에 따른 질서벌처분은 취소된다.
 - h) 법원관할 및 불복절차에 대하여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을 수용하는 경우 법원조직법에 대한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번 a, 제1항 1문, 제2항 b의 제1번 g, 제2항 i, 제2항 제2번 j, 제1항 제3문, k, I 제2항 제1호, m에 규정된 관할과 불복절차에 따른다.
 - i) 그 외 이 계약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원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으로 대체된다.
5. 행정법(연방법률관보 I 2261면)
- a) 제43조의 경우 모든 재소자에 대한 통일적인 사정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종전의 서독 각 주에 적용되던 사정근거가 적용된다.

- b) 제156조 제1항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공무원법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형사소추처분의 보상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638면) 제16조, 제18조 내지 제1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업무영역 D부분 : 상사법 및 회사법, 보험계 약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고 보충된다 :

1. 생명 및 정기금보험 청구권의 규율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I 433면, 806면)
- 보험기업은 전쟁결과와 전환청구권의 규율에 관한 특별 또는 일반적 입법시까지 위 법률에 의하여 통화법의 시행전에 적용되었던 규정에 의하여 제국 마르크로 변제할 수 있었던 생명보험 및 정기금보험에 의한 채무를 이유로 청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 iii 절

연방법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시행된다 :

1. 상법(연방법률관보 I 1221면)
- a) 제6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73조, 제75조 제3항, 제75b조 제2문, 제82a조, 제8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이 규정에 대한 부록을 포함한 제664조는 그 적용이 동등으로부터 인수한 국제법적인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종전에 동등에 적용되었던 법규정들이 계속 적용된다.
2. 상법 시행법률(연방법률관보 1990 II 518면)
- a) 제2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1990. 7. 1.이전에 국제경제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성된 대리상 계약관계에 관하여 1990. 6. 30.까지 효력이 있는 1976. 2. 5.자 법률(법률관보 I 제5호 61면)은 1993년까지 계속 적용된다.
3. 해상법상 배당규정(연방법률관보 I 1770면)
- a) 제20조 제4항 제4문에 의한 소는 해당절차를 관할하는 군법원에 제기한다.
- b) 파산법의 규정이 원용되어지는 한, 관계규정들이 공동집행법(부록 II 제Ⅲ장 업무영역 A부문 제ii절 제1a번)의 적용영역에도 적용된다; 공동집행법의 규정들은 그 범위내에서 효력이 없다.
4. 내수항행법(연방법률관보 1120면) : 내수항행에 관한 책임제한을 정하는 1988. 11. 4.의 스트라스부르그 협정의 시행전 미리 전독일입법자에 의하여 영업적인 내수항행에 관하여 총액에 관한 책임제한이 도입되어야 한다.
5. 국제적인 상품교역에 대한 계약에 관한 1980. 4. 11.의 U.N.협약과 국제적인 화물운송촉진계약에 대한 1956. 5. 19.의 협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1989. 7. 5.의 법률(연방법률관보 1989. II 586면)의 제3조는 그 적용이 동독으로부터 인수한 국제법적인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주식법시행법(연방법률관보 2355면)
- 제22조 제1항은 1990. 7. 1.이전에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주식회사에 관하여 “1965. 12. 31.”의 날짜를 “1990. 6. 30.”로 대체한다는 조건하에 적용된다.
1990. 7. 1.이전에 상업등기부에의 등기가 신청되었으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한 종전의 법률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7.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상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관보 I 2355면)
- 제12조는, 이미 존재하거나 1990. 7. 1.이전에 상업등기부에 등기신청되어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유한회사에 대하여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있어서 자본금증액 또는 전환,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의 이행에 관한 기한으로서 1995. 7. 1.로 정한다는 조건하에 적용된다. 이것은 동독에 있어서 서독 법률규정 시행에 관한 1990. 6. 21.자 법률의 개정과 1990. 7. 6.의 법률(법률관보 I 제44호 713면)에 따라 1990. 7. 1.과 가입의 발효일 사이에 상업등기부에 등기신청된 회사들에 대하여도 자본금 증액 또는 전환,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의 이행에 관한 기한으로서 1992. 7. 1.로 정한다는 조건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8. 의무보험법(연방법률관보 I 213면)

교통사고피해보상기금의 임무가 의무보험법 제12조 및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함부르크의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구조협회에 부여되어 있는 한, 연방법무장관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의 조정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그 지역에서의 보험금수입액에 비례하여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업자에게 부과하는 정관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른 제도가 교통사고 피해자구조협회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무장관은 법규명령을 통하여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유사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업무영역 E : 공업소유권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보충되어진다 :

1. 공업소유권법 분야에 있어서의 법규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

제 1 조

- (1) 가입의 발효 이후에는 동독특허청이 공업소유권 보호분야에서 유일한 중앙관청이다.

- (2) 특허법 제26조와는 달리 부록 I 제 XIX장 업무영역 A에서 규정된 상위직 공무원 임명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1996. 12. 31.까지 특허청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 2 조

가입의 발효이후에 동독특허청에 접수된 공업소유권(특허, 실용신안, 장, 활판인쇄문자, 반도체보호권, 상표)의 신청 및 그에 기하여 승인되거나 등록된 보호권은 독일 전체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 (1) 가입의 발효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 또는 연방내 기타지역에서 제기된 신청과登記되거나 승인된 보호권들은 자신의 종전의 보호범위에 관한 효력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가입의 발효이전에 적용되던 법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효력이 있는 국제적인 협정에 의하여 제기된 신청들과 승인 또는登記된 보호권들도 또한 동일하다.
- (2) 제1항에 따라 가입의 발효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시행되던 법규정에 기한 독일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연방특허법원이 관장한다. 위 지역에서 가입의 발효일 현재 계류중인 절차내에서의 항고심사기관의 결정들에 대하여도 항고가 개시된다. 이 절차는 확장적용된 연방법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 의하여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보호권의 말소 또는 무효선언과 그러한 권리의 강제실시권의 승인을 구하는 신청 또는 소는 그 허용여부와 절차에 있어서 확장 적용된 연방법 규정에 의한다.
- (3) 가입의 발효전에 동독특허청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신청들은 독일특허청에서 취급한다.
- (4) 가입의 발효이후에 독일특허청에 접수되었으나 단지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의 보호만을 구하는 신청들은 제2조에 의한 신청으로 취급된다.

독일특허청은 신청자에게 신청을 철회할 기회를 부여하며,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반환된다.

- (5) 동독특허청에 제출된 신청이나 그에 의해 등기 또는 승인된 보호권에 관한 등기는 가입의 발효이후에는 독일특허청의 등기 또는 등록부에서 취급되고, 독일특허청의 공고부에 공시된다.
- (6) 연방법무장관은 법규명령으로 제3항 내지 제5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는 법규명령으로 이 권한을 독일특허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

가입의 발효전에 동독특허청에 보호권의 신청을 한 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은 독일특허청에의 신청에 있어서 1967. 7. 14.스톡홀름에서 체결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단체협정 제4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우선권을 가진다.

제 5 조

제13조에서 정하는 확정 이전에는 아직 그 보호권이 유효하지 아니한 지역내에서, 1990. 7. 1.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신청되어 등기되거나 등기된 보호권을 그 지역내에서 침해하거나 적정한 보상청구의 이유가 되는 보호권이용행위를 최초로 행하는 자는 위 보호권확장을 근거로 정당하게 취득된 점유상태(Besitzstand)를 주장할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 구 보호권과 대립될지도 모르는 보호권이 신청된 때에도 동일하다.

제 6 조

가입의 발효이후 독일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신청에 관하여 특허법 제3조 제2항은 동독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신청은 특허법 제3조 제2항 제1문 제1호의 신청과 동일시 된다는 조건하에 적용된다.

제 7 조

실용신안의 대상이 이전에 동독특허청에 제출된 특허신청을 기초로 하여 보호되는 것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입의 발효이후에 제출된 신청을 근거로 등기된 실용신안의 말소청구권이 존재한다.

제 8 조

가입의 발효전에 동독특허청에 제출되어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산업상의 의장에 대한 유사저작권(Urheberscheinen)의 허용을 구하는 신청은 독일특허청에서 산업상의 의장에 대한 특허신청으로 계속 취급된다. 이 경우 그 원기업이 신청권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9 조

- (1) 가입의 발효이후에 신청된 상표의 등기에 대하여,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신청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상표법 제31조)를 일찌기 동독특허청에 신청한 자는 상표법 제5조 제4항 또는 제6a조 제3항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동독에 효력이 있는 국제적인 등록은 동독특허청에 제기된 신청과 동일하다.
- (2) 가입의 발효후에 제출된 신청에 의하여 등기된 상표의 경우, 그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그 보다 먼저 동독특허청에 신청을 제출하여 상표등기를 한 제3자는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1

호에 의하여 상표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 위 규정들은 상표의 국제적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국제적 등록에 대한 이의와 동 규정 제10조에 의한 보호박탈신청에 준용된다.

제 10 조

등록특허청에 등기된 상표에 대하여 이용에 관한 규정(상표법 제5조 제7항, 제11조 제1항 제4호, 제5항 및 제6항)이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적용된다. 즉 5년의 기간은 가입발효일에 개시된다. 가입발효일 이후 제3조 제3항에 따른 신청에 기하여 등기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상 이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위의 규정들은 동독에 효력을 발생한 국제적으로 등록된 상표에 준용된다.

제 11 조

가입의 발효이전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행하여진 발명에 관하여 가입의 발효전 그 지역에 시행되던 피고용자의 발명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된다.

제 12 조

통일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가입의 발효전 그곳에서 시행되던 법규정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전람권보호가 부여된 전람은 전시된 의장 및 상표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전람과 동일하다.

제 13 조

전술한 규정들은 뛰어넘은 법의 단일화, 특히 현존하는 보호권과 계류중

인 신청들의 다른 지역에 대한 확장에 대한 규정은 장래의 전독일입법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2. 저작권법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의 특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제 1 조

- (1) 저작권법의 규정은 가입의 발효전에 창조된 작품에 적용된다.
가입의 발효시 동독저작권법에 의한 기간이 이미 도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유사한 보호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제 2 조

- (1) 저작권법에 의하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용행위가 이제까지 허용되어 졌다면, 1990. 7. 1.이전에 시작된 허용행위에 한하여, 그것이 통예인 경우, 예견된 범위내에서 계속되어질 수 있다.
가입발효일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통상의 경우 계약에 이전되지 않는 권리는 그 소유자에게 유보된다.
- (3) 위 제1항과 제2항은 유사한 보호권에 준용된다.

제 3 조

- (1) 가입의 발효전에 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문제된 양도의 효력은 저작권법의 적용으로 생기는 기간에도 미친다.
- (2) 제1항의 경우, 이용권자는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이용권자가 대가청구권이 행사된 직후 종전에 정해진 보호기간경과 후의 시간에 대한 이용권을 저작권자의 처분에 맡긴 경우에는 대가청구권이 소멸한다.

- (3) 통상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지 않는 권리는 권리소유자에게 유보된다.
- (4) 위 제1항과 제2항은 유사한 보호권에 준용한다.

제 4 조

유산으로서 저작권의 이용을 위임받은 기관이 계속해서 이용할 용의가 있고, 저작권자의 권리승계인이 유산으로서의 저작권을 스스로 이용하려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독저작권법의 실효 이후에도 이 법 제35조에 의한 결정은 유효하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아래의 규준하에 시행된다 :

1. 부정경쟁방지법(연방법률관보 422면)

제27a조 제2항 제1문과는 달리 조정기관은 동독의 법에 의하여 직업법관의 자격이 있는 법률가를 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업무영역 F : 헌법재판제도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 개정 또는 보충된다 :

(삭 제)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아래의 규준하에 시행된다 :

연방헌법재판소법(연방법률관보 I 2229면)

- a) 제3조 제2항은 연방헌법재판관 선출시까지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다만 법학사의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 b) 제22조 제1항 제3문은 조약 제3조 소정의 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각 주와 그 헌법기관은 자신의 소속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대리되어질 수 있다.”

제 IV 장 연방 재무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전후처리규정

제 I 절

이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 효력발생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20-5로 공포된 군사동맹 청산에 관한 법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39-1로 공포되고, 1976.12.14. 법 제95조 제2호(BGBI. I p.3341)를 최종 개정한 유가증권에 관한 법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39-1-1로 공포되고, 유가증권법의 개정과 보충에 관한 법
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39-1-2로 공포되고, 1964.1.28. 법 제38조 제1호를 최종 개정한 유가증권 정비법의 개정과 보충에 관한 두번째 법
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39-1-3로 공포되고, 1964.1.28. 법률 개정된 법률 제7조와 제38조 제2호의 유가증권 정비법의 개정과 보충에 관한 세번째 법
6. 1964.1.28 제정된 유가증권 정비종결법(BGBI. I p.45)
7.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39-1-5로 공포된 독일의 외채 환차금고(Konversionskasse)의 독일제국환으로 표기된 유가증권 청산법
8. 1964.5.8 제정된 유가증권청산에 대한 관할청의 의무에 관한 규정

(BGBl. I p.317)

9.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39-2로 공포되고, 1976.12.14 제95조 제3호를 최종 개정한 독일의 외국유가증권 정비법(BGBl. I p.3341)

그리고 제1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8조 제6항, 제9조 제5항, 제1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24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58조, 제64조, 제65조와 제767조에 공시된 법규도 포함된다.

10.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39-3으로 공포된 외국증권보상법
 1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21-4로 공포되고, 1974.3.2. 법 제287조 제3호를 최종 개정한 구저축자법(BGBl. I p.469)과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21-4-1로 공포되고 1965.5.18. 개정한 구저축자법 제4조 제4항(BGBl. I p.419)

이에 포함되는 것은 :

노인 저축자법의 제3조 제3항, 제2a조 제2항, 제4조 제7항, 제9조 제1항과 제2항, 제10a조, 제13조,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7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7항 그리고 제8항, 제19조 제4항과 제5항, 제23조 제6항, 제26조, 제27조 제1항과 제2항, 제31조 제1항의 구저축자법의 시행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법규 그리고 구저축자법의 제18조 제7항과 제31조 제2항 또는 연방보상청장(Praesident des Bundesausgleichsamtes)이 구저축자법의 시행을 위하여 선포한 두번째 법규의 제8조 제2항.

1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53-1-1로 공포되고, 1989.12.18. 법 제74조를 최종 개정한 일반적인 전후 처리법규정(BGBl. I p.2261), 여기에서 제1조와 제2조는 예외로 한다.

13. 1965.3.17. 제정되고 1969.6.25 법 제67조를 최종 개정한 나치자산의 시설과 법적지위 관련 법

여기에 포함하여

권리자청산법의 제1조 제2항과 제11조 제3항

15. 1969.2.12. 제정되고 1976.12.14. 법 제37조를 최종 개정한 복구손상법(Reparations-schadengesetz)(BGBl. I p.105)

16. 1970.7.9. 제정된 복구손상법 시행에 관한 제1차 규정(BGBI I p.1053)
17.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620-6으로 공포되고, 1975.12.17. 이 법 제12조 제8호를 최종 개정한(BGBI. I p.3123) 독일 제국은행과 황금할인은행의 해산에 관한 법
18. 1972. 3.21. 제정되고 1974.1.31. 법 제1항목을 개정한 특별관청 산하에 있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건축신용조합의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법(BGBI. I p.465)
19. 1975.12.17. 제정된 화폐개혁종료법(BGBI. I p.3132)
20.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53-1-1로 공포표되고, 이 법 제20조를 1986. 12.16 개정한(BGBI. I p.2441) 점령에 따른 피해 보상법
21. 1971.10.12. 제정된 이 법 제9조 제11호를 1978.12.3. 제정한 가치평가(조정)법 (BGBI. I p.1625)(BGBI. I p.3281)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 개정 또는 보충된다 :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21-4로 공포되고, 이 법 제287조 제36호를 1974.3.2. 최종 개정한(BGBI. I p.469) 구저축자에 관한(Altsparer)법
 - a) 제14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다음과 같이 제2항으로 대치된다 :

“(2) 보상은 단지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청구서는 1991.12.31.까지 보상청구권자가(제4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양식에 의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관기관에 그리고 제1항 제3호에 관한 것은 연방채무행정처에 제출한다. 독일마르크를 최초 통용시 구저축의 채권이 다수의 자연인에 속한다면 모든 관련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진 개개의 관련자가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b) 제15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4) 통일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효하던 규정에 있는 제14조에 따른

청구가 행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2항과 제3항은 유효하다.”

- c) 제18조 제2항에 있는 “제14조 제3항 마지막 문장”은 “제14조 제2항 제3호”로 대치된다.
 - d)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있는 “제14조 제3항”은 “제14조 제2항”으로 대치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53-1로 공포되고, 이 법 제74조 제36호를 1989.12.18 최종 개정한 (BGBl. I p.2261) 일반 전쟁 결과 처리에 관한 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a) 제2항 제2호에 “1952.12.31.” 다음에 “그리고 1992.1.1.”을 추가한다.
 - b) 제2항 다음 제2a항을 보충한다. :
 “(2a) 자연인이 통일효력 발생한 이후 그리고 1992.1.1 이전에 그의 장기적인 체류지를 통일조약 제3항에 명시한 지역에 두었다면 해제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1969.2.12. 제정되고(BGBl. I p.105) 1976.12.14. 최종 개정한 (BGBl. I p.3741) 정비보상법 제3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제1항 제2호의 “1952.12.31.”이라는 날짜는 다음에 “그리고 1992.1. 1”이 보충한다.
 - b) 제2항 다음에는 2a같은 항이 보충한다 :
 “(2a) 만일 청구권자가 1992.1.1. 이전 그의 장기적인 체류지를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한 지역에 두었다면 변제에 대한 권리는 제2항의 전제조건을 따라야 한다.”

업무영역 B : 예산과 재정부문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의 효력에 따라 다음사항이 삭제된다. :

-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03-4로 공포된 2차 이관법과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03-4-1로 공포된 2차 이관법 제10조 시행규정
-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03-5로 공포되고 1971.8.30. 이 법 제6조를 최종

개정헌(BGBI. I p.1426) 제3차 이관법
여기에서 제16조는 삭제에서 제외한다.

제 ⅱ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 개정 또는 추가된다 :

1. 1990.6.25. 제정된 “독일통일” 기금 설립법 (BGBI. 1990.II p. 518,533)

a) 제2조 제1항에 다음 문장이 보충된다 :

“기금의 연간 업적은 1991.1.1. 이후부터

1.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그리고 베를린주는 경상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00분의 85까지 특별지원이 보장되며 지금까지 이미 헌법이 적용되던 베를린주의 주민수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나열한 주에 대하여 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에 따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2. 중앙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0분의 15를 위에 언급된, 주 지역을 위하여 사용한다.

이 주들은 주에 입금되는 기금의 100분의 40을 주의 법제정을 통해 상세한 비율을 결정하여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분배한다.”

b) 제5조 제2항에 다음 내용을 보충한다 :

“기금을 위한 채권발행은 헌법 제1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c)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5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충된다 :

“제1항은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bb) 제6항은 삭제된다.

d)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기금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1991.1.1. 부터 매년도의 경제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시킨다.”

2. 1988.1.28. 공포되고(BGBII p.94), 1990.6.25. 이 법 제32조를 최종개정한 연방과 주간의 재정보상에 관한 법의

a)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주의 분담금은 매년 6월30일의 주민의 수에 근거하여 모든 주에 대하여 100분의 50까지 그리고 제2조에 따라 100분의 50까지 배분된다; 주의 분담률에 배틀린 주가 지불해야하는 몫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의 일부분에 대한 주민의 수에 관계 없이 전체 주민의 수에 따라 계산된다.”

bb) 제2항에 다음 내용이 추가된다 :

“제1항과 제3항은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cc) 제3항은 삭제된다.

b) 제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대상세에서 주에 할당되는 부분은 1994.12.31. 까지 제4항에 있는 규정의 적용을 서쪽과 동쪽을 분리하여 적용한다. 서쪽 부담분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브레멘시, 함부르크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리안린드-팔츠주, 자르란드주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로 배분하며, 동쪽 부담분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 - 포퓰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 주로 배분된다. 서쪽과 동쪽 부담분의 배분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 주의 1인당 평균 대상세액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브레멘시, 함부르크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팔츠주, 자르란드주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의 1인당 대상세에 대하여

| | |
|-------|----------|
| 1991년 | 100분의 55 |
| 1992년 | 100분의 60 |
| 1993년 | 100분의 65 |
| 1994년 | 100분의 70 |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쪽과 동쪽의 매상세에 대한 각주의 부담은 각각 주의 주민수에 비례해서 100분의 75 그리고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법규에 의하여 100분25로 배분된다.

c)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1) 재정보상은 1994.12.31. 까지 바덴부르템베르그, 바이어른, 브레멘, 함부르그, 헤센, 니더작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츠, 자르란드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브란덴부르그, 맥클렌부르그-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에 대하여 각각 달리 시행하여야 한다. 베를린주는 앞으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간의 재정보상에서 제외되어 특별 취급한다.”

d) 제11a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5항 제2호의 “매상세 수입”이라는 단어 다음에 “지금까지 독일연방공화국에 속한 지역”이라는 말을 추가한다.

bb) 다음 항이 추가된다 :

“(7) 제1항에서 제6항까지는 1994.12.31. 까지 브란덴부르그, 맥클렌부르그-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 그리고 베를린주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

3. 1985.1.28. 공포되고(BGBl. I p.201), 1990.7.25. 이 법 제33조를 최종 개정한(BGBl.1990 II p. 518)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개혁법.

a)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기존의 서술은 제1항에 해당한다.

bb) 다음 제2항을 보충한다 :

“(2) 브란덴부르그, 맥클렌부르그-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의 소득세에 대한 자치단체 할당은 1986.12.31.까지

연방통계청에서 측정한 당년 최신 인구통계를 기초하여 산출된 근거로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또한 주정부의 법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b)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추가한다 :

“(2)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의 제1항에 의한 기본통계는 연방통계청의 인구통계에 의하여 확정된 각 주의 인구수에 의한 기초자치 단체의 통계와 차이가 있다.”

bb) 기존의 제2항은 제3항이 되며 다음과 같이 보충된다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는 어떠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c) 제6조 제2항에 아래와 같은 문항이 추가된다 :

“제1항과는 별도로 1994.12.31. 까지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에서 영업세수입의 100분의 15를 영업세할당액으로 징수한다.”

4. 1971.2.25. 공포되고, 1987.1.22 최종 개정한 분할에 관한 (BGBl. I p.470) 법률의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 제1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는 최초로 1991년 조세사정 부터 소득세 배당권리와 법인세분할에 참가한다 ;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일부도 이와 동등하게 적용된다.”

b)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는 최초로 1991년 근로소득세 분할에 참가한다 ;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일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근로소득세는 한편으로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 또한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던 베를린 주 일부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연방헌법이 적용되던 베를린주를 제외한 기타 주에 제5조 제5항의 내용과는 달리 1992년을 기준으로하여 백분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러한 백분율을 기준으로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주의 세무서장은 당해 주에 대한 분할분을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수납한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1995년 6월 30일까지 거주지의 세무서장에게송금해야 한다. 주의 세무서장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예상되는 분할분에 대하여 서로 합의해야 한다 :

상세한 것은 연방상원위원회의동의를 얻은 법규에 의하여 결정된다. 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와 베를린에 대하여1991년부터 1994년까지 근로소득세의 분할에 대해서는 위의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적용된다. 1998.12.31. 까지 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제4항 부터 제6항에 따라 청구권은 소멸된다.”

5. 1971.8.30.공표되고(BGBI. I p.1427), 1985.12.19. 최종 개정한(BGBI. I p. 2436) 재무행정법의 제20조 제1항에 아래와 같은 문항을 보충한다 :
 “1994.12.31. 까지의 과도기간에 조약 제1조 1항에 언급된 주의 국세청장은 연방재무장관의 동의하에 조세의 확정과 징수를 위하여 과거 그가 관장하고 있던 기구와 조직을 투입할 것을 결정한다 ; 이와 함께 자동적인 조세징수방법이 완전히 도입되기 전까지 중간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6. 1976.3.16. 제정되고(BGBI. I p.613,1977 I p.269), 1989.12.22. 이 법 제9조를 개정(BGBI. I p.2408)한 공과금 규정의
 - a) 제52조 제2항 제3호의 “헌법의 그리고 서베를린”이라는 단어는 “이 법에 의한”으로 개정된다.
 - b) 제263조에 있는 “743” 인용구 다음에 쉼표와 인용구 “744 a”가 추가된다.

7. 1976.12.14. 제정되고(BGBI. I p.3341,1977 I p.667), 1989.12.22. 이 법 제10조를 최종 개정한 공과금 시행령(BGBI. I p.2408)의

제97조 다음 제97a조를 신설한다 :

“제 97 a조”

독일 통일을 수행하기 위한 이행법규

제1조

관할권

1991. 1.1. 이전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법 혹은 독일민주공화국(동독)법에 의하여 성립된 공과금법에 적용되는 점유세, 통행세, 수당 그리고 보상금과 이에 속하는 조세적 성질의 부수적인 것에 대하여 각각의 조세법규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법규에 따라 지역을 관장하는 세무서가 계속 관장한다. 이러한 것은 또한 이의 제기 소송에도 적용된다.

제2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공과금규정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공과금 규정의 적용에는 다음의 효력이 있다 :

1. 통일효력발생과 관련된 소송은 규정들이 다른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한 공과금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통일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기간은 다음 규정에 달리 결정되지 않는한 1990.6.23. 제정된 (법간행물 특별인쇄 NO.1428) 공과금 규정(AO 1990)과 1990.6.22. 제정된 동독의 공과금 시행령(법간행물 특별인쇄 No.1428)에 따라 결정된다.

3. 제152조는 통일효력이 발생한 이후 도입되는 세액통지에 최초로 적용된다 ; 여기에서 세액통지 기간의 연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행정문서의 폐기 또는 개정에 관한 규정은 통일효력이 발생한 이후 행정문서를 폐기하거나 개정된 다음에 최초로 적용된다. 이러한 것은 또한 만일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행정문서가 통일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반포되었다면 이것 또한 적용된다. 1970.9.18. 제정된 동독의 공과금규정(Ao) 제100조 제1항에(법간행물 특별인쇄 No.681) 따른 임시적인 세액통지에 대하여 제163조 제2항이 적용되고 1970.9.18. 제정된 교부금규정(법간행물 특별인쇄 No.681)의 제100조제2항에 의한 세액통지에 대해서는 제164조 제2항 제2문과 제3문이 적용된다.
5. 확정시효에 관한 규정은 확정과 소멸에 적용되며 조세와 조세 보상에 대한 규정 확정 그리고 통일이후에 성립된 조세 관련 사항의 확정시효에 적용된 이미 성립된 청구권에 대하여 1990.6.22. 제정된 동독의 공과금 규정(AO 1990) 그리고 1990.6.22.에 제정된 동독의 공과금규정 시행규칙(법간행물 특별인쇄 No.1428)은 조세와 조세보장에 대한 확정 그리고 조세관련 부수사항과 변제청구권의 확정과 유효에 대하여 연기나 마감기일에 관한 것이 계속 적용된다 ; 제9항제2호에 부터 제4문까지는 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문과 제2문은 조세근거의 설정과 조세측정액의 확정, 분납 그리고 안내를 위한 것에 적용된다. 통합측정에 있어서 조세청구권의 발생시점 대신에 주세후확정, 지속적인 기록, 차후확정 또는 통일된 가치의 소멸에 대한 시점을 선택한다.
6. 만일 통일효력발생 이후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제69조에서 제76조까지 그리고 제191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가 적용된다.
7. 제141조 제1항 제3문을 적용하는데에 있어 경제가치라는 개념 대신에 보상가치가 적용된다(평가법 제125조).
8. 통일효력발생 이후 최종 담화가 발표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통일효력 발생이후 검사보고서가 조세 의무자에게 발

- 부되었으면 대외조사 승인규정(제204조부터 제207조까지)이 적용된다. 1990.6.30. 이후와 통일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최종협약이 있었거나 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결과가 1990.6.30. 이후와 통합의 효력발생 이전에 조세의무자에게 발송되었다면 1990.6.22.(법간행물 특별인쇄 No.1428)에 제정된 지금까지의 동독의 공과금에 관한 규정(AO. 1990). 그리고 1990.6.22.에 제정된 (법간행물 특별인쇄 No.1428) 대외조사 승인규정에 따른 동독의 공과금 규정에 관한 법규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9. 지불정지에 관한 규정 제228조 제1항에 관한 시효소멸은 제229조에 의해 통일효력발생 이후 시작되는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 1문의 전제조건이 없는 경우 1990.6.22. 제정된(법간행물 특별인쇄 No. 1428) 동독의 공과금규정 소멸시효와 마감시기에 관한 동독의교부금규정을 위한 시행법(법간행물 특별인쇄 No.1428) 이 적용된다. 소멸시효는 통일 이후에도 제230조와 제231조에 의하여 제지되거나 중단된다. 제231조 제3항에 의하여 시작된 새로운 소멸시효는 제228조 내지 제232조까지가 적용된다.
 10. 공과금규정에 따라 통일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공과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조세재청구나 조세반환에 관한 이자부과에 대해서는 제 233a조가 1990.12.31. 이후 발생한 조세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된다. 통일효력발생일을 넘어서 발생하는 조세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불연기되었다면 이것은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이자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확정기간에 관한 제239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규에 근거하여 통일효력발생이후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11. 제240조는 통일효력발생 이후 연체금에 최초로 적용된다.
 12. 통일 이전에 이미 효력을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분류가 있으면 현행법에 따라 사법 외적인 법률조언의 허용이 결정된다 : 통일효력발생 이후에 법률이외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새 규정에 따라 소송이나 사법외적 법률조언에 따른다.
 13. 통일 이전에 시작된 강제집행에 대한 조처는 지금까지의 법에 따라 처

리된다. 통일후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의 계속적 수행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공과금규정의 법규들이 적용된다. 독자적인 조치로서 저당 대상물 이용도 가능하다.

(* 여기까지는 제97a조에 속함)

8.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1.1 세무사법 분야의 법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그때까지 있었던 동독의 법규는 계속 적용된다.

(*여기서부터는 제Ⅳ장 연방재무장관 업무영역 B의 제ⅱ절의 계속임)

9. 1975.11.4. 공포되고(BGBI. I p.2735) 1990.6.22. 법 제18조를 최종개정했으며, 1991.1.1.부터 적용되는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3조 제3항은 아래와 같다 :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1.1. 이전에 의뢰한 세무사와 세무대리인 그리고 이 지역에서 1991.1.1. 이전에 공인된 세무회계법인은 이 법에 따라서 의뢰한 세무사, 세무대리인 그리고 공인된 세무회계법인으로 제40a조의 규정을 유보하여 동등하게 취급한다.”

b) 제1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a) 종전의 문장은 제1항이 된다.

bb) 새로운 제1항 다음 제2항이 추가된다 :

“(2) 조세문제 보조원으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시간제 부기계원의 등록허가(GBl. I No.12 p.92)에 관한 1990.2.7 제정된 법 제3조에 따른 시간제 부기계원은 단지 그가 조세를 징수하는데 중요한 부기 및 기록을 하는 제한적인 보조역할을 그가 속해 있는 세무서구역내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한다.”

c) 제40조 다음에 제40a조가 신설된다 :

“제40a조

임시임용

1990.2.6. 이후 1991.1.1이전 임용된 세무사와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임시임용이 적용된다. 임시 세무대리인은 임용지역의 조세에 관한 업무에 무체

한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최종 임용은 해당 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주의 최상급 조세청이 1994.12.31 이후에 결정한다. 최종 임용에서는 직업에 속한 자가 과도기 세미나에 성공적으로 참여했으면 탈락시킬 수 없다. 제157조와 그 시행령이 동일하게 준용된다.”

d) 제5소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

“직업관련소송에 적용하는 법규에 관해 ;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직업관련 소송”

e) 제15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기존 조항은 제1항이 된다.

bb) 제2항이 다음과 같이 보충된다 :

“(2)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직업관련 소송은 재판소 대신 지원, 주고등법원 대신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세무사와 세무대리인 업무에 관한 지원에서의 판결은 결심 공판외에는 재판장이 심리한다.”

f) 제157조에 제9항을 보충한다.

“(9) 1990.12.31.까지 제1항에 따른 임용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7.12.31.까지 유효하다.”

10. 1970.5.18 공포되고 1989.7.25. 최종 개정된 관세법 제2조 제1항제1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관세지역은 관세부과지역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이며 관세제외지역과 과세자유지역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11. 연방 관보 제Ⅲ부 목록 621-7로 공포되고, 1988.12.9. 제2항목을 최종 개정한(BGBl. I p.2331) 브랜드독과점에 관한 법 제2조는 다음 조처에 따른다.

“제 2 조

독점지역은 관세제외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제외한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이다. 연방재무장관은 관세제외지역과 자유무역항과 같은 기타의 관세지

역을 법에 의하여 독점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b)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의 제1문과 제2문에서 “제국독과점행정”은 “연방독과점행정”으로 개칭한다. 제3호는 삭제한다.

bb) 제2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2) 유럽공동체회원국의 관세법에 의하여 무관세로 유통되는 브랜드는 수입독과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제25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a) 제2항 제3호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추가된다 :

“가공기간동안 단지 원료로서 양조장에서 가공을 하였다면 그리고 이러한 찌꺼기가 공정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브랜드 찌꺼기 이용과 이를 비료로 사용하기 위한 의무규정은 소멸된다.”

bb) 제99b조의 “100,000”는 “200,000”로 대체된다.

e) 제154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

“(3) 연방재무장관은 제1항외에 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독과점수입의 보장 또는 독과점보상을 위한 측정 기준 설정을 위한 소송
2. 독과점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제조 또는 수입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따른 필요한 수입세부과”

f) 제174조 다음에 제175조와 제176조를 신설한다 :

“통일조약 제3에 명시된 지역에 대한 특별 및 경과규정”

제 175 조

- (1) 1990.6.22. 제정된 브랜드독과점에 관한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브랜드 지정제권의 소유 및 운영능력이 있는 브랜드양조장은 제2항과 제4항 제4문에서 정하지 않는한 1991/92년 제조년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농가부

업 또는 기업적으로 필요한 정기적인 브랜드권리를 청구하여 획득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권리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근거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매년 생산평균치이다. 1990.1.1 당시 대지에 다수의 브랜드 양조장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평균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양을 합하여 하나로 취급한다.

(2) 정기적 양조권은 브랜드양조장에 대해 대표치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22,000 hl A 까지

a) 농가부업으로 하는 브랜드제조는 100분의 75

b) 기업적으로 하는 브랜드제조는 100분의 60,

2. 22,000이상 45,000 hl A 이하는 100분의 40

3. 45,000이상 300,000 hl A 이하는 100분의 20

으로 브랜드제조의 평균량 또는 브랜드양조장 별로(제1항 제3문) 산출한다. 제2호의 경우 정기적 양조권이 최소한 13,200 hl A, 제3호의 경우 최소한 18,000 hl A 그리고 45,000 hl A을 넘지 말아야 한다. 평균치가 300,000 hl A보다 많은 경우 정기적 양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브랜드제조회사는 1991/92년 제조 년도에 1회에 한하여 생산량규제 75,000 hl A까지 사탕무우당밀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브랜드 제조허가를 얻는다.

(3) 양조권은

1. 곡식(호밀, 밀, 메밀, 귀리 또는 보리)

2. 감자와 옥수수 포함 다른 곡물

3. 사탕무우당밀

을 원료로하여 브랜드의 제조를 위하여 주어진다.

(4) 브랜드를 관리하는 연방독점행정청이 브랜드제조업자의 청구에 따라 양조권을 부여한다. 연방독점행정청은 지금까지의 제조허가량의 종류를 기준으로하여 (위의 제1항에 언급된 법의 제15조 제2항) 그리고 곡물브랜드에 대한 수요량을 기준으로하여 제101조 제3항에 따라 브랜드제조법의 효력을 결정한다. 곡식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한 양조법에 있는 총

량은 100,000 hl A를 넘지 못한다. 통일대지위에 수개의 브랜드 제조업체가 한 사람의 소유라면(제1항 제3문) 연방독점행정처는 청구서에 기록된 양과 동일하게 이 브랜드제조업체에 브랜드 제조권 분배를 결정한다 ; 청구된 양이 경제적인 이유 또는 농업적인 관점에서 적절하지 못할 때는 청구량과 결정량은 다를 수 있다.

- (5) 재무장관은 법규에 따라 양조권의 특성과 분배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6) 제1항에 따라 브랜드 제조업체의 통합과 양조권의 이전은 (제42조 제1항과 제3항) 1997/98 회계년도 말까지 금한다.
- (7) 제36조와 제5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8) 1955.11.7. 이전에 정기적으로 주어지던 모든 양조권은 폐기된다.
- (9) 제3항에 언급된 원료 이외의 원료로 제조된 브랜드의 경우 당해년도 양조권 허가량 이상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제38조와 제39조가 적용된다.

제 176 조

- (1) 1990.9.30.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은
 - 1. 위 175조 제1항에서 언급된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40조와는 별도의 생산 할당량
 - 2. 제63조, 제64조부터 제72a조까지, 제73조 그리고 제74조, 위 법 제175조 제1항의 법률 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브랜드인수 가격
- (2) 1991.9.30 까지 제82a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에 따른 특별한 연간 양조권 대신에 각각의 생산쿼터가 대체된다.
- (3) 1991.10.1.이후 1995/96 회계년도말까지 제63조, 제64조부터 제72a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33조, 제43조부터 제36조까지 브랜드 인수가격에 대한 법은 앞으로 비율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 브랜드 제조업체에 대하여 연간 브랜드 제조권 10,000 hl A 이상일때 가장 낮은 평균비용

가격을 확정된 인도가격보다 높으면 안되며 만일 이러한 가격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가장 낮은 단위 인도가격보다 높지 않은 특별한 인도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 (4) 제1항과 제3항은 곡식, 감자 그리고 사탕무우당밀과 같은 원료로 제조하는 브랜드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규모의 브랜드 제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02-1에 공시 및 정리된 초고에 있는 브랜드에 대한 연방독점행정관청의 설치에 관한 법 제4조는 아래와 같다 :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5. 12. 12. 공포(BGBl. IS. 2229)된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법률은다음 조처에 따른다 :
 - a) 제3조 제2항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사가 선거될 때까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학과 졸업 이외의 인사에게 적용된다.
 - b)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주들과 헌법기관들은 특히 근무자를 통해 대리시킬 수 있다.”

“제 4 조

동독의 브랜드에 관한 독점행정관청이 갖고 있는 기존의 권한은 소멸된다. 브랜드독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점행정관청의 자산에 대한 관리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연방독점행정관청에 이양된다. 연방독점행정관청은 규정에 따라 위의 자산관리 권한을 갖는다. 이와 동시에 연방독점행정관청은 브랜드에 대한 독점행정청(동독)의 의무를 이양받는다. 이 독점행정관청의 사법적인 계약은 계약에 따른 장기적인 해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해약할 수 있다. 계약해지권은 1991

년 12월 31일 부로 소멸된다. 계약서에 특별히 해약에 관한 것을 명시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배상은 제외된다.”

13. 1967.12.22. 제정되고(BGBI. I. p.1339) 1986.12.16. 이 법 제23조를 최종 개정한 (BGBI. I p.2441) 농업용가스 및 유류사용에 관한 법은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1월 1일 부터 발효하며 또한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17조 다음에 제17a조를 신설한다:

제 17 조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제2조 제1항과는 달리 브란덴부르그, 맥클렌부르그-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주와 헌법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동베르린의 농업경영에 적용되는 것은
 1. 토지의 경작 혹은 토지의 경작과 관련된 가축사육에 의한 동·식물 생산 경영과
 - a) 그로부터 자연인이 소득을 얻거나,
 - b) 그것에 대한 소유자가 농업생산협동조합 혹은 이와 유사한 법적으로 관리가 없는 집단의 공동체 또는 사법에 의한 법인이면서 농산품을 획득하는 경우 타인의 생산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구입이총판매액의 백분의 30을 넘지 않거나
 - c) 소유자가 사단법인체, 혹은 유사단체거나, 법인체가 아닌 협회 또는 사법상의 법인체 이거나, 그리고 자체 생산량이나 또는 회사 제품대리 판매량이 전체유통량의 30%를 초과하지 않거나, 이동 양치기와 저수지 경영,
 2. 특히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협동경영과 기계공동경영단체, 수자원협회, 토지협회 그리고 기타의 공동체 등의 기업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위의 1호에 언급한 기업에 대하여 농경지경작을 통하여 혹은 농경지경작과 관계가 있는 가축의 사육에 의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얻기

위한 작업을 하는 기업 ;

3.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개용수에 필요한 자체개발품.

위의 제1호 a)에 의한 지속적 총수익은 연간 최소한 4000마르크이다.

(2)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식량·농업삼림장관과의 합의와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제적인 적응을 쉽게하기 위한 다음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 가축사육을 통한 생산물을 얻기 위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결정

a) 비용경감허가는 ha로 표시하는 농업 경작지 한도내에서 가축사육을 하느냐에 따른 결정

b) 경작지가 없는 경우에도 농산물생산과 공동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그리고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작지와 협동하는 경우 가축의 수가위의 a)에 명시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에 대한 허가

2. 제1항과 위의 제1호의 내용에 따른 농업경영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퇴비와 비료의 생산에 필요한 가스 및 유류사용에 대한 제3조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수까지, 또한 농·축산 자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농업경영에 투입되는 물자가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차량이 아닌 것에 대하여 지원을 보증하며, 또한 이러한 차량이 이미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되었거나 이미 언급한 목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14. 소유세와 유통세

— 효력발생과 일반적 적용규정 —

(1)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하여 독일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1. 수입매상세, 소유세 그리고 유통세에 대한 법,
2. 공과금법에 적용되는 수당과 프리미엄에 관한 법,
3. 경마법과 복권법 또한 카지노에 대한 연방법 차원의 규정.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위 제1항에 언급된 프리미엄, 수당, 소유세,

유통세에 대하여는 1990년 12월 31일 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던 법이 계속 유효하다.

(2) 1991년 1월 1일 이전 제1항에서 언급된 법의 적용에 있어 “국내”, “징수지역”, “국내외”, “토속의”, “형법의 적용범위”, “베를린 주”, “외국”, “역외”, “외국의”, “외계영역”, 그리고 “외국지역의” 라는 개념은 독일통일이 되기 이전에 이미 국가에서 사용했다면 그 의미와 법의 의미는 계속 사용된다.

(3) 통일 이후 제1항에서 언급한 법을 적용함에 있어 “독일민주공화국”에 동베를린을 포함하는 표현을 썼건 아니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과 이미 헌법의 적용을 받던 베를린의 일부인 서베르린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4) 제1항은 국제법에 따른 계약 또는 합의에 근거하는 법에도 적용한다.

15.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에 대한 선불(Vorauszahlung)은

(1) 해당세무서에서 선불을 확정할 때까지 1990년 7월 27일 제정된 (BGBl. No.41 p.616) 자체계산규정에 따라 최후지불한 할인지불과 1990년하반기 즉 1990년 7월 27일(GBl. I No.41 p.618) 제정된 과거의 국유화된 국제기업(*동구및 소련간의 국제기업), 기업 그리고 설비들이재단법인형태로 전환한 기업의 조세지불에 대하여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조세통보나 특별한 청구가 없이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에 대한 선불로 동일한 지불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액수를 담당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함께 산정하였던 조세류에 따른 분할지불을 분류해야하고 조세를 납부해야하는 기일과 조세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2) 1990년 하반기 과거 국공유형태의 소유였던 국제기업, 기업 그리고 시설들의 조세납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들은 1990년 7월 22일에 제정된 이러한 기업의 조세지불규정에(GBl. I No. 41 p.618) 따라

법인은 1991년 1월 1일부터 임대주택대지와 단독주택대지를 제외한 토지세법 제28조에 언급된 기업부지에 대한 토지세의 선불의 마감일까지 조세통보나 특별한 청구가 없이 납부해야하며 토지세가 확정될때까지 이에 의한다. 연간 선불지불액은 자산가치의 백분의 0.2에 달하며 이것을 독일마르크화 개시대차대조표에 공장부지의 가치를 표시해야 한다.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1문에 언급된 토지에 대한 토지세 확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6. 1987.2.17. 공포했고 1990.6.25. 이 법 제11조를 최종 개정한(BGBl. 1990 II p.518) 소득세법(BGBl. I p.657)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 제1조 제3항 제1문에서 “국내 이외의”는 “외국에”로 용어 개정

b) 제2a조 제5항과 제6항은 삭제

c)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29호에서 “서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국내에서” 로 용어개정

bb) 제63호는 삭제한다.

cc) 제69호는 삭제한다.

d) 제7조 제5항 제4호, 제7h조 제4항 그리고 제11a조 제5항은 삭제한다.

e) 제11b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2항은 삭제한다.

bb) 제1항은 제11b조가 된다.

f) 제42조 제4항에서 인용된 “제10e조,” 다음에 인용 “제10f조”가 추가되며 인용 “제52조 제21항 제4문부터 제6문까지”는 “제52조 제2항 제4문부터 제7문까지”로 용어 개정

g) 제42a조 제2항에서 인용된 “제10e조,” 다음에 인용 “제10f조”가 추가되며 인용 “제52조 제21항 제4문부터 제6문까지”는 “제52조 제21항 제4문부터 제7문까지”로 용어 개정

h) 제46조 제2항 제8a문 a)에서 인용된 제10e조, “다음에 인용” “제10f조”가 추가되고 인용 제52조 제2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52

조 제21항 제4문부터 제7문까지”로 개정한다.

- i)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삭제한다.
- j)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a) 제1항에서 “1990년”은 “1991년”으로, “1989년”은 “1990년”으로 용어 개정
 - bb) 제14b항 제2호는 삭제한다.
 - cc) 제27항 다음 제27a항이 신설된다 :

“제(27a) 제42조 제4항 제4문, 제42a조 제2항 제4문, 제46조 제2항 제8항 a)는 1991년에도 적용된다.”
- k) 제55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제56조에서 제59조까지 신설된다 :

제 56 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조세의무자에 대한 특별규정

1990년 12월 31일에 주소 혹은 주거지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거나 또는 1990년 동안 이 법의 유효영역내에 주소 또는 주거지 불명의 조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1. 제7조 제5항은 1990년 12월 31일 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설치 혹은 신축한 건물에 적용된다.
2. 제52조 제2항부터 제33항까지는 1991년전 경영 또는 세액산정 기간에 관한 개별규정이 적용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57 조

통일 독일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적용법

- (1) 이 법의 제7c조, 제7f조, 제7g조, 제7k조, 제10e조 그리고 소득세 시행규정 제76조, 제78조, 제82a조 그리고 제82f조와 방호건축법의 제7조, 제12조 제3항은 1990년 12월 31일 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적용한다.

- (2) 이 법의 제7b조와 제7d조 그리고 소득세 시행규칙 제81조, 제82d조, 제82g조 그리고 제82i조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발생한사안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 (3) 제7g조 제2항 제1호, 제13a조 제4항과 제8항 그리고 제14a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표준단일가치 대신에 가치판정법의 제125조에 의한 대체경제가치의 판정가를 적용한다.
- (4) 이규정에 따라 지난 세액산정기간내에 소득의 총액을 계정하였다면 제10d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제10d조 제2항과 제3항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0년 세액산정기간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5) 제22조 제4호는 1990년 3월 31일 이전에(GBI. I No.30 p.274) 동독국민의 회의 의원에 대한 법적인 관계에 따라 지불한 급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58 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 이전에 적용되던 법규의 계속 적용

- (1) 1990년 3월 6일 제정된(GBI. I No.17 p.136) 조세변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별감가상각에 대한 규정과 1990년 3월 16일 제정된(GBI. I No.21 p.195) -조세변경법-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법규의 변경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하여 특별감가상각 규정은 1989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1991년 1월 1일 이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새로 형성되거나 설치된 경제자산에 대해 계속 적용된다.
- (2) 1990년 3월 6일(GBI. I No.17. p 136)에 제정된 조세개정법 제3조 제2항과, 1990년 3월 16일 제정된(GBI I No.21 p.195) -조세변경법-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하여 형성된 적립금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허락되며 이 시점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적립금은 늦어도 1995년 이윤증가형식으로 또는 기타 수입증가형식

으로 세액산정년도까지 해체해야한다. 해체 이전에 쓴 경제자산을 구입하거나 생산했다고 하면 적립금은 구매가격 또는 생산가격에서 감해야 한다: 적립금은 감한 액수만큼 구입과 생산에 대한조세산정기간에 이윤의 증가 또는 소득의 증가 형태로 해소해야 한다.

- (3) 1990년 3월 16일 제정된(GBL I No.21. p.195) -조세변경법-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재산세에 관한 법규의 변경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액에 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기업을 창설했거나 또는 기업창설 이전에 2년 동안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한다.

제 59 조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고용자와 피고용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공제에 관한 적용법규

- (1)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거주지와 주거지를 두었거나 또는 이 법이 지금까지 적용되던 지역에 주거지를 둔 근로자의 근로수입에 대한조세 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1991년의 근로소득세 카드를 발급하는에 있어서 제39조 제1항 부터제 3항까지의 규정과는 달리 동독에 거주지를 둔 근로자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31일 부터(GBL I No.52 p.1063) 계속 적용한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취득한 근로자는 1991년의 근로소득세 카드를 담당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991년 1월 1일에 근로자의 담당기관이 관할영역에 주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머무르는 곳에 정상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제2항 제2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제39a조 제2항 제5문과는 달리 1991년의 근로소득세 카드에 1991년 1월 1일 이후 면세액을 기록할 수 있다.
- (2) 제41a조 제2항과는 다르게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영업자에게는 1991년도 및 당월도 근로소득세 신고기간이다.

- (3) 제42d조는 독일통일 이후에도 동독의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근거하여 통용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근로수입에 대한 조세적용을 위한 규정 제20조 제4항(1952년 12월 공표 - GBl. No.182 p. 1413), 1990년 6월 22일 최종 개정(법간행물 No.1427 특별인쇄), 은제1호와 관련된 근로소득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17. 1970.1.14.공포되고(BGBl. I p.127), 1990.6.25. 이법 제8조를 최종개정한(BGBl. 1990 II p.518) 투자회사에 관한 법 제53c조는 1990년12월 31일이 경과하면서 삭제된다.
18. 1988.10.26. 공포되고(BGBl. I p.2098), 1990.6.25. 이 법 제12조를최종 개정한(BGBl. 1990 II p.518) 주택건설 장려법 제10조에 다음의항들이 보충된다 :
- “(6) 1991년 부터 1993년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건축대부를 얻기 위하여 주택은행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 :
1. 계약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은 이와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다.
 2. 위 제1호에 의한 계약의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백분의 5의 할증률(추가장려금)과 1200 DM정도의 특별프리미엄지출과 부부인 경우 2400DM을 높여(추가적인 최고액) 적용한다.
 3. 제2조 제2항은 특별히 계약에 따른 목적에 일치하지 않게 적용하는 한 프리미엄과 별도 최고 금액에 영향을 준다. 또한 특별지역에 있거나 혹은 건축형태에 따라 장기적인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휴가주택과 주말 주택에 대한 적용은 역시 이러한 목적에 손해가 된다.
- (7) 1990년 6월 21일에 제정된 동독의 주택저축의 이용에 대한 법규(GBl. I No.37 p.478)는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적용한다. 이 법규에 따른 지원정책은 단지 1990년에 한해서 이행이 보장된다.”

19. 1984.2.10. 공포되고(BGBl. I p.217), 1989.12.22. 이 법 제2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2408)법인세법의

a) 제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a) 제1호 다음 제1a호가 보충된다 :

“1a. 독일 제국철도 ;”

bb) 제2호 다음에 제2a호가 보충된다 :

“2a. 베르린 국립은행, 신탁관리청 ;”

b) 제30조에 3항이 보충된다 :

“(3) 유한책임출자회사가 사용가능한 자체자본을 분할하려고 할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개시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기자본이 표기된 자본보다 많을 때 제2항 제4문의 내용에 따라 이 액수를 기록하여야 한다.”

c) 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1) 법의 이규정은 제54a조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1991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세액산정기간에 적용된다.”

bb) 제11항 다음에 제12항이 보충된다 :

“(12) 제30조 제3항은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후속검사의 조건이 필요하면 1991년 1월 1일 이전 결정적 시점에 적용된다.”

cc) 지금까지의 제12항은 제13항이 된다.

d) 제54조 다음에 제54a조가 보충된다 :

제 54a 조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법인, 인사통합 또는 자산집단에 대한 특별규정 1990년 12월 31일 본부 또는 본점의 위치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거나 또는 1990년도에 본점 또는 본점의 위치가 지금까지 이법이 효력을 미치는 지역에 있지 않는 법인, 인사통합 또는 자산집단은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1.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마감된 회계년도에 대한 이윤분배는 제28조 제3항과는 달리 제30조 제2항 제4문에 따른 액수로 계산한다.
2.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마감된 회계년도에 대한 이윤배분에 대해서는 1970년 9월 18일 공포된(법공포 별쇄본 No.671) 동독의 법인세법(KöStG)과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재산세 - 조세변경법 - 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1990년 3월 6일 제정된 법(GBl. I No.17 p.136)에 의하여 변경된 것과 독일연방공화국과 화폐통합을 실시하면서 조세법규의 변경과 추가를 위한 1990년 7월 22일 제정된 법률(법공포 별쇄본 No. 1 427) 계속 적용한다.
3. 1990년 세액산정기간에 발생한 손실이 1990년 이후의 세액산정기간의 소득에 관한 것이라면 제30조 제2항 제4문에 따른 부분액수에 대해서는 제33문 제2항에 따라 우선 계산된다.
4. 제44조와 제55조에 따른 증명서는 1991년 1월 1일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발급될 수 없다.
5. 위의 제4번과는 반대로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6항이 적용된다.
6. 제46조에 따른 증명서는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끝나는 회계년도의 이윤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된다.
7. 제29조 제2항 제1문에 의한 자기자본의 분할, 제30조에 따른 사용가능한 자기자본의 구성과 제47조에 따른 조세원의 특별한 확보는 최초로 1991년 1월 1일에 시작한다. 이와 함께 사용가능한 자기자본은 제30조 제3항과 같이 정리한다.
8. 1991년 이전의 조세산정연도 또는 회계년도에 대한 각각의 적용 규정이 있다면 제54조 제2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1984.5.14. 공표되고(BGBl. I p.657)과 1990.6.26. 이 법 제5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1143) 영업세법의
 - a)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a) 제6항은 삭제한다.
 - bb) 제7항과 제8항은 제6항과 제7항이 된다.

- b)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aa) 제2호 다음에 제3호를 보충한다 :
- “3. 독일제국철도, 국립은행 베를린, 신탁관리청 ;”
- bb) 제14호의 다음에 제14a호는 삭제한다 :
- “제14a. 1991년 부터 1993년까지 징수기간에 대한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농업생산조합과 협동조합 형태의 농업생산조합의 법적 후계자.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면세의 조건은 농업과 임업행위가 제한되었을 때이다 ;”
- c) 제9a조는 삭제된다.
- d)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aa) 제1호의 “1”이라는 숫자는 삭제한다.
- e) 제28조 제1항 제3문은 삭제된다.
- f) 제34조 제1항 제2문에 “그러나 제2조 제6항 제1문에 언급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삭제한다.
- g) 제35a조 제1항에서 “-제2조 제6항 제1문에서 언급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삭제된다.
- h)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aa) 제1항에서 “1990”년은 “1991”년으로 개정된다.
- bb) 제5항 다음에 제5a항이 추가된다 :
- “(5a)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생산공장에 대하여 제10a조가 1990년 징수년도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9a조에 따른 영업손실이 1990년 6월 26일 제정된 법 제5조 제1문 (BGBl. I. I p.1143)에 따라 영업수입으로 부터 생략된 것이라면 제10a조에 따른 생략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21. 1986.11.24. 공포되고(BGBl. I p.2047), 1988.7.25. 이 법 제4조를 개정한 (BGBl. I p.1093) 영업세법 시행령의
- a) 제7조는 삭제된다.
- b) 제36조에 “1990년”은 “1991년”으로 변경된다.

22. 1990년 6월 22일 제정된 동독 -투자법(BGBL I p.1143)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지금까지의 문장은 제1항이 된다.

b) 다음과 같이 제2항과 제3항이 보충된다 :

“(2) 1992년 1월 1일 이전에 경제자산이 이월되었을때에 제1조에 따른 적립금 설정이 가능하다.

(3) 제2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새로 형성된 부분의 획득이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제2조에 따른 적립금이 설정된다. 자회사의 손실이

1.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조직관리자에게 계산된다거나 혹은

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과 제5항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d조 제1항에 따른 자회사의 소득산정에서 감산된 것은 적립금 설정에서 제외된다.”

23. 1972.9.8. 제정되고(BGBL I p.1713), 1984.12.14. 이 법 제6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1493) 대의조세법 제20조에 다음과 같은 제6항이 보충된다 :

“(6) 1990년 12월 31일 이후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무한정한 조세의무는 1970년 9월18일 제정된(법공표 별쇄본 No.670) 동독의 소득세법의 제1조 제1항에 따른 무한의 조세의무와 같다. 이미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자연인에 대한 무한정한 조세의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24. 1979.11.26. 제정되고(BGBL I p.1953), 1990.6.25. 이 법 제10조를 최종 개정한(BGBL 1990 II p.518) 대상세법의

a) 제1조 제1항과 제3항, 제3조 제8항, 제3a조 제2항 제2문, 제5항, 제4b항, 제5c호와 제5d호, 제6c호, 제8i호, 제54a조 제1항 제4문과 제5문,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제7조 제1항과 제2항, 제8조 제1항 제4문 그리고 제2항 제1문,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c호, 제

- 15조 제1항 제2문, 제16조 제5항 제2호, 제18조 제5항 제3호 제7항 제1호, 제8항과 제9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3호, 제25a조 제1항 제1호와 제28조 제5항에 “징수지역”대신에 “국내”로, “대외지역”대신에 “외국”으로, “대외지역의” 대신에 “외국의”로 수정한다.
- b)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2) 이 법에 따라 국내는 면세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예외로 하는 독일연방공화국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한 외국은 국내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국내에서 거래가 행해 졌다면 기업가가 독일국적을 가졌거나, 기업가의 거주지 또는 주거가 국내에 있다거나, 국내에 영업지가 있다거나, 국내에서 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또는 지불액을 받아들였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조세부과가 이루어 진다.”
- c) 제2조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
 “2. 법인의 실제적인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았을때 재정적, 경제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조직관리자의 기업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Organschaft), 조직의 효력은 국내에 있는 기업간의 내부관리에 한정한다. 이러한 기업의 부분은 한 기업으로 취급한다. 조직관리자의 관리체계가 외국에 있다면 국내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업부분을 주기업으로 인정한다.”
- d)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3호a는 다음과 같다 :“a)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수송과 국제적인 철도화물수송 및 제1조 제3항 제4호 a)에 표시한 국내의 자유무역항으로 부터 운반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는다 :”
 bb) 제6호a는 다음과 같다 :
 “a) 외국에 있는 철도관청의 공동역, 연계역, 국경철도와 통과철도에 관한 독일 연방철도와 제국철도를 통한 발송 그리고 기타의 서비스”
- e) 제10조 제6항 제1문과 제2문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허가가 없는 버스를 이용한 비정기적인 여객운송에 대해서합의한 운송비는(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평균적인 수송비용을 적용한다. 평균적인 수송비라는 것은 국내에서 수송한 사람의 수와 Km에 의한 거리에 따라서 계산한다.”

f) 제1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3호는 다음과 같다 :

“3. 물품의 중계와 납품 그리고 국내의 최초납품지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 :”

bb) 제4호 a는 다음과 같다 :

(a) 중계와 납품 그리고 국내에 있는 수입매상세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결정된 또다른 납품지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g)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 “2. 조세면제된 것이 만일 국내에서 수출된 것이라면 외국에서의 판매액은”

bb) 제3항 제2호 b는 다음과 같다 :

“b) 그리고 물건 또는 서어비스의 수하인이 유럽경제공동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다면 제4조 제8호 a에서 g까지 혹은 제10호 a에 의한조세는 면제 된다.”

h) 제16조 제5항 제1문은 다음과 같다 :

“부정기적인 노선에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버스로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제1항과는 달리 조세의무가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관세담당청에서 이를 계산한다.”

i) 제25조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 “1. 유럽경제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j) 제26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3) 만일 기업가가 조세에 대한 특별한 증명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항공을 이용한 국경을 넘는 운반에 대한 조세가 낮게 책정되었거나 또는 전부 혹은 일부가 면제되었다면연방 재무장관은 공과금규칙 제163조와 제22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 외국인 기업가가 소속하고 있

는 국가의 규정을 적용하고 독일연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가에 의하여 항공운송이 이루어 졌다면 매상세 및 이와 유사한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k) 제26a조는 삭제된다.

l) 제27조에 아래와 같은 제10항이 보충된다:“(10) 제26조 제4항과 이법 규에 의하여 반포된 일반적인 행정규정은 통일효력이 발생한 이후 이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매상세 감면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m) a)에서 k)까지 언급된 개정은 1991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25. 1979.12.21. 제정되고(BGBl. I p.2359), 1990.6.30. 최종 개정된 (BGBl. I p.1313) 매상세에 대한 시행규칙의

a) 제1조는 다음과 같다 :

“제 1 조”

기타 업적에 대한 지역적 특수사정

유럽경제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기업가가

1. 국내에 있는 기업가가 아니면서 공법상의 법인에 대한 이 법의 제3a조 제4항에서 서술된 기타의 업적 혹은
 2. 국내에 있는 기업가에게, 국내에 있는 기업가의 작업장에 또는 국내에 있는 공법상의 법인에 대한 이 법의 제3a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서술된 기타의 업적을 제출하면 이법의 제3a조 제1항과는 달리 이러한 업적을 만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거나 혹은 이용되었다면 국내에서 업적을 완수한 것과 같이 취급한다. 만약에 이러한 업적을 기업가의 작업장에서 완성하였다면 제1항은 유럽경제공동체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b) 제2조에서 제2조를, 제3조에서 3조를, 제4조에서 4조를, 제5조에서 5조와 제6조를, 제7조 제1항부터 4항까지,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3항 그리고 제6항, 제14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2항 제1호, 제24조를 제41조의 제목에 제41조, 제43조 제3호, 제49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53조 제1항부터 4항까지, 제54조 제3항, 제56조 제2항 제1를, 제57조 제목에, 제57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 제58조, 제59조, 제6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69조 제2항의 “징수지역”이라는 단어에 “국내”라는 단어로, “대외”라는 단어에 “외국”이라는 단어로 “대외의”라는 단어에 “외국의”라는 단어로 대체된다.

c) 제7조 제5항은 다음과 같다 :

“(5) 라인, 다뉴브, 오데르 그리고 나이세를 통해 국경을 넘는 내륙수로 운송에 있어 국내구역의 운송범위에 대하여 외국의 운송 범위로 취급한다.”

d) 제9조 제4호에 제3문과 제4문을 삭제한다.

e) 제10조 제1항 제2호 f에서 “그러나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내의”는 삭제된다.

f)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

“2. 위의 1번에 따라 제출된 여권 또는 기타의 국경통과서류에 외국에서 소비한 물건이 기록된 것과 같다는 국경세관의 인정서.”

g)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 법 제4조에 제3항 a)의 의미에 따른 운송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발송지 또는 도착지가 국내이며 외국은 단지 통과하는 상태로 국경을 넘는 화물수송,
2. 이러한 화물수송의 비용이 수입의 산출근거(이 법 제11조)에 없다면, 추가적인 처리로 인하여 원래 송장에 있는 도착지와 다른 국경을 넘는 화물수송과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철도수송에 관한 운송”

h) 제34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

“(2) 국경을 넘는 여객수송과 국제철도 여객의 승차권은 만일 운송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증명서에 어떠한 운임의 비율로 국내거리에

대하여 지불하였는가가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 적용된다. 증명서에 국내에 지불해야하는 운임비율에 대한 조세율을 표시해야 한다.”

i)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 제2문은 다음과 같다 :

“기업가가 국내의 업무상 여행에(제38조) 대한 지출초과에 대하여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거나 또는 기업가가 종업원에게 업무상의 여행을(제38조) 국내에 파견하였다면 숙박비에 대한 지출 또는 여행을 위한 초과지출은 전액지불하며 이 금액의 백분의 11.4를 원천과세로 징수한다.”

bb) 제2항 제1문은 다음과 같다 :

“기업가가 그의 고용인에게 업무상의 국내여행에 자신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특별한 증명서가 없어도 지출한 액수의 백분의 7.6을 원천과세로 징수한다.”

cc) 제3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

“기업가가 국내의 업무상 여행에 기업에 속하지 않는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면 그리고 기업가가 자동차 사용에 따른 지출에 대하여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기업가는 특별한 증명서가 없이도 운행한 매킬로미터에 대하여 백분의 5.3을 원천과세로 징수한다.”

dd) 제4항은 다음과 같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국으로 또는 외국을 통하는 업무상 여행 또는 출장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비되는 지출에 대하여도 역시 이와 같이 적용된다. 공제가능한 원천과세액을 산정하는데 국내여행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목적으로 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j)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1) 각각의 여행경비에 대한 특별원천과세징수 대신에 종사자가 행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여행에서 발생한 총액과 동일한

액수에 대해서 기업가는 여행비용의 백분의 9.2에 해당하는 액수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같이 업무상 여행 또는 출장이 외국으로 또는 외국을 통과하는 경우 비용은 국내에서 지출하는 경우를 준용한다.”

bb)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다 :

“징수되는 원천과세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국내여행에 대한 소득세 또는 근로 소득세 부과 목적으로 이용되는 액수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k) 제51조 제3항 제1문은 다음과 같다 :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가는 국내 관세자유지역에도 거주지가 없는 기업인을 말하며 또한 업무수행자 또는 지점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l) 제37a조는 삭제된다.

m) 제76조에서 제2문은 삭제된다.

n) a)부터 m)까지의 개정안은 1991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한다.

26. 1985.5.30. 공포되고(BGBL. I p.845), 1989.12.22. 이 법 제5조를 최종 개정한(BFBL. I p.2408) 사정법(査定法)의

a) 제110조 제1항 제6호 b)에 “1986년 8월 26일(BGBL. I p.1421,1550), 그리고 1987년 12월 14일 이 법 제9조에 의하여 변경된 것(BGBL. I p.2602)”은 삭제된다.

b) 제11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3호 에서 “1986년 8월 26일(BGBL. I p.1421, 1550)과 1987년 12월 14일에 이 법 제9조에 의하여 개정된 것(BGBL. I p.1602),”은 삭제된다.

bb) 제9호에서 “1986년 8월 26일(BGBL. I p.1421, 1550)과 1987년 12월 14일에 이 법 제9조에 의하여 개정된 것(BGBL. I p.2602),”은 삭제된다.

c) 제122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

“문항 1에 포함된 권한은 1992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 d) 제124조 제1문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 다음과 같은 제IV부가 보충된다:

제 IV 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자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 125 조

농업과 임업 자산

- (1) 1935년 1월 1일 당시의 가치에 따라 농업과 임업기업에 대한 공정(통일)가격은 1991년 1월 1일 이후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2) 농업과 임업기업에 대한 공정가격대신 제19조 제1항 제1호와는 다르게 제3항에 있는 자산에 대한 대응가치가 산정되며 199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것이 조세징수의 근거로 이용된다. 배상경제가치의 형성은 제2조와 제34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7항과는 달리 동일인이 제32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정기적으로 사용한 농업과 임업에 이용된 자산은 경제자산의 사용단위의 기본으로 하며 또한사용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26조는 적절히 적용되어야한다.
- (3) 제33조 제2항과는 달리 주거건축물과 이에 속하는 대지 및 토지는 농업 그리고 임업 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주거용대지는 부동산에 포함되어 부동산 적용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4) 배상경제가치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0조부터 제54조 까지,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2항 그리고 제62조의 적절한 적용에 의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산정된다. 소득여건의 비교에 있어서 제38조 제2항 제1호와는 달리 주변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51a조 제1항 c)는 적용하지 않는다.
- (5) 배상경제가치의 산정은 1964년 1월 1일 독일연방의 농업과 임업 자산에 대한 통일가치설정 방법에 근거한 가치설정을 기본으로 한다.

(6) 임업적인 사용과 기타의 농업적인 그리고 임업적인 사용을 제외하고 사용의 비교수치와 사용부분으로부터 제40조의 수익가치의 적용에 의한 배상비교가치는 배상경제가치의 구성요소로 측정한다. 사용과 사용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수치가 적용된다 :

1. 농업경제적 사용

a) 홉(Hopfen, * 맥주의 양조에 쓰는 곡식)과 아스파라거스를 제외한 농업경제 사용 또 다른 자연적, 경제적 수확조건을 감안한 토지평가는 매 헥타를 백으로 계산한 농업경제적 비교수치로 계산한다.

b) 호프

호프농사 - 매 100㎡에 대한 비교치 40

c)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농사 - 매 100㎡에 대한 비교치 40

2. 포도재배를 위한 이용

포도재배 - 매 100㎡에 대한 비교치 :

a) 포도생산(비확장) 32

b) 통에든 포도주 생산 25

c) 병에든 포도주 생산 30

3. 정원에 사용

정원농사 - 매 100㎡에 대한 비교치 :

a) 채소, 꽃, 관상용식물재배 면적 :

aa) 채소재배 50

bb) 꽃 및 관상용 식물재배 100

b) 과일재배 면적 50

c) 수목묘상 면적 60

d) 유리나 비닐하우스의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앞에 열거한 비교수치가 증거한다.

aa) 채소

열공급이 필요없는 것 약 6배

열공급이 필요한 것 약 8배

- bb) 꽃재배와 관상용 식물재배, 수목묘상
 열공급이 필요없는 것 약 4배
 열공급이 필요한 것 약 8배

(7) 다음과 같은 사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배상비교가치를 적용한다 :

1. 임업경제적인 사용
 배상비교가치는 매 헥타마다 125 DM에 달한다
2. 기타의 농업 그리고 임업적인 사용
 대용비교가치는 다음과 같다 :
 - a) 내수면어업 지속적인 연간어획의 매 kg에 2 DM
 - b) 저수지경영
 - aa) 송어저수지경영 매 헥타에 20,000 DM
 - bb) 기타 양어장경영 매 헥타에 1,000 DM
 - c) 내수면어업과 저수지경영을 위한 양어
 - aa) 송어저수지 경영을 위한 것 매 헥타에 30,000 DM
 - bb) 기타 이란적인 내수면어업과 저수지경영을 위한 것
 매 헥타에 1,500 DM
 - d) 양봉업 매 벌통에 대하여 10 DM
 - e) 양치기 매 에미 양에 대하여 20 DM
 - f) 모종재배 지속적인 연간수입에 대하여 백분의 15
 - g) 크리스마스츄리용나무재배 매 헥타에 3000 DM
 - h) 버섯재배 매 평방미터당 20 DM
 - i) 씨앗밭아지 지속적인 연간수입의 백분의 20

제 126 조

배상경제가치의 효력

(1) 제125조에 따른 배상경제가치는 토지세에 적용된다 ; 배상경제가치는 조세액 측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다. 배상경제가치의 변경에 따른 토지세 측정액의 새로운 세액산정을 하는데에는 제2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

적용된다.

- (2) 다른 조세에 대해서는 농업 그리고 임업 자산에 대한 배상경제가치혹은 이러한 가치에 해당되는 것에 부과되는 경제자산의 가치를 적용한다. 소유형태와 배상경제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각의 조세를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산정해야 한다.

제 127 조

배상경제가치에 대한 설명

- (1) 농업 그리고 임업적 자산의 사용자는(제125조 제2항 제2호) 사용하는 자산 또는 자산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배상경제가치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세액통고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2) 199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1991년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항은 적절히 적용된다.

제 128 조

통지, 징수, 고시, 이행

제29조와 제30조 제1호는 내용에 따라 배상경제가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 129 조

토지자산

- (1) 토지에 대하여는 1935년 1월 1일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 또는 결정되어 지는 단위가치가 적용된다(1935년 통일가격).
- (2) 제130조와 제131조에 대한 유보로 1935년의 단위가치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27조, 제68조부터 제94조까지 대신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1. 1970. 9. 18. 제정된(법전 별쇄본 No.674) 동독의 가치판정법 제10조, 제11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3항 제2호,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2. 1935. 2. 2. 제정된 제국가치평가법 시행령 제3a조 제1항, 제32조부터 제46조까지(RGBL I p.81)와 1944. 12. 8. 최종 개정된 재산세법을 위한 시행령, 제국가치평가법을 위한 시행규칙과 지불할당액규정을 변경시키기 위한 규정에 따라 개정된 령(RGBL I p.338) 그리고
3.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이 적용대상지역인 경우 1934년 12월 17일에 제정된 경작지의 가치판정에 대한 주세무서장의 조례(Reichsministerblatt p.785 ff.),

제 130 조

전후건축물

- (1) 전후 건축물이라함은 1948년 6월 20일 이후에 완공된 건축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2) 전후 건축물이 연간 총임대료의 몇배 형태로 가치가 결정되면 거주면적에 대하여는 완공된 이후에 법적으로 허락된 임대료를 1935년 1월1일의 연간 총임대료로 산정한다. 전후 건축물이 1990년 6월 30일 이후에 완공된 것이라면 완공 이후에 임대료법 상정의 내용에 따른 법적으로 허락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법적으로 허락되는 임대료가 계속 적용되는 제국가치평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연간 총임대료에 속하지 않는 일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배제된다.
- (3) 임대주택대지, 다용도 대지 그리고 연간 총임대료의 수배로 가치가 계산되는 영업용대지에 대한 전후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이혼배를 적용한다.

제 131 조

주택소유와 부분소유, 주택상속건축권과 부분상속건축권

- (1) 모든 주택소유와 분배소유는 경제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계산한다. 대지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는 주택 소유와 부분소유의 묶이되는 건축물부분의 사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제2항과 제3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에 대하여 1935년의 통일된 가치의 산정을 위한 규정이 적용된다.
- (2) 백분의 80이상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소유는 임대 주택택지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연간 총임대료의 몇배 형태로 가치를 산정한다. 백분의 80이하 그러나 백분의 20이상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소유는 다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연간 총임대료의 몇배 형태로 가치를 산정한다.
- (3) 공동소유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기록된 부분의 소유비율이 연간 총임대료 부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가치를 산정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동소유에 속하는 각각의 방을 임대하여 주었다면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묶에 따라 그것의 가치를 분할하며 또한 각각의 경제적인 단위에 따라서 산정한다.
- (4) 주택상속건축권이나 또는 부분상속건축권은 계속 적용되는 제국가치평가법의 시행령 제46조가 적용된다. 주택소유 또는 부분소유에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가치도 역시 동일하게 산정된다.
총가치는 주택상속건축권자 또는 토지소유권자에게 이에 상응하게 배분한다.

제 132 조

1935년 통일가치에 대한 계속기입과 후속확정

-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1935년의 통일가치에 대한 계속기입과 후속확정은 1991년 1월 1일에 실시된다.
- (2) 계속 적용되는 제국가치평가법 시행령의 제32조의 내용에 따라 임대주택의 대지와 1가구주택에 대한 내용은 경제적인 통합에 대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고 단지 토지세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며 1991년 1월1일 이

후에 효력을 갖는 단위 가치보다 낮게 제공한다. 임대주택 대지와 1가구주택에 대한 단위가치는 후에 미래의 산정기준시점에 대하여 확정한다. 여기에 대해서 단위가치는 최초로 기타의 조세를 부과하는데 기본으로 한다.

- (3) 제2항에 의하여 대지에 대한 단위 가치가 확정되면 이 단위 가치는 확정서가 발표된 그 다음 해부터 토지세에 적용된다.
- (4) 단지 대지의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관계변화는 1994년1월 1일부터 이를 기록함에 따라 최초로 고려가 되며 또한 이미 이전에 다른 조세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정가격을 확정된 것도 고려된다.

제 133 조

1935년의 공정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특별규정

- (1) 제9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따른 토지와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지에 대한 1935년의 가치는 기업자산에 대한 공정가격의 산정과, 재산세, 상속세, 영업세 그리고 토지취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 1. 임대주택의 대지는 1935년의 공정가격에 대하여 백분의 100
 - 2.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대지는 1935년의 공정가격에 대하여 백분의 400
 - 3.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지, 일가구주택 그리고 기타의 건축물을 이미 설치한 대지에는 1935년의 공정가격에 대하여 백분의 250
 - 4.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은 나대지에 대해서는 1935년의 공정가격에 대하여 백분의 600.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된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완성한 이후의 사실상의 형질에 따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제국가치설정

- (2)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제1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기준가치와 토지취득세에 대한 표준일의 가치에 대해서도 제1항이 적용된다.
- (3) 1974. 4. 17.제정된 재산세 개혁법 제10항목 제3조와 1974. 4. 17.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을 위한 법 제10항목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4 조

경영자산과 자원채취권

- (1) 경영자산의 경제적인 통합에 대하여 1991년 1월 1일의 공정가격을 일반적으로 확정한다. (주요확정)주요확정기간은 4년이다.
- (2) 자원채취권은 1991년 1월 1일 현재 경영자산의 공정가격을 확정 하는데 있어 1990년 12월 31일 조세계정에 나타난 것과 동일 한 가치를 적용한다. 1992년 1월 1일에 자원채취권에 대하여 최초로 공정가격이재확정된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1989년 1월 1일의 확정시점에 있었던 가격관계는 소멸된다.
27. 1985. 3. 14. 공포되고(BGBI. I P. 558) 1990.6.25. 이 법 제14조를 최종 개정한(BGBI. 1990. II p. 518)재산세법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조 다음에 제1a호가 보충된다:
“1a. 독일 제국철도;”
- bb) 제2호 다음에 제2a호가 보충된다:
“2a. 베를린 국립은행, 신탁회사;”
- cc) 제7호 다음에 제7a호가 보충된다:
“7a. 동업자조합에 대한 영업세가 면제된다면 농업생산자 조합과 그의 법적인 후임자;”
- b)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3항 제1호에 “1986.8.26.(BGBI. I p.1421, 1550)제정되고 1989. 12.14. 이 법 제9조를 개정한것(BGBI. I p. 2602),”은 삭제된다.
- bb) 제4항 제1호에 “1986.8.26.(BGBI. I p.1421, 1550)제정되고 1987. 12.14. 이 법 제9조를 개정한 것(BGBI. I p.2602),”은 삭제된다.

제된다.

c) 제24조 다음에 제24a조가 신설된다 :

제 24a 조

독일통일 회복에 따른 특별규정

자연인, 법인, 인적단체와 재단에 대하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교부금규정 제19조와 제20조) 세무서가 그들에 대한 조세부과에 대해서 재산세는 1991년 1월 1일 현재 지난 4년 동안을 기준으로하여 확정한다(주세액산정).

28. 1974. 4. 17. 제정되고(BGBl. I p.933), 1990. 6. 25. 이 법 제13조를 최종 개정한다(BGBl. 1990 II. p.518)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제 37조 다음에 제37a조를 신설한다 :

제 37a 조

독일통일 회복에 따른 특별규정

- (1) 이 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0년 12월 31일 이후에 조세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상속 재산을 남긴 자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동독의 상속세법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조세가 성립되었다면 조세채무의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동독에서 1970년 9월 18일 제정된 상속세법 제34조에(법전 별쇄본 No.678)의한 조세부과가 가해지지 않았다면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 (3)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토지소유는 제12조에 따른 가치 산정에서 가치평가법의 제Ⅳ부(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자산 평가 규정) 이후에 있는 조세성립 이전 또는 조세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시점에서 확정되거나 산정되는 가치로 이에 대신한다.

- (4) 1991년 1월 1일 이전의 동독의 상속세법에 따라 성립된 것에 대해서도 제14조의 내용에 따라 그 이전에 획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 (5) 제15조 제1항의 내용에 의한 조세등급 I 혹은 II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독의 상속세법에 따라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 제14조에 의하여 그 이전에 획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 (6) 동독의 상속세법에 의하여 조세가 징수된 경우에도 제28조가 준용된다.
 - (7)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동독의 상속세법 제33조에 따른 세액확정이 매년 연금, 사용 또는 업적의 연간가치를 미리 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따른다면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매년 다음의 지불 만기일까지 그의 자산가치에 따라 연간세액을 감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로 준용된다.
 - (8) 동독의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면세되었다고 하더라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과 이 시점 이전에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조세 면제 규정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조세에 대해서 이 규정이 적용된다.
29.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11-8-1에 공시되고 1974. 4. 17. 이 법 제8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933) 상속세 시행규칙의
- a) 제9조 제1항 제2호 예 3(제9조 제1항에) 그리고 예 4(제9조 제2항에)에서 “독일의 소련점령지역 또는 베를린의 소련분할지”는 삭제된다.
 - b) 제18조 앞의 제 V 절에는 다음의 제15조가 신설된다:

제 15 조
규정의 적용

규정에 대한 앞의 정리는 1990년 12월 31일 이후 발생된 또는 발생하는 특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1973. 8. 7. 제정되고(BGBl. I p.965) 1976. 12. 14 이 법 제15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3341) 토지세법의

- a)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독일 연방철도”다음에 “또는 독일 제국철도”가 추가된다.
- b) 제13조 제2항에 “독일 연방철도”다음에 “또는 독일 제국철도”가 추가된다.
- c) 제38조는 다음과 같다:

제 38 조
이 법의 적용

“이 법률은 1991년도의 토지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 d) 다음과 같이 vi절이 신설된다:

제 vi 절

1991년도 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조세 대상물에 대한 토지세

제 40 조
농업과 임업 재산

제2조의 내용에 따른 농업과 임업기업 대신에 가치평가 제125조 제3항에 따른 사용단위로 통합한 자산이 대치된다. 토지세 납부자는 제10조와는 달리 농업과 임업 자산을 사용하는 사람이다(가치평가법 제125조 제2항). 자산에 대한 다수의 이용자는 총채무자이다.

제 41 조

단위가치에 대한 토지세 측정

토지세에 대한 세액산정시점에서 1935년의 공시가격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확정된다면(가치판정법 제132조) 제15조와는 달리 조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1937년 7월 1일에 제정된 계속 적용할 수 있는 토지세 시행규칙의 제29조에서 제33조의 조세측정치가 적용된다. 일가구주택에 대한 유효조세측정치는 개인 소유주택과 또한 주택지상권에 의하여 침해받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상속건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42 조

대체측정기준에 따른 임대주택지와 단독주택 토지세의 측정

- (1) 토지세에 대한 조세부과시점인 1935년의 단위가치가 임대주택지인 단독주택에 대하여 설정되지 않았거나 설정될 수 없었다면(가치평가 제132조) 연간 토지세액은 임대주택지와 단독주택에 대하여 거주면적에 따라 또는 기타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면적에 따라 측정된다(대체가치판단기준).
- (2) 토지에 대하여 연간 백분의 300의 징수율을 부과하는 대상은
 - a) 욕조, 실내 화장실, 중앙난방이 설치된 주택에 대해서 거주면적의 매 m^2 에 대하여 2마르크
 - b) 기타 주택에 대하여 거주면적의 매 m^2 에 대하여 1.5마르크
 - c) 1개의 승용차 차고당 10DM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대지위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매 m^2 의 사용면적에 연간액수를 적용한다.
- (3) 제2항의 결정사항과 징수율이 다르다면 제2항의 연간 지불액은 대지에 대하여 확정된 징수율을 백분의 300으로 높이거나 혹은 낮춘다. 이에 따라 결정된 주거 면적 혹은 사용면적의 매 m^2 에 대한 연간액수를 페니(*1마르크는 100페니)까지 계산한다.

- (4) 조세의무자는 제10조에 따른 공시가치의 확정시점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는 토지와 대지가 제3자에게 속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3 조

새로 건축된 주택에 대한 면세

- (1) 1980년 12월 31일 이후 그리고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완공된 또는 완공될 주택과 택지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1.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을 포함한 택지는 건축물이 완공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10년간 면제 기간중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부분을 면세한다.
 2. 1990년 중에 완공된 주택을 포함한 택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면세한다.
 3. 1991년 중에 완공된 주택을 포함한 택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면세한다.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조세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
- (2) 제1항의 의미에 따라 택지위에 부분적으로 면세해당 주택이 있다면 다음 내용이 적용된다:
1. 단위가치에 따라 (제41조) 토지세가 산정되면, 조세 부과 주택과 공간 또한 그에 관련되는 택지와 대지에 부과 되는 그에 상응한 공시가격의 일부분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면제기간 조세액을 산정한다. 공시가격의 조세지불에 대한 의무가 있는 부분은 세액측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다.
 2. 대체측정기준치가 주택면적과 사용면적의 표준이 되면(제41조) 제1항의 면제기간 동안 면세주택의 주거면적에는 제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주택의 환경 또는 개량을 위한 증축, 준공 또는 개축은 주택과 동일

하게 취급한다. 이 건축 규정은 이를 통하여 가치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제 44 조 조세신고

- (1) 토지세가 주거면적과 사용면적에 따라 측정되면(조세의무자)는 제 42조에 따라 토지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공문서 양식에 따라 조세신고를 해야 한다(조세신고).
- (2) 조세의무자는 토지세 징수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역자치단체에서 공시한 징수율을 기준으로하여 토지세를 계산한다. 이에 공시되지 않았다면 조세의무자는 전해의 징수율에 따라 계산한다; 1991년도에 대해서는 백분의 300의 징수율이 적용된다.
- (3) 조세신고는 매 당해년도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라 당해년도의 토지세 만기 지불 완료일까지 계산하여 제출한다. 토지세 지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 45 조 소액의 만기

시 또는 지역 위원회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28조 제2항 및 제3항과는 달리 소액에 대한 지불방법을 허락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소멸될 때까지 이러한 규정이 존속한다.

제 46 조 지역자치단체의 권한

토지세의 확정과 징수는 주법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까지 지역자치단체의 의무이다.

31. 1982. 12. 17. 제정되고(BGBI. I p.1777), 1990. 6.25. 이 법 제16조를 최종 개정한(BGBI. 1990 II p.518) 토지취득세법의

a) 제10조에 다음과 같은 6항이 추가된다 :

“(6)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농업 및 임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단위가치 대신에 이에 상응하는 대체경제가치가 도입된다(가치평가법 제125).”

b) 제18조 제6항은 1990년 12월 31일 이후 삭제된다.

32. 1972. 12. 17. 공포되고(BGBI. I. I p.2129), 1990. 6. 25. 이 법 제15조를 최종 개정한(BGBI. 1990 II p.518) 재산거래 조세법의 제7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제7a조가 신설된다 :

제 7a 조 특별규정

내국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외국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내국지사가 그의 기업관리를 위한 또는 정관에 따른 소재지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다면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회사설립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11-15로 공포되고, 1990. 6. 28. 이 법 제4조를 최종 개정한 보험세법의(BGBI. I p.1249)

a) 제7a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이 추가된다 :

“(3) 통합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과 동베르린주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1993년 12월 31일 까지 세무서가 지역관할권을 갖는다.”

b) 제12조는 삭제된다.

c) a)와 b)에 따른 개정안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34. 1979. 12. 21. 제정되고(BGBI. I p.2353), 1990. 6. 28. 이 법 제5조를 최종 개정한(BGBI. I p.1249) 화재방지 세법의

a) 제10호에 다음과 같이 제 5항이 추가된다 :

“(5)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과 동베르린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1993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가 지역관할권을 갖는다.”

b)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이 추가된다:

“(4) 제10항 제5항에 언급된 세무서에 납부되는 화재방지세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동베를린에 귀속된다. 이 세입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 |
|-------------|----------|
| 과거의 동베를린 | 백분의 6.6 |
|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 | 백분의 8.7 |
| 브란덴부르크 | 백분의 19.7 |
| 작센 | 백분의 31.2 |
| 작센-안할트 | 백분의 18.8 |
| 튀링겐 | 백분의 15.0 |

동 베르린 지역의 세무서가 법인에 대하여 이러한 비율로 분할한다.”

c) 제12a조는 삭제된다.

d) a)와 b)항의 개정안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5. 1979. 2. 1. 공포되고(BGBl. I. P.132), 1990. 6. 25.이 법 제17조를 최종 개정한(BGBl. 1990 II p.518), 자동차세법의

a) 제3조에 12a호는 1990년 12월 31일 이후 삭제된다.

b) 제3f조에 다음과 같이 제6항이 추가된다:

“(6)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인가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만 적용한다. 조세 면제기간의 산정에 대하여는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이 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시작된 시기부터 계산한다”

c) 제3g조에 다음과 같이 제8항이 추가된다:

“(8)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인가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7월 31일 까지 기술적인 개량이 있었다면 촉진기금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촉진기금의 기술적인 전제가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이를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d) 제9조에 다음과 같이 제6항과 제7항을 추가한다 :

“(6) 1990년 12월 31일 현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인가된 승용차와 이륜차는 1992년 12월 31일 까지 제1항과는 달리 연간 조세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1. 이륜차와 삼륜차에 대해서는 매 100ccm 배기량마다 12 DM,
2. 삼륜차를 제외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 100ccm배기량마다 18 DM.

(7) 저유해물질 배출형이 아닌 또는 “제한적인 저유해물질 배출형 c 급”에 해당하는 또는 1990년 12월 31일 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인가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1986년 1월 1일 대신에 1991. 1. 1. 그리고 1985년 12월 31일 대신에 1990년 12월 31일 로 대치되어 위의 제1항이 적용된다.

e) 제10조 제5항은 1990년 12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 삭제된다.

f) 제12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

“소재지를 이전시킨 다음 조세가 수입인지에 의해 혹은 변상절차에 의해 지불되었다면 지금까지의 조세의무는 소재지 이전과 함께 종료 된다.”

g) 제12조 다음에 아래와 같이 제12a조와 제12b조가 신설된다 :

제 12a 조

수입인지에 의한 조세의 지불

- (1) 제12조와는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인가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199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인지로 지불해야 한다. 차량소지자는 이미 1991년 1월 1일 인가된 차량에 4월 30일까지 당해 년도의 연간세액 만큼의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자신의 차량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조세카드에 이를 부착시킨다.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1년의 지불기간에

상당하는 수입인지에 의하여 지불해야하는 조세의 액수를 확정한다. 지불기한 만료전에 조세의무가 끝나면 조세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매달마다 청구를 통하여 연간세액의 1/12을 부과한다.

- (2) 차량의 소유에 대하여 조세면제가 되었거나 조세감면이 된 경우에 세무서는 이를 조세카드에 기입한다. 조세면제 혹은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른 공무원의 결정과 관련이 있다거나 다른 공무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조세면제 또는 조세감면에 관하여 이의 제기를 유보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한다.
- (3) 도로 이용차량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조세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교통검문시 제출해야 한다. 인가 담당 공무원은 인가의무가 있는 차량과 관련된 그리고 차량증명서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조세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 (4) 조세의무 완료후 세무서의 허가관리에게 조세카드를 제출해야한다. 세무서는 다른 이유 특히 조세 결정방식의 변경에 있어서 조세카드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조세가 인지방식으로 지불되지 않거나 적절하게 지불할 수 없다면 조세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다.

제 12b 조 공제방법

- (1) 제12조와 제12a조의 내용과는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인가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한 사람이 50대 이상의 차량을 인가받았거나 관련된 조세의 지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때는 공제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는 업무의 단순화를 위한 경우에도 공제방법을 기타의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공제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2) 공제방법에는 차량소유자가 세무서에 당해연도가 시작한 이후 한달 안에 또는 세무서가 결정한 시기에 공공기관의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해 차량, 과세대상 그리고 자신이 계산한 조세가 이

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계산된 조세는 당해년도의 2월 15일
까지 혹은 세무관청이 확정한 기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제
2항은 신고한 조세의 총액에 적용한다.

- (3) 당해년도 전기간 동안에 차량의 수 혹은 조세액의 규모에 변화가
있다면 당해년도가 끝난 다음 달 혹은 세무관청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조세신고에 이러한 변화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4) 세무관청은 공제방법과 관련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발
급하며 이 수입인지에는 공제방법에 관한 허가 결정을 기록한다.
제12a조 제2항부터 제4항은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5) 공제방법에 따라 신고한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검사가 허락된다. 이때 검사관은 차량소유자의 모든 차량
을 관찰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제삼자의 대지 혹은
공장건물에 출입하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36. 1979. 7. 3. 공포되고(BGBI. I p.2185), 1989. 12. 22. 이 법 제2조
를 최종 개정한(BGBI. I. P. 2436) 자동차세 시행규칙의

- a)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점은 쉽표로 대치되며 다음과 같이 제4호와
제5호가 추가된다:

“4. 통일조약 제 3조에 언급된 지역의 차량에 대한 조세가 수입인지
(이 법 제12a조)에 의하여 납부된다면,

5. 이 법 제12b조에 따른 공제방법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조세가 부
과된다면,”

- b) 제5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제4호를 추가한다:

“4. 수입인지방식으로부터 자동결정방식과 자동수납방법으로 전환함
에 있어서 허가기관은 당해 세무관청이 필요한 모든 자료 특히 지금
까지 수입인지로 지불한 조세의 정도를 통보한다.”

- c) 제7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추가한다:

“(4) 이 법 제3g조 제8항 또는 제12a조 제2항에 따라 세무관청이
허가기관대신에 결정하였다면 세무관청은 차량증서에 적당한 방법으
로 결정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허가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7. 1976. 9. 14. 제정되고(BFBI. I p.2793), 1985. 3. 13. 이 법 제13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554) 세무공무원 교육법의 제5조에 다음과 같이 제5항이 추가된다 :

“(5)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1항에 의한 고용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수의 응모자를 모을 수 없을 경우에는 부록 I 제 XXI 장의 연방공무원법에 관한 합의된 경과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방재무장관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규정에 따라 고급공무원의 임명을 관리한다.”

38. 1982. 9. 6. 공포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시험에 관한 규정(BGBl. I p.1257)의 제4조에 다음과 같이 제4항이 추가 된다 :

“(4)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규정에 따라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정교사 임용 조건을 규정한다.”

39. 1969. 8. 19. 제정되고(BGBl. I p.1273), 1990. 7. 18. 최종개정된(BGBl. I p.1446)예산기본법의 제1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한다 :

“백클렌부르그-포폼메른주, 부란덴부르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주와 동베르린은 1991년 3월 31일 까지 제2항에 따라 법안상정에 관한 위임을 하여야 한다.”

40. 통화,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 달성에 관한 1990년 5월 18일의 조약(BGBl. 1990 II p.518)의 부록 I 의 제5조에 다음과 같이 제8항을 추가한다 :

“(8)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관청의 저축에 대하여 교환청구를 않은 경우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청구권자의 청구와 재무장관에 속한 화폐교환 심판관의 인정을 얻어서 교환하지 않은 것이 특별한 상황에 의한 것이라면 1990년 6월 30일 현재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저축을 독일마르크로 표시된 저축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규정에서 특별한 경우란 공공적인 지불수단 또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이 교환되지 않았거나 자연인이 교환하지 않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4주 이내에 청구

를 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독일연방은행에 모든 청구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41. 1988.10.3. 공포된 동독상주대표와 대표부의 종사자에 대한 매상세부과에 대한 규정은(BGBI. I p.1782) 삭제된다.
4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03-5로 공포되고 1971년 8월 30일 이 법 제6항목을 최종 개정한(BGBI. I p.1426). 제3차의 경과 규정의 부록 II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제1호, 제3호 그리고 제4호는 삭제된다.
 - b) a)의 개정내용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3. 1950년 8월 3일 제정된 자동차세법의 개정에 관한 법(베를린의 법규조례규정집 p.745)의 실행을 위해 1978. 2. 8. 제정된 베를린주의 조례는 1990년 12월 31일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44. 1983.10.13. 공포되고(BGBL. I p.1261) 1990. 6. 25. 이 법 제9조를 최종 개정한(BGBL. 1990 II p.518).

보험감독법의 제ii절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는 삭제된다.
45. “동독의 국영보험의 청산”설치에 관한 법

제 1 조

기관의 설치

동독의 국영보험 청산기관이 설립된다. 청산기관은 공법에 따른 법인체이다.

제 2 조

“동독의 국영보험”의 권리와 의무의 이관

“동독국영보험회사”에 속한 보험회사들에 의하여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적인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독일생명보험회사에 이관하지 않은 사항은 이 청산기관이 담당한다.

제 3 조 기관의 업무

이 기관의 업무는 제2조에 따라 이 기관에 이관되는 보험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기관은 기타의 기업에 대해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이에 대비한 준비는 가능성에 따라 진행한다.

제 4 조 이 사

기업의 중역은 최소한 2명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이사회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다. 중역은 업무책임자다. 중역은 법률적 또는 비법률적으로 기관을 대표한다.

제 5 조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최소 2명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5년의 임기로 연방재무장관이 임명한다. 재임명은 가능하다.

제 6 조 정 관

이 기관의 정관은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정관은 연방재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 7 조 감 독

이 기관은 연방재무장관의 감시를 받도록 한다.

제 8 조

회계보고

이 기관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회계결산을 의무로 한다.

제 9 조

청산비용과 관리비용

제3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청산비용과 이 기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1990년 6월 17일에 제정된 신탁관리법에(GBL. I p.300)따라 설립된 신탁관리청이 부담한다.

제 10 조

기관의 해체

제2조에 따라 이 기관에 이관된 보험관계가 완료되면 연방재무장관은 이 기관을 해체한다.

46. 베를린 국립은행 이관에 관한 법

제 1 조

베를린국립은행에 대한 동독정부의 보증책임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방은 이를 위임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이관한 이후에 주의 참여 또는 제2조에 따른 이관을 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은 베를린국립은행이 이관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일 연방이 보증책임에 따라 청구를 받는다면 부담은 공화국(동독)재정의 총부채에 부과되며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에는 통일조약 제23조 제1항에 의한 법적인 능력이 없는 특별재산으로 넘어간다. 보증책임에 따른 청구로서 또한 보증책임의 전환에 따른 업적도 이에 적용된다.

제 2 조

(1) 연방재무장관은 통일조약 제23조 제7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법규에 따라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공법적 금융기관의 건전한 구조를 창출하기 위하여 베를린국가은행의 자산을 공법상의 금융기관에 혹은 기타의 다른 법인체에 총체적인 법적 후계자가 되는 과정의 청산이 없이 베를린 국립은행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인 혹은 수인의 법인체에 이관할 수 있다.

부분적인 이관에 관해서는 법규 혹은 그 내용을 이루는 지분에 대하여 이관하는 각각의 법인체에 전수되는 되는 대상물과 채무를 표시한다. 이관 과정에서 누락된 규정에 의한 대상물 혹은 채무의 자산의 부분도 청산된다.

(2) 규정을 공포하기 전에 베를린국립은행의 지휘기구와 감사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인체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3) 연방관보에 이 규정을 공시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이관에 관한 효력을 갖는다. 베를린 국립은행의 자산은 필요한 경우 규정 또는 그의 투입자본의 확정된 배분에 따라 규정에 표시된 법인체에 전가된다. 민법 제613a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총자산의 이관에 베를린 국립은행을 포함한다. 이관에 관한 사안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4) 베를린국립은행의 자산을 독일어음교환소, 독일지역은행에 이관하는 경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를 위해서는 주협동은행의 임무를 인수받을 수 있다.

47. “채권청산 기금”의 마련에 관한 법

제 1 조

기금의 창출

“채권청산기금”의 명칭은 연방의 특별자산으로 발행된다.

제 2 조 기금의 목적

- (1) 기금은 다음을 인수한다 :
1. 통일 효력 발생시 동독예산상의 종합 부채,
 2. 1990년 5월 18일 제정된 양독간의 화폐, 경제 그리고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부록의 제8항목 제4조 제6항에(BGBL. 1990 II p.518) 따른 보상청구의 배분에 의한 부채,
 3. 통일조약 제23조 제7항에 따른 베를린국립은행 보증책임에 의한 연방의 채무
 4. 통일조약 제24조 제2항에 따른 외국과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독일 민주공화국의 국가적인 임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에 따른 비용
- (2) 기금은 헌법 제110조 제1항과 제115조 제2항의 내용에 따른 특별 자산이다 ; 헌법 제115조 제1항은 이러한 기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법운영과 행정상의 지위

기금은 법률적 능력이 없다. 기금은 기금이라는 명칭하에 적법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 있다. 기금의 일반재판관할은 연방정부 소재지이다. 연방재무장관이 기금을 관리한다.

제 4 조 자산관리, 연방책임

- (1) 기금은 연방의 기타자산, 연방의 권리와 채무와는 분리하여 관리한다.
- (2) 기금의 채무는 연방이 책임 진다.

제 5 조 신용위임

- (1) 연방채무장관은 기금을 위하여 다음 사안에 대한 신용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1. 기금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
 2. 발생하는 이자와 채권발행비용의 충당을 위한 방법
 3. 시장조성에서 신용항목의 백분의 10까지 부채항목의 매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
- (2) 수신업무는 연방은행법 제20조 제2항의 방법 혹은 채무증서에 대치되는 채무인도에 의한 부채양도, 국고증권 그리고 국고어음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 (3) 기금의 채무증서는 연방에 대한 채무증서와 같다. 채무증서는 연방 채무관리청에서 작성한다.
- (4) 기금 채무는 일반 연방채무의 관리를 위하여 적용되는 기본원칙에 따라 연방채무관리청에서 관리한다.

제 6 조 상 환

연방과 신탁관리청은 기금 이자의 절반을 상환한다. 상환은 제1항에 언급된 이자가 발생한 달 다음달의 1일에 이루어진다. 연방채무장관은 이자의 총액과 참여한 몫으로 부터 나오는 지불액을 요청한다.

제 7 조 경영계획

기금은 1991년 1월 1일부터 매 회계연도에 세입과 세출이 명시되는 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제 8 조 연간 결산

- (1) 연방재무장관은 매 회계년도말에 연말정산서를 제시하며 이러한 연말정산서를 연방 예산의 부록에 첨부한다.
- (2) 연말정산서는 채권과 채무를 포함한 특별자산의 액수를 일목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세입과 세출을 증명해야 한다.

제 9 조 관리비용

기금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제 10 조 연방관할청과 동등 지위

기금의 연방, 주,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공법에 의한 법인에 흡수되는 공과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연방관할청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 채무의 분배

1994년 1월 1일 이후 신탁관리청, 연방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주 그리고 베를린주는 1990년 5월 18일의 조약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BGBl. 1990 II p.518) 기금에 관해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총부채를 위임받는다. 각각의 부채에 대한 배분은 1990년 6월 25일 제정된 법제34조에 따른(BGBl. 1990 II p.518) 특별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통합된

주가 총체적으로 부담하는 액수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주 그리고 베를린주의 몫은 서베를린주의 주민수에는 관계없이 독일통일당시 각주의 주민수에 관련하여 계산한다.

제 12 조 기금의 폐기

기금은 1993년이 경과하면 폐기된다.

제 iii 절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발효된다:

1. 통화, 경제, 사회통합의 달성에 관한 1990년 5월 18일의 조약(BGBl. 1990 II p.518)에 관련된 화폐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법규와 그리고 동독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관할권과 자격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통일 효력이 발생한 이후 12개월 안에 독일연방은행에 관한 법에 적용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603-3으로 공포되고, 1977.6.8. 이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801) 제1차 이관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환, 채무관계, 최초발행, 단기적인 보관 그리고 이주자의 편입에 대한 비용은 연방과 주가 부담한다.
 - b) 제1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제3항, 제4조 제2항과 제21조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 c) 기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1986. 4. 15. 공포되고(BGBl. I p.527) 1990. 6. 2. (BGBl. I p. 1332) 개정된 맥주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부록 I 제X장 E 제Ⅲ부 제1조의 a) b)에 있는 전제조건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

에서 다음과 같이 허락된다:

- a) 제9조 제1항부터 6항까지는 달리 양조업자가 맥주를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중앙관세청이 허가한다.
 - b) 제11조 제2항 및 제3항과는 달리 홉(*맥주원료곡식)을 원료로 한 생산물을 유통시킨다.
4. 연방 관보 제Ⅲ부 목록 7633-1 공포되고 1975년 3월 18일 이법 제6조를 최종 개정한 독일 철도와 전차회사의 연금구좌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관한 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2조 부터 제6a조까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V 장 연방경제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일반 경제법, 경제정책, 경쟁법과 정가법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이 효력발생에 있어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 1950. 9. 21. 제정되고(BAnz. No.189. 1950년 9월 30일), 1967. 12. 22. 최종 개정한 (BAnz. No.244, 1967년 12월 30일) 서베를린 철소비경제 정가보상규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1. 1969. 10. 6. 제정되고 1971.12.23.이 법 제3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2140) 지역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임무에 관한법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기획위원회는 연방과 주의 다수결정에 따라 결정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140-1로 공포되고 1989. 10. 10. 최종 개정한 (BGBL. I p.1853) 전쟁무기의 규제에 관한 법
 1. 제26a조는 다음과 같다:

제 26a 조
실질적인 폭력행사의 공고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 당일에 전쟁무기로 실제적 폭력을 사용하는 사실적 폭력 사용허가를 얻었거나 제26조에 따른 허가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 무기의 종류, 수량, 무기번호 그리고 기타의 특징을 표시하여 연방경제장관에게 통일후 2개월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는 신고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무기사용은 금지된다.

2. 제26a조 다음에 제26b조를 신설한다:

제 26b 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한 경과규정

- (1)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이 법에 의하면 허가가 필요하나 통일 효력 발생전 이미 시작된 또는 예측된다거나 연기할 수 없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허가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시적인 허가가 난 이후 일개월 내에 필요한 실질적인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 신청자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법적인 관계에서 보호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확신하면 제9조를 적용하여 적절한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 (2) 전쟁무기의 공급 또는 관리를 내용으로하는 동독의 국제법적인 조약은 제27조와는 달리 적용된다:
 1. 통일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전에 바르샤바협정의 가맹국들에 대한

1990년도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국가적인 주문이 있다면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2조 또는 제3조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허락을 얻음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바르샤바협정의 가맹국들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제1호의 내용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허가가 필요한 행위지만 연기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이와 같이 적용된다.
- (3) 동독이 이 법을 발효시키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을 경우 연방경제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법규정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26a조의 내용을 새로운 법과 관련하여 그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제 iii 절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는 다음과 같이 연방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1. 1969. 10. 6. 제정되고(BGBL. I p.1861), 1971.12. 23. 이 법 제3조를 최종 개정한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임무에 관한 규정은(BGBLI p.2140)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변경이 가능한 형태로 통일후 5년내에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원방안을 이행한다. 이 지역에서 이 기간동안 제2조 제1항과는 별도로 특별한 구조정책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방법에 대한 추가 제3조에 언급된 지원종류 그리고 공동체적인 업무영역의 연방재원의 특별한 분배조치등이 가능하다.
 - b) a)항에 언급된 과도기에 대하여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방평균치에 관한 계산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은 제외된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하여 a)항에서 언급된 기간내에 기초 계획에는 제2조 제1항과 다르게 제1조 제1항과 제3조를 보충하여 확정한다.
 - d) 실질적인 경제지원 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의 적용되지 않던 베를린주는 조치의 실행에 대한 지원 연방 또는 기타의 주에 의뢰한다.

e) 이미 존재하는 경과규정에 관한 연장의 필요성은 통일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다음에 검토된다.

2. 1971. 11. 4. 제정되고(BGBI. I p. 1745, 1749), 1984. 11. 12. 개정된(BGBI. I p.1337) 기술 건축 업적에 관한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1조 제3항 제3문에 있는 “기술자 위임 부여”와 제2조 제3항 제3문에 있는 “건축가 위임부여”라는 문구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3. 1976. 9. 17. 제정되고(BGBI. I p.2805, 3616) 1988. 3. 17. 최종개정된(BGBI. I p.359) 기술자 및 건축가 사례비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다음 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영업지가 있고 영업대상이 있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a) 제6조 제2항 및 제4항과는 달리 “주문함에 있어서”라는 단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제6조 제2항과는 달리 주문받은 자에 대하여 매 시간당 45마르크부터 140마르크 또한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에 대하여 매 시간당 35마르크부터 100마르크까지 산정할 수 있다.
 - c) 사례금지불표 제ii, iv, vii부터 xiii절에 있는 해당 최소액수는 백분의 15로 그리고 제v과 vi절에 있는 해당액수는 백분의 25로 낮춘다.
 - d) 계약당사자들이 이 규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 또는 계약을 통일효력발생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는 이 규정에 따라 신청되어야 한다. 제1문의 내용이 통일효력발생일로부터 1992년 12월 31일 까지 체결되었다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1984.12.5. 제정되고(BGBI. I p.1437), 1990.7.16. 최종 개정된(BGBI I p.1476) 자동차 의무보험금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다음 규정은 1991년 1월 1일 부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조약 제 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는 차량의무보험에 관한 보험회사의 보험료에 적용된다:

- a) 보험회사는 관할청에 허가받은 약관에 따라 특별보험료에 관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b) 승용차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보험회사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3구역으로 나눈다: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역을 포함한 베를린, 인구 300,000 이상의 도시 그리고 기타의 지역.
- c) 손해보상은 각각의 피해집단에 대하여 제10조 내용에 따른 피해집단에 대한 점수를 서로 비교하여 결정한다: 허가관청은 할인을 확정할 수 있다.
- d) 제17조 제1항에 있는 기한은 2개월 단축된다.
- e) 부록 VI에 따른 법적인 부담의 감소는 특별히 지정한 연도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1990년 산출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f) 보험사 보험금 약정에 있어서 동일한 종류의 피해등급 혹은 피해 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록I에 따른 피해 수치에 도달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피해 기준을 따로 분류해야 한다.
- g) 1990년 12월 31일 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는 지금까지의 규칙을 적용한다.

업무영역 B : 직업법, 직업교육법

제 i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975. 11. 5. 공포되고(BGBI. I p. 2803), 1990. 7. 20. 최종 개정된 (BGBI. I p.1462) 공인 회계사 규정 제 134a조 제3항 다음에 제4항

과 제5항이 보충된다 :

“(4)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1989년 12월 31일에 그의 주거지 또는 지속적인 거주지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사람 그리고 1996년 12월 31일 까지 시험허가를 신청한 유럽공동체 회원국 국민에게는 제8조와 제131조가 적용되며 다음 조처에 따른다.

1. 제8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대학졸업과 최소한 10년간의 공사회계 기관, 회계협회 또는 기타 회계사업체의 인사로 활동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며,
2. 응시자가 신청당시 세무사 혹은 변호사인 경우 그리고 최소한 2년간 세무사의 업무, 세무대리인 혹은 변호사의 직책을 수행하였다면 제 131조 제1항 제1문 제1번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규정 제Ⅱ부 제i절과 ii절의 내용과 달리 공인회계사 응시자가 통일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포스트과정을 마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임용될 수 있다.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그리고 제131g조 제3항 제1문부터 제4문까지는 이와 같이 적용된다; 제14a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시험수수료는 400마르크로 한다. 시험은 필기와 구술로 치루어지며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판단하는 직업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시험한다. 연방경제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규정을 통하여 시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결정을 허가하거나 위원의 축탁 그리고 시험과 시험과정에 관한 세부적 내용 특히 제14조에 언급된 사항에 관한 권한이 있다. 제3문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임명에 대하여는 제2부 제3절을 준용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65. 12. 28. 공포되고(BGBl. 1966 I p. 1) 1990. 6. 28. 이법 제4

조를 최종 개정하고(BGBl. I p.1221), 수공업규정 제7조 제2항, 제25조, 제27a 제1항, 제40조 그리고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 통일 효력발생일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 aa)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수공업을 자신이 경영하려고 하는 경우
 - bb) 수공업공장에 견습공의 취업과 교육 받는 과정
 - cc) 마이스터(Meister, * 장인 자격증) 직위의 사용등은 보장된다.
- b) 수공업의 구매공동체와 공급공동체 그리고 생산공동체의 공동작업체는 수공업연합회의 회원으로 존속한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효력발생일에 권리를 갖고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수공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청구에 의해서 수공업규정의 부록 A에 따라 수공업관리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관청에 의하여 기존의 수공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업수행자가 법규정에 따라 수공업의 장인지위를 유지한다면 수공업규정의 부록 A에 있는 수공업의 마이스터 직위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d)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효력발생일에 독자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있으며 그곳에서 아직 수공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업체인데 사실상으로는 수공업규정 부록 A에 따라 수공업으로 분류되는 영업수행자는 청구 또는 이 수공업의 역할을 이유로 기관에 등록된다.
- e) c)의 제1문은 수공업과 유사한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f)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효력발생일에 이미 존재하는 수공업에 관한 기구는 1990년 12월 31일 까지 수공업규정에 적합하게 변경시켜야 한다; 그때까지 이 기구는 수공업규정의 내용에 따라 기구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미 존재하는 전문노동자 시험위원회와 마이스터 시험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와같이 적용한다;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구는 수공업규정의 내용에 따라 시험위원회로서 활동한다. 수공업협회의는 지체 없이 1991년 12월 31일까지 견습공의 채

용을 위하여 수공업 규정의 결정과 동일한 조건을 마련한다.

- g) 통일효력발생일에 이미 존재하는 교육관계는 기존의 법규에 따라 끝까지 행해진다. 또한 교육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공업 규정의 부록 A에 따른 수공업에 대한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수행을 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h) 기존의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마치기를 원하는 견습공들은 연방경제장관이 연방교육장관과 합의하여 연방상원의 승인없이 법령을 통하여 과정과 관할에 대한 경과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법규에 의하여 시험을 치른다.
- i) 통일효력발생일에 이미 행해지고 있는 시험은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라 끝까지 진행된다.
- k) 수공업협의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수공업규정 제25조의 내용과는 달리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1995.12.1.까지 허락할 수 있다. 예외의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진다. 연방경제장관은 연방교육장관과의 협의하에 연방상원의 승인없이 법령을 통하여 제1문에 따른 권한을 축소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l) 수공업규정 제27a조 제1항과 제40조에 따른 규정은 연방교육장관과 협의하여 연방상원의 승인없이 연방경제장관이 특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 m) 연방경제장관은 수공업규정의 제4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수공업자 등록에 대한 것과 수공업의 마이스터시험의 실시에 관한 법령의 제3조 제22항의 내용에(BGBI. I p.1475) 따라 동독군인들의(Nationale Volksarmee) 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마이스터 시험의 제ii부의 면제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인정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 n) 연방경제장관은 수공업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폐쇄되는 국가산업에 필요한 어떤 마이스터 시험이 요구되는가를 법으로 정할 수 있다.
- o) 수공업분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과 전문직업조직에 따른 조

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발행한 시험합격증은 수공업규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졸업시험합격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 1975. 11. 5. 공포되고(BGBl. I p.2803) 1990. 7. 20. 최종 개정된(BGBl. I p.1462) 공인회계사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 혹은 인정된 공인회계사, 선서한 부기사, 공인회계협회 그리고 부기협회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새로운 위탁 혹은 인정은 허락되지 않는다.
- b) 제134a조 제5항 제4호의 효력발생시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134a조 제5항에 따른 통합시험은 제134a조 제5항과 동일한 규정인 기존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다; 제134a조 제5항 제4호의 효력발생에 나타나는 시험절차는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라 끝까지 치뤄진다.

3. 1969. 9. 15. 제정되고(BGBl. I p.1634,2432) 1989. 12. 18. 이 법 제76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2261) 굴뚝소제부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제Ⅳ부와 제56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효력발생일에 성립되는 권리는
 - aa) 응시자 리스트에 기록하기
 - bb) 지역 굴뚝소제부 마이스터로서의 작업수행에 관한 것 들이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순찰지역에 임명된 굴뚝소제부 마이스터는 제9조에 따른 한계 연령에 달한 이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청으로부터 계속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역굴뚝 마이스터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숙련공과 견습생의 작업을 검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관할관청이 지정한 의사의 확인의 첨부로 증명되어야 한다. 관할관청의 증명은 매년 갱신해야 한다.
- d)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담당구역 후보명부 등재순서는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과정에 의할 경우 마이스터 시험 합격 일 연령, 시험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 e)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지역 굴뚝소제 마이스터의 임무를 위하

여 제13조 제1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aa) 가정굴뚝에 연결된 아궁이의 검사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
 - bb) 산업 및 사적인 공기흡입구와 배출구의 기능상태에 대한 점검.
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01-1로 공포되고 1976년 12월 14일 이 법 제95조 제5호를 최종 개정한(BGBl. I p.1341) 상공회의소법 임시시행 규칙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1992년 12월 31일 까지 제3조 제3항 및 제4항과는 달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소속단체의 납부액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영역 C : 영업법, 기술에 관한 법, 영업촉진과 영화촉진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의 효력발생에서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03-3으로 공포되고, 1974. 2. 27 법 제4조를 최종개정한 과거 독일제국소유의 필름자산의 청산에 관한 법, 이 법중 제 15조 제2항은 계속 유효하다.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1976년 7월 22일에 제정된 영화진흥법을 위한 규정(BGBl. I p.2021) 부록 I 에서 “국제단편영화제, 크라카우” 다음에 “영화와 TV를 위한 국제기록영화와 단편영화주간, 라이프찌히”를 추가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1. 1985년 12월 11일에 공포된 오락 규정(BGBI. I p.2245)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오락규정의 제13조와 제14조의 요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투전기는 통일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정당하게 설치되었을 경우 1991년 12월 31일 까지 청구서에 작성된 채로 유지한다.
2. 1989년 11월 27일에 제정된 주류 및 음료판매기구에 관한 규정(BGBI. I p.2044)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지금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허가, 인가, 건축양식승인, 건축양식검사 또는 발행된 통지 등은 이 규정에 따른 건축양식승인, 건축양식검사 또는 통지로 간주한다.
 - b)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완성되거나 설치를 시작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구조물의 완성요구도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관할 관청은 이러한 구조물이 규정에 있는 조항과 일치되게 변경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다 :
 - aa) 구조물이 확장, 변형 또는 현저하게 변경되었는가,
 - bb) 용도가 상당부분 변경되었는가,
 - cc) 또는 제3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의 안전조치 상태
 - c) 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경영규칙은 199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 d) 이 규정 제19조에 의한 위원회는 1993년 12월 31일 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출신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위원으로 대체된다 :
 - 1명의 국립위생감정원의 대표
 - 2 명의 주류 및 음료판매기기 또는 부품자재 생산 대표자
 - 1 명의 주류 및 음료판매기기의 중간판매자대표
 - 1 명의 주류 및 음료판매기기의 세척자와 보존자의 대표 그리고 1 명의 기술감시 관청의 대표
3. 1985. 2. 22. 공포되고(BGBI. I p.410) 1986. 11. 26. 이 규정 제12조를 최종 개정한(BGBI.1 p. 2089),도량 측정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동독의 표준화, 측정분야의 생산품검사를 관리하는 관청이 허가한 측정기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은 첫번 도량형검사에 대해 최대한 1993년 12월 31일까지, 그 이상의 도량형검사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허가한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조약 효력 발생일에 도량형으로 의무화한 분야에 이용되거나 도량형검정에서 허가된 측정기기는 그 지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도량형이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도량형을 통일시켜야 한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도량형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분야에 이용되는 측정기기 또는 그 지역에 지금까지 적용되던 규정에 따를 때 담당관청의 허가가 의무적이 아니거나 도량형에 대한 의무적이 아닌 측정기기는 만일 측정기기가 도량규정에 나타나 있는 편차의 한도 또는 도량 규정이 제7부에 있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다면 첫번 도량검사를 실시해야하며 1996년 12월 31일까지 재도량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측정기기는 늦어도 1991년 12월 31일까지 도량형 검사를 받아야 한다.
- d) 제18조 제3항에 따른 술통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12월 31일 까지 영업적인 목적으로 교환을 할 수 있고 만일 술통이 지금까지 그 곳에서 적용되던 규정과 일치한다면 1992년 12월 31일까지 주류소매를 할 수 있다. 어디까지 채웠는가의 표시가 없는 술통은 1991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 e) 통일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헌법이 유효하게 적용되던 지역에서 현재의 경과규정과 일치하는 측정기기와 술통은 유통을 하거나 적용 또는 소유하지 아니한다.
- f) 필요한 관할관청과 공인된 시험소를 설치할 때까지, 최고 1992.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주정부 또는 도량형법 제27조와는 달리 주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관청은 이법과 도량규정의 실행을 다른 관청에 위탁한다. 이 관청은 1982년 4월 21일에 제정된 도량형 사용 비용규정과 증명서발급비용에 관한 규정(BGBl. I p.428)에 따

라 의무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한다.

4. 1988년 8월 12일에 제정된 도량검정법(BGBl. I p.1657)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 도량형법에 의하여 도량검사가 의무화된 측정기기에 대한 경과규정은 도량검정법에 의하여 도량검사가 의무화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도 적용 된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발효일 당시 있었던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도량검사의 유효기간은 통일 효력 발생 이후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음의 재도량검사가 실시될 때까지까지로 한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허가되었거나 도량형검사를 마친 측정기기에 대하여 유효한 기간의 표시 또는 도량형검사의 유효기간의 검사표시에도 이 지역에서 유효한 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도입되는 검사표시에 대하여 도량형규정에 따른 도장과 표시가 적용된다.
- d) 일치확인서에 관한 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이미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용하였거나 소유한 그리고 통일효력발생일 당시 도량형검사가 의무적이 아닌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7조 제3항 제2문과 제3문은 계속 유효하다.
- e) 제4조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그리고 통일 효력발생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규정을 감시하는 정량적인 분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1991.12.18. 제정되고(BGBl. I p. 1585) 1990. 5. 28. 개정된(BGBl.

I p. 991) 완제품 포장규정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 완제품포장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도량형법 제16조의 규정과 완제품포장규정 제6조부터 제11조, 제18조 그리고 제20조와는 다르게 통일효력발생일에 적용되는 규정과 일치하는 보충량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통을 시키며 계속 유통될 수 있다.

- b) 완제품포장규정에 대한 부록 I 제1a번과 제2a번에 언급된 0.7 리터용 제품에 대한 완제품포장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2년 12월 31일까지 처음으로 유통되거나 무한정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완제품포장 규정에 대한 부록I제2b번 제5번 그리고 제6번에 언급된 제품에 대한 완제품포장의 표기양이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지역에서 완제품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치와 일치한다면 이러한 번호를 사용하여 허가되지 않은 표시양으로 최초로 유통을 시킬 수 있거나 무한정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공급되는 혹은 그 지역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획득한 동일한 표시양의 완제품포장에 있어서 만일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유통이 되었거나 완제품포장의 표기양이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지역에서 완제품포장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치와 일치한다면 기본가격의 표시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6. 1986. 11. 18. 공포된 영화진흥법(BGBl. I p.2047)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공동영화 제작에 관한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간 조약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간의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b)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신청자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1월 1일 이후 이 법의 적용지역에서 최초로 적용된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다.
- c) 제57조 제1항과 제56조 제2항과 관련된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신청자는 장려금 요청을 원할 때에는 1991년 회계연도가 경과한 후 1992.1.31까지 신청한다.
- d) 제66조 제3항에 따른 매출액 한도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판매자에 대하여 1991년 전해의 매출액이 아니라 1991년의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
- e)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66a조에 따른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는 촬영, 출판 또는 영업

행위까지 확대해야 한다.

- f)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의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영화진흥기관의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6조 제5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업무영역 D: 광산법과 공급경제 법

조약 제8조에 의한 연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968. 9. 5. 제정되고(BGBl. I p.1605), 1980. 8. 25. 개정된(BGBl. I p.1605) 제2차 전기공급법
2. 1990. 4. 19. 공포된 제3차 전기공급법(BGBl. I p.917).
3. 1980. 10. 15. 공포된 고체연료 세관통과량에 관한법(BGBl. I p. 1945)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거나 소멸된다: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03-11에 공시된 갈탄생산과 관련하여 의무적인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은 소멸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03-11-1에 공시된 갈탄생산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협회를 설립하는 규정의 실시에 관한 첫번째의 규정과 1976. 12.14 이 법 제95조 제6호를 최종개정한 법(BGBl. I p.334)은 소멸된다.
3. 1988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석유통계(BGBl. I p.2353)의
 - a) 제3조 제1항 제2호의 두번째 후절은 삭제된다.
 - b) 제3조 제1항 제4호에 “연방군인과 연합군”이라는 단어는 “독일군과 외국군”으로 대체된다.

4. 1984. 12. 3일에 제정된 베라지방의 국경지대에서 소금채취에 관한 법 (BGBl. I p.1430)의

1.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제정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지하자원에 관한 탐사, 채취, 획득과 선광에 대한 채광지역 A에 부여된 채광권리로 부터 발생하는 권한의 불충분한 실행에 대하여 채광지역 A에서 불충분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에서 실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과 규칙 그리고 기타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2.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채고아지역 B에서 나오는 석염, 칼리염, 마그네시아염, 보아염에 대한 불충분한 탐사 및 채취에 대해서는 권리의 불충분한 실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과 규칙 그리고 기타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3. 제5조 다음에 제5a조가 신설된다:

“채광지역 A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제4조 제2호와 제3호에 상세하게 기록된 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다. 채광지역 B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제4조 제2호에 더 상세하게 기록된 조건들을 광산경제 차원에서 지킬 의무가 있다.

제 iii 절

아래의 법규는 해당 조치에 따른다:

1. 1980. 8. 13. 제정되고(BGBl. I p.1310), 1990. 2. 12. 개정된(BGBl. I p.215) 연방광산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1969. 5. 12. 제정된 동독의 광산법 제3조에 따른 광물 자원과 동법의 실행을 위하여 통과된 규정들인 제3조 제3항의 의미에 따른 채광할 필요가 없는 지하자원과 동독의 광산법 제2호에 의한 기타의 광물자원은 제3조 제4항에 따른 고유한 지하자원이다.

b) 제삼자에게 집행을 위하여 이전될 수 있는 동독의 광산법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에 따른 국가의 탐사권, 채취권 그리고 저

장권은 c)에서 g)까지의 방법에 따라 보존된다. 이에 다른 규정이 없는한 동독의 광산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의 탐사권, 채취권 그리고 저장권은 소멸된다.

- c) 탐사권은 통일효력발생일로부터 12개월후에 소멸된다. 제14조 제1항은 인가를 내어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1971년 3월 15일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저장경제의 기초위에 확정된 적정저장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가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 d) (1) 동독의 광산법 제3조의 의미에 따른 광물자원의 채취권은 통일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내에 실행한 권리가 있는 자가 계획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인증을 발급한다.

1.채취권이

1.1 청구권자에게 1989년 12월 31일 동독의 광산법 제5조에 따른 실행에 관한 것이 실질적으로 전가되었거나,

1.2 청구권자에게 1989년 12월 31일 이후

— 1990년 3월 14일 제정된 광물자원의 취득에 대한 권한에 대한 (GBL I NO. 21 P. 189) 독일민주공화국 내의 외국인이 참여한 기업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규정의 제4차 시행규정에 따라 위임되었거나

— 1990년8월 15일에 제정된 광산 자산의 임대에 관한 규정(GBL I. NO. 53. p.1071)에 따라 위임되었거나,

— 기타 관할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그리고

1.3. 통일효력발생일까지 삭제되지 않은 것,

2. 청구자가 제1호에 따라 전제조건을 제시 또한 1979년 8월 28일 제정된 저장분류규정(법규정집 특별인쇄 NO. 1019), 방사성물질의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적인 처방에 의하여 확인된 그리고 예측된 매장량 또한

2.1.제1호의 경우에서 첫째와 셋째 밑줄친 채취권의 적법한 이전에 관한 국가의 매장량 조사위원회의 확인서의 제시,

- 2.2. 제1호의 경우에서 확인등에 필요한 서류의 함께 광산기록부에 광산 광산소유재산에 대한것을 기록하였음을 증명했을 경우 등이다.
- (3) 채취권은 청구한 범위 내에 최대한 확인된 그리고 예측된 매장량의 범위 그리고
1. 제2항 제1.1호와 제1.2호의 경우 매장량의 생산을 위하여 적당한 기간(30년이 넘으면 안됨)에 대한 첫번째 그리고 세번째 상태
 2. 제2항 제1.2호의 경우 두번째 밑줄친 부분의 상태는 무기한으로 제4조 제7항과 연관지어 제8조 혹은 제151조에 의하여 나오는 요구와 일치하는 형태로 증명한다.
- (4) 유효한 채취권은 이미 확인된 지하자원, 기간 그리고 범위에 적용된다.
1. 제2항 제1.1번과 제1.2번의 경우 제8조에 따른 허가로서 첫번째와 세번째 외관,
 2. 제2항 제1.2번의 경우 제151조에 따른 광산의 자산으로서 두번째 외관,
- (5) 제75조와 제76조는 확인된 구권리에 적용된다.
- (6)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확인이 불허되는 권리는 불허가 확실시 됨으로써 소멸된다.
- (7) 통일효력발생일까지 시행한 채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광산법적 의무는 기존의 채취권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판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리의 이전이 광산법적인 의무와 배치된다면 허가기관은 책임을 확실히 해야한다. 권리 양도인이 이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 e) 기타의 광물에 대한 채취권에 대하여는 d)항과 함께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a) 청구자는 그가 통일효력발생일 이후에 지하자원의 취득에 대하여 이에 적절한 보상을 토지소유자와 합의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청구자는 확인을 해주는 공무원에게 보상에 관

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관할청은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물어 본 후에 제84조부터 제90조까지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 (bb) 확인은 손해에 관하여 이의없다는 결정 또는 합의를 전제한다.
- (cc) 타인에 대한 허가권의 양도(제22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광산소유자산에 대한 임대는 제외된다. 제3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f) 저장권은 위 d항과 함께 광물채취지점에 지하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과 예측확인된 매장량이 있는 지점에 청구자가 증명해야하는 지질학적인 저장지층 혹은 공동지층의 예측되는 최대의 확장공간 확보조치를 적용한다. 지하와 지하저장에 대한 조치는 제126와 함께 제107조부터 제125조까지를 적용된다.
- g) 제153조 제2문과 제3문 그리고 제159조와 제160조는 확인된 구법이 적용된다.
- h) 제50조부터 제62조까지 그리고 제169조는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a) 통일효력발생 당일 동독의 광산법에 따라 그리고 이법에 의하여 인정된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기술적인 경영계획은 다음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제50조 부터 제56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최대한 1991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보유한 기술경영계획은 통일효력 발생일까지 효력이 있는 법의 내용에 따른 상당한 변경없이 계획의 지속적인 운영을 1991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한다. 통일효력발생당일 적용되고 있는 혹은 1990년 10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미래의 기업조정에 대한 기술경영계획은 통일효력 발생일 이후 4개월 내에 관할청에 경영폐쇄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9조 제1항 제2문 후절은 이와같이 적용된다. 최초로 통일효력 발생과 함께 나타난 제2조, 제126조부터 제129조 그리고 제131조의 의미에 따른 활동과 기구에 대하여 제169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69조 제2항 후절의 의미에 따른 권리 증명은 허가에 있어서 통일효력발생일 이후 12개월내에 이행해야 한다.

- bb) 제52조 제2a항은 통일효력발생일에 이미 시작된 기업의 허가에 대한 심사, 특히 기술경영개혁의 허가에 대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cc) 책임있는 사람의 임명과 지명에 대하여 제169조 제1항 제3호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i) 경영계획에 대한 인가권이 있는 관할관청의 확정 후 15년 내에 대지로 부터의 채광에 관한 요구가 예상되면 동독의 광산법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광산보호지역은 채광권이 인정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것은 광산보호지역의 확정에 대한 전제조건과는 독립적으로 제107조 제4항이 적용되는 방법과 함께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내용에 따른 건축제한지역에 적용된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건축제한에 의하여 이득을 보게 되는 기업가는 조기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타의 경우 광산보호지역은 통일효력발생일 부터 그 지정이 해제된다. 제1문에 의한 건축제한지역으로 적용되는 광산보호지역의 기록부는 제107조 제2항의 내용에 따른 기록 보존으로 적용된다.
- k) 위반, 불이행 또는 조치에 위반되는 시행에 대해서는 통일효력발생전에 광산주가 동독법과 그 부속규정에 따라 벌금등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광산 관계 입장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12조는 제110조 혹은 제111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14조부터 제124조까지는, 이 규정에 의한 형사 처벌은 단지 통일효력발생일 이후에 원인을 야기한 손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효력을 가진다. 기타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통일 이전에 적용되던 동독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4조 제2항이 지닌 기획절차 과정 대신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이와 동일한 수속절차가 도입된다.
- l) 기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이관되지 않는 규정이 명하는 한 이 규정대신에 계속 유효한 동독의 규정이 적용된다.
- m) 연방경제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법령을 제정할 권력이 있다:

- aa) 광물자원이 제3조 제3항과 제4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다른 혹은 불확정적인 준거를 필요로한다면 위 a)항에서 언급된 광물자원에 대한 다른 규정,
 - bb) 필요한 적용을 위한 고려가 요구되면 최고 6개월간의 기간연장,
 - cc) 위 b)와 i)의 내용에 따른 제한지역에 적용되는 광산보호법과 이 법의 소멸에 대한 구법의 유지와 확인을 위한 구체적 사항
2. 1982년 11월 11일에 제정된 기본-광산규정(BGBl. I p.1553)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지금까지 적용되던 법규의 부록 II 제 V 장 업무영역 D 제iii절 제1번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3. 1982년 11월 11일에 제정된 작용영역 - 광산규정(BGBl. I p.1558)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법규의 부록 II 제 V 장 업무영역 D 제iii절 제1번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4. 1982년 6월 9일 에 제정된 공기순환 - 광산규정(BGBl. I p.585)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Klima는 기후라는 뜻으로 광산에서는 광도의 공기의 흐름 구조 전체를 말함):
-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법규의 부록 II 제 V 장 업무영역 D 제iii절 제1번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5. 1986년 12월 19일에 제정된 광산측량사 - 광산규정(BGBl. O p. 2631)은 다음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법규의 부록 II 제 V 장 업무영역 D 제iii절 제1번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6. 1989년 3월 21일에 제정된 대지토대 - 광산규정(BGBl. O p. 554)은 다음조치에 따른다. (*Festlandssockel은 광산 건축시에 바위가 아닌

혹위에 세워지는 토대를 말한다) :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법규의 부록 II 제 V 장 업무영역 D 제iii절 제1번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다.

7. 1981년 3월 4일 제정되고(BGBI. I p.277), 1986.11.26. 개정된 (BGBI. I p.2089) 광산전문위원회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1993.7.31.까지 경과기간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던 베를린 지역으로부터 선임된 위원(대리인)을 보충한다 :

2명의 위원은 주정부의 대리인이며, 다른 2명의 위원은 연방상원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광산규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공무원의 대표로 이루어진다.

1명의 위원은 광산연합회의 추천에 의하여, 1명의 위원은 광산, 에너지 그리고 수력관리의 산업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

8. 1982.2.24 제정된 열관리규정(BGBI I p.209)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13조 제2항 제1문의 “1984”는 “1991”로 수정한다.
- b) 제13조 제2항 제2문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제13조 제3항과 제16조 제1항에 “1984”는 “1991”로 수정한다.
- d) 1990.12.31 까지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거나 건축공고가 난 건물인 건축물의 변경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법규에 따라 실행될 수 있다.

9. 1989.1.20. 공포된 난방시설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이령은 1991.1.1.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0.12.31.까지는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규정에 따른다.
- b) 제7조 3항에서 1978.10.1. 대신에 1991.1.1.로 1987.9.30.과 1992.12.31.대신에 1995.12.31.로 각각 대치한다.

10. 1989.1.20 공포된 난방비계산령(BGBI. I p.120)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이 규정은 1991.1.1. 효력을 발생한다. 1990.12.31.까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법규에 따라 실행된다.

- b) 1991.1.1.이전에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소비파악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필요로하는 장치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시설은 늦어도 1995.12.31.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건물주는 설비를 1995.12.31. 전에 마련할 권한이 있다.
- c) 주 법에 의한 관할관청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규정의 제5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에 따른 전문위원의 적합성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통일 이전에 적용되던 지역의 전문 영역은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소비파악을 위한 설비를 통보할 수 있다.
- d) 사용한 연료의 난방기준은 제9조 제2항 3.에 따라 적용한다.
- | | |
|--------|-----------|
| 갈탄 | 5.5KWH/Kg |
| 갈탄고열코크 | 8.0KWH/Kg |
- e) 비용분배에 관한 규칙의 규정은 최초로 장비를 설치한 이후 시작되는 측정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 f)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합의 “1981.7.1,”은 “1991.1.1.”로 수정한다.
- g) 제12조 제2항의 “1987.1.1.”과 “1981.7.1.”은 각각 “1991.1.1.”로 수정 한다.
1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51-1로 공포되고 1977.12.19. 최종 개정한 (BGBl. I p.2750)에너지 경제법(*에너지 관리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2조 제2항에 따른 방법에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공용징수법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1986.12.8 공포되고 1988.7.25.개정된 1986.12.8. 제정된 건축법전의 공용징수법을 적용한다.
12. 1989.12.18. 제정된 연방전기 요금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사용료 기준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제1조와 제2조의 기본원리에 따른 값에 적용하도록 한다. 규정이 정하는 기타 청구는 늦어도 1992.6.30.까지 약정액과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한다.
1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21-4에 공포되고 1979.6.21. 개정된 (BGBl. I p.676) 연방가스 요금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사용료 기준은 1992.6.30.까지 요구에 반드시 약정액과 일치시켜야 한다

14. 1979.6.21.제정된 계약자의 전기 공급을 위한 일반조건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통일효력발생일에 이미 존재하는 공급계약에 대하여 전력공급회사의 제2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의무는 1992.6.30.까지 면제된다.
- b) 1988.6.1.제정된 동독의 에너지 규정(EnVO)의 (GBI. I NO. 10 P. 89) 제16조, 제18조 그리고 제20조, 1990.7.25.최종 개정된 연료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 규칙은 공급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경우 1992.6.30.까지 유지될 수 있다 ; 변경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조와는 달리 전기공급회사는 사용량 2킬로와트가 넘는 난방과 공기청정을 위한 이동성 기구의 사용에 대하여 만일 이러한 기구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여 서로 방해될 정도로 전압선을 과다 사용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위험을 배제하려는 특정한 이유에서 필요하다면 이에 관련된 고객에게 통지 혹은 공시 하여 특정한 시간에 대하여 금지 하거나 그러한 기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과금을 적용하는 권한을 갖는다.
- c) 제10조 제4항과는 다르게 통일효력을 발생당일에 한 소비자가 자신의 집에 연결한 전기시설이 사유자산일 경우 이 자산을 전기회사에 헌납하지 않는한 사유 자산으로 인정된다.
- d) 제22조 제3항과는 다르게 1991.5.31. 까지 $\cos\phi=0.95$ 수용력과 0.85 잠용력 사이의 출력은 허용된다.

15. 1979.6.21.제정된 소비자의 가스공급 일반조건에 관한 규정(BGBI. I p.676)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통일효력발생일에 유효한 공급계약에 대하여 가스공급업자는 제2조 제2항에 제1호에 의하여 1992.6.30.까지 그 의무가 면제된다.
- b) 1988.6.1.제정되고(GBI. I NO. 10 p.89), 1990.7.25.개정된(GBI. I NO.46 p.812)동독의 연료규정 제16조, 제18조 제20조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과 구비서류 및 연료규정 시행 세칙에 의하여 연료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1992.6.30.까지 유지된다. 변경 사항은 문서로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c) 통일효력 발생일에 고객이 자비로 집에 설치한 사유물은 전기공급회사에 양도하지 않는한 제10조 제4항과는 달리 이는 고객이 소유한다.
 - d) 고객이 통일효력 발생일에 원격난방 또는 중앙난방으로 인하여 집안에 가스사용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면 제18조와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가스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측정기기를 사후에 설치해야 한다.
16. 1980.6.20 제정된 물공급에 대한 일반적 조건에 대한 규정(BGBI. I p.750,1067)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통일효력발생일에 유효한 공급계약에 대하여 상수도공급기업은 제2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1992.6.30.까지 의무가 면제된다.
 - b) 제10조 제4항과는 달리 통일효력발생일에 고객이 자신의 비용을 설치한 재산은 그가 그 재산을 상수도 공급기업에 넘기지 않는한 이는 그의 사유자산이다.
17. 1980.6.20.제정된(BGBI. I p.109) 원거리 난방공급 일반조건에 관한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통일효력발생일에 유효한 공급계약에 대하여 원거리 난방공급회사는 1992.6.30.까지 제2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의무는 면제된다.
 - b) 제10조 제4항과는 달리 통일효력발생당일에 고객이 자비로 가정에 연장한 부분은 고객이 원거리 난방회사에 소유물을 이전시키지 않는한 고객 사유자산이 된다.
 - c) 통일효력발생당일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경우 이 고객에게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절약형 효율적 열사용이란 목적에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는경우 측정기기는 새로이 설치해야 한다.
 - d) 통일효력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은 계약과 다른 규칙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1988.6.1.에 제정되고 1990.6.25. 에너지 규정개정을 위한 규정으로 최종 개정된 동독의 에너지 규정 제45조와 제47조 그리고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18. 1987.12.8. 공포된 석유저장법(BGBl. I. p.2510)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석유저장협회는 이관이 이루어진 후 18개월 내에 증가된 의무저장량 비축 의무에 적응해야 한다.
- b)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조항에 따른 생산업자의 의무저장량은 통일 효력발생일 후 3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각각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업무영역 E : 영업경제법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1. 1986.8.14. 공포된 섬유표시법(BGBl. I p.1289)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법의 규정에 표시되지 않은 섬유제품은 1991.12.31.까지,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통 혹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b) (대외경제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행되거나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소비된다.

2. 1971.6.25. 제정되고(BGBl. I p.857), 1975.8.29. 최종 개정된(BGBl. I p.2307) 크리스탈 유리 표시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크리스탈 혹은 납크리스탈생산품은 1991.12.31.까지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유통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b) (대외경제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행하거나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다.

업무 영역 F : 대외경제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1961.4.28.제정되고(BGBI. I p.481), 1990.7.20.최종 개정된(BGBI. I p.1460) 대외경제법의
 1. 제4조 제1항 제2호의 “동독의 마르크화지역을 제외하고”는 삭제된다.
 2.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삭제된다.
2. 1986.12.18.제정되고(BGBI. I p.2671), 1990.8.9.최종 개정된 (BAnz. p.4025) 대외경제규정의
 1. 제19조 제1항 제17a호는 폐기된다.
 2. 제19조 제1항 제31a호의 마지막 문 후절은 폐기된다.
 3. 제19조 제1항 제41c호는 폐기된다.
 4. 제21조는 폐기된다.
 5. 제32조 제1항 제36c호는 폐기된다.
 6. 제72조는 폐기된다.

제 VI 장

연방 식량 농업 임업 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토지이용과 동물사육 및 제도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기된다 :

제 ii 절

1. 1990.6.27 제정된 동독 동물전염병보호규정(BGBI. I p.1264)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1. 1977.11.15.제정되고(BGBI. I p. 2134), 1989.7.12. 이 법 제11조를 최종 개정한(BGBI. I p.1435) 비료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혹은 생산되는 비료는 제2조 제1항과는 달리 1992.6.30까지 이 지역에서 통일효력 발생당일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했으면 계속 유통될 수 있다.
 - b) 주법에 의한 관할청 대신 이러한 관청의 형성때까지 제8조 제1항에 따른 감시를 위하여
 - aa) 광석비료에 대하여는 예나에 있는 식물배양 및 生態毒物學 연구소의 농화학 검사소
 - bb) 유기 및 유기광물 비료에 대해서는 베를린-란스도르프에 있는 농업경제적 쓰레기 이용과 부식토관리에 관한 시험연구소가 담당한다.
2. 1977.12.19.제정되고(BGBI. I p. 2845), 1989.11.15. 이 규정의 제1조를 최종 개정한 (BGBI. I p.2020) 비료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생산되는 비료는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그리고 제7조의 규정과는 달리 생산물의 표시와 포장 이 통일효력 발생당일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한 경우 1992.6.30.까지 그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다.
3. 1977.12.1.제정되고(BGBI. I p.2882), 1989.11.5. 규정 제2조를 최종 개정한(GBI. I p. 2020) 비료시험 사용과 분석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조사 방법의 보충으로 제12조 제2항의 조사방법을 위한 기술적·인적 전제조건의 충족시까지, 늦어도 1991.12.31. 까지 통일전 허가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1985.8.20.제정되고(BGBI. I p.1633), 1990.6.28. 이법 제14조를 최종

개정한 (BGBl. I p. 1221) 곡물 유통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품종허가에 관한 이관

(1)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통일효력 발생당일 1973.7.24. 제정된 품종허가규정에 따라 허가된 종류는 곡물유통법 제30조에 언급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곡물 유통법 제47조에 따라 종류 목록에 오른다. 곡물유통법 제47조 제3항과 제2문이 이에 준용된다.

(2) 만일 어떠한 종류의 곡물유통법에 따라 곡물 허가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허가되었다면 곡물유통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제조건을 채운 사람을 생산자로 기록한다.

만일 이 품종이 품종보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재배자는 곡물유통법 제46조에 의하여 지속적인 재배자로서 등록할 수 있다.

(3) 종자유통법에 따라 인가된 것과 품종인가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품종에 대한 것이 품종표시와 일치하면 후일 승인된 품종을 감안하여 곡물유통법 제51조가 적용된다. 이 규정은 곡물유통법 제3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제원인이 제공되었다면 품종허가규정에 따라 승인된 품종에 대한 품종표시에 이를 적용한다.

(4) 품종허가 규정에 따라 품종이 자연인 또는 법인 조합형태의 다른 권한을 가진 자에게 인가가 되었다면 통일효력발생일로 부터 3개월 내에 혹은 연방품종 기관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연방보존을 위한 재배를 맡아야 할 것인가 재배자로 등록해야하는가를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일을 지키지 않을 때는 품종허가는 취소된다. 품종허가는 그러한 한가지 이유만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는 등록된 권리를 소유한 자가 곡물유통법 제42조 제3항에 표시된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또는 그러한 나라에 거주지 또는 주거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취소된다.

(5) 품종허가규정에 따라 승인된 품종에 대하여 취급대리인으로서 자연인은 곡물유통법 제42조 제6항에 따라 주문하였으나 사실상 주문되지 않은 것은 통일효력 발생일 이후 3개월 내에 혹은 연방품종기관이 제시한 기간내에 주문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품종승인은 취소된다.

b) 품종승인 요청에 대한 이관

(1) 통일효력발생일까지 분류인가 규정에 따라 신청되는 특별허가에 대한 신청서는 곡물유통법의 제42조의 내용에 따른 신청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신청서에 관한 더 상세한 문제는 곡물유통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청서에 대하여 a)의 제5항 1문은 이와 동일하게 준용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신청서는 반려된다.

(2) 연방품종관리청은 변경때까지 주법에 의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 관할청 대신 지역행정청이 대신하며, 수출을 위한 곡물의 인정을 위해서 행정기관은 표준화, 측정, 물품검사를 위해 곡물과 식물전문분야에 관계한다.

c) 수수료

통일효력발생 당일에 곡물유통법 제54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따라 청구행위가 성립되므로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징수된다.

5. 1985.12.11.제정되고(BGBl. I p.2170), 1990.3.7.이 법 제7조를 개정한(BGBl. I p.422) 품종 보존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품종보전법의 이관

(1) 1972.3.22.(GBl. II NO. 18 p.213) 제정된 품종보전법과 품종보전 규정에 따라 공시된 그리고 통일효력발생당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품종보전법규는 모든 효력범위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2) 품종보호 기간은 품종보전법 제13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3) 품종보호 기간은 품종보전 규정에 의하여 품종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었다면 품종보호기간은 첫번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4) 타인에게 품종보존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허가 한것이 품종보호령에 따른 것이라면 최초의 재배자 혹은 품종 발견자가 품종보전관리자로서 인정된다. 기타 지금까지의 품종보전자는 지금까지 그 법이 품종보전을 위한 영역에 잔존하고 있는 품종보전자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을 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 연방품종관리청에 누가 앞으로 품종보전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품종보전자들은 공동으로 이러한 권한을 갖는다.
- (5) 품종보전규정에 주어진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품종보전권한은 품종보전법 제28조에 따라 품종보전기록부에 기록된다; 품종보전법 제28조 제2항 제2문은 이에 준용된다.
- (6) 품종보전법에 의하여 보호된 것과 품종보전규정에 의하여 보호된 품종이 품종표시와 일치하고 후에 품종보전이 이러한 종류에 관련하여 설정된다면 품종보전법 제30조를 준용한다. 이러한 규정은 품종보전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제규정이 존재한다면 품종보전규정에 따라 발표된 품종보전을 위한 품종에 대한 표시에 이를 준용한다.
- (7) 자연인, 법인 또는 영리단체, 기타 소유자에게 품종보전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품종보전은 통일 효력발생일로 부터 3개월 내에 또는 연방품종관리청이 설정한 기한내에 권리 당사자에게 이러한 형태의 품종보전을 넘겨주어야 한다. 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품종보전에 대한 권리를 회수해야 한다. 품종보전은 그것이 이미 소유자에게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품종보전법 제15조에 언급된 국가의 국적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러한 국가에 거주지 혹은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없다.
- (8) 품종보전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품종을 위하여 품종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연인으로서의 대리자가 선정되어야 하고,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면 통일효력발생일 이후 3개월 안에 또는 연방품종관리청이 설정한 기한내에 품종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품종보전에 대한 권리는 회수된다.

b) 경제품종보호에 대한 변경

- (1) 품종보전규정에 따라 품종에 대하여 경제적 품종보호권한이 주어졌고 그것이 통일효력발생당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품종보전법에 따른 품종보전으로서 이는 효력을 갖는다.
- (2) 품종보전법 제8조에 따라 품종보존자로 인정된자는 통일효력발생로 부터 3개월 내에 품종보전관리자로서 품종보전기록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우량 품종보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연방품종관리청에 이 기간내에 신고해야한다. 이러한 신고는 위에 언급된 기간내에 또는 연방품종관리청이 설정한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품종보전에 대한 권한은 소멸된다.
- (3) 통일효력발생일에 제삼자가 경제적 품종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된 식물에 대한 증식재료를 이용하고 이렇게하여 생산된 것을 경제적인 목적에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제적 품종보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의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사용에 대한 금전적인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이 1993.6.30.까지 이러한 이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c) 품종보전허가에 대한 신청서의 이관

- (1) 통일효력발생일까지 품종보전규정에 따라 설정된 품종보전의 허가신청서는 품종보전법에 의한 품종보전에 관한 허가의 신청서로 효력을 갖는다. 품종에 관하여 중앙관청에 제출한 날자는 서류제출일로 효력을 갖는다. 신청서에 대한 이 이상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에 이와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품종보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a)항 제7번 제1문은 이와같이 준용된다; 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청서는 기각된다.
- (2) 경제적 품종보전으로 등록한 품종보전 신청자에 대하여는 b)항 제2문을 준용한다; 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청서는 기간된다.
- (3) 연방품종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그에 주어진 품종표시를 공시한다.

d) 법규의 이관

- (1) 통일효력 발생일에 이미 존재하는 품종보전 규정 제16조에 따른 이의 신청은 품종보전법의 내용에 따른 항변에 대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e) 경과 규정

- (1) 품종보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경우 새 품종이 된다:

1. 품종에 대하여 통일효력발생일까지 품종을 관리하는 중앙관리청에 품종보전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거나 품종의 증식재료 혹은 수확물을 권한이 있는 자, 혹은 전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동독 지역에 혹은 품종보전법의 적용지역에서 영업적으로 유통이 된 경우
2. 이러한 품종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재배되거나 이러한 지역에서 수확한 품종이 증식재료 혹은 수확물을 권한을 가진 자 혹은 전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통일효력 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영업적으로 유통이 되었고, 최초로 유통된 이후 3년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2) 콩, 완두콩, 채소콩(Gemuesebohnen), 곡식, 감자, 단풍콩 그리고 유채(Raps) 종류는 품종보전을 위하여는 품종보전법 제10조의 규정을 넘어 한 효력을 갖는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취득한 작물에 대하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품종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기업에서 씨앗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효력을 지닌다.

f) 법률위반

- (1) 품종보전법 제5절의 규정들은 위 e)의 제2호에 있는 것과 배치되는 행위에도 역시 적용된다.
- (2) 품종보전법 제37조 제3항은 통일효력발생당일 품종보전을 위하여 품종관리에 관한 중앙기관에 신청한 품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품종보전법 제5절의 규정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기타 법의 규정들은 이 규정들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적용된다.

g) 관할 관청

품종보전법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책임과 동항에서 언급한 이관방법의 이행을 위한 담당관청은 연방품종관리청이다.

h) 수수료

통일효력이 발생하는 당해의 품종에 대한 수수료는 그 품종이 품종보전법에 따라 품종보존을 통지받았거나 또는 신청되었을 경우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미 효력을 갖고 있는 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6. 1986.9.15.제정되고(BGBI. I p.1505), 1990.6.28.이 법 제15조를 최종 개정한 (BGBI. I p.1221) 식물보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최초로 1992.6.30에 실시한다.

b)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통일효력이 발생한 이후 6개월째 되는달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c) 1953.11.25.제정된 관상용식물과 식용 또는 약용식물의 보호에 관한 법(GBI. NO. 125 p.1179), 그리고 1968.6.11.제정된 법(GBL. I NO.11 p.242)에 따라 통일효력발생일까지 허락된 식물보호약품과 통일 효력 발생당일에 적용되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식물보호약품은 1992.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으며 1988.7.27. 제정된 식물보호약품 적용규정(BGBL. I p.1196)위 제5문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 농업과 임업에 관한 연방생물원(Biologische Bundesanstalt)은 문항 1에 따른 식물살충제의 유통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1992.12.31.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aa) 허가권 소유자가 1991.12.31. 까지 식물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식물보호품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bb) 식물보존법 제12조 제3항 제2문 그리고 제13조 제1항에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청

전에 시작되었는지 아닌지는 요구된 조사가 1991.12.31. 이전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이며,

cc) 규정에 알맞고 사안에 적절한 적용 또는 적용의 결과에 있어서 식물보호 약품은 다음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aaa)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혹은 지하수에 대한 유해적인 효과

bbb) 학문적 인식의 정도로 분별할 수 없는 특히 자연에 대한 기타의 효과 연방생물원은 전제조건에 제시에 관한 것을 결정한다.

aa) 위 cc)항 제2문에 따라 aaa)항은 연방보건청의 협조를 얻는다.

bb) cc)항 제2문에 따라 bbb)항은 수자원과 공기 그리고 식물보호약품 잔류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환경청의 협조를 얻는다.

허가는 식물보존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약품의 허가에 관한 결정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제2문에 의한 허가 식물보호약품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내에서 허가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연방생물원은 허가를 유효기간의 시작과 끝을 기록한 상태에서 연방관보에 발표한다.

7. 1988.7.27. 제정된 식물보호-적용규정(BGBI.I p.1196)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부록 III 과 관련하여 제3조와 제4조, 제6조, 제7조등은 제3조 또는 부록 III 과 관련하여 통일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1980.3.28. 공포된 동물전염병법(BGBI. I p.386)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통일효력발생당일 유통하고 있는 혈청,ワク진 그리고 항원은 1964.5.

5. 제정된 의약품법 제7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GBL. I NO. 7 p.101) 인가된 혹은 이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인가된 것으로 효력을 간주한다.

b) 동물 전염병법 제17c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4항의 의미에 따른 국립수의학 시험 연구소의 예외 허가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었고 통일 효력발생당일 유통되고 있는 약품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2. 12.31.까지 유통될 수 있다.

- c) 1986.12.1. 제정된 의약품법(GBL. I NO. 37 p.483)의 두번째 시행규정의 제1절에 따른 그리고 통일효력발생당일에 존재하는 허가는 동물전염병법 제17d조에 따른 허가로서 이미 인가된 범위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관할관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면 허가는 취소된다:
- aa) 1992.12.31. 까지 동물전염병법 제17c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거절할 원인이 없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bb) 통일효력 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물전염병법 제17d조 제4항 제2절에 따라 한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9. 1975.6.18. 공포된 앵무병(Psittakose) 규정(BGBL. I p. 1492)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관할청은 1992.12.31.까지 제2조와 제3조에 관계없이 다른 앵무새와 앵무새과의 표시를 허가할 수 있다.
10. 1988.8.3. 제정된 돼지흑사병 규정(BGBL. I p.1559)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관할청은 제7조 제1항과 관계없이 별도로 큰 경영체 중에서 해당없는 부서에 대하여 즉시 긴급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11. 1988.7.29. 제정된 동물전염병 - 돼지보호규정(BGBL. I p.1208, 2657)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돼지보호 관할청은 통일효력발생당일 이미 존재하는 돼지보호에 대하여 만일 다른 어떤방법을 대량의 돼지의 보호가 동물전염병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 제9조 제1항의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12. 1978.1.2. 제정되고, 1984.4.12. 최종 개정된 동물예방접종(BGBL. I p.15)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통일효력발생당일 1986.12.1. 제정된 의약품법(BGBL. I NO.37 p. 483)을 위한 두번째의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자유화된 약품의 부과금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동물예방접종규정 제23조에

따라 자유화 된 것으로 적용된다.

- b) 통일효력 발생당일 유통되고 있는 약품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2.12.31. 까지 통일효력 발생당일 적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법적인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제29조와는 다르게 표시하여, 그리고 제30조에 언급되어 있는 포장없이 생산자에 유통될 수 있다.
13. 1976.9.1. 제정되고(BGBL. I p.2587), 1980.6.6. 최종 개정된(BGBL. I p.667) 동물사체소거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관할청은 동물사체소거법 제2조가 효력을 발생하는 한 제3조부터 제6조까지와는 다르게 1993.12.31. 까지 허락할 수 있다.
14. 1986.8.18. 공표되고(BGBL. I p.1319), 1990.8.20. 이법 제3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1762) 동물보호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제5조 제1항 제2문과는 둘째줄과 달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관할관청은 1991.1.1. 이전에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거세 작업을 가진 사람에게 그 직업이 폐지될 때까지 늦어도 1995.12.31. 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유효한 규정에 상응하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효력 발생일 이전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동물실험을 이미 시작하였고, 허가 신청서를 1991.6.30.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한 경우, 관할 관청이 이러한 실험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지속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직업교육, 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처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c)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위하여 제21조 제2항의 조치는 1987년 대신 1991년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15. 1974.6.6. 제정되고(BGBL. I p.1265), 1986.8.12. 이 법 제2조 제1호를 최종 개정한(BGBL. I p. 1309) 개보호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1.7.1. 발효한다.
16. 1988.5.30. 제정된 돼지보호 규정(BGBL. I p.673)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이 규정은 1991.1.1. 발효한다.
- b) a)항에서 예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aa) 1992.1.1부터 효력을 발생한 조항은 제2조 제2호, 제3호 그리고 제5호, 제3조, 제4조, 제6조와 제7조 제1항 제1a호, 제2호 제3a호, 제5b호와 제6호
- bb) 1994.1.1. 부터 효력발생은 제2조 제4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2번 그리고 제2항, 제12조 제1b항 그리고 제2항, 제12호 제1b호 그리고 제3b호
- cc) 1997.1.1. 부터 효력발생은 제5조 제1항 그리고 제12조 제1c호
- c) 제5조 제2항의 “1989.12.31.”은 “1992.12.31.”로 변경 적용한다.
17. 1988.12.20 제정된 상자 운반에 있어서의 동물보호규정(BGBl. I p. 2413)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1.7.1에 발효한다.

업무분야 B : 농업정책

제 i 절

조약 제8조에 의하여 연방법 효력발생에서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80-2로 공포되고, 1964.8.28. 개정된 (BGBl. Ip.709) 전국식량동맹청산법
2. 1989.7.19. 제정된 소규모 농업의 지원을 위한 법(BGBl. I p. 1435)
3. 1989.7.19. 제정되고(BGBl. I p.1472), 1990.5.28. 개정된 (BGBl. I p.990)농업 추진규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1988.7.21. 공포된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향상” 공동임무에 관한 법 (BGBl. I p.1055) :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기획위원회는 연방과 주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결정한다.”

업무분야 C : 농업과 식량경제 시장규정

제 i 절

조약 제8조에 의하여 연방법 효력발생에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된다 :

1. 1984.7.17. 제정되고(BGBl. I p. 942), 1990.7.24. 개정된 (BGBl. I p.1470) 우유탁송배상법 제2a조

제 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75.11.26. 공포되고(BGBl. I p.2943), 1976.12.14. 이 법 제77조를 개정한 (BGBl. I p. 3341) 시장 구조법과 그 시행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법과 규정은 1994.1.1 효력을 발생한다.

2. 1972.12.22. 제정되고(BGBl. I p. 2555), 1986.4.24. 이 법 제10조 제 2항을 개정한(BGBl. I p. 560) 우유전문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2.1.1. 효력을 발생한다.

3. 1986.4.14. 공포되고(BGBl. I p.412), 1989.6.23. 이 규정 제22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 1140) 치즈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생산물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법에 일치할때에는 1992.12.31.까지

생산 및 유통 시킬 수 있다.

- b)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동베를린의 식료품 감독기관은 특히 제20조부터 제22조와는 다르게 생산된 것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만 유통시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1988.12.16. 제정되고(BGBl. I p. 2286,2657), 1990.8.16. 이 규정 제1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1774) 버터규정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지금까지 적용되던 법과 일치되는 버터는 1992.12.31.까지 제3조 제1항과 제5조의 내용과는 달리 버터 생산, 처리 및 유통될 수 있다.
 - b)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동베를린의 식품과 동베를린 관청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5조와는 달리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만 유통된다는 특별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5. 1990.8.16. 공포된 돈육의 법적 유통등급에 대한 규정(BGBl. I p.1809)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소재지를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은 일주일에 평균 도살 돼지의 수와는 관계없이 1992.12.31. 까지 제2조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제2조 제3항 제2문과 제3문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업무분야 D: 농업사회법

조약 제8조에 의하여 연방법 효력발생에 있어서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1. 1986.7.21. 제정된 사회보장 분담금 경감법(BGBl. I p. 1070)
2. 1974.7.21. 제정되고, 1989.12.18. 이 법 제29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 2261) 농업 임업 분야 피고용자를 위한 별도 복지기금 설치법.

업무분야 E : 이주제도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331-1로 공포되고, 1986.12.8. 이법 제2조 제 24호를 최종 제국이주법은 개정한 제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1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공동 이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이에 상응하는 의무는 없다.
 - b) 제4조에 의한 사전매각 실시는 1977.12.15. 제정된 토지 거래규정 제2조에(BGBI. I NO.5 p.73)의하여 승인된다.

업무분야 F : 임업, 사냥 및 어업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된다 :

1. 1976.9.29. 공포되고(BGBI. I p.2849), 1990.6.28. 이 법 제6조를 최종 개정한(BGBI. I p. 1249) 연방사냥법의
 - a) 제7조 제1항에서 문항 제2문과 제3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주는 제1항과는 달리 최소면적을 전지역 또는 특정의 지역에 대하여 더 높여서 설정할 수 있다. 통일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주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크기와는 다른 크기를 확정하고 있고 70헥타 이하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사용으로 관리한다”
 - b) 제11조 제5항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충된다 :
“제1항에 언급된 기한에 대하여 이미 어떤 사람이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동독에서 사냥허가를 발급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c)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5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동독에서 사냥을 위하여 사냥총의 사용과 사냥방법을 이수한 시험은 문항 1의 내용과 동일하다.”

bb) 제6항의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위원회에 주어지는 사냥허가서의 발급”은 삭제된다.

cc) 제7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

“통일효력발생일 이전에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이수한 매사냥에 대한 사냥시험은 문항 제1에 의한 매사냥시험에 같음한다.”

2. 1972.7.31. 제정되고(BGBI. I p.1561), 1982.8.13. 이 규정 제1조를 개정한(BGBI. I p. 1329) 삼립종자 생산지 규정의 부록 I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bies grandis* Lindl. 큰 해안소나무” 지역에 다음과 같이 생산지를 표시한다.”

| “생 산 지 표 시 | 번 호 | 경 제 |
|--------------------------------|---------|----------------------|
| 북동지방의 독일 저지대와 동독지방의 중간 산간지대 | 3830 03 |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 |

3. 1989.7.18. 제정된 연해어업규정(BGBI. I p.1485)의 :

a) 제2조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2. ICES-영역 III c내에서 그리고 ICES-영역 III d 내에서 맥클랜부르그 - 포폼메른주의 해안에서부터 12마일 내에 221킬로와트(300마력)이내의 기계출력선으로.”

b) 부록 3에서 동해 “Ostsee” 사이에 다음이 추가된다: “Wismar, Rostock, Warnemuende, Stralsund, Ribniz, Stahlbrode, Neuendorf (hiddensee), Sassnitz, Lauterbach, Goehren, Lietzow, Breege, Dranske, Ummanz, Seedorf, Zudar, Gager, Karlshagen, Freest, Greigseald, Lassan, Wolgast, Ahlbeck, Zempin,

Ueckermuende.”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갖는다:

1. 1976.9.29. 공포되고(BGBI. I p.2849), 1990.6.28. 이 법 제6조를 최종 개정한(BGBI. I p.1249) 연방사냥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사냥지역과 수렵협동조합” 제ii절과는 달리 그리고 “사냥권의 행사에 대한 제삼자의 참여”는 제iii절과는 달리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사냥권의 실시에 대한 각주의 사냥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지 않는 한 통일효력 발생당일 위에 언급한 지역에 적용되는 사냥 조합에 의하여 사냥을 실시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1992.3.31.을 넘지 않는다.
2. 1976.7.26.공포되고(BGBI. I p.1242), 1990.6.28. 이 법 제16조를 최종 개정한(BGBI. I p.1221) 삼림종자 및 모종에 관한 법률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삼림종자와 모종에 관한 법 제3조에 언급된 나무의 종류와 모종의 씨앗과 모종에 관한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1966.6.14.일에 제정된 모종증식 유통에 관한 위원회의 66/404 IEWG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4.12.31.까지 이러한 작용을 배제해야 한다.
 - b) 1994.12.31.까지 경과기간동안 삼림종자와 모종에 관한 법 제6조 제1항과는 달리 “실험된 번식물”의 획득을 위한 기초재료에 대한 허가를 위하여 삼림종자와 모종에 관한 법 부록 II의 요구와 동일한 비교시험의 결과를 적용한다. 이는 증식물이 임업적인 증식물의 유통에 대하여 1966.6.14.일에 제정된 위원회의원칙 66/404 IEWG(ABI. EC p.2326) 토대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허가 전제조건은 이러한 초기적인 물건에서 나오는 번식물이 또한 더 훌륭한 재배평가치

를 얻었다거나 1990.6.30. 이전에 이미 이를 비교 하기위한 실험을 시작한 경우이다.

- c) 삼림종자와 모종에 관한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번식물의 판매에 있어서 이에 대한 수요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에 더해서 삼림종자와 모종에 관한 어떠한 법적 요구가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d) c)항의 제1문에있는 내용에 맞거나 일치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 판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하여 10,000 DM까지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1990.4.11. 제정된 1990년과 1991년의 임업에 있어서 규정에 따른 벌채 제한에 관한 규정(BGBI. p.742)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1조 제2항 제1문은 효력을 발하지 아니한다.

제 VII 장 연방 내독장관 업무영역

(해 당 없 음)

제 VIII 장 연방 노동 사회보장 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노동권규정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다음사항은 제외된다:
연방관보(BGBl.) 제Ⅲ부, 목록 800-1로 공포되고, 1985.4.26. 개정된
공무원 해고고지 기간에 관한 법률(연방관보 1권 710면)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된다:

연방법률관보 제Ⅲ부, 분류번호 9513-1로 공포되고 1988.12.20. 법
제53조를 최종 개정한 선원법 제18조는 폐지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
한다: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00-2로 공포되고 1990.3.14. 최종 개정된 독
일 민법 제616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622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4100-1로 공포되고, 1989.10.23. 최종 개정된
독일상법 제62조 제2항에서 4항까지, 제63조, 제73조, 제75조 제3항,
제75b조 제2문, 제82조, 제83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3. 1987.1.1. 공포되고(연방관보 제 I 부 1910편), 1990.6.28.법 제18조를
최종 개정한 영업법(Gewerbeordnung)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
된다:

- a) 제105조, 제113조에서 제114d조까지, 제115a조, 제133c조에서 제133f조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제119b조에 기술된 “제114a조에서 제119a조까지”는 “제115조 및 제116조에서 제119조까지”로 수정한다.
4. 1969.7.27. 제정되고, 1988.12.20. 법 제54조를 최종 개정한 “임금계속 지급법”(Lohnfortzahlungsgesetz)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제8조와 제10조에서 제19조까지는 1991.7.1.부터 적용한다.
 - c)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조 제1항과 제2조 및 제7조 제1항 내용의”는 “동독노동법 제115a조 제1항과 제2항”으로 대치한다.
 - d)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조 제1항과 제2항 또는 제7조 제1항”은 “동독노동법 제115a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대치한다.
 - e)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동법 제1조 또는 제7조”는 “동독노동법 제115a조 제1항이나 제2항”으로 대치한다.
 - f) 제12조의 “제4조”는 “동독노동법 제115c조”로 대치한다.
 - g) 제14조 제2항 제4문의 “제1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는 “동독노동법 제115a조 제3항 b호”로 대치한다.
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0-4로 공포되고, 1974.10.29. 법 제2항목, 제2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제3조는 다음원리를 적용한다: 휴가는 연간 최소 20일간의 근무일이다. 여기에는 주간5일의 근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 b) 동독법규 근무일 기준으로 연간 20일을 초과하는 요양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1991.6.30.까지 계약상 합의한 요양 휴가로 간주한다.
6. 1969.8.25. 공포되고(BGBI. I s.1317), 1988.7.13. 법 제3조를 최종 개정한(BGBI. I S.1037) 해고보호법(Kuendigungsschutzgesetz)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a) 제10조 제2항 제2문에서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제6권 전체가 효력발생할 때까지 만65세를 기준연령으로 본다.
 - b) 제18조에서 제20조에 따른 주노동관청의 관할은 중앙노동청에 의해 주노동관청이 새로 조직될 때까지 존속된다.
 - c) 중앙노동청의 자문회 또는 이 자문회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주노동관청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1조에 따라 연방노동청 본부에 조직된 위원회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을 관할할 때까지 제20조와 제21조에 의거해 결정을 내린다.
7.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513-1로 공포되고, 1988.12.20.법 제 53조를 최종 개정한 선원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BGBl. I S.2477) :
- a) 선원법 제35조 제2항과 제65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승선유효 당일의 선장과 선원의 노동관계는 이날부터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c) 제48조는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a) 동법 제1항 제2문과 제3문 대신 동독노동법 제115a조에서 제115e조까지 준용한다 ; 즉, 선원이 해상의 선박 또는 연방기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을때 선원이 자기의 노동능력 상실과 예측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통보할 의무가 있을 때에 한해 동독 노동법 제115a조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 bb) 1991.7.1.부터 질병 또는 부상선원에게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임금계속 지급법 제10조부터 19조까지를 위 제4번과 함께 준용한다.
 - cc) 선원이 연방기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밖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사회법 제5권 또는 제국보험법에 따른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법 제2항이 준용된다.
 - d) 제63조 제1항과 제2항 대신 동독노동법 제55조가 적용된다.
 - e) 제78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효하다 :
 - aa) 동법 제2항 제1문과 제2문 대신 동독노동법 제115a조부터 제115e조까지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있는 선장에게 적용된다 ; 즉,

이규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불임 또는 의사에 의한 적법한 임신중절을 원인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bb) 동법 제3항 대신 동독노동법 제55조를 적용한다.

8.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4-1로 공포되고 1988.7.13. 법 제4조 최종 개정된 가내노동법(Heimarbeitsgesetz)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BGBl.I.S.1034) :
 - a) 동법은 1991.7.1.부터 적용한다.
 - b) 동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1문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고지기간보다 짧게 노동계약상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노동계약과 관계없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체결한 동법과 상위한 노동계약상의 약정은 그것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본 노동계약의 적용범위에서 유효하다.
9. 1976.1.26. 공포된 가내노동법시행을 위한 1차 법규정(가내노동법시행령)은 1991.7.1.부터 시행한다.
10. 1976. 5. 4. 제정되고, 1990. 6. 26. 법 제5조를 개정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제3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1-2로 공포되고, 1985.12.19. 법 제10조 제22항을 최종 개정된 광산업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시행한다 :
 - a) 1991.3.31.까지 동법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피고용자는 다음의 회사에서 이법의 기준에 따라 법적 대리로 위임된 기구와(*노동조합) 감독위원회에서 공동결정권을 지닌다 :
 - (a) 석탄, 갈탄, 철강석을 채굴하거나 이 원료를 선별 또는 코크스 제조, 연탄생산 및 타르를 만드는 등의 가공업을 주요 경영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광산 감독청산하에 있는 기업
 - (b) 철강생산을 주요 경영목적으로하는 기업. 철강재료 철사, 파이프, 주물조각, 기관차 바퀴, 압연 등과 같은 압연공장의 생산물도 철강생산물로 본다.

b) 1991.4.1.부터 동법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피고용자는 다음회사에서 이 법의 기준에 따라 법적대리로 위임된 기구와 감독위원회에서 공동 결정권을 지닌다:

(a) 석탄 갈탄 철광석을 채굴하거나 이 원료를 선별 또는 코크스제조, 연탄생산 및 타르를 만드는 등의 가공업을 주요 경영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광산 감독청산하에 있는 기업.

(b) 철강생산을 주요 경영목적으로 하는 기업. 아래와 같은 기업에서 철강재로 철사, 파이프, 주물조각, 기관차바퀴, 압연 등과 같은 것을 생산하는 압연공장의 생산물도 철강생산물로 본다.

1. 동법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1991.4.1. 감사회의가 조직될 기업이나,

2. 제1번에 기재된 기업과의 합병에 따른 기업, 또는 위에 열거한 생산물을 제조하거나 철강을 생산하는 위 제1번에 예시한 기업의 경영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 따른 다른 기업. 여기서 다른 기업이란 1번에 기술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되고(주식법 제15조), 합병 또는 다른 기업의 주업무 목적의 양도에 따라 위에 열거한 생산물의 제조나 선철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제2문 제2호는 기업 합병이나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합병에 적절히 적용한다.

12. 1988.12.23. 공포되고(BGBl. 1989. I S. 1,902), 1989.12.18. 법 제34조를 개정한 경영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1991.12.31.까지 동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 6 조

노동자와 사무직종사자

(1) 본법에 있어서 노동자란 수공조작과 기계적 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또 노동직업을 갖기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훈련생

과 주로 기업을 위해 노무를 행하고 있는 가내 노동종사자도 본법상의 노동자로 본다.

(2) 본법에 있어서 사무직종사자란 특히,

1.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무직원(제5조 제3항에 관리사무직원의 경영기본법적 지위는 침해하지 않는다).
2. 공장, 사무실, 행정실에서 일하는 기술직 공무원, 반장과 기타 유사한 공무원
3. 공작소 기사를 포함해 심부름, 청소, 이와 유사한 일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사무직원.
4. 상업업무의 행정원과 상점보조원, 기업상품이 판매대상이 아닌 경우 약국의 실습생과 보조원
5. 능력의 예술적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연극단원과 음악가
6. 교육자, 교사후생, 간호, 복지구호사업에 종사하는 자.
7. 선장, 갑판 및 기계적 장교, 무선원, 회계원, 관리인과 행정보조원 및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국내선박이나 독일국적선박의 승무원.
8. 민간항공의 승무원

(3) 노동자인가 사무직종사자인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주로 상업상 또는 사무적 업무를 다루는 자나 노동을 하는 다른 사람을 감독하는 자는 사무직종사자로 정한다. 또 사무직종을 위해 교육중에 있는 훈련생과 주로 대기업을 위해 노무를 행하고 있는 가내 노동종사자도 사무직 종사자로 본다.

b) 경영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경영기본법에 따른 첫번째 경영위원회 선거는 1991.6.30.까지 행해진다. 1990.10.31.이전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 경영위원회나 근로자 대표는 경영기준법에 따라 늦어도 1991.6.30.까지 새로운 경영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이 경영위원회나 근로자대표는 경영규정법과 기타의 법에 따라 새로 구성될 경영위원회가 갖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규정은 경영기본법에 의거해 어떤 경영위원

회도 선출할 수 없는 기업엔 효력이 없다.

13. 1988.12.20. 제정된 대표자 위원회법(Sprecherausschußgesetz *대변인이라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대표자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동법 제37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대변인위원회나 기업대변인위원회의 최초 선출은 1991.6.30.까지 치른다.”

b) 동법 제37조 제2항 제2문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현 위원회는 늦어도 1991.6.30.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이 있기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14. 1969.8.25. 공고되고 1974.10.29. 법 제Ⅱ부 제1조를 개정한 노동협약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협약이 노동법에 적절하게 등록되어졌다면 새로운 노동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현행의 단체협약 또는 모든 후속및 별도 합의를 포함한 노동협약을 적용한다. 단체협약이나 노동계약은 동일한 효력범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새로운 노동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이 없다. 새로운 노동계약으로 폐지되거나 대체되지 않은 지금까지의 단체협약이나 노동협약상의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1990.7.1. 이전에 체결되고 등재된 합리화보호협정은 후속 작용없이 1990.12.31. 무효가 된다; 근로자가 1990.12.30.까지 합리화보호법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유보된 새로운 노동협약상의 청구권과 권리는 변동이 없다. 계약 제20조의 규정과 이의 부록은 변동이 없다.

15. 1979.7.2. 공고되고 1990.6.26.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은 다음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a) 동법은 제Ⅲ장 업무영역 A 제Ⅲ절과 제4절의 기준이 적용된다.

b)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서 제48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aa) 노동관계사안은 그 사건을 심리한 동 중재소가 있는 곳의 구역법원이 관할한다. 중재소가 소집되지 않으면 구역법원에 이관된다.

bb) 노동중재소가 사건의 신청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심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 법원이 노동관련사건을 관할한다.

- cc)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에 노동중재소를 소집하지 않고 구역법원이 노동사건을 관할한다 :
- aaa) 소송당사자 일방이 구류 또는 형집행 중에 있고 그가 구금이나 형집행 이전에 있었던 노동계약상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 bbb) 피고용자가 군복무나 민간봉사대 복무(*독일에는 병역의무수행을 현역이나 비현역 민간봉사대복무로 할수있음, 이를 Zivildienst 라고 함)중에 있는 경우,
 - ccc) 피고용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과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일하고 있는 경우,
 - dd) 기업에 노동중재소도 없거나 노동중재소가 소집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업이 있는 곳의 구역법원이 노동사건을 관할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법원도 노동사건을 관할한다 ;
 - aaa) 기업소재지와 근무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bbb) 피고용자가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노동사건재판 현 시점에서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16. 1974. 12. 19. 제정되고, 1986.12. 8.법 제33조를 최종 개정한 “기업양로제도 개선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본법은 1992.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b)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1991.12.31. 이후 시행되는 기업양로제도 성과에 관한 동의하에 적용된다. 동법 제18조 제6항에 따른 사후보험은 1992.1.1.이전 시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 c) 동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업무영역 B : 기술적 노동보호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개정 또는 보충한다 :

1. 1980.2.27. 제정되고 1986.12.16. 법 제6항 제3호를 개정한 아세틸렌법은 그 제29조에 다음항을 보충한다 :
“(3) 통독후 위원회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0.12.31.이후 제28조 제1항이 예상하는 위원수의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해 새롭게 소집된다.”
2. 1980. 2. 27. 제정되고 1988. 8. 17. 개정된 엘리베이터규정령 (Aufzugsverordnung) 제 25조에 다음항을 보충한다 :
“(4) 통일후 위원회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0.12.31. 이후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예상되는 위원수의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해 새롭게 소집된다.”
3. 1980.2.27. 제정되고, 1982.5.3.개정된 “가연성 액체에 대한 규정” 제 26조에 다음 조항을 보충한다 :
“(5) 통독후 위원회는 동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1.12.31. 이후 제 25조 제1항에 따른 예상되는 위원수의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해 새롭게 소집된다.”
4. 1980.2.27. 제정되고, 1986.12.26. 법 제6조 제1항을 개정한 기관(汽罐)규정 제31조에 다음항을 보충한다 :
“(5) 통독후 위원회는 동규정 제30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1.12.31. 이후 제 30조 제1항에 따른 예상되는 위원소의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해 새롭게 소집된다.”
5. 1989.4.21. 공고된(연방법률관보 제1부 843쪽) 인쇄저장용기규정 (Druckbehälterverordnung) 제39a조 다음 제39b조를 신설한다.

“제39조b

독일인쇄저장소위원회의 경과규정

통독후 위원회는 동규정 제36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1.12.31.이후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예상되는 위원수의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하여 새롭게 소집된다.”

6. 1974.12.17. 제정된 “고압가스관에 관한 규정” 제15조 다음에 제15a조를 신설한다 :

“제15a조

고압가스관에 관한 경과규정

통일후 위원회는 동규정 제1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1.12.31. 이후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예상되는 수를 갖는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항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하여 새롭게 소집된다.”

7. 1980.12.27. 제정된 “폭발물위험구역의 전기설비에 관한 규정” 제19조 다음에 제19a조를 신설한다 :

“제19a조

폭발위험 안전 전기설비를 위한 위원회 경과규정

통독후 위원회는 동규정 제18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1.12.31. 이후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예상되는 수를 갖는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항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하여 새롭게 소집된다.”

8. 1968.6.24. 제정되고 1986.2.18. 법 제31조를 개정한 설비안전법 제8조에 다음 조항을 보충한다 :

통일후 위원회는 지체없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지역에 필요한 숫자의 대표를 보충한다. 1991.12.31. 이후 제2항에 따른 예상하는 수를 갖는 위원회가 통일조약 제3항에 언급된 지역의 제의를 고려하여 새롭게 소집된다.”

9. 1985.1.14. 제정된 의료기구에 대한 규정의

a) 동 규정 제21조 다음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절을 부가한다 :

제 vi 절

독일재통일을 위한 이관규정

제 22 조

변칙시행, 이관

제13조와 제14조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2.1.1. 효력을 발생한다. 그밖의 본 규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선포 이후부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제 23 조

국내반입허용의 계속적 효력

통일전 본 규정이 이미 효력을 갖고 있던 주에서 전문의료기기에 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건축구조허가(Bauartzulassung)를 통독조약의 효력이 있기까지 아직 부여하지 않았다면, 전문의료기기의 국내반입에 대해 이미 통독조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부여한 허가와 특별 승인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기기유형허가로 본다. 이 허가는 최장기간 1994.12.31.까지 유효하며 특별 승인은 최장기간 1991.12.31.까지 유효하다. 또 1991.6.30.이후 공급된 전문의료기기는 제5조 제6항 제2문에 해당하는 기기로 본다.

제 24 조 설비가동과 지속적 사용

(1) 제6조 제1항 1문의 개별요구 충족에 관계없이 :

1. 해당 의료기기가 통일조약 효력발생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허가받아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계속사용하며
2. 통일조약 효력 발생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을 갖고 있던 규정에 적절한 경우 1991.12.31.까지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가동하여 이날부터 계속 사용될 수 있다.

(2) 영업규정 제24조에 의거 다른규정이 늦어도 1992.1.1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하여 제6조 제5항은 제1항의 의료기기에 도 적용한다. 의료기부분에 장착된 특성상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통일조약의 효력발생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했던 규정으로 한다.

(3) 이 령의 결정들은 유효하다.

제 25 조 안전기술 감독

제11조는 늦어도 1992.1.1부터 제24조 제1항에 정한 제1그룹 의료기술기기에 적용한다. 제11조를 적용하기까지 이 의료기기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전 유효했던 규정에 따라 안전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재산목록

제12조에 따른 재산목록은 늦어도 1991.12.31.까지 완성한다. 이 목록을 완성하기 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전 유효했던 규

정을 적절히 적용해 제1그룹과 제3그룹의 의료기기를 파악해야한다.

제 27 조

제28조의 경과규정

- (1) 제28조 제1항 제1문의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점에”란 용어 대신에 “1986. 1. 1.부터”로, 제2항 제1문과 2문의 “본 규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및 제3항의 “본 규정의 효력발생시”란 용어대신에 “독일통일이 선포된 날”로 대치한다.
- (2) 제28조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증명은 제1그룹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때부터 제출해야 한다. 이 의료기기가 통일독일 선포 일년전에 사용되었던 것이라면 통일독일의 선포 일년전의 시기에 대한 입증 이 있어야 한다. 이의 입증은 의료기기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 또 경영자는 그가 최소한 독일통일 선포 일년전에 이 의료기기의 정기점검을 실행하고 계획하며 조직한 전문가를 고용했다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 (3) 제28조 제2항 제2문에서 제4문까지와 제3항에 따른 조사는 1994. 12.31.까지 실행한다.”
- b) 지금까지의 제Ⅵ절은 제Ⅶ절이 되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제28조부터 제30조가 된다.

제 Ⅲ 절

연방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87.1.1. 공고되고, 1990.6.28. 법 제18조를 개정한 영업규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다음 기준으로 유효하다 :
 - a) 독일통일의 선포까지 유효한 현행 동독법에 따라 제24조 제1항의 의미와 적합하게 설치되고 또 이 선포 이전에 이미 설치됐거나 이 시점

이전에 설치를 착수했으나 제24조 제3항에서 제시되지 않은 설비는 현행법에 따라 가동되며 계속 사용된다. 1993.1.1.부터 전문가에 의한 검사의무는 폐지된다. 관할관청이 검사의무의 예외를 허가할 수 있다; 관할관청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설비에 대해 추가조치를 명할 수 있다.

- aa) 주요 설비를 변경할 때,
- bb) 그 주요 용도를 변경 할 때, 또는
- cc) 경영유형에 따라 피고용자나 다른 3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예견될 때 :

연방정부의 법규에 의해 제2문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동법 제24조에 제1항 제1문부터 제3문까지는 제24조 제1항에 의거해 정한 법령상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제24조 제3항에 제시된 설비에도 효력이 있다.

- b) 관할주정부가 제24c조 제4항에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때까지 동독 현행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술감독청의 담당자는 독일 통일의 선포 있기까지 의미상 제24c조 제1항의 담당자와 같다.
 - c) 관할주관청이 감독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제24d조 제1문에 의한 관할 감독청은 기술감독청이다.
2. 1980.2.27.제정되고 1986.12.16. 법 제6조 제3항을 개정한 아세틸렌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 효력발생전에 허가받아 운영되던 설비의 계속경영은 이를 허가한다. 이 시기까지 유효한 현행법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 승인, 기기구조허가, 기기구조검사 또는 시행된 공고 등은 본 규정의 허가, 승인, 기기구조허가, 기기구조검사 또는 시행된 공고로 간주한다.
 - b) 통독전에 설치됐거나 설치를 착수한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현행규정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다음 경우의 설비를 본 령의 규정에 적절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aa) 주요설비를 변경하거나

bb) 용도를 변경하거나

cc) 경영유형에 따라 피고용자나 3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예견될 때.

본 규정이 정하는 경영규정은 늦어도 1991.12.31.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3. 1980.2.27. 제정되고, 1988.8.17. 최종 개정된 “엘리베이터규정”은 위 2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4. 1980.2.27. 제정되고, 1982.5.3. 개정된 “가연성 액체에 대한 규정”은 위 2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1980.2.27. 제정되고, 1986.12.16. 법 제6항 1호를 개정한 “기관령규정”은 위 2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6. 1989.4.21. 공고된 인쇄보관규정(Druckbehaelterverordnung)은 위2번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7. 1974.12.17. 제정된 “고압가스공급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통일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정당하게 사용되던 설비의 이용은 계속 허용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까지 유효한 현행법에 의거해 부여받은 허가, 승인, 또는 공고등은 본 규정의 허가, 승인, 공고로 본다.
 - b) 통일당일은 제15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시행일이다. 규정이 정하는 변경 규정은 반드시 1991.12.31.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 c) 통일전에 설치되었거나 가동된 고압가스관은 1991.6.30.까지 관할관청에 공시해야 한다.
8. 1980.2.27. 제정된 “폭발위험구역의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2조 제4항의 구역분할은 경영자가 1991.12.31.까지 10구역 G와 M을 확정하고 1992.12.31.까지 필요한 폭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f) 항은 변동이 없다.
 - b) 통독전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었던 폭발물위험구역의 전기설비는 계속 허가한다.
 - c) 폭발물위험구역에 있는 전기설비는 통독전 유효했던 규정에 적절하

다면 1991.12.31.까지 가동할 수 있다.

- d) [광산 안전 프라이베르그지역 연구소]에서 1972.12.31. 이후 발급한 검사증명서는 0구역이나 1구역에 대해 폭발방지 전기안전장치를 허가한 것으로서, 이 증명서가 통일전에 발급된 것은 1995.12.31.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8조 제1항의 건축설계검사 증명서로 본다.
- e) 1982.6.15. 제정된 국가적 표준의『건강, 노동 및 화재 보호 요구의 예외적 허가규정』제1조의 예외적 허가는 1991.12.31.까지 전기 폭발 안전장치에도 유효하다. f) 항은 변동이 없다.
- f) 관할관청은 b)에서 d)항까지 정한 전기설비나 경영기기를 이 규정의 규칙에 맞도록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aa) 주요시설의 변경,
bb) 용도변경
cc) 피고용자나 제3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예견될 때,
- g) b)항에 따라 계속 가동할 수 있거나 c)항에 따라 개업 허가받은 전기설비에 대하여 통독전 동독에서 유효한 법규에 따라 자격있는 자가 행한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검사, 개업검사 또는 반복검사등은 1993.1.1.부터 이 검사를 받지 않는다.
- h) 제15조 제1항의 전문가란 『광산안전 프라이베르그지역 연구소』이다. 제9조 제1항의 전문가란 1992.12.31. 까지 독일통일당일 현재 동독의 기술검사국의 인정에 따라 전기시설의 개업, 변경 및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관할관청은 제2문에 따른 과도기를 위한 예외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9. 1987.1.1. 공포되고 1990.6.28. 법 제18조를 최종 개정한 영업규정 제12a조부터 120f조까지, 139b조, 139g조, 139h조 및 139m조는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120a조부터 120f조까지는 독일 입법부에 의해 노동보호법이 새로 제정될 때까지 다음 경우에 적용한다 :

- aa) 제6조 제1항에 따라 영업규정 적용이 제외된 기업,
- bb) 그밖의 자유직업,
- cc) 농업, 임업,
- dd) 비영리 단체와 기관

이 규정은 공무에 대하여 당규정이 제정될때까지 통일후 공무원할 지역에도 적용된다.

- b) 제120a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제120a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서독의 사고예방규정과 안전기술, 노동보건, 및 위생규칙 조항들을 고려한다. 고용자가 사고 보험회사(보험자)의 일원으로서 사고예방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유효하다. 위 제1문과 제2문의 적용에 있어서 주요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통독전에 설치되었거나 건립에 착수했거나 이시점에 사용중인 작업장, 경영설비, 기계와 공구 등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사고예방규정과 규칙을 알맞게 변경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aa) 주요시설 변경
- bb) 용도변경
- cc) 경영유형에 따라 피고용자나 제3자의 건강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예견될때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관할 주관청이 감독업무를 관장할 때까지 제139 b조에 따른 감독업무는 통독전까지의 유효한 규정에 따른 노동보호규정의 준수를 감독할 관할이 있는 국가기관이 행사한다. 기타 노동보호관계법과 규정에 포함된 관할 주관청의 감독업무에도 적절히 적용한다.

10. 1975.3.20. 제정되고, 1983.8.1. 규정 제1조를 개정한 작업장규정 (Arbeitsstaettenverordnung)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56조의 효력 발생 시점 대신 통일 당일로 한다.

11. 1968.8.31. 제정되고 1975.3.20. 규정 제15조 제2항 제2문 제2번을 개정한 “11.1.부터 다음해 3.31.까지의 자유시간 특별노동보호요구 규정”은 1991.4.1.부터 적용한다.

12. 1973.12.12. 제정되고 1976.4.12. 법 제70조를 개정한 “노동안전” 기

업내의사, 안전기술자 및 기타 전문요원에 대한 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기업내의사의 업무가 공장보건소의 설립으로 보건소에 이관된 경우에도 제2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는 이하 b)항과 d)항에도 적용한다.
- b) 노동의료나 노동위생에 대한 전문의와 공장의로서 인정을 받은 전문의는 사용자가 제4조에 따라 공장의로서의 전문지식을 증명한 것으로 본다.
- c)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학력 또는 장인(명인)자격을 갖고 최소 2년간의 견습기간을 마친 자로서 전문기술자, 노동보호법에 대한 전문관리인, 노동보호조사관, 안전기술자나 화재예방에 대한 전문기술자로서의 교육, 또는 안전검사관을 위한 건강보전 및 노동보전상 취득한 부가적 자격이나, 노동예방분야에 적절한 교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요원은 사용자가 제7조에 따른 노동안전전문요원으로서 전문기술자를 증명한 것으로 본다. 노동안전전문요원은 그들이 본 법의 시행이전 최소 2년간 노동안전분야에서 종사한 자라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
- d) 기업내의사의 배치시간 계산은 다음과 같은 최소가치를 근거로 한다 :
 - aa) $(0.25\text{시간}/\text{종업원수}) \times \text{사소한 위험이 있던 경영년도}$,
 - bb) $(0.6\text{시간}/\text{종업원수}) \times \text{특별한 노동장애나 특수한 직업병 또는 근로자나 제3자에게 노동조건상의 위해가 있기 때문에 노동의료행위가 실시되었던 영업년도}$,
 - cc) $(1.2\text{시간}/\text{종업원수}) \times \text{연중 또는 단기간의 간격으로 노동의료상의 진찰을 실시한 영업년도}$.
 기업내의사에 의하여 수행된 노동의료상 진찰의 범위가 평균치를 초과하거나, 규정실시로 경영에 부가적 업무가 해소된다면 최소가치의 근거로 파악한 배치시간은 증가되어야 한다.
- e) 노동안전전문요원의 배치시간 산출은 다음과 같은 최소가치를 근거로 한다 ;

- aa) 0.2시간/종업원수 × 사소한 위험이 있던 경영년도,
- bb) 1.5시간/종업원수 × 중간수준 위험이 있던 경영년도,
- cc) 3시간/종업원수 × 높은 위험이 있던 경영년도,
- dd) 4시간/종업원수 × 매우 높은 위험이 있던 경영년도,

노동안전상 업무의 난이도 또는 기술상 노동위생의 업무범위가 평균치를 초과하거나, 화재 및 방사능오염의 예방분야와 같은 부대적 업무가 해소된다면 최소가치의 근거로 파악한 배치시간은 높아 져야 한다.

- f) 사용자가 사고보험회사의 일원이며 이 보험회사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 규정을 제정한 경우 b)항에서 e)항까지의 규정 대신에 사고예방규정에 있는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 b)항과 c)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필요한 전문기술이 증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g)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와 동베를린에서의 공무를 위해서는 공무를 담당하는 주 관할장관이 해당규정을 제정할때까지 1978.1.28. 제정된 연방경영및 행정에서의 안전기술 및 기업내의사공무를 위한 연방내무 장관의 지침을 따른다.

13. 1987.1.8. 제정되고 1990.4.3. 최종 개정된 방사선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연방정부는 법규정으로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을 위해 제45조의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갖는다.

14. 1986.8.26. 제정되고, 1990.4.23. 최종 개정된 위험물질규정(Gefahrstoffverordnung)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통독전 유효한 법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 또는 행해진 공시는 이 규정의 허가와 공시로 유효하다.
- b) 통일전 방임된 위험물질, 합성물, 제조물의 유통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사용될 경우 1991.12.31.까지 지금까지의 유효한 규정에 따라 표시된다.
- c) 위험물질, 합성물 또는 제조물이 통일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표시의무가 없었던 것일 경우 1991.1.1.까지 표시없이 유통 또는 사용될수 있다.
- d) 목적은 제9조 제3항과 달리 1992.12.31. 까지 생산되며 거래될 수

있다. 제1문과 달리 1991.12.31.까지 생산된 이 목재로 만든 가구는 거래될 수 있다.

- e) 디옥신과 후레인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합성물, 제조물은 제9조 제6항과 달리 1991.12.31.까지 거래될 수 있다.
- f) 통독전 지금까지의 유효한 규정에 따라 제13조 제2항에 의거한 시험을 거친자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는다.
- g) 독일 통일 당일에 제11조 2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991.2.1.까지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하며 통일전 최소한 위행위의 책임이 있는자를 임명해야 한다.

업무영역 C : 사회적 노동보호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7.1.1. 공포되고 1990.6.28. 법 제18조를 최종 개정한 영업규정 제 105a조부터 제105j조는 다음기준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3.1.1.부터 적용한다. 이 때까지는 부록Ⅱ 제Ⅷ장 업무영역 C 제Ⅲ절 제1번 제a)항에 규정된 동독법은 계속 효력이 있다.
2. 1968.1.1.부터 공고되고, 1986.4.24. 법 제12조를 개정한 철강산업에 있어서 일요일과 공휴일 작업금지의 예외에 대한 규정은 위 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007-5로 공고되고, 1986.4.24. 법 제12조 제2항을 개정한 제지산업의 일요일과 공휴일 작업금지의 예외규정은 위 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1007-1로 공고된 약국과 점포의 일요일 휴무에 대한 규정은 위 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107-2로 공고된 영업령 제105e조 제1항에 따

른 일요일 휴무 예외조항에 관한 공제는 위 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7107-3으로 공고된 영업의 일요일 작업금지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위 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50-1로 공고되고, 1975.3.10. 법 제21조를 개정한 노동시간규정(Arbeitszeitordnung)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모든 건축장에 부녀자의 작업금지를 정하고 있는 한 제16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b)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c) 본 법의 과도기적 특성을 이유로 계약상의 노동시간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d)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임금계약이나 노동계약상의 노동시간이 법규에 확정된 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나타내는 한 이 노동시간은 1991.6.30.까지 계약상 체결한 노동시간으로 본다. 이는 일요일과 공휴일 노동, 야간노동, 초과노동시간의 법적수당에도 유효하다.
8.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50-1-1로 공고되고, 1975.4.18. 규정 제24조를 최종 개정한 노동시간규정 시행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모든 건축장에 부녀자의 작업금지를 정하고 있는 한 제20번은 적용되지 않는다.
 - b) 제21번과 제22번은 적용하지 않는다.
9.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51-1-2로 공고된 청소년의 노동시간 및 어린이 노동에 대한 법 시행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모든 건축장에 소녀의 작업금지를 정하고 있는 한 제52번은 적용되지 않는다.
10.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50-2로 공고되고, 1974.3.2. 법 제241조를 개정한 병원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위 7번 c)항과 d)항을 기준으로 한다.
1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50-8로 공고되고, 1976.7.14. 개정된 제과점

과 빵집 근무시간은 다음에 따른다 :

제5조부터 제7조는 1993.1.1.부터 적용한다.

1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50-8-1로 공고되고, 1975.8.18. 법에 개정된 제과점과 빵집의 근무시간에 대한 법 시행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시행령 제2항은 1993.1.1.부터 적용한다.

1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050-9로 공고된 여가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동령 제2조는 1992.1.1.부터 적용한다. 이때까지 부록Ⅱ 제Ⅷ장 업무영역 C 제Ⅲ절 제1번 c)항과 제2번 및 제4번에 정한 동독법은 계속 효력이 있다.

업무영역 D : 사회법의 침해규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되거나 보충된다 :

1. 1975.9.23. 공고되고 1988.12.20. 법 제32조를 개정된 사회 법원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 a) 제78조 제2항은 삭제한다.
 - b) 제84조 다음에 제84a조를 신설한다 ;

“제84a조

제25조 제4항은 예심절차엔 적용하지 않는다.

제78조 제2항은 이제까지 동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에 설치된 노동법원 관할의 경우 1991.1.1. 이전 사회법원법의 효력이 미치는 곳에 이행의 무자가 제기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에도 준용한다.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1. 1975.12.11. 제정되고, 1989.6.30. 법 제2조를 개정한 사회법전 -총칙 편-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 a) 제1관과 제2관은 1991.1.1.부터 의료, 연금 및 산재보험에도 준용한다.
 - b) 제1관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항목 제1조는 물권법과 단결권적 규정의 과도적 성격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2. 1980.8.18. 제정된 사회법전 -행정 소송- 1982.11.4.제정된 사회법전 -지불 책임자와의 공동노력과 제3자에 관한 관계- 그리고 1989.12.18. 법 제85조 제5항을 최종 개정한 사회법전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제1항목과 제2항목은 1991.1.1.부터 의료, 연금 및 사고보험에도 준용한다.
3. 1985.9.27. 제정된 사회법전에 따라 공증업무관할청 규정에 대한 규정은 위 2번에 따라 적용한다.
4. 1975.9.23. 공고되고 1988.12.20. 법 제32조를 개정한 사회재판소법은 부록 I 제Ⅲ장의 기준을 침해하지 않으며 다음기준에 따른다 : 제144조부터 제149조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8. 3. 31. 공고되고 1985.7.4. 법 제1조를 개정한 행정재판권과 재정재판권에 대한 법원의 부담경감법 제2항목 제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우 공소에는 제150조 제1번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 행정재판규정 제131조 제3항과 제4항은 미허가에 대한 항고에도 적용한다. 제150조 제2번과 제3번은 변동이 없다. 이 기준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베를린지역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무영역 E : 노동시장정책, 노동진흥, 실업보험

아래의 법은 조약 제8조에 의한 연방법 효력발생에서 제외한다 :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4-1로 공고되고, 1988.12.20. 법 제39조를 개정한 귀향법.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4-1-1로 공고되고, 1975. 2. 13. 규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귀향보조조치법 시행령.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 개정 또는 보충된다.

1. 1969.6.25. 제정되고, 1990.6.28. 법 제19조를 최종 개정한 고용촉진법의
 - a)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3항 제5문에있는 “3문”이란 지시는 “4문”으로, “제1항 1문 a) 또는 c)”란 지시는 “제1항 1문 1번 또는 3번”으로 수정한다.
 - bb) 제7항 제2문 제2호의 “제1항 제1문 c)”란 지시는 “제1항 제1문 제3번”으로 수정한다.
 - b) 제63조는 제4항 제1문의 “해약보호법 제17조 제1번”은 “해약보호법 제17조 제1항”으로 대치된다.
 - c)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aa) 동조 제4번 제2문의 “제112a조 제1항 제2문”이라 지시는 “제112a조 제1항 제3문”으로 수정한다.
 - bbb) 동조 제8번의 “(제107조 제5번 d)”란 지시는 “(제107조 제1문 제5번 d항)”으로 수정한다.
 - bb) 제6항 제3문의 “제2항 제3문”이란 지시는 “제1항 제2문”으로 수정된다.
 - cc) 제8항 1문상의 “제2항에 따라”란 지시는 “제3항에 따라” 수정한다.
 - d) 제241b조는 폐지된다.
 - e) 제249a조 다음 제249b조부터 제249d조가 신설된다:

제 249b 조

- (1) 1990.6.22. 제정된 노동촉진법에 따른 촉진(Faederung)은 본 법의 적용시 이 법에 따른 촉진과 대등하다.
- (2) 1990.6.22. 제정된 고용촉진법에 따라 실업수당, 단축노동임금이나 실업보조금 청구권이 성립되는 경우 통독전시기에는 1990. 6. 22.의 고용촉진법이 적용되나 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촉진법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은 본법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과 대등하다. 1990. 12. 31.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급부수준은 급부산정에 기준이 되는 노동 댓가의 근거는 새로 정한다. 제113조 제1항과는 달리 1991년 초 임금 조세카드에 등재된 조세등급이 이런 근거의 기준이 된다. 급여의 감액은 금지된다.
- (3) 제2항 제3문에서 제5문까지의 부양비와 경과비에도 적절히 효력이 있다.
- (4) 제2항 제1문은 제141n조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 파산비용에도 효력이 있다.

제 249C 조

- (1) 제19조 제1a항과 제1b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거주와 최초의 취업시기도 고려해야 한다.
- (2) 제59b조와는 달리 경과비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노동 댓가에 기인한다면 경과비는 이지역의 연금처럼 동일한 시기적 간격과 일정한 백분율로 증액된다.
- (3) 제62a조 제3항 제1문을 적용함에 있어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40-3으로 공고된 분배규정(Verteilungsverordnung) 제2조에 따라 이주자에게 수용주(Aufnahmeland)로서 주에 유효한 인구 규모 기준이 된다.
- (4) 제91조 제2항 제3문과 제9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전 동독지

- 역에서 1991.6.30.까지의 노동창출을 위한 조치엔 연방평균이 아니라 이 지역의 평균을 근거로 승인된다.
- (5) 제91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전 동독지역에서 1991.12.31.까지의 노동창출을 위한 조치엔 연방평균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균을 근거로 승인된다.
- (6) 제94조 제3항 제2문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전 동독지역에서 1991. 6. 30.까지의 노동창출을 위한 조치엔 이 지역에 배정된 모든 근로자의 최고 15% 범위에서 90% - 100%의 노동보상 보조금지급을 허가할 수 있다.
- (7) 제105a조의 적용에 있어 법정 연금보험의 의미상 취업불능이나 생계불능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이 있는 연금법상의 취업불능이나 생계불능과 대등하다.
- (8) 제107조를 보충하여 아래 내용은 임금의무를 근거하는 고용시간과 같다.
1. 1990.6.22.의 노동촉진법에 따라 임금의무를 정하고 있는 작업시간,
 2. 노동촉진법 제107조, 제249b조 제5항에 따라 임금의무를 정한 작업과 대등한 시간.
- 제107조 제1문 제5번 b나 c에 정한 시간은 1990.6.22. 제정된 노동촉진법 제107조 제1문 제5번 b나 c에 정한 해당 능력임금 시간과 같다.
- (9) 제111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법규 적용엔 해당 능력측정한계가 기준이 된다. 해당 능력 측정 한계는 실업자가 청구 이전에 임금 지불의무가 성립되어진 최종 직업이 기준이 된다.
- (10) 제111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1.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노동보상의 법정공제에 대한 규정이 노동 촉진법상 독일통일 이전에 유효했던 지역의 법정 공제 규정과 다르다면 노동 보상에 대한 법정 공제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2.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종교세금징수조항은 이

- 지역에서 종교세 도입후 3년후를 고려한다.
3. 통일 조약후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법정 의료 보험의 분담금 조항은 우선 1992년의 지급규정을 고려한다.
- (11) 제1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8항 제1문에 따라 산정기간에 대등한 시간은 노동촉진법 제112조 제1항의 의미상 최종의 총평균임금으로 2700 마르크까지 고려된다. 그밖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1.1.이전에 경과된 분담금 의무를 지우는 고용시간엔 노동촉진법 제112조와 이 조항에 정한 규정이 적용된다.
- (12) 통일조약 제20조 부록에 따른 대기수당이나 경과수당의 지급에 대한 시간엔 이 능력을 산정하는 노동 보상금이 근거가 된다.
- (13)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112조에 따른 노동보상에 관해서는 노동 보상 시간에 따른다. 제112a조 제1항 제1문에 의거한 적용 정액은 이지역의 연금 정액 기준인 총액 노동 보상금 개정에 따른다.
- 계절 기간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연금적용 연간 격차의 축소에 따른다.
- (14) 실업수당청구는 제118조 제1항 제1문에 따르며 동시에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임신수당, 주수당(Wqchengeld) 및 산모 보조금
 2. 제20조부록에 따른 대기수당 또는 경과수당
- (15) 제118b조에 따른 조기 퇴직금은 1990.2.8.제정된 조기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 (16) 제134조 제1항 제1문 제4번 a)에 보충하여 본 법에 따른 실업수당의 지불은 1) 노동촉진법에 따른 실업수당의 지불과 같으며, 2) 1990.2.8. 규정에 따른 국가보조금이 노동촉진법 제249b조 제6항에 따라 실업수당지불과 대등하면 본법에 따른 실업수당 역시 국가보조금의 지불과 같다.
- (17)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실업자는 제134조 2항에서 정한 시간과 비교되는 시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그곳의 유효한 규정

에 따라 제134조 제3항에 정한 급부와 같을때 그 시간에 적절히 제134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 (18) 제135조를 적용함에 있어 본 법에 따른 실업보조금 청구권은 1990.6.22.제정된 노동촉진법에 따른 실업보조금 청구권과 같다.
- (19) 제137조 제1항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연방자녀 수당법에 따른 자녀수당(Kindergeld)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규정에 따른 국가자녀수당과 동등하다.
- (20) 제138조 제3항에 정한 급부에 보충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은 수입으로 볼 수 없다.
1. 매월 600마르크를 넘지 않는 산모보조금,
 2. 1990.12.31.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입의 할증금과 국가자녀 수당
 3. 1990.1.4.제정된 1990.12.31.까지 국가자녀수당 보조금 승인에 대한 규정 제1조에 따른 국가자녀수당 보조금,
 4. 1990.12.31.까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가족비용의 보증금
- (21) 제141a조 부터 제141n조까지, 제145조 3번, 제74조 제4항의 적용을 파산규정대신 고용주의 지불 불능에 있어서의 종합 집행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제141b조 제3항 제2번의 경우를 적용 종합집행규정을 적용한다.
- (22) 1990.6.29.제정된 농업적용 법 제69조 제3항에 따라 늦어도 1992.1.1.까지 허가된 재조직될 조합의 조합원은 이 조합의 피고용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 (23) 제169c조 제3번의 적용에 있어서 법정연금보험의 의미상 생업 불능이나 생계 무능에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이 있는 연금법의 의미상 폐질이나 생업 불능과 동등하다.
- (24) 제186b조 제1항의 재정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해 1990년과 1992년 기준으로 징수한다. 1990.6.22.제정된 노동촉진법 제186e조에 따라 1990년에 기업주로부터 지불한 할당금이 고려되어

야 한다. 이 할당금이 지출을 초과하면 제186b조 제1항에 따라 1991년에 조달된 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25) 합병과정에서 연방노동청이 동독 노동 행정청의 재산을 인수하며 동독 노동청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다. 통일조약 제20조는 변동이 없다.
- (26) 아래의 특별규정은 의장단과 행정위원회의 연속 재임기간의 잔여기간에(1986.4.1-1992.3.31) 적용된다:
1. 제192조와 달리 행정위원회는 51명, 의장단은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의 증가는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
 2. 추가 임명된 위원은 주거지를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두어야 한다.
 3. 추가로 위원을 임명하는데에는 이 법 제192조, 195조, 196조, 197조가 적용된다.조직의 공공법인체의 추가 대리는
 - a) 행정위원회에
 - aa)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회의가 각각 1인의 위원을
 - bb) 연방상임의회가 2인의 위원을
 - b) 연방상임위원회의 의장이 제의할 수 있다.
 4. 연속재임기간중 의장단회의에서 가부동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행정위원회가 결정한다.
- (27) 노동청의 자문위원회는 1990.6.22.제정된 노동촉진법 제190조의 의미상 그들의 조언임무를 행정위원회가 결성될 때까지 계속한다.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주노동청에 행정위원회가 결성될 때까지 중앙노동청의 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임무를 계속한다.
- (28) 주노동청과 노동청의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992.3.31.종료한다.
- (29) 독일통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유효한 규정의 제241b조는 통일전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제 249d 조

본 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효력이 있다 :

1. 제34조 제4항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대학, 이와 유사한 직업교육기관 및 1992.12.31.까지 착수한 직업 교육조치엔 적용치 않는다. 위 제1문에 따른 조치에 관련된 자중 통일전 6개월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되지 않는다.
2. 제40조 제1b항은 1992.10.1.이후 시작하는 허가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92.10.1.부터 제1문의 제한조치 없이 유효하다.
3. 1990.6.22.제정된 노동 촉진법 제41조 제2a항의 조건을 충족한 계속교육 조치의 참여는 이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추진된다.
4. 실업의 위기를 벗어날 직업 교육 조처에 참가를 신청한 자는 통일전 12개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거주 했을 경우와, 1992. 12. 31.까지 참여한 경우 제44조 제2항 제1호 제2번을 충족한 신청자와 동일하다.
5. 고용촉진법 제44조 제5항은 1990.6.22.제정된 고용촉진법에 의거 직업 교육에 참가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1990.7.1.이전에 직업 계속 교육과 전직 교육에 참여하고 직업 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의 전직 교육에 관한 1990.2.8.제정된 규정 제5조와, 1990.3.16. 제정된 규정의 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자는 생활비와 참여 비용으로서의 보조금 급부를 그 지속 기간 동안 허용된 액수로 지급받는다. 보전수당은 연방노동청이 담당한다.
7. 동절기 건축 추진 생산에 관한 규정(제77조에서 제82조, 제186a조와 제238조)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4.1.부터 적용한다.
8.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건축기업이 제83조 제1번과 제2번의 조건을 충족치 않은 경우 악천후수당은 1992.3.31

까지 보장된다.

9. 1990.11월과 12월에 기상조건에 따른 휴업에 의거해 발생한 악천후수당의 측정은 1990.6.22. 제정된 고용촉진법 제68조에 따른다.
10. 제128조와 제134조 제4항 제4문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1992.12.31.까지 해고된 피고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제163조 제2항을 보충하여 연방노동청은 1990/91과 1991/92년도의 악천후노동기간에 대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사무소를 갖는 기업주에게 신청에 의해 악천후 수당 청구자의 의료보험 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 이 보조금은 1990/91년의 악천후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 보험 회사의 현행 분담률에 따라 제163조 제1항에 정한 노동보상금의 75%, 1991/92년의 악천후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 보상금의 50%를 보조한다. 제88조 제2항 제2문에 정한 제척(除斥)기간은 분담금신청에도 적용된다.
12. 제166조 제3항 제2문과 달리 연방노동청은 1990/91년도의 악천후 기간에 대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 신청에 의해 악천후 수당 청구자의 연금 보험 분담금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13. 병역 복무자나 민간 봉사자(* 민간신분으로 현역 복무대신 사회봉사기관 - 또는 외국에 근무하는 병역제도) 또는 보호의무있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촉진법 제168조 제2항과 제3항a조 및 제168조 제2항과 제3a항) 1991.1.1 이전 시기엔 지원금을 인상하지 아니한다.
14. 제171조 제1항 제1문 제1번엔 사회법전 제4권 제18조에 따라 독일 이전 노동 촉진법이 유효했던 지역에 현행 월정금액 규모의 1/7인 610마르크를, 동일한 비율로 610마르크의 분담금 대신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유효한 월정분담금의 7분의 1로 정한다.
15. 제175조 제1항 제1문 제1번과 제3번 및 제2문을 적용할때 노동자와 사무직종사자의 연금 보험 금액 규모 산정 한계 대신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연금법(Rentenrecht)의 금액 규모

산정 한계에 따른다.

16. 제175조 제1항 제1문 제2a번의 적용에 있어 직업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사무직종사자의 모든 연금보험 가입자의 평균 총노동 보상금 대신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유효한 사회보험의 금액규모에 따른다.
17. 제86a조에 따른 보험할당액은 공동기구를 통한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1991.4.1 부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소재지를 가진 건축기업의 기업주는 베를린 주 노동청에 지불해야 한다.
18. 주노동청이 결성될 때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중앙노동행정청이 주노동청의 업무를 관장한다.
19. 제233b조 제2항 제1문 제3번은 사회법전 제4권 제28a조부터 제28r조까지의 조항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아래 원칙이 적용된다:
 “3. 사회 보험 분담금 지불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제 249e 조

- (1) 연방노동청은 통일 효력 발생일부터 1991.12.31.까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최소한 90일간 이지역에 살면서 취업했고 만57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양로 경과금을 지불한다.
- (2)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양로 경과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노동청에 실업 신청을 하고 양로 경과금을 신청한 자,
 2. 제101조부터 제103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취업불능이거나 생산활동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자,
 3. 위 제1항과 제2항의 1번과 2번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날
 - a) 실업 수당 청구 조건의 충족에 있어서 832일에 대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거나(제106조) 또는
 - b) 832일간의 실업수당 청구 근거로 실업수당을 최고 78일이상 받지 아니한 자.

- (3) 실업수당과 이 수당의 수령인에 대한 규정은 양로 경과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청구기간은 936일이며 위 제2항 제3번 제b)의 경우 실업수당 청구권을 충족하는 날로 청구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청구 금액은 통상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법정 공제금을 줄인 제112조의 의미상 노동 보상금의 65%이다. 1991.4.1. 이전에 제출된 청구는 양로 경과금을 첫 312일간에 대하여 5% 인상한다. 제112a조는 인상금 관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12조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만 58세 대신에 만 57세를 기준으로 한다.
 4. 연방노동청은 양로 경과금의 특성을 고려한 제10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제105c조의 측정을 고려한 규정은 양로경과금에도 유효하다.
- (4) 노동청은 278일의 양로 경과금 규정에 대하여 고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양로 경과금 신청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17개월내에 연금을 신청하도록 해당자에게 알린다. 해당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로 경과금 신청 기한 만료일 부터 재신청일 까지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 (5) 양로 경과금 청구권이 성립되면 실업 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본법의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 양로 경과금 청구권 성립전 지불 의무가 있는 직업에 기인한 실업 수당 청구권의 기간은 양로 경과금 청구권 충족을 위한 날자에서 공제한다.
 2. 실업 수당 청구권은 양로 경과금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에는 정지된다.
 3. 해당자가 78일의 양로 경과금을 수령한 경우,
 - a) 양로 경과금 청구권이 성립되기 전 기간에 근거된 실업 수당 청구권은 소멸하며,
 - b) 제104조와 제106조를 적용할 때 양로 경과금 청구권이 성립되기

전 지불 의무에 기초한 취업 기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 (6) 실업보조금 청구에 있어 양로 경과금은 실업 수당에 포함된다.
 - (7) 신청자가 이제까지 직업활동을 신청할 때 그지역에서 분명한 노동력의 결핍이 성립 되었고 신청자가 그러한 직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양로 경과금 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 (8) 노동 시장 정책상 필요하다면 연방 노동 및 사회 보장 장관은 연방재무 및 경제장관의 협조를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범규정을 통하여 연방 재무 및 경제장관의 협조로 1992.12.31.까지 연장할 수 있다.
 - (9) 여성근로자가 독일 통일이 선포된 시기에 1990.12.31.까지 지불 의무를 근거하는 직업에서 해고된 경우 제1항과 제3항 3변상의 만 57세는 만 55세로 한다. 이 경우 양로 경과금 청구 기간은 1560일이다.
 - (10) 832일이상의 청구 기간으로 말미암아 연방 노동청에 발생한 경비는 연방정부가 지급한다. 그러나 관리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985.6.14. 공포되고 1989.12.22. 최종 개정된 근로자 위탁법은 제1항 목 제19조 다음에 제20조를 신설한다 :

제 20 조

“독일 통일에 따른 제20조 경과 조치

- 1. 사회 법전 제4권 제28a조가 효력을 발생하면 제12조 3항이 우선 적용된다.
- 2. 사회 법전 제4권 제28a조부터 제28r조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제18조 제2항 제4변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4. 사회 보험 분담금 지불 의무에 대한 규정위반,……”
- 3. 1982.1.29. 공포되고 1988.12.20. 법 제14조를 최종 개정한 부정 노동 방지법 제2a조 다음 제2b조를 신설한다.

제 2b 조

“독일통일에 의한 제2b조 경과조치

사회법전 제4권 제28a조부터 제28r조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제2a조 제2항 제4번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 조치에 따른다.

"4. 사회 보험 분담금 지불 의무에 대한 규정위반; ……"

4. 1988.12.20. 제정되고, 1989.12.22. 법 제3조를 최종 개정한 고령자 定時制勞動法(Altersteilzeitgesetz)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제2조 제1항 제2번에 아래 문장이 보충된다:

“노동 촉진법 제249c조 제8항 제1문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을 갖는다.”

b) 제13조 다음에 제13a조를 신설한다:

제 13a 조

“독일통일에 의한 제13a조 경과 조치

(1) 제3a조 제1항 제1번 제b항에 규정된 최고 보험 분담금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노동자에게는 사회 보험 의무 기금으로 대신 한다.

(2)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기업엔 제7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산정시 고령 근로자 정시제 취업 개시전 최종 3개월 평균치가 기준이 된다.

(3) 제10조 제1항에 정한 급부 대신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동일 수준의 급부금이 적용된다.

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4-1로 공포되고 1988.12.20. 법 제39조를 최종 개정한 귀향법 제2조와 제3조는 폐지된다.

6. 1986.8.26 공포되고 1990.6.28. 법 제20조를 최종 개정한 중증 장애자 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a) 제5조 제3항 제1번의 “연방철도” 다음에 “그리고 독일연방우편”을

첨가한다.

- b) 제11조 제2항의 “150”이란 숫자는 “200”으로 대체한다.
 - c) 제35조 제2항의 “33”은 “38”로 “11”은 “16”으로 수정한다.
 - d) 제41조 제3항 제1문의 “우편 및 시외통화제도”는 “우편 및 전신국”으로 수정한다.
 - e) 제54조에는 아래의 제4항이 신설된다 :
“(4) 작업 불능 장애자의 보호와 편의를 위해 작업장과 같은 시설과 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
 - f) 제59조 제1항 제5문 제3번의 종지부는(.)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의 문장을 덧붙인다 :
“중증장애자가 1979.10.1.의 시점에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장애자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 이들도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7. 1974.8.7.제정되고 1988.12.20. 최종 개정된 실업자 지원 규정 제13조 다음에 제13a조를 신설한다 :

제 13a 조

“독일 통일에 의한 경과 조치

1991.12.31 까지 제11조를 적용함에 있어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연금 법상의 유효한 연금 법상의 폐질 연금, 광부 폐질 연금과 광부 연금은 취업불능 연금과 대등하다.”

8. 1987.1.6. 법 제3조를 최종 개정한 노동 허가 규정 제15조 다음 제15a조를 신설한다 :

“제 15a 조

독일통일에 의한 경과조치

- (1) 제1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번,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체류한 기간이 고려된다.

- (2) 제2조 제2항 제1문의 경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받은 학교 및 직업 교육 수료도 고려된다.
- (3) 노동 시장에 자유 진입을 허용한 노동허가는 제2조 제1항 제2번과 제3번 및 제6조의 경우를 예외로 1992.12.31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이 없다:
 1. 통일 조약의 효력 발생시 외국인이 이 지역에 어떤 주소나 주거지가 없었거나,
 2.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5년이하의 피고용자로 활동 하였을때.

제 iii 절

연방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1. 1986.8.26. 공포되고 1990.6.28. 법 제20조를 최종 개정한 중증장애자 법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a) 제4조는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a)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971.6.10. 제정된 “장애자 증명서 발급과 장애자 인정에 대한 규정”에 따른 장애자로서의 인정은 길어도 1993.12.31.까지 장애자 인정조건이 있는 한 제4조 제1항의 증명서 등급 I은 30도, 등급 II은 50도, 등급 III은 80도, 등급 IV은 100도의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도를 확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bb) 위 장애자증명서 발급과 장애자 인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통일조약 제32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발급한 중증 장애자 증명서와 최고 중증 장애자는 그 유효 기간이 경과 되기까지 길어도 1993.12.31.까지 제4조 제5항의 의미상 증명서 등급 II은 50도, 등급 III은 80도, 등급 IV은 100도의 장애등급을 갖는 중등장애자로서의

특성에 대한 증명으로 간주한다.

- cc) 제4조 제1항에 정한 관청이 설립되기 까지 지역, 지역의 市 및 市の 區에서 정한 관청이 제4조에 따른 행정 행위의 발령을 관할한다.
- b) 1990.6.21.제정된 노동, 직업, 사회에서의 중증장애자 통합을 보장법(중증장애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독일통일조약 효력이 발생되기 전 성립된 1990.7.1.부터 통일되기까지 기간에 대한 보전 지불 의무는 공백의 여지로 남겨둔다.
- c) 제24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 aa) 1990.11.30 까지 중증 장애자의 제1차 대표 선출은 간단한 선거과정의 기본 원리에 따라 행한다. 통일전 대표 선거 실시 또는 준비를 위한 법률 효과 조치는 변동이 없다. 1990.10.1.이후 선정된 독일 통일의 효력 발생시 취임한 중증 장애자 대표는 차기 정규선거 때까지 재직한다.
 - bb) 제8항 제5문의 적용에 있어 주요양원에 이의 신청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위원회 대신 중증 장애자 총회가 대신한다. 이 총회는 재직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규정을 위반한 대표자 직위를 박탈 할 수 있다.
- d)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主療養院이 설립될때까지 제31조 제1항의 주요양원에 부여한 업무와 권한은 노동청이 행사한다.
- e) 제46조를 보충하여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중증 장애자는 1992.12.31.까지 장애의 종류를 고려하여 야간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확인이 있으면 중증장애자에게는 야간 작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 f) 제59조의 증권은 :
 - aa) 1991.3.31.까지 연 30마르크, 반년에 15마르크를 지불한다. 반환할 경우 상환액이 7,50마르크 미만인 경우 매월 2.50마르크를 상환한다.
 - bb) 1992.12.31.까지 연 60마르크, 반년에 30마르크를 지불한다. 반

환의 경우 상환액이 15마르크 미만인 경우 매월 5마르크를 상환한다.

- g) 제61조의 제1항 제5번과 관련한 제59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은 1991.7.1부터 동독 철도에도 유효하다.
 - h) 제64조에 따른 선불 의무는 1년간 요금 결손 보상 과정이 선행된 후 성립 된다.
 - i) 제65조 제1항 제1문은 신탁회사가 상환 권한 있는 기업의 경우 근거 리 교통에 있어 무임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과 기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동베를린이 무임 운송 경비를 부담한다.
 - k) 연방 인사 대표법 규정이 중증 장애자법과 관련된다면 1990.7.22 제정된 연방인사대표법 적용을 위한 법과 상치되지 않는 한 이를 준용한다.
 - l) 본법과 독일 연방 철도에 관련된 본법의 근거 규정은 동독 철도에도 적용한다.
2. 1980.8.13. 제정된 중증 장애자법과 작업장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통일 독일의 효력 발생 시점에 존재하고 1990.7.1. 이후 잠정적으로 승인된 작업장은 작업장령 제17조 제3항의 작업장으로 간주한다.
 3. 1973.7.16. 제정되고 1983.12.22. 최종 개정된 공준(公準)규정은 1991.4.1.부터 적용한다.
 4. 1978.7.13. 제정된 월동 수당 규정은 1991.4.1.부터 적용한다.
 5. 1972.3.14. 제정된 1986.11.3. 최종 개정된 동절기 건축보험(Winterbau-Umlage-Verordnung)은 1991.4.1 부터 적용한다.
 6. 1977.3.14 제정되던 보석금 령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방 노동청의 연간 분담금 산정 근거로서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사회 보험 분담금액의 90%를 기초로 한다.
 7.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갖는 연방 노동청 행정 위원회의 규칙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노동 촉진법 제191조 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 a) 1972.7.4. 제정되고(연방노동청관보 1972.S.511) 1988.7.6. 최종 개정된(연방노동청관보 1988 S 1367) 건축업상 연중 작업 촉진에 대한 연방 노동청 행정 위원회 규정의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는 1991. 4.1.부터 적용된다.
- b) 1975.7.31. 제정되고 1990.7.6. 최종 개정된 장애인 노동 및 직업 촉진에 대한 연방노동청 행정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aa) 제24조 제3항 제2문 제1번의 내용중 아래와 같이 문구 수정한다 :
- aaa) a항의 “450”은 “300”으로, “710”은 “455”로,
 bbb) b항과 c항의 “150”은 “135”로,
 ccc) d항의 “710”은 “465”로, “750”은 “495”로,
 ddd) e항의 “335”는 “290”으로, “375”는 “330”으로.
- bb) 제24조 제3항 제2문 제2번에 “340”은 “290”으로, “555”는 “360”으로, “250”은 “210”으로 수정한다.
- cc) 제24조 제4항에 “710”은 “465”로, “450”은 “300”으로, “555”는 “360”으로, “340”은 “290”으로 수정한다.
- dd) 제24조 제5항에 “90”은 “75”로, “110”은 “95”로 수정한다.
- ee) 제27조 제2항에 “4400”은 “3200”으로, “2750”는 “2000”으로 수정한다.
- ff) 제33조 제4항에 “495”는 “300”으로 수정한다.
- gg) 제44조 제2항에 “400”은 “300”로, “500”은 “400”으로 수정한다.
- hh) 제44조 제4항에 “1000”은 “800”으로 수정한다.
- i i) 제50조 제1항에 “10000”은 “8000”으로, “20000”은 “16000”으로 수정한다.
- kk) 제24조 제3항 제2문 제1번에 따른 교육수당은 극단의 경우 숙박비가 매월 40마르크를 초과한다면 매월 50마르크까지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불한다.

II)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별거수당(*이혼조건이 아니라 직업상 주중에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 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총노동보상금(독일마르크) | | | 별거수당(독일마르크) | | | |
|---------------|------|------|-------------|-----|-------|-------|
| | | | 첫째해 | | 둘째해 | |
| 1 주 | 4 주 | 1 월 | 1 주 | 1 일 | 1 주 | 1 일 |
| 210 | 840 | 910 | 161 | 23 | 80,50 | 11,50 |
| 270 | 1080 | 1170 | 147 | 21 | 73,50 | 10,50 |
| 330 | 1320 | 1430 | 133 | 19 | 66,50 | 9,50 |
| 390 | 1560 | 1690 | 119 | 17 | 59,50 | 8,50 |
| 450 | 1800 | 1950 | 105 | 15 | 52,50 | 7,50 |
| 510 | 2040 | 2210 | 91 | 13 | 45,50 | 6,50 |

업무영역 F : 社會保險(일반규정)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 법률 효력 발생에 있어 제외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1970.12.22. 제정되고 1989.12.18. 법 제21조를 최종 개정한 사회 보험에 있어 국가사회주의(*나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
2. 1970.12.22. 제정된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사회주의(*나치)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의 개정 및 보충을 위한 법 제4조
3. 1984.12.18. 제정되고 1989.12.12. 규정 제2조를 최종 개정한 1990년의 현물 급여령(Sachbezugsverordnung)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보충된다 :

1.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사회 보험 회사의 청산을 위해서는 다음 특별 규정을 적용한다.

제 1 조

- (1) 사회 보험 회사는 1991.1.1. 에 공법상의 법인체로 변형되며 그 명칭을 “과도 사회보험”으로 정한다.
- (2) 노동 및 사회보장 연방장관은 의료 보험과 연금 보험 및 사고 보험회사의 최고 경영 협회와 협력하여 사무총장과 부총장을 임용한다. 과도 사회 보험엔 동수의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이의 제기 위원회가 결성된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사회법전 제4권 제48조 제1항 제1문 제1번과 제2번에 정한 합의의 제안으로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다. 본 항목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직무 담당자를 고려해야 한다.
- (3) 연방보험국은 과도 사회 보험 회사를 감독한다.

제 2 조

- (1) 연금 보험 회사와 사고 보험 회사가 아직 사고 보험과 연금 보험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 경우 과도 사회 보험 회사는 늦어도 1991.12.31.까지 이 회사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사고 보험과 연금 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연금 보험 회사와 사고 보험 회사는 조약 제30조 제4항을 고려하여 다른 이들 보험사의 지점 및 그의 감독 관청과 협의하여 다른 업무도 맡을 수 있다. 정당한 업무로서 다른 보험회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 사회법전 제10권 제89조와 제91조 제1항과 제2항은 여기에 유효하다. 행정비용의 분배와 세 보험사지점의 비용은 임무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한다. 개별 보험사의 분배는 해당 사회 보험사 지점의 최고경영협회가 정한다. 유입된 수입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당 관할 연금 보험사와 사고 보험

사의 과도 보험회사는 위 1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월 일정한 시기에 가불금을 받는다. 연방보험국이 이 가불 금액수를 확정한다. 조약 부록 I 제Ⅷ장 업무영역 1 제iii절 제1a번의 분배 기준이 사고 보험의 가불금에도 적용한다.

- (2) 과도보험 회사의 임무에는 1991.12.31. 해체된 사회 보험사의 보험계 열인 의료 보험업무의 수행도 포함한다.

제 3 조

- (1) 사회 보험 회사의 자산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관할이 있는 사회 보험사에게 양도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으로 정한다. 제 2문에서 정한 연방법의 기준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때까지 처리는 노동 및 사회보장 연방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만기 채무의 이행을 위한 청산방법 규정으로 취급하면 효력이 없다.
- (2)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관할이 있는 사회 보험 회사는 그의 재산과 관련해 1945.5.8. 당시에 그곳에 관할이 있던 사회 보험 회사의 권리승계자이다.

제 4 조

- (1) 과도 보험 회사는 사회 보험 회사 설립자와 피고용자간의 변형시점에서 형성된 노동관계에 있다.
- (2) 조약의 부록 I 제Ⅸ장 제iii절 제1번 제5항에 따른 중요한 이유로 특별해고를 위한 조건이 노동자에게 있다면 노동 관계의 지속이 보험 설립자에게 불투명하다. 따라서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관할을 갖는 보험 설립의 지속적 노동 관계는 과도 회사의 종업원에게 늦어도 1991.12.31. 까지 유지된다.
- (3) 제2항에 따른 제공 의무는 과도 보험 회사의 의료 보험 영역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에게는 의료 보험 회사가 의무를 지며, 연금 보험 종사

자에게는 연금 보험 회사가, 사고 보험의 종업원에게는 사고 보험 회사가 책임을 진다. 개개 보험지사내에 제공되는 지점의 중요성은 최고경영기구의 참여하에 해당 보험 회사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될 수 있다.

- (4)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무 해결후 그 해산을 위해서는 과도 조치에 충분한 범위에서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2. 1991.1.1.부터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사회 보험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 1 조 총 칙

법정 의료 보험이나 연금 보험 또는 노동 촉진법에 따라 부담금이나 부담금의 일부를 지불한 종업원은 사회 보험 분담금을 징수하는 의료 보험 회사에 보험을 신청하고 해지해야 한다. 의료 보험 회사의 관할을 변경하려면 사용자가 지금까지의 의료 보험 관할 회사에게 보험 가입 종업원의 해지를 통지하고 새로운 관할 회사에 보험을 신청한다. 이 신청은 업무개시후 2주 이내에 해야하며 해지 신청은 업무 종료후 6주 이내에 해야한다. 연금 보험자가 가입 예정자(종업원)에게 보낸 보험 증명 책자의 양식에 기재함으로써 보험 신청이 된다. 가입자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보험 증명책자를 제출한다. 근로자가 보험 증명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보충 인쇄물은 신고할 수 있다. 보충 양식은 모든 연금 보험자의 위임을 받아 의료 보험 회사가 작성할 수 있다.

제 2 조 신청양식의 기재

신청양식 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신청서 : 주소, 해지 및 연간신청서 : 변경된 주소”,

신청시점의 가입자 주소

2. “기혼 : 예”,
예인 경우 “X”로 표시하라
3. “연금자 또는 연금신청자 : 예”,
연금 보험에서 연금이 지급되거나 연금을 신청한 경우 “X”로 표시하라.
4. “다수기업의 근로자 : 예”,
근로자가 다수 사용자에서 근무하는 경우 “X”로 표시하라.
5. “직무에 대한 진술”
“A”란엔 999를 “B”란엔 “99”를 기재하십시오.
6. “사업자 번호”
노동청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아직 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지체없이 사업자 번호를 신청하십시오 ; 이때 사용자는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분담금 그룹 의료보험, 연금보험, 연방노동청” 분담금 그룹은 의료 보험과 연방 노동청의 순서로 모든 근로자를 위해 해당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간략히 해결한다.

| | |
|------------------|---|
| 의료보험 : 분담금면제 | 0 |
| 일반분담금 | 1 |
| 인상된 분담금 | 2 |
| 할인된 분담금 | 3 |
| 농촌의료보험의 분담금 | 4 |
| 반액분담금 | 5 |
| 연금보험 : 분담금면제 | 0 |
| 노동자 보험을 위한 전액분담금 | 1 |
| 계약공무원을 위한 전액분담금 | 3 |
| 노동자보험을 위한 반액분담금 | 3 |
| 계약공무원을 위한 반액분담금 | 4 |

이를 기재한다.

4. “국적”

연방 통계국이 정한 약자로 기재한다.

독일 보험 번호가 제시될 수 없다면 그 밖에 보험 번호의 위임을 기재할 수 있다.

5. “국적”

근로자의 국적

6. “출생지”

근로자의 출생지 기재

7. “출생시 姓”

출생시 성이 결혼에 의해 받은 성과 다를 경우에만 기재한다.

8. “性”

해당란에 “x”로 표시하시오.

9. “법정 연금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의 종류”

해당란에 “x”로 표시하시오.

근로자의 신상에 대한 진술은 공문서 내용과 같아야 한다.

제 4 조

보충양식으로 해지신청

보충 양식으로 해지 신고를 할때는 제2조와 제3조에 따른다 ; 보험 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진술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제 5 조

사용자를 통한 신고제출

- (1) 신청 양식은 타자기로 기재되어야 한다. 작성된 문서는 필요한 내용을 완전히 담고있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2) 신청서 원본은 사용자가 관할 의료 보험 회사에 송부한다. 첫번째 사본은 근로자에게 고부한다 ; 두번째 사본은 노임서류에 첨부시킨다.

제 6 조

연방광부조합보험과 해상질병보험의 특성

연방 광업 조합 보험과 해상 질병 보험은 신청 양식과 그 기재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해상 질병 보험이 관장하는 근로자에게도 직업군, 선박 그룹과 특허에 대한 기재를 해상 보험 기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1개월이다. 그러나 연방 광부 조합 보험은 신청 및 해지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연방 광부 조합 보험 신청시 사업자 번호는 연방 노동청과 협의하여 연방 광부 조합 보험이 부여한 사업자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해상 질병 보험 신청시 사업자 번호는 원칙적으로 연방 노동청과 협의하여 해상 직업 조합이 부여한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다.

제 7 조

현원신고 (Bestandsmeldung)

사용자는 법정 의료 보험, 연금 보험 또는 노동 촉진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그 일부를 지불하는 모든 근로자 명부를 분담금 인수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의료 보험 회사에 신고 해야한다. 제1조 제4문부터 제6문까지는 여기에도 유효하다. 사용자는 현원신고를 명부로 할 수 있다. 명부엔 근로자들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다.

1. 보험가입번호
2. 이름과 성
3. 생년월일
4. 주소
5. 근무 시작일
6. 분담금 그룹 보험 가입 번호를 모르는 경우 추가로 보험 가입 번호를 받기위한 자료를 기록할 수 있다. 제3조 제5번부터 제9번까지는 여기에도 유효하다. 의료 보험 회사가 명부상 기재를 위한 형식을 정할 수 있다.

제 8 조

차주(借主)에 의한 통제신고

- (1) 종합 사회 보험 분담금 징수를 관장하는 의료 보험 회사의 차주는 2 주 이내에 사용대차근로자(* Leiharbeitnehmer, 타회사 종업원을 빌려와 쓰는 형태의 고용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대차 근로자가 법정 의료 보험이나 연금 보험 또는 노동 촉진법에 따른 분담금이나 분담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대차 근로자가 보험 의무상의 업무 관계에서 사용차주를 돕는다면 의료 보험의 보험 의무를 관할할 의료보험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의료보험회사는 신청사본을 사용차 주의 기업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우송해야 한다. 사용차주는 필요한 양식을 의료 보험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연방 노동청은 대차 근로자의 신청 양식을 의료 보험 회사가 정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9 조

의료보험 설립자의 임무

- (1) 의료 보험 회사는 신청 접수시 가입자 명부에 등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 (2) 보험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신청엔 가입자 명부 자료에서 알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보험 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보험 번호 부여를 위한 자료를 지체없이 뷔르쯔부그에 있는 자료국이나 근로자 연방 보험 협회에 송부한다. 이로써 보험 번호를 위한 보험 증명 책자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보험 번호를 받으면 의료 보험 회사에 통지한다.
- (3) 의료 보험 회사는 접수한 모든 신청서를 관할청에 다시 신고한다. 통계의 정리, 보전 및 계속 보전 및 계속 유지를 위해서는 제2의 통계보전 규정과 제2의 통계 제공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 조 규정 위임

연방 노동 및 사회 보장 장관은 연방 상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1조 부터 제29조까지의 유효기간을 법령을 통하여 정할 권한을 지닌다.

제 11 조 경과규정

1990.12.31.까지 독일 통일의 효력 발생 후 통일 조약 제32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현행 법규의 절차에 따른다.

제 Ⅲ 절

연방법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1. 1976.12.23. 제정되고 1990.3.23. 개정된 사회법전 -사회보험을 위한 공동규정- 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사회 보험상 여러 급여액이 있는 한 제1항목 제43조와 제5조는 통일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과 기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동 베를린에 관련하여 그밖의 지역에도 효력이 있다.
 - b) 제1항목 제17조 제1항 제3번은 독일 통일로부터 작용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을 위한 연방장관은 연방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정을 통해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도 현재 실제 거래 가치에 따라 현물 급여의 가치를 정할 권한이 있다.
 - c) 급여액(제1항목 제18조)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월정 1400마르크이다. 노동 및 사회 보장을 위한 연방장관은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정을 통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노동보상

의 발전을 고려하여 보험 분담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밖의 지역의 급여액을 결정할때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보험 계약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제1문부터 제3문까지는 독일 통일후 적용한다.

- d) 제1항목 제18a조에서 제18e조는 1992.1.1.부터 적용한다.
- e) 제1항목 제28a조부터 제28r조까지는 의료 보험 회사가 분담금 징수를 인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의료 보험 회사가 분담금 징수를 인수할 때까지 세무서가 분담금 징수와 계속 업무를 관장한다. 이 세무서가 징수 부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징수액엔 사고 보험 분담금을 포함한 총사회 보험 분담금을 내포한다. 의료 보험 회사는 독자적 분담금을 포함한 사고 보험 분담금도 사고 보험 회사가 매월 분담금을 징후할 때까지 이를 징수해야하며 또 과도적 보험 협회에 이관해야 한다.

부록 II 제 VIII 장 업무영역 F 제 iii 절 제 2 번의 제 e 항과 제 9 번을 참조하라.

- f) 제1항목 제28k조 제2항이 법규정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면 적용하게 된다. 노동 및 사회보장을 위한 연방 장관은 연방 상원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법규장을 통해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할 권한이 있다.
- g) 신규 설립한 보험 회사에 있어 연임을 위한 대표자 총회 선거는 투표없이 행한다. 한 그룹에서 여러 제안 목록을 작성하고 이 중에서 여러 지원자를 지명해 위원으로 선정하였다면 감독 관청이 명부대표자의 청문에 따라 대표자 총회를 소집한다. 감독 관청은 소수를 고려하여 할당할 수 있는 비율로 의석을 배분한다. 사회 법전 제4권 제1항목 제48a조에서 제48c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h)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관할을 갖는 보험 회사는 보험가입자 단체에 속하는 인원의 증가에 적절하게 기관 위원을 추가 선거함으로써 일정한 임기를 갖는 독자적 관리 기구를 보충한다. 그러나 최고 현재 위원의 숫자를 넘을 수 없다 ; 제1항목 제4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독 관청은 보험설립자의 청문에 따라 자치 기관 위원의 숫자를 결정한다. 사회 보험을 위한 선거 규정 제128조와 위 제

- g) 항은 대표 총회의 추가 위원 선출에도 유효하다. 의장단은 대표 총회의 보충 이후 대표 총회의 보충이후 대표 총회의 추가위원에 의해 선출된다. 대표 총회의 추가 보완 절차는 1991.3.31.까지 종료한다.
- i) 제8차 일반 사회 보험 선거에 있어서 우선 1991.7.31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노동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 제48a조가 제4항의 제1문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1항목 제48b조 제1항에 정한 2월 28일은 8월 31일로 한다.
- k) 제1항목 제87조 부터 제90조는 독일통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l) 제1항목 제107조 제1항 1문은 1991. 12.31 까지 연방노동청이 제99조에 따라 의무의 이행만을 조사한다는 기준으로 적용한다.
- m) 제1항목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그리고 제108조와 제110조는 1992.1.1.일부터 효력이 있다.
- n) 제2항목 제18b조는 1992.1.1.부터 효력이 있다.
- o) 위에 열거한 항목에 다른 규정이 있지 않는한 사회법전 규정은 - 사회보험을 위한 공동 규정 - 1991.1.1.부터 효력이 있다.
사회 법전 규정이 1991.1.1. 이전에 효력을 발생치 않는다면 1990. 12.31 까지는 독일 통일후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1981.8.3. 제정된 사회 보험 산정 규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a) 본 규정은 기술 설비를 고려하여 감독 관청을 지정하면 과도 보험 협회에만 적용할 수 있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신규 설립 보험 회사에 대하여 감독 관청은 정해진 기간을 규정의 적용 배제를 정할 수 있다.
- c) 감독 관청은 위 a)항과 b)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대조적인 통계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 d) 이 기준은 또한 사회 보험상의 통계와 산정 제도와 관련한 일반 관리 규정에도 유효하다.
3. 1977.12.21. 제정된 사회 보험상의 예산 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2번에 정한 기준이 효력이 있다.

4. 1989.5.22. 제정된 분담금 감독 규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본 규정은 의료 보험 회사가 분담금 징수를 인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 b) 사용자가 본 규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1992.1.1.까지 징수 관서를 통해 사용자에게 넘겨질 수 있다.
5. 1981.7.27. 제정되고 1988.12.20. 최종 개정된 예술인 사회 보험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 a) 예술인 사회 보험법은 다음 b)항이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한 1992.1.1. 효력을 발생한다.
 - b)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 제1항,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a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47조는 1991.1.1.에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도에 지불하게 될 예술인 사회 공과금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특정의 백분율에 따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제26조 제5항에 의한 법규정을 통해 결정되는 백분율에 따라 인상된다. 이 사회 공과금은 동독의 문화 기금을 의한 분담금 상환을 위해 쓰여진다.
 - c) 조약 제35조 제6항의 문화 기금은 이런 처분 목적을 위한 국가 수단과 위 b)항에 따른 예술인 사회 공과금의 징수범위에서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나 주거지를 갖고 있고 연간 소득이 24000마르크를 넘지 않는 예술가와 언론인에게 1991년에 지불될 의료 보험과 연금 보험의 절반까지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 d) 예술인 사회 보험법이 1992.1.1. 효력을 발생하면 예술인 사회 보험 조합은 본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1991년에 할 수 있다.
6. 1982.8.13. 제정된 예술인 사회 기금의 규약에 관한 규정은 1991.1.1.부터 적용한다.
7. 1984.5.23. 제정된 예술인 사회 보험법 시행규칙은 1991.1.1.부터 적용한다.
8. 1989.5.22. 제정된 분담금 지불 규정은 위 4)번 a)항에 정한 기준이 유효하다.
9. 1984.12.18. 공고되고 1989.12.12. 규정 제1조를 최종 개정된 노동 보

- 상 규정은 1991.1.1.부터 적용한다.
10. 1980.5.29. 제정되고 1989.12.5. 최종 개정한 제2차 정보 전달 규정은 1992.1.1.부터 적용한다.
11. 1980.5.29. 제정되고 1989.12.5. 최종 개정한 제2차 정보 종합 규정은 위 제10번에 정한 기준이 유효하다.

업무영역 G : 의료보험 및 건강관리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거나 보충된다 :

- (1) 1988.12.20. 법 제1조를 제정하고 1990.7.9. 법 제12조를 최종 개정 한 사회법전 제5권-법정 의료보험-은 다음과 같이 보충된다 :
제307조 다음에 제Ⅸ장을 신설한다 :

제 Ⅸ 장

독일통일에 따른 과도규정

제 308 조

효력발생과 효력범위

- (1) 이 법전은 이하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장 규정의 기준에 따라 1991.1.1. 효력을 발생한다.
이하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한 의료보험에 있어 독일통일후 1990. 12.31.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현행 규정의 절차에 의한다.
- (2) 본 장의 규정이 본법의 종합 효력 범위에 있는 다른 의료 보험 조합에 보증되지 않거나 통일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본 법이 효력이 있었던 지역에서 이를 위한 급부가 있었다면, 본장의 규정은 통일조약 제

3조에 언급된 지역에 본점을 갖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에 소속하거나 소속될 보험가입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3) 본 장의 규정은 본법의 효력발생으로 그 관할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미치는 한 일반 베를린지역 의료보험조합에도 효력이 있다. 이 일반의료보험조합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그 본점을 갖고 있는 보험조합으로 본다.

제 309 조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 (1) 제6조 제1항 제1번에 따른 연간노동보상한계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기준이 되는 분담금측정한계에 알맞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 (2) 1990.12. 31.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법정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보장했고 1990.12.31.의 경과로 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된 자는 임의 보험을 산청할 필요없이 보험에 가입된다. 이 보험은 효과있는 탈퇴의사 표시가 있기까지 임의 보험으로 본다.

제 310 조

급 부

- (1) 제23조 4항, 제24조, 제40조 제2항, 제41조에 따른 급부청구가 있을 때 1991.6.30.까지 다른 추가 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 1991.7.1.부터 1992.6.30.까지 매일 5마르크씩 추가 지불한다.
- (2) 1991.6.30.까지 제29조에 따른 진료가 행해졌다면 의료보험조합이 전액의 비용을 보상한다. 1991.7.1.에서 1992.6.30.사이에 행해진 진료 수가는 의료 보험 조합이 비용의 90%를, 제29조 제1항 제2문의 조건 하에 둘째이하의 자녀에겐 비용의 95%를 보상한다.
- (3) 진료가 1991.1.1.부터 1992.6.30.사이에 착수되었다면 제30조에 의한

- 치아 교정은 진료비의 80%를 의료 보험 조합이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 한다. 제30조 제5항은 1992.6.30.이후에 개시한 진료에 적용한다;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요구되어진 진찰도 요청할 수 있다. 의료 보험 조합 단체와 치과 의사 협회가 아직 절차 규정을 합의하지 않는 한 보험 가입자가 의료 보험 조합으로부터 제1문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다면 치과의사가 갖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된다.
- (4) 제31조에 따른 급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1991.6.30.까지 추가 지불을 하지 아니한다. 1991.7.1.에서 12.31.사이의 급부 청구엔 매건 단 1, 50마르크를 지불한다.
- (5) 제32조에 따른 급부 청구가 있을 때 1991.6.30.까지 추가 지불을 하지 아니한다. 1991.7.1.에서 1992.6.30.사이 이 급부의 청구가 있을 때 비용의 5%를 추가 지급한다.
- (6) 1991.6.30.까지 외과정형 치료상 특수 신발 제조 비용은 지급치 않는다. 1991.7.1.에서 1992.6.30.사이의 개인소유분은 독일 통일 이전에 이미 이 사회 법전이 효력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의료 보험 회사가 확정된 개인 소유분은 50%이다.
- (7) 제36조 제2항은 주의료 보험 단체와 보조기금 단체가 정액 대신 제 36조 제1항에 정한 보조금을 위한 계약 가격이 적용한다.
- (8) 제39조에 따른 병원진료청구시 1991.6.30.까지는 추가 지불이 없으며 1991.7.1.에서 1991.12.31.사이의 시기엔 최장 14일간 매일 2,50마르크를 추가 지급한다.
- (9) 제59조에 따른 사망 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통일 조약 제 3조에 언급된 지역의 현행 징수액의 70%에 달하지만 최고 2100마르크를 넘지 못한다. 제10조에 따른 보험 가입자의 사망시엔 사망 수당의 절반을 보상한다. 광부 의료 보험 가입자에게는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러나 제59조에 따른 현행 최고액을 넘을 수 없다.
- (10) 1991.6.30.까지 발생한 제60조에 따른 교통요금은 그 전액을 의료보험 조합이 부담한다. 1991.7.1.에서 1992.6.30.사이 생긴 교통요금은 제60조 제2항 제1문에 정한 경우에 매 운행당 10마르크를 넘지

않는 금액에서 의료 보험 조합이 부담한다.

- (11) 제61조와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현행 월정 징수액과 연간 노동 보상 한계가 기초가 된다.

제 311 조

의료보험조합과 급부이행자의 관계

- (1) 제71조는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a) 분담률불변의 원칙 적용에 있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몫의 지급 자금의 공급을 위해 보험업무상 징수를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고려할 수 있다.
- b) 아래 사항은 통일독일의 입법부가 새 규정을 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 aa) 1980.11.14. 제정된 약품 정가 규정의 의미상 제조자 인도 가격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수요자에게 교부한 약제 의무 있는 약품에 대해 55%를 인하한다.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이외에서 위 제1문에 정한 약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bb) 약품 제조업자와 약제 도매상은 그의 구매자에게 제1항에 정한 약품의 사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이해 관계 인이나 그 단체가 정한다.
 - cc) 할인액은 1991.1.1.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과 통일이전 이미 사회법전 제5권이 효력이 있었던 지역에 역에서 노동 및 사회보장을 위한 규정을 위하여 이 분담금 의무 징수의 비율에 따라 1993.1.1.까지 인하한다.
 - dd) 이 규정은 1993.12.31.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aa)항은 1990.2.21. 제정된 법정 의료보험에 있어 비경제적 약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의료 보험 조합의 부담으로 정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 1991.7.1.부터 효력이 없다.
- c) 통일이전 이미 본 법이 유효했었던 지역에서 행해진 급부에 대한 보

상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황이 이미 통일 이전 본 법이 유효했던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유지하게 될때까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행해진 급부와 대조하여 효력이 있는 보상규정에 따른다. 급부 이행자가 보험가입자를 진료할 의무는 없다; 급부 이행자는 통일이전 본법이 유효했던 지역에서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았을 보상의 급부 이행자는 통일이전 본법이 유효했던 지역에서 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았을 보상의 차감액을 보험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 제1문과 제2문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 악성질환의 치료가 절박한 경우,
 2.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질병의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 (2) 보험조합 의사의 진료를 보장하기위해 제72조를 적용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지방시설, 국영 및 공공 보건 시설 및 기업 내 보건소의 시설(외래진료소)과 함께 1995.12.31.까지 법에 의거 외래 진료소로 허가한다. 이들 설비에 의해 경제적으로 적절한 외래 진료가 불가능하다면 허가 위원회가 제1문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위원회는 지방관청과 협의하여 특히 개인진료소를 차린 의사의 지분을 고려하여 1문에 따른 허가 연장을 결정한다.
- (3) 응급실 의사 진료의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 의료 보험의 최고 협회와 의료 보험 지정 의사 연방 협회는 공동으로 1995.12.31.까지 제2항에 따른 시설을 계속 존립시키기 위하여 설립자 인수를 위한 신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의료 보험 최고 협회와 의료 보험 지정 의사 연방 협회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4) 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1995.12.31.까지 효력이 있다:
- a) 동독지역에서 의료 보험 지정 의사 협회의 정회원은
 1. 의료 보험 지정 의사와,
 2. 전문의나 위 제2항에 정한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구역의사(*개업의로서 지역을 담당하는 1차 진료의사)들이다.
 - b) 의료 보험 지정 의사 협회의 특별 회원은 위탁 의사와 전문의 교육과정에 있는 의사이다. 특별 회원은 표결권이 없다.

- c) 의료 보험 지정 의사 협회 기구에는 의료 보험 지정 의사와 제2항의 진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각각 절반비율로 대표한다. a)항 제 2번에 정한 의사는 60%까지 이 진료설비 의료관리자로 구성된다. 관리자는 2년 임기의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진료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사나 구역의사 중에서 산출된다. 이 선거는 시설 설립자가 감독한다.
- d) 보험지정 의사 협회가 공법상의 단체로서 행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민주적 조항에 따라 성립하고 사법상 조직된 잠정적 보험지정 의사 협회가 지방 감독 관청과 협의하여 늦어도 1991.6.30.까지 보험 조합 의사의 협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서베를린 보험지정 의사 협회의 관할은 지금까지 기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동베를린 지역에도 미친다.
- (5) 제83조는 의료보험 조합 단체가 보험지정 의사 협회와 협의하여 권한 있는 진료소나 그의 단체와 특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6) 제85조의 적용은 위 제2항에 따른 보험 지정 의사와 진료시설에 대한 총보상을 총액으로 할당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 (7) 제95조 적용에 있어서 본 규정의 제2항 제3문에 정한 요건은 아래의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 a) 본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에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전문의 허가를 얻은 의사,
 - b)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2년간 치과의료 행위를 한 치과 의사.
- (8) 제96조 적용에 있어 다음 사항이 효력이 있다 :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허가위원회는 1995.12.31.까지 세명의 의료보험조합대표와 세명의 의사대표로 구성된다. 의사대표는 각각 1인의 보험지정 의사와 제2항에 정한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보험지정 의사협회의 준회원이다.
- (9) 제98조 제2항 제12번은 1995년 12.31.까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이 규정은 의사가 그의 고정주소를 1990.1.1. 현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갖고 있으면서 1941년도 이전에 의사허가를 받은 경우 효력이 없다는 기준으로 1995.12.31.까지 준용한다.

(10) 제105조의 적용에서 그 외에 유효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유개업 허가는 자유개업의가 외래진료의사가 된다는 목적으로 장려된다. 제2항에 정한 진료소는 적정한 비율로 줄일 수 있다. 이 목적은 외래의사진료를 공동진료소로 하려는데 있다(공동진료소, 협동개업의등)

(11) 제124조부터 제126조는 치료법과 보조약을 제공하는 위 제2항에 정한 진료시설이 경제적 급부능력이 있는 경우 1993.12.31.까지 허가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1993.12.31.이후 본 진료시설의 허가는 경제적 지원과 치료법 및 보조수단과 함께 사적 급부지원자에 의하여 보장될 수 없다면 제124조와 제126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312 조

의료보험조합의 조직

(1) 해상 질병 보험 조합(제165조)과 연방 광부 조합 보험(제167조)및 통일이전 본법이 유효했던 전지역을 관할하는 보상 보험 조합(제168조)은 1991.1.1.부터 그의 관할에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포함한다.

(2) 제14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이 유효하다.

a)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1990.10.14. 현재 존치하고 있는 구역에는 1991.1.1. 지역 의료 보험 조합을 설립한다. 주정부는 법규정을 통해 구역경계와 달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할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서베를린 지역 의료 보험 조합의 관할에는 1991.1.1.부터 지금까지 본법이 효력이 없었던 동베를린 지역도 포함한다.

b) 감독관청은 잠정적인 규약을 정하고 의료 보험 조합의 명칭과 경리를 위한 책임자를 임용한다. 이 임용은 우선 1차 사회 보험 선거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기까지의 기간을 임기로 한다.

- c) 지역 의료 보험 조합의 설립과 함께 통일 조약 제3관에 언급된 지역의 의료 보험 조합에 관련된 사회 보험 업무는 다른 의료 보험 조합이 관할을 갖지 않는 경우 지역 의료 보험 조합에 이관된다. 법정 의료 보험이 보험 가입자에게 1991.1.1. 이전에 행한 법정 의료 보험의 급부를 승낙한 경우 관할 의료보험조합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시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3) 통일조약 제3조에 정한 지역에서 기업의료보험조합을 창립 또는 합병 설립시 제148조 2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1991.12.31.까지 감독관청에 신청할 경우 제147조 제1항 제3번과 제148조 제1항 제3문은 효력이 없다. 감독 관청은 신청서 접수후 6개월 이내에 조정 기간을 확정 해야 한다.
- (4) 제241조 제2문에 정해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게 되는 회원에게 분담금이 적용되면 이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의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47조 제2항의 사용자 비용 부담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제157조 제2항 제3번과 제158조 제1항 제3문은 제158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결과를 1991.12.31.까지 감독 관청에 신청할 경우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동업조합의료 보험의 창립과 확장시엔 효력이 없다. 감독 관청은 신청서 접수 6개월 이내에 조정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
- (6)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연방 광부 보험 조합과 해상 질병 보험 조합의 관할은 1991.1.1.이전에 이미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도 관할에 속했다면 영역이면 연방 광부 보험 조합이나 해상 질병 보험 조합에 최종 보험가입한 연금자와 연금신청자에게도 지급한다.
- (7) 1991.1.1. 노동관계에 있는 보험 의무 근로자에게는 선택한 의료보험 회사와의 계약이 1991.1.1.부터 시작되고, 1991.1.15.까지 선거권을 행사했으며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했을 때에는 제183조 제5항 제1문이 적용된다.
- (8) 제202조의 적용에 있어 진료비 지급처가 1991.6.30.까지 진료비수령

자를 조사하고 관할 의료 보험 조합에 수령자와 진료비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313 조

자금공급

- (1)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적 관계가 그밖의 연방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동화될 때까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을 관할하는 있는 의료 보험 조합이 제220조에 정한 규정에 보충하여 그 예산상 이 지역에 보험 실시를 위한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명시해야 한다. 이는 회계 결산과 업무결산 및 통계에도 효력이 있다. 의료 보험 조합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몫이 되는 지출재정을 위해 이 지역의 보험실시를 통한 수입만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 분담률은 적절히 확정된다. 1991.12.31.까지의 분담률은 12.8%이며, 이 분담률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본점을 갖는 의료 보험 조합에도 적용된다.
- (2) 제223조 제3항, 제226조 제2항, 제232조 제1항, 제235조 제3항, 제240조 제4항의 분담금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확정된 수입액과 분담금 산정 한계가 적용된다. 제234조 제1항을 적용할때에는 1992.1.1.부터 제1문이 유효하다.
- (3) 제236조 제1항과 달리 연방 교육 촉진법에 따라 월정 수요로 확정된 금액의 30분의 1은 분담금 의무있는 수입으로 본다.
- (4) 제241조를 적용하는데에는 1991.12.31.까지 일률적으로 12.8%의 일반 분담금률이 적용된다.
- (5) 제248조 제2항을 적용하는데에는 동독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서독의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동등하다.
- (6) 제249조 제2항 제1문과 제3항을 적용하는데에는 610마르크 대신에 사회법전 제4권 제18조에 따라 다른 지역의 현행 월정금액의 7분의 1인 610마르크 상당 수준으로 지역의 현행 월정금액의 7분의 1의 금

- 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통일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7) 제250조 제1항 제1번 및 제255조와는 달리 1991년도의 보험 의무 의료 보험 분담금은 농촌 의료 보험 조합을 제외하고 사무원을 위한 연방 보험기관에 대한 연금보험자에 의해 총액으로 상환된다. 총분담금은 총연금액의 12.8%이다.
- (8) 제247조, 제250조 제1항 제2번과 제256조는 1992.1.1.에 효력을 발생한다.
- (9) 제260조부터 제263조까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a) 의료 보험 조합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보험실시 업무 범위내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1991년도의 경영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보다 높은 액수를 대부받을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b) 제261조와 제262조는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본점을 갖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1994.12.31.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관할이 미치는 다른 의료 보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존속되었을 보험 의무있는 연금자와는 분리하여 실시된다.

제 314 조 벌금규정

제306조 제1문 제5번은 본법 제4권의 제2a조부터 제28r조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아래 원칙을 적용한다:

“5. 사회보험분담금 지불의무에 대한 규정위반”

2. 1985.12.31. 제정 공포되고, 1988.12.20. 법 제23조를 최종 개정한 병원투자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제4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iv 절
독일통일을 위한 경과 규정

제 21 조
과도기

- (1) 본 법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2항에 정한 규정은 예외로하고 1991.1.1.부터 적용한다. 이는 통일 조약의 부록 I 제Ⅷ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5번과 제6번에 다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본법의 제정이유를 발포한 법규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독일통일시까지 동독의 현행 병원투자법은 1990.12.31.까지 계속 효력이 있다.
- (2) 제9조와 제17조 제5항 제1문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4.1.1.효력을 발생한다. 1993.12.31.까지 제22조 부터 제26조까지는 이 지역에서 유효하다.

제 22 조
개별촉진

- (1) 주는 병원설립자의 추진자금 신청을 아래 조건으로 허가한다 :
1. 병원경영에 필요한 기초자산의 1차장비를 포함한 병원설비,
 2. 병원경영에 위해하지 않는 증설비, 내부시설 변경시의 개수비용 및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임대료,
 3. 병원허가이전 병원설립 계획상에 수익가능한 투자를 위해 차용한 금전대차,
 4. 기본 자산이 병원주의 자기자산이고 본 법에 따른 수익발생시에 발생하는 기초 자산의 상각,
 5. 병원폐쇄의 완화,
 6. 병원 또는 병원의 분과를 다른 업무로 전환, 특히 간호설비나 병원과 분리하여 독자적이고 조직적이며 경제적인 간호병동으로의 전환, 장

려금은 전부 또는 일부 병원주의 동의를 얻어 확정 금액으로 지원한다; 이 확정금액은 추가비용을 토대로 확정된다.

- (2) 촉진장려금은 투자상 보충수요를 포함한 수익가능하고 기업경영원칙을 고려하여 필요한 투자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 23 조

총액촉진

- (1) 아래의 항목들은 연간고정금액으로 병원주가 신청하여 주가 지급한다;

1. 병원설비의 수선과 정돈,
2. 평균3년 이상의 사용기간을 갖는 설치품의 제조달, 보충, 이용 및 공동사용,
3. 개별품의 구입비나 제조비가 소득세를 제외하고 10만마르크가 넘지 않는다면 제22조 제1항 제1문 제1번에 따른 경미한 건축처분. 병원설립자는 연간총액으로 1문에 따른 목적에 합당한 기부자산내에서 자유로 관리할 수 있다. 병원설립자가 이 총액으로 의료기기의 구입 사용 및 공동사용을 위해 지불하는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사전동의를 필요하다; 제10조는 변동이 없다.

- (2) 제1항에 따른 촉진금은 제8조 제12항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촉진능력이 있고 수요에 의하여 필요하며 인정된 병상수를 위하여 연간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 | |
|------------------------------|----------|
| 1. 기본요양(지역병원과 시립병원) | 8000마르크 |
| 2. 일반요양(구역병원과 광역업무를 갖는 구역병원) | 10000마르크 |
| 3. 중점요양(지역병원) | 15000마르크 |
| 4. 중앙요양(전문병원) | 15000마르크 |

기부금이 병원설계에서 정한 업무를 고려하여 건축 상태나 설비 상태를 원인으로 하거나 병원의 진료 능력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1문과 달리 다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제22조 제2항은 적절히 효력이 있다, 총금액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3) 자유 공동이용의 사립병원은 설립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규정의 목적에 상응 제2항 제1문에 따른 한 병원집단에 예측된다.

제 24 조

임시 병원설립자 명단

- (1) 해당지역에 본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제6조에 따라 병원설계와 투자 프로그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8조의 적용대신 관할관청이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기부조건을 제시한다.
- (2) 1990.6.30. 현재 개업한 모든 공공병원, 자유공동사용 병원(*프라이게마인 누치게 병원은 사립병원으로 루돌푸슈타이너의 철학을 추종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임)과 시설 및 그밖의 의료병원은 국민에게 충분하고 상설적인 요양을 제공하는 모든 병원으로서 설립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 병원 설립 명단에 등재해야 한다.
- (3) 병원 설립 기부자 명단을 작성할 때 의료 보험 조합 단체, 보상 의료 보험 단체, 사설 의료 보험단체의 위원회 및 병원협회나 병원 경영주 협회 등은 공동으로 일치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된 병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25 조

비권장 병원

공적으로 투자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병원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권장된 병원으로서 사회급부 설립자와 기타 다른 공법적인 투자자에 의하여 높은 후원 자금은 지원받지 않는다.

제 26 조

요양원과 재활원

- (1) 1990.6.30. 현재 개업한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요양원과

재활원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 요양이나 재활을 위하여 입원가료 또는 부분 입원가료 그리고 그 후속치료로서 국민의 지불능력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제22조와 제23조는 적절히 적용된다.

- (2) 제23조에 정한 연간총액은 침상 숫자와 관계없이 제22조 제2항을 고려하여 요양위탁과 단독시설의 건축상태 및 설비상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라 기부장려된 요양원이나 재활원은 설립자의 신청으로 지방의료 보험 조합 단체 및 보상 의료 보험 단체와 협의하고 또 독일 연금 보험 설립자 상의하여 기부 명부를 작성된다; 제8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효력이 있다.

b) 제27조 앞에 절표제인 “제5절 기타규정”을 삽입한다.

3. 1985.8.21. 제정되고, 1989.11.21. 최종 개정된 연방 간호 정관 규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a) 제19조 다음 제19a조를 신설한다:

제 19a 조

독일통일에 의한 과도규정

- (1) 계약 당사자로서 의료 보험 조합은 1991년 전반기에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개별 병원 설립자와 1991.1.1.부터 1991.12.31.까지의 시기에 제16조에 따른 병원예산과 진료수가를 합의한다. 본 규정 부록 I과 II의 서식에 따른 비용입증과 진료증명에는 1991년 실시 될 진료수가 협의를 위해 당사자는 법규정을 통해 관할 연방 장관이 발령한 단순 비용과 진료숫가증명을 사용할 수 있다.
- (2) 진료수가 협이가 1991.5.31.까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병원재정투자법 제18a조에 정한 중재소가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체없이 합의될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 결정한다.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5.31.현재 아직 중재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관할주무 관청이 결정한다.

- (3) 1991년도의 진료수가 아직 효과적으로 합의 및 확정되지 않은 경우 1990.12. 동독 의료 보험으로부터 이들 병원에 지급될 예산액 수준으로 이들 병원은 의료 보험 조합으로부터 월정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일부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의료 보험 조합의 할당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때는 제2항이 기준이 된다. b) 제13조 제1항 제2문 제5번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4.1.1. 효력을 발생한다.
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0-1로 공고되고, 1990.6.26. 법 제9조를 최종 개정한 제국(공화국)보험령 제2권은 1991.1.1.에 효력을 발생한다.
5. 1972.8.10. 제정되고, 1988.12.20. 법 제6조를 개정한 법정 의료 보험법의 확대 발전을 위한 법은 1991.1.1.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 1988.12.20. 제정되고, 1989.10.6. 법 제8조를 개정한 농업종사자 의료 보험에 관한 제2차 법률 - 1989.10.6. 제8조를 개정 - 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제2조 제1항 제1번과 달리 생존 기반의 산정을 위한 척도는 농촌 의료 보험의 가치 관리로 정해진다. 정관 규정이 발령될 때까지 올덴부르크-브레멘에 있는 농촌양로보험조합의 확정최저액이 기준이 된다.
 - b) 제2조 제1항 제2번 b)항에서는 모든 명예퇴직수당지급이 고려된다.
 - c) 제2조 제1항 제5번의 60개월은 12개월로 한다.
 - d) 제2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공동기업 특성의 조건은 1990.7.20. 제정된 농촌 정착법에 의거 늦어도 1992. 1.1. 이래 허용된 권리 형태를 갖는 기업내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권리형태의 법에 정한 변경이 있기까지 농업기업(집단농장)에 사전조합원 가입시키는 자영의 시기

로 본다.

- e) 제3조 제2항에 의한 보험 의무의 우선권은 제2조 제1항 제5번에 따라 보험 가입의 10분의 9가 1991.1.1.부터 계산해 5년간 농촌 의료 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이들에게도 부여된다.
- f) 제17조에는 다음 내용이 보충된다:
 - aa) 포츠담에 본점을 갖는 공동 농촌 의료 보험 조합이 1991.1.1.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설립된다. 조약 제1조 제1항에 정한 지역의 주정부의 경제적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각주법에 의거해 농촌 동업 보험 조합에 농촌 의료 보험 조합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기본법이 지금까지 미치지 못했던 베를린일부와 브란덴부르크 지방에도 공동 농촌 의료 보험 조합의 설립이 고려된다. 분리 예산편성과 분담금 확정에 대한 제313조 제1항의 과도규정이 실효되면 통일이전 기본법이 효력이 있었던 서베를린에도 적용된다.
 - bb) 위 aa)항에 따라 설립한 농촌의료보험조합이 그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하노버의 농촌 의료 보험 조합이 보험업무를 관장한다. 이를 위해 하노버 보험 조합은 통일이전 기본법의 효력이 있었던 지역에 본점을 갖는 다른 농촌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필요한 인적 지원을 받는다. 그밖에 하노버보험조합은 노동 및 사회보장 연방 장관과 협의하여 농촌 의료 보험 조합의 회계를 위해 사무원을 채용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 cc) 원예를 위한 의료 보험 조합은 1991.1.1.부터 그의 관할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미친다. 이 보험조합은 합병지역에 보험 실시를 위한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을 분리해 증명해야 한다. 합병지역에서 생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지역의 보험실시에서 생긴 수입만을 사용할 수 있다.
- g) 제39조 제1항 제1문 제2번과 제3번, 제45조 제1항 제1번과 제2번 및 제50조는 1990.1.1.부터 적용한다; 그밖의 규정은 1991.1.1.부터 적용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0-25로 공고되고 1988.12.20.법 제18조를 개정한 보험 조합 지정 의사 허가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제25조, 제31조 제9항과 제34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a) 제3조 제2항 b)에 정한 요건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법이 효력을 발생할 시점에 전문의 허가를 받은 의사에겐 적용치 않는다.
- b) 제25조와 제31조 제9항은 1995.12.31.까지 합병지역에 1990.1.1.현재 고정주소를 갖고 있는 의사중 1941년이전에 취득한 의사자격이나 의사허가엔 적용되지 아니한다.
- c) 제34조에 따른 허가 위원회는 1995.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세명의 의료 보험 조합 대표와 세명의 의사대표로 구성된다. 의사대표는 보험 조합 의사와 제311조 제2항에 따른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보험 조합 의사 협회의 준회원 각각 1인씩이다.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0-26으로 공고되고 1988.12.20. 법 제19조를 최종 개정한 보험 조합 지정 치과의사 허가를 위한 규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 제25조, 제31조 제9항과 제34조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a) 제3조 제2항 b)에 정한 요건은 본법의 효력발생전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이미 2년간 치과의사를 개업한 의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b) 제25조와 제31조 제9항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0.1.1.현재 고정주소를 갖고 있는 치과의사중 1941년 이전에 취득한 의사자격이나 의사허가엔 1995.12.31.까지 효력이 없다.
- c) 제34조에 따른 허가위원회는 1995.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정한 지역에서 3명의 의료 보험 조합 대표와 3명의 치과의사 대표로 구성된다. 치과의사 대표는 보험 조합 지정의사와 제311조 제2항에 따른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및 보험 조합 지정 치과의사 협회의 준회원 각각 1인씩으로 구성된다.

4. 1986.10.28. 제정되고, 1990.7.6. 개정된 조산원 수수료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약 제3조에 언급한 지역에서 조산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표(제2조 제1항의 부록)에 정한 금액의 45%이다.
5. 1987.3.24. 공고된 병원회계장부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본 규정은 상법 제3권 제ii절의 의미상 자본회사가 아닌 병원에 대해서 1993.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문과 달리 본 규정 제8조는 명시된 지역에서 1994.1.1.에 효력을 발생한다.
6. 1985.12.12. 제정된 경계구획령 제4조는 1994.1.1.에 효력을 발생한다.
7. 1988.6.10. 제정 공고된 의사의 보수규정은 다음에 따른다 :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행한 진료의 보수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의 45%이다. 제5조 제1항 제4문도 적절히 적용된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이전에 행한 진료는 지금까지의 현행법에 따라 사례한다.
8. 1987.10.22. 제정된 치과의사의 보수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행한 진료의 보수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의 45%이다. 제5조 제1항 제4문도 적절히 유효하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이전에 행한 진료는 지금까지의 현행법에 따라 사례한다.
9. 의사 보수 규정과 치과의사 보수 규정은 연방법에 다른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제2절 제1번 제311조 제2항 제1문에 정한 진료소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료에 대한 보수에도 적용한다.
10. 노동 및 사회보장 연방장관은 연방 상원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법규정으로써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결정한 보수액을 의사보수규정과 치과의사보수규정 및 조산원보수규정에 따라 경제적 발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화시킬 권한이 있다. 여기서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을 위해 결정한 수입액은 이미 통일이전 기본법이 효력이 있었던 지역의 수입액과 관련지어 고려할 수 있다.
11. 제2번, 제3번, 제4번은 1991.1.1. 효력을 발생한다.

업무영역 H : 법적연금보험

제 i 절

아래의 사항은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 효력발생에서 제외된다 :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0-1로 공고되고, 1989.12.18. 법 제6조를 최종 개정한 공화국 보험령 제4권,
2. 1차부터 2차까지의 측령규정 새김표 A, 연방법, 목록 820-1-1-1에서 5까지, 82832-37-6에서 21까지,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1-1로 공고되고 1989.12.18. 법 제7조에 의하여 제85조를 최종 개정한 계약 공무원 보험법,
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1-2로 공고되고 1989.12.22. 법 제1조 제6항을 최종 개정한 계약 공무원 보험 신규법,
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2-1로 공고되고, 1989.12.18. 법 제9조를 통하여 제85조를 최종 개정한 공화국 광부 조합법,
6. 연방 관보 제Ⅲ부, 목록 822-1-1로 공고된 별채규정
7. 1968. 5.24. 제정된 동등 지위 규정,
8.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88-8로 공고되고, 1989.12.22. 법 제1조 제7항을 최종 개정한 광부 조합 연금 보험에 관한 신규법,
9.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4로 공고되고, 1989.12.22. 법 제1조 제5항을 최종 개정한 노동자 연금 보험에 관한 신규법,
10. 연방관보 제Ⅱ부, 목록 8232-4-1로 공고되고, 1981. 7.29. 개정한 연방 보험-퇴직규정-시행령
1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5로 공고되고, 1970.12.18. 최종 개정한 공화국 보험령 제1255조와 계약 공무원 보험법 제32조 적용절차에 관한 시행령
1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7-1로 공고된 근로자와 계약 공무원의 연금 보험과 광부 조합의 연금 보험에 있어서 연금 산정을 위한 금액 변경에 관한 제1차-7차까지의 규정,

13. 근로자와 계약 공무원의 연금 보험과 광부 조합의 연금 보험에 있어서 연금 산정을 위한 금액 변경에 관한 제8차내지 13차까지의 규정, 1971부터 1984까지의 연금 보험 금액 규정, 1985부터 1990까지의 사회 보험과 수입령, 소재물 증명 A, 연방법 목록 8232-7-8에서 33까지
1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9로 공고된 공화국 보험령 제1295조와 계약 공무원 보험법 제72조에 따른 보상시의 자본 가치 산정에 관한 규정,
1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10-1부터 8232-10-6으로 공고된 제1차내지 6차의 연금 조정법,
16. 제7차부터 제21차까지의 연금 조정법과 1982부터 1990까지의 연금 조정법, 소재증명 A, 연방법, 목록 8232-10-7에서 8232-10-30까지,
17.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4-2-1로 공고되고 1989.12.18. 최종 개정된 외국인 연금법,
18.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4-2-1로 공고되고 1978. 4.10. 최종 개정된 법정 연금 보험으로 사회 보장 제도 설치와 제도 승인에 관한 시행령
19.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4-3로 공고되고 1990.5.18. 법 제4조를 최종 개정된 외국인 연금 및 외국 연금 신규정법,
20.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50-1로 공고되고 1988.12.20. 법 제12조를 개정된 수공업자 보험법,
21. GAL-분담금령 - 새김표 A, 목록 8251-1-1-1부터 II까지 -
2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51-3로 공고되고, 1969. 7.29. 법 제3조를 최종 개정된 농업 경영자 노령보조에 관한 법의 개정법,
2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6-1로 공고된 사회 보험 및 실업 보험에 있어 전쟁 규정에 의해 중단된 기간 경과에 관한 법,
2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6-13로 공고된 효과법(Auswirkungsgesetz)
2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6-16로 공고된 외국에서 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

26.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6-17로 공고된 외국인 연금 신규정법과 외국 연금 신규정법 제6항목 제21조 시행령,
27.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6-18로 공고된 외국인 연금 사후 보험령,
28. 1965. 6. 9. 제정된 연금 보험 개정법
29. 1966.12.23. 제정된 제2차 연금 보험 개정법
30. 1975.12.22. 제정된 법정 연금 보험 가입자에게 연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31. 1977. 8. 5. 제정된 법정 연금 보험의 가입자에게 연금 정보 제공에 관한 제2차 규정,
32. 1986. 1. 2. 제정된 자녀 양육 시기 보상 규정,
33. 1987.12.18. 제정된 자녀 양육 시기 보상 규정,
34. 1972.10.16. 제정되고 1989.12.18. 법 제25조를 최종 개정한 연금 개혁법,
35. 1976. 6.21. 제정되고 1986. 7.16. 최종 개정한 연금 보험 분담금 납령
36. 1985. 9.14. 제정된 법정 연금 보험의 재정 기반 강화법,
37. 1965. 9.14. 공고되고 1990. 5.28. 법 제2조를 최종 개정한 농업 경영자 노령 보조법,
38. 1965. 9.14. 공고되고 1985.12.20. 법 제2조를 최종 개정한 농업 경영자 노령 보조법 개정 입법 제2조,
39. 1969. 8.13. 개정되고 1969. 7.29. 법 제3조를 개정한 농업 경영자 노령 보조법 변경 및 보충을 위한 제3차 입법,
40. 1969. 7.29. 제정된 농업 경영자 노령 보조법 개정 및 보충을 위한 제4차 입법,
41. 1972. 7.26. 제정된 농업 경영자 노령 보조법 개정 및 보충을 위한 제6차 입법,
42. 1973.12.19. 제정된 GAL 제7차 개정,
43. 1976. 5.13. 제정된 상업 대표자 보상 및 농업 경영자와 임업 경영자의 상업 특성에 관한 법,
44. 1986. 5.21. 제정된 GAL-분담금 보조령,

45. 1989. 2.21. 제정되고, 1989.12.18. 법 제77조를 개정된 농촌 고용 촉진법,
 46. 1989. 6.14. 제정된 휴업령,
 47. 동서독사이에 통화 -, 경제 -, 사회통합을 위한 1990.5.18. 조약법 제23조와 제24조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보충된다 :

1.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보험을 실시하기 위해 1991.1.1.부터 아래의 특별 규정이 효력이 있다.

“제 1 조

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연금 보험 설립자의 과도적 보험 회사의 지출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보험을 실시하기 위한 분담금 수입비율에 따라 연금 보험 회사가 부담한다. 광부 조합 연금 보험의 몫이 되는 비용은 연방 광부 조합이 부담한다.

제 2 조

사무직 종사자를 위한 연방 보험 협회, 연방 광부 조합, 연방 철도 보험 협회, 저축은행 및 베를린 지방 보험 협회 등의 예산에 있어서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보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수입과 지출은 분리하여 제시한다. 이는 회계 결산과 및 통계에도 효력이 있다.

제 3 조

재활을 위한 진료 비용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연금 지출의

5%를 넘지 못한다.

제 4 조

- (1) 연방정부는 요양 수당, 맹인 수당과 특별 요양 수당을 위해 1991년도에 연금 보험 회사에 발생한 경비를 보상한다. 그밖에 연방 정부는 전쟁 상해 연금, 사회 보조금과 기타의 특별 진료비를 위해 연금 보험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 연방 정부는 또 자녀 수당이 자녀 보호금과 부대하여 지불되지 않는 한 자녀 할증금 지불을 위해 자녀 양육비 수준으로 발생한 경비도 보상한다; 여기서 총체 보상이 예상될 수 있다. 노동 및 사회 보장 연방 장관은 연방 재무 장관과 협의하여 연방 상원 위원회 동의를 얻어 법규정으로 보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이 있다.

제 5 조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노동자와 계약 공무원의 연금 보험 회사 경비 조달을 위해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보험 실행에서 조달된 수입만을 사용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1991년도에 이를 위해 연금 지출의 19.8%를 보조한다. 이 보조금은 다음년도부터 1921년 이전 출생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그밖의 노동자와 계약 공무원 연금 보험 지출을 위한 보조금을 연금 지출에 비례하여 개정한다.

제 6 조

노동자와 계약 공무원의 연금 보험 회사는 이들의 묶이된 분담금 수입액의 비율에 따라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보험 실행을 위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재정연합회).

제 7 조

연방 정부는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노동자와 계약 공무원 연금 보험 회사가 언제든지 지불 능력을 갖을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법 규정을 통해 무이자 경영 자금 대출을 보장한다.

제 8 조

연방 보험 관청은 제1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따른 금액을 분담금 수입에 따라 할당하며 가불금을 확정하고 결산을 한다. 독일 연방 우체국에 의해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지속적 자금 지급시 연방 보험청이 가불금 확정을 관장한다. 연금 보험 회사는 자금 청구후 2주일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1990.12.31.까지 독일 통일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2. 1987.12. 7.제정된 보험번호의 통일과 위임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따른다:

a) 부록I은 아래와같이 개정된다:

aa) “하노바주보험관청 10” 앞에 다음의 용어를 덧붙인다:

| | |
|-------------------|-----|
|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주 보험관청 | 02 |
| 튜링겐주 보험관청 | 03 |
| 브란덴부르크 보험관청 | 04 |
| 작센-안할트 보험관청 | 08 |
| 작센주 보험관청 | 09” |

bb) “베를린, 브레멘,” 대신 “베를린주, 브레멘주”로 한다.

cc) 지역 “82” 다음에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튜링겐, 작센”과 지역번호 “89”를 덧붙인다.

- b) 연금 보험 회사로서 연방 설립자, 주연금 보험 관청 베를린, 연금 보험사 설립자로서 사회보장보험 설립자등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정한 지역번호의 사용과 보험 번호 배분을 1990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
3. 1965. 9.14. 공고되고 1985.12.20. 법 제2조를 최종 개정한 농업 경영자 노령보조금 신규법 제2항목 제12조 다음에 아래 조항을 신설한다:

“제 12a 조

통일이전 기본법이 효력이 있었던 서베를린 지역의 농업 경영자 노령 보조금법 시행과 함께 다른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하노버 농업 협동 조합에 설치된 고령자 농업 보험 조합이 위임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1989.12.18. 제정되고 1989.12.22. 개정된 연금 개정법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 제85조 2항부터 6항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제1항목 제3조 제1문 제2번, 제5조 제1항 제1문 제1번과 제2번 및 제2문, 제6조 제1항 제1번,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 제2항 제1문 제1번과 제2번 및 제2문과 제3문, 제146조, 제149조, 제166조 제1번, 제170조 제1항 제1번,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186조, 제192조 등은 통일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c) 제1항목 제166조 제1번의 적용에 따른 통일 조약 제3종 언급된 지역에서의 분담 의무 수입은 1991.12.31.까지 이 지역 기준 수익의 70%이다.

d) 제1항목의 다음 조항들은 1991.1.1.부터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항과 제2항,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 제1항, 제21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 제26조 제2항과 제3항, 제27조 제1항 제1문 제1번부터 제3번까지, 제5번과 제6번 제2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1항 제1문 제1번, 제3번 제5번과 제2문 및 제2항 제1문, 제3항, 제164조, 제215조, 제235조, 제301조 제1항;

aa) 1991.12.31.까지 위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과 같이 문구 수정을 한다).

1. “직업불능”이나 “생업불능”의 개념대신에 “근무불능”이란 개념으로,
2. “경미한 생계능력에 기인한 연금” 개념대신에 “폐질연금”으로
3. “15년간의 대기 기간” 대신에 “15년간의 분담금 기간”으로,
4. “일반 대기 기간” 대신에 “5년의 의무분담 기간”으로,
5. “상해연금”의 개념 대신에 “사고 연금”으로,
6. “자녀 양육 보조금”이나 “자녀 특별 수당” 대신에 “자녀 부가금”으로 한다.

사전에 질병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경과금은 질병수당 수준으로 지급된다.

퇴직금은 산정기간 만료후 1991.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연금과 같은 백분률로 정기적으로 인상된다.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교통비는 1991.12.31.까지 가족 귀향비나 친척 방문 여행비만을 부담한다.

bb)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통일당시 유효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e) 위 b)항과 d)항에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을 위해 결정한 가치가 분담금 산정한계와 수익금액의 기준이 된다.

- f) 제1항목 제125조부터 제145조까지는 1991. 1. 1.부터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기준으로 적용된다.
- aa)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1991. 1. 1.까지 각 주에 하나씩 노동자 연금보험 설립자로서 주 보험청을 설치한다. 주에서는 주 보험청의 소재지와 정관을 정한다.
- bb) 계약 공무원 연방 보험청, 연방 광부 보험 조합, 연방 철도 보험 조합과 해상 보험 기금의 관할은 1991. 1. 1.부터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도 포함한다. 연방 철도 보험 조합은 독일 공화국 철도(동독)의 노동자로서 근무한 보험 가입자도 포함한다 : 연방 철도 보험 조합의 종사자는 또한 독일 공화국 철도 근무자이다. 베를린주 주 보험회사의 관할은 1991. 1. 1.부터 동베를린지역도 포함한다. 연방 광부 보험 회사는 1990.12.31. 광산에서 근무하거나 이와 유사한 노동을 하며 보험금을 지불 해온 광산 근로자도 포함한다.
- cc)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 당시 유효한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 g) 제1항목 제168조 제1항 제1번과 제2번, 제2항과 제3항, 제169조 제3번은 통일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 aa) 610마르크와 750마르크의 금액대신에 사회법전 제4권 제18조에 따라 협약지정 지역 이외 지역의 유효 월정수익액인 610마르크와 750마르크와 동일한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효력이 있는 월정수익액의 7분의 1의 비율의 금액으로 한다.
- bb) 제168조 제1항 제2번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수익액의 80%” 대신에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기준이 되는 수익액의 70%”로 한다.
- cc)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통일 당시 유효한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 h) 제80조, 제81조는 1992. 1. 1.부터 적용한다.
- i) 제85조 제7항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 aa) 제1항목 제287조 제4항과 제310조는 이관되지 않는다.
 - bb) 제1항목 제69조 제2항, 제160조, 제275조와 제292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2. 1. 1.부터 적용한다.
 - cc)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통일 당시 유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독일 무대 연극 후원 협회의 규약과 1937.10.27. 제정된 독일 연극장 요금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이 규정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 b) 1990.12.31. 이후 시기만 계승권이 성립된다.
 - c) 관리 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효력 범위 확장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 d)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수입액이 사회법전 제4권 제18 조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유효한 수입액과 비례하여 독자적 분담금지급을 보장한다; 정관을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독일 예술오케스트라 후원 협회의 정관과 함께 1938. 3.30. 제정되고 1993. 8. 1.의 요금규정에 의거해 개정된 독일 예술오케스트라 요금 규정 제1조와 제20조는 위 2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1980. 3.11. 제정되고 1985.12.20. 최종 개정된 후원조정과 보상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4-2로 공고된 사건후보험강제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6. 1978. 4.25.제정된 연금지급을 위해 사회보험회사에 의해 독일연방우국에 지출할 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7.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11로 공고되고 1989.12.18. 법 제85조 제6항을 최종 개정한 보험 문서령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8. 1972.12. 4. 제정되고 1976. 6.21. 규정 제10조를 최종 개정한 기본법 효력 범위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계약 공무원의 연금 보험의 의무 분담금 지불에 대한 규정령 1992. 1. 1부터 적용한다.
 9. 1974.3.19. 제정되고 1983.3.25. 개정된 연금 보험 총 분담금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도 아래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나 주거지를 갖고 법정의무를 근거로 종사하는 자에게 1991.12.31.까지 분담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기준이 되는 수입액이 토대가 된다.
- b)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통일시 유효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업무영역 I : 법정사고보험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의 효력 발생에서 다음 조항은 제외된다: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2-12로 공고된 법정 사고 보험에 있어서 급부금 지급 임시법규,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1-14로 공고된 법정 사고 보험에 있어서 제 2차 급부금 지급 임시법규,
3. 1979.11.16. 제정된 사고 보험 적용 규정,
4. 1980.10.27. 제정된 사고 보험 적용 규정령,
5. 1983. 5. 3. 제정된 사고 보험적용 규정령,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0-1로 공고되고 1990. 6.26. 법 제9조를 최종 개정한 공과국 보험령 제3권, 제5권 및 제6권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사고보험업무에 대한 제537조, 제636조부터 제642조까지 기업과 타인의 책임에 관한 제849조, 제772조, 제773조 제 895조의 벌금 규정, 보험회사 상호간 및 다른 보험의무자와의 관계에 관한 제

1501조부터 제1543e조까지, 제1545조부터 제1548조까지, 제1552조에서 제1587조까지, 제1735조부터 제1772조까지 등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b) 제556조, 제557조 제3항 제2문부터 제4문까지를 제외한 제558조, 제559조부터 제569b조까지, 제779a조부터 제779c조까지, 의료상 직업추진 및 보충 급부에 관한 제779d조 제2항과 제619조부터 제631조까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 (1) 노동자의 상해 수당(제561조 1항)은 작업중 사고아닌 질병 수당 청구 금액 수준으로 지급된다.
- (2) 경과 수당(제568조, 제568a조)은 제1항의 상해 수당의 백분율로 지급 된다.
- (3) 상해 수당이나 경과 수당에 적합하고 통일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현행법에 따라 인정된 급부가 경과조치에 따른 급부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액수로 계속 지급된다.
- (4) 위 규정은 1991.1.1.부터 적용한다.

c) 제538조, 제643조부터 제704조까지, 제790조부터 제798조까지, 제850조부터 제862조까지, 제766조부터 제771조까지의 규정, 제831조부터 제833조까지, 제892조부터 제894조까지, 보험회사 설립자와 해당규정 제978조와 제1147조 및 보험 회사 설립자의 관할에 관한 제776조부터 제779조까지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

- (1) 지금까지 기본법의 총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관할 되어온 보험회사 설립자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도 관할한다.
- (2)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다 :
 - 함부르크 건축 근로자 조합은 메클렌부르크-포폼메른지방을 관할한다.
 - 하노버 건축 근로자 조합은 브란덴부르크 지방과 작센안할트 및 이제까지 기본법이 효력이 없었던 동베를린지역을 관할한다.
 - 프랑크푸르트 건축 근로자 조합은 투링겐 지방을 관할한다.

- 바이에른 건축 근로자 조합은 작센지방을 관할한다.
 - 독일북서강철 및 금속 근로자조합은 맥클렌브르크-포폼메른, 브란덴부르크, 동베르린을 관할한다.
 - 기계공업과 소규모 금속 산업 종사자 조합은 작센안할트 지방과 쾰니츠구역을 제외한 작센지방을 관할한다.
 - 남부 독일강철 및 금속 근로자 조합은 쾰니츠 구역을 제외한 작센지방을 관할한다.
- (3)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과 지금까지 기본법이 효력이 있었던 서베를린지역엔 포츠담에 본점을 갖는 공동 농업 근로자 조합을 결성한다.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지역의 주정부는 경제적 수행능력을 고려해 주법을 통해 하나씩,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지방과 베를린 지역에는 공동으로 하나의 농업근로자 조합을 결성할 권한을 갖는다.
- (4) 베를린 독자 사고 보험은 지금까지 기본법의 효력이 없었던 동베를린 지역도 관할한다.
- (5) 제1항부터 4항까지 정한 보험 회사 설립자의 관할은 이제까지 기본법의 효력 범위 내에서 유효한 규정에 따른다. 기계공업과 소규모 금속 산업 근로자 조합에 관련된 이들 동업조합은 야금공장과 압연 공장 근로자 조합의 관할 범위에 속할 수 있는 기업에도 관할이 있다. 남독 철강 및 금속 종사자 조합에 관련된 남독 귀금속 비귀금속 공업 근로자 조합의 관할 범위에 속할 수 있는 기업에도 관할이 있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보험 보전을 하는 1973. 4.11. 제정된 보험보전 확대에 관한 법령 의미상의 사고에 대하여 연방(사고 보험을 위한 연방 집행관서)이 관할한다.
- (6)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그 본점을 갖는 기업이 연합할 경우 1991.12.31.까지 등재된 명칭은 지체없이 1992. 1. 1.까지 효력을 갖도록 사고 보험회사 설립자 명칭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오류가 확실하지 않거나, 증거할 수 없이 대단한 실익을 초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보의 경우에도 등재 결정은 제출되어야 한다.

(7) 제3항에 의하여 창립된 농업 근로자 조합이 그 업무를 개시할 시 기까지 하노버 농업 근로자 조합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를 위해 이 조합은 원예 협동 조합을 제외한 다른 농업 협동 조합으로부터 보험회사의 단위 조합조건의 인원수를 채우기 위한 인적지원을 받는다. 그밖에 이들 협동조합은 연방노동 및 사회보장 장관과 협의하여 관할농업 협동조합의 회계를 위해 인원을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8) 사회보험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고보험업무를 실시하는 데는 아래 내용이 유효하다 :

1. 사고보험사가 이미 업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대행보험협회가 1991.12.31.까지 아래사항의 사고보험업무를 수행한다 :

- 상업과 농업범위의 사고보험과 연방노동청과 연방정부 : 1990. 12.31까지 발생한 모든 작업상의 사고피해,
- 주와 지역단위에서의 사고보험 : 모든 공상
- 사고보험금의 수령과 관리 및 그밖의 사고보험수입.

2. 과도 대행 보험 회사는 다음 ee)항 이외에 1990.12.31.이전에 발생한 공상중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자체 최고 4개의 협회에 대해서는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a) 사고보험분야 세개 각각 1989년의 공상자수의 할당을 받는다. 이 할당량은 3개의 최고 사고보험 설립자 단체의 회원의 연금 해당자수와 같아야 한다. 안전사고는 급부 수령자의 출생일 월에 따라 기록하되 출생일이 동일하면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작성한 명부는 후에 새로운 보험사고로서 생기는 연금에도 효력이 있다.

bb) 산업 협동 조합의 중앙 연합은 산업 협동 조합과 해상 협동 조합에서 발생한 공상에 대하여 분담금 산정을 근거하는 1989년의 보상금 기준의 배당 평균을 바탕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고 1985부터 1989까지의 피해를 입은 공상을 위해

1989년에 연금지불금을 산정할 기준에 따라 할당한다. 배당 기준을 조사할 때에는 제1문에 설명한 보상금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엔 영향이 없는 연금지불금액을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라 생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엔 미치지 않는 동업조합의 배당금이 산업부문과 제1문에 정한 기준에 따른 모든 급속 및 건축 협동 조합에 할당된다. 그밖엔 aa)항의 제2문과 제3문의 효력이 있다. 1995년엔 산업협동조합의 중앙연합이 제1문에서 기술한 동일한 방법으로 분담금 산정의 근거인 1994년의 보상금에서 배당 평균을 바탕으로 배당 정형을 조사하고 또 1991부터 1994까지의 작업 사고를 위해 1994년의 연금 지불금액을 조사한다. 재정적 부담에서는 예외로 1994년 비율에 따라 지정된 작업사고에 기인된 증가된 연금부담을 상호 조정한다; 1995년 새로 조사된 정형의 기준은 다음 차기 년도에도 효력이 있다.

- cc) 농업동업 조합의 연방 협회는 원예 협동 조합과 제3항에 의거해 새로 창립한 농업 협동 조합에 해당하는 작업사고를 1990.12.31. 이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원예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한다. 제aa)항 제2문과 제3문은 효력이 있다.
- dd) 지방행정기관 사고보험회사의 연방협회는 연방,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지역의 연방노동청, 베를린 자체 사고 보험과 공화국 보험령 제656조에 따라 결정했거나 설립된 보험회사 등에 관련된 작업사고를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 연방과 연방 노동청을 하나로, 지방과 단위지역의 사고 보험 회사를 다른 하나로 하여 위 aa)항에 적절한 배당분을 조사한다; 외국인연금법을 근거로한 연금에 대한 비용은 여기서 고려되지 않는다.
 - 주와 단위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보험 회사에 해당되는 작업 사고는 이제까지 기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동베를린

지역과 조약 지역의 주민수에 적절하게 조약 제1조에 제1항에 언급된 지역과 자기사고 보험사에 1990.12.31.을 기준으로 분배한다. 주들은 관할범위내의 할당을 결정한다. aa)항 2문과 3문은 유효하다.

ee) 1973. 4.11. 제정된 보험보전 확대에 관한 규정 제1조를 토대로 배상될 작업사고는 사고보험을 위한 연방 시행 관청에 이관된다.

ff) 1991. 1. 1.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청산일후에 - 그러나 늦어도 1994.12.31.까지 - 신고된 작업사고와 직업병은 위 aa)항에 따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사고로 본다.

3. 과도 대형 보험회사는 1990.12.31.이후에 발생한 주와 단위지역에서 일어난 작업사고의 배상을 위한 비용을 파악한다.

(9) 이 규정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d) 사고보험과 1차 구제에 관한 제546조 제2항, 제708조부터 제722조까지, 제801조, 제865조부터 제867조까지와 제767조 제2항 제5번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신규 법정사고보험회사가 설립된 경우 이보험사가 자체 사고예방규정을 마련치 않았다면 이제까지 기본법의 효력범위에서 공고된 사고예방규정을 적용한다.

(2) 사고보험회사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유효했던 노동보호 규정청의 사고예방규정의 발전과 유지에 관련된 확정(예: 건강보호, 노동보호, 화재보호의 요구와 국가기준, 노동위생의 국가표준, 노동보건상의 유용성 및 감독조사, 노동위생상 특정 및 가치평가기준, 검사에 필요한 작업, 건축, 검증 규정등의 표준등)이 어느정도 유지되는지를 감사해야 한다.

(3) 주와 단위지역에서 신보험회사 설립자가 아직 업무를 과도적보험 협회로부터 인수받지 않은경우 국립노동보호 관리청은 사고예방 업무와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4) 본 규정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e) 제723조부터 제761조까지 제802조부터 제829조까지, 제870조부터 제890조까지, 제767조 제2항 제6번, 제770조와 제771조 등은 아래 조처에 따른다:

- (1) 1990. 6.28. 제정된 사회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사고보험료는 1991.12.31.까지 모든 사용자에게 의해 인상된다. 사고보험지출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노동 및 사회보장 연방장관이 확정한다. 공화국보험령 제735조를 적용할 경우 보험금은 할당액으로 보며 기타 연방노동청에 의해 주나 지역에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일부로 본다.
- (2) 제1항에 의한 사고 보험료로써 확보할 수 없는 과도대행적 보험회사의 경비는 사고 보험사의 업무를 인지 하는한 사고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개별사고 보험 회사의 이행 의무 범위는 c)항 (8)번 2에 정한 배당에 따라 결정한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과 베를린 자체 사고 보험회사가 주 및 지역의 사고 보험회사를 위해 비용을 부담한다. 잔액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모든 관할 사고 보험 회사에 분배한다. 1990.12.31.이후 발생한 주와 지역의 보험가입자의 작업 사고 보상을 위한 비용은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과도적보험회사의 업무를 새로 설립한 사고 보험회사가 아직 인수하지 않은 경우 조약에 언급된 지역과 베를린 자체 사고 보험사가 부담한다.
- (3) 관할 사고 보험회사는 경비를 c)항 7번에 따라 법정위임 사고 보험 회사에게 상환한다. 상환까지 해당 위임 및 후원 사고 보험회사의 경우는 농업 경영자 동업 조합의 연방 협회가 작성한 기준 등급 제4및 5급에 따라 부담한다; 가불금이 청구되면 지급되어야 한다.
- (4) 연방은 사회할증금(Sozialzuschlaege)에 대한 사고 보험회사의 비용을 보상한다. 연방은 또 자녀 양육비가 자녀 보조금과 함께 지급되지 않은 한 자녀 양육비 수준으로 자녀보조를 위한 사고 보험회사의 경비를 보상한다; 여기엔 총체 보상이 가능하다. 노

동 및 사회보장 연방 장관은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연방 상원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법령을 통해 상세한 보상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 (5) 이규정은 1991.1.1.부터 적용한다.
- f) 보험 가입자 범위에 관한 제539조부터 제545조까지, 제547조부터 제555a조까지, 제776조부터 제779조까지와 보험 범위에 관한 제835조부터 제840조까지, 요양 수당에 관한 제558조 제3항 제2문부터 제4문까지, 제570조부터 제631조까지, 제779d조 제1항, 제780조부터 제789조와 연금 및 기타 급부의 금전보상에 관한 제841조부터 제848조까지, 기업보험의 특성에 관한 제632조와 제635조, 기타 설비와 조치에 관한 제762조부터 제765a조와 제891a조등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 g)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은 통일 시점에 유효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231-16으로 공고한 1963.4.30.제정된 사고 보험신규정법 제3조는 1991. 1. 1.부터 적용한다.
 3. 1973. 7.18. 제정된 사고 상해자의 정형외과 진료에 관한령은 1991. 1. 1. 효력을 발생한다.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통일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4. 1968. 6.20. 제정되고 1988. 3.22. 최종 개정된 직업병령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5. 1971.11.10. 제정된 연간 근로 임금 상한에 관한령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6. 1965. 8.17. 제정된 공화국 보험령 제604조와 제616조에 따른 법정 사고보험의 급부 협정시 자본 가치의 산정에 관한령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7. 1967. 8.18. 제정되고, 1979. 6.20. 개정된 법정사고 보험의 금전급부보장에 관한령은 1992.1.1.부터 적용한다.

업무영역 K : 사회보상법과 재할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 효력의 발생에서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1. 1973.12.31. 제정되고, 1975.12.11. 법 제2조를 최종 개정한 제5차 적용법 제2조
2. 1975.12.18. 제정된 노동 촉진법과 연방 원호법의 효력 범위내에 예산 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제2관 제2조 제3항,
3. 1990.6.30. 제정된 1990/91년도의 결산령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보충된다 :

1982. 1.22. 공포되고, 1990. 6.26.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 원호법 제84조 다음 제84a조를 신설한다.

“제 84a 조

1990. 5.18. 현재 주소 또는 거주지를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가졌던 권리자는 그가 통일전 본법의 효력 범위내에 주소와 거주지를 가졌 다해도 주소와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부터 통일 조약에 따라 이 지역에 유효한 기준으로서 연방 원호법에 따라 후원을 받는다. 1990. 5.18.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와 거주지를 둔 외국원호 규제 제1조에 정한 국가에서는 서독인과 동독인에게도 제1문이 적용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2. 1.22. 제정되고, 1990. 6.26.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원호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a) 해당유효규정 제14조, 제15조, 제26c조, 제31조 제1항과 제5항, 제32조 제2항, 제33a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1항과 제3항, 제40조, 제40b조 제3항, 제41조 제2항, 제46조, 제47조 제1항,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조에 정한 독일 마르크 금액은 통일전 연방 원호법이 유효했던 지역에서 처분할 수 있는 표준연금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처분 가능한 표준 연금의 비율에서 산출되는 백분율로 곱한다. 이 백분율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산정금과 제30조 제5항에 따라 공시된 조정 수입 및 제64e조 제7항에 정한 연금에도 유효하다. 제15조 제2문에 따라 곱한 수는 1문에 정한 백분율로 곱한다. 최종 금액은 완전한 독일 마르크로 사사오입한다. 즉 0,49마르크는 0,50마르크를 올린다. 이와 달리 제15조 제2문의 승수는 콤마 다음에 세자리 소숫점에서 끝낸다.

연방 노동 및 사회보장 장관은 기준 백분율과 변경 기간을 연방판보에 공시한다.

b) 제16c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aa) 질병요양수당은 제1항 제1문에 따라 산정기간종료후 1991.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연금과 같은 백분율 및 기간으로 인상된다.

bb) 제2항의 “매년의”란 용어 대신에 “수시로”로 한다.

c)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26조 제3항 2번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이규정에 정한 연금법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한다.

d) 제25c조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aa)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라 최소한 연방사회원조법에 의한 금액을 보장한다.

bb) 제2항에 따라 수입과 자산은 최고 연방 사회 원조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한다.

- e) 제26a조 제6항은 제16조 제1항 1문에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f) 제56조는 위 a)항 제1문과의 관계를 100%가치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g)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제65조에 정한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은 부양수익금 청구권으로 정지된다. 이는 전쟁 상해연금, 요양 수당, 맹인 수당과 특별 요양 수당 및 전쟁 상해를 근거로 한 연금 보험 회사에 의해 지불된 금액을 위해 1990.6.28. 제정된 연금 보상법에 따른 미지불 연금에도 효력이 있다.
 - h) 제85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45. 5. 8. 이후 관련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엔 효력이 없다.
 - i) 본법에 따라 주어지는 새로운 원호청구는 신청에 의하여 확정된다. 1993.12.31.까지 산정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991. 1월부터 원호 청구가 가능하다.
 - k) 상해연금이 의사진찰 없이 지금까지 인정된 최저 생계 능력 정도가 낮게 확정되어온 경우 1990.12.31.이후 5년내에 새로운 연금 확정은 사회법전 제10권 제48조의 본질적 변경에 좌우하지 아니한다.
 - l) a)항에서 k)항까지의 기준은 1990. 5.18.에 주소와 거주지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가졌던 권리자에게 효력이 있다. 1990. 5. 18.이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와 거주지를 둔 외국인조령 제1조에 정한 국가에서 온 서독인과 동독인에게도 제1문이 적용된다.
 - m) 연방원호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앞에 정한 기준으로 1991. 1. 1.부터 적용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33-2로 공고되고 1972. 7.24. 법 제3조를 개정한 전쟁 희생자 원호 행정 관청의 설립에 관한 법은 아래에 따라 적용한다:
- a) 제1조 제2항 제1문의 “특별”이란 말을 삭제한다.

- b) 제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c)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은 주정부가 설립한 주원호청과 주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치한 원호청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d) 본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위에 정한 기준으로 1991. 1. 1.부터 적용한다.
3. 1970. 4.27. 제정되고, 1985. 6. 4. 법 제2조를 개정한 연금자산화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4. 1976. 5. 6. 공고되고, 1980. 8.18. 법 제2항목 제16조를 개정된 전쟁희생자원호 관리절차에 관한 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5. 1989.10. 4. 제정된 정형외고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6. 1981. 7.29. 제정되고, 1987.10. 9. 최종 개정된 상이군인 신체운동령(Versehrten Enleibesue bungen - Verordnung)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7. 1972. 1.31. 제정된 연방원호법 제15조 시행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8. 1965. 8. 5. 제정되고, 1986.10.27. 개정된 연방원호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9. 1919. 2. 8. 제정되고, 1924. 2.13. 최종 개정된 전쟁잔류자 복지 사업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0. 1979. 1.16. 제정되고, 1987. 9.28. 자동차구조령 제11조를 최종 개정한 전쟁 희생자 복지 사업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1. 1984. 7.29. 제정되고, 1985. 6. 4. 법 제3조를 최종 개정된 직업병 보상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2. 1970. 4.20. 공고된 연방원호법 제31조 제5항의 시행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3. 1975. 7. 1. 제정 공포되고, 1990. 6.12. 최종 개정된 보상 연금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제3조에 따라 금액아닌 수입의 평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현물급여규정에 따라 정한다.
 - b) 제9조 제3항 제5문에 정한 독일마르크는 통일이전 연금조정령이 유효했던 지역에서 처분할 수 있는 표준연금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처분할 수 있는 표준연금의 비율로 산정하고 노동 및 사회보장연방장관이 연방관보에 공시한 백분율로 곱하여 산정한다.
 - c) 본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위에 정한 조치로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833-4로 공고되고 1988. 6.23. 개정된 전쟁 희생자원호의 행정 관할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5. 1964. 6. 9. 제정되고, 1966.12.22. 개정된 독일 기본법 효력 범위 밖의 전쟁 희생자 원호 행정 관청의 관할에 관한 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6. 1967. 7.31. 제정되고, 1986. 3.12. 개정된 보상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7. 1990. 6.30. 제정된 외국원호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8. 1985. 1. 7. 공고되고 1990. 6.25. 법 제6조를 최종 개정한 희생자 보상법은 아래 기준에 의한다 :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갖는 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권리자와 피해이후 통일전 희생자 보상법이 유효했던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이전한 권리자에게는 제1번에 설명한 기준으로 연방원호 법 규정을 적용한다.
 - b) 제6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제2번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c) 제10조는 1990.12.31. 이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범한

- 행위에 대한 청구권에도 유효하다. 아울러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제10a조의 기준에 따라 1949.10. 7.부터 1990.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범한 행위에 대한 청구권에도 유효하다.
- d) 제10a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와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나, 1949.10. 7.부터 1990.12.31.까지 이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지니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e) 본 법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원호청구는 신청에 의해 확정된다. 1993.12.31.까지 조건을 갖춰 신청한 원호 청구는 1991. 1월부터 적용한다.
- f) 1988.12.14. 제정된 피해보상 선불지급법에 의한 급부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1990년 이후 다시 건강 악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희생자보상법에 따른 급부를 지급한다.
- g) 희생자 보상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위에 정한 조치로 1991. 1. 1. 효력을 발생한다.
19. 1964. 3.18. 공고된 전쟁포로 가족의 부양보조에 관한 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1990. 5.18.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가졌던 권리자에게는 본법과 제1번에 정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b) 본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위에 정한 기준으로 1991. 1. 1.부터 적용한다.
20. 1977. 6.27. 제정된 제9차 적응법 제2조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1991. 1. 1.부터 적용된다.
21. 1974. 8. 7. 제정되고, 1990. 6.26. 법 제11조를 최종 개정한 재활보상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본법 제5조 제6항 제2문을 근거로 통일이 있기까지 체결된 전체합의와,
- b) 직업상 재활설비 비용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1983. 9.21. 제정된 본법 제8조 제1항 제4번과 제2항에 근거한 원칙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근무하는 재활인에게도 적용된다.

업무영역 L : 재산형성진흥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9. 1.19. 공고되고, 1990. 2.22. 금융시장촉진법 제3조를 개정된 제 15차 재산형성법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2. 1987.10.23. 제5차 재산형성법시행령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제 IX 장

연방국방장관 업무영역

— 군인법을 포함한 공무원관계법 제 XIX 장을 보시오—

제 X 장

연방 청소년, 가족, 여성 및 보건 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여성정책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

1. 1968. 4.18. 제정되고, 1989. 6.30. 법 제2조를 최종 개정한 모자보호법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91. 1. 1.이전에 출생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참조 부록 제II 제X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1번부터 제12번까지, 제VIII 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6번)

업무영역 B : 청소년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90. 6.26. 제정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제10조 제1항에 정한 개별 규정의 경과 조항 이외에 제1조와는 달리 1994.12.31.까지 아래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 aa) 제16조 제1항 1문 :

“부모와 다른 양육권자 및 젊은층은 가정교육 일반 추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bb) 제18조 제1항 :

“한 어린이 또는 한 청소년을 돌보아야하고 실제로 돌보고 있는 부모는 이들의 부양청구와 부양보상청구와 함께 이들의 양육에 필요한 조언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cc) 제18조 제2항 1문 첫째줄 :

“혼인의 자를 입양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전에 모의 신청으로 적절한 조사와 기타 조치로 친자 확인을 준비할 수 있다.”
 - dd) 제18조 제3항 :

“혼인의 자녀의 모가 민법 제1615k조에 다른 조산비용 보상청구와 제1615조에 따른 부양 청구를 주장함에 있어 조언하고 보호할 수 있다.”
 - ee) 제18조 제4항 :

“부모로서의 양육권이 귀속되지 않은 교제권 행사에 조언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판 또는 합의에 의한 자녀 방문이나 면회는 허용된다.”
 - ff) 제19조 제1문 :

“6세이하의 한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또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적으로 인력 형성등의 필요에 대해 가정형태의 신뢰로운
숙소를 정할 수 있다.”

gg) 제21조 제1문 :

“양육권자가 그의 직업상 업무 장소의 잦은 변경 때문에 아동이
나 청소년의 의무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때문에 다른방법의
숙식이 필요한 경우 양육권자는 조언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hh) 제23조 제3항 :

“일일보호로서 소개되고 이것이 어린이에게 이롭고 도움이 된
다면 일일보호는 양육비를 포함한 경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일일보호란 낮에만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

ii) 제23조 제4항

“일일보호단체가 조언하고 후원할 수 있다.”

jj) 제25조 :

“자발적으로 어린이의 보호를 조직하기를 원하는 부모와 다른
양육권자는 조언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kk) 제27조 제3항 제2문 :

“필요할 때 제13조 제2항의 의미상 직업교육과 취업조치를 포
함한다.”(* 부모에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함을 뜻함)

ll) 제37조 제2항 1문 :

“양육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인수하기 전과 양육기간동안 보호
받을 수있다.”

b) 제10조 제2항과 달리 1994.12.31.까지 제1항목 제27조 제2항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와 제35조에 정한 구제종류가 불필요하게
처리된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행되어야 하며
제34조에 따른다.

c) 본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기타 교육을 위한 지원은 k)항의 기준
에 따라 부모와 별거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규칙적으로 살피거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1항목 제44조에 따른 양육허가가 필요한

자는 이 허가를 지체없이 신청한 경우 이 허가 없이도 어린이나 청소년을 계속 책임지거나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복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런 침해가 곧바로 제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허가부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청소년과 부모의 조인과 숙식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부모가 자녀들을 확대하거나 잘 돌보지 않을 때에는 시청소년복지과에서는 3회에 걸쳐 경고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시에서 보호한다).

- d) 본법의 효력이 발생하는날 b)항의 기준에 따라 설립된 시설은 제1조부터 제45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 e) 제13조와는 달리 본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7조와 k)항의 기준에 의하여 1990. 7.20. 신 어린이 청소년 보호법의 - 청소년 보호조직법 - 조직은 청소년 복지 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위원회로 조직한다.
- f) k)항의 기준에 따라 본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존재하고 있는 주청소년 복지 위원회는 주 법 규정을 근거로 새로운 주청소년 지원 위원회가 결성될 때까지 주청소년 위원회로 본다.
- g) 제15조는 적용은 되지 아니한다.
- h) 청소년과는 아래 사항들을 후견인 선정 재판이나 가정법원에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 aa) 취급하고 있거나 신청된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
 - bb) 계속 효력이 있는
 - a) 기숙사교육(*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겨 국가가 보호할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종의 고아원과 같은 기숙사 학교)
 - b) 개인적 교재에 관한 규정
 - cc) 부모 또는 그 일방의 양육권 제한

제1문의 결정범위에서 이제까지 행한 행위가 후견인 결정 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이송되는데 대한 배려를 청소년과가 책임진다.

- i) 주의 다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가 범지역 관할과 주법에 의한 관할관청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주들은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기관을 초치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관서가 이의 결정을 발령할 수 있다.
 - k) 제24조 제1문과 달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법은 통일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1964. 8.17.제정되고, 1975.12.18.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임의사회 연도 장려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제1조 제1항 제5번 제2문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공화국 보험령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1990. 6.28.제정된 사회보험법에 의거해 효력이 있는 분담금 산정한계가 근거가 된다.
 - b) 제2조 제1항 제1번부터 제3번까지에 정한 회사 이외에 제1조의 규정에 적절한 시행을 위해 보증하는 다른 회사가 관할 주관청의 동의없이 통일후 일년간 허가된다.

업무영역 C : 비현역군 복무

(* 현역군복무대신 민간사회봉사, Zivildienst)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보충된다 :

1986. 7.31. 공고되고, 1990. 6.26. 법 제5조를 개정한 비현역 군복무법 제51조 다음에 제51a조를 신설한다.

“제 51a 조

독일통일 회복에 따른 경과규정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법규정을 통해 복무의무자의

비현역군복무 - 부상에 대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별관계를 고려하는 과도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 이 발령권은 특히 본법과 다른 퇴직 규정과 원호급부의 금액, 산정근거, 종류에도 미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 1983. 2.28. 제정되고, 1989. 6.30. 최종 개정된 군복무거부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동독 합병 시점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지금까지의 법에 따라 비현역 군복무 의무자로서 확정된 자는 군복무 거부법의 의미상 승인받은 병역 거부자로 본다.
2. 1986. 7.31. 제정되고, 1990. 6.26. 개정된 비현역 군복무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통일시점에 현행법에 따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승인된 비현역 군복무 장소는 쾰른에 있는 연방 비현역 군복무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비현역 군복무법상의 승인된 복무 장소로 본다.
 - b) 동독군대에서 근무한 병역은 현역 군복무법에 따라 수행한 비현역 군복무로 계산한다.

업무영역 D: 보건정책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의 효력에서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1. 1973.10. 9. 제정된 공과국의사협회 청산법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폐지, 개정 또는 보충된다:

1. 1987. 4.16. 공고되고 1988.12.20. 법 제45조를 개정한 연방의사규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aa) 제1항의 제5문은 삭제된다.

bb) 제2항 제2문과 제3항 제3문은 “제1항 제2문부터 제4문까지에는 변동이 없다”란 문구를 보충한다.

b) 제4조 제4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aa) 제1문의 “병원, 개업의, 위생센터나 이와 유사한 연방 방위군 시설, 주요행정 의료 시설을 갖는 형무소에”란 규정을 “병원, 개업의 그밖의 외래 진료 기관, 위생 센터나 이와 유사한 방위군보건시설 및 경찰설비 또는 주요행정상 의료설비를 갖는 형무소에”로 대치한다.

b) 제3문의 “연방방위군”은 삭제한다.

c) 제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aa) 제1문에 아래 문구를 보충한다:

“국가의사면허를 부여할때 제3조 제1항 제1문 제4번 제5번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통일 이전에 국가승인을 부여할때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교육 기관에서 또는 제14조 제1항 제2문의 경우나 제14a조 제4항 제1문의 경우에 받은 의학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제3조 제1항 제2문이나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14b조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d)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aa) 제1항에 제2문과 제3문을 보충한다:

“제14조 제3항 제2문의 경우 동독법에 따라 받은 허가 소지자는 관할 관서의 본청이 있는 주 관할 관청이 허가를 부여한다.

제14a조 제4항 제1문부터 제3문까지의 경우 허가는 신청자가 의학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주의 관할관서가 부여한다.”

bb)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2) 신청자가 의학시험을 치렀거나 제14a조 제4항 제1문에 따른 의학과정을 종료한 주의 관할 관청이 제14a조 제4항 제3문과 관련한 제10조 제4항과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다. 신청자가 교육을 종료한 주의 관할 관청이 제14조 제4항 1문에 따라 결정한다.”

cc)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3) 의사영업을 하게될 주의 관할관청이 제2문 제2항, 제3항과 관련한 제3조 제1항 제1문,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2항 제2문, 제14조 제4항 제6문과 제14b조에 따른 결정을 하게된다.”

dd) 제7항의 “또는 5”란 표현은 삭제한다.

e) 13조는 다음 표제를 갖는다 :

“Ⅶ형벌 및 벌금규정”

f) 제13조 다음 제13a조를 신설한다 :

“제 13a 조

(1) 제14조 제4항에 반하여 보충(전문영역)없이 “의사” 또는 “여의사”란 직업표시를 한 자는 법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법률 위반엔 5000마르크까지 벌금형에 처한다.”

g)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제 14 조

(1) 독일 통일당시 지금까지 유효한 법에 의하여 의료업 행위를 위한 국가의 승인 또는 임명은 본 법의 의미상 승인으로 간주한다. 동시

에 1988. 7. 1. 이전에 허가되고 1977. 1.13. 제정된 의사면허규정 제15조에 따른 현행 규정을 통해, 1981. 8.24. 규정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의료업 행위의 권한은 국가승인에 대한 제4항의 규정과 관계치 않는다. 통일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전문의 허가명칭을 갖게 한 허가는 제2문에 정한 승인소지자에 의한 전문의로서 면허와 관련해 이들에 부여한 명칭을 계속 지닐 수 있는 권한은 주법에 따른다.

- (2) 통일이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의료업 행위를 할 권한을 1988. 7. 1. 이전에 부여하고, 1977. 1.13. 제정된 의사면허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효한 규정을 통해 1981. 8.24. 정한 문언으로 제한된 의사로서의 허가는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로 본다. 이 승인의 소지자가 제3조 제1항 제1문 제2번과 제3번의 조건을 충족한 신청을 하면 본법의 의사승인을 갖춘 것이다.
- (3)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전 1988. 6.30. 이후 유효하게 부여된 의사면허는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 면허소지자가 제4조 제4항 제1문과 제3문에 정한 하나 또는 여러 시설로 18개월의 의료행위를 입증하고 본법 제3조 제1항 1문에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에 의하여 본법상의 의사로서 허가를 받는다.
- (4)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이전 효력이 있는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 소지자는 “이론의학”이란 부가어만을 갖는 “의사” 또는 “여의사” 명칭을 갖는다. 제1문에 정한 승인은 의술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통일당시 적절한 교육상태에 있는 자는 이 교육을 마칠 수 있다. 1992.12.31.까지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제1문에 정한 의사의 허가령 제4조에 따른 의학이론 전문분야 신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문에 정한 제한도 유효하다. 이런 허가 소지자가 본법 제4조를 근거로 발령한 의사면허규정에 따라 교육받은 의사의 교육수준과 자기교육

정도의 동일가치를 입증하고 제3조 제1항 제1문 제2번과 제3번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에 의하여 본 법상 의사로서의 허가를 받는다.

- (5) 통일당시 유효한 잠정적 의료업행위허가와 1977. 1.13. 제정된 의사승인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이 전 유효한 의료업행위를 위한 국가 면허는 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면허로 간주한다.”

- h) 제14a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

“(4) 의과대학에서 이미 시작한 의학공부를 통일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계속하고 있는 의과 대학생은 1998.12.31.까지 교육을 받는 한 이 지역에서 유효한 법규에 따라 학업을 종료한다. 성공적인 학업종료는 제3조 제1항 제1문 제4번에 따른 의사시험 합격을 통한 의학 학업 종료이다. 졸업 증명서 소지자는 신청에 의하여 제10조 제4항에 의한 수습의로서 허가를 얻는다. 1991. 9월 1문에 정한 교육기관에서 의학을 전공하게 된 학생은 1994.12.31. 까지 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1문에 정한 규정에 따른 예비 시험과 함께 전기 임상학 과정을 이수한다. 이들은 제4조를 근거로 발령한 의사허가규정에 따라 의사학업을 계속하며 학업후 교육을 마친다. 본 규정은 학업을 시작할 때부터 1992년과 그 이후에 제1문에 정한 교육기관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효력이 있다. 시험의 종류와 본 규정에는 제5문과 제6문에 정한 학생을 위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2. 1987. 4.16. 공고된 치과의료행위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 a) 제2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a) 제1항의 제6문은 삭제한다.

bb) 제2항 제2문과 제3항 제3문은 다음 문언을 포함한다 :

“제1항 제2문부터 제5문까지는 변동이 없다.”

- b) 제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aa) 제1항 제1문에 다음 문장을 부가한다 :

“면허부여시 치과의사시험에 불합격하거나 통일이전 부여한 허

가에 있어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교육기관이나 제20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20조 제4항 제1문의 경우에 받은 치과의사 학업을 종료치 않았거나 제2조 제1항 제2문이나 제2항, 제3항에 따른 교육이나 제20a조에 의거해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bb) 제3문의 “또는 6”의 표현을 삭제한다.

c) 제16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aa) 제1항엔 다음의 제2문이 보충된다:

“제20조 제4항 제1문의 경우 신청자가 그의 치과의사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방의 관할관청이 면허를 부여한다.”

bb) 제2문에 다음의 문언을 보충한다:

“(2) 제2조 제1항 제1문, 제2항, 제3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 제20조 제2항 제2문과 제20a조에 따른 신청은 치과의사업을 행할 주의 관할 관청에서 결정한다.”

cc) 제5항의 “또는 6”의 표현은 삭제한다.

d)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제 20 조

- (1) 통일당시 본법의 효력 범위내에서 치과의사업을 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승인이나 임명은 본법상의 승인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승인이 1977. 1.13. 제정된 치과의사 면허 규정 제13조에 따른 현행 규정을 통해 1981. 8.24. 제2번의 문언으로 제한되지 않는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치과의료업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국가 승인은 효력이 있다. 통일이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전문치과의 명칭을 갖게한 승인은 제2문에 정한 승인소지자에 의한 전문치과 의사로서 허가와 관련하여 이들에 부여한 명칭을 계속 지닐 수 있는가의 결정은 주법에 따른다.

- (2) 통일이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치과의료업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러나 1977. 1.13. 제정된 치과의사 면허규정 제13조에 따라 1981. 8.24. 제정된 제한된 치과의사로서의 면허는 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면허로 간주한다. 이 면허 소지자는 신청에 의하여 제2조 제1항 제1문 제2번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본법의 의미상 치과 의사로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3) 통일이전 잠정적 치과의료 행위의 유효한 허가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이전 1977. 1.13. 치과의사면허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른 치과 의료행위를 위하여 유효하게 부여한 국가 면허는 현재의 내용과 함께 본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로 간주한다.
- (4) 의과대학에서 이미 시작한 의학공부를 통일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계속하고 있는 치의학과 대학생은 1997.12.31.까지 교육을 받는 한 이 지역에서 유효한 법규에 따라 학업을 종료한다. 성공적인 학업 종료는 제2조 제1항 제1문 제4번에 따른 치의학 시험합격을 통한 치의학 학과 졸업이다. 1991.9월과 그이후에 제1문에 정한 교육기관에서 치의학을 전공하게 된 학생에겐 본법 제3조를 근거로 발령한 치과의사 면허 규정이 효력이 있다. 1992.12.31.까지 본 규정은 치의학 학업이 장래 아동치과 의술에 관한 의무교과 개설을 포괄해야 하고 이분야에 치과시험을 부과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해야한다.”
3. 1987. 7.14. 제정되고, 1989.12.21. 개정된 의사면허규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제34조 제2항 제2문의 둘째 및 셋째 투명색표시 문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 허가된 개업의 혹은 그밖의 외래진료설비에,
 “ - 중앙보건소나 군대 또는 경찰의 보건업무설비 또는”
4. 1985. 6. 4. 제정되고 1986. 5.22. 제1조를 개정한 조산원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제27조 다음 제27a조를 신설한다 :

“제 27a 조

- (1)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부여한 조산원허가는 제1조 제1항에 따른 면허로 간주한다.
- (2)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개시한 조산원교육은 본 규정에 따라 종료한다. 제2조 제1항 제2번과 제3번의 조건이 충족된 신청자는 교육수료 후 제1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다.”
- b) 제30조는 다음에 제 ixa절을 신설한다:

제 ixa 절

독일통일을 위한 과도규정

제 30a 조

- (1) 제6조 제1항 제3문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의학 전문학교에도 적절히 적용한다.
- (2) 제6조 제2항 제1번 및 제2번과 달리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의학 전문학교는 아래의 경우 국가가 의학교육에 적절한 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이 학교가 교육대학자격이나 다른 대학교육과 그학업종료자격을 갖춘 학장(교장)에 의해 운영되거나,
 2. 학생수에 비례한 충분한 인원의 아래 교수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 교육대학을 졸업한 전문학교교사나,
 - 통일시점에 의학전문학교에서 교수하고있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학교교사와
 -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와 여의사 및 그밖의 전문인력.
- (3)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설치되고 이시기에 조산원을 양성한 의학 전문학교는 이 승인이 철회되지 않은한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통일후 3년내에 제6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었

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5. 1985. 6. 4. 제정되고, 1986. 5.22. 제2조를 개정한 환자간호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제27조 다음 제27a조가 신설된다:

“제 27a 조

- (1)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부여한 간호원, 환자간병인, 아동간호원 또는 아동환자간병인 면허는 제1조 제1항 제1번과 제2번에 따른 허가로 간주한다.
- (2)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부여한 환자간병이나 사회봉사의 전문근로자로서의 면허는 제1조 제1항 제3번에 따른 허가로 본다.
- (3)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간호원, 환자간병인, 아동간호원, 아동환자간병인, 환자간병이나 사회봉사의 전문근로자로서 자격을 위해 시작된 교육과정은 본 규정에 따라 종료한다. 교육을 마친후 제2조 제1항 제2번의 조건이 충족된 신청자는 제1조 제1항 제1번내지 제3번에 따른 허가서를 취득한다.”

b) 제30조 다음 제viii a 절을 신설한다:

“제 viii a 절

독일통일에 의한 경과 조치

제 30a 조

- (1) 제2조 제2항은 동독군대 또는 동독경찰의 위생병으로 최소 3년간 복무한 신청자에게도 적용한다.
- (2) 제5조 제1항 제3문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의학 전문학교에도 적용한다.
- (3) 제5조 제2항 제1번 및 제2번과는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

역의 의학 전문학교가 아래의 경우 의학교육에 적절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

1. 이 전문학교가 교육대학 졸업자적이나 다른 대학교육 졸업자 또는 의학 직업교육을 받은 학장에 의해 운영되고,
 2. 학생수에 비례한 충분한 인원의 아래 교수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 교육대학을 졸업한 전문학교교사나,
 - 통일시점에 의학 전문학교에서 근무한 전문학교졸업의 전문학교교사,
 - 교육에 참여한 의사나 여의사 및 그밖의 전문인력,
- (4) 제8조 제2문은 동독군대와 동독경찰에서 위생병 양성에 적절히 효력이 있다.
- (5) 제10조 제1항 제2문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의학전문학교에도 적용한다.
- (6) 제10조 제2항 제1번과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의학전문학교가 위 제3항 제1번에 정한 자격을 갖는 학장이 통솔한다면 이 학교는 국립대학으로 허가될 수 있다.
- (7) 제28조 제1항 제1문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동독법에 따라 다른 의학학교를 졸업한 자의 전직교육에도 적절히 유효하다. 제28조 제1항 제2번 제2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 (8) 제29조 제1문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교회가 설립한 곳의 환자간호원의 직업을 위한 교육설비와 의학전문학교에도 적절히 효력이 있다. 통일후 3년내에 제5조 제2항이나 제10조 제2항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 허가는 철회될 수 있다.”
6. 1987. 3.16. 공고된 조산원과 조산보조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다음 1a항을 신설한다:
- “(1a) 조산원법 제30a조 제2항에 따라 조산원학교로 국가가 인정한 의학전문학교에 제1항 4번 b)와는 달리 시험위원회는 조산원으로서 최소의학교육학석사나 의학전문학교조산원과정을 졸업한 의학교육학자로 구성할 수 있다.”
7. 1985.10.16. 제정된 환자간호원을 위한 교육 및 시험규정 제3조 제1

- 항 다음 1a항을 신설한다.
- “(1a) 환자간호원법 제30a조에 따라 간호학교 또는 환자간병조력을 위한 학교로서 국가가 인정한 의학전문학교의 제1항 제4번 b)와 달리 시험 위원회는 간호원, 환자간병인 또는 아동간호원이나 아동환자간병인으로서 최소 의학교육학석사나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의학교수로 구성할 수 있다.”
8. 1989. 7.10. 제정된 응급구조조수법 제8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 제4항 다음 제4a항을 신설한다:
- “(4a) 제4항은 동독군대나 동독경찰의 위생시험이나 전문시험을 치를 신청자에게 적용한다.”
- b) 제5항의 “제3항과 제4항에 따라”란 표현 대신에 “제3항, 제4항과 제4a항에 따라”로 수정한다.”
9. 1976. 5. 5. 제정되고 1986. 2.18. 법 제40조를 개정한 산업 및 근로치료법 제8조 다음에 제8a조를 신설한다.

제 8a 조

- (1) 1980. 8. 7. 제정된 의료, 약제 및 사회사업 전문근로직과 전문직업학교를 위한 국가허가령에 따라 1991. 9. 1. 이전에 부여한 근로치료원으로서의 허가나 이와 동등한 허가는 제1항에 따른 허가로 간주한다.
- (2)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 9. 1. 이전에 근로 치료원이 되기위해 시작한 교육은 이곳에서 현행법에 따라 종료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자는 교육 종료 후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10. 1977. 3.23. 제정된 산업치료 및 근로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험 규정 제14조 다음 제14a조를 신설한다:

제 14a 조
독일통일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 9. 1.부터 적용한다:
11. 1973. 7.17. 제정되고, 1986. 2.18. 법 제39조를 개정한 영양사 보조원법 제9조 다음 제9a조를 신설한다.

제 9a 조

- (1)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부여한 영양사보조원 허가는 제1조에 따른 허가로 본다.
- (2) 제2조 제1항 제1번과 달리 신청자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6. 1. 1. 이전에 시작한 영양사 보조원으로서의 교육을 현행 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료한 자에게는 제11조에 따라 허가한다.
12. 1974. 2.12. 제정된 영양사 보조원 교육 및 시험 규정 제13조 다음 제13a조를 신설한다:

제 13a 조
독일통일에 의한 과도규정

이 규정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6. 1. 1.부터 적용한다.
1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4-7로 공고되고 1989. 5. 9. 개정된 맛사지 시술자, 환자체조사와 건강욕시술인의 교육법은 아래에 기준에 따른다:
a) 제15조 다음 제15a조를 신설한다.

제 15a 조

통일이전 독일법에 따라 맛사지시술자나 물리치료사로서 받은 허가는 제

1조에 따른 허가로 간주한다.

b) 제 17조 다음에 아래의 제17a조를 신설한다.

제 17a 조

제2조 제1항 제2번 및 제3번과 달리 신청자가 1996. 1. 1. 이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 맛사지시술자나 물리치료사를 위해 시작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면 “맛사지사” “환자체조사”란 직업명칭으로 허가를 한다.

1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4-7-1 공고되고 1982.11.19. 개정된 맛사지사, 건강육시술인 및 환자체조사의 교육 및 시험규정 제23조 다음 제23a조를 신설한다.

제 23a 조

본 규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6. 1. 1. 부터 적용한다.

1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4-7-2로 공고되고 1971. 6.25. 개정된 환자체조사의 교육 및 시험규정 제22조 다음 제22a조를 신설한다.
이 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6. 1. 1.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 1989.11.28. 제정된 안과의사보조 사시교정사법(Orthoptistengesetz) 제11조 다음 제11a조를 신설한다:

제 11a 조

(1) 1980. 8. 7. 제정된 의학, 약제 및 사회사업에 대한 전문학교직업과 전문근로직을 위한 국가면허규정에 따라 1991. 9. 1. 이전에 안과의사보조사시교정사로서 부여한 면허는 제1조에 따른 면허로 간주한다.

(2)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 9. 1. 이전에 안과 의사보조사시교정사 과정을 시작한 교육은 이곳에서 유효법에 따라 종료하게 된다.

교육종료후 신청자가 제2조 제1항 제2번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제1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다.

17. 1990. 3.21. 제정된 안과의사보조사시교정사를 위한 교육 및 시험규정 제15조 다음에 제15a조를 신설한다:

제 15a 조

독일통일에 의한 과도규정

본 규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 9. 1. 부터 적용한다.

18. 1971. 9. 8. 제정되고 1986. 2.18. 법 제38조를 개정된 의료技術助手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a) 제13조 다음 제13a조를 신설한다:

제 13a 조

동독법규에 따라 통일이전에 醫療技術實驗助手, 의료기술방사선과조수로써 부여받은 면허는 제1조에 따른 허가로 간주한다.

b) 제15조 다음 제15a조를 신설한다:

“제 15a 조

제2조 제3번과 제3조와는 달리 신청자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6. 1. 1. 이전에 의료기술 실험조수나 의료기술 방사선과 조수가 되기 위해 현지의 유효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교육을 수료했다면 제1조에 따라 면허를 적합한 전문분야로 부여한다.”

19. 1972. 6.20. 제정된 의료기술조수를 위한 교육 및 시험규정 제15조
다음 제15a조를 신설한다:

제 15a 조

본 규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2문을 유보하여 1996. 1. 1.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獸醫學技術助手의 교육에도 미친다면 통일과 동시에 본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20. 1981. 7.28. 제정되고 1987. 2.27. 법 제8조를 개정한 마취제법은
아래에 따른다.

- a) 제11조 제1항 제2문과 제12조 제1항 제3번 제2항 제3문은 폐지된다.
- b) 제29조 제1항 제5번의 “제11조 제1항 제3문”의 표현은 “제11조 제1항 제2문”으로 대치한다.

21. 1989. 7.19. 제정된 연방약사 규정은 아래에 따른다:

- a)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 2문의 “4번” 다음의 콤마는 종지점으로 대치된다. “교육수준의 동일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의 표현은 삭제한다.
 - bb) 제2항과 제3항의 최종문장은 삭제한다.
- b)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에 다음 문장을 보충한다.

“제4조 제1항 제2문의 경우 신청자가 약학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친 주의 관할 관청이 면허를 해준다.”
 - bb) 제2문은 제4문이 된다.
 - cc) 아래의 제2항과 제3항을 보충한다:

“(2) 통일당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약제와 독국물 분야 및 화학분석 분야에서 약제업을 위해 유효하게 제한된 승인은 제11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무기한 허가로 간주한다. 이들은 “전문약제와 독국물 취급을 위한”부가어만을 갖는 “약사”란 직업

명칭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3) 통일당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약사업을 위한 잠정적 허가와의 당시 약사 허가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곳에서 유효한 약사업 면허는 지금까지의 내용과 함께 제11조에 따른 면허로 간주한다.”

21a. 1980.10.15. 제정되고 1988. 7.23. 법 제2조를 개정된 藥房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a) 제2조 제2a항을 보충한다.

“(2a) 제1항 제1번에 보충하여 타국 국민인 신청자가 1990. 1. 1. 그의 고정주소를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가졌었고 그 밖에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타국신청자에게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약국경영 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b) 제28조 다음 제28a조를 신설한다:

제 28a 조

- (1)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국영약국, 약제본점과 기타 국영약국의 설비는 私營을 의도한 신탁기관의 신탁에 맡겨진다.
- (2)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은 병원약국으로서 해당 병원주의 소유이다.

제14조 제4항 제2문과는 달리 합법적인 약품공급의 이익상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병원약국에 병원주의 신청으로 병원에 소속한 외래환자진료소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제공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병원과 독립하여 약국이 운영된다면 이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 이 승인은 늦어도 1993.12.31.에 소멸한다.

- (3) 통일시점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약국은 허가가 부여된 것을 간주한다; 국영약국의 경우엔 그 소유주를 위하여 이 허가는 신탁기관과 병원주에게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국영 약국 감독과 약국의 배치도는

주기관이 구성됨으로서 해체된다. 약제본점의 해산은 1991.6.30.까지 종결한다.

(5) 신탁기관은 제6항에 따른 권리자의 신청으로 아래 사항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1. 1991.12.31.까지 권리자에게 약국을 매각하거나,
2. 권리상황에 의하여 약국의 직접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자가 명에 퇴직연령 5년미만에 달했다면 권리자에게 경영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이 경영은 최고 5년을 넘지 못한다. 경영은 늦어도 1996.12.31에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약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때까지 경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6) 약국의 매매와 경영을 위한 조건은

1. 매입자를 위해 제1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소지하고,
2. 경영자를 위해 제13조 제1b항에 따른 승인을 소지하고,
3. 제7항에 따른 조건 충족이다.

이 허가나 승인 및 조건은 제5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다.

(7) 관할관청은 신탁으로 전환된 약국의 매매나 경영을 공시해야 한다.

약국의 매매나 경영을 위한 조건은 관할청이 부여한다. 결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 위원회가 다수결로 한다.

1. 의장인 관할관청의 대표
2. 신탁기관의 대표
3. 최소 1인의 약사장과 동료약사를 포함한 3인의 약사, 이들 약사는 지방약사회가 지명한다. 지방약사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약사단체가 임명한다.

(8)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예외적 승인을 근거로 약국을 경영하는 약제기술자는 아래의 경우 지금까지 그가 경영해온 약국의 관리를 승인받을 수 있다.

- a) 신청자가 최소 10년간 이 약국을 운영했고,
- b) 제2조 제1항 제4번과 제7번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나아가 승인은 약제기술자가 관리하는 약국이 국영약국의 분국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7항에 따라 적절한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관리에 대한 승인은 정년이 되기까지 최고 5년간 유효하다.

(9) 통일당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국영약국관리의 양도나 매각은 1992.12.31.까지 신청자가 본법 효력발생시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시민이었거나 1972년 이후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그의 고정주소를 이 지역 밖에 갖고있고 1990. 1. 1. 이후 다시 이곳에 주소를 갖고 있는 신청자에게만 허락할 수 있다.

22. 1989. 7.19. 제정된 약사면허규정 제23조 다음 제23a조를 신설한다:

제 23a 조

(1) 1990. 9. 1. 이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대학에서 약학 공부를 시작한 자는 본 규정에 따라 2차 및 3차의 약학시험을 치른다. 1988. 9. 1. 이전에 제1문에 정한 지역에서 약학공부를 시작하고 1990.12.31. 이전에 본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자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유효한 법규에 따라 학업을 종료한다. 지정된 기간후에 본 시험을 합격한 자는 부가적인 본 규정에 따라 3차 약학시험을 치른다.

(2) 제8조 및 제17조 제2항과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대학에서 약학학업을 종료하고, 1992.12.31. 이전에 1차 약학시험을 치른 자는 구술시험에 응시한다. 제 11조의 규정은 적절히 유효하다.

22a. 1987. 2. 9. 제정되고, 1988.12.20. 법 제24조를 개정한 약국경영 규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제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aa) 제6항 제1문과 제2문은 “약사조수”란 말 다음에 “또는 약제기술자”를 덧붙인다.

bb) 제7항의 “약사조수” 다음에 “또는 약제기술자”를 덧붙인다.

b) 제3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aa) 제3항 제1문 제5번의 “약사조수” 다음에 종지점은 콤마로 대치

되고 아래의 번호를 덧붙인다 :

- “6. 약제기술자,
- 7. 약제기술자교육을 받고있는 자,
- 8. 약국조수,
- 9. 약제조수.”

bb) 제3항 제2번의 “약국보조원“ 다음에 “그리고 약국숙련공”을 덧붙인다.

cc) 제5항 제2문의 “제3항 제2번 내지 제4번”의 표현은 “제3항 제2번 내지 제4번과 제7번 내지 제9번”으로 대치된다.

c) 제17조 제6항 제1문 제2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2. 약사, 약사조수나 약품을 교부하는 약제기술자 또는 교부를 감독하는 약사의 이름표시”

d) 제35조 다음에 아래의 제35a조를 신설한다:

제 35a 조

- (1) 약국법 제 28a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약국에는 제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29조 제2항을 1996. 1. 1. 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약국이 이때까지 약국의 경영의 설비, 숫자, 공간과 배치에 있어 이 약국에 적용되었던 규정에 적절해야 한다.
 - (2) 제6조 제3항 제3문과 제11조 제2항 제1문의 규정과는 달리 위 제1항에 따른 약국에서는 약품 또는 반출물과 저장 용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포장되었을 때에만 그 동일성을 인정한다.
 - (3) 약국법 제28a조에 따라 병원에 소속된 외래병동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제공을 위해 승인을 받은 병원약국은 제31조 제1항과 달리 이 처방을 근거로 약품을 교부한다.
23. 1976. 8.24 제정되고 1990. 4.11. 법 제2조를 최종개정한 약품법 개정 법률은 제3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a) 제4조 다음에 제4a조를 신설한다:

제 4a 조

약품법 제14조 제1항과 달리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조 책임자는 1992.12.31.까지 동시에 감독 책임자이다. 판매 책임자는 늦어도 통일후 6개월 경과 후에 임명된다.

b) 제10조 다음 제10a조와 제10b조를 신설한다.

제 10a 조

통일당시 1986.12. 1. 제정된 제2차 약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제된 혈청, 실험용 알레르기물질, 실험용 항체와 실험용 혈청의 용기는 통일 조약 제3종 언급된 지역에서 제32조 제1항 제1문의 해제로 본다. 해제에는 의약품 법 제32조 제5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제 10f 조

약품법 제21조의 허가 의무나 제38조의 등록의무에 따르고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약국에서 제조되며 제공된 약품은 통일후 1992.12.31. 까지 허가나 등록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c) 제23조 다음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신설한다:

제 24 조

약품법 제2조 제1항이나 제2항 제1번의 의미의 의약품과 통일당시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거래하는 완제품 의약품은 통일이전의 동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약품법 제11조에 정한 포장첨가물 없이 1991.12.31. 까지 약제회사와 소매상과 도매상에 의해 거래된다. 약품사용시 사

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관할 연방 상급관청이 첨가물 경고문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통일당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의료조사시 약품법 제40조 제1항 제8번에 따른 안전성을 포함해야 한다.

제 26 조

통일당시 약품법 제2조 제1항이나 제2항 제1번의 의미상 약국밖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약품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약국 아닌 소매상과 거래한 자는 그가 동독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면 이 행위를 1992.12.31.까지 계속할 수 있다.

제 27 조

약품법 제67조의 공시의무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당시 이미 법규상의 행위를 한 자와 경영 및 설비에도 유효하다.

제 28 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약제기술자, 약국조수나 獸醫기술자로서의 교육을 마친 자는 약품법 제75조 제2항 제2번에 따른 약제조연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제 29 조

약품법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 통일이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

역에서 수요자에게 공급된 약품엔 적용치 않는다.

제 30 조

연방 가정, 청소년, 여성 및 보건 장관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관할관청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령을 통해 약품법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69조와 제72조부터 제73a조까지에 따른 감독업무를 1994.12.31.까지 다른관청에 이관할 권한을 갖는다.

24. 1983. 2.24. 제정되고 1990. 4.11. 법 제3조를 개정한 1차 약품법 개정 법률은 제2항목의 제2조 다음에 제3조를 신설한다:

제 3 조

동물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통일당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배포가 허용된 약품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2항 제4항이 유효하다.

25. 1986. 8.16. 제정되고 1990. 4.11. 법 제4조를 최종 개정한 2차 약품법 개정법은 제2관 제4조 다음에 제5조를 신설한다:

제 5 조

통일당시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거래하고 있는 약품을 위한 제2조는 약품법 제11a조에 따라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제안할 의무에 적용한다.

26. 1984.12.21. 제정되고 1987.10.24. 개정된 의약품 경고문구 규정 제6조에 제3항을 보충한다:

“(3) 제1조부터 제3a조의 규정에 적합치 않고 통일당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거래하고 있는 약품은 통일이전 유효한 동독의 약품법에 적절하다면 1991.12.31.까지는 약제회사에 의해,

그 이후엔 도매 및 소매상인에 의해 거래된다.”

27. 1985. 3. 8. 제정되고, 1988. 3.25. 개정된 약제회사의 경영규정은 제18조에 제4항부터 제6항을 보충한다:

“(4)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 규정에 적절치 않게 제조되고 검증되거나 본령의 규정과 달리 표시되고 포장된 약품은 1991.12.31.까지만 약제회사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

(5)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설비와 영업장소는 1992.12.31. 까지 본령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할관청은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기한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6) 본 규정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조되고, 검증된 약품법 제2조 제2항 제2번부터 제4번까지의 의미상의 약품에는 1992.12.31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4)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령에 따라 바뀌지거나 포장 또는 표시되지 않은 약품은 1991.12.31.까지만 거래될 수 있다.

(5)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시설과 영업 장소는 늦어도 1992.12.31.까지는 이법에 적합해야 한다.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관할관청은 기한부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6) 제9조의 의미상 관할청의 승인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당시 약품 도매업자를 인정한다. 1991. 6.30.까지 최종적으로 승인이 신청되었다면 위 승인은 소멸한다. 기한내에 이루어진 결정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29. 1986.9.27. 제정되고, 1989.9.22. 개정된 처방전 규정 제4조 다음 제4a조를 신설한다.

제 4a 조

독일 처방전 제9관의 요건에 충분치 않거나 이 규정에 따라 제조되지 않고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거래된 약품은 통일이전 동독의 약품법에 적절하다면 1992.12.31.까지는 약제회사를 통해. 그 이후엔 도·소매

상을 통해 거래될 수 있다.

30. 1987. 1.28. 제정된 방사성나 이온광선으로 취급되는 약품에 대한 규정 제6조 다음 제6a조를 신설한다.

제 6a 조

본 규정의 요건에 적절치 않고 통일당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거래된 약품은 통일이전 유효했던 동독 약품법규에 적절하다면 1991.12. 31.까지는 약제기업을 통해, 그 이후엔 도소매상인에 의해 거래될 수 있다.

31. 1978. 6.20. 제정된 자유 거래된 약품의 소매시 전문지식증명에 대한 제정 제10조에 아래 내용을 보충한다:

“제1문은 통일이전 동독법에 따라 수여되었거나 통일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수여된 약제기술자, 약국조수, 약제조수나 약국 숙련공의 허가에도 유효하다.”

32. 1985. 5. 3. 공고되고 1988. 3.11. 규정 제3조를 개정된 獸醫약국에 대한 령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 현재의 법문은 제1항이 된다.
b)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의사의 약제처방권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2.12.31.까지 현행법에 따라 계속 행사할 수 있다.”

33. 1990. 7. 1. 제정된 유전인자 기술법 제41조 다음에 제41a조를 신설한다.

“독일통일에 의한 과도규정

제 41a 조

- (1) 1985.11.26. 유전인자 기술 물질의 재결합을 위한 원칙 1에 따른 설비는 제3조 제4번의 유전인자기술성의 설비로 본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1991.12.31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2) 안전등급 1로 유전인자기술 연구가 제1항 제1문에 따른 설비로 수행된다면 이 설비를 지체없이 유전인자기술 설비로 관할관청에 신고한다.
- (3) 유전인자기술 연구를 위해 1985.11.26. 유전기술 물질의 재결합을 위한 원칙에 따라 동독보건상의 허가가 있었다면 이 허가는 제8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허가로 간주한다.
- (4) 1985.11.26. 유전인자 기술 물질의 재결합을 위한 원칙에 따른 유전기술 연구에 통지만 필요하다면 이는 1991.3.31.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기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1. 7.28. 제정되고 1987. 1.27. 법 제8조를 개정한 마취제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마취제, 마취제와 동질성 물질, 에스테르 및 분자결합과 이온에 관계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제1조에 종사하고 통일 당시 제4조에 정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991.12.31 까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 그가 1992. 1. 1. 이전에 허가신청을 했다면 신청을 취소할 수 없을 때까지 또는 적법한 취소조치가 있을때 까지 그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 b) 위 a)항의 권리자로서 통일당시 마취제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1991.12.31.까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마취제의 종류 및 수량을 명기하여 연방보건청에 신고하고,
 2.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무효시킬 수 있다. 반환이나 무효화는 사전에 연방보건청에 통지한다.
 - c) 제14조와 상충되는 표시나 광고는 통일전 동독의 법규에 적합하다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제조되거나 통일이전 이 지

역에 반입된 마취제는 1992.12.31.까지 마취 제거래와 광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d)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마취제를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보관하고 보존한 경우에는 1992.12.31.까지는 지금까지 허용했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문은 약국이나 수의약국에서 보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 환각제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부여된 허가는 통일시기에도 정당하게 유효하다면 허가는 마취제법 제3조의 허가로 간주한다.
- f) 마취제법 제18조는 우선 1992년 제출된 신고에 적용한다.
- g) 조약 제13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마취제의 반환 또는 청산이 있을 때까지 동독의 중앙 환각제 사무소가 연방보건청의 업무인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마취제 거래를 수행하고 감독할 업무를 관장한다. 이는 1981.12.16. 제정된 마취제 무역거래령과 1981.12.16. 제정된 마취제 국내 거래령에 따른 연방 보건청의 업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 h) 마취제법 제26조는 통일 조약 제3조에 정한 지역의 국경부대, 동독 경찰, 재해 구조단에 단일 관청이 구성될 때까지 적절히 적용한다.
- i) 이 조약의 효력범위를 관할할 통일연방경찰이 창설될 때까지 마취제법 제27조에 의한 신고와 안내는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을 관할하는 현재의 기관이 연방보건청에 보고한다.

2. 1981.12.16. 제정되고 1986. 7.23. 개정된 마취제 처방전령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a) 마취제처방령 제5조 제2항의 마취제처방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aa) 1974. 1.28. 제정되고 1989. 4.27. 부터 1991.12.31.까지 환각제법 제6차 시행령으로 개정될 환각제법 제2차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환각제처방,
 - bb) 진료계통상 분리된 병원의 일부 필요한 병동이나 통합적인 병원을 위해 교부한 제2차 환각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서.

이 청구서는 1980.10.15. 공고되고, 1988. 7.23. 법 제2조를 개정
한 약국법 제14조 제2항과 제5항에 따른 공급계약내에서 병
원약국이 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에 의해서만 제공된다.

- b) 1991. 7. 1. 이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개업한 의사, 치
과 의사, 수의사는 마취제처방양식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관할관청
이 이 처방양식의 교부를 채택했다면 마취제처방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마취 제처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시점 이후 연방보건청에 마
취제처방을 요구한자는 남은 마취제처방 양식을 연방보건청에 반
환해야 한다.
3. 1979.12.18. 공고되고 1990. 6.26. 법 제7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 전
염병법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 a) 제18조는 통일당시 이미 식료품점을 경영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통
일 이후 1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 b) 제22조 제4항 제1문은 통일시점에 전염병확인을 위해 미생물학적
·혈청학적 조사를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자에 대해서 통일후 4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 c) 연방전염병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따
라 연방요양법과 그 시행령을 위해 발령한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
는 한 본령은 조약 제 V III 장 제iii절 제1번에 정한 기준으로 효력
이 있다. 지금까지 동독법에 따라 행한 중독법중피해를 위해 한 지
불은 연방요양법과 관련한 연방전염병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 까지에 따라 확보자금 한도내에서 계속 지급
을 보장한다. 동독의 해당규정이 이때까지 지불의 근거가 된다.
이미 행한 급부는 동일한 시기에 있어 연방요양법과 관련한 연방
전염병법에 따른 지불에 산입한다.
4. 1986. 5.22. 제정된 식수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부록II의 제1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통
일후 1년내에 확정할 수 있다.

- b)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부록Ⅱ제2번은 통일후 5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 c)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부록Ⅱ제3번은 통일후 3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 d)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부록Ⅱ제8번은 통일후 5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 e)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부록Ⅱ제10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통일 후 1년내에 확정 할 수 있다.
- f)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부록Ⅱ제13번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통일 후 1년내에 확정할 수 있다.
- g) 제3조와 관련한 부록Ⅳ제10번은 통일후 10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 H) 제3조와 관련한 부록Ⅳ제10번과 13번은 통일후 5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5.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6-4로 공고되고 1986.12.19. 법 제11조를 최종 개정한 성병예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제 20조에 지적된 대상은 이것이 동독에서 지금까지 유효한 현행법에 따라 거래될 수 있다면 연방보건청의 승인없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 후 1년간 거래될 수 있다.

업무 영역 E : 식료품법 및 생필품법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거나 보충된다:

1. 1977.6.16. 제정된 식료품통제관령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2항에 제3번과 제4번을 보충한다.

“3.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 령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식료품, 담배, 화장품 및 기타소모품의 유통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또는

4.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동독법규를 근거로 교육을 시작하고 통일후 현행 동독법에 따라 교육을 종료한 자.”

b) 제3항의 “제1항 제1번”은 “제1항 제1번과 제3번”으로 대치된다.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 1974. 8.15. 제정되고, 1990. 7.25.의 우유와 버터법 제20조에 의거해 개정된 식료품 및 생필품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법규와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1992.12.31.까지 물품이 제조되고 거래될 수 있다. 여기서 식료품 및 생필품법 제13조와는 달리 거래되고 있는 물품은 “광선처리”나 “이온광선처리”란 말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5-4-7로 공고되고 1987.12. 3.령 제3조를 최종 개정한 아이스크림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이 령과는 법규와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1992.12.31.까지 물품이 제조되고 거래될 수 있다.
 - b)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과 기본법이 지금까지 효력이 없었던 동베를린지역을 관할하는 식료품감독청은 특별조치로서 a)항에 따른 물품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5-4-8로 공고되고 1975. 5.16. 령 제19조를 개정한 면류식품(Teigwaren)에 관한 령,
4.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5-4-23로 공고되고 1987.12. 3. 령 제4조를 개정된 코카인 함유 청량음료에 대한 령
5.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5-4-23로 공고되고 1987.12. 3. 령 제4조를 개정된 비타민 함유 식료품령
6.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82. 1.21. 공고되고 1988.3.25. 개정된 육류령
7.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72.12.19. 제정되고 1990. 5.16. 령 제3조를

개정된 식료품 광선령

8. 위 2번의 기준을 갖고 1972. 4.25. 제정되고 1990. 6.13 령 제5조를 개정한 식초 거래령
9. 위 2번의 기준을 갖고 1975. 2.19 제정되고 1981.12.22. 령 제7조 개정된 계란 생산령
10.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88. 5.10. 제정되고 1984. 3.13. 령 제4조를 개정한 잘게 썬 육류령(Hackfleisch)
11.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76.11.30. 제정된 아프라톡신령(Aflatoxin, 絲狀菌의 일종)
12.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88. 8.25. 공고되고 1990. 6.13. 령 제4조를 개정한 영양가치표시령
13.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81.12.22. 제정되고 1985. 4. 2. 개정된 향료령
14.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59.12.19. 제정되고 1979.12.13. 령 제3조를 개정된 식수정화령
15.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89. 7.25. 제정된 용해제 최고량령
16.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88. 3.23. 제정된 유해요소 최고량령
17.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77.12.20. 제정되고 1986. 3.21. 개정된 담배령
18. 위 2번의 기준을 갖는 1981.12.15. 제정된 니트로사민 (Nitrosamin) 생필품령
19. 1990. 7. 2. 제정된 맥주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본 령과 달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는 현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1992.12.31.까지 거래될 수 있다.
 - b)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과 기본법이 효력이 없었던 동베를린 지역을 관할하는 식료품 감독청은 특별조치로서 a)항에 따른 물품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만 거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0. 위 1번의 기준을 갖는 연방관보 제3조 목록 2125-1로 공고되고

1977.12.16. 령 제8조를 개정한 식료품 향료와 일용품 제조시 건강에 해로운 물질사용에 관한 법

21. 위 제1번의 기준을 갖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5-9 공고되고
1974.3.2. 법 제63조를 최종 개정한 납 아연 함유물질을 거래에 관한 법
22. 위 1번의 기준을 갖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2125-10으로 공고되고
1974. 3. 2. 법 제64조를 최종개정한 연점화물(Phosphorzuendwaren)에 관한 법
23. 1987. 4.13. 제정된 식료품운송용기령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본 령에 적절치 못한 운송용기는 현지법에 적합하다면 1991.12.31.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업무영역 F : 육류및 조류육위생법 (Gefluegelfleischhygienerecht)

제 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폐지되거나 보충된다:

1. 1987. 2.24. 공고된 육류위생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제4조 제1항 제11번 제2문과 제12번의 제2문은 삭제한다.
 - b) 제6조 제5항에 다음번호를 보충한다:

“4. 통일되기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1항 1문에 따른 감독시 참여했던 자나,

5. 통일이전 동독 법규정을 근거로 한 교육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수료하거나 시작하고 현지법에 따라 수료하게 될 자.”
2. 1973. 7.24. 제정된 조류육류 규정 제2조에 제4항을 보충한다.

“(4)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제1번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통일되기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본령 제1조의 업

무를 관장하거나

2. 통일이전 동독법규정을 근거로 한 교육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수료하거나 시작하고 현지법에 따라 수료하게 될 자.”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 1986.10.30. 제정되고 1988. 3.11. 개정된 육류위생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국내 유통을 위하여 본령이 주문하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경영체는 지금까지 허가된 공간 시설 및 시설 대상을 1992.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업무 영역 G: 수의사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폐지, 개정 또는 보충된다:

1. 1981.11.20. 공고되고, 1986. 6.20. 최종 개정된 연방수의사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항의 제2문은 삭제된다.
 - bb) 제1a항부터 제4항에서 제1항의 뜻에 따른 “제1문”은 삭제한다.
 - b)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8조 제1항, 제9a조 제1항, 제13조 제1항과 제2항 제1문, 제15조 제2항 및 제15a조에서 각각 “제14조” 제1항의 지시 다음 “1문”이라는 진술은 삭제한다.
 - c)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승인을 부여함에 있어서 수의사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제4조

제1a항 제1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제15조 제4항의 교육 또는 제15a조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교육을 종료하지 못하면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d) 제7조 제1항 제2문의 “제1항 제2문”은 삭제한다.

e)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aa) 제1항의 제2문은 삭제된다

“(1) 신청자가 수의사 시험을 치르거나 제15조 제6항의 경우 수의사 본시험을 실시한 주의 관할관청이 제4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다.”

bb) 제2항 1문의 “제2항 또는”은 삭제한다.

cc) 제5항의 “제4조 제1항 제2문 또는”은 삭제한다.

f) 제15조에 다음 항을 신설한다:

“(4) 통일까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수의사를 개업할 수 있는 승인 또는 임명은 본법의 승인으로 간주한다.

(5) 통일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수의사를 개업할 허가와 1974. 7. 3. 제정된 수의사 승인령 제12조에 의거해 통일때까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가한부의 서면의 수의사개업 허가는 현재 내용으로 제2조 제2항의 허가로 본다.

(6) 통일 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대학에서 이미 시작한 수의학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은 통일때까지 유효한 법규에 따라 학업을 수료한다. 학업의 수료는 제4조 제1항 제4번에 따른 수의학시험 합격을 통한 수료와 대등하다. 통일후 수의학공부를 시작한 학생에게도 학업시작부터 수의사 승인령을 적용한다.”

2. 1986. 4.22. 제정된 수의사 승인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a) 제2항의 “제1항 제2문”은 삭제한다.

bb) 제2항 제3문의 제4조 제1항을 지칭한 다음의 “제1문”은 삭제한다.

b) 제67조 제1항 제2문은 아래와 같이 문구 수정한다:

“신청자가 아래 지역에 주거지를 갖는 경우 해당관청이 본령의 효력 범위내에 있는 대학에서 수의학 입학 허가나 등록을 한 신청자를 결정을 한다;

1. 바덴부르템베르그주나 바이에른 주이거나 바이에른 주 관할관청
2. 베를린, 브란덴부르그, 메클렌부르그-포포메른 또는 홀슈타인 주 거주자나 베를린 주의 관할관청
3. 브레멘, 함부르그, 니더작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 주 거주자는 헤세센주의 관할 관청,
4. 헝센, 라이란드-팔츠 또는 자르란드 주 거주자는 헤센주 관할 관청
5. 작센, 작센-안할트나 투링겐 작센주 거주자는 작센주 관할 관청 제1번부터 제5번까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니더작센 주의 관할관청이 결정한다.

c) 제69조에 다음 항을 보충한다:

“(4) 통일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대학에서 수의학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수의학학생에 관련해 개설된 의무교과과정에는 제2조에 정한 전문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닐 때 제2조 제2문과 제3문이 유효하다. 제58조와 관련한 제1조 제1문 제2번에 따른 실무 교육과 관련해 통일 후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대학에서 이미 시작한 수의학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은 현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조 제1문 제2번 c)항에 따른 실무교육대신 1996.12.31까지 수의사본시험 합격 후 최소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지닐 때 제63조의 규정은 이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 1988. 2.23. 공고된 수의사의료수가령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a) aa)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진료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행해졌다면 20%를 감액한다.
 - bb) 통일이전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행해진 진료는 현지의 현행법에 따라 보상된다.
 - b) 연방정부는 연방 상원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법령을 통해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을 위해 정한 수수료 경감을 예상된 금액 변경에 적절하게 할 권한이 있다.

업무영역 H : 가족과 사회

제 i 절

아래의 법규는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 제외된다:

1. 1979. 7.23. 제정되고 1990. 6.28.법 제22조를 최종 개정한 생계비 선지급법
2. 1984. 7.13. 제정되고 1988. 7.20. 개정된 “출생전 모자보호” 재단설치법
3. 1988.11. 7. 제정된 1987년도와 1988년도의 묘지법상 묘지관리와 수리를 위한 총액 명령

제 iii 절

연방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거나 보충된다:

1. 1990. 1.30. 공고되고 1990. 7. 9. 법 제9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 자녀 부양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a)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3항 제2문의 종지부는; 으로 대치되며 다음 문장을 부가한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행한 복무는 기본병역이나 현역군 복무나 동일하게 다룬다.”

bb) 제5항 제3문의 “체류”와 “갖고”사이에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또는 소련”으로 대치한다.

b)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aa) 제3항 제2문에 다음 문장을 보충한다:

“하지만 이는 아동의 보호나 자녀의 부모부양권이 있는 어느 한쪽의 부모에게 보장된다.”

bb) 제4항 1문의 “후견법정” 다음에 아래 말을 덧붙인다.

“또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해당법정”

c) 제44c조 다음에 아래의 제44d조를 신설한다.

제 44d 조

독일통일에 의한 과도 규정

- (1) 제2조 제2항 제6문과 제4항 제3문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이 있는 규정들은 연방부양수당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2)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는 달리 1990.12월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자녀부양수당을 수령한 권리자는 그가 주소나 주거지를 이 지역에 함께 갖고 자녀가 이런 고려조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자녀 부양수당을 받는다. 이 경우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할관청에 이를 위한 신청이 제기된 월초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권리자에게 제1문에 의해 행한 지급을 유효케 해야 한다.
- (3) 제8조 제1항 제1문 제1번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법정 연금보험이나 사고보험상의 연금을 위한 자녀부양금 청구권은 1991.12.31까지 고려되지 아니한다.
- (4) 1991년과 1992년의 급부에 있어 전년도에 대부분 기간동안 주거지를 통일조약 제32조에 언급된 지역에 지냈던 권리자에 대해 제11조 제3

항의 적용은 배제된다; 이는 결혼하고 배우자와 1년이상 별거하지 않은 권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 권리자에 반하여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1991년의 급부에 있어 이 권리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4항에 따라 조치된다; 그러나 권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유보하여 예견되는 수입의 소명없이 자녀부양 수당을 지급한다.
 2. 1992년의 급부에 있어서는 제11조 제4항을 유보하고 1991년도 수입이 기준이 된다. 아직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입을 소명하지 않고 반환을 유보하여 자녀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제3항 제4문부터 제6문까지는 적절히 적용한다.
- (5) 급부년도 1991년에는 권리자를 위하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소나 주거지를 지니고 있을 때 제11a조 제8항에 따른 자녀수당 보조금을 예견되는 수입의 소명없이 반환을 유보하여 지급한다.
- (6) 제15조 제1항과 달리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45조 제1항 a)의 제1문에 표시된 사용주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권리자에게 1991년까지의 자녀 양육수당이 위의 지역에서 1990년 12월에 자녀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 지급카드를 근거로 하여 제10조에 기초가 되는 요구서로 사용자에게 의해서 제15조에 정한 관할 관청을 통해 지급된다. 제11조 제3항 제5문과 제6문은 적절히 적용한다. 사용자는 그가 근로자를 위해 지급을 유예했던 근로소득세의 지급총액을 징수해야하며 또 소득세 신고시 그 금액을 별도 신고해야 한다. 자녀양육수당을 위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는 세무서의 신청으로 초과금을 사용자에게 상환한다. 세무서는 사용자에게 의해 지급된 자녀 양육수당을 그의 업무를 관장하는 노동관서와 함께 정산한다.
- (7)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중앙 주민등록청이 통일 후 지체없이 신고등록부에 미성년자의 자료와 함께 모든 주민 및 그 자녀의 명부를 노동관서에 이관한다. 그 주요내용은:
1. 성명과 이름, 유아명과 학업수준

2. 가옥, 다수의 가옥인 경우는 주요건물
3. 출생일
4. 성별
5. 결혼여부

연방관청은 이관된 자료를 다만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지급금수령가능자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신청서 우송과 청구권주장을 위해 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방관청은 1991. 3.31. 까지 어떤 신청도 하지 않은 주민과 그의 자녀의 자료를 지체없이 말소해야 한다.”

- d) 제44조 제7항은 통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기타 a)항부터 c)항까지의 개정내용은 1991. 1. 1.에 효력을 발생한다.
2. 1989. 7.25 공고된 연방교육비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제1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4) 주간 작업시간이 사회법 제4권 제8조에 따른 근무시간 한계를 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건을 구비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비청구권을 갖는다.

1. 유럽공동체 회원국가의 국민이나,
2.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국경이주자.”

- b) 제15조 1항의 1문 다음에 아래 문장을 덧붙인다.

“주간 작업시간이 최저 근무한계 이하인 제1조 제4항에 정한 자는 교육휴가청구권을 갖는다.”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1. 1990. 1.30. 공고되고 1990. 7. 9. 법 제9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자녀수당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제44조 제7항은 통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 b) 그 밖에 연방자녀수당법은 1991. 1.1 .부터 적용한다. 1990.12.31. 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현행법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처리된다.

지급관청이 자녀양육수당을 수령할 권리자에게 신청인으로서의 성명과 이름 및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자녀에대한 증명서와 이 지불금액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한다.

2. 1989.6.25. 공고된 연방교육비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a) 본법은 1991. 1. 1. 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또 1990.12.31.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다른 규정을 조건으로 한 집행은 지역행 정관서와 지역 시청에 위임한다.
- c) 수입 산정은 1991년과 1992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한 연방교육비 법 제6조 제1항 제1문과는 달리 자녀가 태어난 해의 예상수입이 근거가 된다.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배우자의 월수입과 교육비가 수입에 의존적인 시기에 직업을 가진 경우엔 그의 고정 적 월정수입을 소명하여야 한다.

3. 1987. 1.20. 공고되고 1990. 6.26. 법 제4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사회 보조금 법은 1991. 1. 1.에 아래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 a) 다른 지방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이 사회보 조금의 담당자가 된다. 주는 업무집행을 위해 사회보조금의 지역 담당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관서가 이의 결정을 발령할 수 있다.
- b)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업무와 설비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 역에 있거나 그밖에 처분권 범위내에 있다면 청구권은 사회보조금 담당자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충분한 사회적 직무와 설비의 창출에 영향을 미칠 사회보조금담당자의 의무(사회법전 제1권 제 17조 제1항 2번)엔 변동이 없다.
- c) 가장의(제22조 제1항) 월간 정규수입은 400마르크이다. 필요한 신규 확정은 정규수입량과 관련하여 제22조 제1항에 따른다.

- d) 제23조 제1항 제1번과 제2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e) 만 18세 미만의 고아원, 수용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있는 보조금 수령인의 개인 지급 월정 현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21조 제3항)
- aa) 만 7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10마르크
 - bb) 8세부터 만 14세까지는 20마르크
 - cc) 15세부터 만18세까지는 40마르크
- 신확정은 제21조 제3항 제3문에 내린다.
- f) 제7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액은 700마르크이고 제81조 제1항에 따라서는 1050마르크이며, 제81조 제2항에 따라서는 1450마르크이다.
- g) 맹인 보조금(제67조)과 양육수당(제69조)은 아래와 같다
- aa) 만 18세이상의 맹인보조금은 442마르크
 - bb) 만18세 미만의 맹인보조금은 220마르크
 - cc) 제69조 제4항 제1문에 따른 양육수당은 163마르크
 - dd) 제24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의 양육수당은 442마르크
- h) 연방 소년, 가족, 여성과 보건 장관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경제장관 및 연방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그 지역의 수입수준을 고려해 맹인보조금과 양육수당 및 기본수입한계금을 정한다.
- i) 소년, 가족, 여성 및 보건 연방장관은 1991. 1. 1. 부터 유효한 규정에 따라 연방사회보조금법과 선행조치를 공고한다.
4. 1962. 7.20. 제정되고, 1990. 3.21. 개정된 정규수입령은 1991. 1. 1. 부터 적용할 수 있다.
5. 1974. 6.28. 제정된 연방 사회 보조금법 제24조 제2항 제1문의 시행령은 1991. 1.1 .부터 적용한다.
6. 1975. .2. 1. 제정된 보조금 분류령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7. 1976. 6. 9. 제정한 연방사회보조금법 제72조의 시행령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8. 1962.11.28. 제정되고 1976.11.23. 개정된 연방사회 보조금법 제76조 시행령은 1991. 1. 1. 부터 적용한다.
9. 1975. 5.12. 제정한 연방사회보조금법 제81조 제1항 제3번의 시행령은 1991. 1. 1. 부터 적용한다.
10. 1988. 2.11. 제정된 연방사회보조금법 제88조 제2항 제8번의 시행령은 1991. 1. 1.부터 적용한다
11. 1965. 7. 1. 제정되고 1990. 6.28. 최종 개정된 묘지법은 1995. 1. 1. 부터 시행한다.
12. 1990. 4.23. 공고된 주거법은 아래에 따른다.
통일당시 존재하던 주거관계는 이때부터 신법에 따라 정리한다.
13. 1983. 5. 3. 공고된 주거최소건축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제30조 제1항 제2문의 기간 산정에 있어서 통일 당일이 본 령의 효력 발생하는 시점으로 본다.
14. 1976.7.19. 정한 주거관리업무상 양로원, 노령자 기숙사와 성인 요양원의 관리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973.3.1. 제정한 요양원과 일과후 주거에 관한 령에 따라 구성한 주거위원회는 본령에 정한 조연자로 본다.
15. 1971.12.17. 제정되고 1988.7.20. 개정된 “지체부자유아보호”를 위한 재단설치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마지막 문장에 정한 “1983”은 “1993”으로 수정한다.

제 XII 장 연방교통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철도

제 III 절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30-1로 공포되고, 1986.11.26. 최종 개정된 일반 연방 철도법은(BGBI. I p.2089)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6a조는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b)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4항과 제5항, 제6g조, 제7조 제2항, 제8a조 제3항 그리고 제9조의 경우 독일제국철도는 독일연방철도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에 선다.
2.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31-2로 공포된 독일연방철도의 재산 관계에 관한 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1조에 대하여는 조약 제2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31-1로 공포되고, 1990.6.28. 최종 개정된 연방철도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BGBI. I p.1221.):
 - a) 연방철도법의 규정들은 “독일제국철도” 특별자산에 적용된다.
 - b)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 aa) 서베를린에 있는 전차에 사용되고 있는 제국철도 자산은 1983년 12월 29일에 베를린 상원과 독일제국철도청과 합의에 의거하여 1993. 12.31.까지 베를린주에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정적으로 이 기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독일 제국철도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 업무와 재정부담에 관련된 관계자는 이 시점까지 베를린지역에 공공 근거리 인력수송에 대한 주 이외의 지역과 연결하는 것에 관해서는 인지지킬 책임이 있다.
 - bb) 영업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서베를린에 있는 과거의 제국철도 자산은 연방교통장관에 의해서 두개의 철도가 연결된 때 까지 현존 하는 법과 의무에 따라 그리고 과거의 제국철도재산에 대한 행정청의 지시에 따라 통제된다. 운영계획과 연말결산에 대한 허가는 연방재무장관의 합의를 얻어 반포된다.
 - c)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통일효력발생 이전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독일제국철도의 건설과 시설 변경에 관한 소송은 연방 철도법과 행정조치법에 의하여 처리된다.

4.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34-1로 공포되고, 1989.6.30. 제5조 제2항에 따른 제국철도망 허가 예외 촉진 조건을 최종 개정한 철도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BGBl. I p.1273):
 통일효력 발생까지 국제적인 철도교통에 관한 1980년 5월 9일의 합의 (COTIF) BFBl. 1985 II p.130)를 기초로하여 교통이 이루어 지는 양독의 철도교통에 있어서 제7조와는 달리 특별 합의를 화물의 국제소송 (ER/CIM - 부록 B COTIF)에 대한 협약을 위한 통일된 범규정의 제6관 제4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승인한다.
5. 1971년 3월 21일에 공포된 철도건설법(BGBl. I p.337)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독일 제국철도의 철로는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 호에 언급된 경우와 독일 연방철도의 철로와 동등하다.
6. 1967.5.8. 제정되고, 1981.12.18. 최종 개정한 철도건설과 운영규정 (BGBl. II p.1563) 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기존의 설치물은 제3조의 관청에서 1928.7.17. 제정되고, 1943.7.23. 최종 개정된(RGBl. II p.361) 철도건설 및 운영 규정에 따라 1993. 12.31.까지 허가할 수 있다.
 - b) 철도경찰의 업무를 띠고 있는 연방국경수비대 소속원은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철도경찰공무원이 된다.
 - c) 철도경찰의 업무를 띠고 있는 연방국경수비대는 제61조에 따라 철도경찰청이 된다.
7. 1972.2.25. 제정되고, 1983.11.21. 개정된 협궤철도 건설 및 운영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기존의 설치물에 대해서는 제3조에 언급된 관청에서 1928년 7월 17일 에 제정된 협궤 철도건설과 운영규정(RGBl. II p.285)의 계속적인 적용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8. 1959.10.7. 제정되고, 1986.7.7. 최종 개정된 철도 신호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부록 제c절 제2호는 교통부장관의 허가와 함께 1970.9.16. 제정된 독일 제국철도 시행령 제301의 B절과는 별도의 신호체계를 위하여 확대 적용된다.

9. 1977.8.2. 제정되고(BGBI. I p.1465), 1989.6.30. 최종 개정안(BGBI. I p.1273) 철도공동운영 봉사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10. 제6번부터 제8번까지의 규정 적용에 있어 특히 설비와 차량의 설치 또는 주요 변경에 관해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11. 특별한 사항하에서 제1번부터 제9번까지 언급된 법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독일제국철도에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연방법의 제규정들도 이와 같으며 독일연방철도 특별규정에서도 같다.

업무영역 B : 도로교통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 적용에 있어서 다음 법률은 제외된다 :

1. 1986.12.9. 제정되고, 1989.12.5. 개정된 화물 수송 최대량 규정(BGBI. I 231)

제 iii 절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1.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231-1로 공포되고, 1987.1.28. 최종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BGBI. I p.486) :
 - a) 제24a조는 1992.12.31.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b) 동독의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 제37조에서 제47조까지 그리고 1987.10.20. 제정된(BGBI. I p.2305) 차량등록규정의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제5조, 제8조 그리고 제15조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차량등록부에 등재된 허가는 1993.12.31.까지

운영된다.

- c) 동독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는 중앙차량등록처에 통보되며 중앙차량 등록처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32조에서 제47조까지의 적용과 차량등록규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그리고 제17조를 적용하여 1993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한다.
 - d) 보험에 대한 표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과 차량 등록 규정의 법규는 1991.1.1.부터 적용된다; 제34조 제5항 제2문은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e) 연방교통부장관은 법규에 따라 최고위층 담당관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 없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도로교통허가 규정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번호판의 표시를 확정한다. 이러한 권한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다.
 - f) 연방차량관리청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9조부터 제30a조까지의 적용과 도로교통허가규정의 제29조에서 제30d조 내용을 적용하며 기존 중앙차량등록처는 교통중앙등록처에 이 관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 g) 의학 및 심리학적인 검사기관의 업무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독일 민주공화국의 교통의학연구소가 수행한다.
 - h) 임시운전면허에 대한 규정이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24a조의 규정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 i) 도로교통법 제7조에서 제20조까지는 통일효력 발생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1988.9.28.에 공포되고(BGBl. I p.1973), 1990.7.23. 최종 개정된(BGBl. I p.1489) 도로교통허가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1) 의학 및 심리검사소의 임무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동독 교통의학 연구소에서 수행한다.
 - (2) 지금까지 동독의 규정에 따라 A급의 면허증을 소유한 자는 제4a

조의 내용에 따라 소형 2륜차 운전교육 교사자격이 있다.

- (3) 지금까지 동독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운전면허와 국가인민군대의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D급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모든 권리의 효력을 갖는다.
- (4) 지금까지 동독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운전면허 D급은 1993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이후에 버스운행을 위한 동등한 운전 면허의 취득은 제15f조에 의한 연장 규정에 따라 허가된다.
- (5) 동독에 의하여 발행한 버스와 택시의 운행을 위안 인력 운송 면허에 대한 규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이후에 인력수송에 관한 이와 동등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제15f조 따른 연장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진다.
- (6) 지금까지 동독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B급 운전면허는 허가된 총중량이 7.5t 이하 그리고 축이 하나인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운행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의 BE급 운전면허는 엔진부분이 있는 차량의 허가 된 총중량이 3.5t 이하인 차량의 견인을 할 수 있다.
- (7) 지금까지 독일민주공화국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A,B,D 그리고 M 급 운전면허는 5급 화물 차량의 운행을 할 수 있다.
- (8) 지금까지 동독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T급 운전면허는 응급환자 수송 용차량의 운행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제18조 제2항 제5호).
- (9) 제6호부터 제8번까지의 규정은 허가된 운전면허에 적용된다.
- (10) 동독의 기존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배기량이 150 cm³ 까지로 제한된 2륜차에 대한 A급 운전면허의 소유자는 18세 이상인자는 1a급의 2륜 차, 20세 이상인 자는 1급 2륜차를 운행할 수 있다.
- (11) 제10호 규정을 침해하지 않으며 제7조와는 다르게 동독에서 허가된 운전면허에는 동독의 연소자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 (12) 동독의 기존의 운전면허와 국가인민군의 운전면허양식은 계속 효력을 지닌다.
- (13) 제9a조에 따른 시력검사와 제15e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15f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력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기구

를 설치 한 개업의에 의해서 행해지며 검사서도 발급할 수 있다.

- (14) 면허시험 차량은 1991년 12월 31일 까지 1a급과 최소한 15킬로와트까지의 동력 2륜차, 그리고 현존하는 배기량이 50cm³ 이상 150cm³ 이하인 1b급 2륜차량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용차량은 라디오 수신기를 설치할 수 없다.
- (15) 2급 시험용 차량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중량이 최소한 10t이며 2중브레이크장치를 보유하지 않은 화물차로 한다.
- (16) 3급 시험용차량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최고속도 100km 이상인 차종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로 한다.
- (17) 교통중앙관리처의 조치를 위하여 교통중앙관리처에 적용되는 규정을 안내를 통보하기 위하여 동독 운전면허 관리처와 협조한다.
- (18) 동독에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취소된 운전면허증의 새로운 발급에 대해서 제15c조의 내용이 적용된다.
- (19) 다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14a조, 제15조, 제2항 제7호와 제8호, 부록Ⅳ 제D절.
- (20) 제18조 제1항과 제4항은 1991년 3월 1일 부터 효력을 갖는다.
- (21) 소형2륜차와 보조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는 지금까지 적용되던 동독의 규정에 따라 1992년 2월 28일까지 최초로 운행되었다면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소형2륜차와 보조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로 인정 된다.
- (22) 동독의 규정에 따라 동력을 장착한 환자용 의자는 1991년 2월 28일 까지 최초로 운행되었다면 제18조 제2항 제5호 따라 기계화한 환자용 의자로 인정한다.
- (23) 동독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일반 영업허가는 생산된 차량이 1944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운행된 경우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하다.
- (24) 위 제23번에 따른 일반 경영허가를 위한 추가는 해당 경영 허가의 효력이 경과하기 전까지 허용된다. 경영허가 연장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다.

- (25) 동독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개개의 경영허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운행되는 차량에 한하여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26) 1958.3.20. 체결된 양독협정에 따라(GBI. II 1976. p.307, 1978 p.32, 1987 p.24) 차량의 장착부품과 차량허가 및 검사필증은 제21a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 (27) 동독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조형식 허가는 제22조에 따라 허가 의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22a조의 적용을 받는다.
- (28) 동독의 규정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번호판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독의 규정에 따라 검사증과 운행증을 발행·사용할 수 있다.
- (29) 관할 주의 상급 관청 혹은 이 상급 관청에 의하여 지정된 관서에 의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차량표시판을 새로 발급받도록 통보했으나 이를 이행하게 않았을 때에는 위 제28번에의한 번호판은 사용할 수 없다.
- (30) 제29조에 의한 검사는 부록 V의 유형에 따른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31)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은 관할주상급 관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지정된 관할관청에 의하여 제29조에 따른 새번호판을 달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이 1년인 차량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2년인 차량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2) 제29조에 따라 제동장치 특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운송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첫번째 예정된 정기검사 이전에 제동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동장치 특별검사는 3개월내에 실시해야 한다.
- (33) 제29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의 정기검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중간검사 기한이 시작된다.

- (34) 제29a조에서 제29d조까지는 통일효력의 발생과 동시에 적용한다. 보험증명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식 6 대신에 동독 규정에 따른 3중카드가 사용된다.
- (35) 1965.4.5. 제정되고, 1988.3.22. 최종 개정된 의무보험법에 근거하여(BGBI. I p.358), 1991년 1월 1까지 맺어진 책임 보험은 지금까지 동독의 규정에 따라 맺어진 보험관계 권리가 해지되며, 보험회사는 제29a조의 양식6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며 차량소지자는 이 증명서를 해당 차량의 관할청에 통보해야 한다.
- (36) 제29e조와 제29g조 그리고 제29h조는 통일효력 발생과 함께 적용된다. 제29e조에 따른 1991/1992 회계년도 보험약관신청은 1991년 1월과 2월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다.
- (37) 동독의 규정에 따른 최고허용 용적과 적재량에 대한 예외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6월 30일 까지 적용된다.
- (38) 동독의 규정에 따라 배기가스특별검사를 받아야하는 차량은 제47a조에 의한 최초검사를 늦어도 동독법에 따라 검사받은 후 1년 내에 받아야 한다.
- (39) 배기가스특별검사 대상에 제외된 차량은 제47a조에 따른 최초의 검사를 늦어도 제29조에 따른 차기 정기검사 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 (40) 제47b조와는 달리 동독의 규정에 따른 인정은 1991년 6월 30일 까지 유효하다.
- (41) 제35조, 제56조 제2항 제6호는 1991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 (42) 제57a조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된다.
- (43) 제조, 운행 그리고 장착에 관한 동독의 규정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차량은 다음의 경우 계속 적법하다 :
1. 지정된 다음의 정기검사(제29조) 까지 제35a조 제7항에서 9항

- 까지(관련사항이 있다면), 제35g조, 제35h조, 제36조 제2a항 제2호와 제3호, 제41조 제14항과 제53a조 그리고 제54b조의 규정과 일치하는 차량.
2. 1991년 7월 1일까지 제56조 제3항, 제57a조, 제58조의 규정과 일치하는 차량
 3.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41조 제17항의 규정과 일치하는 차량
- (44) 동독의 규정에 따른 응급처치 기구는 제35h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동독의 규정이 정하는 소화기는 제35g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동독규정이 정하는 삼각경고 표시 및 경고 등은 제53a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적용된다.
- (45) 이미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새로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전거는 제67조 제3항 제4호, 제4항 제3호 그리고 제7항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까지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 (46) 동독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전주가 기술 검사청의 후속으로 설치된 기술검사는 후속기관은 부록 제VIII절 제vii절의 내용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된다. 규정 7.2.2.에서 7.2.6.까지 그리고 7.5는 유효하다.
- (47) 부록 제VIII 7.7절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기술 검사소 운영자에 적용한다.
3. 1981.4.22. 제정되고(BGBl. I p.393), 1988.6.14. 개정된 도로교통허가 규정 제28번째의 규정은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따른다: 위 규정은 동독 규정에 따라 발급된 T급 운전면허 및 이와 유사한 운전면허에 적용된다.
 4. 1988.12.19. 제정된 도로교통허가 규정(BGBl. I p.2412) 제37번째 예외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1조의 “혹은 2행정 엔진으로 만들어진”은 삭제된다.
 5. 연방관보 제III부 목록 9232-6로 공포되고, 1986.2.18. 최종 개정된 자동차 부속품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4조와는 달리 난방, 빙판보호, 안전유리로 만든 차량유리, 브레이크,

기술적인 연결부위, 정보시설, 안전띠, 어린이 안전의자, 주행기 록기 및 계기 검사는 동독의 드레스덴시의 검사소가 관할한다.

6. 1987.10.20. 제정된 차량등록규정(BGBI. I p.2305)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지역의 차량등록처에는 자동차세징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축적은 늦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등록처에 축적된 자료를 제시된 방법에 따라 분리해야 한다.
7. 1971.12.22. 제정되고(BGBI. I p.2086), 1989.6.8. 최종 개정된(BGBI. I p.1026) 자동차 공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1991년 3월 15일까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진 또는 앞으로 행해질 공인자의 공적인 인정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자동차공 인법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효력을 갖는다.
8. 1969.8.25. 제정되고 1989.6.8. 최종 개정된 운전교습자에 관한 법(BGBI. I p.1026)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운전교습허가(제2조)의 교부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하여 응시자가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독의 법에 따라 199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b) 동독의 법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교습허가(유효한 운전교습강사증) 소유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운전교육을 할 수 있다.
 - c) b)항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전교육 담당자 학원에서 4주간의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연방교통장관 강령(1987.1.22)에 따라 행동경칙에 관한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d) c)에 따른 재교육의 요구는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 없이 주상급 관찰 청의 의사를 참고로 연방교통장관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 e) 지금까지의 동독 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학원과 그 지부에 대한 인가는 계속 효력이 있다(제11조, 제14조, 제21조).
 - f) 동독의 법에 따라 인가된 자동차학원 강사양성소는 유효하다(제22조, 제29조).
9. 1969.9.16. 제정되고(BGBI. I p.1763), 1990.7.23. 최종 개정된(BGBI.

I p.1484) 자동차학원 강사법 시행규칙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현행자동차학원 강사자격증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조).
 - b) 제4조의 내용과는 달리 동독의 법에 따라 필요한 교재가 갖추어져 있으면 199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 c) 1a급에 대한 교육은 1991년 10월 31일까지 최소한 15kw의 엔진출력을 갖는 2륜차, 1b급의 교육은 1991년 10월 31일까지 50cm³ 이상 150cm³까지의 배기량을 가진(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2륜차를 이용할 수 있다.
 - d) 2급을 위한 교육은 1993년 9월 30일까지 견인 화물차, 2중브레이크가 없고 허용된 총중량이 10t이하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4호).
 - e) 3급의 교육은 1993년 10월 31일까지 차형태에 맞는 최대속도가 100km/h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5호).
 - f) 제5조 제2항 제1호는 1991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g) 1991년 1월 1일 이전 운전 교육차량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운전장치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1993년 9월 30일까지 도로교통허가규정 제22조에 의한 운행허가(제5조 제2항 제2호)는 필요치 않다.
 - h) 제5조 제2항 제3호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i) 동독의 법에 따라 법학과를 졸업한 자동차 학원 강사는 제7조 제1항 제1호에 관계없이 1993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충분하다.
 - j) 동독의 법에 의하여 필요한 교육자재가 갖추어져 있으면 제9조의 내용에 관계없이 1991년 6월 30일까지는 이로서 충분하다.
 - k) 제10조에 의한 교육용차량에 대해서는 c에서 h까지의 내용이 적용된다.
10. 1977.3.13. 제정되고(BGBI. I p.733), 1987.11.20. 최종 개정된(BGBI. I p.2387) 자동차 학원 강사 교육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미 시작된 교육은 지금까지의 규정에 따라 끝까지 이수된다(제2조, 제3조, 제4조).

11. 1979.7.27. 제정되고(BGBI. I p.1263), 1980.12.9. 최종 개정된(BGBI. I p.2240) 자동차 학원 강사 시험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동독의 법에 따라 법학과 졸업자가 시험위원회의 위원중 1인으로 참여한다면 제2조 제1호와 관계없이 1993년 12월 31일 까지 충분하다.
12. 1976.5.31. 제정되고(BGBI. I p.1366), 1990.7.23. 최종 개정된(BGBI. I p.1484) 운전교습생 교육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자동차 학원 위치로 부터 진입로가 30km이상이 될 때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육(제5조 제3항 제1호, 제2호)은 연방도로와 주도로상에서 추가적인 시간을 환산한 형태로 교육을 대치할 수 있다.
 - b) 제5조 제5항은 1991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13. 1970.6.26. 제정되고(BGBI. I p.865), 1990.3.23. 최종 개정된 도로 교통 범칙금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BGBI. I p.572) : 1992년 12월 31일까지 주상급관할청 또는 연방수수료와 관련하여 연방교통장관은 수수료를 백분의 40까지 할 수 있다.
14. 1970.11.16. 제정되고(BGBI. I p.1565, 1971 I p.38), 1989.11.9. 최종 변경된 도로교통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BGBI. I p.1026) :
 - a)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한다.
 - b) 제3조 제3항 제2호 c항 제1문은 1993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c) 제3조 제3항 제2호 c항 제2문항은 제1문과 관련하여 1992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d) 제12조 제3항부터 제8a호의 내용에 따른 표시 401 - 연방도로 번호는 표시 306 - 우선진입도로 - 와 같다.
 - e) 나토가입국중 독일 국가가 아닌 국가의 군대에 대한 특별한 법규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기타의 군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f) 현재의 신호등색의 변화순서인 녹색-녹색/황색-황색-적색-적색

/황색의 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허용된다; 신호 녹색/황색은 제3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에 따라 녹색 의미를 갖는다. 통일효력 발생후 새로 설치하거나 장치를 바꾸는 신호등에 대하여는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른 색의 순서만이 허용된다.

- g) 신호등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제37조 제2항 제3호와는 달리 적색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적색점멸등은 이러한 경우 “정지”의 의미를 갖는다.
- h)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의 교통표지와 함께 1977.3.26. 제정되고 (GBI. I No.20 p.257), 1986.9.9.의 최종 개정된(BGI. I No.31 p. 417) 교통 규칙의 교통표시는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의 교통표시와 일치하는 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한 것은 제39조에서 제49조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동독의 도로교통법규 부록Ⅱ따른 통일효력 발생시까지 제시된 교통표시는 그 특성과 함께 효력을 갖는다.

15. 1990.8.8. 공포된 인력운송법(BGBl. I p.1690)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13조 제4항,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3항과 제5항은 1993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한다.
- b) 1991년 12월 31일 까지 1990년 6월 25일 제정된 가격 분야의 법 규정 (GBI. I No.37. p.472)의 폐지 또는 유예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전차, 버스 노선교통수단에 대한 가격 규정은 제39조 제1항의 허가된 운송비로 간주한다.
- c) 제45a조는 1991.1.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d) 통일효력 발생시 허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운송 기업에 대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러한 허가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인력운송 법에 따른 인가를 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 e) 1990.6.20. 제정된 영업적 인력운송에 관한 규정(GBI. I No.40 p. 574)의 제3조에 따라 받은 허가는 유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f) 1990.6.20. 제정된 영업적 인력 운송에 관한 규정(GBP. I Nr.40 p. 574) 제2조와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의 계약 운송사업허가는 1962. 8.30. 제정되고(BGBI. I. p0601), 1989.6.30. 최종 개정된 인력 운송법에 적용되지 않는 가격결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한 제43조와 관련하여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선 교통수단 특별 형태 허가로 간주한다.
 - g)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전차에 대한 시설물의 신축 또는 변경 관련 조치는 통일효력 발생 이전에 이에 관한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여객운송법에 따라 끝까지 이행한다.
16. 1977.8.2. 제정되고(BGBI. I. P.146), 1989.6.30. 최종 개정된(BGBI. I. P.1273) 도로 인력운송 공동투자능력 보상에 관한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17. 1990.4.10. 제정된 인력운송법에 따른 평균도로특수비용에 관한 다섯 번째의 규정(BGBI. I. p.741)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18. 1983. 3.10. 공포되고(BGBI. I p.256), 1990.6.28. 최종 개정된 화물 자동차 운송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1990.6.20. 제정된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GBI. I No.40. p.580)에 기초하여 발급된 장거리 화물운송에 관한 허가, 단거리 화물수송과 이삿짐 화물수송에 대한 승인, 영업지 결정에 관한 인증 그리고 자가용 화물운송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의 신고확인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법의 내용에 따른 허가, 승인, 영업지 역인증, 신고 확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송 운송인의 허가는 화물 운송의 내용에 따른 발송 운송인에 대한 위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b) 담당지역관청에서 적절한 화물운송에 대한 규정에 따른 지역중심지는 화물운송법의 내용에 따른 지역중심점의 효력을 갖는다.
 - c) 독일연방철도에 대한 화물운송법 조항은 독일 제국철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d)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최소한 2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화물 운송을 수행하였다면 소재지 또는 지사와 함께 신청자는 전문적 특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e) 1991년 12월 31일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8조에 의한 허가는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허가의 전제조건을 허가 통지후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질 수 있다.
- f) 연방교통부장관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대수량에 대한 새로운 확정이 있을 때까지 연방상원 위원회의 동의 없이 법규에 따라 공공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을 참조하여 임시 최대수량을 확정한다.

업무영역 C : 항공교통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1989.9.28. 제정된 이 칙령시 항공기안전을 위한 시설과 복무의 청구를 이한 비용 징수규정(BGBL. I p.1809)의 제1조 제1항에서 “비행장” 다음에 “베를린 쇠네펠트”, “브레멘” 다음에 “드레스덴”, “뒤셀도르프” 다음에 “에어푸르트”, “퀵른” 다음에 “라이프찌히”가 보충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1.1.14 공포되고(BGBL. I p.61), 1990.6.28. 최종 개정된(BGBL. I p.1221) 항공교통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23조부터 제56조까지는 통일 효력 발생후에 나타난 사고에 적용한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는 제31조 제2항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통일효력 발생후 3년내에 연방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다른 항공 관할청에 이관한다.
2. 1979.3.13. 공포되고(BGBI. I p.308), 1986.7.21. 최종 개정된(BGBI. I p.1097) 항공운송허가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비행사 허가와 권리는 제28조에 따라 1991년말까지 관할청에 기록되어야 한다.
3. 1984.4.14. 제정되고(BGBI. I p.629), 1986.9.10.(BGBI. I p.1524) 최종 개정된 항공안전-항로사용료규정과
4. 1989.9.28. 제정된 이착륙시 비행 안전을 위한 복무와 시설 요구 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BGBL. I P.1809)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3번과 제4번의 규정에서의 바르샤바 조약군의 항공기들은 NATO-가맹국 항공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업무영역 D : 해상운송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삭제, 개정 또는 추가된다 :

1. 1985.12.6. 제정되고, 1986.12.16. 최종 개정된(BGBL. I p.2441) 해난 조사법은
- a)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킬”은 “킬과 로스톡”으로 수정한다.
 - b) 제12조 제2항 제2호와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삭제한다.
 - c) 제19조에 다음가 같이 제8항이 추가된다:
“(8) 동독법에 의하여 발행된 자격증, 해상안내 허가증, 스포츠보호 운항허가는 독일연방공화국 관할청이 발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해난

사고가 통일효력발생이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면 이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2. 1986.6.5. 제정된 해난조사법의 실행을 위한 규정(BGBI. I p.860) 제1조 제4호에서 마지막 점은 ; 로 대치되며 그 다음제 제5호를 추가한다.
“5, 스트랄쥘드항구 해상운항만청의 관할내에 있는 해상사건은 로스톡 해상항만청이 관할한다.
3. 1987.4.21. 제정된 일반해상안내 규정(BGBI. I p.1290) 제1조와 제3조 제3호의 “트라비” 다음에 “과”를 삽입하고 “펠스부의를 넣으며 또한 비스다르, 로스톡, 스트랄 쥘드를 기입한다.
4. 1987.4.15. 공포되고(BGB> I p.1266), 1989.8.8. 개정된(BGBL. I p.1583) 해로규정 부록 I 제i절 -표지판- 에 있는 제B절 9의 -뤼벡 부호프에 있는 동독 규정표시 - 는 삭제한다.
5. 1981.10.28. 제정되고(BGBL. I p.1163), 1985.3.20. 개정된(BGBI. I p.585) 외국선박선원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연근해를 평화롭게 통과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은 유효하다.

제 iii 절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90.7.4. 공포된 항공법(BGBL I p.1342)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동독 법규에 의하여 동독기를 사용할 권리 증명서는 통일효력 발생후 6개월간 연방국적선의 운행에 관한 권한 증명서로 준용한다. 해운과 수로측정관할 연방관청은 증명서, 인증서 또는 증명서 복제등에 대한 신청서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기재를 할 수 있다.
2. 1985.12.6. 제정되고(BGBL. 2 p.2146), 1986.12.16. 개정된(BGBL. I p.2441) 해난조사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통일효력 발생시 동독의 해상관계기관에 계류중인 조사과정이 끝나지 않은 조사는 새로운 조사에 배치되지 않는다.

- b) 제26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주들이 연방과 해상경찰 업무 진행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지역에 적용된다.
3. 1986.6.5. 제정된 해난조사법 시행 규칙(BGBL. I p.860)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에는 동독의 “해상협회소유자 명부”에 등재된 인사도 해당된다.
4. 1984.9.13. 공포되고(BGBL. I p.1213), 1986.12.16.(BGBL I. p. 2441) 최종 개정된 해상안내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5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해상안내 구역에 대한 한계와 제43조 제1호에 의한 새로운 항해지역의 한계 그리고 제45조 제2항에 의한 새로운 해상안내 구역에 적용되는 안내 부과금과 인건비는 연방 교통장관이 연방관보에 공시한다.
- b) 동독의 규정에 따라 해상안내 제도에 부과된 안내 허가는 이 법에 따라 면허 혹은 허가로서 효력을 갖는다.
- c) 제45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통독후 5년동안 교통추진에 대한 공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5. 1987.4.21. 제정된 일반 안내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6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 b) 통일효력 발생후 2년동안 기존의 기업에 의한 안내업은 계속 수행된다.
6. 1959.3.5. 제정되고(BGBL. II.p202), 1975.12.19.(BGBL. 1976. I p. 9) 최종 개정된 해상안내조사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3조 제1항에 따른 시행은 연방관보에 공시된 신뢰 의사(Vertrauensärzte)들이 한다.
7. 1986.12.8. 제정되고(BGBL. I p.2361), 1987.6.26. 개정된(BGBL. I p.1570) 선박 안전규칙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통일효력 발생시 동독 국기를 단 선박들이 기술규정과 선박 관련규정을 이행했을 경우 이 선박들은 동독 당일규정에 합당 한것으로 간주한다. 이규정의 제13조에 상응한 동독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는 통일후 3개월내에 새로운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유효하다.

선박에 허가증, 설비, 장치, 기계, 도구, 구조장비, 해난장비, 배의 부분과 연료 그리고 항해일지에 대한 관의 허가, 시험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기준등은 국제법상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 규정에 상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의 내용에 따른 검열은 다만 선박이 이러한 협정에 따라 연방기를 게양할 권리를 얻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b) 통일효력 발생이전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용골대가 있는 조선소가 과거의 규정과 기술적인 기준에 일치하는 경우 현행 규정이 요구하는 원리에 적합한것으로 간주한다.

8. 1987.4.15. 공포되고(BGBL. I p.1266), 1989.8.8. 개정된(BGBL. I p.B. 1583) 해상 항로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동독의 기존 해로는 다른 규정이 정해질때까지 이 규정의 항로로 적용된다.

9. 1982.7.5. 제정되고(BGBL. I P.916,1169), 1990.9.3. 최종 개정된 선박검사규정은(BGBL. I P....) 다음 조치에 따른다.

통일효력 발생시 까지 동독 국기를 게양한 선박과 통일효력 발생시 까지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스포츠선과 유람선도 제9조의 내용에 의하여 새로운 증서의 발급에 대한 신청을 통일효력 발생후 3개월이 내에 하는 경우 검사서와 발급받은 검사인정서는 제9조의 내용에 따른 검사서와 인정서로 인정한다.

10. 1973.12.20 제정되고(BGBL. I P.1988), 1989.8.8 최종 개정된 스포츠 보트면허 규정은(BGBL. I P. 1583)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지금까지 발급된 유효한 스포츠 보트 운전면허증은 이 규정에 따른 스포츠 보트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갖는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해양 수상스포츠를 수행하기 위한 사조직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완수했을 경우 그 조건을 충족시킨것으로 간주한다.

11. 1985.2.8. 제정된 항해일지 규정(BGBL. I P.306)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독일민주공화국 선박의 선상에서 기록해야 하는 해상일지와 기계일지

- 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통일효력 발생후 최소한 1년 동안 이 규정에 의한 항해일지를 사용할 수 있다.
12. 1975.6.10. 제정되고(BGBL. I P.1337), 1989.10.26.(BGBL. I P. 1992) 최종 개정된 유류 책임허가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통일효력 발생이전에 동독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류책임에 대한 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효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류책임허가증명서의 효력을 갖는다.
13. 1984.4.4. 제정되고(BGBL. I P.523), 1989.12.18. 최종 개정된 (BGBL.I P. 2457) 선원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동독의 규정에 따라 선원의 구성에 관하여 발급된 제4조에 따른 유효한 증명서는 효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나 통일효력 발생이후 1년이 경과 할때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4조에 의한 승선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은 무료이다.
 b) 통일효력 발생이전에 동독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선원에 대하여 선장과 간부 그리고 기타의 선원 자격증서와 능력 증서는 이 규정에 따른 자격증서와 능력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4. 1985.2.11. 제정되고(BGBL. I P.323), 1989.12.18. 개정된(BGBL. I P.2457) 간부후보생교육법과, 1983.3.24. 제정되고(BGBL. I P.338) 1988.3.23. 최종 개정된(BGBL. I P.402) 선박 기술자 교육법 그리고 1978.4.18. 제정된 선박운영반장규정(BGBL. I P. 514)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교육부문과 직업교육부문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전제로하는 규정에 대한 법규는 이에 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적용한다.
 b) 동독의 법규에 의해 발급된 권리증서와 자질증명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격증, 권리증서와 자질증명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권한은 간부 후보생 교육규정의 내용에 따른 능력 증명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c) 통일효력 발생 이전에 동독의 법규에 따라 획득한 자질증명은 이 규정의 내용에 따른 허가전제조건으로 관할관청에 의해 이 규정의 적

용시 동일하게 인정된다.

15. 1972.4.25. 제정되고(BGBL. I P. 734), 1987.12.8 개정된(BGBL. I P. 2553) 상선환자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통일효력 발생시 동독의 국기를 사용하거나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조선도크에 존재하는 선박이 법규와 동일 하다면 제2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해운노동조합이 이러한 법규에 따른 선박의 적용을 위해 변화를 추구한다.
 - b) 통일전 지금까지의 동독법에 따라 발급된 선박장학 의료기기에 관한 증명서는 그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본령의 증명서로 유효하다.
16. 1970.8.19. 제정되고 1975.9.9. 개정된 해상복무 능력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통일전 지금까지의 동독법에 따라 발급된 건강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만료까지 본령의 증명서로 유효하다.
17. 1981.10.21. 제정된 선원규정(BGBL. I P.1146)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통일효력 발생 이전에 항해에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도 허가의 무가 있다.
18. 1966.12.14. 제정된 국외선박운영 서류 송달에 관한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허가의무에는 통일전에 선박경영에 관한 서류의 송달사항이 첨부되어 야 한다.

업무영역 E : 내수로 운항과 수로

제 Ⅲ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8.3.17. 제정된 내륙수로선 검사규정(BGBL. I P. 238)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이 규정은 통일효력 발생후 선박 용골을 설치한 모든 내륙수로 선박

에 적용된다: 현존하는 선박들은 유효한 결정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에 대한 적응을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는 형태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임시로 선박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용되던 규정이 지켜진다면 기술적인 규정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것은 유럽 의회의 협정서 제8조 제2항에 언급된 마감 시일인 1988.7.9.까지 효력을 갖는다.

- b) 동독의 법규에 의하여 발급된 선박증서(등급기록부)는 이 증서의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적용되던 지역에서 내륙수로 운항 규정의 적용 지역에 속한 수로상에서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 c) 동독 규정에 따라 계획된 선박배치 계획은 허가된 선박증서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발한다.
2. 1975.6.30. 제정되고(BGBL. I P. 1785), 1989.9.11. 최종 개정된(BGBL. I P.1665) 내륙수로 운항선박설비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동독의 유효한 법규에 의하여 발급된 용적증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3.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503-4로 공포되고, 1986.4.21. 최종 개정된(BGBL. I p.551) 선박항해 일지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동독의 법규에 따라 발급된 선박 항해일지는 이 법에 따른 선원업무 일지로서 효력을 갖는다.
 4. 1981.12.7. 제정되고(BGBL. I p.1333), 1988.9.13. 최종개정된 내륙수로 선원 특허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동독의 법규에 따라 발급된 권한 인정서와 권리증서는 이 규정에 따른 권한인정서로 효력을 갖는다. 권한 인정서에 기록된 선박형태와 크기에 관한 인정효력은 그대로 지속된다. 권한 인정서와 권리증서의 교환과 권리 확대에 대해서는 제29조와 동등하게 적용된다.
 5. 1985.5.1. 제정되고(BGBL. I P.734), 1988.9.13. 최종 개정된(BGBL. I P.1745) 내륙수로 규정 시행령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내륙수로 규정은 오데르강과 나이췌강의 국경수로에 국제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 b) 1989.5.5. (별쇄본 제318호) 제정된 동독내륙수로 교통규정 제 X 장부터 제 VII 장까지 그리고 부록 XII 부터 XIV까지의 내용에 따른 각각의 로에 대한 특별규정은 1990.3.30. 특별관보로 공표된 규정으로서 별도로 적용된다.
- c) 서베를린 지역의 수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별 법규가 계속 적용된다.
6. 1989.3.22. 제정된 스포츠 보트 운전면허규정 - 내륙(BGBL. I P. 536, 1102)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동독의 법규에 따라서 발급된 스포츠 보트와 가정용 보트에 대한 사트 증명은 이 규정에 따른 스포츠 보트 운전면허의 효력을 갖는다.
- b) 항해허가에 대해서는 1990.3.30. 공포된(법규정집의 별쇄본 제1318/1)규정 제2호에 있는 동독의 내륙수로항해규정의 제 IX 장부터 제 XVII 장(법규정집의 별쇄본 제1318)에 따른 수로에 관한 규정의 제3 조 제1항 제2호가 규정된다 ; 동베를린지역을 포함한 베를린주에 있는 수로는 이 규정의 제2조 제1항과는 달리 적용된다.
- c) 능력증명서의 재발급은 이 규정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
- d) 동독이 인정한 독일 항해체육단체 연맹(BDS)은 이미 인정된 독일항해 단체, 독일쾌속보트 연맹과 공동으로 제11조의 임무를 인지해야 한다.
7. 1990.8.31. 공포된 연방수로법(BGBL. I p.1818)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56조 제2항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수로 건설이나 보수에 대하여 이미 통일효력 발생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 b) 연방교통장관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수로를 법원에 의하여 내륙수로 일반교통용 연방수로로 만드는 것을 연방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법규에서 부록은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연방수로법 제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영역 F : 도로건설

제 iii 절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1. 1990.8.8. 공포되고(BGBL. I p.1714), 1990.2.12. 개정된 연방원거리 도로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고속도로와 장거리 수송을 위한 도로는 제1조 제4항에서 지정하는 법에 따른 연방고속도로와 연방도로이다. 제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는다. 도로건설에 대한 비용은 연방과 제5조 제2항부터 제3a항까지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한다.
 - b) 연방이 도로건설 주체자인 경우 이 도로와 관련된 제6조의 내용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와 도로의 소유권에도 이와 같이 적용한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와 장거리 수송을 위한 도로의 건설과 개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통일효력 발생 이전 완전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방 도로법과 행정령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업무영역 G : 일반교통규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된다 :

1. 1988.1.28. 공포된 지역자치단체 교통재원조달법(BGBL. I p.100)
 - a)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제3항이 추가된다 :

“(3) 베를린주, 부란덴부르그주, 메클렌부르그-포폼데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주의 1996.1.1. 이전에 추진될 기초 개수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조까지 적용된다. 이 경우 제

2호에 따른 도로에는 밀접지역에 대한 제한 또는 이에 속하는 주변 지역 그리고 특별한 기관차의 관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6조 제2항 제5호의 “접경지역”이라는 단어 다음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각각 추가된다.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c)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법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의 교통사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매년 32억 8천만 마르크를 지출해야 한다 :

1. 1966.12.23. 제정된(BGBL. I p.702) 1966 조세개정법(1966)의 제8항목 제1조에 의한 원유세의 과다징수분의 백분의 90,
2. 1972.2.28. 제정된(BGBL. I p.201) 교통 재원 조달법(1971)의 제 1항목 제1조에 의한 그리고 이 조항이 1971년 교통재원조달법 제3조에 따라 이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한 원유세의 과다 징수분의 백분의 90,

(2)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부터 연방교통장관은 백분의 0.25, 그리고 주와 합의하여 백분의 0.50까지 연구의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재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마이에른슈 브렌멘시, 함브르그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드-팔츠주, 자르란 드주 그리고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에 대해서 백분의 75.8까지,
2. 베르린주, 브란덴부르크주,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주에 대해서 백분의 24.2.까지.

이러한 재원의 백분의 50은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 제1문에 따른 계획과 제2조 제1항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기타의 계획을 통하여 마련한다. 제2조에 따른 계획과 관련된 기타의 교통망 비율에 관한 개수변경과 위치변경은 이러한 계획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2문과 제6호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기타의 계획에 대하여 이러한 재원으로

로 부터 :

- ① 바덴-뷔르템베르그주, 바이에른주, 브레멘시, 함부르그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드라인-베스트탈렌주, 라인란드-팔츠주, 자르란드주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 대해서는 우선 1억 마르크까지
 - ② 베를린주, 브란덴부르그주, 맥클렌부르그-포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탈트주, 그리고 튀링겐주에 대해서는 우선 5천만 마르크 까지,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계획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의 정도는 각주의 동의를 얻어 연방교통장관이 결정한다.”
- d)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2항은 다음과 같다. :
“제2호 제1항과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와 제14조는 내용과 같이 적용된다.
 - bb) 다음의 문항 3에 추가되는 것은 : “현존하는 전차시설에 대하여 제2조 제3항이 적용된다.”
- e)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
- “(4) 베를린주, 브란덴부르그주, 맥클렌부르그-포뎬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탈트주 그리고 튀링겐주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 1975.8.6. 제정되고(BGBL. I p.2121), 1990.6.28. 최종 개정된 (BGBL. I p.1221) 위험물 운반법,
2. 1989.12.12. 제정(BGBL. I p.2185) 위험물위임령
3. 1985.7.22. 제정되고(BGBL. I p.1550), 1990.6.18. 최종 개정된

- (BGBL. I p.1326) 도로 위험물 규정,
4. 1985.7.22. 제정되고(BGBL. I p.1560), 1990.6.6. 최종 개정된 (BGBL. I p.1001) 철도 위험물 규정,
 5. 1977.6.30. 공포되고(BGBL. I p.1119), 1989.3.6. 최종 개정된 (BGBL. I p.1278) 내륙수로 선박위험물 규정,
 6. 1986.6.27. 공포되고 1989.6.30. 최종 개정된 해상위험물규정
 7. 위험물질 운송에 대한 운임규정(BGBL I p....)등 위의 1번에서 7번까지 언급된 규정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위험물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6월 30일까지 동독의 규정에 따라 수송된다.
 - b) 도로위험물 규정 제7조와 제7a조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년 7월 1일 효력을 발생한다.
 - c)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법과 위험물에 대한 시행 규칙이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면 주는 주의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 협정은 주법에 따라 관할청이 이법에 따라 업무를 자체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d)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는 각각의 상공회의소가 받은 임무를 자체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는 위험물 운반에 관한 법에 따른 규정에 의해 상공회의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 e) 1988.7.21. 제정된(BGBL. I No.18 p205) 위험물 안전운송보장(VOTG)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반장에게 주어진 능력 인가서는 위험물 처리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한 위험물 처리자에게 인가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재교육은 1994년 10월 1일까지 받아야 한다.
 - f) 1991년 7월 1일 운송에 투입된 그리고 1991년 7월 1일 적용되는 법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고정된 탱크, 격리식 탱크, 탱크콘테이너, 철도 차량과 국내운송용 탱크선은 1991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위험물 취급법에 따른 제조 및 시설 규정과 일치하지 않

는 차량은 만일 제조 및 시설규정이 동독의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면 1992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다.

g) 이미 언급된 이관된 법규에 따른 독일연방철도의 관할권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독일제국철도에만 미친다.

h)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의 주정부는 1992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위험물 운반에 관한 법 제12조에 따라 만일 연방이 비용 부담자가 아닐 경우에는 법규에 의하여 할인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8. 1987년 12월 11일에 제정된 전차건설 및 운행규정(BGBL. I p.2648)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65조와는 달리 동독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운영설비와 차량은 이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제1항과는 달리 제65조 제4항에 언급된 안전을 위하여 마련해야 하는 운영설비와 차량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관리청은 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XII 장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 안전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오염보존법

제 I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990년 5월 14일에 공포된 연방환경보호법

a)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3항 제2호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이 기간동안 이의는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다.”

bb) 제4항 제4호에 마침표는 ; 으로 대체되고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제 5번호가 추가된다 :

“5.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이의에 관한 결정의 송달은 공적인 발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cc) 제8항에서 제1문 다음에 아래와 같은 문장이 추가된다: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청구자에게 허가통지에 관한 송달이 공적인 발표로 이루어진다.”

b) 제10조 다음 제10a조가 신설된다 :

“제 10a 조 행정지원

- (1) 연방 환경보전법의 실행을 위한 네번째 규정에 대한 부칙I이후에 있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하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담당 허가 관리는 계획하고 있는 설비가 현재의 대지형태와 계획 형태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후에 청구자에게 계획한 설비에 대하여 허가 전제 조건의 충족에 대하여 담당 허가 관리가 지정한 관리에게 제출한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이 관청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던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인가관청은 허가요건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유권해석을 지녀야 한다.
- (2) 기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만일 계획한 시설에 주어진 오염 허용치의 종류 및 그리고 위험성 때문에 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특수성 때문에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 제1항에 의한 유권해석을 지원할 수 있다.
- (3) 제1항에 의한 유권해석은 허가 이전에 만일 이러한 유권해석이 각각의 경우에 상황 특히 계획한 시설에 대한 또는 검사의 범위의 기술적인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제외될 수 있다.
- (4) 만약 이것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청구자는 조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c) 제67조 다음 제67a조가 추가된다:

“제 67a 조

독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경과규정

- (1)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만들어 졌거나 이 시점 이전에 설치를 시작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이 시점 이후 6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종류, 크기 그리고 작동방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2)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오염 허용치의 사전부담 정도에 의하여 오염 허용치의 초과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형태, 모양 또는 운영상의 주요 변경, 설치, 운영을 위한 허가 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할 수 없다 :
1. 추가 부담이 별로 없는 경우와 허가를 얻은 후 5년동안 시설의 영향권에서 오염도가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
 2. 의도적으로 시설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개량하여 이전의 오염도를 줄였을 경우 이때 이전의 오염도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부담도 보다 최소한 두배일 때,
- (3) 1986.2.27. 제정된 공기를 순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안내가 특정한 시한까지 낡은 시설의 운행정지 실행이 예견 된다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는 1990.7.1.부터 1년간 연장한다.
- d) 제74조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추가된다 :
- “제10a조는 1992.6.30. 효력을 상실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8.7.15. 제정된 소규모 난로에 관한 규정(BGBl. I p. 1059)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3조 제2항의 요구는 제23조 제1항과는 달리 조개갈탄 또는 역청(* 조개탄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혼합하지 않은 조개탄의 사용을 위한 난로에 대하여는 1991.1.1. 이후 4년이 경과한 후까지 유지한다.

2. 1975.1.15 제정된(BGBI. I P.2671) 난방용 경우와 디젤의 황산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청구자에게 아황산 허용치가 너무 강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되면 예외 규정을 발급할 수 있다. 규정에 있는 목표의 신속한 이행의 관점에서 허가 부과금을 부과한다.
3. 1988.5.19. 공포된 방해규정(BGBI. I P. 625)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1990.7.1. 이전에 설치된 또는 이러한 시설 설치를 시작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설비의 사용자는
 - a) 제12조 제1항에 의한 공시는 8개월 이전에 하여야 하며
 - b) 제7조에 따라 시행한 안전검사는 1992.12.31.까지 효력을 갖는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관리가 기한을 2년까지 연장한다.
4. 1983.6.22. 제정된 대형난로에 관한 규정(BGBI. I P. 719)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규정이 이 조치의 실행 또는 운영자의 특정한 거부표시에 대한 부과금 이 특정 기간내에 발생하는 경우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0.7.1.부터 1년을 더 연기한다.
5. 1986.4.9. 제정된 주방위 시설에 대한 규정(BGBI. I P.380)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규정의 제1조 제2항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6. 1971.8.5. 제정되고(BGBI. I P.1234), 1987.12.18. 최종 개정된 휘발유 납성분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BGBI. I P.2810) :
 제3조 제2항 제2호의 다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제2항에서 리터당 0.40g의 납성분에 대한 한계에 관한 예외는 1973.12.31.까지 그리고 리터당 0.15g의 납성분에 대한 한계에 관한 예외는 1977.12.31.까지”

업무 영역 B : 핵 기술 안전과 방사선보호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1985.7.15. 공포되고 (BGBl. I P.1565), 1990.3.14. 이 법 제4조를 최종 개정한 (BGBl. I P.478) 원자력 법 제57조 다음에 제57a조를 신설한다 :

“제 57a 조

독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경과규정”

- (1) 1990.6.30.까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발급된 허가, 인가 그리고 면허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1. 허가과 인가는 만일 이러한 허가, 인가 그리고 면허가 아래보다 짧은 기간으로 한정되지 않았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1995.6.30. 방사능 물질 운반은 1992.6.30. 그리고 기타의 허가, 인가, 그리고 면허는 2000.6.30.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인가, 허가 그리고 면허는 이 법의 동등한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제7조 제1항의 내용에 따른 시설과 운영의 상당한 변경을 위한 허가는 제1조에 따른 허가로 변화이전에 없었던 시설의 부분에 대한 허가로 간주한다.
 2. 제2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허가에 대하여 1990.6.17.에 제정된(BGBl. 2 No. 33 P.300) 동독의 국민자산의 사유화와 재조직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법인체가 허가소유자이면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동독의 신탁관리법에 의한 권리소유자의 변경에 있어 통일효력발생시까지 지속적인 유효성에 대한 결정이 없는 경우 제1호의 유효기간에 따

라 주어진 허가, 인가 그리고 면허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관할청은 새로운 권리자가 조직적 방법, 물적, 인적수단의 동원을 통해 시설의 설치와 관리 또는 운영을 실시하는 경우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는 아직 필요하지 않았던 방사선동위원소 운반은 이 법에 따라 1992.7.1.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1989.6.30. 공시되고(BGBL. I P.1231,1926), 1990.4.3. 개정된(BGBL. I P.607) 방사선 보호 규정 제89조 다음에 제89a조를 신설한다 :

제 89a 조

독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경과규정

방사선 자원의 탐사, 취득, 그리고 정제에 대한 규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항 그리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그리고 제6항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1986.12.19. 제정되고(BGBL.I P.240), 1989.10.9. 이 법 제3조 제1호를 개정한(BGBL. I P.1830) 방사선 보호법 제11조 다음에 제9호가 추가된다.

“(9) 현재 채광과정에서 나오는 자연방사선에 대한 환경방사능 측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2조의 내용에 따라 연방의 임무이다. 관할관청은 연방방사선보호청이다.

업무 영역 C : 수자원 경제

제 iii 절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7.3.5. 공시된 하수도 요금법(BGBL. I P.880)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법은 1984.2.2. 제정되고(GBL. I No.5 P.70), 1987.6.1. 규정 제2호를 개정한(GBL.2 No.14 P.164) 하수도 요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는 1990.6.30.부터 기타는 1993.1.1.부터 통상적으로 적용한다; 각 주(州)는 위험물질, 위험물질 형태와 허용 한계치의 측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늦어도 1992.12.31.까지 폐기된다.
2. 1987.3.5. 공포된 세척제에 관한 법(BGBL. I p.875)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법은 1992.1.1.부터 적용된다.
3. 1977.1.30. 제정되고(BGBL. I p.244), 1986.6.4. 최종 개정된(BGBL. I P.851) 압력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2.1.1.부터 적용된다.
4. 1980.6.4. 제정된 인산염 한계량에 관한 규정은(BGBL. I P.664)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1992.1.1.부터 적용된다.

업무영역 D : 쓰레기 처리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986.8.27. 제정되고(BGBL. I P.1410,1501), 1990.5.11. 이 법 제2조를 최종 개정한(BGBL. IP.870) 쓰레기처리법의

a) 제8조에 다음 제8a조가 추가된다 :

제 8a 조 허가조건 심사

- (1)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 시설이 대지와 기획 상태를 바탕으로 사실인가를 관할 기획확정청에서 심사해야 한다; 이 관할청은 지금까지 헌법이 효력을 갖고 있던 지역에 있어야 한다. 계획 확정청은 허가전제조건에 관한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 (2)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허용기준의 형태, 양 그리고 위험성 및 시설의 기술적 특수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이 만일 이러한 의견의 특수한 사정, 특히 계획된 시설 혹은 각각의 시험에 대한 범위의 기술적 해석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다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4) 만약 이것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책임자의 견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5) 법적 기한내에 허가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 통보는 반드시 공고해야 한다.
 - b) 제9조 다음에 제9a조를 추가한다.

제 9a 조 추가규정

- (1)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관할 관청은 1990.7.1. 이전에 운영되었거나 시설의 설치가 이미 시작된 시설에 대하여 고정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에 관하여 설비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한, 조건, 부담등을 규정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존의 시설은 1990.12.31.까지 관할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운영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관할 관청은 의무적으로

로 공고를 해야한다. 공고문에는 종류, 규모 그리고 운영 형태를 수록 하여야 한다.

c) 제10조 다음 제10a조가 신설된다 :

제 10a 조

기존의 오물처리장의 폐쇄

- (1)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9a조에 따른 기존 오물 처리시설의 소유자는 의도적인 운영증지를 담당관청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9a조 제2항 제2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 (2)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종류, 규모, 운영형태에 관한 서류 또한 일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인 재보존 및 대비를 하여야 한다.
- (3) 제10조 제2항과 제3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운행 중단한 오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9a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1항은 제10조 제3항의 내용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d) 제31조 다음에는 제32조가 신설된다 :

제 32 조

효력정지

제8a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1992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업무영역 E :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90.3.14. 공포된 화학물질에 관한 법(BGBL. I p.521)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19a조 제5항에서 제1호와 제2호에 “1989.4.5.” 대신에 “1990.8.1.일”을 각각 적용한다.
 - b) 제19a조 제5항 제1호 제2번에서 a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c) 제19a조 제5항에서 제2문의 “1990.4.1.” 대신에 “1990.8.1.”을 적용한다.
2. 1989.7.18. 제정된 PCB, PCT, VC 금지규정(BGBL. I p.1482)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3조 제4항은 제1문과 제2문에 “1990.12.31.”대신에 “1991.12.31.”을 각각 적용한다.
 - b) 제4문은 통일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유통시킨 제품에 대하여 1991.1.1.부터 적용한다.
3. 1989.12.12.제정된 Pentachlorophenol 금지규정(BGBL. I P.2235) 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제1조 제2항의 “규정의 효력발생시” 대신에 “통일효력발생시”로 대치 된다.
 - b) 제4조의 “1990.3.22.” 대신에 “통일효력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이내에”로 대치되며 또한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대신에 “통일효력 발생이전에”로 대치된다.

업무영역 F : 자연보호 및 풍치관리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987.3.12. 공포되고(BGBL. I P.889), 1990.2.12. 이 법 제6조를 최종개정한(BGBL. I P.205) 연방자연보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4조 제2항과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효력발생일은 1990.7.1. 이다.

제 XIII 장 연방체신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우편기본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삭제된다 :

1. 1989.6.8. 제정된 우편기본법(BGBL. I P.1026)의

a) 제3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이 기구는 동수의 독일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원의 대표로 구성되며 또한 연방의 대표는 주의 대표와 동일한 수이다.”

b) 제1조 제3항, 제2조 제3항,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번 그리고 제3항, 제61조 제2항 제1번에서 베를린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은 삭제된다.

제 iii 절

연방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을 갖는다 :

1. 1989.6.8. 제정된 우편기본법(BGBL. I P.1026)의

a) 제59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동독우체국의 시설을 이관받은 연방우체국의 인력배치는 연방우체국 경영이사회의 공동업무이다: 마찰이 있는 경우는 연방 체신부장관이 결정한다.

b) 제65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동독의 법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항을 적용 하는데 있어 제1항의 “이 법의 효력 발생한 후 2년” 대신에 “1991.12.31.”이 적용되며 제2문

에서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1년후에”가 삭제된다.

업무영역 B : 우편

제 i 절

조약 제8조에 의하여 연방효력이 발생하면서 제외되는 것은 :

1. 1963.5.16. 제정되고(BGBL. I P.341), 1989.6.23. 최종 개정된 (BGBL. I P.1158) 우편규정
2. 1988.8.10. 제정되고(BGBL. I P.1575), 1989.6.23. 개정된(BGBL. I p.P.1158,1279) 우편요금 규정
3. 1981.9.9. 제정되고(BGBL. I P.950), 1988.10.17. 최종 개정된 (BGBL.I p.2065) 우편 신문 규정
4. 1988.10.17. 제정되고(BGBL. IP.2067), 1989.9.1 5. 개정된(BGBL.I p.1743) 우편신문대금규정
5. 1988.8.15. 제정된 해외우편요금 규정(BGBL. I P.1593,1751 : 19 89, 343)
6. 1984.12.5. 제정되고(BGBL. I P.1478), 1989.3.22. 최종 개정된 (BGBL. I P.541) 우편온라인 규정
7. 1984. 12.5. 제정되고(BGBL. I P.1448), 1989.6.23. 최종 개정된 (BGBL. I P. 1164) 우편온라인 수수료 규정
8. 1986.4.24. 제정되고(BGBL. I P.1484), 1989.3.22. 개정된 (BGBL. I P.546) 우편저축 규정
9. 1978.7.6. 제정된 우편제한 규정(BGBL. I P. 979)
10. 1978.7.6. 제정된 내근우편규정(BGBL. I P. 980)
11. 1978.7.6. 제정된 외근 우편규정(BGBL. I P.1678)
12. 1984.12.20. 제정된 통계 우편 규정(BGBL. I P.1687)
13. 1976.6.4. 제정되고(BGBL. II P.633), 1981.10.1. 최종 개정된 (BGBL. I P.1109) 동서독 우편 및 전화교환 규정

14. 1976.6.4. 제정되고(BGBL. I P.1400), 1989.6.26. 최종 개정된 (BGBL. I P. 1260) 동서독 우편 및 전화교환 수수료 규정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9.7.3. 공포된 우편분야에 관한 법(BGBL. I P.1449)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12조 제3항에 “소포” 다음에 첩표를 추가하고 “업무적인 소포와 편지”가 추가된다.

업무영역 C : 전신 및 전화분야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89.7.3. 공포된 전신 전화시설에 관한 법(BGBL. I P. 1455)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15조의 “1990.7.1.”은 “1991.12.31.”로 수정된다.
2. 1987.7.16. 공포되고(BGBL. I P.1761), 1989.12.18. 최종 개정된 (BGBL. I P.2261) 텔레콤뮤니케이션규정, 1988.2.4. 제정되고 (BGBL. I P.119) 1989.6.26. 최종 개정된(BGBL. I P.1234), 국제 텔레콤뮤니케 이션 규정, 그리고 1988.2.4. 제정되고(BGBL. I P.127), 1989.6.26. 최종 개정된(BGBL. I P.1234)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은 다음 과 같은 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 팩시밀리 업무
 - Telex 업무
 - 정보자료 전달 업무

- C-네트를 사용한 이동전화기 업무
- 무선기(City-Ruf)
- 화상자료전달업무
- 화상전달업무
- 다목적 무선기
- Telepoint (Birdi)
- 비디오 영상정보전달업무/영상컨퍼런스
- 위성수신업무
- 장주파 배분업무
- Temex- 업무
- 라디오 전달업무
- 선박을 위한 특수한 무선업무
- 1인 혹은 다수를 위한 무성업무
- 보도자료의 전화업무

제 XIV 장 연방 공간질서 건축 시가조성 장관 업무영역

제 i 절

조약 제8조에 따른 연방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다음 규정은 제외된다 :

- 1) 이 법의 규정이 건축법 제24b조를 적용할 수 없을때 1990.5.17. 제정된(BGBL. I S.926) 건축 조치법
- 2) 1987.7.14. 제정된(BGBL. IS. 1625) 베를린의 주택문제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한 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보충된다 :

- 1) 1986.12.8. 공포되고(BGBL. I P.2253), 1988.7.25. 법 제21 항목 제 5조 제5항을 개정한 건축법 제246조 다음 제246a조를 신설한다 :

제 246a 조

통일독일을 위한 경과규정

- 1) 1997.12.31.까지 조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1) (건축기본계획; 공간규정과 지방계획, 부분토지이용계획, 건축 기본 계획의작업) 1990.6.20. 제정된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의 제1 조 제4항 제2문, 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3문은 적용된다.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의 제2조 제4항 제2호는 다음의 문장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어 진다: “지역의 권리인, 다른 전문직에 적합한 사람이나 직위에 위임하는 사안은 변하지 않는다.”
- (2) (기획 의무)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은 제1문에서 “혹은 그에 의해 명시된 장소”를 삭제된다. 규정은 제20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3) (사전 건축계획)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은 동독의 건축 계획과 허가 규정의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제8조 제4항 제1문의 문장 “1. 이 규정의 효력발생 후 5년의 기간이 내에” 및 제2호는 삭제된다.

- (4) (조례의 승인의무) 제6,8,13호에 따른 조례는 상급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6조 제2항과 제4항이 적용된다. 건축설계에 대한 허가의 허용은 그 지방의 관례에 따라 공시된다. 다른 규정들은 허가의 통보와 함께 그 지방의 관례에 따라 공시된다. 공시는 또한 제 12조 제2문부터 제5문에 따라 행해진다.

제13조 제1항 제1문과 제143조 제3항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제17조 제1항 제3문, 제2항과 제3항은 상급행정관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 (5) (변경제한)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의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다음의 원칙이 적용된다: 허가는 제14조 제2항의 예외가 인정될 수 없을 때 거절되어도 좋다. 제17조 제1항 제1문에 있는 “2”는 “3”으로 제2문에 있는 “2년의 기한은”은 “3년의 기한”으로 대치된다. 제18조 제1항 제1문에서 “4”는 “5”로 대치된다.
- (6) (목적 계획과 개발계획) 동독의 건축계획규정과 허가규정의 제55조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 a) 제1항에서 제1문 제1호 앞문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건축법 제30조, 제31조와 제33조내지 제35조와는 다른 계획을 허락할 수 있다. “제1항 제3문에서” 이규정에 대한 부록 I 은 건축법 제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공표된 규정”으로 대치된다. 이법의 제9조 제8항, 제31조 제1항과 제36조 및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4조 제3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동독의 건축계획 허가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례는 건축설계로서 부분 허가의 목적에 적용된다.
- b)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 제58조와 제59조는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 제55조에 따른 조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동독의 건축 계획과 허가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문은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례 제정에 적용된다; 제216조도 적용된다.
- c) 동독의 건축계획과 허가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이 법의 제2조 제1항 제1문의 환경조화심사에 대한 결의이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법 제17조가 적용된다.
- (7)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선매권)
제24조와 제25조의 경우에 제28조 제2항 제2문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불되는 금액에는 1990.5.17. 제정된(BGBL. IS.926) 건축법전을 위한 조치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된다. 1988.1.1. 이전의 판매에 대해 이법은 계속 적용된다.
- (8) (계획의 허가) 건축법전 조치법 제4조 제2항 제1문, 제4항과 제5

항, 제9조 제3항과 제10조 제3항 제1문이 적용된다.

- (9) (신뢰이익침해) 제39조 대신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소유자나 용익권의 행사에 있어서 다른 용익권리자가 법적 구속력 이 있는 건축계획의 존립 혹은 제34조에 의한 허가에 따라 사용가능 성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경우에, 건축계획의 수립, 변경, 보충, 삭제로 투자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토지의 개발을 위해 징수되는 연방-주법에 의한 공과금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통일시 제34조에 의한 토지 사용이 허가되었고 제1문의 의미에서 허용에 대한 신뢰가 건축허가, 건축허가 발급에 관한 선결, 행정청의 서면에 의한 설명을 근거하는 경우에 제1조는 부동산의 취득이나 건축을 위한 그밖의 권리의 획득에 있어서 적절한 비용과 반대급부에 적용된다. 제3문의 경우 반대급부가 거래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보상액은 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한다(제194조). 제43조와 제44조는 해당사안에 적용된다. 제42조 제 1항부터 제3항, 제5항부터 제10항은 통일의 효력발생시 제34조에 의해 적용되지 아니한다.

- (10) (수용의 허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조례는 제9조에 따른 확정으로서 건축 계획에 수 있는 조례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토지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그러한 이용에 대비하기 위해 제85조 제1항 제1문의 따른 건축계획으로서 수용 허가에 적용된다.

- (11) (개발)

제124조 대신 동독의 건축계획규정과 허가규정 제54조가 적용된다. 통독전에 이미 제작된 개발설비나 개발설비의 부분을 위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을 인상하지 못한다. 이미 생산된 개발설비나 그 부분은 기술적인 중축계획이나 지역적인 중축관습에 맞게 생산된 개발설비나 개발설비의 일부분이다. 기부금 의무자가 개발설비나 개발설비의 일부분의 제작을 위해 투자한 이행은, 개별 기부로 고려될 수 있다. 주 정부는 법규를 통해 필요한 양도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

(12) (도시건설의 개발조치)

제141조에 보충하여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 규정의 제28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제142조 제4항 제2문 후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13) (도시건설의 발전조치)

제165조부터 제174조는 건축법을 위한 조치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3항의 분야에 적용된다; 건축법을 위한 조치법 제15조 제2항에 “1995.1.1.”은 “1988.1.1.”로 대치된다.

(14) (보존조례)

제172조 제1항 제1문 제2번을 보충하여 동독의 건설계획 및 허가 규정 제43조 제1항 제3문이 적용된다. 제172조 제4항 제2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73조 제2항은 허가 거절에 있어 제172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된다.

(15) (도시건설의 최고(催告))

제176조를 보충하여 건축법을 위한 조치법 제8조가 적용된다; 건축법을 위한 조치법 제62조에서 “1995.6.1.”은 “1988.1.1.”로 대치된다.

(16) (자산가치조사)

각 주(州)에 제199조 제2항에 따라 법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50조 제1항과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은 계속 적용한다; 주정부나 그에 의해 결정된 관청은 각 지역 자유 도시와 지방에 있는 사무실에 조직되고 동독의 건축설계 및 허가규정 제53조에 이미 조직되지 않은 관청을 결정할 수 있다.

(17) (건축지에 관한 행정심판 제기)

제217조내지 232조는 다음 조치에 따라 적용한다: 행정법 심판부는 지원분소에서 그리고 행정법 소위원회는 지원에서 담당한다; 그 제소를 위해 행정재판법의 규정이 유효하다. 이것은 기본법이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았던 동베를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8) 상급행정관청의 이 법에 따라 위탁된 임무는 지역의 행정위임자에 의해 주정부가 관할권 규정을 만들때까지 수행한다.

제1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이다 른 규정을 참조로 하는 한 이 규정의 내용이 유효하다; “감독관 청”은 “상급관청”으로, “건설부 장관”은 “주정부”로 대치한다. 조치법의 규정이 건축법으로 규정이 되는 한, 이 규정은 주택건설을 용이 하게 하는 법 제1조와는 다르게 1987.12.31.까지 유효하다. 이 법률에서 통일조약 제3조에서 명시된 지역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을 참조로 하는한, 동독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적용이 참조의 의미에서 이의가 제기된다면 참조가 되는 규정에 상응하여 유효하다.

- 2) 1997.12.31.까지 제1항의 원칙에 따른 제소는 계속 적용된다. 제1항 제1문 제3번에 따라 적용되는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8조 제2항과 제3항은 부분-평지이용계획에 관하여 1997.12.31.이후에 계속 적용된다. 제1항 제1문 제8번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법전을 위한 조치법 제9조 제3과 제1항 제1문 제6b호에 따라 적용되는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58조와 제59조는 1997.12.31.이후 조례에 적용된다. 이 조례는 제1항 제1문 제6호, 제8호 및 제13호 적용하에서 제정된 것이다. 제1항의 조치에 따라 정리된 결정과 제정된 조례는 이법전에 따른 규정으로 간주한다.
 - 3) 통독전에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에 따라 도입된 제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된다.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58조와 제59조는 통독후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의 적용에 따라 공포된 건축기본계획과 규정에 적용된다.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에 따라 결의되고 공포된 판결과 규정은 이 법에 따라 유효하다.
 - 4) 통독전에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64조 제3항 제1문의 “이 규정의 효력 발생후 6개월 이내에”를 “1990.6.30.까지” 로 대치한다; 제1항 제2문은 준용된다.
2. 1990.1.23. 공포된 건축이용법(BGBl. IS.132) 제26조 다음에 제26a

조가 신설된다 :

제 26a 조
통독을 위한 경과규정

- 1)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제17조 제3항은 1990.7.1. 거의 완성된 지역에 적용된다.
- 2)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은 상응한 동독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참조가 되는 규정이 유효하다.
- 3) 1989.7.19. 공포된 도시계획법(BGBL. IS.1461) 제12조 다음에 제 12a조가 신설된다 :

제 12a 조
통독을 위한 경과규정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다음의 원칙으로 이법이 적용된다 :

- 1) 제2조 제1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제2조 제1항 제7호 소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평지와 연관된 녹지대는 특별한 원칙으로 보호 된다. 개별 농업과 농업경제는 형태에 있어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대지 이용의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생태학적으로 다양한 이용이어야 한다.
- 3) 1990.7.5. 제정된(GBL. IS. 627) 동독의 도시 계획법의 효력에 대한 법 제2조와 제3조는 계속 적용된다.
- 4) 1983.2.28. 제정(BGBL. IS.210)되고, 1986.12.8. 법 제2조를 개정 정(BGBL. IS.2191)한 소규모정원법의 제20조 다음에 제20a조가 신설된다 :

제 20a 조 통일독일을 위한 경과규정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이법은 다음의 원칙으로 적용된다 :

1. 통독전에 이루어졌고 아직 끝나지 않은 소규모정원 이용관계는 이 시점부터 이 법에 따른다.
2. 통독전에 체결된/소규모정원에 대한 이용계약은, 통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이시점 이후로 이토지의 소유권을 습득할 때, 지속적인 소규모정원 임대차계약과 같이 취급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소규모정원에 대한 이용계약에 있어서는 합의된 이용 기간을 따른다. 소규모정원의 건축계획에 있어 계속적인 소규모정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계약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된 이용기간의 경과 이전에 계속적으로 소규모정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계획을 결정하였다고, 그 결정이 건축법전 제2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공표되었다면, 그 계약은 공표이후 6년간 연장된다. 건축계획의 허가 시점부터 지속적인 소규모정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1990.6.20. 제정된(GBl. IS.739) 동독의 건축계획 및 허가규정 제8조 제4항 제1문에서, 건축법 제246a조와 제1항 제1문 제3 번에 명시된 전제조건하에서 임의의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다.
4. 통독전에 소규모 정원 조식이 위탁을 목적으로 수여한 자격과 토지는, 소규모 정원의 공익성을 박탈을 위해 유효한 전제조건하에 박탈될 수 있다. 소규모 정원의 공익성의 박탈 절차는 주가 규정한다.
5. 통독전에 이루어진 소규모 정원의 공익성은 안정은 그대로 존속한다.
6. 통독에 의해 거두는 임대료는 피임대인의 수입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다. 통독후 3년이 경과한 후의 소작료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지역의 관례에 따른 임대료가 과일과 채소경작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사되어질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소작료가 이웃의 혹은 비교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부가된다.

7. 통독전에 법률에 따라 설비된 제3조 제2항에 나타난 크기를 넘는 정원에 있는 건물이나, 소규모 정원의 이용 목적과는 다른 건축물은 개축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소규모 정원시설에서의 작은 동물사육은, 작은 정원 공동체를 방해하지 않고 작은 정원이용에 모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허용한다.
8. 통독전에 존재한 소규모 정원 관리자의 자격과 계속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은, 건물이용의 다른 규정이 모순되지 않는한, 그대로 사용된다. 정원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 임대인은 추가로 적당한 사례를 요구할 수 있다.
- 5) 1990.8.14. 공포된(BGBl. IS.1730) 제2차 주택건설법의 제116조 다음에 제116a조를 신설한다 :

제 116a 조

통일독일을 위한 경과규정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이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 1) 이법의 규정은 공공의 예산에서 나온 자금으로 이법에 따라 통독후에 처음으로 허가된 새로 세워진 건물에 적용된다.
- 2) 이법에서 파생될 수 있는 공공의 법률적인 분쟁은 행정법원이 설립될 때까지 일반 법원에 회부한다.
- 3) 연방정부는 법령을 통해 연방상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통독후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월 수입상태와 수입증가를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수입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4) 제116조는 동베를린지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1982.7.22. 공포되고(BGBl. IS. 972)되고 1990.5.17.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BGBl. IS.934) 주택관련법의 제32조 다음에 제33조를 신설한다 :

제 33 조 통일독일을 위한 경과규정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이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1. 이법은 제2차 주택법 제116a조 제1번과 제2번의 원칙에 따라 공공추진 주택에 적용된다.
2. 제5조에 따른 증명서가 통일전에 유효했던 지역에 있는 주에서 발급되었다면, 그 증명서는 조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주택정책관계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제1항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들과 베를린에 있는 정부는, 주택관련법이 통독전에 이미 효력을 발휘했던 주들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어떠한 범위에서 유효한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5조 제4항 제3문은 동베를린에 적용될 수 있다.
4. 1974.12.18. 제정된(BGBl. IS.3603, 3604), 1982.12.20. 최종 개정된(BGBl. IS.1912) 임대료 인상 규정의 제10조 다음에 제11조를 신설한다 :

제 11 조

- (1)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이법은 공공자금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독후에
 1. 새로 설비된 건물에서 완성되었거나 혹은
 2.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방을 다시 완성하거나, 혹은 건축물과 시설을 주거의 목적으로 개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주거공간의 임대에 있어서는 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통독에 있어 법령에 의한 최고로 허용된 임대료가 부과된 주거공간에는 제1조 제1문 및 제3조와 그 이하의 항들이 적용된다. 제3조는 통독전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건축물에 적용된다.

- (3) 연방 정부는 연방 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법령으로 다음을 행사한다 :
1. 최고한도로 허용된 임대료를 수입의 상승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제2조 제1항 제1문 제2번에 따라 허가하되 주택의 상태, 구조, 크기, 유형을 재고려하여 정한다.
 2. 운영비나 운영비의 일부분을 제4조에 따른 비율로 임차인에게 부과할 것을 결정한다.
 3. 1992.12.31. 이후 새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추가비용을 요구해도 좋거나 혹은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임대료를 합의와 동시에 최고 한도로 허용된 임대료를 확정한다.
- (4) 임대인은 제1조 제2항과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제3항에 따라 허가된 임대료에 대한 법규정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대료와 영업비용이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하는가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자동설비의 도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자필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 (5) 임대인의 설명은 2개월후에 인상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 (6) 임대인은 임대관계를 늦어도 임대료가 인상되어야 하는 2개월전달의 3일에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 (7) 연방정부는 법령을 통하여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996.1.1.까지 제31조에 대해 현저한 수선조치에 있어서 투입된 비용 즉, 필요비의 지정한 범위안에서 년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범위의 결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제3항에 따라 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얼마의 금액이 임대인에 귀속되는가,
 2. 기대되는 임대료 인상이 임차인에게는 수입을 고려하여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임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선조치에 부당요구가 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제1호에 따른 법령을 근거로 한 수선조치는 이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제3조에 따른 건축에 관한 조치와 동등하다.

- (8) 1990.2.28. 공포되고(BGBl. I S. 310), 1990.8.10. 개정된(BGBl. I S. 1522) 주거보조비법의 제41조 다음에 제42조를 신설한다.

제 42 조

통일독일을 위한 경과규정

- (1)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1. 제8조 제1항부터 제 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과 제16조에 명시된 금액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규에 명시된 금액을 대치한다.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제시된 백분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지급될 것을 고려하여 제2항 제3번에 따른 법령에 명시된 백분율로 대치된다. 제36조 제1항 제1로 제1문의 a와 제2호에 따라 1988.5.25. 공포되고(BGBl. I S.643), 1990.8.17. 최종 개정된(BGBl. I S.1777) 임대료 보조금법의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법규에 명시된 총액으로 대치된다.
 2. 제3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주거보조금은 연방사회보장법 의미에서 이 규정이 제42조 제2항 제6번에 따라 법규정을 통하여 폐기되지 아니하고 상이한 백분율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금액을 독일마르크로 계산한다.
 3. 제36조 제1항 제2호 제2문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연방정부는 법령을 통해 연방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임대료 최고액과 제8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하여 수입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금액을 확정하고 변경하여
 2. 수입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총공제액을 확정하고 수정하며,
 3. 수입의 세금납부를 고려하여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총공제액을 확정하고 수정하며,
 4. 제1항 제1호 제4번에 명시된 난방비 및 물사용료의 총액을 임차인이

경영비용을 위해 평균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수정하고,

5.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은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수입, 임대료 혹은 임차인에 의해 평균적으로 지급된 난방과 온수사용 비용에 대한 금액이 그밖의 연방지역과 비교될 수 있는 한 폐기하며,
6. 제1항 제2호를 폐기하는 권한과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먼저 임의 추출시험의 토대위에 제36조 제2항 제1호의 a와 제2호에 따라 정확성을 가진 임대료 보조금 통계를 고려하여 요구되는 계산이 임대료 보조금의 측정을 위한 백분율을 확정하고
7. 제6호에 명시된 전제조건외의 제출에 있어 제3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한 제1항 제3호를 폐기한다.

제 III 장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1990.2.28. 공포되고(BGBI. I S. 310), 1990.8.10. 개정된(BGBI. IS. 1522) 주거 보조금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법은 1990.8.10. 제정된 법 제2조를 포함하여 1991.1.1.부터 적용된다. 제42조 제2항은 조약의 효력과 함께 적용된다.

제 XV 장

연방과학 기술장관 업무영역

(해당없음)

제 XVI 장
연방 교육학술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대학교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된다:

1. 1969.9.1. 제정되고(BGBL. I p.156), 1976.1.26. 이 법 제80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185) 대학 건축 촉진법의
 - a) 제7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연방과 다수의 주가 이에 찬성하면 효력을 얻는다."
 - b) 제14조 다음에 제14a조가 신설된다:

"제 14a 조

독일통일을 위한 경과규정

- (1) 통일효력 발생이후 1년동안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 지역에 있는 대학과 대학시설은 제42조 제1항과는 달리 당분간 등기부에 기재된다. 임시 기록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늦어도 1993년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연방 상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법규정에 의하여 이 시점까지 임시적인 기록을 말소하거나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록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 1994년말까지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헌법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베를린주 지역에 있는 대학과 대학시설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는 운영계획 또는 운영기획설정에 대한 단순한 방식을 적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제5조 제2항, 제6조 그리고 제8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제2항에 의한 청구와는 다르다.

(3) 계획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단순한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계획위원회는 이 과정의 세세한 부문을 확정한다."

2. 1976.1.26. 제정되고, 1987.4.9. 공포한 대학 기본법(BGBL. I p.1170)의

a)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2항 다음에 제3항이 신설된다.

"(3) 다른 유럽공동체의 회원국 국민이 학업을 위하여 필요한 독일어 능력을 증명한다면 제1항에 따른 독일인과 같이 취급한다."

bb) 지금까지의 제3항은 제4항이 된다; 이항의 "다른"은 "추가적인"으로 대체된다.

b) 제33조 다음에 제33a조가 신설된다 :

"제 33a 조

독일통일을 위한 경과규정

(1) 통일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 지역에서는 1985년 6월 14일에 합의한 학생등록에 관한 국가협정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주의 대학에서 학업은 각주의 동의와 함께 제31조 제1항에 따라 중앙대학 입학허가 기관(ZVS)의 결정과 연관 시킬 수 있다. 통일효력 발생 이후 5년동안 통일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주지역의 대학 또는 각주의 동의를 얻어 제31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대부분의 수업기간 동안 학업내용과 졸업에 관한 것이 기타의 주와 동일하다면 특별한 대학과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제32조 제2항 제1호 제5문은 통일조약 제1조 제1호에 언급된 주

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주지역에서 1991/92년 겨울학기 이전에 학업을 마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 지역에서 1985년 6월 14일의 학생등록에 관한 협정에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주에서 제1항 제1문에 따라 중앙대학 입학허가 기관의 사정과정에 학업에 대한 것이 없는 한 제32조 제3항 제2호 제1문과 제6항과는 달리 제32조 제3항 제1호 제5문에 따라 대학등록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적용되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언급한 전제조건하에 제32조 제3항 제2호 제1문에 의한 대학등록에 대하여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주지역에서 취득하려는 대학입학허가를 예견해야 한다. 제32조 제3항 제1호 제6문 및 제2호 제1문은 해당사안에 적용된다.
- (4)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던 베를린 주지역에 대한 학생에게 학생등록인정에 대하여 기타의 주에서 이미 대학입학허가를 받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3항에 의해 인정된다.
- (5)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주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1990/91 겨울학기까지 공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법 제32조 제3항 제2호 제7문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6) 제3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a에 따른 입학허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된다."
- c)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지금까지의 제34조 제1항이 된다.
- bb) 다음과 같이 제2항이 추가된다:
- "(2) 1982.3.25. 제정된(BGBL. I No.12 p.268), 국방의 의무이행과 동등한 의무에 관한 공표의 내용 b부터 d까지의 조항에 따

른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동독 헌법 제23조에 따른 의무로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d) 제57f조 마침표 대신에 줄을 긋고 다음의 문장이 추가된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통일효력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제57a조부터 제57e조까지를 노동계약에 적용한다."

e) 제7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a)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aa) 제2항 다음 제3항이 추가된다:

"통일효력 발생후 3년이내에 통일조약 제1조에 언급한 주와 헌법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던 베를린 주는 이 법의 규정과 동일한 주법을 제정해야 한다."

bbb) 지금까지의 제3항은 제4항이 된다. 이 문항은 다음과 같다."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9조, 통일효력 발생이전에 적용되던 제27조 제3항, 제33a조 제4항, 제57a에서 제57f조까지 그리고 제70조 제6항이 적용된다. 이와 동일한 주법이 적용될 때까지 제27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4항은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지역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던 베를린 주지역에 즉시 적용된다.

bb)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최초로 1991년 여름학기까지 허가되고 제1항에 의한 주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1985년 6월 14일에 제정된 대학 입학허가에 관한 국가조약(* 연방차원에서 대학정원 정책에 따라 학생수를 제한해야 할 전공과에 대한 입학허가를 중앙기관(ZVS)에서 관장하기 위한 주간의 합의문)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이법과 동일한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cc) 제5항에서 "1989년"은 "1993년"으로 대체된다.

f) 제75조 다음에 제75a조를 신설한다:

"제 75a 조
독일통일을 위한 경과 규정

대학의 학술 및 예술 부문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수용은 제72조 제1항 제3문에 따라 정해진다. 제75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28항의 기본적인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통일조약 규정에 있는 공무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한다. 지금까지의 법적 관계에 의하여 상위 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의 법적 지위는 주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업무영역 B : 교육지원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삭제, 개정 또는 보충된다 :

1983.6.6. 공포되고(BGBL. I p.645,1680), 1990.5.22. 최종 개정된(BGBL. I p.936) 연방 교육 촉진법과 이법 제2조 제3항, 제13조 제4항, 제14a조, 제15조 제4항, 제18조 제6항, 제18b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4문, 제44조 제1항과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는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을 갖고 또한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연방 교육 촉진법

a) 제5조 제2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1번의 "할 수 있다" 다음의 "혹은"이라는 단어는 콤마로 대체된다.

bb) 제2번 "혹은"이라는 단어가 추가된다.

cc) 제2번 다음에 제3번이 보충된다.

"3. 1990년 10월 1일 이전에 외국에서 교육을 시작한 그리고 1990년 12월에 동독의 장학금법에 따라 지원된 것"

b) 제6a조는 삭제된다.

c)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에게 매월 지급액은 :

1. 직업교육이수가 전제되지 않는 직업학교 및 전문 학교의 위치가
 - a) 부란덴부르그, 메클렌부르그-포퓰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또는 이 법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지역에 있다면 250 DM,
 - b) 이 법이 적용되는 기타의 지역과 외국에 대해서는 310 DM,
2. 야간종합학교, 직업학교, 야간실업고등학교 그리고 전문학교 등 직업교육이수가 전제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 a) a의 제1번에 언급된 지역에 있다면 445 DM씩,
 - b) 법이 적용되는 기타의 지역과 외국에 대해서는 555 DM,"
 - bb) 제2항 제1문은 다음과 같다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매달 적용되는 것은
1. 직업교육이수가 전제가 되지 않는 일반고등학교의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교육에는
 - a) 제1항 제1호 a)에 있는 지역에는 445 DM
 - b) 법이 적용되는 기타의 지역과 외국에 대해서는 555 DM
2. 야간종합학교, 직업학교, 야간실업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교 등의 직업 교육과정의 이수가 전제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 a) 제1항 제1호 a)에 있는 지역에는 535 DM
 - b) 법이 적용되는 기타의 지역과 외국에 대해서는 670 DM."
 - d)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a)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1) 피교육자의 월 지급액은
1. 직업교육과정의 이수가 전제가 되는 전문과정, 야간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단기 과정에 대한 교육에는,
 - a) 제12조 제1항 제1a번에 표시된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460 DM.
 - b) 기타 이법이 적용되는 지역 또는 외국에 있는 교육 기관이라면 500 DM"

bb) 제2항은 다음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액수는 피교육자의 거주 상황에 따라 증가된다.

1. 부모와 동거하고 교육장소가

a) 제12조 제1항 제1a호에 언급된 지역에 있다면 월 20 DM

b) 기타의 지역 또는 외국에 있다면 월 65 DM

2.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교육장소가

a) 제12조 제1항 제1a호에 언급된 지역에 있다면 월 50 DM

b) 기타의 지역 또는 외국에 있다면 월 210 DM

e) 제16조 제3항 제1문에서 "제2항 제2호" 다음에 제3항이 추가된다.

f) 제24조에서 제1항 다음에 제1a항이 보충된다:

"(1a) 제1항과는 달리 소득관련자가 1990년 6월 30일 현재 장기적인 거주지가 제12조 제1항 제1호 a에 표시된 지역에 있다면 승인 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10월에서 12월 중에 있었던 소득의 4배를 기준으로 한다."

g)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a) 1항에는 아래와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브란덴부르크주,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주에 교육진흥을 위한 지역관리청 및 지방관리청을 둔다. 수개 지역과 지방에 대하여 공동교육진흥청을 설립할 수 있다. 헌법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주 지역에 교육진흥청의 업무를 구가 담당한다."

bb)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문항이 보충된다:

"브란덴부르크주, 맥클렌부르크-포퓰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그리고 튀링겐주와 헌법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주 지역에서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피교육자를 위한 대학을 설립한다. 만일 제4항에서 언급한 주의 학생운영기관이 공법에 의한 기관으로 설립된다면 제4항과는 달리 교육축진 장학금이 지급된다."

h) 제40a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각주는 교육진흥을 위하여 주에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i) 제42조 제1항 제1문은 다음과 같다 :

"각주는 대학에 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k) 제48조 제4항에서 "제2항 제2호" 다음에 "제3호"가 보충된다.

l) 제58조 다음에 제59조가 신설된다 :

"제59조 기존의 장학금에 대한 계속적인 지불

(1) 1991년 3월 31일까지 이법에 따라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1990년 12월에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1. 1981.6.11. 제정된(BGBL. I No.17 p.229) 동독의 대학, 전문대학학생의 장학금 지불에 관한 규정으로 1985.7.16. 자녀를 갖고 있는 학생과 연수생의 지원금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규정 (BGBL. I No.21 p.247)

2. 1990.6.29. 제정된 장학금 규칙(BGBL. I No.53 p.1079)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연구조교와 대학에서 직업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장학금의 확보에 관한 규정

3. 1982.6.16. 제정된(BGBL. I No.29 p.542) 동독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의 확보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이수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는 피교육자가 동일한 교육과정을 계속하면 이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청구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증명한다면 이러한 규정은 효력을 갖는다.

(2)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지원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이 법에 의하여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m) 제56a조에 제6항과 제7항이 신설된다 :

"(6) 1991년 1월 1일 이전에 교육을 시작한 드레스덴의 Palucca 학교, 베를린 국립발레학교, 라이프찌히의 무용전문학교 그리고 베를린 국립예술전문대학의 피교육자는 일반교육과정 학생의 9학년과 10학년 그리고 직업 전문학교의 11학년과 12학년에 준하여 지원된다.

(7) 1991.1.1. 이전에 대학생이 된 동독의 장학금 대상자에게는 제 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981.11.11. 제정되고(BGBL. I p.801), 1988.7.11. 최종 개정된(BGBL. I p.1028) 교육 촉진 장학금 운영위원회 결정에 관한 규칙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제1호에서 "4"는 "6"으로 대체된다.
- b) 제2호에서 "5"는 "7"로 대체된다.
- c) 제3호에서 "2"는 "3"으로 대체된다.
- d) 제6호에서 "4"는 "6"으로 대체된다.

3. 1981.6.29. 발표되고(BGBL. I p.577), 1988.7.11. 최종 개정된(BGBL. I p.1029) 상급전문학교와 아카데미 및 대학교육을 위한 장학금 지급 최대 기간에 관한 규정의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기존의 제1항과 제2항은 제1항이 된다.
- b) 제1항에 다음 제2항이 신설된다.

"(2)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퐁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와 이 규정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베를린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최장 지원 기간은 관할전 문부가 교과 전공분야 각각에 대하여 정한 정규 교육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1974.7.15. 제정되고(BGBL. I p.1449), 1986.2.24. 최종 개정된(BGBL. I p.315) 특별사정에 따른 별도 장학금 규정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1) 제8조에 의한 장학금은

- 1. 이법 제12조 제2항 제1a호에 따라 30DM
- 2. 이법 제12조 제2항 제1b호에 따라 80DM
- 3. 이법 제12조 제2항 제2a호에 따라 40DM
- 4. 이법 제12조 제2항 제2b호에 따라 120DM
- 5. 이법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언급된 금액 등에 대한 매 달 필요한 생활비가 이를 초과할 때 100분의 75가 지불된다. 그러나

최대한 매월 75DM까지가 지불된다.

5. 제1호 a부터 f까지, h부터 m까지 그리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언급된 개정은 헌법이 효력을 갖는 전지역에서 발효된다. 제1호 g에 언급된 개정은 통일조약 제45조에서 언급된 날에 헌법이 효력을 갖는 전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호 g는 1993년 12월 31일 효력이 소멸된다.

6. 1990.6.1. 이 법의 효력범위 이외의 지역에 거주지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에 관한 규정(BGBL. I p.998)은 1990. 12. 31.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잃는다.

업무영역 C : 직업교육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1. 1969.8.14. 제정되고(BGBL. I p.1112), 1981.12.23. 이 법 제19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1692) 직업교육법 제108조 다음에 108a조를 신설한다 :

제 108a 조

독일통일에 따른 졸업증명서의 동등 자격부여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시험합격증과 전문직의 조직 및 직업교육 조직에 따른 시험 합격증은 동등한 자격을 지닌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1. 1969.8.14. 제정되고(BGBL. I p.1112), 1981.12.23. 이 법 제19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1692) 직업교육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

25조, 제29조 제1항, 제43조 제1항과 제2항,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5항, 제80조 제2항, 제81조 제4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95조 제4항, 제96조 제2항에 의한 규정은 다음조치에 따른다 :

- a)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연방교육장관이 정하는 규정을 필요로 하며 연방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법의 제29조 제1항과 제43조에 의한 법규는 연방경제장관 또는 기타 해당장관이 연방 교육장관의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생시키며 이 경우 연방 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 b) 관할관청은 기술적 규칙을 통해 제기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교육규정 예외규정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할 수 있다. 예외규정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연방경제장관 또는 기타 해당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연방교육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권한을 축소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c) 범기업적 직업실습장(법 제27조)에 언급된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 교육 규칙은 이러한 교육이 불가능한 장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d) 1990년 7월 19일 제정된(GBL. I No.50 p.907) 동독내에서의 서독 직업 교육법의 발효에 있어서 - IGBBIG - 성립된 교육관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연수생이 기존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겠다고 분명하게 원하는 경우에 수행한다. 실습 관계가 새로운 교육규정에 따라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과 해당기관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실습 회사를 찾아주어 실습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e) 일반대학 입학자격 과정과(아비투어) 직업교육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기간을 연장하게 한다.
- f) 이 법 제76조, 제77조,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적용과 이 규정에 따라 공표된 법규를 근거로 한 적용에 있어 연방상원의 동의 없이 연방교육장관의 동의를 얻어 연방경제장관과 해당주무장관이 결정한다.

- g) 1990년 7월 19일 제정된 동독에서의 서독직업교육법 적용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 IG BBiG - 서명된 직업교육계약서(*기업과 학생간에 맺어지는 계약서) 이행을 위하여 기업은 실무적인 직업 교육 목적에 적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경영대학 및 기타 직업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1990년 12월 31일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수공업 협회와 상공회의소 등의 신청에 의하여 기업이 어느정도 범기업적 실습 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신탁 관리청으로서 어느정도 사용 가능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 h) 법 제79조, 제87조, 제89조 그리고 제91조의 관할관청이 없으면 주가 관할관청을 지정한다.
- i) 연방경제장관과 해당 부처장관이 연방교육장관의 동의와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법에 따른 규정의 제정이 없는 경우 전문직업체제에 따라 교육받는 실습생은 기존의 법규에 따라 시험을 치른다.
- k) 통일효력 발생당일 유효한 직업계속교육과 전직교육의 시험과정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업무영역 D : 통신교육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1. 1976.8.24. 제정되고, 1976.12.3. 최종 개정된 통신교육법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통신학습보호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국립통신교육센터로부터 허가 받은 통신교육과정은 동베를린과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2.12.31.까지 유효하다.

제 X VII 장 연방 경제협력장관 업무영역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1969.6.18. 제정되고(BGBL. I p.549), 1989.12.18. 이 법 제75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2261) 개발도상국 지원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제8조 제2항에서 모자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과 관련되는 것은 1977.6.16. 제정되고(GBL. I No.18 p.185), 1990.6.22. 최종 개정된 노동법 제24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1991.1.1.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1991.1.1.까지 유효하다.
- b)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연금보험법 규정의 관련 내용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규정은 부록 II의 제 VIII 장 업무영역 F 제 iii 절과 관련된다.
- c) 제7조 제2항 제1문의 마지막줄에 따른 부담액과 부담액 측정 기준의 한계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한 의료보험에 대하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 부문

제 X VIII 장

통 계

제 i 절

- 조약 제8조에 따라 연방법이 효력발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1978.6.16. 제정되고(BGBL. I p.751), 1990.6.25. 이 법 제30조를 최종 개정한(BGBL. I p.517) 동독과 동베를린과의 통상 교역 통계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보충된다:

1.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없이 경과규정과 다른 연방통계를 대의조사의 차원에서 확대된 영역에 적합하도록 규정할 권한을 지닌다.
2.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통계 규정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 1 조

관할연방장관들은 연방통계에 관한 경과규정과 관계없이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없이 통일후 경과기간 2년동안에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통계적 보고체제에 적응키 위하여 개별요소들의 조사, 보고시기, 기간 등의 연장, 우선순위, 보고과정 또는 보고자의 영역 등을 변경시킬 권한을 지닌다.

제 2 조

보조기호의 계속사용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통계조사에 있어서 연방통계규정과 달리 사용되어오던 보조기호, 새김번호, 목록번호 등은 통일후 다음의 경우에 계속 사용된다.

- a) 연방통계 관련 규정이 이러한 보조기호없이 운영이 불가능한때,
- b) 이미 소장된 통계 자료의 보존과 이용이 계속되어야 할 자료일 때,
 - a)의 경우 가장 빠른 시일안에 연방규정에 맞는 통계표의 전환과 삭제 를 늦어도 1992.12.31.까지 정한다. b)의 경우 1994.12.31.까지 사용종료후 평가한다.

제 3 조 공동 통계청

- (1) 동독의 통계청은 통일후 1992년 12월 31일까지 주의 관할 임무를 인지할 때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의 공동 통계청이 된다. 이 시점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주의 해당 시설을 이관한다.
- (2) 위 제1항의 경우 동독의 통계청의 전산 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1992년 12월 31일까지 연방 관할 임무를 인지할 때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에서 계속 운영된다. 연방임무를 수행할 때 연방이 비용일부를 부담한다. 통계청의 전산센터가 주의 공동시설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체되어야 한다.

제 X IX 장 공무원계 인사법과 군인법

업무영역 A : 공무원계 인사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1985.2.27. 공포되고, 1989.12.18. 법 제7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공무원법의
 - a) 제9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aa) 제1항의 "7명의 정규 및 7명의 대리회원"을 "8명의 정규 및 8명의 대리회원"으로 개정한다.
 - bb) 제2항 제2문의 "하나의 다른 연방상위관청의 인사부장" 대신 "두개의 다른 연방상위관청의 인사부장"으로, 제3항의 "또다른 하나의 연방 상위관청의 인사부장" 대신에 "또 다른 2개의 연방상위관청의 인사부장"으로 개정한다.

- cc) 제3항의 "3인의 정규 및 3인의 대리회원"을 "최소한 6명의 회원"으로 개정한다.
- b) 제100조 제3항 제1문의 "최소한 5명의 회원"을 "최소한 6명의 회원"으로 개정한다.
2. 1987.2.12. 공포되고, 1990.6.28.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공무원 후생 복지법의 제107조 다음에 제107a조를 신설한다:

제 107a 조
독일통일을 위한 경과조치

연방정부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에서의 공무원의 특별관계를 고려하여 공무원 복지를 위한 규정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1992.9.30. 까지 제정해야 한다. 이 규정위임은 이 법률과는 달리 정년규정과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3. 1989.2.21. 공포되고, 1990.7.19.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보수법 제72조 다음에 제73조를 신설한다:

제 73 조
독일통일을 위한 경과조치

연방정부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공무원의 특별관계를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를 위한 규정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1992.9.30.까지 제정해야 한다. 이 규정위임은 이법과는 달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 재정 및 그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규칙적으로 적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 iii 절

연방법은 조약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공무원 피고용자의 법적관계

- (1) 통합에 있어 동독과 동베를린의 공공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자는 통합이전의 유효한 노동조건과 이 조약의 조치에 따라 특히 다음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는 예외나 혹은 이에 반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타 연방지역의 공무원에 대하여 정해져있는 노동조건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 (2) 조약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시설들은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이관되면 이 기관에 고용된 자의 노동 관계는 제1항에 따라 연방에 속한다. 공법상의 재단, 협회, 그리고 연방과 직접 관련되는 기관에 대한 이관에서도 같다. 기타 피고용자의 노동관계는 통합일에 정지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일당일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제2문에 따라 3개월간 연장된다. 이시기까지는 제1문이 적용된다). 위 제2문에 의한 정지기간에 피고용자는 최종 근무 6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월 대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일시불 또는 특별지급은 여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고용자는 노동청과의 협조하에 필요한 전직교육 또는 계속교육 조치를 장려한다. 피고용자는 다른 행정 기관에 6개월내에 고용되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나면서 노동관계는 종결된다. 통일당일에 피고용자가 50세가 되었으면 그 기간은 9개월이 된다. 정지 기간에 임금대불이나 기타 수입이 대기금과 합하여 대기수당보다 많을 때에는 대기수당에 포함시킨다. 제1문과 제5문의 경우와 관계없이 정년연령에 도달하면 임용계약관계는 끝난다.
- (3) 위 제2항은 동베를린 기관의 피고용자, 주의 임무, 헌법 제916조에 따른 공동체 임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공공행정기관에서의 노동관계의 합법적 해고 고지는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1. 피고용자의 부족한 전문자질 또는 요구되는 인성적 특징이 부적절할 때,
 2. 수요 초과로 더이상 고용할 수 없을 때,
 3. 현재까지의 업무가 필요없이 해체되거나 직무의 주요변화, 통합 및 축

소로 인하여 더이상 필요가 없을 때, 대기수당을 보증할 수 없게되면 위 제2번과 제3번의 경우에는 과도기금을 제2항의 수준으로 지급한다. 제2항 제6문은 해당사안에 적용 된다. 해고 준비기간은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노동법의 보충과 개정으로 최종개정된 동독 노동법 제55조에 의한다. 부록 II의 제 XIX 장 업무영역 B 제 ii 절 제2번 b항은 내무부와 세관 부문에서의 해고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이 항은 통일후 2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5)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해고의 주요 이유가 된다:

1.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 원리에 충돌한 자. 특히 1966년 12월 19일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동맹에서 보장한 인권 혹은 1948년 12월 10일 인권선언의 정신을 훼손한 자,
2. 국가안보와 안전기획부에서 활동한자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관계가 예측 불가능한 자.

(6)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고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와 명백하게 같다.

(7) 판사와 검사에게는 제III장 업무영역 제iii절 제8번에 따른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2. 1985.2.27. 공포되고, 1990.5.28. 법 제3조를 최종 개정한 공무원 기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와 동베를린시는 공무원 기본법 제1조의 의무에 따라 주 공무원법을 1992.12.31. 까지 제정해야 한다. 각 주의 공무원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이들주와 동베를린에서는 연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 조치를 적용시킨다.
- b)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와 동베를린시는 공무원 기본법 규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제2호 c항의 조치에 따를 수 있다. 이 규칙은 1996년 11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와 지방 공무원들은 공무원 기본법 제2항 제2항에 따른 수습공무원으로서 조처 a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다. 연

방 인사위원회의 임무는 자율성을 지닌다(공무원 기본법 제61조, 제 62조). 제3호 제e항에 언급된 연방내무부 관할청은 해당주의 담당부서와 이에 관하여 합의해야 한다. 공무원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적용되는 소송에서의 집행요구는 표결 처리한다.

3. 1985.2.27. 공포되고, 1989.12.18. 법 제7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 공무원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연방공무원 임명에 있어서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연방 공무원법과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 b)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에서 공공행정에 근무하는 자는 연방공무원 제4조의 조치에 따라 수습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경력직 능력은 위임된 기능이 최소한의 어려움에 알맞는 직위보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관한 확정은 해당 영역의 최고 관청이 담당한다. 경력직 입문으로서 고위직 임용은 상급 및 고급공무직 연방 인사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수습기간은 3년이다. 연방인사위원회는 시보 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수습기간에는 경력직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정의 계속 및 전문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수습기간에 보호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급 관할청은 자체 영역내에서 결정한다. 최고 직무관청은단순, 중급 및 상급직의 경력직 또는 다른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연방 인사 위원회는 하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c) 공무원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력직 지원자가 있을 때까지 제3호 b)항을 적용한다.
- d) 수습공무원은 공무원에서의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 해고 이유 조건이 충족되면 해고할 수 있다. 공무원 후생복지법 제47조에 따른 경과보조금은 이경우 피고용자에게 제1호 제4항의 조치에 따른 경과보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지불한다. 공무원 임명은 임명시점에서 만50세가 되면 불가능하다. 연방인사위원회는 개인 및 집단별로 예외 규정을 들 수 있다.

- e) 보증요청의 유사 개별 사안은 연방내무장관이 법률로 따로 정한다.
4. 1974.9.24. 공포되고, 1990.5.22. 최종 개정된 근로 시간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적용될 경과 조치를 1992.9.30.까지 제정해야 한다. 규정의 구속력은 특히 합법적인 주간 근로시간의 지속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관계와 발전에 적합하도록 근로사안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규칙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공무원의 규칙적인 주간 근로시간이 동일한 위치의 피고용자의 주간 근로시간과 같게한다.
5. 1983.12.20. 공포되고, 1985.12.17. 개정된 모성 보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1.1.1.부터 발효하며 1990.12.31. 이후 출생한 자에게 적용된다.
6. 1970.10.11. 공포되고, 1990.3.13. 최종 개정된 요양휴가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규정을 1992.9.30.까지 제정해야 한다. 규정의 구속력은 특히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관계와 이지역 발전에 알맞도록 요양휴가규정과 별도로 정한 규칙에 적용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공무원의 휴가기간은 동일직위의 피고용자의 휴가기간과 같게 한다.
7. 1985.12.17. 제정되고, 1989.6.30. 개정된 교육 휴가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1.1.1.에 발효되며 1990.12.31. 이후 출생한 자에게 적용한다.
8. 1976.6.3. 공포되고 1988.12.20. 제3조를 최종 개정된 연방 경찰 공무원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3호의 조치는 제3호 b)항 제7문에 따라 연방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직업 및 계속교육제공에 적용한다.

9. 1987.2.17. 공포되고, 1990.6.28.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공무원 복직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법률은 1992.1.1.부터 유효한 원칙을 적용한다.
 - b) 제4조 제1항의 대기기간은 통일 후 표기된 기간만 충족할수 있다.
이 경과 조치는 통일후 5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 c) 제69조, 제69a조,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제84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8조, 제10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1967.7.20. 공포되고, 1989.12.18. 법 제12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징계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주징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동안 연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연방징계검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한 연방징계규정 결정에 따른다. 그 권능은 집행관청이 인지한다. 행정소송에서의 소청위원회는 징계 법원으로 결정한다. 연방징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주법의 특수성에 의하여 그 대체 방법으로 니더 작센주 징계법을 참고로 한다.
11. 1989.2.21. 공포되고, 1990.6.19.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연방 보수법률은 그 보충과 시행을 위한 규정과 함께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73조를 위한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임명된 공무원, 판사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이지역의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 유효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 관할청이 보수법을 관할하는 장관의 협조하에 제73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한다.
12. 1973.11.13. 공포되고, 1990.5.28. 최종 개정한 연방공무출장 비용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별관계를 취급하는 경과조치를 1992.9.30.까지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 전권위임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이 경제 재정적 관계와 그 발전이 알맞는 이법과는 별도의 일일 및 야간근무수당(연방공무 출장 비용법 제9조 제10조)을 포함해야 한다.

13. 1973.11.13. 공포되고, 1990.5.28. 최종 개정된 연방 이사비용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연방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별 관계를 취급하는 경과 조치를 1992.9.30.까지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 전권위임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 재정적 관계와 그 발전에 알맞는 이 법률과는 별도의 이사 지출 비용의 일괄지급금을 특히 포함해야 한다.

14. 1986.5.20. 제정된 별거 수당 규정(* 여기에서의 별거는 이혼이나 가정 불화가 아니라 직업상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출장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따른 보상차원에서의 별거의 개념임)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연방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별관계를 취급하는 경과 조치를 1992.9.30.까지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정 전권위임은 특히 출장에 의한 별거수당을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 재정적 관계와 그 발전에 알맞는 이 법률에 관계없이 별도로 포함시켜야 한다.

15. 1974.3.15. 제정되고, 1990.5.28. 법 제4조를 최종 개정된 연방 인사 대표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서독의 연방 인사 대표법의 1990.7.20. 제정된 동독 인사 대표법에의 적용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는 조약 제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4조에 의한 직책의 인사 대리와의 조직은 연방법 또는 연방정부의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경우 혹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늦어도 1993.5.31.까지 존속한다. 또한 연방 인사 대표법에 의하여 구성된 통일과정에 필요한 직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b) 연방 인사 대표법이 동독의 1990.6.22. 제정된 인사 대리법에의 적용에 있어서 1990.5.18. 양독이 맺은 화폐, 경제, 사회통합 창설에 의하여 확정된 통일후 2년간의 경과조치를 위한 계획은 법률의 개별적 결정과 동독의 1990.6.22. 개정된 인사대표법의 적용을 위하여 우선권을 지닌다.
- c) 동독의 연방 인사 대표법이 적용 되지 않는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

급된 지역과 동베를린 소재 입법 권능 관할행정 관청에는 새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이 법이 적용된다.

- d)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1992.9.30.까지 이 법률 시행을 위한 규칙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경과규정이 주법 효력 발생전에 입법되는 경우, 그 제정권한이 연방의회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회에 있는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 1974.11.23. 제정되고, 1989.10.25. 최종 개정된 연방 인사 대표법을 위한 선거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1990.7.22. 제정된 동독의 연방 인사 대표법 적용을 위한 법률 제19조의 적용과 집단이 형성되지 않는 한 1990.7.22. 제정된 동독의 연방 인사 대표법 - 인사 대표법, 선거법 - 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규정 제정 위임은 위 제15호에 따른다.

17. 1978.2.20. 공포되고, 1990.7.19. 법 제2조를 최종 개정된 군인보수법과 그 시행 규칙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별관계를 고려한 경과조치를 1992.9.30.까지 제정할 것을 위임받는다. 이 규정 제정 전권 위임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적·재정적 관계에 알맞도록 군인보수법과는 다른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규정에 고정시키고 규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과조치는 한시적이다. 이 규정의 발효시까지는 통일효력 발생전일 까지 유효한 규정을 적용한다.

업무영역 B : 군인법

제 II 절

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고 보충된다:

1. 1987.3.5. 공포되고, 1990.6.26. 법 제4조를 최종 개정된 군인 후생법의
 - a) 목차내용 중 제6부 제4번 다음에 제4a번을 신설한다:

4a. 독일통일 회복에 필요한 경과조치 ...92a

b) 제92조 다음에 다음의 하위절을 보충한다 :

4a. 독일 통일 회복에 필요한 경과조치

제 92a 조

연방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특별관계를 고려한 경과규정을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제정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 규정 제정 전권위임은 이 법 이외에 후생·복지의 유형, 산후 기초, 복지기금 급부 등을 포함한다.

2. 전동독 군인의 법률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

제 1 조

전동독의 군인은 통일효력과 동시에 연방군의 군인이 된다. 복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

1. 국방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의무법률과의 관계에서의 군인법에 따른 군복무 관계에 놓인다.
2. 통일시에 동독의 국민군대에 속했던 복무와 직업군인은 통일전날까지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다음 규정의 조치에 따른 복무관계를 지닌다.

제 2 조

- (1) 동독의 직업군인 또는 장기 복무군인의 복무관계는 통일과 동시에 전역된다.
- (2) 위 제1항에 따라 전역된 기간중에는 최종 6개월간의 보수의 70%를 지급받는다. 1회성 또는 특별 지급금은 고려되지 않는다. 전역기간중에 얻어지는 수입금은 그 합계가 대기보조금 계산액보다 많으면 대기 보조금으로 계산된다.

- (3) 장기 복무 또는 직업군인이 6개월간 계속 복무하지 않으면 이기간 경과와 함께 복무관계는 자동으로 끝난다. 통일당일 50세가 된 군인에게는 9개월을 적용한다. 이 기간중에는 이절의 제7조 제2항 제1문부터 제3문까지 그리고 제2항의 해고규정을 적용한다. 대기보조기금에 대한 보조금 신청은 이절의 제5조에 따라, 후생 복지금은 제6조에 따라 처리된다.
- (4) 장기 복무 혹은 직업군인은 제3항 제1문의 적용을 받거나 혹은 제3항 제2문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 이 절의 제6조 제2항을 적용 받는다.

제 3 조

연방국방장관이 동독군의 군사적 통합, 연합군, 직무위치 또는 시설을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계속 존립케 하던가 혹은 다른 단위, 연합군, 직무위치 혹은 시설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절의 제2조 제1항은 단기 복무와 직업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이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성립되어진 군인 복무관계가 적용된다.

제 4 조

- (1) 동독의 현행법에 따라 성립된 동독군의 군인의무와 권리는 소멸된다.
- (2) 동독군의 장기 복무 및 직업군인의 의무와 권리는 규정 제1호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군인법 제9조, 제27조,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을 제외한 제1절 제2소절의 적용을 받는다.
- (3) 연방국방장관은 동독군이 어떤 직책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연방국방장관은 이 결정에서 동독군내에서의 직업교육, 복무기간, 경력 및 기능을 고려하며, 연방방위군내에서의 직책과의 관계내에서 배치한다.

제 5 조

- (1) 동독의 장기 복무 및 직업군인을 위한 보수와 건강 복지는 통일전 동독법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1990.9.30.까지 다른 공무원의 규정과의 관계속에서 적합한 보수 및 건강복지를 검토하고 새로 규정할 것을 위임받는다. 이절의 제7조 제2항에 명시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사안과 비교하여 해고나 대우에 관한 특별규정설정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 (2) 보수 및 건강복지는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민간 공무원에 적용되는 유효한 규정에 알맞는 발전에 적합하다. 필요한 규정은 연방정부가 마련한다. 전권위임은 1990.9.30.까지 만료된다.
- (3) 국방의무 복무자의 보수는 부록 I 제X IX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7번에 따른 경과조치와 함께 군보수법에 따른다.

제 6 조

- (1) 복지금은 부록 II 제VIII장 H항 제iii절 제9번에 따른다. 통일효력 발생후 군복무중 부상당한 군인의 복지는 군인복지후생법 시행령에 따른다.
- (2) 민간 직업인으로서의 통합은 고용촉진법 시행령, 특히 직업교육, 직업 계속교육 및 전직교육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연방군의 직업 촉진 복무를 통하여 별표 보조직책이 보증된다.
- (3) 이절의 제5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 7 조

- (1) 동독군의 장기 복무 및 직업군인은 전역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인다. 장기 복무자는 복무기간이 끝나면 제대된다. 직업군인은 현행법상 의무복무기간이 끝났거나 이미 지난경우 전역시킬수 있다. 장기

복무자 또는 직업군인은 다음의 경우 전역시킬 수 있다 :

1. 요구되는 인성 또는 전문적 자질이 적합치 않은 경우
2. 부족한 수요에 의하여 더이상 필요치 않은 경우
3. 현재까지의 복무위치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되거나 그 자체의 주요 변화, 통합, 혼합등의 이유로 더이상 필요치 않을때 위 제1문과 제4문 제2번과 제3번의 경우에는 과도기 보조금을 지급하며 금액과 지급기간은 제2항 제2문과 제3항 제1문에 의한 월대기 지급금에 따르며, 제1문의 경우 제4문 제1호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제2항 제2문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2) 동독의 장기복무 및 직업군인은 다음의 경우 전역된다 :

1.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 기본원리에 충돌한자, 특히 1966.12.19. 민간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보증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1948.12.10. 인권 선언의 기본정신을 해친자.
2. 국가안전을 위한 국가안전기획부 1청에서 근무한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자.

(3) 전역 명령은 군인에게 위 제1호 마지막 절의 경우 전역일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1) 이 절 제1조 제2항의 동독의 장기복무 및 직업군인은 군인법 규정에 따라 자유선택적 책임하에 군인으로서 2년간 임용될 수 있다. 군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연령제한 40세 이하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연방정부는 군인법 제27조 제4항 제3문과는 달리 부대의 최상급 직무를 최하급 직무로 임명할 것을 법률로 규정한다.

(3) 보수는 연방보수법과 부록 I 제 XIX장 영역 A 제ii절 제3번과 제 iii절 제11번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4) 연방 국방장관은 직업군인의 이양과 복무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연방국방장관은 직업군인을 위한 장교 이양전에 인사상의 특징에 대하여 자문 위원회로부터 청취한다. 이 위원회의 조직, 명령, 방법은 연방정부가 정한다. 직업군인으로서의 임명은 지원자가 50세를 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

- (5)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또는 직업군인으로 이양되지 않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군인에 관한 복지금은 이절의 제6조에 따른다.

제 9 조

이절의 위 조항은 1996.12.31.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제 ii 절

연방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1. 1968.6.13. 공포되고, 1989.6.30. 제1조를 최종 개정한 병역의무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5조 제1항의 기본 병역의무 기간과 그 종료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현행 동독법에 따라 통일시점에 동독군에 속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된다.

2. 1976.11.10. 제정되고, 1990.8.11. 최종 개정된 위생장교 후보생의 교육비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연방 정부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재정적 관계를 고려하는 법규를 통하여 해당 교육비의 수준을 결정한다.

3. 1986.1.29. 제정된 여성 위생장교의 모자 보호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1.1.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1990.12.31.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된다.

4. 1986.1.29. 제정된 여성위생장교의 교육휴가 규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기준 제3번은 유효하다.

5. 1987.3.5. 공포되고, 1990.6.26. 법률 제4조를 최종 개정한 군인 후생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이 법률은 1992.1.1.부터 유효한 원리로 적용된다.
- b) 동독의 병역복무관계에서 면제된 군인과 이 규정 제2절 제2호 제1조에 의한 동독군의 장기복무 및 직업군인 그리고 2년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복무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연방군의 직업군인은 이 법률에 의하여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또한 통일후 병역복무중 부상으로 고통 받는 군인을 위한 부상자 복직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c) 군인복지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산출에 있어서는 통일후 기간만 계산한다. 이 경과조치는 통일후 5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 d) 군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은 공무원 복지법 제86조 그리고 군인 복지법 제64조, 제67조부터 제79조, 제91조, 제94조까지, 제97조 등과 관련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6. 1987.12.14. 제정되고, 1990.4.25.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생계 보장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경제·재정적 관계에 알맞는 금액지불능력과 지불한계를 법규정으로 제정할 권한을 지닌다.

부 록 II

목 차

A. 전 문

B. 영 역

| | |
|--------------------------------------|-----|
| 제 I 장 연방외무장관 업무영역..... | 485 |
| 제 II 장 연방내무장관 업무영역..... | 486 |
| 제 III 장 연방법무장관 업무영역..... | 490 |
| 제 IV 장 연방재무장관 업무영역..... | 569 |
| 제 V 장 연방경제장관 업무영역..... | 580 |
| 제 VI 장 연방식량 농업 삼림장관 업무영역..... | 584 |
| 제 VII 장 연방내독장관 업무영역..... | 586 |
| 제 VIII 장 연방노동 사회보장장관 업무영역 | 586 |
| 제 IX 장 연방국방장관 업무영역..... | 603 |
| 제 X 장 연방청소년 가정 여성 보건장관 업무영역 | 603 |
| 제 XI 장 연방교통장관 업무영역..... | 609 |
| 제 XII 장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정장관 업무영역..... | 614 |
| 제 XIII 장 연방체신장관 업무영역..... | 615 |
| 제 XIV 장 연방공간질서 건축 시가조성 장관 업무영역 | 618 |
| 제 XV 장 연방연구 기술장관 업무영역 | 618 |
| 제 XVI 장 연방교육 학술장관 업무영역 | 619 |
| 제 XVII 장 연방경제협력 장관 업무영역 | 620 |

C. 특수부문

| | |
|-----------------------------|-----|
| 제 XVIII 장 통 계 | 621 |
| 제 XIX 장 공무원계 인사법과 군인법 | 622 |

빈 면

전 문

동독의 계속유효한 법률을 위한 특별규정

각장의 제i절에 열거된 동독의 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I장 제i절에 열거된 국제법상의 조약도 조약 제12조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각 장의 제ii절에 열거된 동독법규는 폐지, 개정, 보충된다. 각장의 제iii절에 열거된 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동독법이 연방법으로 효력을 지속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연방법이 유효하다.

연방법의 계속 효력을 지니는 동독법이 법규, 법령 혹은 일반 행정령제 정권을 지니는 경우 기본법 제129조가 적용된다. 동독에 의해서 이 협정의 서명과 통독의 효력발생시까지 공포되는 법규가 명시적으로 열거되는 한 제9조 제3항은 제2항과 함께, 그리고 부록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사이에 추가적 합의없이 이 부록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 I 장

연방 외무장관 업무영역

제 i 절

동독의 다음 조약은 통일조약 제12조에 의거하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어서 계속 유효하다 :

1. 소련과 미국사이에 중단거리 로켓트 철거를 위하여 1987년 12월 11일 체결된 조약과 관련하여 동독, 소련, 체코사이에 맺어진 조사에 관한 협정(1988년 12월 15일 GBIII Nr.2. 관보에 게재됨)
2. 1987년 12월 8일 미소간의 중단거리 로켓트 제거를 위한 조약과 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한 부속 의정서와 관련하여 동독과 미국 사이에 1987년 12월 23일에 맺어진 각서교환(각서교환에 관한 자료출처 : Staatsarchiv)

제 II 장 연방 내무장관 업무영역

통계와 공무원법에 관해서는 제 XIX 장 참조

업무영역 A : 국가법 및 헌법

제 i 절

아래의 동독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

1990.6.22. 제정된 주선거법(GBl. I Nr.51.960년)

제 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의 개정으로 계속 효력을 갖는다 :

1990.6.22.(GBl. I Nr.51 S.955) 제정된 주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제2조 제2항과 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항과 제3항, 제2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1항과 제25조 제1항의 "1990년 10월 14일"은 "1990년 10월 3일" 로 한다.

제 iii 절

동독의 다음법은 다음 조치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

1990.2.21. 제정되고, 1990.6.20. 최종 개정된 동독 정당법 제20a조 및 제20b조는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법률감독하에 놓인다. 연방정부는 통독후 연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6명의 회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연방정부는 통독으로부터 제12차 독일연방의회 의결시까지 연방의회 의장과 협

- 의하여 중대한 이유로 위원을 면직시키고 보충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b) 연방정부는 위 a)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 c) 위원회는 연방정부를 거쳐 독일 연방의회에 1991년 1월 15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 d) 제20b조 제3항에 의한 신탁행정은 1990년 7월 17일의 법률(GBl. I Nr.33,300면)에 의거하여 구성된 신탁기관에 이관된다. 이 기관은 재산을 이전의 권리자나 그 승계인에게 반환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자산은 공동이용목적, 특히 조약 제3조에 열거된 지역의 경제적 동화를 위해 사용된다. 자산은 헌법상 실질적범치국가의 원칙에 의해 취득된 경우에만 제20a조 제2항에 열거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신탁기관은 위의 업무를 위원회와 합의하여 수행한다.

업무영역 B : 행정

제 ii 절

동독의 다음법은 아래의 폐지와 개정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

1990.5.17. 제정된 동독의 지방 및 지역 자치 행정법(GBl. I Nr.28. S. 255)(* 양독은 동독의 지방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절이 대상없는 것임에 합의했다. 이법은 1990.11.13.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함부르크, 슐레스빅-홀슈타인주의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제 iii 절

동독의 다음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1. 1979.7.28. 동독체류 외국인에 관한 법률 - 외국인법(GBl. I Nr.17,

149면) - 은 제4조, 제5조, 제6조 제3항 제2문, 제7조 제3항 제2문, 제9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 a) 외국인이라 함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독일인이 아닌자를 말한다.
 - b) 제6조 제3항 제1문에 따라 1965.4.28. 제정되고 1990.6.26. 법 제9조 제5항을 최종 개정한 외국인법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한 허가는 전제 조건을 삭제한다. “혹은 무효로 선언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c) 제6조 제4항에 따른 허가는 기간의 경과 이외에 재입국 허가가 없는 출국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d) 제8조에 따른 구속절차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316-1로 공포되고 1990.7.9. 법률 제12조 제2항을 최종 개정하였으며, 이 조약에 기준을 세운 구속에 관한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e) 이법률은 1990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2. 1979.6.28. 제정된 동독의 외국인 체류규정은(GBl. I Nr. 17,154)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3. 1990.7.11. 동독에서의 외국인 상주 또는 장기 체류를 위한 체류보장법 시행령(GBl. I Nr.48,869)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이 시행령의 외국인은 기본법 제116조의 독일인이 아닌자이다.
 - b) 제14조와 제17조의 소청 법률 수단은 이의제기로 대신한다. 제14조 제2항 제1문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는 공시이후 1개월이내에 문서로 제기해야 한다.
 - c) 재판절차(제15조)는 행정법원규정(Verwaltungsgerichtsordnung)에 의한다.
 - d) 이 시행령은 1990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4. 등록의무의 이행에 관한 1989년 12월 21일의 법령(GBl. I Nr.26,274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규정의 부록은 통일과 더불어 효력을 상실한다.
 5. 동독의 지도 및 측량을 위한 관청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조약 제1

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서 공동관청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 제1문에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주 기구에 이관된다.

6. 1990.6.22. 연방인사 대표법(Bpers VG)의 적용에 관한 법률(GBl.1 Nr.52,1014)은 부록 I 제 XIX 장 제iii절 제15번의 기준에 따른다.
7. 1990.6.22. 연방인사대표법의 적용에 관한 법의 선거령(GBl. Nr.52, 1030)은 부록 I 제 XIX 장 제iii절 제x호의 기준에 따른다.

업무영역 C : 공공의 안녕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계속 효력을 갖는다 :

1. 1965.7.15. 제정되고(GBl. IS,281), 1981.5.29. 제3차로 최종 개정된 (GBl. II Nr.109,761면) 신고제도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다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제32항, 제9조 제3항 제2문,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9항,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 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항과 제5항, 제29조와 제30조.
 - b) 제74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신고 의무자는 전입, 전출신고에서 신분증 소지의무자인 가족들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c) 신고 의무자가 지금까지 기본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에 다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기 본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주거주지, 부거주지의 결정에 의한다.
 - d) 조약 제3조에 규정된 지역에서 이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후 1년이내에 신고법은 신고 기본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2. “경찰의 업무에 관한 법률”(가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이법률은

주 경찰법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Ⅲ장 연방법무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사법

제 i 절

아래의 동독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

1. 1990.8.7. 공증인의 실무활동에 관한 규정의 시행규칙(GBl. I Nr. 54, 1152면)
2. 1990.8.22. 공증인의 복무규칙에 관한 규정(GBl. I Nr.57..면)
3. 지역 중재소에 관한 법률(공포예정임)
4. 동독법조인 교육에 관한 규정(공포예정임)
5. 1990.6.22. 판사법에 대한 동독의회의 의결(GBl. I Nr.49.S.904)
6. 1990.8.1. 판사법에 관한 시행령 - 징계법(GBl. I Nr.52,1061면)
7. 1990.8.14. 판사법에 관한 제1차 시행령(GBl. I Nr.56..면)
8. 판사법의 제2차 시행령 - 명예직판사의 선거법 - (공포예정임)
9. 판사법의 제3차 시행령 - 명예직판사의 임용법 - (공포예정임)
10. 1978.1.24. 동독 지역에서의 대학졸업자의 시보 기간에 관한 규정 - 판사시보령 - (GBl. I Nr. 6,88면)
11. 1976.2.5. 법원과 국립공증소의 통역과 번역사의 고용에 관한 규정 (GBl. I Nr.6,101면)

제 ii 절

동독의 아래 법률은 폐지, 개정, 보충, 기준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갖는다:

1. 1990.4.6. 제정되고(GBL I Nr. 32.S.285), 1990.6.25. 집행에 관한 두 번째 규정 - 절차의 중단 - (GBL I Nr.45.782)에 의해 개정된 종합 강제 집행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이 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유지다.
 - b) 이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 aa) 표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종합강제집행규정”
 - bb) 제1조의 앞에 있는 문장은 삭제한다.
 - cc) 제1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 제1항 제1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종합강제집행은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없는 단체나 상속자, 법인이거나 상속인의 경우는 채무초과의 경우에 이루어진다.”
 - 제2항 제2문은 폐지된다.
 - 제4항 제1문의 종합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은 강제집행규정으로 바꾼다.
 - 제4항 제2문의 “이 규정”은 “이 법률”로 바꾼다.
 - dd) 제6조 제1항 제1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개회결정은 일간신문과 연방관보에 발췌하여 공시한다.”
 - ee) 제9조 제2항의 “작업장활동인”은 “피고용자”로 바꾼다.
 - ff) 제10조 제1항 제3호의 “폐쇄된다”는 “속행한다”로 바꾼다.
 - gg)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제 12 조

제3자의 소유권 및 저당권

- (1) 제3자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속하는 물건은 대금지불로 저당권을 소

떨시키지 않는 한 관리자로부터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관리자가 양도를 거부하거나 저당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권리자는 양도나 자신의 권리의 확인을 제소할 수 있다.

- (2) 제3자에 의해 청구된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성립이 결정될 때까지 배제된다.
- (3) 관리자는 관리비와 인정되지 않는 요구에 필요한 비용을 종합강제집행의 정지나 청구권 성립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종합강제집행의 취하에 의한 잔액은 사후에 배분한다.
- hh)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제 13 조 지불 청구 우선

- (1)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승인하에 다음 순서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
1. 계약체결, 이행, 채무자의 요구나 권리 주장, 저당권의 상각 등을 포함한 필수적인 관리비
 2. 법원에 의해 정해진 관리인과 채권자단 구성원의 보수를 포함한 법원 비용
 3. (다음 두가지는) 같은 순위이다 :
 - (a) 종합강제집행이 있기 전 6개월이내 채무자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 (b) 사회보험 설립자나 연방노동청의 분담금, 추징금, 강제집행 6개월 이전에 연체료에 대한 청구.
- (2) 제1항 제3번 a)항에 표시된 청구권이 강제집행 개시 이전에 노동축진법 제141m조 제1항이나 조기연금법(*명예퇴직으로 인한 조기연금 대상이 되는 제도) 제9조 제3항 제1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17조 제3항 제1번에 의해 동순위로 된다. 노동축진법 제141m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제1항 제3호 b)항에 표시된 청구권

도 마찬가지로이다.

ii)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 제4항 제2문의 “청구금” 다음에 “이 채권자”를 삽입한다.
- 제5항 제1문에 “강제조정”을 “조정”으로 바꾼다.

jj) 제16조 제4항 제2문에 “청구” 다음에 “이 채권자들”을 삽입한다.

kk) 제1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다음사항은) 동일순위로 (지불한다)

a)항과 b)항에 열거된 청구가 제13조에 의해서 미리 지불되지 않는한“

a) 종합 강제집행 개시전 12개월까지의 임금

b) 사회보험 설립자의 요구가 연방노동청의 종합강제 집행 개시 전 12개월에 걸친 분담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청구권, 추징금, 대상금

c) 관리자에 의한 사회계획청구액이 해고된 종업원의 3개월치 총 수입금보다 크지 않거나 이익배당금의 1/3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인이 합의한 사회계약으로 인한 청구 ; 사회계획이외에 보장된 지불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 기존의 제2번은 삭제된다. 기존의 제3번부터 제5번까지는 제2번부터 제4번이 된다.

ll)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제 20 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와 모든 관계인에게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mm) 제2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제 21 조 보충규정

- (1) 관리인과 채권자간의 보수와 비용의 상환은 1979.7.11. 개정된(BGBI. I, 637면) 청산관리인, 채권자단 구성원, 채권자와의 구성원에 관한 규정(연방법률관보 제Ⅲ부 목록 311-6에 공고됨)의 유효한 조항에 의한다.
- (2) 사안의 심리촉진과 절차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병합이 합목적적인 경우 주정부는 법규정으로 강제집행물을 지역법원에 귀속되게 할 수 있다. 주정부는 법규정으로 수임권을 주법무 행정국에 위임할 수 있다. 1990.6.31. 제정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GBl. I Nr. 54,1152면) 시행규칙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주법에 따라 제1문의 의미에서 법규정으로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nn) 제22조 제3항 다음에 제4항을 신설한다 :
- “(4) 제1항은 파산법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청산절차에도 상응한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제2항과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oo) 제23조 “이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는 “1990년 1월 1일”로 대신한다.
- pp) 제24조는 삭제된다.
- c)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311-1로 공포되고 1985.12.19. 법률(BGBI. I, 2355면) 제10조 제2항을 최종 개정한 조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법 관련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대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강제집행법이나 강제집행중단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 d) 강제집행절차는 파산법의 효력범위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별도의 청산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1990.6.25. 강제집행에 관한 제2차 규정 - 절차의 중단 - (BGl. I Nr. 45,782면)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이 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연방법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 b)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a) 제목은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절차의 중단에 관한 법률”
 - bb) 제1조 앞의 문장은 삭제된다.
 - cc) 제1조에 “이 규정”은 “이 법률”로 대치하며 “강제집행령”은 “강제 집행규정”으로 대신된다.
 - dd) 제6조 제3항 제1문에 “이의(항고)” 앞에 “즉시”를 삽입한다.
 - ee) 제7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
 - 제1항 제4문에 “강제집행령”은 “강제집행규정”으로 대체되고 “제17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순위”는 “제17조 제3항 제4호의 순위”로 대치한다.
 - 제3항 제2문의 강제집행령은 “강제집행규정”으로 대치된다.
 - ff) 제9조 제1항 제1문의 “강제집행령”은 “강제집행규정”으로 대치된다.
 - gg) 제10조와 11조는 삭제된다.
3.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28번에 열거된 일반 기준은 효력이 있다.

제 iii 절

동독의 다음 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독일판사법 기준 Y-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8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1. 변호사법(아직 의결되지 않았음)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계속 효력을 갖는 동독 직업법에 따라 최고법원에서의 법률고문을 위 하여 심판부 관할인 경우에는 이대신 연방법원의 심판부가 대치된다; 검찰총장 대신에 연방검찰 총장이 대치된다.
 - b) 행정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후심리를 위한 심리규정대신 자유의지적 재판의 기회에 관한 법률로 대신한다.

- c) 동독 직업법에 따라 설치된 변호사회는 연방변호사회에 속한다. 변호사회의 공동결정에 관한 규정은 동독의 직업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 d) 계속 효력을 가지는 동독 직업법에 따라 법무장관의 법규명령 제정권은 연방법무장관이 대신한다.
 - e) 독일 판사법 제5조 이하에 의하여 판사 능력을 가진 자나, 1990.6.6. 변호사 허가를 위한 적성시험에 관한 법률(BGBI. I,1349면)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갖는다.
 - f) 광역 조합과 유한책임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통일전 소멸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1990.6.20. 공포되고, 1990.8.22. 최종 개정 및 보충된 개업 공증 활동에 관한 규정(GBl. I Nr. 37,475 페이지) (GBl. I.57호...면)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최고법원에서 공증업무를 맡고있는 공증위원대신 연방법원의 공증위원이 대신한다.
 - b) 공증인 협회는 연방공증인 협회에 소속된다.
 - c) 동독 판사징계절차 규정 대신 연방공무원 징계절차로 대신한다. 행정 결정 심사에 관한 사후 심리 법규정대신 변호사법 제33조, 제35조 제 1항과 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비용에 관한 제179조부터 제182조까지의 규정을 대신한다.
 - d) 제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제 2 조

공증인의 임무와 지위

- (1) 공증인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권리보호 요구자의 정당한 보호자이다.
- (2) 공증인은 모든 종류의 증서, 서명, 수기, 등본 등을 공증한다. 그의 업무에는 특히 집회의결의 공증, 추천 및 경품의 실시, 재산목록의 작성,

인장의 사용, 항소의 기록, 판결의 송달, 그밖에 그에 의해 수 행된 사실의 공증등이 속한다.

- (3) 공증인은 양도증서의 수령, 부분 저당증서, 부분 부동산 채무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 (4) 공증인은 그밖에 임의적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그는 동산의 경매를 부동산의 경매로 혹은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중개한 재산상의 분류로 야기된 경우 행할 수 있다.
 - (5) 공증인은 유산이나 총재산 분규에 관하여 어느정도 중재할 수 있으며 토지대상규정 제36조와 제37조에 의한 증서의 교부를 포함하여 인장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는 주법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공증인은 연방공증규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표시된 임무를 수행할 수있다.
 - e) 1990.6.20. 제정되고, 1990.8.22. 개정된 개별공증인 활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동독법무장관에게 부과된 업무는 연방법무장 관에게 이관된다.
3.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의 제28번에 열거된 일반기준은 상응한 효력이 있다.

제 iv 절

지금까지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주의 일부에는 다음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1. 다음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 a) 동독의 변호사법(아직 의결되지 않았음)
 - b) 1990.8.22. 제정되고(GBL. I Nr.57.S...), 1990.6.20. 개정된 개업공 증인 활동규정(GBL. I. Nr. 37,475면)
 - c) 1990.8.9. 제정된 개업 공증인 규정의 시행령(GBL. I. Nr.54.1152 면)

- d) 1990.8.22. 제정된 공증인 복무법에 관한 규정(GBl. I Nr.57...면)
2. 강제집행절차의 중단에 관한 법률과 강제집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보충하여 적용한다 :
- a) 지역법원 대신에 지방법원
 - b) 강제집행규정과 강제집행절차의 중단에 관한 법률은, 이미 기본법이 적용되던 베를린주 지역에 관할 법원이 설치된 경우 적용된다.
 - c) 강제집행규정 제21조 제2항은 강제집행규정에 따라 분쟁을 기본법이 이미 적용된 베를린 지방법원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업무영역 B : 민법

제 i 절

동독의 다음법은 효력을 지닌다 :

1. 1949.10.5. 나치정부에 의한 피해자의 법적 지위보장에 관한 법령(ZVOB). I Nr.89,765면) 제2조 제4항
 2. 1990.6.11. 재산법상의 청구등록에 관한 규정(GBl. I Nr.44,718면)
 3. 1990.8.21. 재산법상의 청구등록에 관한 제2차 규정(GBl. I.Nr..면)
1. 아래의 법률은 통일조약 발효와 함께 효력을 갖는다 :
-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의 특별투자에 관한 법률

제 1 조

특별투자목적

- (1) 전에 국유재산이었거나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또한 될수 있는 토지나 건물은 특별투자목적에 있는 경우 현재 처분권이 있는 자에 의해서 1990.6.11. 재산법상 청구 등록에 관한 규정(GBl.I Nr.44, 718면)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매각될 수 있다.

- (2) 특별투자목적은 다음 계획에 의하여 절실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a) 특히 산업 경영시설을 통한 고용 안정이나 창출
 - b) 주민의 심각한 주택난의 해소
 - c) 사회적 생산기반 조치에 따른 계획 또한 여기에 토지나 건물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 (3) 구상을 가지고 있는자는 실행을 위하여 구상된 본질적 요소를 표시한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다. 제2조 제2항에 의한 확인서는 계획의 실행을 위한 인적, 경제적인 관계를 충분히 보장하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확인서는 처분계약서에 계획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매각자에게 토지와 건물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는 부관과 함께 발급될 수 있다(귀속조항).

제 2 조 토지매매와 투자증명

- (1) 1977.12.15. 제정되고, 1988.12.14. 개정된 토지 매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허가는 - 토지매매규정 -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가 제출 될 때 내려진다. 1990.6.11. 재산권 청구 등록에 관한 규정(GBl. 1 Nr.44,718면) 제6조 제2항 및 제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주관할관청이나 시행정 당국은 제1조의 조건이 충족되고 반환에 관한 행정청, 또는 법원의 결정이 없거나 관할관청에 의한 반환을 위한 통지가 없는 한 해당 소구역의 청문을 거쳐, 토지나 건물의 매각자의 신청에 대해 특별투자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 신청은 1992년 12월 31일 까지만 가능하다.
- (3) 토지등기소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처분은 허가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 허가관청이 허가증명서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법정정지가 제기되거나 홍보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서는 안된다. 허가 관청은 그러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법적구제의 집행정지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 3 조 보 상

- (1) 이규정에 의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의한 반환이 배제된 권리자는 토지·건물의 매각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불을 매각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판매액이 매매시의 토지-건물의 거래가치를 넘지 아니하면, 본질적이 아닐 경우에, 권리자는 거래가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규정에 의해서 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2) 매매계약에 사후 판매가격의 인상이 조건으로 유보된 경우 판매가격은 이 합의에 의해서 인상되며, 그에 따라 제2항 제1문에 따른 권리자의 청구액도 인상된다. 제1항 제2문의 경우 권리자는 판매가를 총액보다 많이 청구할 수 없다.
- (3) 제1항 제1문, 제2문, 그리고 제2항의 경우 국유화 되는데에는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가격 인상이나 감액은 확인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가격변동의 확정을 위해서는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제 4 조 행정절차

-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전 반환청구가 있으면 주관할 행정청이나 시행정당국에 신고와 신고자의 주소가 확실하면 청문해야 한다. 예상되는 절차의 계속이 계획된 구상의 성공적 실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청문은 행해지지 않을 수 있다.
 - (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승인의 즉시 집행을 특별히 명할 수 있다.
5. 공공자산문제의 규칙에 관한 법률
“공공자산 문제의 규칙에 관한 법률”

제 i 절

일반규정

제 1 조

효력범위

- (1) 이 법률은 재산가치에 관한 재산권의 청구 규정이며, 이 자산액은 :
- a) 보상없이 수용되고 국고에 귀속된 재산
 - b) 동독인으로서 보다 저가의 보상으로 수용된 재산
 - c) 국가행정관 또는 국유재산 귀속후 처분권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
 - d) 1972.2.9. 내각의 의결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국고에 귀속된 재산
- (2) 이 법은 그밖에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차에 의한 채무초과 때문에 수용 소유권포기, 증여 등으로 국고에 귀속된 토지나 건물에 적용된다.
- (3) 이 법은 또한 부정한 음모, 예컨대 국가나 제3자의 취득자에 의한 권력남용, 비리, 협박, 사기등으로 취득한 재산청구권과 이용권에도 적용된다.
- (4) 이 법은 다음 사항의 폐지를 규정한다.
- 이전 동독지역에 있어서 그당시 필요한 승인이 없이 맡겨진 시민의 재산가치에 관한 국가신탁행정
 - 서독과 서베를린 시민과 서독 및 서베를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자산가치에 대한 임시 관리, 법규정에 의해서 이관된 전 동독 국가조직
 - 전 동독정부에 이관된 외국인 재산에 대한 관리(이하 국가행정이라고 부른다)와 관련된 소유자와 권리자의 청구
- (5) 이 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산가치와 관련된 청구와 기타 권리에 대한 취급을 포함한다.
- (6) 이 법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 사이에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세계관적 이유에서 박해받고 그 때문에 강제매매, 수용, 그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상실한 시민이나 단체의 재산법적 청구에 적용된다.

- (7) 이 법률은 다른 규정에 따라 결과된 법치국가에 위배되는 형법적, 질서형법적, 행정법적 결정의 파기에 관련된 자산가치 반환에 적용된다.
- (8) 이 법률은 다음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a) 점령법 혹은 점령주권에 기초한 자산적 가치의 수용
 - b) 동독측에서 국가적인 합의로 규정한 자산권적 청구
 - c) 옛 자산 해산 공채의 분배권
 - d) 1990.7.6.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자산법이 정한 통일조약 제3조에 따른 합병지역의 지역단체의 청구자

제 2 조 개념정의

- (1) 이 법에서 권리자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조치의 자산가치를 지닌 자연 및 법인이나 그 권리승계인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자산가치라 함은 건설되거나 건설되지 않은 토지, 법적으로 독립된 건물이나 건축물(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이용권 및 물권 및 동산을 말한다. 이 법에서 자산적 가치라 함은 예금액과 그밖의 법원 요구 벌금, 기업이나 동독이외의 곳에 사무소를 둔 기업의 지사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제 2 절 재산가치의 반환

제 3 조 기본원리

- (1) 제1조의 의미에서의 조치와 국유로 귀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된 자산적 가치는 이법에 의해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반환된다. 반환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결정한다.

- (2) 동일한 자산가치에 대하여 여러사람이 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 따른 조치에 첫번째 해당자가 권리자가 된다.
- (3) 1990.8.21. 제정되고 1990.6.11. 제2차 규정으로 개정된 자산법적 청구 등록에 관한 규정(GBl. I Nr.44,718면)에 따라 신고가 있는 경우 처분권자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물권적 행위나 장기적인 계약 의무부담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소유자의 법적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와 자산적 가치의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결한 것은 예외이다. 이것은 지체된 신고에도 적용된다.
- (4) 등록기간(등록규정 제3조)이 경과하고 지체된 등록이 없는 경우에 처분권자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거나 또는 채권법적인 혹은 물권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자산이 아직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 권리자는 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는 수입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5) 처분권자가 처분을 하기에 앞서 제3조에 따른 등록이 없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반환제외

- (1) 소유권이나 그밖의 자산적 가치에 대한 반환은 사안의 성질로 보아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지 아니한다.
- (2) 자연인,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재단이 소유권이나 물권적인 권리를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때에는 반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1989년 10월 18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등록규정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권리취득은 다음 경우에 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 a) 취득당시 동등에서 유효한 일반법규, 절차원칙, 적합한 행정 실무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와 취득자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을 때 혹은
 - b) 취득자가 부패, 개인적인 권력 남용으로 취득의 시기, 조건, 대상물

- 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에 근거한 경우 혹은,
- c) 취득자 자신이나 제3자가 유발한 강제 상태나 이전 소유자의 이용으로 사기의 영향을 받은 때

제 5 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반환 제외

제4조 제1항에 의해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는 배제된다 :

- a) 토지와 건물이 비용을 들여서 이용 종류나 목적규정의 변경과 이러한 이용에 공공의 이익이 존재 성립되거나
- b) 공공사용에 헌납하는 경우
- c) 주택건설이나 이주 건축에 사용된 경우
- d) 산업에 이용되거나 기업체에 포함되고 기업의 손실없이 반환될 수 없을 때

제 6 조

기업의 반환

- (1) 기술의 발전이나 일반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그 기업이 수용당시의 것에 상응하는 것일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기업이 반환된다. 자산과 수입의 본질적인 악화나 개선은 보상되어야 한다. 제품이나 업적의 제공이 기술적·경제적 고려하에 기본적으로 불변이거나 이전의 제품이나 업적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기업은 수용된 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기업이 다른 여러 기업과 합병된 경우 기업의 일부에 대해서만 비교될 수 있다.
- (2) 자산상태의 본질적인 악화는 1990년 6월 1일 개시대차대조표 산정에서 독일마르크 청산법에 의한 채무효과나 법정 최소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시된다. 이 경우 기업에게는 독일 마르크 청산법 제24조, 제26조 2항, 제28조에 의한 청구가 성립된다. 이 청구는 거부될

수 없다.

독일마르크 청산법 제28조의 경우 자본금 감가계정은 의무자에 의해 보상된다. 제2문에 의한 청구는 수용당시의 자본관계가 더 유리한 것이 아니면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자산상태의 본질적 개선은 독일마르크청산법에 의한 독일마르크 개시 대차대조표 산정에서 독일마르크청산법 제26조에 따른 조정채무가 나오기 이전 기업수용당시에 청산액에 비해서 소규모 자기자본을 가졌던 것으로 입증된 때이다. 소규모 자기자본은 조정채무가 기업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토지, 건물, 건축물의 가치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 (4) 본질적 수입의 변동은 1990년 6월 1일 시작되는 회계년도에 예상되는 제품과 업적의 판매액이 일반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수용당시보다 본질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에 발생한다. 비교되는 판매실적 달성을 위해 신제품이 반드시 개발되려면 기업이 회복능력이 있는 한 필수적인 개발비에는 초과 납세액의 상환청구가 성립된다. 신제품개발로 판매액이 수용당시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이미 활동과정에서 감가상각되지 않는 한 필수적인 개발비 상당의 조정채무가 발생한다. 그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본질적인 악화가 초래되지 아니한다.
- (5) 권리자에게 기업의 반환은 법률 형태에 따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의 이전으로 가능하다. 기업이 다른 법적 형태로 수용되었다면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전에 이전의 혹은 다른 법적형태로 전환된다. 반환된 기업의 다른 하나 또는 여러개의 기업과 병합되어 하나의 기업체가 된 경우 기업체가 해체되지 않으면 가액의 부분이 권리자에게 이전된다. 이에 제1항부터 제4항이 적용되며 해체의 경우에 반환된 기업의 장부가치는 전체기업의 장부가치와 일치한다.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체는 요구될 수 없다. 배분이 신탁기관에 남아 있는 경우 특히 본질적인 가치 증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 법에 의해 배분권이 양도된 배분 소유자에 의해 취득된다.
- (6) 기업의 반환청구 신청은 모든 권리자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 권리

자의 신청은 같은 청구권이 있는 모든 권리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모든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 대신에 보상이 선택되어 질 수 있다.

- (7) 제2항 제1문에 의한 반환이 가능하지 않거나 권리자가 보상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국가행정으로 이양할 당시의 기업의 가치를 독일마르크로 상환한다. 당시의 매매가액이나 대상액을 동독마르크와 서독마르크를 2:1로 교환하고 보상액을 결정한다.
- (8)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 제1조 제1항 d)의 경우 반환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권리자는 반환을 이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해줄 것과 그 조건이 합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9) 재무장관은 경제장관과 합의하여 법규정으로 기업의 반환과 보상의 절차, 관청 또는 관서의 관할권과 그 과정 및 기업의 재산과 수익 상황의 계산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7 조

가치조정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한 자산 가치의 반환에 있어서 국유재산에 이전된 때부터 국가예산으로 조달된 가치 증가와 발생한 가치 감소는 확인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가치변동의 확인을 위하여는 평가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8 조

선거권

- (1) 권리자에게 제3조에 의한 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 한, 그는 반환대신에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토지가 소유권의 포기, 증여, 건축 등으로 인해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권리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 (2) 권리자가 다수인과 경쟁해야 하는 경우 선택권은 공동으로 행사될 수 있다.

제 9 조

보상원칙

- (1) 제4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보상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제1조 제2항의 토지가 소유권 포기, 증여, 상속 거절 등으로 국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보상은 보장되지 아니한다.
- (2) 토지가 제4조 제2항의 이유에서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이전의 보상은 가능한 한 비슷한 가치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된다. 보상토지의 준비를 위하여 제21조 제3항 제1문과 제4항이 적용된다.
- (3)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 조

동 산

- (1) 동산이 매각되었거나, 그것이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할 수 없을 때 권리자에게는 그에게 온라인으로 예입되거나 지불되지 않는 한 권리자는 보상기금에 대하여 예상 수익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
- (2) 동산 환가에서 수익이 없는 경우 권리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iii 절

국가행정의 폐지

제 3 조

원 칙

- (1) 자산 가치에 대한 국가 행정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관할 관청의 결정에 의해 폐지된다. 권리자는 그 대신에 소유권에 대한 포기하에 제9조에

의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 (2) 권리자가 그의 청구권을 등록기간이 경과하도록(등록규정 제3조) 등록하지 않으면, 국가행정은 관리하는 자산가치를 처분할 수 있다. 권리자가 등록기간 경과후 그의 청구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산 가치에 대한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 (3) 관리인은 처분전 등록규정에 의한 등록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4) 처분하는 경우 매각 이익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권리자에 의해서 청구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매각 이익은 상환기금 관할 관청에 관리를 위해 맡겨진다.
- (5) 국가에 의해 관리된 자금 자산이 차별적이거나 불리한 규정에 의해 감소된 경우에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제 12 조

국가관리의 기업과 기업참가

국가 관리 기업과 기업참가의 반환방법은 제6조에 의한다. 수용 시기 대신에 관리 개시 시기가 적용된다.

- (1) 국가관리 자산가치의 권리자에게 적법한 관리에 따른 국가관리인의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국가관리 기간 동안에 국가관리인에게 부과된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2) 손해배상은 국가책임의 법적 규정에 의해 확정되고 보상기금에서 지급된다.
- (3) 보상기금에는 국가관리인이나 위임된 지방행정에 대하여 조정 청구가 귀속된다.

제 14 조

- (1) 관할 국가기관이 국가행정 성립의 요건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거나 혹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자산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없었을 때

관리자는 자산가치가 국가행정에 귀속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2) 국가행정이 자산가치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또는 관리자가 가능한 방법으로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 15 조

국가관리인의 권한

- (1) 국가행정의 폐지까지 자산가치에 대한 관리와 보전은 국가가 행한다.
- (2) 국가관리인은 국가행정의 폐지까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장기계약에 의한 책임을 폐기하거나 물권적 행위를 봉쇄할 권한이 없다. 소유자의 법적의무를 이행하거나 자산가치의 운영 및 보존 등의 법률 행위는 예외로 한다.
- (3) 제2항에 의한 제한은 등록기간의 경과후(등록규정 제3조)에 소유자가 자산가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4) 국가관리인은 처분 이전에 제3항에 따른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iv 절

관리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

- (1) 소유권의 반환이나 국가행정의 폐지와 함께 자산가치에 대한 소유권에 기인하는 권리와 의무는 관리자 자신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관리인이 행사한다.
- (2) 소유권의 반환이나 국가행정의 폐지와 함께 관리자는 모든 자산 가치에 관련된 법률관계 당사자가 된다.
- (3) 성립된 법률관계는 법규에 의해서만 변경되고 종결된다.

제 17 조 임대 및 이용권

토지와 건물의 반환이나 국가행정의 폐지로 인하여 성립된 임대권이나 이용권은 변동이 없다. 이는 제1조 제3항의 경우 임차인이나 사용인이 계약체결에 있어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정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토지부담

- (1) 토지의 반환시 국유이전으로 생긴 물권적부담은 다시 토지대장에 기재한다. 피보호자가 이미 국가로부터 만족을 얻은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은 보상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의 청구에 의해 그 담보는 권리자에 의해 이미 변제되지 않는 한 보상기금을 위해 등기부에 기재한다.
- (2) 토지가 권리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국민 금융기관에 의해 설치되고 국유 이후에 아직 존속한 저당권으로 부터 나오는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한다. 금융기관의 승계인에게는 보상기금으로부터의 보상이 보장된다.
- (3) 차용에 상응한 가치증식이나 가치유지적 건축이 실행된 경우에 건물저당권은 권리자에 의해 인수된다.
- (4) 자세한 것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 19 조 부동산에대한 제3자의 그밖의 요구

- (1) 대지, 휴양지, 업무용 토지의 임차인과 이용인은, 그들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동독의 현행 법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급부 의무가

있는 청구권이나 지출, 비용부담, 채권, 적절한 보상에 대한 청구권 이 성립되는 경우 청구권의 만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2) 등록은 제iv절의 기본 범위내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 (3) 권리자가 청구건을 인정한 경우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이 있을때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 (4) 국가행정폐지나 반환은 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 선 매 권

- (1) 국가관리에 있거나 반환청구권이 있는 1-2세대건물, 휴양지의 임차인 과 이용인에게는 신청에 의해 선매권이 인정된다.
- (2) 제3자가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획득한 토지에 있어서 권리자에게는 신청에 의해 토지에 대한 선매권이 인정된다.
- (3) 선매권의 등기신청은 제iv절의 절차에 의해 할 수 있다.

제 21 조 대용토지

- (1) 국가에 의해 관리 되거나 반환 청구권이 행사된 단독주택이나 휴양지의 이용자나 임차인은 만약 토지를 구입할 용의가 있다면 권리자에게 대용 토지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2)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청은 우선적으로 준용한다.
- (3) 동일 시나 지방자치단체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토지를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에 정당한 권리가 침해 되지 않을 때 권리자가 동의하면 제1항 제1문의 신청은 행사된다. 이것은 특히 임차인과 이용인이 가치증식이나 유지를 위해 상당한 지출을 한 경우 적용된다.
- (4) 상환토지가치와 관리개시나 수용당시의 토지가치사이의 차액은 조정

되어야 한다.

- (5) 국가관리토지의 권리자에게 상환토지가 이전된 경우 국가행정은 그 토지를 임차인이나 이용자에게 매각할 권리를 갖는다.

제 v 절

조 직

제 22 조

공공자산 문제 규칙의 실행

- (1) 이 법규정과 형성될 보상기금업무는 맥클렌브르그-포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 베를린에 의해 수행된다.
(2) 보상기금의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 23 조

주행정청

주는 공공자산 규칙을 위한 관청과 주관청을 설치한다.

제 24 조

하급관청

모든 지역과 모든 지역의 시, 베를린에는 공공자산 관리를 위한 관청을 주하급관청으로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 여러 지역을 위해 그러한 관청이 주하급관청으로 설치될 수 있다.

제 25 조

상급주행정청

모든 주에는 공공자산 문제 규칙을 위해 주 행정청을 설치한다.

제 26 조
이의심사위원회

- (1) 공공자산 문제를 위한 주행정청에는 이의심사위원회를 둔다. 필요한 경우 여러개의 이의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한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 (2) 이의 신청위원회는 독립하여 다수결로 이의를 결정한다.

제 27 조
행정지원 및 법률지원

모든 관청과 법원은 본절에 규정된 관청에게 행정지원 및 법률지원을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

제 27 조
경과규정

- (1) 하급주행정청의 설치가 있을 때까지 이법의 임무는 지역의 시행행정청이나 주 상원위원회 행정청에 의해서 수행된다. 등록규정에 의해 접수된 등록은 공공재산문제의 규정을 위한 관청에 의해 그 설치후 행정청이나 지역의 시의 행정청에 의해 계속 사업을 위해 인수된다.
- (2) 주구성 때까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수입권자는 제23조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 (3) 이법의 통일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적으로 각료회의가 중앙행정청이 된다.

제 29 조
고 문

제28조 제3항에 의한 중앙행정청에 고문을 둔다. 고문은 제22조 제1항

에 언급된 주에서 각 1명, 이익집단에서 4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

제 vi 절 소송절차 규정

제 30 조 신청

이 법에 따른 청구는 관할관청에 신청을 통해서 행사된다. 등록규정에 의한 등록은 반환청구나 국가관리 폐지에 대한 신청으로 간주된다.

제 31 조 관청의 의무

- (1) 관청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신청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2) 관청은 관련된 권리자, 국가관리인,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신청에 대해 알리고 절차에 참가시켜야 한다.
- (3) 신청인은 그의 청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에 대해 관청에 의한 설명을 요구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청구에 대한 신빙성 입증으로 충분하다. 설명은 서면으로 행해진다.
- (4) 관청은 권리자, 당시의 소유자, 국가관리인, 그밖의 재산관리인으로부터 광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결정, 선택권

- (1) 관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한달 이내에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1조 제3항에 의한 설명 가능성과 제2항에 의한 선택권을 제시해야 한다.

- (2) 관청이 아직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자산가치의 반환이나 국가 관리의 폐지대신에 제9조에 의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제1항 제2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신청인이 설명을 요구했을 경우 행정청은 설명요구가 있는 후 1개월 후에 결정할 수 있다.
- (4) 기한이 정해진 이절에 의한 결정과 통지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33 조

- (1) 신청인이 보상을 선택한 경우 결정은 권리의 확인과 선택권의 행사여부의 확인에 한정된다. 그밖의 절차는 특별규정으로 정한다.
- (2) 제7조에 의한 가치보상 청구권과 제13조 제2항, 제3항,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특별결정에 따른다.
- (3) 결정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결정에는 이유와 권리 구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결정 사항과 함께 참가인에게는 양도조서가 송달된다. 이것은 확인된 소유권 및 자산지위, 합의, 제19조에 의해 등록된 권리, 그밖에 양도되는 자산가치에 관련된 주요 규칙도 포함해야 한다.
- (5) 이의신청이 없는 한 결정사항은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34 조

소유권이전, 토지등기부 수정, 국가행정에 관한 기재의 말소

- (1)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권리는 확정적으로 권리자에게 이전된다.
- (2)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물권의 반환시에 행정청은 등기소에 수정을 신청한다. 등기부 수정에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권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된다.
- (4) 국가관리의 폐지시에 관청은 등기소에 국가관리 등기부의 기재를 말

소할 것을 청구한다.

제 35 조

지역관할

- (1) 국가행정에서의 자산가치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 자신,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의 공공자산문제의 규칙을 위한 행정이다. 이것은 국유화된 재산가치에도 적용된다.
- (2) 그밖의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소재하는 공공자산 문제에 대한 규칙을 위한 관할이다.
- (3) 신청이 관할이 아닌 관청 또는 그밖의 관할 아닌 기관에 제기된 경우 이 신청은 즉시 관할 공공자산 관할 관청에 보내져야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36 조

이의신청절차

- (1) 공공자산의 규칙을 위한 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신청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을 통지받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한 관청에 서면으로 제기한다.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충족되지 않거나 완전히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은 이의심사 위원회에 이관된다.
- (2) 결정의 폐지나 변경으로 인하여 이의가 제3자에게 불이익을 보게하는 경우 구제이전 또는 이의 결정 이전에 이를 청문한다.
- (3) 이의결정에는 권리구제에 관하여 교시하고 통지한다.

제 37 조
소송절차 허용

이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자는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8 조
비 용

- (1)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절차는 무료이다.
- (2) 대리인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의 신청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은 그것이 권리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변상된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판결과 함께 결정한다.

제 39 조
실 효

다음 규정은 실효(Ausserkraft treten)된다.

1. 1952.9.8. 자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제1차 시행령(VOBI베를린 1부, 459면)
2. 1953.6.11. 동독지역과 동독구역 베를린의 귀환환자에 관한 규정(BI. Nr.78,805면)
3. 1953.6.11. 동독지역과 동독구역 베를린의 귀환환자에 관한 규정의 제1차 시행규정(GBl. Nr.78,8061면)
4. 1953.8.31. 동독지역과 동독구역 베를린에 귀환환자에 관한 규정의 제2차 시행규정(GBl. Nr.95,955면)
5. 1951.9.6. 동독에 있는 외국인 자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GBl.Nr.111,839면)

6. 1951.12.18. 베를린주재 외국인의 자산 관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 (VOB. 베를린 1부 Nr.80, 565면)
7. 1953.6.10. 이후 동독을 떠난자의 재산취급에 관한 1958.10.3. 제정된 법령 제2호(VGBL. 베를린 1부. 673면)
8. 1968.12.11. 동독을 불법으로 탈출한자의 자산관리인의 권리, 의무와 동독 채권자에 관한 규정(GRI 제2부, 1면)
9. 1989.11.11. 자산문제 규칙에 관한 법령(GBl. I Nr.22,247면)
10. 1990.6.28. 동독법 개폐에 관한 법(GBl. I, Nr.38,483면)에 의해 개정된 1990.3.7. 사기업 활동과 참가에 관한법(GBl. I. Nr.17,141면) 제 17조부터 제21조까지
11. 기타 이러한 법규에 의해 제정된 법령들

제 ii 절

동독의 다음법은 폐지한다 :

1. 1977.12.15. 제정된 토지거래규정은 1990.6.28. 제1차 민법개정법으로 - (GBl. 1978. I Nr.5 73면) 최종 개정되었으며 다음 규정은 폐지 또는 보충한다 :
 - a)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제4항은 폐지된다.
 - b) 제5조와 제6조는 폐지된다.
 - c) 제7조에는 다음 내용을 보충한다 :
“허가부여는 지역 행정청이나 시행행정청의 관할이다.”
 - d)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폐지된다.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1. 1988.12.14. 법률(GBl. I Nr.28, 329면)에 의해 개정된 1969.5.12. 의 국가배상법(GBl. I Nr.5, 34면)은 다음 기준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 a) 전문은 삭제된다.
- b) 제1조 제1항에는 다음 내용이 보충된다 :
 “(1)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근무자의 행정행위에 의해 받은 손해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기관이 책임진다.”
- c) 제1조 제4항에는 다음 내용이 보충된다 :
 “(4) 자연인이나 법인이 그의 재산에 관하여 위법하게 입게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법률이나 다른 법규가 적용된다.”
- d) 제2조에는 다음 내용을 보충한다 : “자연인이나 법인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가능하고 기대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의무를 고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은 이에 상응하여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 e) 제6a조는 소하위 목차의 포기하에 다음 내용이 보충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제5조 제3항)의 이유와 금액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자연인이나 법인은 정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물의 가치에 상관없이 청구권의 원인을 제공하고 관청이 있는 지역의 지방 법원이 관할한다.”
- f) 제7조를 삭제된다.
- g) 제9조에는 아래 내용이 보충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를 상대로 이 근무자의 과실이나 위법으로 파생된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시민이 위법이나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행케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 h) 제10조는 하위목차의 포기하에 다음 내용이 보충된다 : “이법률의 적용범위내에 주소가 없거나 상용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외국인도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업무영역 C : 형법과 질서위반법

제 i 절

다음 동독의 법은 효력이 있다 :

1. 1968.1.12. 제정되고 1988.12.14. 개정되고 다시 1990.6.29. 제6차 형법개정으로 개정된 동독의 형법전의 제84조, 제149조, 제153조내지 제155조, 제238조;
2. 1990.6.29. 제6차 형법 개정법의 제8조부터 제10조; (GBl. 1 Nr.39 S.526)
3. 질서위반행위의 규제를 위해 1984.3.22. 제정되고, 1990.6.27. 최종 수정된 규정 제5조, 제8조, 제16조, 제21조 제23조(GBl. 1 Nr.14 S. 173)
4. 1972.3.9. 제정된 임신중절에 관한 법을 위한 시행규칙 제1조부터 제4조 제2항 제1문 및 제4조 제3항부터 제9조까지

제 ii 절

동독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 1968.1.12. 제정되고 1988.12.14. 문구수정되었으며, 1990.6.29. 제6차 형법개정법으로 최종 개정된 동독 형법전 제191a조는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제 191a 조

환경위험의 원인

- (1)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험물질이나 병균으로 대지를 오염시킨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 (2) 시도한 행위도 처벌한다.
- (3) 범법자가 과실로 인해 오염을 야기시켰다면,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 (4) 대지 오염을 방지하는 법규, 실행할 수 있는 금지,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의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제 iii 절

동독의 다음 법률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1. 1988.12.14. 제정된 손해배상사전지급법(GBI. I Nr.29 SZ 345)은 통일전에 제소된 사건에 적용한다.

업무영역 D : 상법과 회사법, 보험계약법

이 조약의 효력발생에 있어 다음의 법이 유효하다.

“독일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D-마크크대차대조표 -DMBiLG)”

내용개요

제 1 절

목록, 개시대차대조표, 부록

소 제 1절

상품목록, 개시대차대조표

제 1 조. 비용계산의 의무

제 2 조. 재산목록

제 3 조. 재산목록 작성

제 4 조. 개시 대차 대조표의 비용계산

제 5 조. 지출규정

소 제 2절

대차대조표규정과 평가규정

제 6 조. 일반적 요구

제 7 조. 새로운 평가

제 8 조. 비물질적 자산대상

제 9 조. 대지와 택지

제 10조. 건축물과 기타의 시설

제 11조. 재정기반

제 12조. 비출

제 13조. 채권

제 14조.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현금잔고

제 15조. 정기준점

제 16조. 채무

제 17조. 유보

제 18조. 화폐환산

소 제 3절

부전비교

제 19조. 부전

제 20조. 비교

제 2 절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 총개시대차대조표

제 21조. 비용계산의 의무

제 22조. 기업연합 부전

제 23조. 제출 및 안내의무

제 3 절 자본의 준비

소 제 4 절

지금까지의 국영기업으로부터 자산보상과 자기자본의 보호

제 24조. 차감계정

제 25조. 차감계정 의무

제 26조. 자기자본 보호

소 제 5 절

사기업의 자본관계의 신규 확정

제 27조. 신규 확정

제 28조. 임시재확정

제 29조. 회사법 관계

제 30조. 자본 감사상각 계정의 해제

소 제 6 절

임의 이익준비금

제 31조. 임의 이익준비금

제 4 절

독일마르크 급부의 확정과 적용

제 33조. 독일마르크 급부의 확정과 적용

제 5 절 절차

소 제 7 절 감 사

제 33조. 감사

제 34조. 감사실행

소 제 8 절 확정및 보고

제 35조. 확정

제 36조. 가치평가 정정

소 제 9 절 공시

제 37조. 공시

제 6 절 영업지점 관련 규정

소 제 10절 금융기관과 대의무역회사에 관한 규정

제 38조. 적용범위

제 29조. 개시대차대조표

제 40조. 보상청구

제 41조. 보상채무

제 42조. 보상표시

- 제 43조. 감사
- 소 제 11절 보험회사에 관한 규정
 - 제 44조. 적용범위
 - 제 45조. 개시대차대조표
 - 제 46조. 감사·제출
- 제 7 절 형법규정과 질서위반규정, 과태료
 - 제 47조. 형법규정
 - 제 48조. 질서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 제 49조. 과태료의 확정
- 제 8 절 조세, 수수료
 - 제 50조. 조세적 개시대차대조표와 효력
 - 제 51조. 전환 조건부 자산 변동
 - 제 52조. 기타 경우의 조세의 최종금액
 - 제 53조. 회계년도 1990 과 조세의 종결대차대조표
 - 제 54조. 연금의 재작성
 - 제 55조. 불입금
 - 제 56조. 수수료
- 제 9 절 기타의 규정
 - 제 57조. 해산
 - 제 58조. 사업년도
- 제 10절 종결규정
 - 제 59조. 위임
 - 제 60조. 효력발생

제 i 절
개시대차대조표 부록

소 제 1 절
개시대차대조표

제 1 조 비용계산의 의무

1990.7.1. 동독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인으로서 상법전 제238조에 따라 정리책임을 의무화 하고 있는 기업은 상품목록과 1990.7.1.을 기해 독일마르크로 된 개시대차대조표 및 제19조에 따라 개시대차대조표를 가지고 통일된 부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37조에 따라 개시대차대조표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기업은 부록을 만들 필요가 없다.

(2) 제1항에 따라 회계보고를 의무로 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

1. 국민소유의 기업연합, 경영, 독자적인 시설과 경영조직, 경영간의 시설과 그밖에 국민소유 등록부에 기재된 경제 통일 및 국민 공익 재산
2. 건설주식회사와 건설 유한 책임회사
3.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 및 협동시설
4. 국가, 주, 지역, 도시와 단체의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그밖의 기업으로서 상법전 제4조에 명시된 기업에 속하지 않는 상업전 제1조의 상업을 하고 있는 기업
5. 상법전 제4조에 명시된 실업가에 소속되지 않는 상법전 제4조의 상업을 하고 있는 기관, 재단, 단체
6. 독일우편
7. 독일 철도
8. 동독지역외에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가진 기업에 의한 지점과 영업소

(3) 제1항은 신탁회사와 제1항과 제2항에 표시된 기업으로서 정리하거나 재산에 대해 종합집행절차를 시작한 기업에 적용된다.

(4) 회계보고 의무 기업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명시된 기업 자신의 혹은 타인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은 적절히 적용된다.

(5) 제4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비용계산 기간내에 개시대차대조표가 만들어져거나 혹은 사적인 법률형태로서 변형된 기업은 이법의 목적을 위

하여 1990.7.1. 까지 설립가능한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제 2 조

재산목록

1990.7.1.까지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상법전 제240조가 적용된다. 재산목록에는 1990.6.30. 이후 비용계산기간내에 제4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이전에 국유재산의 개시대차대조표를 위해 기업에게 무상 양도된 재산을 기재해야 한다.

제 3 조

재산목록 작성

- (1) 재산목록의 비용계산에서는 재산목록에 있어서 1990.6.30.까지 재산대상과 부채가 완전히 완료되고 제2항내지 제6항까지에 포함된 기본원리가 존중되었을 때 재산대상과 채무의 양적 파악은 필요치 않다. 1990.6.30. 이후에 최초로 획득한 제2조 제2문이나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에 기입되어 있는 재산목록과 부채는 재산목록에 참작되거나 또는 별도로 기입해야 한다. 감사가 의무화된 기업(제33조 제1항)의 감사가 재산목록 작성 때 부채의 경우 감사가 1990.6.30.까지 재산목록의 합법성을 인정할 때, 새로운 재산목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 (2) 재산대상은 기본적으로 물건들이다. 상법전 제41조는 영업연도의 첫 4개월내에 작성된 자산목록에 적용된다. 물질적 조사는 시설 자산의 자산상품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법으로 합법적인 장부기입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취소될 때 그리고 지난 12개월내 물질적인 수용이 일어났을 때에는 중지된다.
- (3)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 용익권, 처분가능성 혹은 평가에 관계하는 모든 합법적이거나 계약상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투자 의무가 과생될 수 있는 알려져 있는 모든 사안을 확정해야 한다.

- (4) 채권과 채무는 특별 목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정관상 합법적 장부기업에 알맞는 종류와 방법이 증명되어야 한다. 채권과 채무는 국가, 신탁, 주식회사와 자회사(제21조 제1항)에 대해 따로 파악되어야 한다; 법률적 근거는 항상 제시되어야 한다. 금융기관과 외국의 기업에 대한 채무에 있어 여신업무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5) 특별목록에는 확실하지 않은 채무나 유동적인 사업에서 나오는 위험적 손실이 상법전 제249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파악되어야 한다.
- (6) 특별목록에는 상법전 제251조에 따라 기입되어야 하는 모든 책임관계가 있고, 제2항내지 제5항에 따라 고려되지 않는 한 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부록에서 보고된 모든 그외의 재정상의 의무가 파악되어야 한다.

제 4 조

개시대차대조표의 비용계산

- (1) 개시대차대조표와 부록은 영업연도의 첫 4개월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상법전 제268조 제3항에 따라 결손의 판매상황에 따라 최고한도로 3,900,000DM의 잔고금액을 증명하거나 1990.7.1.에 최고로 50명의 고용인을 두고 있는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와 부전이 합법적인 영업진행에 상응할 때, 영업연도의 첫 6개월안에 이를 제시해도 된다.
- (2) 개시대차대조표와 부전은 정관을 고려하여 합법적인 부기를 상법전 제264조 제2항 제1문의 의미에서, 재산상태의 사실상의 상황에 상응하여 공개해야 한다. 특별 상황이 개시대차대조표가 사실상의 행위에 상응하는 인상을 중재하지 못하는 경우 부록에서 추가 진술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행해진다. 이 경우 다만 서독에서 성립되었거나 이 법에 따라 성립되어진 합법적 부기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
- (3) 기업이 새로운 조직과 사유화의 목적으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위한 비

용계산기간내에 제1항 제1문에 따라 재산상품과 채무를 다른 기업에 양도했다면, 이와 관련된 기업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은 일치해야하며 고려되어야 한다.

제 5 조

지출규정

- (1) 개시 대차대조표에는 제243조 제3항, 제247조 제3항, 제252조, 제253조 제1항 제1문, 제4항, 제255조 제3항, 제256조 제1문을 제외하고 대차대조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 법이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상법전 제243조내지 제261조가 적용된다 ; 결속된 기업에 대한 제시는 필요하지 않다. 개별 상사나 개인 상인이 아닌 기업은 제265조 제3항내지 제8항, 제266조, 제26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70조내지 제272조 이외에도 조합에게, 이법이 상이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거나, 대차대조표의 형태나 내용에 대해 지점에 관련된 규정이 간과되지 않는한, 상법전 제336조와 제337조가 적용된다.
- (2)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상법전 제267조 제1항이나 제2항과 관련된 결산 총액과 노동자수 등 주요요인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소기업은 상법전 제266조 제1항 제3문의 경감을, 중기업은 상법전 제327조 제1호의 경감을 개시대차대조표의 비용계산에 청구한다.

소 제 2 절

대차대조표 규정과 평가규정

제 6 조

일반적 요구

- (1)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입증된 자산 대상과 부채의 평가에 있어 특히 다음 사항이 유효하다.

1. 평가에 있어서는 실제적이고 법적 제공 사실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업행위의 계속수행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산대상과 부채는 개시대차대조표의 청산일까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개시대차대조표의 청산일까지 발생되었던 모든 예견할 수 있는 위험과 손실은 청산일과 개시대차대조표의 비용 계산일 사이에서 처음 발견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 이익은 다만 청산일에 현실화될 때 고려되어진다.
- (2)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입증된 자산대상과 채무에 적용된 계산방법과 평가방법은 상법전 제252조 제2항에 따라 변칙이 행해진 선거법에 의해서 이어지는 결산에 있어 첫째 예외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새로운 평가

- (1) 자산대상과 채무는 새로 평가되어야 한다. 자산대상은 재조달 혹은 재생산비를 산정한다(재평가) ; 이러한 재평가 대상은 최고한도 가치가 주어진(시간평가) 평가에 따라 값이 정해질 수 있다. 대차대조 일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주요 가치상승은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산 상품과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낙후성은 시간 평가의 확인에 있어 가치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 개시대차대조표에서 값이 정해진 가치는 제36조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구입과 생산비용으로 계속 유효하다.
- (2) 재조달비의 조사에 있어서는 구입비에 대한 상법전 제251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에는 독일 마르크 통용 전지역에서 가격관계가 이루어진다.
- (3) 재생산비의 조사에 있어서는 생산비에 대한 상법전 제255조 제2항에 상응하여 제3문에 명시된 비용을 고려한다는 원칙과 함께 적용된다;

외국자본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상품소비와 그에 관련된 이행을 위한 비용의 청구는 제2항에 따른 재조달 비용과 동독의 고유 이행인 봉급을 위한 비용의 청구의 기초가 된다. 개시대조일 이후 4개월내의 인건비의 증거는 고려해야 한다.

- (4) 소모될 수 있는 자산대상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법 제253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계산된다. 소모상품의 이용기간의 확정은 1990.7.1.부터 세금 산정 시기부터 기초가 된다. 마모된 자산대상에 있어서 사실적 사용으로 제2문에 따른 이용기간이 합리적·상업적 판단에 따라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 가치는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한다.
- (5) 기업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자산대상은 기대되는 판매 대상으로와 함께 발생한 비용을 제하고 값이 정해진다(매각가치). 아직 사용하고 있으나, 1990.7.1.전에 완전히 공제된 자산대상은 최고한도의 매각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 8 조 비물질적 자산대상

- (1) 기초 자산의 자체 조달한 무형의 자산대상을 위한 상법전 제248조 제2항의 청산금지는 1990.7.1.이전에 자산대상을 전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투자 경영 및 회사 가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 제1항 제1문은 유효하다.
- (2)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능가된 시설재산 중 비투자로 획득된 비물질적 자산대상은 최대 매각가치를 고려한다.
- (3) 비투자로 획득된 비자산대상의 개별 가치의 합계에 포함된 총액 대신 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총판매금액의 범위안에서, 비투자로 획득된 값이 정해질 수 있다. 금액은 그것이 소모성 자산대상에 관한 한 상법전 제255조 제4항에 의하여 공제된다.

제 9 조 대지와 택지

- (1) 소유대지와 택지는 거래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 진다. 이에는 독일마르크가 통용되는 전 지역의 개시대차대조표의 확정까지 가격 상승도 고려되어야 한다. 토지가치의 조사나 그밖의 가치조사를 위한 독자적인 평가위원회의 성립까지 경제장관이 추천하는 표준가치에 따라야 한다.
- (2) 일반 거래상식에 따라 거래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이용, 처리, 혹은 매각제한이 성립하면, 이는 평가절하를 고려해야한다. 이는 개인 소유에 관계되는 경우 재교화와 안정의무에도 적용된다.
- (3) 비투자자로서 최소한 10년동안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된 토지동일권은 이에 속하는 대지와 택지 및 신설자산이 사용된 기타 유용손실(감가상각)이 실용가격으로 산출된다. 이 산출가격은 청산 또는 부록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 10 조 건축물과 기타의 설비

- (1) 건물, 건축물, 기술시설과 다른 기술설비, 기계, 경영 및 영업시설 등은 그의 재생산 비용(7조 3항)이나 재조달 비용(7조 2항)과 함께 그 사이의 이용을 위한 가치하락을 고려하여 최고 한도로 그 유효기간 사용과 (제7조 제1항 제1문)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건축시설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선이 중단된 것은 사용기간 평가의 조사에 의해 가치하락을 고려해야한다.
- (2) 제1항에 명시된 자산대상의 사용시간평가는 거래가치로 평가된다.

제 11 조 재정기반 (Finanzanlage)

- (1) 제1조에 따라 다른 기업에 대한 자본참가는 이기업의 개시대차대조표에 알맞는 배분의 고유자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립된다. 다른 기업에 조정요구 또는 참가기업에 대해 고유자본의 투자 요구가 귀속되면 이는 연합된 기업에 대한 관련 심의에서 특별히 입증되어진다. 다른 협력체는 거래가치로 평가되어진다. 제3문은 또한 제1문에 따른 참여로 적용된다.
-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규정이 정해진 시장에 허락되어지는 관련 주식과 다른 유가증권은 시세가치로서 개시대차대조일에 평가되어진다.
- (3) 1990.7.1.전에 성립된 대출은 동독 2DM가 서독 1DM로 평가되어 독일 마르크로 환산되어진다.

제 12 조 비축 (Vorraete)

- (1) 원료, 보조원료와 영업원료는 제조달과 재생산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 (2) 미완성 생산품과 산출물 및 완성된 생산품들은 재생산비용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완성된 생산품에서 재생산비용의 단순 확인이 가능할 때에도 그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 완성에 드는 추가 비용이 확실하게 산출될 수 있을 때에는 미완성 생산품에도 적용된다.
- (3) 계속처분을 위한 가공이나 세공이 필요없는 상품은 재공급 비용과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제2항 제2문이 여기에 적용된다.
- (4)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여 비축품은 최고 한도의 저장기간을(7조 1항 1문) 평가해야 한다. 제7조 제5항 제1문은 존속한다.

제 13 조

채 권

- (1) 동독의 마르크로 1990.7.1.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제2항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한 동독 2마르크가 서독 1마르크 환산되는 것을 원칙으로 서독 마르크로 평가되어야 한다.
- (2) 위 제1항과는 별도로 1990.6.30. 이후에 만기되는 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및 그밖의 정기적 지불은 동독 1DM와 서독 1DM로 환산하여 평가 되어야 한다.
- (3) 개개의 평가의 원칙은 고려해야 한다. 최소 이자가 불거나 무이자 채권 및 신빙성 없는 채권은, 더 낮은 가치로 평가되어진다; 인정된 안전성이 고려되어진다. 일반신용 위협으로 인한 총액 지불은 채권의 총액에 따라 감해진다.
- (4) 제16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된 채권은 평가되지 않아도 좋다.
- (5) 회수되지 않은 예금은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 가치가 있을 때에 이자는 감소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현금잔고, 수표

- (1) 동독의 마르크 지불 화폐는 계속 법적 지불 화폐인 경우 사용되어진다.
- (2) 수표는 채권처럼 다루어진다.
- (3) 동독의 마르크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예금잔액은 독일화폐로 대변 기입되어야 한다.

제 15 조 계정기준점

상법전 제250조에 따라 능동 및 수동적 환전금액은 다른 환전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독의 2마르크가 독일화폐 1마르크로 책정된다.

제 16 조 채 무

- (1) 1990.7.1. 이전에 동독의 화폐로 성립된 채무는 제2항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동독의 2마르크를 서독의 1마르크로 평가한다.
- (2) 제1항과는 달리 동독의 마르크로 채결된 다음의 채무는 동독 1마르크를 서독 1마르크로 평가하여 환산한다 :
 1. 1990.5.1. 이후 유효한 임금계약에 따르는 수당과 봉급 및 1990.6.30. 이후 만기가 되는 장학금 ;
 2. 동독과 서독간의 통화,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 제20조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1990.6.30. 만기의 연금
 3. 1990.6.30 이후 만기되는 임대료와 임대차 계약 및 정기적 환불금, 단 생명보험과 사립연금보험의 환불 및 지급 사항은 제외
- (3) 채무는 다음과 같이 당사자의 서면해명이 있을 때는 개시대차대조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1. 연간 잉여금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납을 요구할 때
 2. 모든 당사자가 해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진한 경우 기업의 적자, 지급 불능 또는 해산의 경우 이러한 채무의 전액을 기업과의 합의 하에 차기 자본으로 지불할 수 있을 때 부속 혹은 기타 재정 채무로 분류한다.
- (4) 제4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개시대차대조표를 위한 비용계산 기간내에 투자된 채무는 결산되지 않는다.

제 17 조

유 보

- (1) 1990.7.1. 이전에 등록 마르크로 이루어진 불확실한 채무는, 서독의 마르크 채무와 같이 환전하여 재작성한다.
- (2) 상법전 제249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미해결 영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재작성은 개시대차대조표에 새로 작성한다. 이는 특히 판매나 조달 업무가 비용충당을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될 때에 기록하며, 이 비용은 반대 급부를 능가하거나 혹은 납품된 물건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것이다.
- (3) 제1항에 따라 환산되지 않은 유보사항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업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독 화폐로 최고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 (4) 상법전 제249조 제1항 제1문의 첫번째 적용으로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유보된것은 제24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보상요구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경우 유보 금액의 최고가로서 활동면에서 유보 형성으로부터 특별 손실계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활성화금은 유보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차기년도에 투자로 감가한다. 특별손실계좌의 활성화는 준비금으로 비축하는 한 이는 손실금 보상으로 간주한다.
- (5) 상법전 제249조 제1항 제2문 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전 제249 조의 그밖의 내용은 제9조 제2항 혹은 제1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가치하락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유보는 상승 금액의 가치하락의 수준을 형성한다. 제16조 제1항과 제4항은 적용된다.

제 18 조

화폐 환산

외국의 화폐로 된 자산대상, 채무나 계산 기준점 금액 및 대차대조일에 청산되지 않는 현금거래는, 현금시세에 따라 대차대조일에 서독 마르크로

환산되어진다. 청산되지 않는 정기거래는 정기시세에 따라 대차대조일에 환산되어진다. 채권과 인도요구는 현금시세, 채무와 인도의무와 함께 증권의 공급시세로 환산되어진다.

소 제 3 절

부전 비교

제 19 조

부 전

- (1) 추가로 개시대차대조표의 입장에서 적용된 대차대조방법과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방법 특히 새로운 평가에 있어 적용되고 제시되며 해결된 제3자의 전문적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가치측정에 있어 비교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투표권의 행사에 있어 자산대상에 대한 주요 작용이 따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외에도 투표권의 실행에 있어 개시대차대조표에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시대차대조표에 각 금액으로 씌어지거나, 부전에서 만들어지는 언급도 작성된다.
- (2) 추가사항으로 1990.6.30. 이후 기업이 변화된 조건에 적응하기 위하여 계획했거나 관련된 조치들은 기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기업의 목적, 임무 또는 상품의 새로운 수용, 휴업, 다른 기업과의 통합 또는 분리 등의 변화도 포함된다. 구조변경에 따른 예산 내역도 기술해야 한다.
- (3) 기타 다음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
 1.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채무에 대해
 - a) 5년 이상의 잔여기간을 가진 채무의 총금액
 - b) 담보의 종류와 형태에 대한 언급하에, 저당권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를 통해 담보된 채무의 총액
 2. 제시된 분류표에 따라 채무의 입장에서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한 위 1번에서 요구하는 내역

3.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증명된 토지 및 건물과 다른 건축물에 대한 용익권, 처분권 혹은 매각에 관련되는 모든 법적이거나 계약상의 제한은 기록되어야 한다. 그 외에 장래의 모든 개정적 의무가 파생될 수 있는 사정 특히 대수리, 재경작 혹은 관개비용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개시대차대조표에 증명된 기술설비와 기계, 다른 설비 및 영업과 사무설비등의 상태(평균적인 소모)와 앞으로 새로 설비될 계획을 기록한다; 예측되는 투자수요는 앞으로 4년안에 확실한 내용만 제시된다.
 5. 기업의 전소유주가 기업의 일부, 생산시설 혹은 자산 대상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청구내용
 6. 재정상태의 판단을 위해 의미가 있는 경우 상법전 제251조 혹은 다른 법규정이 정하지 않은 기타 재정적 의무의 총금액
 7. 피고용인의 수
 8. 경영지휘부서 및 감사부서의 임원은 임시로 임명된 경우라 해도 성과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감사부서장, 부감사부서장 그리고 경영지휘부서의 예비의장도 명기해야 한다.
 9. 주식의 5분의 1을 취급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특히 자본 할당의 수준과 개시대차대조에 나타난 자체자본 또는 이 기업의 자체자본을 통해 보상되지 않는 결손도 표기해야 한다. 주식자본 계산은 주식법 제16조 제2항과 제4항이 적용된다.
 10. “그외의 보류”의 입장에서 대차대조상 특별히 증명되지 않은 보류 내용은 사소한 범위라도 해명되어야 한다. 비용 유보는 항시 별도로 제시되고 해명되어야 한다.
 11. 직계 母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및 母회사에 의해 세워진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의 공개위치
- (4) 제2항과 제3항에서 요구된 진술과 해명은 다음 경우 증지될 수 있다;
1. 상법전 제264조 제2항의 종속적 기업의 재산상태의 제시
 2. 제2항, 제3항 제4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서 기업에 현저한 불이익을 가져올 합리적 경영평가가 내려질 경우

제 20 조

비 교

- (1) 추가에는 비교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해야한다. 그 내용은 어떤 범위로 독일화폐 개시대차대조표의 금액과 비교하여 1990.7.1.까지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자산대상의 새가치와 채무에서 생겨난 차액은 결산 대차 대조표에 대해 새평가의 차액의 명시아래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의 금액에 따라 분류되어 별도의 증명으로 제시된다. 새로운 가치평가의 차이는 개개의 색인을 통해 기록된다.
- (2) 독일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의 금액에 대한 1990.6.30.까지의 결산 대차대조표의 금액의 부기 및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색인은, 동독의 통계국에 의해 발행된 문형지에 의해 금융기관과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1990.5.18 제정된 서독과 동독간의 통화, 경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약의 부록집 제8항목 제5조에 따라 상이한 규정이 공포되지 않는 한 제시되어진다.

제 2 절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 종합개시대차대도표

제 21 조

비용계산의 의무

- (1) 한 기업에 대해(子회사) 주식의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母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의 의무화된 비용계산으로 1990.7.1.부터 시작되는 영업연도의 첫 5개월내 독일화폐로 된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 및 제 22조에 따른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와의 통합된 단위를 산정해야 한다.
- 결산일에 母회사와 子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에서, 대차대조에서 증명된 결손금액이 총 서독 화폐 50억 DM를 넘지 않거나, 기업 연합이

- 총 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때, 母회사는 기업연합 개시대 차대조표와 부록 제출 의무가 없다.
- (2) 기업 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와 부록은 분명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질서정연한 장부기입의 원칙을 고려하여, 상법전 제297조 제2항 제2문의 의미에서 기업연합의 자산상태의 실제의 행위에 상응하는 도표를 조정해야 한다.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가 실제의 관계에 상응하는 도식을 제2문에 따라 조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생긴다면 부록에 추가항목을 만들어야 한다.
 - (3)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에서 母회사와 모든 子회사들은 子회사의 소재지를 고려하지 않으며 상법전 제295조와 제296조에 의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때 합병되어진다. 제출 기간내에 기업연합의 조성이 변화되면 1990.7.1.까지의 상태로 취급된다. 이는 또한 1990.7.1. 이후의 제출기간내에 설립된 기업에도 적용된다.
 - (4)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자본회사의 대차대조표와 관련되어 있고 그 고유성으로 인해 기업 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가 상이하지 않을 경우 이 법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그리고 상법전 제295조부터 제298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부터 제312조까지와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에 관련되는 기업의 법인체와 지점을 위해 이 법의 유효한 규정이 상법 제296조 제1항 제3호를 예외로 하고 적용된다. 상법전 제308조의 적용에 있어 子회사와 母회사의 개시대차대조표가 이 법의 적용 범위 안에서 소재지를 가지고 있을때 통일적으로 가치가 평가된다.
 - (5) 신탁회사와 그에 의해 설립된 신탁주식회사는,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 대신에 단순형태의 종합개시대차대조표를, 그리고 기업연합 부전 대신에 전체부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항상 종합 또는 子회사의 기업연합 개시대차대조표를 그리고 기업연합부전 대신에 전체부전을 제시한다. 그들은 항상 子회사의 전체 혹은 기업연합 개시대차대조표를 종합한다. 상법전 제301조에 따른 자본정리에 있어서 부채에 따른 차액이 자기 자본일 경우 활성화자금에 따른 차액과 부채에 따른 차액의 계

산은 영업 또는 기업 자금으로 환원한다. 채무 청산에 대한 상법전 제 303조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만 적용되어진다. 또한 상법전 제304조에 따라 필요한 중간결산은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인도와 성과에 따라 계산되어진다. 기타 정산, 감사, 확정과 공개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업연합대차대조표와 기업연합부전에 유효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전 제29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2 조

기업연합 부전

- (1) 기업연합 부전에 대해서는 제19조가 적용된다.
자회사의 부전에서는 기업연합의 평가를 위해 근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만 종합적으로 수용된다.
- (2) 기업연합 부전에는 특히 상법전 제313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된 약조금이 만들어져야 한다. 상법전 제313조 제3항이 적용된다.

제 23 조

제출 및 안내의무

- (1) 각 모회사들은 자회사에 대해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의 제시, 해명 및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에 의하여 모회사에 주어진 다음 임무에도 적용된다.
- (2) 자회사들은 각 모회사에 부전을 포함한 개시대차대조표를 기업연합부전을 포함한 기업연합 개시대차대조표로 제출해야한다. 자회사가 모회사가 될 때에는 결산과 감사보고서를 모회사가 됨과 동시에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가 추가로 수정될 경우 개정내용을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관계서류가 확정전에 도착된 경우에는 확정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 3 절

자본준비

소 제 4 절

지금까지의 국유기업에 의한 자산보상과 자기자본보호

제 24 조

차감계정 요구

- (1) 지금까지의 국유 신탁자산 혹은 하나의 자회사를 사유화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 지역, 주, 혹은 다른 재산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진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무역회사의 경우 자체자본으로 채무자가 개시대차대조표들을 위한 확정 기간내에 이자청구(보상청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결손액의 수준으로 1990.7.1. 기하여 따로 증명된 조세의 채무를 가진다.
- (2) 차감계정 요구는 선택권의 완전행사를 통해 결손액을 보상하기 위하여 금액을 감할 수 있다. 제36조는 관계하지 않는다. 보상요구는 제 13조 제3항 제2문에 따라 최소 이자에 의한 평가절하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정한다.
- (3) 보상청구는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조직을 위하여 배당권을 가진 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기업에 대하여 행해진다. 과거의 국유재산으로서의 기업이 국가, 주, 지역, 도시, 지방자치 단체 혹은 다른 재산 소유자에게 법에 의하여 양도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이 기관들에 대해 행해진다. 신탁기관에 귀속되는 배당권이 무상으로 자회사에 양도되었다면 이 자회사들이 보상청구권자이다. 자회사들은 신탁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신의 보상청구를 신탁기관에 할 수 있다.
- (4)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의 제시에 의해 보상요구가 구체화 되는 한 이를 채무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채무자에게는 제23조의 권리가 1990.7.1.부터 주어진다.

신탁기관은 신탁기관에 대해 행해졌던 보상청구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과 연방재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 (5)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의 채무자인 모회사는 지분 감가상각계정을 이 보상청구에서 나온 채무의 수준에서, 개시대차대조표의 활동적인 면을 표준으로 삼는다. 준비자금은 차기년도의 보상청구의 상각 수준에서 공제해야 한다. 지분감가상각계정의 활성화가 준비금의 결과를 낳는 한 이것들은 단지 손실의 조정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 25 조

차감계정 의무

- (1) 제24조 제1항 제1문에 명시된 기업의 개시대차대조표의 비용 계산에 있어서 높은 자기자본이 설비자산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1990.7.1.까지 양도된 토지를 위해 감액된 금액과 일치될 때 높은 자기자본이 입증되는 결과가 된다면 증가된 금액의 수준에 따라 차감계정의무를 진다. 기업의 법적형태나 행위를 위해 법적으로 명시된 최소자본은 그 러나 미달되지 않아야 한다. 제36조는 불변이다.
- (2) 채권자는 채권조정에 있어서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감계정요구 성립에 관계된 사람이다. 차감계정 의무에 따른 이자지불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제3문이 적용된다.
- (3)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의 비용계산에 있어 차감계정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조정의 채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에게는 1990.7.1.부터 제23조에 따른 권리가 주어진다.
- (4) 제1항에 따른 차감계정의무의 채권자인 기업은 이 금액수준에서 개시대차대조표의 긍정적인 면에 상응하는 채권에 맞춘다.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채무조정의 입금액은 항상 이 요구와 함께 청산되어진다.
- (5) 지분 혹은 토지나 대지에 대하여 기업에 1990.7.1.까지 무상양도되고 개시대차대조표에서 확정된 부채가 말소되지 않거나 제35조 제1항 제3문에 따른 확정기간안에 전체 집행절차가 진행되거나 기업이 해체되

있을 때에는 신탁기관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제 26 조 자기자본 보호

- (1) 제24조 제1항 제1문에서의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이익에 의하여 증명된 자산상태와 이 법에 따라 채택된 특별금액 및 산출 한계의 수준이 적자차원의 채무와 산출 한계의 합이 총액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자기자본으로 증명해야 한다.
- (2) 기업이 지녀야 할 자본 형성의 명시가 규정되어 있다면 정관이나 회사 계약에 법적 최소자산 수준을 명시해야 한다. 제27조제2항 제2문 과 제3문, 제3항과 제7항이 적용된다.
- (3) 제1항에 명시된 자기자본 형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손액은 외부의 출자로서 시설 자산의 이익적 차원에서 회수되지 않은 출자로 대신한다. 자본의 예치는 기업법인체에 맞는 규정이 유효하다. 최소 예치금이 완전하지 못하면 결손액이 청구되어진다. 청구는 지분소유자가 개시대차대조표를 위한 확정기간내에 기업의 해체나 총집행 절차의 개시 요구와 동시에 소멸된다; 제24조 제4항 제3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9조 제4항은 유한 책임회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4) 지분소유자는 기업의 심사에 따라 사적인 법률형태로 1990.6.30.까지 투자한다면 제3항의 경우 결손액은 다음과 같이 개시대차대조표의 활동적인 면으로 미회수금의 자리에 상응하는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그 전제조건하에 자본감가상각계정의 증명을 통해 조정되어 질 수 있다.

소 제 5 절 사기업의 자본관계의 신규확정

제 27 조

신규확정

- (1) 이 절은 1990.6.30. 까지 사기업의 법률형태로 설립되었거나, 상업등기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24조 제1항 제1문의 기업이 아닌 기업 등에 적용된다. 제26조 제1항에 표시된 자기자본 금액이 제출되어야 한다.
- (2) 주식회사나 주식합자회사는 그의 주식자본을, 유한회사는 그의 회사창립의 자본금을 정관이나 회사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수준, 최소한도 법적으로 규정된 수준으로 새로 확정해야 한다. 명시된 자본은, 개시대차대조표의 비용계산에 있어서 제31조에 따른 준비자금의 공제에 따라 자기자본 증가가 있을 때에는 증자액으로 확정될 수 있다. 증자금액은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있어 법적인 준비금으로, 유한회사에서는 단지 손실의 전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허락되어 있는 특별준비금으로 할당된다.
- (3) 합자회사는 새로운 확정에 근거하여 반제 하지 않으며, 출자 의무를 진다. 주식회사법의 제57조 제1항 제1문, 제62조, 유한회사와 관계법 제30조 제1항, 제31조는 개시대차대조표에서 형성된 준비금에 상응하여 적용되어 진다.
- (4) 합명회사(OHG)와 합자회사는 조합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의 자본출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추가로 제2항과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유한회사원의 보증예금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인출권은 상법전 제122조에 따라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증명된 자기자본이 제31조에 따라 수입으로 등재된 총액보다 더 낮은 결과로 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적 책임이 있는 조합원들은 초과하여 인출된 금액을 여입해야 한다. 유한책임사원에의 지불이 자기자본의 감소 결과를 나타낸다면 상법전 제172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의 재지급으로 유효하다.
- (5) 조합은 회사지분과 보증금액을 새로이 확정하는 회사자산이 있다; 제

3항이 적용된다.

(6) 새로운 확정에 있어서의 지분은 다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 50DM의 액면금액의 주식이나 100DM에 상당하는 더 높은 액면 금액의 주식
2. 유한회사에 대한 500DM의 회사지분이나 100으로 나눌 수 있는 더 높은 금액, 조합원의 수에 관계 없다.
3. 조합원에 있어 50DM의 회사지분이나 50DM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진 더 높은 회사지분

(7) 개시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과 재적립금은 새계정에서 정해지는 수준으로 입증된다.

제 28 조

임시재확정

(1) 제27조에 따른 최종 재확정 대신 금융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아닌 기업은 임의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시 재확정할 수 있다 :

최종대차대조표에서 동독의 마르크로 표시된 자본은 서독의 마르크로 환전되어 개시대차대조표로 이관되고 개시대차대조표에서 동독의 마르크로 표시된 자본금을 넘으면, 그 차액은 감가 상각 계정으로 개시대차대조표의 순수익으로 조정된다.

(2) 자본감가상각으로 증명되는 금액은 자본의 9/10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자본적립금은 보유할 수 없다. 이익적립금은 제31조에 따라 이루어졌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기업이 자본감가상각계정을 장래의 연례잔금을 상환키 위하여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은 자본감가상각계정을 개시대차대조표일 이후 5년의 영업연도내에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상환키 위해서는 가치상승이 제36조에 따른 가치기준과 연 이월금을 적용한다. 다른 방식의 적용은 자본감가상각계정이 존재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 29 조 회사법 관계

- (1) 지분과 결합된 권한의 관계는 새확정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 (2) 기업의 제3자 즉 기업의 이익분배, 액면, 지분의 가치나 명시된 자본의 가치 혹은 그이외의 자본이 이익에 관한 계약상의 관계는 새규정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자본이나 이익관계에 의하여 정해진다. 제3자는 새규정을 통해 나타난 제1문에 의한 권리의 축소를 개시대차대 조표에서 적립금으로 표시된 자본이 제27조, 제28조에 따라 필요치 않은 불이익 관계로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한 스스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 (3) 자본감가상각계정의 성립과정에서 자본증액을 결정하게 되면 모든 지분소유자에게는 지금까지의 자본에 대한 새지분의 몫이 적용된다. 제3자는 지분을 양도받고 지분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 30 조 자본감가상각계정의 해제

- (1) 자본감가상각계정이 제28조 제2항 제4문의 기간안에 조정되지 않으면 기업관할 조치는 자본조치를(Kapitalmassnahme) 위해 개시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진 날로부터 늦어도 5년째 영업연도의 연말 결산 적용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본감가상각 계정이 말소로서 특히 표시된 자본의 감소로 조정하도록 하기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조치는 지체없이 실행되어야 한다. 그 실행은 최종적인 재확정으로 간주된다. 표시된 자본의 축소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 의해 단순 자본감액에 대한 적합한 규정으로서 법 제 221조부터 제236조까지를 적용한다.

소제 6 절
임의 이익준비금

제 31 조
임의 이익준비금

- (1) 금융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아닌 기업은 이익적립금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1. 무상의 시설투자를 위한 비물질적 자산은 기업 취득자가 계속운업을 위하여 이 자산의 총 판매금액내에서 금액을 정할수 있다. 이때 경영상태나 회사가치가 고려될 수 있다.
 2. 상법전 제269조 제1문에 따른 회사경영의 확정과 운전을 위한 지출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0. 3.1. 이후에 정해진 모든 조치도 포함된다.
 3. 투자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상환의무없이 보증된 보조금과 다른 자산 이익은 투자가 개시대차대조표의 비용계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탁되는 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1문 제1호내지 제3호에서 초과된 금액 수준은 초과금액의 말소까지 임시 이익적립금으로 부족액에 투자된다.
- (2)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된 금액은 계획적으로 제7조에 따라 새로 평가된, 무투자 기업의 자산의 잔여 이용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내에 상쇄되어야 한다. 비교액이 부족하거나 비교될 수 없다면, 그 금액은 이어지는 영업연도에 적어도 1/4이 상쇄를 통해 말소되어야 한다.
- (3)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업경영의 확장과 운전을 위해 투자되는 금액은 다음해에 적어도 1/4이 공제를 통해 말소되어야 한다.
- (4) 제1항 제3호에 따라 활성화된 금액은, 대차대조 기능이 생기는 대로 다음해에 대체되어야 한다. 그 요구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가로 일어난다면, 평가된 금액은 적립금으로 직접 계산되어진다.
- (5)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산출된 기비용과 이익 배당을 제24조에 따라 채권조정외 이자소득의 수준에서 개시대차대조표에 증명된 자기

자본의 손실업이 산출된 소득만으로 매꿀 수 있다고 가정되면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 (6)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금액이 투자되면, 공제를 통해 말소될 때까지 이익은 단지 이익 배당후에 해체될 수 있는 이익 적립금을 이익금에 가산하고 손실액을 감하여 산출된 금액이 최소일 때 분배되어야 한다. 발생한 손실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 수준에서 이익 적립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36조는 변경되지 않는다.
- (7) 제1항에 따른 금액은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채권조정과 채무 조정의 계산, 제26조 제3항의 외부출자, 제26조 제4항,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본감가상각계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 (8) 제1항에 따른 금액과 이금액의 수준에서 형성된 이익 적립금은 따로 해당 표시아래 입증되고 부록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제 4 절

독일마르크 급부의 확정과 적용

제 32 조

독일마르크 급부의 확정과 적용

- (1) 1990.6.30.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국가가격규정에 일치하였으나 더이상 가격결정에 종속되지 않는 가격에 대한 협약이 준용된다면 가격확정이 1990.6.30. 까지 되지 않을 때, 가격은 채권자에 의한 해명을 통하여 채무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적정 가격일 때에는 다른 부분에도 구속력이 있다. 적정가격이 아닌 경우 결정은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정이 지연될 때도 같다.
- (2) 1990.7.1.이전에 이루어진 채권과 채무 협약이 취약할 때 특히 지속적인 채무 관계에서, 성과와 성과가 아닌 것의 근원적인 형평이 두드러지게 지연되고 그것을 통하여 협약의 상대 모두에게 기대할 수 없는 불이익이 일어나는 결과가 된다면, 각 협약상대자는 상대방 협약 상대

자가 그의 성과를 정당한 평가에 따라 새로이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결정은 손해가 나는 협약 상대방에게, 그것이 적정가격일때 구속력이 있다. 그 결정이 적정가격이 아닌 경우 결정은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 결정이 지연될 때도 같다.

- (3)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재평가에 따른 결정이 정당한 재량으로 개시대차대조표의 제시기간내에 이루어진다면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결정은 새로 확정되는 보상이 손실이 되는 경우에만 행해진다.

제 5 절 절 차

소제 7 절 감 사

제 33 조 감 사

- (1) 개시대차대조표와 부록은 감사관 의해 감사된다. 감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개시대차대조표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28조 제3항에 따라 부족액을 공제한 후 대차대조표의 총액이 3백 90만 마르크를 넘지 아니하는 자본회사나 조합이나 조사일 당시 고용인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무역회사가 아닌 한 대차대조표나 부록을 감사 받을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상인이나 대인 상사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 (2) 1990년 3월 1일부터 개시대차대조표의 작성기간사이에 설립된 회사나 법률 혹은 법규정에 의한 의결로 사단법인 형태로 전환한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 감사에 설립이나 전환의 감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현 물출자의 감사때도 마찬가지이다.
- (3) 기업연합 개시대차대조표나 추록은 감사에 의해 감사받는다. 감사가

- 실시되지 않으면 기업연합 개시대차대조표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4) 감사된 증빙서류가 감사보고서 제출후에 변경된 경우 필요하다면 감사는 이를 새로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결과는 보고되어야 한다. 확인 표시도 사실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 (5) 감사 대상과 범위에 관한 상법 제317조는 재산목록도 감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금융기관이나 무역회사에 있어서는 그밖에 제20조에 따른 보상 내용도 감사한다.

제 34 조 감사 실행

- (1) 감사는 독일의 경제 감사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서한 경제감사 혹은 공인된 경제감사회사이다. 상법 제268조 제3항에 따라 부족액을 공제한 후에 대차대조표 총액이 5백 50만 마르크를 넘지 아니하거나 감사일에 피고용자가 250명 미만인 유한회사는 역시 그의 개시대차대조표를 경제감사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서한 경제감사 혹은 공인된 경제감사회사에 의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 (2) 기업이 조합인 경우에는 제33조에 규정된 감사는 상법 제319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조에 의해 감사권이 수여된 감사단에 의해서만 실시된다. 감사단은 그룹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구성원이 제1항 제1문에 의한 경제감사인 경우에만 감사할 수 있다. 감사단이 2명의 간부로만 될 때 그중 1인이 제1항 제1문의 경제 감사가 된다. 조합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단체가 독일에 있는 감사 단과 감사의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 감사 단체가 관할한다. 제 55조 제3항의 경영 및 영업 동지회에 관한 규정은 변함이 없다.
- (3) 저축은행은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 감사가 상법전 제319조 제1항 제 1절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연합과 대체연합의 감사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감사기관장이 상법전 제319조의 조건을 충족시킬때, 감사는 감사기관에 의해 시행되어 진다. 그외에도 감사는 감사로 저축은행과

- 대체 연합의 조직의 지침에 대해 독립적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 (4) 제1항의 경우 감사의 임명에 대해 상법전 제318조의 기업의 지도부가 감사를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에 감사에 감사가 입석해야 한다. 상법전 제318조에 감사선거를 위하여 임명된 사람의 증명은 지체 없이 회복되어야 한다.
- (5) 감사는 상법전 제317조, 제318조, 제319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320조 부터 323조까지가 적용된다.

소 제 8 절 확정 및 보고

제 35 조 확 정

- (1) 개시대차대조표와 추록 및 기업연합대차대조표와 기업연합 추록은 확정이 필요하다. 이 서류의 작성에 유효한 규정은 확정에도 적용된다. 확정은 개인기업에서는 소유주에 의해, 다른 기업에서는 주주 혹은 기업정관에 의한 해당조직에 의해 결정원칙을 토대로 규정된 서류의 작성에 따라 지체없이 행해져야 한다; 개시대차대조표와 추록은 늦어도 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대차대조일 이후 11개월이 경과하기 전, 기업연합 대차대조표와 기업 연합 추록은 늦어도 대차대조일 이후로 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 되어야 한다. 사업지도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비용 계산과 감사 보고서의 확정을 위하여 소집된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감사기구를 가지고 있다면 감사기구는 그 증거들을 주식회사법 제171조를 적용하여 감사해야하고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해야 한다.
- (2) 제1항 제1문에 표시된 근거는 보증을 받을 수 없을 때 확정될 수 없다.

개시대차대조표와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는 감사업무수행에 적용되는 규정대로 감사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았을때는 무효이다. 감사결과에 의하여 기본 서류에 변화가 있다. 새로운 감사를 근거로 하여 변화와 관계된 제한되지 않는 확정결과가 제시될 때 이 결정은 효력이 있다.

- (3) 경영지도부는 확정기구에 곧 확정근거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추록이나 기업 연합 추록으로부터 해명되지 않는 자본 관계의 새로운 확정을 위한 제안과 자산 대상의 가치 평가와 새로운 확정을 위한 제안에 알맞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제 36 조 가치평가 정정

- (1) 후기 연말결산표에서 개시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 대상이나 특별항목이 평가되지 않거나 혹은 낮게 혹은 부채나 부당한 특별항목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면, 다음의 대차대조표에서 없어진 항목은 다시 환원하고 가치평가에 있어서 현존의 금액이 문제가 될때에는 교정이 되어야 한다. 이익은 이익적립금에서, 단 제17조 제4항에 따른 재조정에서 나온 특별손실계정의 감소에서 나온 제24조 제1항에 따른 채권 조정의 감소 혹은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자본 할당 감가상각계정의 감소, 혹은 제26조 제3항에 따른 외부 출자의 감소, 혹은 제26조 제4항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본감가상가계정의 감소에서 나온 손실, 제25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상승에서 나온 손실이 있을경우 주식회사에서는 미리 법적인 적립금에 명시된 수준까지 조정해야 한다.
- (2) 후기 연말결산표에서 개시대차대조표에 있는 자산이나 특별 항목이 부당하거나 너무 높게 혹은 부채로 혹은 특별 항목이 아닌 것으로 또는 너무 낮은 가치로 평가되었다면, 다음의 대차대조표에서 금액이 문제가 될 때 평가항목은 수정되어야 하고 불이행 항목은 복구되어야 한다. 손실은 제17조 제4항에 따른 재조정에서 나온 특별 손실계정의

- 상승으로 인한 이익, 제26조 제3항에 따른 외부의 출자, 제26조 제4항과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자본 감가 상각계정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 혹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채무 조정의 감소에서 나온 이익으로 결산되어지지 않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당해년도 성과와 이익 적립금으로 결산되어야 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은 개시대차대조표를 위해 양도된 선거권이(eingeräumtes Wahlrecht) 추가로 효력이 발생될 때 적용된다.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자기자본내에서 제2항에 따른 손실로서 계산되어질 수 있다.
-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마지막으로 1994년에 끝난 영업연도 연말 결산에 적용된다. 제24조, 제25조와 제26조 제3항에 따른 채권과 채무는 교정의 시점에서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제3자의 보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변화될 수 없다.
-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소 제 9 절

공 시

제 37 조

공 시

- (1) 기업은 법의 형태에 따라 혹은 지점으로 인해 연말 결산의 공고가 의무화 되어있을 때 혹은 개시대차대조표와 기업 연합 대차대조표에서 대차대조액이 1억 2천 5백만 마르크 이상이 입증되거나 대차대조 일에 500명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 그 기업들은 개시대차대조표와 추록 및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와 기업연합 부록을 공고해야 한다. 상법 제325조, 제326조, 제328조와 제339조가 적용된다 수량표시의 결정에는 제5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제20조에 따른 비

교표시는 공고될 필요가 없다. 1990년 6월 21일에 제정된(GBL. 1 Nr.35s.357) 동독 지역에서의 서독의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 제4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창립, 전환 혹은 현물출자의 감사가 개시대차대조표 감사와 관련된 경우 개시대차대조표와 추록이 무제한적 확증의사를 갖고 있다면 법원은 개시대차대조표의 재산의 가치평가가 실제상의 가치에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 (4) 199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법규에 따라 동독 통계국에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과 새로 창립된 자본회사는 독일 마르크 개시대차대조표와 제20조에 의한 조정표시를 동독의 통계국 관할 관청의 확인후 지체없이 2부를 제출한다.

제 6 절

영업지점 관련 규정

소제 10 절

금융기관과 대외무역회사에 관한 규정

제 38 조

적용범위

- (1) 금융기관과 대외무역회사는 이 소제10절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수량에 관계된 허가된 경감은 청구할 수 없다. 신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a항과 제25a조부터 제26b조는 금융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금융기관이라함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동독마르크 통용구역에서 신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업무를 수행한 기관을 말한다. 그 자격은 법률, 법규정, 행정령 혹은 행정청의 허가기준에 근거할 수 있다.
- (3) 대외무역회사라함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동독마르크 통용구역에

서 국가의 위임에 의해 대외무역독립과 외화독점으로 동독마르크 통용 구역밖의 기업과 거래를 해온 기업을 말한다. 청산할 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청산을 목적으로 대외무역업을 인수한 기업도 역시 이에 속한다.

제 39 조 개시대차대조표

- (1) 금융기관도 상법 제247조 제1항, 제251조, 제265조 제5항 내지 제7항 제266조 내지 26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밖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고 1987년 9월 14일 공포된 금융 기관의 연말결산의 구분에 관한 서식에 관한 규정(BGBI. I 2169)에 의해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즉,
 1. 자본회사인 금융기관은 이 대차대조표규정 양식,
 2. 등록된 조합 금융기관은 이 대차대조표구성 양식 2,
 3. 저축금고인 금융기관과 그밖에 공법상의 금융기관은 이 규정의 개정 에 의해 확정되는 견본에 따른다.
- (2) 지방자치단체, 공공사단, 영조율, 동독마르크 통용구역내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혹은 그에 의해 보증받지 않는 금융기관은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제13조 제3항에 의한 전체가치수정을 은행영업 100분의 20상당의 청구권에, 보증이나 그밖의 급부에서 나온 총채권의 100분의 0.5를 준비해야 한다.
- (3) 장래의 대차대조표에 전체 가치수정 유지는 평가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 (4)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표시된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성립된 채무는 동독 1마르크가 서독1마르크로 환산된다.

동독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에 대한 채무,
- 1976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자는 2,000마르크까지,

- 1931년 6월 2일에서 1976년 7월 1일까지 출생한자는 4,000마르크까지,
 - 1931년 6월 2일 이전 출생한자는 6,000마르크까지,
- 이 기준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1989년 12월 31일 이후에 설립한 동독이외에 주소를 가진 자연인, 법인, 영업소에 대한 채무는 신청이 있으면 동독 3마르크에 서독 1마르크의 비율로 환산된다.

제 40 조

보상청구

- (1) 금융기관과 대외무역회사에게는 그들의 자산가치가 이법의 소 제 2절의 평가 규정의 적용으로 독일 마르크 화폐의 도입과 동독 화폐교환으로 야기된 채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990년 7월 1일부터 화폐교환 보상 기금에 대해 이자부 청구권이 주어진다.
- (2) 제1항에 표시된 채무를 포함하여 자기 자본이 대차대조 총액의 최소 100분의 4이상임을 입증하고 1985년 12월 17일 공포된 신용제도에 관한 연방 감독국에 의하여 제정된 원칙1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최대한 13배에 달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가치가 충분하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청구가 보상된다.
- (3) 대외무역회사를 위한 보상 청구는 자산가치가 제1항에 표시된 채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도록 확정되어야 한다.
- (4) 제36조는 본질적인 것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제36조 제3항 제3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1 조

보상채무

- (1)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소는 1990년 7월 1일까지 개시대차대조표에 화폐교환 보상기금에 대한 채무(조정채무)를 금융기관에서는 제40

조 제2항에 표시된 한계까지의 자기자본을, 대외무역회사에서는 재산 가치가 채무를 초과하도록 산정한다.

(2) 제40조 제4항은 해당사안에 적용된다.

제 42 조

보상표시

금융기관은 제20조에 의한 보상표시에 다음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10,000 독일 마르크를 넘는 채권에 대해 1990년 7월 1일까지 개별가치 수정을 했는지 혹은 감가를 했는지; 감가된 가액은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2. 동독마르크로 현금이 입금된 은행구좌는
 - a) 2,000독일마르크까지 1:1
 - b) 4,000독일마르크까지 1:1
 - c) 6,000독일마르크까지 1:1
3. 계속 교환요구가 신청가능한 동독마르크로 된 자산의 총액

제 43 조

감 사

- (1) 자본회사나 공법상의 금융기관이나 대외무역회사는 저축 기금이 아닌 한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인의 경제감사 혹은 경제감사 회사에 의해서만 감사된다.
- (2) 감사는 자연인의 예금자산의 사후적 교환에 있어서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의 창설에 관한 동서독의 이전상태 회복을 위한 계약 부록 I의 제 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이 존재하는지의 문제까지 확정된다.

소 제 11 절
보험회사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적용범위

- (1) 이 소 제2절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량과 관련하여 허용 경감을 주장할 수 없다. 보험감독법 제55조, 제56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보험회사란 보험행위를 대상으로하는 기업으로서 사회보험의 주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 보험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는 기업도 역시 이에 포함된다.

제 45 조
개시대차대조표

- (1) 보험회사는 상법전 제265조 제6항, 제7항, 266조내지 268조와는 다르게 1973.7.11. 제정되고, 1986.12.23. 최종 개정된(AGB.1 1987. IS.2) 보험회사의 계산규칙에 따라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 (2) 보험회사는 보험감독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재조정을 해야 한다. 보험감독법 제56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제17조 제4항은 출자금의 이월은 예외로 하고 보험기술적인 재조정에 적용된다.
- (3) 보험회사는 추록에서 추가로 1973.7.11. 개정된 보험회사의 계산규정 제12조 제3항에 언급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 46 조
감사·제출

- (1) 보험회사는 제34조 제1항과 다르게 경제감사나 경제 감사 조합에 의

해 검사되어야 한다.

- (2) 독일마르크 대차대조표, 추록 및 제20조에 따라 비교되는 제시는 늦어도 대차대조청산일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연합 개시대차대조표와 기업연합 추록은 늦어도 11개월이 경과하기전에 보험 제도를 위한 연방감독청에 2부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감사에 대한 감사관들의 보고는 늦어도 대차대조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기전 제33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감사에 대한 감사관들의 보고는 늦어도 대차대조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전에 보험 제도를 위한 연방감독청에 2부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 7 절

형벌규정과 질서위반규정, 과태료

제 47 조

형벌규정

- (1) 상법 제331조내지 333조의 형벌규정은 개시대차대조표, 추록,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 기업연합 추록에 대해 그리고 이법에 따라 임명된 감사들에 상응하여 적용되어 진다. 제1문은 또한 자본회사의 법적 형태로 경영되지 않는 기업에 적용된다.
- (2) 상법 제331조는 더나아가 자본회사의 형태로 경영되지 않는 금융기관의 책임자에 의한(신용제도에 대한 법 제1조 제2항 제1문) 의무적 손상 혹은 개인법인으로서 경영되는 금융기관의 소유주를 통하거나 혹은 신용제도에 대한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의 책임자를 통한 의무의 불이행에도 적용된다.

제 48 조

질서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 (1)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신용제도에 대한 법 제25조 제2항 제1문 혹은 제53조 제2항 제1문의 회사 책임자로서 혹은 개인 법인의 법률 형태로 경영하는 기업주로서 다음 1,2,3의 경우를 위반하는 사람은 법령위반으로 다루어진다.
1. 개시대차대조표의 제시나 확정 다음 규정의 추록에 있어서
 - a) 형태와 내용에 관한 상법전 제243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1문이나 제3항, 제250조 제1항 제1문이나 제2항 혹은 제251조와 관련하여 제4조 제2항 제1문이나 제2문 혹은 제5조 제1항 제1문의 규정
 - b) 상법전 제253조 제1항 제2문, 제2항 제1문이나 제2문, 제3문 혹은 제3항 1문이나 제2문, 제1항이나 제2항 제1문과 제2문이나 제6문과 연결된 제5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이나 가치평가에 대한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
 - c) 상법전 제265조 제3항부터 8항까지, 제266조, 제268조 제3항부터 7항이 제272조와 관련하여 제5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이나 목차에 관한 제39조 제1항이나 제2항 혹은 제45조 규정과 관련된 추록의 내용
 2. 기업 연합 대차대조표의 제시 혹은 다음 규정의 기업 연합 부록의 제시에 있어서
 - a) 합병지역에 관한 제21조 제3항의 규정
 - b) 형태와 내용에 관한 상법전 제5조부터 제19조 혹은 제297조 제2항이나 제3항 혹은 제29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제21조 제4항 제1문의 규정, 상법전 제243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44조,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1항이나 제2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제1문 혹은 제3항, 제250조 제1항 제1문이나 제2항 혹은 제251조와 연관한

- 제21조 제4항 제1문의 규정
- c) 기업합병이나 완전병합에 관한 상법전 제300조와 연관한 제21조 제4항 제1문의 규정
 - d) 연합기업의 거래에 관한 상법전 제311조 제1항 제1절과 연관된 제21조 제4항 제1문, 상법전 제312조와 연관된 제21조 제4항 제1문의 규정
 - e) 기업연합 추록의 언급에 관한 제22조의 규정
3. 형태와 내용에 관한 상법전 제328조와 관련된 제37조 제1항 제1문의 규정의 보류, 공표 혹은 복제
- (2) 법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되어야 할 개시대차대조표나 추록 혹은 기업 연합 개시대차대조표나 기업 연합 추록에 의해 상법 제322조에 따라 기획을 한사람은, 비록 상법 제31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제34조 제5항에 따라 혹은 상법 제319조 제3항과 관련하여 제34조 제5항에 따라, 종사하고 있는 경제감사조합이나 정부감사조합이 감사관이 되지 않은 경우 법령위반으로 다루어진다.
- (3) 법령위반에는 50,000 DM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9 조

과태료 확정

대표권한이 있는 기구의 구성원, 소유주의 개별 기업에 있어서 다음의 규정을 어기면 등기재판(Registergericht)에 회부되어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개시대차대조표와 추록의 제시에 대한 의무에 관한 제1조 제1항
2.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와 추록 제시에 대한 의무에 관한 제21조 제1항
3. 감사위탁의 지체없는 교부의 의무에 대한 상법 제318조 제1항 제4문과 연관된 이법의 제34조 제4항
4. 감사의 법정 임명에 대해 행해져야 할 의무, 신청에 관한 상법 제318조 제4항 제3문과 관련된 이법의 제34조 제4항

5. 감사에 대한 의무에 대해 상법 제320조와 관련된 이법의 제34조 제5항
6. 개시대차대조표나 추록 혹은 기업연합개시대차대조표나 추록의 유보를 위한 의무에 대한 상법전 제325조와 관련된 이법의 제37조 상법 제335조 제2문 내지 제8문이 적용된다. 과태료의 확정을 위해서는 임의 재판의 사안에 대한 이 법의 제132조부터 139조가 적용된다.

제 8 절

조세, 수수료

제 50 조

조세적 개시대차대조표와 효과

- (1) 제1조에 따라 기업의 귀속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규정된 세법적 수익조사에 복종해야 한다.
- (2)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6월 1일까지 상법상의 개시대차대조표에 상응하는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9조 제3항이나 제31조 제1항에 의한 차변을 붙이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 제1문은 참가가 있는 기업의 조세적 개시대차대조표에서 참가대장가격이 자기 자본지분에 일치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제3항, 제5항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미불금과 상법 제249조 제1항 제2문 제1호, 제3문, 제2항에 의한 미불금이 발생 해서는 안된다.
- (3) 제36조에 의한 항목의 수정은 조세상의 개시대차대조표 및 가능한 종결대차대조표의 수정을 초래한다. 이미 조세결정이 통보되면 대차대조표나 가치항목의 수정이 수익이나 손실에 차이가 있거나 또는 단일가치의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정한다.
- (4) 제26조 제4항이나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격하락계정의 보상을 위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대상 수익조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 (5) 임의로 부기하고 정기적으로 결산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적용된다.

제 51 조 전환조건부 자산 변동

- (1) 제50조 제1항이나 제5항에 표시된 납세의무자, 그 사원 또는 협회 회원의 자산의 개시대차대조표나 제26조 제2항내지 제4항, 제27조, 제28조, 제30조에 의한 새로운 확정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특히 수익 자산의 1990년 7월 1일까지 성립된 채무의 새로운 평가, 1990년 7월 1일까지 기업에 이전된 것등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관한 것일 때 적립금의 형성이나 기존의 과소평가의 폐지에 적용된다.
- (2) 제1조에 표시된 회사나 회사원들의 재산이나 제1조에 표시된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한 새로운 확정에서 생겨난 변화는 자본유용세(資本流用稅)의 기초가 되지 못한다.

제 52 조 기타 경우의 조세의 최종금액

-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익조사대상 납세의무자의 조달비용이나 재생산비용은 1990년 7월 1일 까지의 설비자산의 경제 상품으로 간주하고 1990년 7월 1일에 이전된 납세 의무자에게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에 상응하는 가치가 조달비용이나 재생산 비용으로 간주된다. 제1문에 대한 경제재산은 1990년 7월 1일까지의 가치평가에 따라 특별한 목록(설비목록)이 채택된다. 1990년 7월 1일까지 평가 되어서는 안되거나 부당하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평가되는 결과가 1994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면 설비목록은 보고되어야 한다 ; 이미 조세결정이 발표된 경우에는 그 보고가 이익이나 손실의 결과가 되는 때에만 수정된다.

- (2) 제1항 제1문은 독립적이 아닌 노동, 자본재산, 임대 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혹은 소득세법 제17조와 제22조에 따른 다른 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제 53 조

회계년도 1990과 조세의 증결대차대조표

소득세법의 제2조 제3항 제1번에서 제3번에 따른 소득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회계연도는 1990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다. 조세의 최종 대차대조표에는 소득세법의 제5조 제4항에 따른 재작성은 다만 제54조의 전제조건하에 연금재작성을 한다.

제 54 조

연금의 재작성

(1) 연금의 의무를 위한 재작성(연금의 재작성)은 다음 경우에 이루어진다 :

1. 연금해당자가 일비불 또는 분할지급 연금이행을 요구할때,
2. 연금수용이 연금상속권이나 연금이행이 감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때, 혹은 그러한 조건이 낮은 평가 아래에서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연금상속권이나 연금액의 감소나 박탈이 허용되는 사실에 대해 그러한 조건이 확대될 때
3. 연금승락이 서면으로 승낙되었을 때 :

(2) 연금의 재작성은 다음 경우에만 작성 될 수 있다.

1. 연금수용이 교부된 회계연도를 위한 부양이 시작되기전 빨라도 회계연도의 중반까지 연금수락자가 만30세가 되는 경우
2. 부양이 시작되는 회계연도를 위한 부양이 이미 시작된후의 경우

(3) 연금재작성은 연금의무의 부분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연금의무의 부

분평가는 다음의 경우 유효하다 :

1. 연금유자격자의 복무가 끝나기전 미래에 받게될 연금액의 현금가는 영업연도의 마지막 시점에 나타난 현금가를 공제하고 금액에 따라 변하지 않는 연총액(Jahresbeträge)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연 총액은 근무가 시작되었던 회계연도의 시작에 시작당시의 현금가가 장래의 연금액의 현금가에 상응하도록 측정되어진다; 장래의 연금액은 대차 대조일 관계에 따라 생기는 금액으로 측정되어진다. 그것은 고용이 시작된 경제연도로부터 연금수용에서 예견되는 부양시기까지 계산에 따라 지불되어야 하는 연 총액의 기초가 된다. 이에 대한 효력발생이나 범위에 관계된 불확실한 회계연도후에는 연금액의 증가나 감소는 장래의 연금액의 현금가나 연총액을 계산하여 고려해야 한다. 연금수용이 고용이 시작된 후에 교부되었다면, 연총액의 계산을 위한 중간 시기는 그것이 연금수락에서 결정되었을때 폐기시기로 취급한다. 복무관계가 이미 연금유자격자의 30세이전에 성립되었다면, 그것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유자격자가 만30세가 끝날 때 까지 유효하다.
 2. 연금유자격자의 복무관계가 끝난뒤에는 연금상속권의 유지나 부양권의 계승후에 영업연도의 마지막에 장래의 연금액의 현가가 연금의무와 부분평가로 간주된다; 제1번 제4문이 유효하다. 연금의무의 부분 평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이자율 6%와 보험계산의 공인된 규정이 적용된다.
- (4) 연금재작성은 1990년 12월 31일 마지막에 끝난 경제연도에서 연금의무의 부분평가와 경제연도의 시작사이의 차이만큼 최고로 결정되어야 한다. 첫해에 연금재작성이 시작되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 재작성은 연금의무의 부분평가의 수준까지 회계연도의 마지막에 작성되어야 한다; 이 재작성은 첫해와 이어지는 두 회계연도가 똑같이 나누어진다. 연금유자격자의 복무관계가 그의 연금상속의 유지아래 첫해의 마지막 날 끝나거나 부양의 경우 이 회계연도에서 시작된다면, 연금재작성은 항상 연금의무와 부분평가의 수준까지 이루어져도 좋다; 이 회계연도를 위해 허락된 연금재작성의 증가는 첫해와 이어지는 두 회계연도에 똑같이 분배되어진다.

- (5) 제3항과 제4항은 연금유자격자가 연금의무자로 복무관계와는 다른 법률 관계에 있을때 적용된다.

제 55 조

불입금

1990년 6월 30일이후 3년이내에 1990년 7월 1일 전에 구입되고 생산된 경제자산이 경영에 출자되었다면, 납세의무자의 1990년 7월 1일까지 개시대차대조표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은 구입비용 혹은 생산비용으로 간주한다.

제 56 조

수수료

- (1) 개시대차대조표의 확정과 이법에 따른 자본관계의 새로운 확정에 따라 발생한 재판비용과 공증비용은 50% 감해진다. 1문에 따라 계산된 위원회 결정의 공증비용이 2,000 DM을 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50% 감해진다. 공증인에게 직접 지불되는 수수료는 서독의 임의재판권의 사안에 관한 비용업 -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361-1로 수정되어 공표되고 1990년 4월 5일에 제5조(BGBI. IS 701)를 통해 개정된 - 제144조 제1항에 따라 감해진다.
- (2) 사회변화가 새로운 확정보다 늦지 않게 결정되고 개시대차대조표에 따라 액면자본이 100,000 DM을 넘지 않거나, 주식회사나 주식합자회사의 이월 자기금액이나 유한책임회사(G.M.B.H)의 이월 자기자본이 50,000 DM을 넘지 않을때에 수수료는 감액된다. 그러나 자본감가상각 계정의 조정과 연관되어 발생한 비용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위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액결정의 공증과, 제1항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안에 대한 공증은 신고하거나 등록되어야 하며, 이에 동일 금액

-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종합수수료의 일부금액은 위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명칭으로 인상되지 않은 경우 보다 적어야 한다.
- (4) 법정에 의해서 공증을 위한 추가비용과 외국어의 번역에 드는 추가비용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이외에서의 공증비용은 영업을 위해 스스로 제기된(감소된)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 (5) 최소비용에 대한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제 9 절 기타의 규정

제 57 조 해 산

- (1) 자본관계가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법에 따라 새로이 확정되지 않은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이기간의 경과와 함께 해체 된다. 개시대차대조표의 확정을 위한 기간이 개개의 경우 1991년 12월 31일을 넘겨야 할 경우에는 3개월 연장된다. 새로운 확정에 대한 결정이 1991년 12월 31일 전에 취소된다면 1991년 12월 31일 대신에 판결의 기판력 발생일 후 6개월이 지난날이 된다.
- (2) 새로운 환경에 따른 최종 자본이 법의 형태에 따라 허용된 최소액보다 적고 액면자본 상승의 결정과 그외에도 액면자본의 상승이 이시점까지 허용된 최소액면가격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1991년 12월 31일의 경과와 함께 해산된다.
- (3) 1997.12.31.까지 보상집행이 상업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자본감가상각제정이 형성되는 권한을 사용한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이 기한이 경과되면 해산된다.
- (4) 제1항 제1문은 상업 및 경제노조의 그 필요한 지위 변경을 1991.12.31.까지 노조등록부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58 조

사업연도

- (1) 기업은 사업연도를 새로 확정해야 한다. 첫번째 사업연도는 상법전 제 240조 제2항 제2문과는 다르게 18개월까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12개월까지 포함할 수 있다.
- (2) 제1항을 적용하는 기업은 1990년 12월 31일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연말결산을 해야 한다. 추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연말결산은 감사 및 열람될 필요가 없다.

제 10 절

종결규정

제 59 조

위 임

재무부장관은 경제부장관과 동독의 통계국과의 협력으로 법규정을 통하여, 제1조, 제20조, 제21조, 제39조와 제45조에 의한 형태 및 내용에 관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제시하는 조약상 경제, 화폐, 사회 통합과 이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통화 전환과 감사의 실행, 이 자료의 공시와 확정 및 그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는다.

제 60 조

효력발생

이법은 199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절의 규정은 그러나 최초로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의 동독의 법은 유효하다: 1990년 6월 30일까지의 동독의 마르크로 된 부기종결에 대한 규정은 1990년 6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Gbl Nr.40 S 593).

제 Ⅲ 절

동독의 다음의 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1.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문, 제4항은 1990.8.1. 제정된 화물차 운전자 의무 보험가입 규정 제13조 제1항과 함께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12.31. 계속 유효하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없이 법규정을 통해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IV 장 연방재무장관 업무영역

제 i 절

아래의 동독법은 통일후에도 효력이 있다 :

1. 1990.6.29. 제정된 저축은행법
2. 1990.6.29. 제정된 동독 이외 지역에 주소를 갖는 권리자의 배당권 상계에 관한 규정
3. 1990.7.20. 제정한 동독 이외 지역에 주소를 갖는 권리자의 배당권 상계에 관한 규정
4. 1990.6.29. 제정한 동독의 마르크 화폐를 불법적으로 서독 마르크로 환전하는 행위에 관한 확정법
5. 아래의 동독 종교세법은 본 조약의 효력과 함께 계속 유효하다:

종교세금규정법

제 i 절

기 초

제 1 조

공법상 법인체인 종교단체는 시민 세금명세서를 근거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

제 2 조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종교단체는 다음과 같다 :

1. 개신교 교회

- a) 안할트 주개신교 교회
- b) 베를린-브란덴베르그의 개신교 교회
- c) 피릿츠 교회구역의 개신교 교회
- d) 폼메 개신교 교회
- e) 메클렌부르크 루터 개신교 교회
- f) 작센교회 지방 개신교 교회
- g) 작센주 루터개신교 교회
- h) 튜링겐 지방의 루터개신교 교회

그리고 해당 교회의 공동단체와 지역 교회 단체와 그연합

2. 카톨릭교회

- a) 베를린 교구
- b) 드레스덴-마이센 교구
- c) 피릿츠 교황직속관할 교구
- d) 에어푸트-마이닝엔의 주교청
- e) 막테브르그 주교청
- f) 쉬베린 주교청

그밖에 이들 카톨릭교회의 지교회와 그단체들 ;

3. 유대인의 문화단체

4. 동등권을 지닌 기타 종교단체

제 3 조

종교단체가 규약과 가입원 숫자로 존속을 보장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공법상 단체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공법상의 종교단체가 여럿이 모여 연합하는 경우 이 연합단체는 공법상의 단체이다.

제 ii 절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종교세 규정

제 4 조

제2조 제1번과 제2번에 언급된 교회의 신자는 이 교회가 발령한 고유한 세금규정의 기준에 따라 종교세(공법상의 부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 (1) 동독에 주소나 주거지를 갖는 모든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신자는 종교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2) 종교세 납입의무는 교회에 입회하고 주소 근거를 마련한 시기의 월 초 일로 개시된다.

이 납입의무는

1. 사망시 사망한 달의 경과
2. 퇴거시 퇴거한 달의 경과
3. 교회탈퇴시 탈퇴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달의 경과로 종료된다.

교회탈퇴는 교회탈퇴의사를 인수할 법정 관할부서에서 발행한 증서로서 증명할 수 있다.

제 6 조

- (1) 종교세금령에 따라 종교세는 주종교세·지역종교세를 개별 또는 부가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종교세로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a) 소득세와 소득부과세의 또는 수입에 따른 특별세율 가산금(소득종교세)
 - b) 재산세나 재산을 기준으로한 가산금(재산종교세)
 - 이들 세금은 100분율에 기준을 삼는다.
 - 소득종교세를 산정하기 이전에 소득세법에서 예상하고 있다면 소득세와 임금조세를 기준조세 산정을 위해 정한 금액으로 감축할 수 있다.
 2. 고정 또는 등급화된 종교세액
 3. 고정금액이나 등급별로 정한 교회수당, 부부중 종교세 납부의무가 없는 종교를 가진 경우 종교세납부의무 있는 배우자의 특별교회수당
- (2) 종교세금령에 따라 관할이 있는 단체나 교회가 징수할 종교세의 종류나 금액을 정한다. 종교세금령은 일종의 교회세를 다른 종류의 교회세로 산입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3) 교회세금령과 교회세결의 및 변경은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조세행정을 관할하는 주상급관청이 이 승인을 결정한다. 승인을 받은 종교세금령과 종교세결의는 관할 교회의 부서가 세무서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공고한다. 조세년도 개시에 어떤 세금결의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승인이 있기까지, 그러나 늦어도 다음 조세년도의 6월 30일까지 현재의 세금액이 효력이 있다.

제 7 조

- (1) 부부가 서로 다른 종교세 납부의무가 있는 교회에 소속되고 소득세에 있어서 세액을 공동산정하는 경우 교회세는 두 배우자의 수입의 교회세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징수된다 :

1. 부부가 함께 소득세를 산정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절반
2. 배우자 일방 또는 배우자 쌍방의 임금 조세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 조세의 절반, 배우자는 조세에 있어 공동 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임금 인하 절차상 부부일방의 종교세는 다른 배우자에게도 보류될 수 있다.
- (2) 소득세의 공동산정조건이 없거나 배우자가 별거 또는 특별산정되는 경우 종교세는 각각 배우자의 소득을 근거로 해당소속교회의 세금산정 기준에 따라 징수된다.
- (3) 제6조 제1항에 정한 종교세 종류의 징수에는 위 제2항이 효력이 있다.

제 8 조

- 1) 배우자 일방만이 종교세 납부의무가 있는 교회에 소속되는 경우(부부의 종교가 다른 경우) 세금징수권있는 교회가 이 배우자에게 주어진 세금 산정근거에 따라 그의 종교세를 징수한다.
- 2) 부부가 함께 기준세에 산정되면 부부쌍방에 대해 확정된 기준세는 분리하여 세금을 산정했을 금액의 비율로 배정될 수 있다. 종교세납부의무가 있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배우자의 기준세에 의존하고 있는 교회세는 그의 몫이 된 기준세 부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하여 소득세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적용한다.

제 9 조

- 1) 종교세는 제10조의 규정을 유보하고 교회 담당관서가 관리한다. 과세에 필요한 서류는 요건을 갖추어 주관청, 지역, 구역의 종교과세 담당청에 일임한다. 필요한 신고일은 종교과세 담당청에 통보한다.
- 2) 종교세 납부청구를 받은자는 종교세징수를 담당하는 곳에 세금징수권한을 확정하는 모든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회신도는 종교세산정에 필요한 진술을 해야 한다.

제 10 조

교회의 신청으로 소득교회에 재산종교세 및 부부가 서로 다른 종교인 경우의 교회수당에 대한 관리는 재정 관할 상급 관청을 통해 세무서에 이관된다. 세무 관리는 그의 종교세율이 통일적이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교회는 기준세의 할증을 일정한 백분율로 이행해야 한다. 종교세 관리에 있어서 세무서의 행정 관리비는 해당 주정부와 교회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 1) 소득종교세를 세무서가 관장하는 경우 동독내에 공장을 갖는 고용주는 동독진출(신고) 규정의 의미상 주소나 주거지를 갖는 모든 교회신자의 종교세를 소득세법상 기업(공장)이 있는 곳의 기준이 되는 세율로 지급을 보류하고 교회에 지속적 관리를 위해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 2) 교회구역이 동독밖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되지만 서독내에 있는 교회의 신청으로 노동자가 동독에 주소나 주거지를 갖고 있지 않으나 동독의 임금세법상 기업에 의해 임금이 지불되어 해고 되었다면 관할 상급 세무관리가 이 교회에 대해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노동자를 위해 종교세의 보류와 지불을 조정한다. 교회는 차등 종교 세율로서 차등종교세액을 조정한다. 노동자의 신청으로 세금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 차후징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 12 조

- 1) 종교세를 세무서가 관장한다면 본법 및 종교 세금령에 다른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한 소득세에 대한 규정은 특히 임금 공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소득종교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규정은 재산종교세에 준용한다. 기타 연체이자와 이자 및 재판외의 법률구조 절차나 형벌, 벌금에 대한

규정을 제외한 공과금 규정을 준용한다.

- 2) 세무서가 교회세를 관장하는 경우 세금확정, 유예, 소득세나 재산세의 감면등에 따라 변화되는 세율에 의하여 종교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평한 근거에서 종교세를 차등하게 확정하고 지급을 유예하며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종교세 담당기관의 권한은 변동이 없다.

제 13 조

종교세를 교회가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경우 공과금 규정과 부대조항에 따라 신청으로 종교세가 납부서에 의해 부과되거나 주담당관서가 기준세를 책정한 경우 관리 강제 절차에 대한 규정에 따라 주집행 기관에 의해 부과된다.

제 14 조

- 1) 종교세에 관한 이의 신청이 있을시 행정권리 과정이 제기된다. 세금책정에 대한 이의를 세무서에 제기한 경우 관할 교회관서가 청문할 수 있다.
- 2) 종교세 부과에 대한 법률자문은 종교세의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재산세의 측정에 대한 이의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 3) 교회관서의 모든 거부권 결정은 근거가 성립 되어야 하며 동시에 법률적 보호과정에 안내가 있어야 한다.

제 Ⅲ 절

기타 세금징수의무가 있는 종교단체의 기본 규정

제 15 조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 제1번, 제2번에 기재된 교회와

다른교회 및 공법상 단체인 세계관적 단체와 종교단체에 적절히 준용한다.

제 iv 절 규 정

제 16 조

- 1)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으로 공법상의 종교단체에 소속된 법적 소속에 대한 진술 내용을 접수한다. 이 내용은 조세 비밀에 따르고 또 본법의 범위안에서 종교세 의무의 확정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 2) 신고관청에 접수된 종교단체의 소속에 대한 자료가 올바른지 의문이 있을 경우 이해 관계자의 신청으로 그의 이해에 따라 해당된 진술을 신고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다. 신고관청은 관련 종교 단체의 변화를 통고해야 한다.

제 17 조

신고관청과 관할교회 담당기관은 공법상 종교기관에 법적소속의 공적기재를 포함해 교회신도의 종교세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립할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제 18 조

세무관리를 관할하는 상급 주관청은 해당교회세를 책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사용, 보관 및 지속적 관리 및 자료보존의 안전을 위해 법규를 정할 권한이 있다.

제 19 조

교회소속에 관한 일반 신고의무 규정은 계속유효하다.

제 v 절 적용규정

제 20 조

- 1) 본법의 규정은 1991.1.1. 세금 과세년도 부터 적용한다. 임금에 대한 세금 부과시 본규정은 1990.12.31. 이후에 종료될 임금 지급 시기에 지급될 임금과 1990.12.31. 이후에 있게될 그밖의 금액에 적용된다.
- 2) 1991.1.1.이전에 해당종교세 확정을 위해 자료조사와 확정이 필요하다면 본법은 공고후 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6. 1990.8.15. 의 신탁법 1차 시행령
7. 분리된 군용재산의 처분 및 긴급사유화를 위한 조건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신탁법의 제2차 시행령
8. 1990.8.29. 제정된 신탁법 제3차 시행령
9. 1990. 7.18. 제정된 신탁회사 정관

제 ii 절

동독의 아래법규들은 다음과 같은 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

1. 1990.6.29. 베를린 국립은행에 대한 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제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 은행의 기본자산은 동독에 귀속된다. 제13조는 개정되지 않는다. 독일의 통일후 통일조약 제19조 제7항의 기본항목은 유효하다.”
 - b)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aa) 제1번의 마지막 채택된 문장은 삭제한다.
 - bb) 제2번은 삭제된다.
 - cc) 제4번과 제5번은 삭제된다.
 - dd) 제6번의 “신용기관” 다음에 “특히 저축은행”을 덧붙인다.

c) 제7조를 삭제한다.

d)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 재정장관은 통일조약 제19조 제7항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재정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법규를 통해 총체적 권리승계 방법으로 청산 없이 은행자산 모두를 서독의 공공금융기관이나 다른 법적 기관에 이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은행자산의 일부를 총체적으로 청산 절차 없이 하나 또는 여러 권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일부 양도시 규정이나 또는 규정의 부록에서 구성요건에 포함된 투자자본으로 모든 인수권리기관에 이전된 대상물과 결합물을 표시 및 기재할 수 있다. 이들 대상물이나 양도된 채무는 본 령에 의거해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의 재산은 청산할 수 있다.

(2) 본령의 공포 이전에 관할기관과 은행의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이 청문할 수 있다.

(3) 동독에서 법률공보로 본령이 공고된 날이 종료됨과 함께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자산은 채무와 함께 본령이나 그 기초에 확정된 배당을 기준에 따라 권리기관이나 본령에 기재된 권리기관에 이관 된다. 독일 민법 제613a조는 여기에 효력이 없다. 공유재산의 양도시 은행은 해체된다. 양도를 이율로 하여 어떤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

e) 제13조 다음 제13a조를 신설한다 : “제13a조 : 독일통일후 제13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 제2항 제1 번, 제2번, 제3번과 제8조,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관할은 연방 재무장관에게 이관된다.”

제 Ⅲ 절

동독의 다음법규는 아래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90.7.1.부터 12.31.까지의 동독예산안 확립에 대한 법은 아래의 결정 기준에 따라 1990년 연방예산의 일부로 본다 :

- a) 제5조 제1항의 “80억”이란 숫자는 “110억”으로 대체된다.
 - b) 제11조 제2항에 기술된 동독 예산령 제35조와 동독 예산령 제35조 제 3항 제4문에 따른 금액한계 대신 연방예산령 제37조와 1990회계년도 연방 예산안 확정에 대한 법 제5조가 대신한다.
 - c) 제14조 제1항의 동독 예산령 제21조는 연방 예산령 제23조로 대체된다.
 - d) 제15조 제1항의 “1990년 7월 22일”은 “1990.7.1.”로 수정된다.
2. 지역, 시, 농촌지역자산 - 지방자산법 - 에 관한 1990.7.6. 제정된 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1990.5.18. 제정된 화폐 및 경제, 사회통합의 결성에 대한 조약 제10조 제6항 및 제26조 제4항과 일치하여 직접적 관리자산 및 그밖의 자산(재산재산)의 그외 관리업무를 지역, 시 및 농촌지역에 송부한다.
 - b) 제4조 제2항에 다음 규정을 보충한다 : “지역단위, 시, 주, 농촌지역 출자총액이 주식회사 자본의 49%를 초과 한다면 이 출자금은 이 비율로 적절히 감축된다.”
3. 1990년 7월 4일 제정한 투자 상여금령대신 본령이 기본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연방법으로 유효하다.
4.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외국환소지의 외국인과 계약당사자에 대해 서독 화폐로 실현될 수 있는 계약의 채권, 채무 청산을 위해 1990.7.4. 제정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모든 비용문제는 통일조약 제19a조에 따른 독일연방과 외국간의 채권, 채무청산을 위한 확정에 적절히 적용된다.
5. 1990.3.30. 제정된 베를린 동업조합은행의 정관에 관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재무장관은 동업조합은행의 체계정립과 다른 신용기관에 대한 베를린 동업조합은행의 법률관계에 적응케 하는데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연방재무장관과 협의하여 법규정으로서 베를린 동업조합은행의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이 령으로 베를린 동업조합은행을 주식회사로 변형케

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독일 통일후에는 관련 법령 제정권한이 연방 재무장관에게 이관된다.

6. 농업농장의 가스연료사용법은 1990.12.31.까지 효력을 갖는다.
7. 농업농장의 가스연료사용법 시행령은 1990.12.31.까지 효력을 갖는다.
8. 1990.8.22. 제정된 시민의 자유 대물 및 보증 의무 보험영역에 관한 법규정의 폐지에 관한 령 제2조부터 제4조는 계속유효하다.
9. 1990.8.22. 제정된 시민 자유 개인 보험 영역의 법규정의 폐지에 관한 령 제2조와 제3조는 계속 유효하다.
10. 1990.8.22. 제정된 단체와 사회조직의 자유보험 조건에 관한 령의 폐지에 관한 령 제2조와 3조는 1990.12.31.까지 유효하다.
11. 1990.8.23. 제정된 사유 정원 경영 및 기타 식물원 경영에 대한 자유 보험조건령의 폐기를 위한 령 제2조와 3조는 1990.12.31.까지 유효하다.

제 V 장 연방경제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일반경제법, 경제정책, 경쟁 및 정가법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90.6.25. 제정된 정가영역의 법규의 존속과 폐지에 관한 령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 a) 제2조 제1항은 다음 영역에 적용된다 :
 - aa) 수자원 경제는 1990.12.31.까지
 - bb) 전기에너지, 가스 및 연료에 관련된 것은 1990.12.31.까지, 에너지 경제난방연료에 관련된것은 1991.6.31.까지.
 - cc)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1991.12.31.까지(독일제국철도는 제외).

- dd) 가옥 관련된 임대와 임차는 1991.12.31. 기타 임대차는 1990.12.31.까지.
- b) 제2조 제1항은 우편 및 체신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
- c) 제2조 제3항은 관할 연방장관이 재무부장관의 협의하에 제정한 규정들이 공고되면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2. 1990.7.25. 제정된 정가에 대한 법규명령의 폐지 및 존속에 대한 제2차령은 1990.12.31.까지 계속 효력이 있다.
3. 1990.7.25. 제정된 약품정가령 제4조와 제10조는 사회법전 제5권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계속효력이 있다.
4. 1990.3.8. 제정된 수공업의 생산물 동업조합의 설립운동, 변형에 관한령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수공업 생산 동업조합은 본령의 규정에 따른 변형이 등록된 동업조합을 포함해 제4조 제1항에 정한 법률형태로 이십점까지 집행되지 않는한 1992.12.31.부터 그 효력을 갖고 해체된다.
5. 1980.10.20. 제정된 업무, 수선 및 직접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범위의 공동설비에 관한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992.12.31. 본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6. 1990.7.11. 제정된 동독의 중·소 기업의 부동산 취득 촉진에 관한령은 1990.12.31. 효력을 상실한다.

업무영역 D : 광산법과 에너지공급법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의 기준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a) 전부 또는 일부가 1969.5.12.의 동독관산법에 근거하거나 그의 시행을 위한 규정이 공고되고 1980.8.13. 제정된 연방광산법 제64조 제3항,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125조 제4항, 제129조 제2항과

- 제131조 제2항에 따라 공포될 수 있는 동독의 규정들은 연방광산법 제176조 제3항의 규정으로 본다. 이 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a) 연방광산법 제176조 제3항 제2문에 제68조 제1항과 동시에 제64조 제3항이 포함된다.
 - bb) 제176조 제3항 제3문에는 제68조 제2항과 함께 제125조 제4항, 제129조 제2항 및 제131조 제2항이 포함된다.
- b) 법적승계인이 없거나 이를 결정할수 없거나 혹은 통일시점에서 최종정지된 채광이 정지된 광산의 공공안전보장을 위한 동독의 광산법규정과 그 관련 규정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와 동베를린의 적법한 관할청의 령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대신 주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1985.1.17. 제정된 지하공동(* 채광에 따른 지하굴, 독일에서는 이공동부분을 충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관한 령은 1995.12.31.까지 효력이 있다.
 3. 1985.1.17. 제정된 지하공동에 관한 시행령은 1995.12.31.까지 효력이 있다.
 4. 1988.7.1. 제정되고 1990.7.25. 개정된 에너지령과 이를 위한 1990.7.25. 최종개정된 제5차 시행령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 a) 제10조, 제14조, 제33조 제2항과 제52조 및 해당 시행령은 1991.3.31.까지 계속 유효하다.
 - b)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48조, 제69조 제4항과 그 시행령은 성립되어있을 대지 공동사용권과 에너지계속 공급을 위한 공장에 대하여 2010.12.31.까지 유효하다. 지역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계속 공급시설을 위한 지역 과시의 성립된 공동사용권은 사권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91.12.31.까지 유효하다. 이 규정에 따라 성립된 공동사용권은 등기부 등기에 반하여 그 유지를 위한 등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업무영역 E : 대외경제법

제 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와 같이 개정 또는 다음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90.6.28. 제정된 대외경제, 자본 및 지불거래에 관한법 제8조와 제 50조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동독정부가 체결한 국가간 조약을 이행키 위해 1990.7.1.이전에 행한 합의 협정상의 의무는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제한을 정하거나 공여나 금액의 의무를 확정케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산출협정에서 총경제적 요건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효하다. 다른 경제적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 공여나 금전적 의무의 확정은 허용된다. 제1문에 따른 의무를 확정함에 있어서 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문의 의미상 조치가 중요하다면 그 지역 거주자가 일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다.
 - b) 제50조는 1990.12.31.까지 계속 유효하다.
2. “1991.1.1.부터 교환가능한 루블로(* 소련 화폐임) 바르샤바동맹국간 경제협력회원국과의 청산정리”는 1990.7.11.의 각료 회의의 결정과 관련해 바르샤바 동맹국간 경제협력회원 국가와 무역대상의 재정 및 결산”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정은 1991.3.31. 까지 계속 효력이 있다.
3. 1990.6.27. 제정된 “1990.2분기의 바르샤바동맹국간의 무역 위원회회원 국가와 수출계약이행을 위해 재정 보조의 보장에 대한 지침”은 1990. 12.31.까지 계속 효력이 있다.

제 VI 장 연방 식량 농업 삼림장관 업무영역

제 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1. 1990.6.29. 제정된 동독의 사회적, 생태적 시장경제로의 구조적 농업 적응에 대한 법
 - a) 동법 제44조 제1항 제2문의 “경제 건물(Wirtschaftsgebäude)”이란 말 다음에 콤마(,) 그리고 “우유첨가량과 설탕공여권”이란 말을 덧붙인다.
 - b) 제53조 제3항은 삭제한다.
 - c) 제6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삭제한다.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을 갖는다 :

1. 1990.7.6. 제정된 사회시장경제에 동독 농업의 농업구조적, 농업사회적 적응 촉진을 위한 법과 이를 뒷받침할 조항들은 다음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 a) 1988.7.21. 제정 공포된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이란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법과 이를 뒷받침할 규정을 준용한다.
 - b) 1990.12.31. 이 경과 됨으로써 제1조 제1항 제4번과 이규정을 보충하는 시행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2. 1982.7.2. 제정되고 1990.6.28. 동독법의 개정, 폐지에 관한법을 통해 개정된 농업 생산 동업조합에 관한법은 1991.12.31.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다.

업무영역 B : 신탁자산

제 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

1. 1990.7.22. 제정된 동업자 조합과 이 동업자 조합의 회원 및 다른 시민에게 국유 농업용지 이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용익권의 양도에 관한 법.
 - a) 동법 제4조 제3항은 삭제되고 제4항은 제3항이, 제5항은 제4항이 된다.
 - b) 제8조는 삭제된다.

업무영역 C : 임업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을 갖는다 :

1. 1987.9. 제정된 삼림육종요소의 관리와 승인 및 삼림육종의 전문기술 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a) 1979.7.29. 공고되고, 1990.6.28. 법제 16조를 최종 개정한 삼림종자와 그 파종에 관한 법이 그의 확대를 위해 확정된 과도시기나 법규명령을 근거로 본조약에 적용될 수 있다면 삼림육종요소의 관리와 승인 및 전문기술기준에도 효력이 있다.
 - b) 나무의 종류가 삼림종자와 파종에 관한 법에 의거하고 삼림종자와 파종에 관한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전문기술표준에 내포된 순종을 본법 제5조에 따른 순종으로 본다.

제 VII 장
연방 동서독관계 장관의 업무영역
(해당없음)

제 VIII 장
연방 노동 사회보장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근로권 규정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

1.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법규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 근로법 제 115b조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a) 제115b조 제1항은 아래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대치된다.

“(1) 노동자를 위해 기준이 되는 규칙적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은 제 115a조 제1항에 기술된 시간에 대해 계속 지불할 수 있다. 노동 능력의 경우 노동청구권이 급부를 통해 무효화되는 비용이 실제로 노동자에게 발생했는지 또한 어떤범위로 발생했는지에 의존적인 한 해고 수당과 노동조건열악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료는 제외된다. 노동자가 능력급 또는 그밖에 노동결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이를 위해 기준이 되는 규칙적 근무시간에 대한 노동자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평균업무는 계속 지불된다.

(2) 공장에서 단축 근무시간으로 작업하고 이때문에 노동자의 공동 임금이 그의 노동능력에 비해 감소되는 경우 그 능력의 지속에 대한 단축노동시간은 제1항의 의미상 노동자에게 기준이 되는 규칙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한다. 이는 공휴일근무시 임금지불규정법 제1조 제2항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3) 임금 계약을 통해 위 제1항과 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금이 관련되지 않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질병시 노동임금의 지

속적 지불에 관한 임금계약상의 규정적용은 임금 계약의 유효범위에서 합의할 수 있다.”

- b) 제115b조 제2항은 제115b조 제4항이 되고 이는 1991.6.30.까지 효력이 있다.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개정된 동독의 노동법의 아래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a) 제55조, 제58조 제1항 a)와 제2항 및 제59조 제2항, 제115a조, 제115c조부터 제115e조까지의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
 - b) 제58조 제1항 b)는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이 시기 이후에 이 조항은
 - ① 1990.1.1. 이전에 태어난 자녀의 부모에게 효력이 있으며 또
 - ② 1992.1.1. 이전에 태어난 자녀를 단독 부양하는 노동자에게 효력이 있다.
 제58조 제1항 b)는 단독부양하는 노동자에 있어서 모자보건법 제9조 와 연방부양수당법 제18조가 적용된다.
 - c)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1991.12.31.까지 유효하다.
 - d) 제70조는 1991.12.31.까지 유효하다.
 - e) 제186조는 1991.6.30.까지 유효하다.
 - f) 제260조부터 제265a조까지는 1991.12.31.까지 유효하다.
 - g) 제267조부터 제269a조까지는 1990.12.31.까지 유효하다.
2. 1978.9.28. 제정된 요양휴가에 관한 령 제8조는 계속 유효하다.
3. 1990.6.29. 제정된 노동권의 중재절차와 설비에 관한 법은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지역에서 계속 효력이 있다. 이는 아래의 기준으로 준용된다.

- a) 제2조 제1항 제3문은 아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방법원은 다음의 경우 노동권을 위한 중재위원의 사전 소집없이 처리한다 :
1. 소송당사자가 심문을 위한 구속이나 형집행중에 구속 또는 형집행 이전에 행한 노동 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권이 주장되는 경우
 2. 노동자가 현역 국방의무나 비현역 군복무중에 있는 경우(* 비현역 군복무는 사회봉사로 국방의무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임)
 3. 노동자가 다른 지역의 기업과 새로운 근무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이 상 더 본 공장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b) 1979.7.12. 제정 공포 되고, 1990.6.29. 법 제1조를 최종 개정한 노동법원법 제11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은 제4조에 따른 중재위원회에 대항하는 대표에 적용된다.
4. 1990.7.11. 제정된 기업정관법에 따른 기업이사의 1차 선출이 있기 까지 과도규정은 1991.6.30. 까지 유효하다.

업무영역 C : 사회적 노동보호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개정된 동독의 노동법 조항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제168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은 1992.12.31.까지 효력이 있다.
 - b) 제168조 제2항은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주법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 c) 제185조는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2. 1986.4.24. 제정된 중증장애아 가족의 특별부양에 관한 령 제1조와 관련해 제3조는 가내노동일 청구권이 규정된 경우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3. 1990.5.16. 제정된 법정공휴일의 채택에 관한 령은 일요일, 공휴일의 주법적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4. 1986.7.8. 제정된 중증장애아 가족의 특별부양에 관한 령의 제2차 시행령 제2조는 가정노동일 청구권이 정해져 있는 한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5. 법정 공휴일 채택에 관한 본령의 1990.6.7. 제정된 1차 시행령은 일요일·공휴일에 주법적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업무영역 D : 사회법 확대규정

해당없음

업무영역 E : 노동시장정책, 고용촉진, 실업보험

제 i 절

아래의 동독법은 계속 효력이 있다 :

1. 동독 노동·사회보장장관에 의하여 1990.7.1. 효력을 발생한 1990.6. 22. 제정·공포된 고용촉진법을 위한 시행령은 1969.6.25. 제정된 노동촉진법 제191조 제3항의 시행령으로서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하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a) 직업교육의 개인적 촉진에 대한 규정
 - b) 외국에서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을 권한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독일인 피교육자의 직업교육 촉진에 관한 규정.
 - c) 직업 계속 교육과 직업 재교육의 개인적 촉진에 대한 법령
 - d) 노동취업촉진을 위한 법령
 - e) 노동행정을 통한 노동창출을 위한 일반조치의 촉진 법령
 - f) 노동자를 위한 노동창출 조치에 관한 법령
 - g) 단축 노동자 수당 보호 절차에 관한 규정

- 1990.6.22. 제정된 고용촉진법 규정과 이를 위해 공고된 시행령 대신 1969.6.25. 제정된 고용촉진법 규정과 이를 위해 공고된 법령 및 제1차 사회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문에 따른 법령은 노동을 위한 연방관청에 의해 개정되고 폐지될 수 있다. 행정관할에 관한 이 법령에 규정된 조항들은 노동을 위한 연방관청의 적절한 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된다. 주 노동관서가 조직될 때까지 중앙노동청이 노동청의 업무를 관장한다.
2. 동독에서 정부협정을 토대로 근무하고 자격이 있는 외국시민의 노동관계 연장에 관한 규정의 시행령은 계속 행정규정으로 유효하다.
 3. 1990.8.20. 제정된 단축노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연장에 대한 법령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유효하다 :

1. 1990.6.22. 제정된 노동촉진법 규정들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다음 규정들은 계속 유효하다 :
 - aa) 제19조 제1항 제2문,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3항, 제93조 제1항 제3문,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 제186e조 제1문과 제2문, 제249e 조 제4항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 bb) 제91조 제4항 제2문, 제95조 제3항 제2문, 제163조 제2항 제2문 부터 제4문까지, 제166조 제3항 제2문
 - cc) 제165조, 제166a조는 1991.12.31.까지 유효하다.
 - dd) 제118조 제1문 제3번부터 제5번까지 및 제2문과 제3문은 통일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유효한 연금법의 의미상 노령자 연금, 광부 연금, 광부 폐질연금의 수령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지불한 부양금은 연금이나 폐질연금과 동일하다. 제118조 제3문은 실업보조금에는 적용할 수 없다.
 - ee)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1.1. 이전의 시기에 소급하여 1969.6.25. 제정된 고용촉진법 제3조 대신에 1990.6.22. 제정된

노동촉진법 제3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1969.6.25. 제정된 노동촉진법 제249b조 제2항 제3문부터 제5문까지는 적절히 효력이 있다.

b) 아래의 규정들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속 유효하다 :

aa) 본령으로 연방노동청이 정할 수 있는 조치와 교육 1차년도에 착수한 조치에 제한없이 초과설비상 교육년도 1990/91에 교육 지원자를 위한 교육조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제40c조 제4항은 이 규정에 정한 제1항과 제2항 대신에 1969.6.25. 제정된 노동촉진법의 해당 규정이 대신 적용된다. 연방노동관청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1992.9.1. 효력을 발생하는 법령을 통해 제1문에 따른 촉진으로 하여금 1992/93교육년도의 교육지원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장소를 정할 수 있다.

bb) 제63조 제5항은 제6문 다음에 아래의 제7문에서 제11문까지 보충한다 :

1969.6.25. 제정된 노동촉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생계수당의 보장을 위한 조건중에는 단축노동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생계수당 대신에 단축 노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정 요율로 감축된 노동임금은

1. 제68조 제4항 제1번의 경우엔 73%
2. 제68조 제4항 제2번의 경우엔 65%이다.

1969.6.25. 제정된 노동촉진법 제4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적절히 준용된다. 제7문에 따라 단축 노동수당을 지급받은 관련 자가 제63조 제5항의 규정의 유효성에 따라 계속된 교육조치의 종료까지 최소지급된 단축노동수당의 금액으로 생계수당을 취득한다. 연방 노동·사회 보장 장관은 연방재정 및 경제 장관과 협의하여 제63 조 제5항의 유효기간을 법규를 통해 1991.12.31.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해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하고 노동시장 정책상의 이유에서 근거된다면 이 법규는 연방

상원위원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

- cc) 제67조 제2항 제3번이 제63조 제5항과 관련할때 노동·사회 보장 연 방장관은 제63조 제5항의 경우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징수 기간을 1991.6.30.까지 연장할 수 있고 제63조 제5항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경우 1991.12.31.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규는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 dd) 제118조 제1문 제4번 및 제5번과 관련한 제70조는 제118조 제2문과 제3문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 ee) 제155조 제2항 제2문과 제155a조는 5주의 차단기간 대신에 4주의 차단 기간으로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 ff) 1992.1.1. 이전 발생한 실업자수당 청구에 있어서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제124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 1990.12.31. 이후 발생한 청구에 있어서는 순수 평균 임금 대신 제iii조에 따른 실업 수당이 기준이 되는 노동임금을 적용한다. 제1문과 제2문은 적용수 당, 생계수당, 실업자 보조금, 노령자 추가수당 및 단축노동수당과 악천후 일기수당에도 적절히 효력이 있다. 사회보조금 청구는 최장 1995.6.30.까지 성립된다.
2. 1990.6.13. 제정된 동독의 정부행정부서에 근무하고 자격이 있는 외국 시민의 노동관계의 연장에 관한 령은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 a) 제2조 제2항의 기업근로자 지도부 대신 기업의 노동자대표로 한다.
 - b) 제4조 제2항의 “그리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전 계약”이란 말과 제4조 3항의 “또는 이 전 계약”과 “동독의 노동법 규정에 따른” 이란 말은 삭제한다.
 - c) 제6조 제2항 d)는 아래 내용을 적용한다.
“d) 노동촉진법에 따른 실업에 있어서의 급부”
 - d) 제7조는 삭제한다.
 3. 1990.5.29. 제정된 사회성 결여 시민의 취업 촉진령은 통일이 되기까지 촉진조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4. 1990.7.1. 제정된 동독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시민의 조기 퇴직에

있어서의 재정적 급부에 관한 령은 기업이 연방재무부에 신청하여 연방 예산에서 비용 상환과 보상을 한다. 이 령은 1991.12.31. 이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5. 1990.2.8. 제정된 명예 퇴직수당의 보장에 관한 령은 통일이 되기까지 본 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에게도 아래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a) 명예 퇴직 수당과 실업수당에 관한 규정에 적절한 사회보험금이 연방 노동청의 신청으로 지급될 수 있다.
 - b) 명예퇴직수당은 최종 3개월의 평균노동임금의 65%에 달한다.
 - c) 1969.6.25. 제정된 연방노동촉진법 제112a조와 제115조가 적절히 유효하다.
 - d) b항에 따라 확정할 수 있는 금액이 통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 명예 퇴직수당을 초과할 때까지 b항에 따른 명예 퇴직 수당의 신규 확정은 중지된다.

업무영역 F : 사회보험(일반규정)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다음의 규정들은 기본법에 따라 동이가 필요한 경우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규정을 통해 시행하게될 사회 보장 노동장관에게 이관될 수 있는 연방 노동·사회 보장 장관의 권한을 인지하는데 적용하다.
2. 1990.6.28. 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의 규정들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제39조, 제2문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 b)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7조 제1항과 제3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 제1항과 제51조, 제70조, 제72조, 제78조, 제79조 와 제80조 제2항은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이 중 보험부문의 제10조는 의료보험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는 1991.1.1.부터 금액 측정관계가 3000마르크 크에 이르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c) 제10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70조는 1991.12.31.까지 작가와 발행인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사회법전 제5권은 1991.1.1.부터 규정대상 G, 제iii절 1번의 기준하에 의료보험 급부에 효력이 있다.

d)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는 1991.12.31.까지 1991년도 사고 부과세를 추정금으로 징수하는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e) 제48조부터 50조까지는 의료보험조합이 임금조치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 조처에 따른다 :

aa) 노동임금이나 근로소득에 따라 측정되는 사회보험금액은 노동임금이나 근로소득을 취하게 되는 업무를 행하거나 행한것으로 간주하는 달(月)의 다음달 10일에 만기가 된다. 이는 또한 당월에 임금이나 급료를 감소하여 지불 할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bb) 기업이 사회보험금을 시기 적절히 지불치 않은 경우 세무서가 경고해야 한다. 기업이 이 경고를 받기전 경고 통보의 정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100마르크에 대한 미지급금의 연체료는 1%이다. 5일까지의 지연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3. 1979.11.17. 제정되고, 1990.6.28. 개정된 노동자와 계약 사무직의 사회보험령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a) 1977.11.17. 제정된 노동자와 계약사무직의 사회보험령 1차 시행령과 1985.3.7. 제정된 노동자와 계약사무직의 사회보험령 2차 시행령은 위 b)항부터 e)항까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991.12.31.까지 유효하다.

b) 제2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 제17조, 제56조, 제5항, 제60조, 제61조는 이규정이 보험분야에 있어서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일반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c) 제62조와 제63조는 1990.12.31. 취업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d) 1977.11.17. 제정된 1차 시행규정 제1조, 제4조, 제5조는 연금보험과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만 적용할 수 있다.
 - e) 1985.3.7. 제정된 제2차 시행규정 제1조는 d)항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4. 1977.12.9. 제정되고, 1990.6.28. 개정된 동독의 국가 보험에 있어서 사회보험에 관한 령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a) 1977.12.9. 제정되고 1990.6.28. 령과 1985.3.7. 제정된 동독의 국가 보험에 있어서 사회보험에 관한 령의 제2차 시행령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의 국가보험에 있어서 사회보험에 관한 제1차 시행령은 b)항부터 d)항까지에 다른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한 1991.12.31. 까지 효력이 있다.
 - b) 제6조부터 제31조, 제76조 제5항, 제80조, 제81조, 제90조, 제91조와 제94조는 이 규정이 보험분야에 있어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자영 독자적 예술인 발행인에게는 본 령을 보험분야중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업무영역 G, 제iii절 제1번의 조치에 반하지 않도록 사회법전 제15권을 1991.1.1. 부터 적용 한다.
 - c) 1977.12.9. 제정된 1차 시행령 제2조 부터 제32조까지와 제47조는 보험분야에 있어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 d) 1985.3.7. 제정된 제2차 시행령 제2조부터 4조까지는 보험분야에 있어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독자적 예술인과 발행인도 본 시행령에 의하여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다.
5. 1977.12.9. 제정되고(관보 특별양식), 1990.6.28. 개정된 자유업종에 종사하는 문화, 예술인 및 개업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등의 사회적 의무 보험에 관한 령은 아래기준으로 적용된다.
- a) 1977.12.9. 제정된 자유업종에 종사하는 문화 예술인 및 개업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등의 사회적 보험의무에 관한 시행령과 본 령은 b)

- 항과 c)항에 다른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 b) 제1조부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0조 제5항과 제7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본 령이 보험분야에 있어서 다만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일반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독자적 예술인과 발행인에 있어 본 령은 보험분야에 있어 의료보험은 사회법전 제5권을 1991.1.1.부터 업무영역 G 제iii절 제1번의 조치아래 급부에도 효력이 있다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c) 1977.12.9. 제정된 제1차 시행령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와 제18조가 보험분야에 있어서 다만 연금보험과 사고보험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독자적 예술인과 발행인에 있어서 본시행령은 보험분야에 있어 의료보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6. 1979.11.23. 제정되고 1990.6.28. 법규명령의 개정,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사회의무보험의 연금보장과 산정에 관한 령과 1979.11.23. 제정되고, 1990.6.28. 법규명령의 개정,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연금령의 제1차 시행령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 a) b)항에 상위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한 합의를 포함한 령 및 제1차 시행령은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 b) 이는
- aa) 기본법이 통일이전에 효력이 있었던 지역의 다른 보험회사나 외국 보험회사의 연금산정시기를 고려하지 않는다.
- bb) 통일이전에 본 기본법이 이미 효력이 있었던 지역의 다른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에게 급부된 연금산정의 추가 산정을 보장한다.
7. 1984.7.26. 제정된 사회의무보험연금의 보장과 산정에 관한 제2차 시행령의 규정들은 다음 조치(기준)에 따른다 :
- a) 제4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 b) a)항 적용시 1985.4.8. 제정한 제2차 연금령의 제1차 시행규정이 효력이 있다.

8. 제29조를 근거로 발령한 추가 보조체계의 확인을 위한 규정과 함께 1990.6.28. 제정된 연금법 규정과 독일연금수준의 잔고연금 조정을 위한 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a) 제18조에 따른 급부는 1991.12.31.까지 신규방법으로만 인정되고 길어도 1995.6.30. 까지 지급된다.
- b) 아래 사항은 제32조 제2항에 1990.7.1.부터 효력을 갖는 것으로 부가 된다. “1950.12.31.이전에 하자있는 공문서나 다른 중요한 이유로 말미암아 결혼이 불가능했거나 결혼과 유사한 공동 관계가 있었고 이시기 이후 결혼이 이루어 졌다면 이것이 유효치 않다. 1945.12.31. 이후 전쟁포로나 징역, 추방 또는 이민으로 부터 귀환한 경우 1950.12.31. 의 시점에 귀환후 5년의 경과가 대신한다. 유가족연금지불의 정지는 이미 확정된 사회보험연금의 지불과 무관하다.
- c) 동독 각료회의에서 노동 및 임금을 위한 수상간의 합의에 따라 아래 열거한 기관사이의 해당 협정을 근거로 해 이익을 보는 자는 그가 동독 각료회의에서 노동 및 사회를 위한 각료부서와 보충합의를 제출하는한 관련합의를 통해 양도된 범위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끌어진 시점부터 권리자나 사회의무보험과 임의의 부가연금보험의 가입자로 본다 :
 - 1980.3.28. 합의에 따라 종전 공무원과 그의 유가족의 연금지급에 관한 동독의 개신교 교회연합
 - 1985.1.9. 부터 동독의 루터교회 근무자와 그의 유가족의 생존기간의 연금지급에 관한 동독 루터교회연합.
 - 1985.3.1.부터 동독의 부목사와 기독교 수련원의 부목사의 연금지급에 관한 동독개신교회 단체
 - 1985.1.8. 부터 제7일 재림교회 단체의 근무자와 그의 유가족의 생존기간의 연금지급에 관한 동독 제7일 재림회
 - 1986.5.13.부터 동독의 개신교-매서디스트 교파의 근무자와 그의 유가족의 생존기간의 연금지급에 관한 동독의 개신교-매더디스트 교파

- d) 연금채정은 연방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방정부의 법규정으로 행한다.
9. 1990.8.15. 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 시행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본 명령은 의료보험조합이 보험금 징수를 인수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10. 다른 규정이 없는한 제2번부터 제9번까지 정한 법과 규정 및 그 시행령은 1990.12.31. 까지 완전한 범위로 효력이 있다. 1991.1.1.이전에 효력 발생하는 규정이 부록I에 따라 이관되는 한 효력이 있다.

업무영역 G : 의료보험 - 보건진료

제 Ⅲ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90.6.28. 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 제71조 c항과 의료 보험조합을 통해 이 보험금의 담보(확보)에 대한 규정은 1991.6.30. 까지 효력이 있다.
2. 1990.6.28. 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 제83조는 1990.6.30. 까지 효력이 있다.
3. 의료보험조합 계약법 제19조와 제20조에 담고 있는 보상 불가능한 약품과 약품의 확정금액에 관한 규정들은 1993.12.31까지 효력이 있다.

업무영역 H : 법정연금보험

제 Ⅲ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97.11.17. 제정되고, 1990.6.28. 법규명령의 개폐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사회보험의 추가연금보험에 관한 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a) 본령과 1977.11.24. 제정된 사회보험의 추가연금보험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와 제20조는 1991.12.31.까지 적용할 수 있다.
- b) 이는 업무영역 F, 제iii절 1번의 기준이 효력이 있다.
2. 1973.3.28. 제정된 철도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령과(1960.4.20. 제정되고 1989.4.26. 제53 부록에 의거에 개정된 동독철도 종사원을 위한 포괄계약 부록 II를 근거로 발령한 동독철도의 공급령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a) 령 제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1991.12.31.까지 적용할 수 있다.
- b) 이는 업무영역 F 제iii절 제1번의 기준을 적용한다.
3. 1973.3.28. 제정된 독일우편 근무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령과 이를 근거로 1973.3.31. 제정되고, 1988.5.16. 우편 및 통신장관의 지시에 의거해 개정된 독일우편 공급령의 규정들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 a) 본령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공급령은 1991.12.31.까지 적용할 수 있다.
- b) 이는 업무영역 F 제iii절 제1번의 기준을 적용한다.
4. 1954.3.9. 제정된 국가에 가장 중요한 국민기업의 노동자와 종업원을 위한 추가연금 공급의 채택(시행)에 관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본 령은 1991.12.31.까지 적용할 수 있다.
- b) 1991.12.31.까지의 시기에 있어 요금계약이나 기업협정을 통해 본령 령과 상위하게 정할 수 있다.
- c) 이는 업무영역 F 제iii절 제1번이 유효하다.
5. 1976.9.20 제정되고 1990.6.28. 연금조정법에 의해 개정된 파시스트의 박해자와 그의 유가족 및 파시스트와의 저항자를 위한 명예 연금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본령은 1991.12.31.까지 적용한다. 이 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하며 그 가족에게도 계속 지불된다.
- b) 권리자가 상당한 정도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남에게 불리하게 자기입장을 남용하였다면 1990.6.28. 제정된 연금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청구권과 승계권이 감축될 수 있다.

6. 1983.6. 제정된 국가기관에 있어 발레단원의 직업상 보조금 보장에 관한령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
 - a) 본령은 1991.12.31.까지 적용한다.
 - b) 1991.12.31.까지의 시기에 있어 요금계약이나 사업합의를 통해 본령과 상위하게 정할 수 있다.
7. 1947.1.28. 제정된 사회보험에 있어서 임의 및 추가보험에 관한 법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제1조와 제7조는 효력이 있다.
 - b) 1991.1.1.부터는 18.7%의 보험율이 유효하고 최소 보험금 안정근거로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유효한 금액의 7분의 1이 효력이 있다.
 - c) a)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회보험의 임의 및 추가보험에 관한 신규정에 관한 1953.7.6. 제정된 제1차 시행령 제2조, 제3조와 제10조가 유효하다.
8. 1968.3.15. 제정된 사회보험에 있어서 추가연금의 임의보험에 관한령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a) 현재의 보험은 계속 시행될 수 있다.
 - b) 본령 적용의 1968.3.15. 제정된 제1차 시행규정과 1977.12.17. 제정된 사회보험의 임의 및 추가 연금보험에 관한령 제39조 제2항이 고려될 수 있다.
9. 특별 공급체계와 보조 공급체계를 위한 규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a) 아직 체결되지 않은 공급체계는 1991.12.31.까지 체결될 수 있다.
새로운 고려는 1990.10.3.부터 허용되지 않는다. 이 보험계약에서 다른 결과를 이끌 수 없는 한 체결되기 까지 보험규정과 보험금 법적 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사회보험의 일반규정에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
 - b) 청구권과 계승에 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생계능력의 감소와 노령 및 사망으로 인해 급부의 청구권과 승계권이 1991.12.31. 까지는

연금보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변형이 있기까지 이 계약에서 특히 차후 규정에서 다른 것이 이끌어 지지 않는한 해당 공급체계의 이행 법적 규정이 적용된다. 청구권과 승계권이 이미 변화 되거나 해당 공급체계가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1. 청구권과 승계권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적용될 때 사회보험의 일반 규정에 따른 계승권과 청구권은 그 종류, 이유, 범위에 따라 해당 금액 액지불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한 급부를 폐지하고 과잉급부를 삭감하며 다른 공적 공급 체계에서의 계승권과 청구권에 대한 개선점을 이룰 수 없다.
2. 권리자가 인간성이나 법치국가적 원칙에 위반하거나 현저한 정도로 그의 입장을 유리하게 또는 남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남용했다면 청구권은 삭감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1990.10.3. 급부권이 있는 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1990.7월에 사회보험과 공급체계에서 이끌어졌던 지불액은 제3문의 1번의 적용시에 미달될 수 없다. 1990.10.4. 부터 1995.6.30.까지의 시기에 급부권이 있는 자에게 있어 1990.7월에 사회보험과 공급체계에서 지불될 수도 있었던 지불액이 제3문 제1번의 적용시 1990.7.1.에 공급이 시작된 경우 미달될 수 없다.

- c) 공급체계는 청구권과 승계권의 변경이 있을 때까지 연금보험으로 계속 이끌 수 있다. 조약 제13조에 따른 해당 기능승계자가 책임을 갖는다. 기능 승계자는 아직 체결되지 않은 공급체계를 체결하고 청구권과 계승권의 변경은 연금보험으로 관철된다.
- d) 공급체계의 경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 및 수입이 청구권과 승계권의 변경이전에 연금보험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는한 필요한 방법이 해당 기능 승계인에 의해 이끌어지게 된다. 청구권, 승계권의 변경에 의해 연금보험에 발생한 여러 비용은 연방 정부가 보상한다. 제2문에 따른 연방의 비용은 다른 기능 승계인에 의해 연방에 보상된다. 연방 스스로가 기능 승계인이 아닌한 비용의 산정이 개별 기능 승계인에게 불가능 하다면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지역을 통해 그의 주민 수에 따른 비율로 보상이 행해진다.

- e) 특별 노령 연령이나 일정한 복무기간에 도달시 조기 퇴직을 근거하는 공급 체계에 포함된 공급 급부에 관한 규정은 1990.12.31.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공급 급부 청구권은 1990.10.3. 공급 급부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1990.12.31.까지 퇴직할 자만이 갖는다.
- b)항 제2문과 제3문은 적절히 유효하다. 공급 급부는 b)항 제1문에 따라 청구권과 승계권의 변경 후 연금보험에서 지불되고 곧 b)항 제3문에 따른 조치를 수행케 한다. 관리비를 포함한 지불에 의하여 연금 보험에 발생한 여러비용은 연방에 의하여 보상된다; b)항 제3문과 제4문은 적절히 효력이 있다.
- f) 연방정부는 상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을 통해 제a)항부터 제e)항까지에 따른 상세한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다.

업무영역 I : 법정사고보험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73.4.11. 제정되고, 1977.9.22. 개정된 사회·문화스포츠 행사시의 사고에 대한 보험보장의 확대에 관한 령은 광범한 보험보장이 제2조에 정한 행위에 제한되고 있는 기준으로서 1991.12.31.까지 효력을 갖는다.
2. 1958.1.14. 제9차 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된 1957.1.2. 사회의무보험에 관한 령의 제8차 시행령은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3. 1977.12.9. 제정되고, 1990.6.28. 개정된 동독국가보험에 있어 사회보험에 관한 령 제1차 시행령 제24조는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4.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개정된 동독 노동법전 제220조와 제221조는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5. 1981.2.26. 제정된 직업병의 예방, 신고 및 감정에 관한 령과 1981.4.

21. 제정된 직업병의 예방, 신고 및 감정에 관한 령의 제1차 시행령은 1991.12.31.까지 효력이 있다.

업무영역 K : 사회적 보상법과 재활
(해당없음)

업무영역 L : 재산형성촉진
(해당없음)

제 Ⅸ 장 연방국방장관 업무영역

공무관계 인사법과 군인법 제 XIX 장을 보시오.

제 X 장 연방 청소년 가정 여성 보건장관의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여성정책

제 Ⅲ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의 노동법전의 개정 및 보충을 위한 법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의 노동법전 제242조의 제1항과 제248조와 제249조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2. 1990.6.28. 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 제24조는 위 1번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3. 1973.8.9. 제정된 노동보험령 5 - 부녀자 및 청소년 근로보호 - 은 특히 임신부와 안정을 요하는 경우 위 1번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4.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사회법전의 개정 및 보충을 위한 법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의 노동법전 제244조와 제245조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 a) 본 규정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고 이 시점을 지나 1991.1.1.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유효하다.
 - b) 평균 임금과 순수평균 수입은 1961.12.21. 제정되고 1982.3.25.의 봉급 명령에 의거해 개정된 임금지불과 평균수입의 산정에 관한령과 1977.12.17. 제정된 근로자와 종업원등 사회 의무 보험을 위한령 제 69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산정 한다.
5. 1990.6.28. 제정된 사회 보험에 관한법 제25조 제1항 b), 제71조 b는 위 제4번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6. 1977.11.17. 제정되고 1990.6.28.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제정된 노동자, 종업원의 사회 의무 보험령 제44조와 제45조는 제4번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7. 1977.11.17. 제정되고, 1990.6.28.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노동자, 종업원의 사회보험령 제1차 시행령 제15조는 위 제4번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8. 1977.11.17. 제정되고, 1990.6.28.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 국가보험에 있어서 사회보험령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는 위 제4번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9. 1977.12.9. 제정되고, 1990.6.28.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 국가보험에 있어서 사회 보험에 관한 령의 제1차 시행령 제42조는 위 제4번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0. 1950.9.27. 제정되고, 1958.5.28. 개정된 여성의 권리와 모자 보전에 관한 법 제2조 제2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본 규정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으며 이 시점을 넘어 1991.1.1.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다.

11. 1953.2.10. 제정된 여성의 권리와 모자보건에 관한 법 제1차 시행령은 위 제10번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12. 1954.3.1. 제정된 여성의 권리와 모자보건에 관한 법 제2차 시행령은 위 제10번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업무영역 B : 청소년

제 i 절

다음의 동독법은 효력이 있다 :

1. “민주적 젊음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1990.5.29. 제정된 청소년과 스포츠를 위한 부서의 부령
2.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령의 1966.1.5. 제정된 제1차 시행령
3. 통일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제도법의 1968.12.20. 제정된 제4차 시행령 제2조
4. 학생 영양 급식과 아동 급식에 관한 1975.10.16. 령과 그 시행령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984.12.17. 제8차 시행령으로 개정된 1981.12.29. 제정된 청소년 보조금령 제6차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음 조치에 따른다.
여기서 정한 요양 수당 금액은 최소 금액으로 본다.

업무영역 D : 보건정책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제13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중앙환각제 사무소의 변경 또는 청산이 있기까지 1979.1.28. 제정한 보건사회부의 중앙마약단속반령
2. 1974.1.28. 제정된 마약단속법 제1차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5문, 제16조 제1항 제4문과 제3항 제2문은 통일후 3년간 효력이 있다.
3. 1974.1.28. 제정되고, 1989.4.27. 마약법 제6차 시행령에 의거해 개정된 제2차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1991.6.30.까지, 이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문과 제2문은 1991.12.31.까지, 동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문, 제8조, 제10조 제2항 제5문과 제7조 제3항은 통일후 3년이 경과되기까지, 동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이의 제기가 있기까지 효력이 있다.
4. 1974.1.28. 제정된 마약단속법 제3차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2문, 제9조 제3문, 제15조 제2항 제2문, 제3항 제3문, 제16조 제3항 제3문과 제4항 제2문, 제21조 제1항 제2문 및 제3항 제2문은 통일 후 3년이 경과되기까지 효력이 있다.
5. 1983.1.21. 제정되고 1989.4.27. 마약단속법 제6차 시행령에 의거해 개정된 마약 단속법 제5차 시행령의 부록I 제II부 A절 b)항 제4번 부터 제6번까지와 관련한 제1조와 제3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시행되어진 조치는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1991.12.31.까지 소비되며 이제까지 쓰여진 것처럼 약국에 의해 교부될 수 있다.
6. 1987.1.28. 제정된 의학 조치에 따른 건강피해에 있어 시민을 위한 광범한 물질적 보조에 관한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본 령은 통일이전에 시행되어 졌던 의학조치에 따른 손해에도 소급적용

한다. 계속 급부로서 승인된 보상급부는 계속 보장된다. 보상급부의 지급은 관할 주관청을 통해 실행된다.

7. 1983.9.12. 의과대학과정 및 구강의 과정 입학전 사전 실습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전 실습시행령에 관한 대학 및 전문대학 장관과 보건 장관의 공동지침은 통일시점에서 사전실습을 마친 자만을 대학에 입학시킨다.
8. 1976.9.10. 제정되고, 1977.6.30. 개정된 국립예방 의학과 의과대학 제6학년(인턴과정)의 병원 실습 시행 지침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제 6조부터 제8조까지는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업무영역 H : 가정과 사회

제 i 절

아래의 동독법은 효력이 있다 :

1. 1988.5.19. 제정된 생계보장령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77.6.16. 제정되고, 1990.6.22. 노동법전의 변경 및 보충을 위한 법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 노동법전 제 246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이규정은 1991.1.1.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게 1991.1.1. 부터 적용할 수 있다.
 - b) 이규정은 1993.12.31. 까지 유효하다.
 - c) 평균임금과 순수평균급여는 1991.12.21. 제정되고, 1982.3.25.개정된

- 평균급여의 산정과 임금지불에 관한 령과 1977.11.17. 제정되고 1990.6.28. 법규 명령의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노동자, 종업원의 사회의무보험을 위한 령 제67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선정된다.
2. 1977.11.17. 제정되고, 1990.6.28. 법규명령의 폐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노동자와 계약사무직 종사자의 사회의무보험을 위한 령 제26조,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는 제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1977.12.9. 제정되고, 1990.6.28. 개정된 동독 국가보험에 있어서 사회보험에 관한 법령 제45조,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는 제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1984.5.24. 제정된 세번째 자녀 및 2 이상 자녀의 출생시 산후 조리와 3 자녀 이상의 기혼 직장여성이 자녀가 아플때 이를 돌보기 위한 규정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1번의 기준에 따른다.(* 독일에서는 6세미만의 자녀가 아플때에는 부모 모두가 법저휴가일수 외에 월 3일까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1986.4.24. 제정되고, 1990.6.28. 규정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령 제 11조를 최종 개정한 유자녀 가정의 생활 조건과 노동조건의 계속 향상에 관한 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제11조는 위 제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1972.5.10. 제정된 주간휴가의 연장과 국가의 출생 보조금 인상에 관한 령은 제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1990.6.28. 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제1f문, 제2문, 제71e조는 제1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8. 1986.4.24. 제정된 중증장애자녀 가정의 특별보조에 관한 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9. 1990.6.28. 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법 제71조 f)와 g)항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10. 1979.11.23. 제정되고, 1990.6.21. 사회보조금법에 의거해 개정된 사회보조금령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11. 1990.6.21. 제정된 사회보조금 청구에 관한 법(사회보조금법)은 위 제 10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12. 1990.6.21. 제정된 사회보조금 청구에 관한 법 제1차 시행령은 위 제 10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13. 1990.6.21. 제정된 사회보조금 청구에 관한 법 제2차 시행령은 위 제 10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14. 1990.6.21. 제정된 사회보조금 청구에 관한 법 제3차 시행령은 위 제 10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15. 1980.4.17. 제정된 장래 및 묘지에 관한 령 제12조는 1994.12.31.까지 효력이 있다.
16. 1978.3.1. 제정된 일과후 휴식처와 요양소에 관한 령 제6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17. 1990.6.19. 제정된 보건소의 외래 진료와 병동의 재정 지원을 위한 사회 보험관리의 행정소장 및 보건 장관의 지침은 1990.12.31.까지 유효하다.

제 XI 장 연방교통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철도교통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 국가 철도감독에 관한 1976.1.22. 제정된 령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폐지와 개정에 관한 관할권은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에게 있다.
2. 연결접속철도의 건설과 경영에 관한 1982.5.13. 제정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가 폐지와 재정에 대하여 관할한다.

3. 1979.2.15. 제정된 개척철도를 위한 건설과 경영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가 폐지와 개정에 대하여 관할 한다.
4. 동독철도 및 국가철도 감독청에 따르는 철도산물에 대한 질확정에 관한 1979.1.5. 제정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연방교통장관이 이 령을 폐지할 권한이 있다.
5. (동독철도청) 1969.11.20. 제정된 근로보호령 351/2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연방교통장관이 이 령을 폐지할 권한이 있다.
6. (동독철도청이 관리하지 않는 철도로서) 1965.1.6. 제정한 근로보호령 352/1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가 폐지와 개정에 대하여 관할한다.
7. 1974.7.4. 제정되고, 1984.8.7. 령 제2번을 최종 개정된 접속 철도와 동독철도 사이의 법률 관계 규정에 관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연방교통장관이 이 령을 폐지할 권한이 있다.
8. 1967.5.8. 제정되고, 1981.12.18. 개정된 철도 건설 및 경영령 제3조에 언급된 위치에 허가한 경우 계속 유효하다.
9. 협궤 철도 건설 및 경영령에 관한 1943.6.25. 제정된 령은 1972.2.25. 제정되고 1983.11.21. 개정된 협궤 철도 건설 및 경영령 제3조에 언급된 위치에 허가된 경우 계속 유효하다.
10. 1949.3.9. 제정된 독일경제위원회에 의한 대중교통으로서 동독철도청의 관할이 아닌 철도의 경영인수에 관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연방교통장관은 본 령을 폐지할 권한이 있다.

업무영역 B : 도로교통

제 iv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의 기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90.6.20. 제정된 화물차량 교통에 관한 명령 쟁4조 제2항, 제14조 제

1항 제1번, 제45조 제1항 제4번, 제70조 제1항과 제3항, 제71조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

- a) 제4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제1번, 제45조 제1항 제4번은 1992.12.31.까지 유효하다.
 - b) 제70조 제2항, 제3항의 “1990.10.31.”은 “1990.12.31.”로 수정한다.
 - c) 제70조 제1항 제3문의 “1990.7.31.까지”는 삭제한다.
 - d) 제71조의 “1990.9.30.”은 “1990.12.31.”로 수정한다.
2. 1990.8.16. 제정된 화물차량교통에 관한 령 제10조 제1항의 시행령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연방교통장관은 1983.3.10. 제정 공포되고, 1990.6.28. 개정된 화물차량교통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규 최고 지불확정이 있을 때까지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법규명령을 통해 공공교통수요와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잠정적 최고 지불액을 확정할 권한을 갖는다.

3. 택시와 대여차량교통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한 1990.6.20. 제정된 영업용 인력수송교통에 관한 령 제2조 g)항, 제7조와 제11조의 규정 및 제11조 제2항은 1992.12.31.까지 효력이 있다.

4. 1977.5.26. 제정되고, 1986.9.9. 제5차 령에 의거 개정된 도로 교통령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 a) 본 령은 1990.12.31.까지 계속 유효하다.
- b) 제4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제7조 제2항은 1990.12.31.이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 c) 1970.11.16. 제정되고, 1986.11.9. 령에 의거 개정된 도로교통령 제3조 제2번 a)와 c)에 기재된 화물차량에도 제12조 2항 b)가 1992.12.31.까지 유효하다.
- d) 제12조 b항 c)는 승용차와 2.8t까지의 화물차량에도 1991.12.31.까지 유효하다.
- e) 교통안전표지판 2. 표식 215호(유턴금지), 표식 419호, 421호, 422호 등은 현재의 의미를 계속 갖는다.
- f) a)항부터 d)항에 정한 규정에 반한 위반행위, 표식 215호에 정한 금

지 및 표식 422호에 정한 제한에 반한 위반행위는 연방관보 제Ⅲ부 목록 9231-1호로 공포되고, 1987.1.28.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의 의미상 법규 위반과 동일하다.

5. 1981.11.26. 제정된 도로교통 허가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차량번호판, 운행허가증, 차량문서에 관한 규정은 1993.12.31.까지 유효하다.
 - b) 이미 수여한 일반운행허가의 연장을 위한 규정은 1991.12.31.까지 유효하다.
 - c) 이미 수여한 일반운행허가의 차후추인을 위한 규정은 해당 운행허가증의 효력이 경과할 때까지, 최장기간의 경우 1994.6.30.까지 계속 유효하다.
6. 1982.5.29. 제정된 도로 교통 허가규정 제1차 시행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차량번호판, 운행허가증, 차량문서에 관한 규정은 1993.12.31.까지 유효하다.
7. 1990.5.30. 제정된 차량 교통을 위한 관청 승인 검사에 관한령은 1990.3.31.까지 유효하다.

업무영역 C : 독일국내 내수로 선박운행과 운하

제 Ⅲ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 1984.2.15. 제정된 령 제2번의 국내내수로 운행규정에 관한 1977.12.21. 정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본 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주법으로 본다.
2. 1990.3.30. 제정된 령 제2번의 국내내수로 운행규정에 관한 1989.5.5.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계속 효력은 오더강과 나이세간의 경계수에 관계된다.

업무영역 D : 도로공사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 공공도로에 관한 1974.8.22. 제정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본 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주법으로 본다.
2. 1974.8.22. 제정된 도로 교통 규정의 제1차 시행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가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
3. 1984.5.14. 제정된 도로 교통 규정의 제2차 시행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주가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

업무영역 E : 일반교통규정

제 iii 절

다음 동독법은 아래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 위험물 안전수송의 보장을 위한 1988.7.21. 제정된 령은 1991.6.30.까지 유효하다.
2. 1988.7.21. 제정된 위험물 안전수송 보장을 위한 규정 제1차 시행령은 1991.6.30.까지 효력이 있다.
3. 위험물 안전수송보장을 위한 령을 위해 1988.7.21. 제정된 제2차 시행령은 1991.6.30.까지 효력이 있다.
4. 1988.7.21. 제정된 위험물 안전수송보장에 대한 제3차 시행령은 1991.6.30.까지 효력이 있다.

5. 1979.1.30. 제정된 위험물 운송규정은 1991.6.30.까지 유효하다.
6. 1987.6.4. 제정된 위험물 항구 적재와 해상운송에 관한 령은 1991.6.30.까지 유효하다.
7. 1979.2.13. 제정된 위험물 항공수송에 관한 령은 1991.6.30.까지 유효하다.
8. 1984.1.5. 제정된 승객운송 규정에 공공운송 수단으로 위험물 지참에 관한 1979.2.27. 령은 1991.6.30.까지 유효하다.

제 XII 장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로 안전장관 업무영역

제 III 절

1. 1990.6.29. 제정된 환경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아래의 규정들은 계속 유효하다 :

- a) 아래항목에 관련된 제1항목 제2조 제1항
 - aa) 부록 I 의 제1항목
 - aaa) 제1번 f) aa) : 소음령 제1차 관리규정
 - bbb) 제1번 f) bb) : 소음령 제2차 관리규정
 - ccc) 제1번 h) : 연방환경공해보호법의 제1차 관리규정
 - ddd) 제1번 i) : 영업령 제16조에 따른 추인에 필요한 부록에 관한 일반관리규정
 - eee) 2번 c) : 1985.11.6. 제정된 휘발유 품질표시령 시행을 위한 일반관리규정
 - bb) 제1항목 부록 II 제7번과 제8번

- b) 제1항목 제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영업목적으로 근무하거나 경제적 기업의 영역에서 사용을 하는 취득자는 1990.7.1. 이전에 시설 경영을 통해 야기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관할 관청이 상급지방관청과 협의하여 책임을 면책한다면 이는 취득자의 이익과 일반적 환경보호를 고려한 면책이다. 면책 신

청은 늦어도 1991.12.31.까지 행하여 한다. 사법적 청구권을 근거하는 책임은 변동이 없다.

- c) 제2조 제6번과 제7번에 따른 부록1과 관련하여 제2항목 제2조 제2항 제1문.
 - d) 제3항목 제3번의 부록1과 관련한 제3항목 제2조 제1항 제1번
 - e) 제4항목
 - aa) 제4항목 제4번의 부록1과 관련한 제2조 제1번
 - bb) 제4항목 제3번의 부록2와 관련한 제2조 제2번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본 지시의 제9번과 제10번에 정한 기간은 1년 연장한다.
 - f) 위에 개정된 원칙으로 제1항목 제4조 제3항에 관련한 제4항목 제3조
2. 1984.10.11. 제정된 원자력, 방사능 보호의 안전에 관한 규정의 시행령과 함께 1984.10.11. 제정된 원자력, 방사능 보호의 안전에 관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방사능 물질 특히 방사능 산출물이 적용되는 한 본 규정은 광산 및 다른 행위에도 유효하다. 다음 규정에 정한 원자력, 방사능 보호 안전을 위한 국립기관과 이 기관의 장 대신에 관할 관청이 관장한다.
- 3. 1980.11.17. 제정된 저장물질 사용 및 공업적 침전시설에 있어서 방사능 보호의 안전을 위한 령은 위 제2번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4. 1984.2.2. 제정되고, 1987.6.1. 령 2호에 의거해 개정된 하수처리보상에 관한 령은 1990.12.31.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X III 장 연방 체신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B : 우편제도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개준으로 효력이 있다 :

1. 1986.2.28. 제정되고 1990.6.20. 우편업무에 관한 령 2호에 의거해 개정된 우편업무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제5조 제4항부터 제7조까지와 제32조 제2항은 폐지된다.
 - b) 제3조와 제4조에 해당된 허용조건은 1981.9.9. 제정되고 1988.10.17. 개정된 우편 신문령의 전제조건을 능가할 수 없다.
2. 1986.2.28. 제정되고, 1990.6.20. 우편환 업무에 관한 령 제2호에 의거해 개정된 우편환 업무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제4조, 제5조와 제14조는 폐지된다.
3. 1986.2.28. 제정되고, 1990.6.20.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령 제2호에 의거해 개정된 우편대체업무령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제4조 제3항과 제16조는 폐지된다.
4. 1983.10.31. 제정되고, 1990.6.20. 우편저축 업무에 관한 령 제2호에 의거해 개정된 우편저축업무령은 다음기준에 따른다 :

제2조 제3항과 제13조는 폐지된다.

업무영역 C : 전신·전화 제도

제 i 절

다음의 동독법은 효력이 있다 :

1. 1986.2.28. 제정되고 1990.6.20. 전보업무에 관한 령 제2호에 의거해 개정된 전보업무령

제 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 1986.2.28. 제정되고 1990.6.20. 전화업무에 관한 령 제2호에 의거해 개정된 전화 업무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제8조 제3항 제2문의 “지역자문위원회의 조정 후”는 삭제된다.
 - b) 제11조의 “지역위원회와 공동효력으로”는 삭제된다.
2. 1986.2.28. 제정되고, 1990.4.23. 텔렉스업무에 관한 령 제2호에 의거해 개정된 텔렉스 업무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제6조 제1항의 “이 미 텔렉스- 참여관계에 있는 기업과 국가기관을 통해”는 삭제한다.
3. 1986.2.28. 제정된 비공공 전화통화와 양도이유의 이양을 위한 전화 국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추인의 부여를 그 대상으로 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1986.2.28. 제정된 라디오와 TV 방송의 청취자, 시청자의 설비 생산 촉진 변경에 관한 령 제3조부터 제16조 제2항 a), 제5항부터 7항까지와 부록Ⅱ 제ii절, 제iii절은 1991.12.31.까지 효력이 있고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 a) 1990.8.15. 제정된 동독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 aa) 1990.10.1. 부터 라디오 TV의 청취료, 시청료를 인상한다.
 - 라디오 방송은 2DM에서 4마르크로
 - TV 제1방송은 5마르크에서 9마르크로
 - TV 제2방송은 3마르크에서 6마르크로
 - bb) 다음과 같은 사회적 이유로 관할 우체국에 신청하여 시청료 면제를 받는다 :
 - 매월 500마르크 이하의 수입을 갖는자는 시청료 면제
 - 사회보조금, 연금, 명예퇴직수당, 실업자 수당을 받는 자는 그 수입이 월 750마르크 이하 일때 시청료 면제
 - 중증장애자 등급 3부터 2이상의 등급자에겐 시청료 면제 - 독신자 월간 수입이 1000마르크 이하인 경우 독신자는 월간 10마르크를 지불한다.
 - cc) 1991.1.1.부터 시청료는 서독법의 해석에 따라 6마르크의 기본료와 13마르크의 TV-시청료로 구성된다. 이때부터 시청료는 4/4

분기로 징수된다.

- b) 독일 연방 우편국에 발생한 비용은 시청료 납입자에 의해 보상된다.

제 XIV 장

연방 공간질서 건축 시가조성장관 업무영역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990.7.22. 지역 및 동업조합 공동 가옥의 할당권 보장에 관한 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이 가옥이 개인 소유권자에게 소급 양도될 수 없는 경우 1990.9.1. 기준으로 국유자산으로 본다.
- b) 다른 규정이 없는한 1995.12.31. 본법의 효력은 상실한다.
- c) 제17조 제1항의 최저부담 1000마르크는 철폐 된다.

제 XV 장

연방 연구 기술장관 업무영역

제 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폐지된다 :

1. 1990.6.27. 제정된 동독 학술아카데미 계속 활동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1990.6.27. 제정된 동독 학술아카데미령
2. 1990.6.27. 제정된 동독 연구위원회 지위에 관한 결정
3. 1989.12.21. 제정된 근로기초로서 학술과 기술부의 지위에 관한 결정 조례

4. 1985.12.21. 제정된 산학협동 특히 연구협동의 재정지원, 종합 대학과 단과대학 또는 동독 학술아카데미(학술원)에서 연구의 재정지원과 계획에 관한 령
5. 1985.9.12. 제정된 대학과 학술아카데미 설비를 갖는 산업과 협동적인 경제관계의 유지를 위한 원칙의 결정
6. 1972.11.1. 제정된 실험실과 실험실 건축의 이용 설비 계획에 관한 령
7. 1990.3.6. 제정된 상여금이 지불되는 학술과 기술분야에 있어서 급여에 관한 령
8. 1990.3.2. 제정된 학술과 기술분야에 있어서 법규 폐지에 관한 령
9. 1989.12.29. 제정된 연구·개발 과제의 의무 책자에 관한 령
10. 1988.3.28. 제정된 바르샤바 동맹국 경제위원회의 회원국가의 국제자 동화 정보교환 참여에 관한 령
11. 1927. 1.8. 제정된 소련과 학술·기술적 협동에 있어서 모델 계약 적용의 확정에 관한 명령
12. 1986.12.19. 제정된 학술·기술적 진보 조치의 효과와 이용의 조사, 계획 및 증명절차에 통일적 접근을 위한 원칙 규정
13. 1986.11.11. 제정된 동독과 소련사이의 학술과 기술적 협동의 일반약관에 관한 규정
14. 1979.6.20. 제정된 학술과 기술연구결과에 관한 정보보급령
15. 1974.5.7. 제정된 학술과 기술을 위한 정보 설비의 등록 의무령
16. 1972.4.5. 제정된 “국민경제의 실현과 계획을 위한 학문과 기술에 관한 정보규정”과 관련된 령

제 XVI 장

연방 교육 학술장관 업무영역

업무영역 A : 직업교육촉진(장려금)

제 iii 절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의 기준을 갖고 효력이 있다 :

1. 1981.6.11. 제정된 국민교육의 범위에 있어 특수학교와 확대된 일반 공예 상급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보조금령
2. 1981.6.11. 제정되고, 1985.7.16. 유자녀 대학생과 직업 교육생의 지원 확대에 관한 령에 의거해 개정된 동독 소재 대학, 전문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령.
3. 1990.6.20. 제정된 대학과 전문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령.
4. 1990.8.17. 제정된 대학과 전문학교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제2차 령.
5. 1982.6.16. 제정된 동독외교관 시민이 다른 국가에서 교육 및 재교육을 받기 위해 장학금 지급에 관한 명령과
6. 1990.8.14. 제정된 직업학교 청소년을 위해 1년 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한 령 제6조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상기 규정들은 1990.12.31.까지 적용할 수 있다.

업무영역 B : 직업교육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990.3.15 제정된 보수인상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본령은 직업교육에 있어서 임금계약 규정이 관련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제 XVII 장

(해당없음)

특수 부문
제 XVIII 장
통 계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효력이 있다 :

1990.7.20 제정된 동독 통계법 제6조 제2항은 늦어도 1991.6.30 까지 본 조약 부록 I 제 XVIII 장 제ii절 제2조를 고려하여 연방 통계법으로 통일 후 본 법에 언급된 다음 사안을 종결되어야 한다 :

1. 1990년도 추진 사업

- 직업활동 향상
- 수공업 생산 비용 체계의 합리화
- 비용구조 통계- 직무능력
- 가축 비축과 그 재생산물
- 농업농장에 있어서 비용체계의 합양

2. 1990년도의 제4분기 추진사업

- 국가재정 통계(계속적인 경제산정)
- 노동인력, 소득, 노동시간 증가
- 생산의 총체적 향상
- 산업비용체제 합양
- 완공된 가옥의 정산
- 건축업과 교통의 비용체계의 합양
- 국내상업과 외래영업의 비용구조 통계
- 총체설비투자
- 동식물 상품의 시장거래
- 영농기업의 재정 증액

제 X IX 장
공무원계 인사법과 군인법

업무영역 A : 계약공무원법

제 iii 절

* 다음의 동독법은 아래와 같은 조치로 유효하다.

1. 1990.7.22. 제정된 연방인사대표법 적용을 위한 법 - 인사대표법은 부록 I 제 X IX 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5번에 따른다.
2. 1990.7.22. 제정된 연방 인사 대표법의 적용을 위한 법률중 선거규정 - 인사대표선거법 - 은 부록 I 제 X IX 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6번에 따른다.

업무영역 B : 군인법

제 iii 절

아래의 동독법은 계속 유효하다 :

1. 1990.2.8. 제정한 1990년 전반기의 복무와 복무면제를 위한 검열 및 소집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1982.3.25. 제정된 군인복무법 제29조 제1항 제1문과 제30조 제1항 및 제4항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이규정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동독군인 일원으로서 독일통일의 효력발생 시점에 기본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무 의무자에게도 적용한다.
2. 1982.10.12. 제정되고, 1990.8.15. 개정된 동독군인의 급료규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연방정부는 1992.9.30.까지 상원 위원회의 동의없이 법령에 의해 다

공무직 규정과 관련해 급부를 적절히 조사하고 새롭게 확정할 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1992.9.30 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공무상 유효한 규정에 적절히 법령을 통해 급료를 책정할 권 권한을 갖는다(군인복무의 면제와 관련한 과도적 지급규정은 계속적인 효력에서 제외됨).

- b. 제901절과 제912절을 바탕으로 군복무 종료와 관련된 일회성 수당지급 규정은 1990.12.31.까지 적용한다. 부록 I 제 X IX장 업무영역 B 제iii절 제2번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대기보조금 또는 경과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일회성 지급으로 계산한다. 제901절, 제922절, 제923절과 관련한 경과기금지불은 중단한다.
3. 1990.4.12 제정된 휴가규정에 근거한 동독女軍의 모자보전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본 모자보전령은 1990.12.31.까지 효력이 있다.
4. 1990.6.24. 제정된 군인부식급여령과 관련한 1982.3.25. 제정된 군인복무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이는 동독의 부대에 소집된 군인과 일정기간복무한 의무복무군인에게 지불하는 부식비 결정에도 유효하다. 이 규정은 제 I 부 제 X IX장 군인법 제 ii절 제2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정한 인사에게도 적용한다.

빈 면

부 록 Ⅲ

공공자산 규칙을 위한 양독 정부간의 공동성명서

1990. 6. 15

독일의 분단과 이로 말미암은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국민의 이주를 야기하고 또 두개의 독일국간 서로 다른 법규를 지님으로서 서독에 또는 동독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관련된 수많은 재산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재산관계의 해결시 두 독일정부가 서로 상이한 이해를 사회 계약상으로 조정해야한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 법규의 명확성과 소유권의 보호원칙을 두나라 정부는 재산문제의 해결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래 독일국가에 합법적 평화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독일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

1. 점령법적 혹은 점령주권적 근거에 따른 몰수는 더이상 방지될 수 없다. 동독 정부와 소련정부는 이전에 취한 조치를 검열할 수 없다. 서독 정부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려해 이를 인지한다. 서독 정부는 장래 통일 의회가 국가적 조정과정에 관한 최종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2. 토지소유권, 영업기업 및 그밖의 재산에 관한 신탁관리 및 처분제한과 함께 이와 유사한 조치는 철폐한다. 이로써 동독에서 탈주했기 때문 또는 다른 이유로 그의 재산이 국가관리로 이관된 시민들이 자

기 소유 권의 처분권을 되찾을 수 있다.

3. 공용징수된 토지는 원칙상 a)항과 b)항에 정한 경우를 고려하여 옛 날의 소유권이나 그 상속권이 환원된다.
 - a)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특히 공동 사용화 되어 비용의 종류나 목적 규정이 변경되고 복합적 가옥이나 집단 거주 건축물로 이용되며 공업상 용익에 사용되거나 신기업에 접수된 소유권의 소급 양도는 그 대상의 특성상(양도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미 동독시민에게 유효한 규정에 따라 보상되지 않았다면 보상해야 한다.
 - b) 반환하게 될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물권적 용익권을 동독국민이 구 두상으로 취득하였다면 전 소유자에게 상응하나 가치를 갖는 토지를 교환하든가 보상하는 방법으로 사회계약적인 조정을 한다. 이는 국영수탁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에도 적용한다. 개별적인 문제는 소송을 필요로 한다.
 - c) 반환청구권이 전소유자나 그의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 하는대신에 보상을 할 수 있다. 가치변경을 조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규정한다.
4. 위 제3번의 규정은 국가 경제 운영상 강요에 의해 국유화된 부동산으로 관리자 스스로 관리하거나 또는 관리를 위임한 가옥(부동산)에도 적용된다.
5. 동독국민의 임차인 보호와 그 보호를 받는 토지와 건물의 용익권은 현행대로 유지, 보장되며 동독의 현행법에 따라 정해진다.
6. 관리기업의 현존 처분 제한이 철폐된다: 소유자가 자기의 기업 재산을 소유한다.

사기업의 창립과 운영 및 기업 참여에 관한 1990.3.7. 제정된 법은 1972.국유재산으로 전환된 기업과 그 관련 자본에도 적용한다. 여기서 동 법 제19조 제2항 제4문은 신청에 의해 국가의 소유지분을 개인회사에 매 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매각결정은 관할권청의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7. 1949년부터 1972년 사이에 압류처분으로 국유화된 기업과 관련자본은 소유자가 어떤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기업전체 또는 주식이나 지분으로서 기업의 가치상승을 고려하여 원소유자에게 양도된다. 개별적인 문제를 위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정한다.
8. 권한남용, 부정행위 취득자의 사기나 강탈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용익권 및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런 권리 취득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취소할 수 있다. 권리를 구두상 취득했다면 위 제3)번 b)항을 적용 한다.
10. 구재산청산 공채에 대한 동독 국민의 지분권은 그 이자를 포함해— 화폐 개혁 이후에도— 1990년 후반기에도 지속된다.
11. 지불거래에 있어 외환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화폐 통합 및 경제와 사회의 통합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이 제한이 철폐된다.
12. 동독령에 있었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서 권리자 청산법을 근거로 동독관청이 신탁상 관리하고 있는 공법상 법인 재산은 권리자나 그의 권리 승계인에게 양도된다.
13. 청산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한다 :
 - a) 동독정부는 필요한 법규와 절차규정을 즉시 정한다.
 - b) 동독정부는 해당국민이 그의 청구권을 신청할 장소와 신청기간을 공고한다. 신청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 c) 보상청구권을 변제하기 위해 동독 정부는 국가 예산과 별도로 법률상 독자적인 보상기금을 마련한다.
 - d) 반환을 고려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양해하지 않았다면 동독정부는 위 제13번 b)항의 신청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토지와 가옥의 매각이 행해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전소 유권이 불명확 하지만 1989.10.18. 이후에 소유관계가 밝혀진 토지와 가옥은 그 양도를 다시 조사한다.
14. 양독일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한다.

빈 면

양독일이 독일통일 회복을 위하여 1990.8.31. 베를린에서 서명한 통일조약의 실행과 해석에 관한 합의서

서독과 동독은 독일통일회복을 위한 양독간의 1990.8.31. 베를린에서 체결한 조약-통일조약-의 실행과 해석을 의지에 따라 보존하며, 통일조약 제19조 제3항의 충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의 체결에 합의한다 :

제 1 조

전 동독의 국가안전부(Staatssicherheitsdienst)에 의하여 수집된 인사정보의 관점에서 계속 발생할 문제를 위하여 양국정부는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1. 양독정부는 1990.8.24. 국민의회에서 가결한 국가안전을 위한 국가안전부/청의 인사관련 정보의 보안과 사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과 같은 기본원리를 통일독일 입법부가 포괄적으로 참고할 것을 기대한다.
2. 국가안전을 위한 전 국가안전부/청(Ministerium fuer Staatssicherheit /Amt)활동의 정치적 역사적 그리고 법률적 종료를 보증 하도록 통일독일 입법부가 위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출할 것을 기대한다.
3. 이 전제조건은 다음 사항간의 적절한 보전으로 창출할 수 있다 :
 - 정치적, 역사적, 법률적 정지
 - 관련자의 개인권리의 보호
 - 관련자 개인 정보의 불법사용에 앞선 개별적으로 가시화된 보호
4. 통일조약 제11조에 언급된 주들로 부터 임명된 수임자는 특별 수임자로하여금 구동독의 신5개주의 주민들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자신의 법적 임무 충족에 대한 조언과 보호를 해줄것을 기대한다.
5. 양독정부는 중앙행정예 의하여 문서의 사용, 수집 및 보존의 지역적·중앙적 차원에서 성공할수 있을것을 확고히 이해한다.

6. 양독정부는 가능한한 신속하게 관련자에게 제3자의 흥미유발의 보안조치하에 신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7. 양독정부는 특별수입자가 즉각 사용자 규칙(Benutzerordnung)을 제정할것을 기대한다. 이 사용자 규칙과 함께 동시에 주위임자는 조언의 내용, 유형 및 범위를 규정한다.
8. 양독정부는 범법행위의 소추와 해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동협조에 상응하는 연방문서법 기준 b)의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보안내 목적을 위한 통계의 사용과 송달이 제한 될것을 기대한다. 연방내무장관과 연방 헌법 수호청(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은 위 제7번의 사용자 규칙의 제정될때까지 특별위임자에게 이에 관한 조희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한다. 문서 중에서 사용된 정보는 송달된 정보의 출처, 범위, 유형을 통제 가능하고 정보의 소재에 관한 완결된 입법적 결정이 소멸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9. 조약 체결 양독정부는 입법작업이 이 자료의 최종 규정을 위하여 즉시 1990.10.3. 후에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 여기에는 국민의회법과 통일 조약이 함께 그 기초자료가 된다.

제 2 조

계약 체결면에서 1990.4.14. 동독 국민의회 결정에 따라 나치스 정권의 희생에 따른 물질적 손실이 정당한 훼손임을 입증 할 것을 의도적으로 명시한다. 서독의 정치 계승에서 연방 정부는 서독의 법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경미한 또는 전무한 배상을 받은 소추자에 대한 경감 급부를 예견하기 위하여는 별도 기금 사용이 클레임회의(Claims Conference) 합의에 충돌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제 3 조

다음에 제시되는 동독의 권리는 통합후 효력이 정지된다. 조약 제9조 제4항은 유효하다.

제 II 장에 대하여 (연방내무장관 업무영역)

1. 1990.8.30. 제정되고 1990.7.22. 공포된 동독 주의회 선거법 개정 법률
2. 1990.5.31. 제정된 동독 국민의회 의원의 법적관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및 제10조는 다음 기준으로 계속 유효하다:
 - a) 동독의 국민의회 의원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4조 제1항의 보상수준으로 3개월간 경과금을 받는다. 동독 제10대 국민의회 재임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의원에게는 그 초과 1개월마다 제1문의 보상금의 70%만 지급받는다.
 - b) 독일 연방의회 의원수당, 유럽의회의원 수당 또는 주의회 의원수당, 공무원관계수당, 공무유사관계수당, 기타 직무관계수당, 자율활동 및 연금 등 관련된 모든 액수를 합산한다. 차관보(Ministerrat)/행정사무장(Staatssekretaer)으로 활동한 경우 위 제1번 경과금 병합에 있어서는 제10조 제1항이 적절히 적용된다.
 - c) 급부는 사회보장을 위한 지불 의무에 기초한다.
 - d) 이 급부의 관련 기간은 노동권 관계와 같이 노동및 사회 보장을 위한 증명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 e) 이 급부의 관련 기간은 보장의무 활동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연금 산정과 승인에 적용된다. 노령연금과 폐질연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이급부에 관련된 기간은 연금 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 평균 수입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 f) 동독 국민의회 의원으로서 유럽의회에 파견된 의원은 독일 연방의회가 다르게 규정 하지 않는한 1979.4.6. 제정된 서독의 유럽의회 의원의 법적 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럽의회 잔여 임기기간 동안 유럽 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3. 1990.8.8. 의결된 차관보직의 퇴직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1990.2.8. 동독의 차관보 의결 규정과 1990.8.29. 퇴직 국가행정 사무장의 사회적 보장을 위한 동독의 차관보 의결은(GBl. I. 제6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차관보직자가 행정부로 부터 퇴직할 이유가 본인에게서 발생하지 않

으며, 연금 연령에도 달하지 않았고 동시에 다른 활동을 재개 할수도 없거나 또는 있는 경우 수입이 전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과금(Uebergangsgeld)을 지급 받는다. 경과금은 퇴직일로 부터 3개월간 퇴직전 최종달의 급여를 보장한다. 차관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개월수마다 제1문에 따라 경과금의 70%만 지급한다.

- b) 동독 연방의회 의원수당, 유럽의회 의원수당, 주의회 의원수당, 공무 직관계수당, 공무직 유사관계수당, 기타 취업 관계수당 혹은 자영 수당 및 연금도 모두 가산된다.
- c) 급부는 사회보장의 지불의무에 기초한다.
- d) 이급부의 관련기간은 노동권 관계와 같이 노동 및 사회 보장을 위한 증명서에 기입되어야 한다.
- e) 이급부의 관련기간은 보장 의무 활동으로서의 사회보장의 연금 산정과 승인에 적용된다. 노년 연금과 폐질 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 이급부의 관련된 기간은 연금 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 평균 수입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4. 1990.9.4. 제정된 지역대표 보상에 관한 령 보상령 제1차 시행령

제Ⅲ장에 대하여 (연방법무 장관 업무영역)

5. 1990.9.13. 제정된 기금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이법률은 연방법적으로 규정대상이 아닌 것에 관한한 통일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서는 주법(州法)으로 계속 유효하다.

6. 1990.9.6. 제정된 복권법(Rehabilitierungsgesetz)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제1조 제1항 제2번과 제3번, 제4항, 제iii절부터 제v절까지(제18조 부터 제42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제2항은 제ii절(제3조 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복권자의 청구에만 적용한다.
- b) 통일조약 제17조의 의미에 따른 희생자로서 법치국가에 반하는 판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사람은 제2절(제3조부터 제17조까

- 지)에 따른 복권자로서 동등한 청구권을 갖는다.
- c)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2) 복권화는 앞으로 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해당자의 청구를 근거로 한다.
- (3) 반법치 국가적 형사 소추조처에 관련되어 관련자 또는 제3자로부터 몰수한 자산가치의 반환 또는 환원에 대해서는 공개 자산문제 규칙을 위한 법률(1990.8.31. 부록Ⅱ 제Ⅲ장, 업무영역 B 제i절)을 적용한다.
- d)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제 6 조

수납된 벌금, 수수료, 형사재판 비용 및 구금비용의 반환청구는 특별법 규정에 유보한다.

- e) 제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f) 제11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에 따라 주 대법원 관할인 경우 대법원 대신 지방법원이 담당한다.
- g) 제14조 제2항에 따라 주대법원 관할인 경우 대법원 대신 주정부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특별 심판부가 담당한다(1990.8.31. 체결한 조약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번 -법원 기본법- k)항)
- h) 제15조에 따른 추방의 경우 복권 청구는 적법 시기에 제출된 판결 파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유효하다.
- i) 제15조에는 제iii절을 신설한다 :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추방결의는 제출된 법원이 의무를 지닌다. 지금까지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베를린 지역에 적용하는 데에는 추가로 다음 조처에 따른다 :
- a)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원 대신 베를린 주법원이 담당한다.
- b)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c) 제14조 제2항에 따라 주대법원 관할인 경우 주대법원 대신 고등 법원이 관할한다.

7. 1990.9.13. 제정된 국유 경제 보험법 폐지법률(GBL.I 제61호)
8. 1990.8.29. 제정된 보험제도 영역에 관한 법규정 폐지규정(GBL. I. 제 59호. 1430목)

제IV장에 대하여(연방재무장관 업무영역)

9. 1990.9.13. 제정된 화폐전환 보상기금에 관한 법률(GBL. I. 제61호)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기금은 그 임무가 충족된 후 해체된다.
10. 1990.9.12. 제정된 신탁법 제14차 시행규칙(GBL. I. 제60호. 1465 쪽)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제 2조는 삭제한다.
11. 1990.9.12. 제정된 신탁법 제5차 시행 규칙(GBL. I. 제60호. 1466 쪽) 12. 1990.6.29. 제정된 전환금 획득의 합법성 증명에 관한 법은 (GBL. I. 제38호. 5쪽)다음 조치에 따른다:
 - a) 제5조 제4항 제2문의 경우 임시 특별 위원회 대신 전환을 위한 종합 금액이 신고된 구역법원이 행정업무를 결정한다.
 - b) 이 구역법원은 제6조에 따른 항고도 재판한다.
13. 1990.9.13. 제정된 시설투자를 위한 투자 특별기금의 제안과 허가에 관한 제2차 규정 - 제2차 투자특별기금규정 - (GBL. I. 제61호)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 규정은 기본법 유효 영역에서 연방법으로 유효하다.
14. a) 1990.5.20. 제정된 동독 저축은행 협회 정관에 관한령(GBL. I. 제 24호. 233쪽).
 - b) 1990.7.26. 제정된 저축은행 업무 및 경영에 관한령(GBL. I. 제56 호.1275쪽)
 - c) 1990.8.29. 제정된 행정위원회의 저축은행 인력 선출을 위한 선거 규정에 관한령(GBL. I. 제60호. 1475쪽)
 - d) 1990.8.29. 제정된 저축은행의 보증법인체로의 이관을 위한 정관

에 관한 령(GBL. I. 제60호. 1474쪽)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위 령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 한시적 주법 규칙으로
 1991.6.30. 까지 유효하다.

15. 1990.8.29. 제정된 소련군 서부 주둔군에 납부되는 상품의 소비세 및 관세 감면에 관한 령(GBL. I. 제63호)
16. 1990.8.24. 제정된 관세법 제1차 시행규칙 - 세관경제, 세관 내부경제 - (GBL. I. 제59호. 1436쪽)
17. 1990.8.24. 제정된 일반 관세법 제1차 시행규칙 - 도로세관, 세관, 공항세관 - (GBL. I. 제59조. 1442쪽).
18. 1990.9.5. 제정된 현재까지의 국유 기업의 과거 채무 청산 조치에 관한 령(GBL. I. 제59호. 1435쪽)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이 령은 1991.6.30.까지 유효하다.

제 V 장에 대하여(연방 경제장관 업무영역)

19. 1990.8.28. 제정된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시설, 열 에너지, 가스 및 전기 에너지 보조금 보전령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 a) 이령은 전기와 가스 에너지, 음료수에 관해서는 1990.12.31.까지, 열 에너지에 관해서는 1991.6.30.까지 유효하다.
 - b) 제4조는 삭제한다.
20. 1990.8.24. 제정된 국민에게 보급되는 고체 연료 보조금 보전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이령은 1990.12.31.까지 유효하다.
 - b) 제4조는 삭제한다.
21. 1990.8.8. 제정된 대외경제에 관한 령 개정령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이령은 1991.3.31. 까지 유효하다.
22. 1990.8.8. 제정된 대외경제 유통, 자본유통 및 지불유통에 관한 법률 제3차 시행령 - 수입장부 -
23. 1990.9.5. 제정된 열 생산 시설의 연료 재료 비축령은 다음 기준에 따

른다 :

이 령은 1991.3.31.까지 유효하다.

제Ⅶ장에 대하여(연방노동 사회보장 장관 업무영역)

- 24. 1990.8.22. 제정된 서독산 의료기기 원조 송달이 보건분야에서 자산 안전과 검출에 관한 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이령은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주에서 계속 유효하다.

제Ⅹ장에 대하여(연방 청소년 가정 여성 보건장관 업무영역)

- 25. 1990.9.13. 제정한 동독의 응급구조 직무에 관한법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법률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서 한시적 주 규정으로 1992.12.31.까지 유효하다.
- 26. 1990.9.12. 제정한 어린이 시설(* 유치원으로서 낮에만 문을 여는 시설)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제7조 제2문 앞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어린이를 위한 주간시설 설립자를 통하여 영토내에서 하며, 시, 지역 및 공동체의 관할 지방 관청은 조언하고 보호한다.”
 - b) 제1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c) 제19조 제1항은 폐지된다.
- 27. 1990.9.12. 제정된 유치원에서의 어린이 보호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 a) 제2조 제1항 제2문은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
“...이들이 유치원 활동을 지원하는 한.”
 - b) 제2조 제2항의 “해야(되어야)한다(sollen)”는 할수 있다(koennen)”로 문가 수정된다.
- 28. 1990.8.29. 제정된 1987년 3월 12일자 국가적 자녀수당령의 보충령은 - 제2차 국가적 자녀수당령 -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이 령은 1990.12.31. 효력을 상실한다.

29. 1990.8.21. 제정된 국가적 자녀수당을 위한 보상금 지급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이 령은 1990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한다.

제Ⅷ장에 대하여(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로 안전 장관 업무영역)

30. a) 1990.9.12. 제정된 국립공원 포퓰메른 대지 풍치지구 확정에 관한 령
 b) 1990.9.12. 제정된 국립공원 야스문드 확정에 관한령
 c) 1990.9.12. 제정된 국립공원 유리츠 - 국립공원 확정에 관한 령
 d) 1990.9.12. 제정된 확대공원 흑하르츠 확정에 관한령
 e) 1990.9.12. 제정된 국립공원 작센슈바이츠 확정에 관한령
 f)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광보호지역을 합한 “남동 류겐 생물 공간 확보” 확정령
 g)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쇼 프파이데 - 코딘 생물 공간 확보” 확정령
 h)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스 프레박트 생물 공간 확보” 확정령
 i)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중 부 엘베 생물 공간 확보” 확정령
 j)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베 쉘 르탈 생물공간 유보” 확정령
 k)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생 물공간 유보” 확정령
 l)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살 제 자연공원” 확정령
 m)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드 립링 자연공원” 확정령
 n) 1990.9.12. 제정된 자연 보호 지역과 풍치 보호 지역을 합한 “맥켄 슈이츠 자연공원” 확정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이령은 연방교통도로의 유지, 신설 및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 이 조치의 시행에 있어서는 이령의 보호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XIV장에 대하여(연방 공간질서 건축 시가조성 장관 업무영역)

31. 1990.8.23. 제정된 영업공간 임대료 및 사용료 경감 취조령은 (Anordnung der Ermittlung)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이 령은 1990.8.13. 효력을 상실한다.
32. a) 1990.8.13. 제정된 건축설계, 건축기술 검사 및 감독령
b) 1990.9.10. 제정된 자연 물질 저장, 온수공급, 열 배분 시설, 연 소 시 설령
c) 1990.9.10. 제정된 차고 건축 및 운영령은 다음 조치에 따른다 :
이 령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 유효하다.

제 XVI장에 대하여(연방 교육 학술 장관 업무영역)

33. a) 1990.8.17. 제정된 교육제도의 지도 구조 및 공동 참여 위원회에 관한 령 제1차 시행령
b) 1990.9.18. 제정된 대학생 후생복지관(Studentenwerken) 설치령
c) 1990.9.18. 제정된 임시 대학 규정령
d) 1990.9.18. 제정된 일반 및 직업학교에 관한 기본 규칙 및 원칙령
e) 1990.9.18. 제정된 교사교육령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a) 이령과 시행령은 조약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주에 효력을 발생한다.
bb) 이 령과 시행령은 한시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1991.6.30.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1990.8.31. 베를린에서 서명한 독일 통일 회복을 위한 조약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4번 h)항의 “1991.12.31.까지”는 “1990.9.6. 제정된 복권법 제10조 제1항이 경과하기 까지”로 문구 수정한다.
2.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14번 h)항에는 hh) 소항을 보충한다.

hh) 1968.1.12. 제정되고 1990.6.29. 제6차 최종 개정한 동독 형사 노동법 제31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2) 구금은 다만 판결에 의하여 허가한다. 구금은 다음의 경우에 행한다 :

 1. 중범죄로 판결 되었을 때
 2. 기타 범법 행위가 거칠고 부정하거나 범치국가 질서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로서 구형 또는 형벌이 내려졌을 때
3. 부록 I 제Ⅲ장 업무영역 A 제iii절 제26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d)항 다음에 e)항을 보충한다 :
 - e) 1990.9.6. 제정된 복권법 제ii절에 따른 복권 취급 심리 과정은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
 - aa) 제1심 심리과정에는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구술심리가 개최되지 않으면 제84조가 적용된다.
 - bb) 상고심(복권법 제14조) 과정에서는 대형사재판소 소집규정이 적용된다.
 - cc) 제89조는 상고심에서 변호사 비용이 제1심과 같아야 함을 조건으로 유효하다.
 - b) 기존의 e)항은 f)항이 된다.
4. 부록 I 제Ⅷ장 업무영역 E 제ii절 제1번 e)항 제249c조 제29항의 통합이전의 시기를 위하여는 “통합이전에 성립된 청구를 위하여”로 문구

수정된다.

5. 부록 I 제 VIII 장 업무영역 F 제 iii 절 제 1 번의 기준 k) 항의 “87” 앞에 “56”을 보충한다.
6. 부록 I 제 V 장 업무영역 D 제 ii 절 제 21 번 c 항 소 cc) 항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괄호 다음에 “1990.8.20. 제 2 번을 개정함”으로 문구 수정한다.
7. 부록 I 제 VI 장 업무영역 B 제 iii 절 제 8 번 기준 a) 항의 “1991.1.1”은 “통합효력발생”으로 문구 수정한다.
8. 부록 II 제 II 장 업무영역 C 제 iii 절 제 2 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낸다 :
 - a) 이 법률은 조약 제 1 조 제 1 항에 언급된 주의 주경찰법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1990.12.31.까지 유효하다.
 - b) 통합이 이루어지면 제 81 조는 효력을 상실한다.
9. 부록 II 제 III 장 업무영역 A 제 ii 절의 제 4 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1990.9.5. 제정된 1990.9.1. 이전 동독 대학의 법과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 교육령”
10. 부록 II 제 III 장 업무영역 A 제 i 절의 제 8 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8. 1990.9.1. 제정된 판사법 시행규칙 - 명예판사의 임명과 선출규정” 기존의 제 9 번은 삭제한다. 기존의 제 10 번과 제 11 번은 제 9 번과 제 10 번이 된다.
11. 부록 II 제 III 장 업무영역 A 제 iii 절 제 1 번의 기준 f)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f) 범지역적 결사에 대한령은 삭제한다. 이 결과에는 통합이전의 법률 관계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부록 II 제 VIII 장 업무영역 E 제 iii 절 제 1 번 a) 항 소항 dd) 에는 제 2 문 다음에 제 3 문과 제 4 문이 보충된다 :

“연방 노동 및 사회보장 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법규정을 통하여 특별 연령 한계에 도달했거나 결정적 근속기간이 충족된 자에 대한 부양 체제의 부양급부를 이 중 급부로 계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할 수 있다. 장관은 부양 급부의 수준에 달하는가 또는 근로촉진법의 임금 보상 급부에 도달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의 제 3 문은 제 5 문이 된다.

13. 부록Ⅱ 제Ⅷ장 업무영역 E 제iii절 제5번의 c)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c)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유효한 실업자 보험의 산정 한계를 기준으로 근로 지불금에 맞는 순근로 지불금을 결정한다.”
14. 부록Ⅱ 제Ⅷ장 업무영역 F 제iii절 제2번 b)항의 제1문 다음 문장을 보충한다.
- “제22조는 국가의 명예 공무원 활동, 보건분야 복무, 복지부양분야, 원조 급부 기업에 근무한자에 대한 사고 보험에 적용한다” 기존의 제2문은 제3문이 된다.
15. 부록Ⅱ 제Ⅷ장 업무영역 f 제iii절 제8번에는 기준 e)항과 f)항이 보충된다 :
- e)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인권 또는 법치 국가 정신에 충돌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의 손해에 잘못 사용 되어졌을 경우 권리 소유자 또는 권리 승계자의 별도 부양 체제에서의 청구와 계승은 단축 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 f) 제32조에는 제3항을 보충한다 :
- (3) 명예퇴직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전제조건이 제시되면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제27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부여된다.
16. 부록Ⅱ 제Ⅷ장 업무영역 G 제iii절의 제3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 “1990.9.13. 제정한 의료보험 - 계약법인 급부 제공자를 위한 의료보험 계약 관계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0조에 담겨진 변상불가의 약품과 의약품 고정가격에 관한 규칙은 1993.12.31.까지 유효하다.
- 제15조는 1991.12.15까지 유효하다.
17. 부록Ⅱ 제Ⅷ장 업무영역 H 제iii절 제9번의 기준 b)제3문 제2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2. 더 나아가 인권 또는 법치 국가 정신에 충돌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권리 소유자나 권리 계

승자의 (청구권과 승계권은) 단축되거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19. 부록Ⅱ 제Ⅴ장 업무영역 H 제1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제 i 절

다음 법률은 동독에 계속 유효하다.

1985.5.19 제정되고 1990.8.31. 제2차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부양 안정령

20. 부록Ⅱ 제ⅩⅢ장 업무영역 B 제iii절 제1번의‘1990.6.20. 제정된 제2차 우편령인 우체국근무에 관한 제2호령을 통하여 개정된’은 “1990.8.31. 제3호령으로 최종 개정된”으로 문구수정한다.

21. 부록Ⅱ 제ⅩⅢ장 업무영역 B 제iii절 제2번의 도입문장의 괄호 다음에 “1990.8.31. 제2호에 의하여 개정된”을 문구 삽입한다.

제 5 조

1990.8.31. 베를린에서 서명한 독일통일 회복을 위한 조약은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berichtigten) :

1. 부록Ⅰ 제Ⅲ장은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

a) 업무영역 B 제ii절 제1번의 제231항목 제2조 제2항 제2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제55조 제1항은 통일 등기부는 등기소 대신 통일 이전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서 관할했던 기관에서 담당한다.”

b) 업무영역 B 제ii절 제1번에서 제232항목 제9조의 “통일 전일에”은 “통일 당일에” 문구 수정된다.

2. 부록Ⅰ 제Ⅵ장 업무영역 B 제ii절 제7번 제2조 제15번 제1문의 “세금의 확정” 문장앞에 “변경”을 보충한다.(* 독일어상에는 앞에 있게 되

나 우리말로는 세금의 확정의 변경으로 뒤에 붙게됨)

3. 부록 I 제 VI 장 업무영역 A 제 iii 절 제 8 번 a) 항의 마지막 절반문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만약에 그것이 1964.5.5. 제정된 의약품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었거나 또는 1986.11.27. 제정된 의약품 제 7 조 제 4 항에 따라 허가되었다면,”
4. 부록 I 제 VIII 장 업무영역 H 제 iii 절 제 1 번 g) 항의 소항목 bb) 의 “1991 년”은 “1990 년과 1991 년”으로 문구 수정되며 소항목 cc) 는 삭제된다.
5. 부록 I 제 VIII 장 업무영역 I 제 iii 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 a) 제 1 번의 c) 항에서 “771”은 “769”로 수정된다.
 - b) 제 1 번의 c) 항 제 2 문의 마지막 채택된 문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남독 강철과 철강 노조는 튜링겐주와 작센주의 험니트지역을 포함한다.”
6. 부록 I 제 X 장 업무영역 D 제 ii 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a) 제 21 a 번 b) 항에서 제 28 a 조 제 7 항 제 3 번의 “통일조약 제 3 조에 언급된 지역”은 삭제된다.
 - b) 제 21 a 번 b) 항에서 제 28 a 조 제 9 항의 “이전에(ehemals)”는 삭제된다.
 - c) 제 33 번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에 있는 “생명공학적(gentechnischen)”은 “유전학적(genetischen)”으로 수정된다.
7. 부록 II 제 III 장 업무영역 D 제 i 절의 독일 마르크 대차 대조법 제 160 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제 160 조

적 용

이 법률은 제 7 절의 규정이 우선 조약의 효력 발생에 뒤이어 1990.7.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

8. 부록Ⅱ 제 X 장 업무영역 B 제i절 절11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민주 청소년 기금의 설치에 관한 1990.7.20.의 령”

9. 부록Ⅱ 제 XⅢ 장 업무영역 C 제iii절의 제4번 a)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a) 수수료는 전파매체 시청료 인상에 관한 1990.9.4. 령에 따라 조정된다.

제 6 조

조약 또는 그 부록의 내용에 대한 의문과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이 합의가 기준이 된다.

제 7 조

이 협정은 1990.8.31 서명된 조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1990.9.18

베를린 1990.9.18

독일연방공화국을 대리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을 대리하여

쇼이블레

귄터 크라우제

베를린 주둔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군대와 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독일 통일후 한시적 체류에 관한 합의(내
용) 효력발생에 관한 법

1990. 9. 24

前 文

독일의 통일회복과 함께 통일된 독일과 베를린 지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체류에는 국제조약 규칙이 필요함을 헤아리며, 연합군 권리의 마찰없는 해결을 보장한다는 소원에서,

이 군대, 이 군대의 군속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의무는 독일 국민들과의 번영된 공동삶의 보전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개별 사안내에서 확고해야 함을 인식하며,

이에 관한 조약 협상, 의회조언과 결정원리는 일회성에 의하여 앞당겨 체결해서는 안되는 바, 이는 독일통일회복의 시점에 효력이 발생될 것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임을 고려하고,

이 규정은 예상되는 규칙의 예외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범위만을 정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최선의 노력으로 최종 협정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비준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연방의회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법률을 의결한다 :

제 1 조

(1) 소련군대는 최종 조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브란덴부르크주, 메클

- 렌부르크-포츠담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및 튀링겐주에 잠정적으로 계속 허가된 기간까지의 체류를 승인한다.
- (2) 프랑스군, 미국군, 영국군을, 한편으로, 소련군을 다른 한편으로 이 국가들의 특별권리나 책임의 정지 또는 폐지에 따라 베를린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최종 협정의 효력 발생까지 베를린에 정해진 기간동안의 체류를 승인한다.

제 2 조

- (1)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 규정을 통하여 소련과의 임시 협정을 발효시킬 권한을 위임 받는다. 이 임시 협정은 소련군의 브란덴부르크, 맥클렌-포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및 튀링겐주(주둔지역)의 지역에 한시적 주둔과 이 지역에서의 소련군의 계획적인 철군에 대한 최종 협정의 발효와 그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시행된다. 이 임시규칙은 주둔의 양상을 지금까지의 관계보다 개선시킬 것이다.
- (2) 임시 협정은 특히 다음의 대상이 관련된다 :
- a) 소련군과 군속 및 그 가족에 의하여 독일인의 권리와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주의
 - b) 소련군의 한시적 주둔과 계획에 따른 철군
 - c) 소련군과 소련군 사용 토지 및 자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 d) 소련군의 활동, 이동, 작전, 기동 훈련 및 기타 활동
 - e) 소련공군
 - f) 소련군 사용 토지의 이용
 - g) 소련군과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치안 공권력
 - h) 소련군의 부양
 - i) 소련군과 그 군속의 교통시설 이용
 - j) 소련군과 그 군속 및 가족의 우편, 전화, 통신기기 시설 및 사용
 - k) 보건 위생 제도와 환경 보호
 - l) 소련군과 군속 및 그 가족의 출입국
 - m) 소련군과 그 군속 및 그 가족의 세관, 세금 및 독점 사용

- n) 재판권 및 공조권
- o) 제3자에 대한 가해와 계약 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p) 군의 조정과 독일-소련 위원회의 설치
- q) 달성된 토의 상태를 고려한 하나의 조약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한 서명과 비준을 합의할 것.

제 3 조

- (1)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정을 통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 및 소련과 임시협정을 맺어 4개국 군대의 베를린의 한시적 주둔과 이에 요구되는 시행 규칙을 제정할 임무를 위임받는다. 이 경과 조치는 주둔형식의 관점에서 베를린 이외 지역의 지금까지의 주둔지역에 유효한 규칙을 정리하게 된다.
- (2) 임시 규칙은 특히 다음 대상이 관련된다 :
 - a) 무기의 체제와 유형 및 최대 화력 및 도시내 주둔지역
 - b) 주둔지역 이외에서의 활동 관점에서 군의 제한과 규칙
 - c) 프랑스, 영국, 미국 군대의 베를린과 바덴부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오드라인-베스트팔렌, 라이란트-팔츠, 자아란트, 슐레스비-홀슈타인 주간에서의 활동 및 위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의 군속과 그 가족의 조약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주에서의 활동에 관련된 규정
 - d) 한시적 주둔과 철군의 형식

제 4 조

- (1)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정을 통하여 프랑스, 영국, 미국과 임시 협정을 맺어 제3조에서 취급하지 않은 베를린에 관련된 점령군 유보권의 대상에 관한 효력을 발생시킬 권한을 위임받는다.
- (2) 이 협정은 특히 다음 대상이 관련된다 :

- a) 주둔시기에 일어난 대상에 대한 독일법원과 관청의 장래 관할권
- b) 점령군의 조치에 따라 확정되었거나 성립되어진 의무와 권리에 관한 과도기적 불변성
- c) 3개국의 명칭 및 권력을 사용한 조직 및 인사 및 3개 국가에 대한 청 구를 위한 담보
- d) 점령군 지역역량의 노동 및 사회보장 관계
- e) 점령군적 소유 및 사용관계의 종결
- f) 주둔군과 그 소속인사의 사적 기회의 청산

제 5 조

이 법률은 베를린주가 이 법률의 적용을 확정함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유효하다. 이 법률에 따른 법령은 제3차 경과법률(Ueberleitungsgesetz)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주에도 유효하다.

제 6 조

이 법률은 1990.10.3. 효력을 발생하는 제1조 제1항과 제2조를 제외하고 공표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법률은 이에 완성되었고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본, 1990.9.24

연방대통령

바이젱거

연방수상

Dr. 헬문콜

연방외무장관

켄 서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 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資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 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資料 93-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研究調整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5, FAX : 232-5341

印刷處 양동문화사 전화 : 272-1767

印刷日 1993년 10월 일

發行日 1993년 10월 일
